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2045-10

2019년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Ⅱ)

2019. 1.



농림축산식품부



차 례

제 1 권

I.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1
1. 기본규정	3
2. 기본규정 별표 및 서식	51
II. 201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주요변경사항	89
III. 2019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	211

Ⅱ 농촌분야

1-1.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1. 관광농원	215
2. 귀농귀촌교육지원	223
3. 농어촌관광휴양단지	230
4. 농어촌민박	236
5.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242
6. 농촌다원적자원활용(다원적자원활용)	284
7. 농촌다원적자원활용(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290
8.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296
9. 농촌재능나눔 활성화지원사업 안내서	319
10. 농촌집고쳐주기	336
11.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343
12.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350
13. 일반농산어촌개발	362
14. 청년귀농 장기교육 사업	510
15.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521

1-2. 농촌복지증진

16. 농번기 주말돌봄방 지원 사업	545
17.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방문콘서트)사업	569
18.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사업	572
19.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	576
20.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	611
21.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615
22. 행복나눔이 지원 사업	636

■ 농업분야 ■

2-1. 경쟁력 제고

23.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안내서	649
24. 농업경영컨설팅(컨설팅지원)	661
25. 농업법인 취업지원	762
26. 도시농업박람회 및 도시농업 정책홍보 지원사업	806
27. 도시양봉지원	811
28. 스마트팜 확산지원(권역별 현장지원센터)	817
29.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영어정착 우수과제 공모지원	843

2-2. 생산기반확충

30. 광역단위 친환경 생산·유통 산지조직 육성	865
31.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	877
32. 농업기반정비사업	890
33.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사업	899
34.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920
35. 2019년 농촌용수개발사업 안내서	933
36. 사료용곤충산업화 지원	955
37. 수리시설개보수	969
38.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사업	989
39.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004
40.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1031
41.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1072
42.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1093

제 2 권

Ⅰ 농업분야 Ⅰ

2-3. 농가경영안정

43. 경관보전직불(지자체)	1119
44. 경영이양직접지불금	1144
45. 농기계임대	1165
46. 발농업직불금	1193
47.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1250
48.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1331
49. 농업자금이차보전	1346
50. 조건불리지역직불금	1446
51. 친환경농업직접지불	1515

2-4. 국제협력협상

52.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보조)사업	1533
53.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융자)	1544

2-5 기술개발

54.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1555
------------------------	------

Ⅰ 식량분야 Ⅰ

3-1. 경쟁력 제고

55. 고품질쌀유통활성화	1565
56. 라이스랩 설치운영 지원	1628
57.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육성	1648

3-2. 생산기반확충

58.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1747
--------------------------	------

축산분야

4-1. 경쟁력 제고

59. 말산업육성지원사업	1771
60. 신품종 별 보급지원	1789
61.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사업	1794
62. 축사시설현대화(민간)	1808
63. 축산관련종사자 교육비 및 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1813
64.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자치단체)사업	1851
65. 축산자조금 운영사업	1864

4-2. 생산기반확충

66. 가축분뇨처리사업 개요	1873
67. 계란GP센터시설현대화	1900
68. 가금밀집지역 개편	1948
69.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	1970
70.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1993
71. 축사시설현대화사업(용자)	2038
72.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2067
73.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2078

4-3. 축산농가경영안정

74. 친환경축산직불사업	2098
---------------	------

4-4.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75. 생산자소비자단체 협력사업	2113
76.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	2151

4-5. 축산물안전관리

77. 축사시설현대화(CCTV등 방역인프라)사업	2159
78. 축산물이력관리 지원 사업	2183

제 3 권

■ 식품분야 ■

5-1. 경쟁력 제고

79. GAP생산여건 조성	2197
80. 식품기능성평가지원 사업	2204
81.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2214

5-2. 생산기반확충

82. 전통주산업진흥사업	2227
83.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2232
84.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2244
85.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2253
86. 향토산업육성	2258

5-3.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87. GAP 안전성 분석 지원	2275
88.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2321
89.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자치단체)	2346
90.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사업	2371
91.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2379

■ 유통원예분야 ■

6-1. 경쟁력 제고

92. 과실브랜드 육성	2389
93. 노지작물과원 스마트영농 모델개발	2431
94.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2463
95.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시설보급) 개요	2500

6-2. 생산기반확충

96.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개요	2531
97. 과수ICT분야 시설보조	2544
98.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2570
99.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	2624
100.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	2658
101.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비 지원	2666
102. 과원규모화	2699
103.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단지 조성	2724
104.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지원(자치단체)사업	2740
105.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2765
106. 시설원예현대화	2813
107.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2843
108. 유통시설현대화	2850
109.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2876
110.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자치단체)사업	2892
111. 저온유통체계구축(저온수송차량)(자치단체)사업	2908
112. 저온유통체계구축(화훼류습식유통)사업	2924
113. 특용작물시설현대화지원	2932
114.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	2943

6-3.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115. 공동선별비지원(자치단체)	2957
116.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978
117. 공판장(청과)출하촉진(용자)	2986
118. 과일간식	2992
119.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	3025
120.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교육 및 홍보 지원	3034
121. 농산물수매지원사업	3040
122. 2019년 도매시장출하촉진(용자) 개요	3045
123.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3053
124. 산지유통종합자금(용자)사업	3062
125. 산지통합마케팅지원(자치단체)사업	3089
126. 인삼·특용작물계열화(용자)	3103
127. 자조금지원사업 안내서	3114
128. 전통시장 지역농산물 판매촉진 지원	3123

129.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3129
130. 직매장 지원	3140
131. 채소가격안정지원	3154
132. 화훼유통개선지원	3162

■ 산림분야 ■

7-1. 생산기반확충

133. 조림사업 개요	3171
134. 정책숲가꾸기사업 개요	3176
135.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개요	3181
136. 양묘시설현대화	3184
137.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3193
138.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3202
139.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3210
140. 수출기반구축	3217

7-2. 임가지원 및 유통활성화

141.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3227
142. 청정임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3236
143.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3241
144. 산림사업종합자금(용자)	3247
145. 산림사업종합자금(이차보전)	3258
146.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3269
147. 임업인경영자금 지원	3278

7-3. 경쟁력 제고

148.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개요	3285
149. 임산물 상품화 지원 개요	3292
150. 산림조합 특화사업 개요	3299
151.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개요	3306

2-3. 농가경영안정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세부사업명	경관보전직불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경관보전직불(지자체)				예산 (백만원)	8,356	
사업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형성하여 이를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시장·군수와 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 후 농지에 경관작물 재배관리 및 마을 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경관가꾸기 등 협약사항 이행에 따른 경관보전활동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5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0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비 50% 지방비 50%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		
	합 계	19,666	22,976	18,432	16,712		
	국 고	13,766	11,488	9,216	8,356		
	지방비	5,900	11,488	9,216	8,356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사무관 이교남 주무관 고은지		044-201-1560 044-201-1561		
신청시기	전년도 3월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		
관련자료	-						

1. 사업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로서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해당없음)

2. 대상 작물

- 대상작물은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
 - 대상 작물간의 혼작, 간작, 색동재배(여러 작물 혼합구성), 디자인재배도 가능
 - 아래 예시작물 이외의 작물(초화류)도 사업목적에 맞는 경우 승인 후 재배 가능

< 경관직불금 대상작물(예시) >

경관작물	준 경관작물
갯,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밀, 보리(걸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아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3. 지원 금액 및 기준

가. 지원금액

- 직불금(농업인)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경관작물과 준 경관작물을 혼파하는 경우는 준 경관작물로 간주

나. 지원기준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지원 가능)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4. 지원 대상농지 등

가. 직불금 지원대상 농지

- 「농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지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합·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 ※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이상 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이상 이어야 함.

❖ 경관작물 집단화 기준 ❖

- 집단화는 원칙적으로 필지끼리 연접해서 경관작물을 식재한 농지면적을 말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관작물 집단화 면적에 포함 가능함
 - 식재 면적이 50%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30m 미만 또는 1필지 이내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집단화 포함)
 -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농로, 수로, 제방, 도로, 건물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100m 미만의 거리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집단화 포함)

나. 직불금 지원 제외 대상

- ① 밭농업 직불금을 지원받는 농지(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직불금에 적용함)
- ② 해당작물에 정부수매 등 품목특정적 보조금을 지원받는 농지와 녹비작물종자 및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
- ③ 준경관작물로서 축제나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는 등 다른 용도(식용, 약용, 조사료용 등)로 재배하는 작물
- ④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지
- ⑤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친 농지
- ⑥ 「농지법」 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 ※ 다만, ⑤~⑥항목의 경우 해당농지가 전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관보전사업과 이에 연계한 축제 등의 행사가 별다른 제한 없이 실제 추진 가능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의 농지
- ⑧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 안의 농지
- ⑨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
- ⑩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로서 경관직불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곤란한 농지
- ※ 다만, ⑦~⑩항목은 경관보전직불 보조금 지급개시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경관보전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다. 직불금 지급면적 상한

- 농업인은 30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50만제곱미터
- 같은 농지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경우에는 동계작물 재배면적과 하계작물 재배면적에 대하여 각각 상한을 적용한다.

1. 사업신청 단계

농업인

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 ① 경관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고 농업인 등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로 함)를 구성
- ②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최소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경관보전직불금 추진위원 중에 호선
- ④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함

나. 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

-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추진위원회와 경관보전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협약(이하 "마을경관보전협약"이라 함)을 체결하여야 함
- ② 시장·군수는 ①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다. 사업신청

- ①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함)에게 제출(3월말까지)
- ② 읍·면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관작물 재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에게 농지원부 사본 등을 제공하여 신청서 작성 시 활용하도록 협조

읍·면

라. 사업신청서 접수

- ① 읍·면장은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제출되면 대상 마을의 경관작물 재배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여부 확인
 - 농업인 등이 신청한 농지의 소재지·면적 등은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통하여 대조 확인하고, 집단화기준 충족여부는 지적도를 통하여 확인
 -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확인(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
 - ※ 농업경영체정보에 신청인에게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 ② 읍·면장은 대상농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등을 거쳐 사업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AgriX에 입력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3월31일까지)

-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와 함께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결과와 사업신청 농지의 위치도(축척 1/1000지형도)를 첨부

2. 사업대상지구 선정단계

시·군(시·도)

가. 사업대상지구 추천

- ① 시장·군수는 읍·면장을 통해 신청 받은 사업신청지역 중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별지 제7호 서식)”를 활용, 대상마을 선정요건에 따라 경관전문가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대상지구를 평가하여 시·도지사에게 추천(4월20일까지)
- ②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지역의 집단화기준 충족여부를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추진위원회 위원장, 경관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확인(별지 제12호 서식)
- ③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결과를 바탕으로 경관직불 사업수요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4월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나. 사업대상 면적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사업신청 현황,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실태 점검결과, 예산 불용액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예산 배정(1월)

시·군(시·도)

다. 시·군별(지구별) 사업대상 면적배정 및 통보

- ① 시·도지사는 농식품부에서 배정받은 면적 한도 내에서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시군별(지구별) 면적배정 및 사업대상지구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경관계획에 의해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지구,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경관환경분야)에서 도 대표로 선정된 마을(최근 3년내), 축제·농촌관광 등의 도농교류가 활발한 지구, 색깔 있는 마을,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지구, 국가농업유산 지정지역, 지역행복생활권, 전년도 경관보전직불 협약 이행 지구는 우선적으로 경관직불 대상지구로 선정할 수 있음.
 - 전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약이행실태 점검결과 부실여부
- ② 시장·군수는 대상지구를 선정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구 대상농지, 대상자 등을 읍·면장, 추진위원장, 사업참여자, 경관직불 참여농가에 일괄 통보
 - 전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약이행실태 점검결과 마을(지구)별_협약면적 대비 과중면적 비율이 60%이하인 경우 사업에서 제외

3. 사업 이행 단계

시·군

가.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 시장·군수는 확정된 대상지구별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1년 단위로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 ※ 동계/하계사업 구분 없이 협약기간은 1년으로 체결하여 경관보전활동 수행

나. 사업대상자 변경

- ① 농지의 매매, 임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농가는 추진위원회를 통해 읍·면장에게 신청
 - ※ 사업대상자 변경(축소)으로 인하여 집단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지구 전체를 사업대상에서 제외
- ② 읍·면장은 경영을 이양 받을 자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시장·군수에게 보고
- ③ 시장·군수는 변경내용을 검토하고 결정하여 읍·면장, 추진위원장,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라. 이행점검 의뢰

-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사업지구별 필지 현황을 Agrix를 통해 지구별 이행점검 15일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이행점검 의뢰

추진위원회(농업인)

가. 작물재배관리

- 경관작물 식재
 - 해당 농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을 파종, 식재
 - 집단화기준 충족
- 성실한 재배관리
 -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실시
 - 동계작물은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은 10월 15일까지 관리·보존
 - * 단, 관리보존기간 이내에 축제 등 행사 종료로 경관보존의 의미가 없을 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이행점검을 완료한 후 경운폐기 가능

나. 「마을경관보전협약 관리대장」 관리

- 추진위원회는 「마을경관보전협약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작물재배내용을 날짜별로 정리(전/후사진 첨부)하여 관리하고, 이행점검시 제시

4. 이행점검 단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가. 이행점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세부이행점검계획을 수립, 각 지원에 시달

나. 이행점검사항

① 점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협약사항 중 작물재배관리 이행여부

② 점검시기 : 동·하계 사업별로 각1회(이행점검은 작물별 개화시기에 맞춰 실시)

③ 점검기간 : 동계작물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 10월 15일까지

- ④ 작물재배관리 이행점검시 지자체 공무원 및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지자체 공무원 및 마을 추진위원회가 2회이상 불응시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 2인이상의 확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 점검결과 처리

-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별지 9호 서식]에 따라 경관작물재배관리 상태를 작성하고 AgriX 시스템을 통해 시·군에 통보

*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필지별 내역 통보

- ② 시·군은 AgriX 시스템을 통해 시·도와 추진위원회에 보고(통보)

- ③ 시·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이 전송한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라. 이의신청

- ①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경관보전직불금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서면[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재조사 요청

-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재조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수정 입력 후 재전송

※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AgriX시스템의 수정은 불가함.

5.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단계

시·군

가. 보조금 지급

① 경관보전 직불금

- 경관작물 재배에 따른 보조금은 실경작 확인서상의 경작자 계좌에 입금

- 동일한 필지에 이모작 이상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각각의 협약에 의해 지급(최대 2회)

② 보조금 산출기준

○ 협약이행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출하되 “보조금 감액기준”을 적용

- 작물재배보조금: 경관작물 m²당 170원, 준경관작물 m²당 100원

* 산출결과 농가별 총금액에서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 후 지급

나. 보조금 감액기준

① 보조금 감액기준

○ 재배관리 및 협약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감액기준 >

지급요건	점검결과	감액기준
경관작물 재배관리	① 파종 및 식재 불이행	○ 보조금 지급 취소(100% 감액)
	② 재배 면적부족	○ 부족한 면적만큼 보조금 감액 지급
	③ 필지 전체의 생육 및 개화가 안된 경우	○ 파종확인(농관원)이 가능한 경우 직불금의 50% 지급 - 다만, 필지 전체의 생육 및 개화가 안된 경우가 2회 발생한 사업 대상자는 사업 참여 배제
	④ 필지별 생육 및 개화가 불량한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필지별로 보조금 감액지급 - 불량면적에 비례하여 감액 * 불량면적 30% 미만은 감액 없음
	⑤ 이행점검결과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보조금 지급 취소(지구전체 미지급) - 다만, 불가피한 사유(사망, 농지매매 등)로 집단화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구내 협약 이행농가는 재배 면적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⑥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 파종 및 식재 불이행으로 간주(100% 감액)
	⑦ 신청작물과 재배작물이 다른 경우	○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 내에서의 작물을 변경하여 재배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 경관작물 신청 후 준경관작물을 재배하거나 준경관작물 신청 후 경관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미지급

- 다만,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해지구”로 선정되었을 경우, 파종이 확인될 시는 해당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보조금을 정상 지급할 수 있음.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축산식품부

가. 성과측정

① 평가지표 : 지역축제 등 도농교류프로그램과의 연계한 방문객 증가율을 지표로 선정

② 평가일정 : 사업완료 후 다음해 1월중

나. 환 류

- ① 지역축제, 농촌관광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마을은 다음 연도 사업지구 선정 시 우선 고려
- ② 경관작물 재배관리 부실, 파종 및 식재 불이행, 면적부족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 사업면적 축소 또는 참여 배제 등

시·군

가. 보 고

- ① 시장·군수는 AgriX로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② 지원 대상 확정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4월말까지
- ③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 각 시행년도 12월말까지

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 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로 하되 내용연수범위를 참작할 수 있음.
- ②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장비를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
- ③ 다만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의 현재액(감정평가액) 전부를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Ⅲ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가.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나. 읍·면·동장→시장·군수→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19.4월까지)
- 다. 신청대상 : 경관작물 재배 희망마을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라. 조사내용 : 대상마을명, 위치, 면적, 경관작물 종류, 참여농가수,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연계 등
- 마.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가. 201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사업지구)

1. 대상지역	도 시·군 읍·면		리	법정리명
			리	행정리명
2. 지역현황	가구수	총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인구수	총 명 (남자 : 명, 여자 : 명)		
	경관작물 재배면적	총 m ² (농가수 : 호) (논 m ² , 밭 m ² , 과수원 m ² , 기타 m ²)		
3. 마을내 경관자원 보유현황	전통역사적 자원 (전통건축물, 서낭당 등)	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나무, 마을숲, 하천 등)	생활문화자원 (전통주택, 돌담, 생울타리 등)	
4. 경관작물 식재계획	경관작물명	식재면적	식재시기(파종~수확)	
			m ²	~
			m ²	~
			m ²	~
	계		m ²	~
5. 경관관리 및 도·농 교류 연계계획				
6. 특이사항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입과 같이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진위원장 주소 : (전화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불입 : 1.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2.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연번	성명	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주민등록주소)	공부상 지목 및 면적(m ²)					서명(인)	비고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1										추진위원장
2										추진위원 1
3										추진위원 2
:										추진위원 3

※ 본 표는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을 포함하여 작성

※ 신청서 기재요령

- ①란은 신청농지에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 경영을 양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②란은 신청인이 경관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를 대상으로 기재합니다.
- ③란은 신청농지의 공부상 지목을 기재합니다.
- ④란은 신청농지의 면적을 논, 밭, 과수원,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⑤란은 경관작물의 재배 시기(파종에서 수확 또는 작물제거까지)를 기재합니다.(예, 6~10월)
(비고) 란에는 변경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참여 신청서 정보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농업경영체에 등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경관보전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이나 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18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서명 또는 인)
----------------------------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경관보전직불금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거부
2. 경관보전직불금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경관보전보조금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거부
3. 경관보전직불금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 거부
4. 경관보전직불금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및 수령금액)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4조」에 따라 공개하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이나 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18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서명 또는 인)
----------------------------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변경) 확인결과

○ 신청(변경)자 명단

마을 (리·동)	주소 (번지)	성명	신청면적 (㎡)	확인면적(㎡)					지급예상액 (원)	비고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소계		○○ 명 신청								

년 월 일

○○ 면(읍·동)장 (인)

*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하는 금액은 괄호 외서로 표기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 확정(변경) 통지서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20 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대상 확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현황

지 구 명		추진위원장	
-------	--	-------	--

2. 선정자(변경) 명단

연번	성 명	주 소	대 상 면 적 (㎡)					보조금 예상액 (원)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합 계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대상자별 총 지급면적을 기재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읍·면장,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장 귀하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

<○○도>

지구명	위 치		면적 (㎡)	경관 작물	주 요 점 검 항 목								
	시군	읍면			계 (100점)	미관성 (20)	창의성 (20)	연계성 (30)	지구면적 (10)	성취도 (10)	계획성 (10)	가점또는 감점	

점검항목	배점비율	배 점 기 준	점수
미관성	20점	◇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서 경관개선효과와 지역적 특색이 뛰어남 ◇ 경관 개선효과는 양호하나 지역적인 특색이 미흡 ◇ 경관개선 효과가 보통 이하	20점 10점 5점
창의성	20점	◇ 간작(색동재배), 디자인재배, 다품목 단지 조성 등 창의성이 뛰어남 ◇ 경관작물 혼파, 사이재배 등 경관형성 노력 우수 ◇ 단일작물 재배	20점 10점 5점
연계성	30점	◇ 직접적인 축제개최에 활용하는 경우 ◇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관광농원에 활용하는 경우 ◇ 기타 도농교류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경우	30점 15점 1점
집단화 면적	10점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10ha 이상 5ha 이상 2ha 이상	50ha 이상 25ha 이상 10ha 이상
			10점 5점 1점
성취도	10점	◇ 전년도 계속지구로 관광객 10% 이상 증가 ◇ 신규지구 또는 관광객 10% 미만 증가 ◇ 관광객 등 감소	10점 5점 1점
계획성	10점	◇ 시군이나 읍면 단위의 경관 계획에 따라 작물 재배 ◇ 마을단위 경관계획에 따라 작물 재배 ◇ 경관계획 없이 작물 재배	10점 5점 1점
우선선정대상	가점	◇ 우선선정지구 - 국가농업유산 지정지구, 시군 및 지역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작물재배지구, 색깔있는마을, 경관우수마을 콘테스트·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한국에서 가장아름다운마을에 선정 또는 수상한 마을, 전년도 경관보전직불제 협약 이행지구	20점
전년도 이행점검결과	감점	◇ 미파종 면적이 40% 이상 ◇ 미파종 면적이 30% 이상 ◇ 파종면적 중 불량면적이 30%이상일 경우	사업제외 -20점 -10점

*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을 구분하여 지구별로 평가

마을 경관보전 협약서(예시)

지 구 명	도 시·군 읍·면 리·동
협 약 참가자	총 명 (농업인 , 법인)
대 상 면 적	총 m ² (논 , 밭 , 기타)

협 약 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마을경관보전협약서(예시)

○ ○ 시장·군수·구청장
○ ○ ○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관작물 재배를 실시함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간)

2. 약정내용

제1조(구성원의 자격 및 책임과 의무) ①“을”의 구성원은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장 1인을 포함 5인이상의 추진위원을 선출하고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추진위원회에는 마을경관보전협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경관작물 재배농가 외에 마을주민 그리고 농촌 경관 또는 도농교류의 전문가를 포함한다.

④ 추진위원장은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대표자로서 경관작물재배를 위한 마을경관보전계획수립 및 사업신청, 이행여부의 확인 등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한다.

⑤ 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구성원과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경관작물 관련 축제나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⑥“을”의 각 구성원은 “갑”이 제시하는 경관작물의 파종·식재·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경관작물 식재

가. 해당 농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의 파종 및 식재

2. 성실한 재배관리

가. 경관작물 식재 필지별로 배수로 설치

나.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다. 작물의 생육에 적절한 시비 및 제초작업

라. 작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작업

마. 작물의 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용수공급

3. 경관작물 재배 농지 및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수시)

가. 유희지 관리, 수로정비, 논두렁 정비, 주변숲 정리 등 환경정비 활동

나. 작물 수확후에는 경관이 나쁘지 않도록 수확물 및 농지를 잘 정비

제2조(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①“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제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경관보전직불제 보조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을”의 각 구성원이 신청한 입금계좌로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제3조(보조금의 회수 등) ①“갑”은 “을”의 구성원 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을 회수조치하고, 향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②“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경관작물의 파종·식재 및 관리에 있어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1. 파종 및 식재 불이행 : 보조금 지급 중단 및 보조금 회수
2. 면적 부족 : 부족면적 해당분 보조금 감액 조치
3. 관리 부실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의 관리부실에 따른 감액 및 제재 기준에 의함
4. 집산화 기준 미충족 : 지구 전체 보조금 미지급

제4조(해석)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농산물 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시행규정 및 약정 체결 당시의 경관보전직불제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특약사항)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과 제1조 내지 제4조에 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간 또는 “을”의 각 구성원 상호간에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 여 운영할 수 있다.

<특약사항>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장·군수·구청장 :			인
“을”	위 원 장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경관보전직불제 이행점검 조사표 (작물재배관리)

담 당	주 무	소장(과장)

□ 신청지구 현황

지구명(주소)		주요품목	
추진위원장		생년월일	전화번호

□ 이행점검 결과

- 지구전체 집단화기준 충족 여부 : 여 , 부
- * 대상지구 파종면적 최소기준 : 경관작물 2ha, 준경관작물 10ha
- 작물재배관리

신청인	신청현황				이행점검 결과					불일치 사유	
	농지 소재지	신청품목	공부상 면적	신청 면적	재배 품목	파종 면적	생육 및 개화면적	집단화	보존 기간		
합계											

□ 특이사항

이행점검 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소속)
(직)
(성명)
(인)

확 인 자 (소속)
(직)
(성명)
(인)

❖ 조사표 작성방법 ❖

- 불가피(사망, 농지매매 등)한 사유 없이 지구전체 파종 면적이 5%이상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행점검을 생략하고 조사자 및 확인자 서명 날인
 - 경관작물 재배관리분야 조사표 작성은 파종면적 란은 직불제 신청 품목의 파종 면적을, 생육 및 개화면적 란에는 필지별 생육 및 개화면적을 기재, 집단화, 보존기간 란에는 그 준수여부에 따라 ○ 또는 ×를 각각 표시
 - 특이사항에는 위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부연설명 등을 기재
 - 경관작물 재배관리 부실에 따른 감액기준
 - 생육 및 개화가 불량한 면적이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초과할 때 : 불량비율 만큼 감액
 - 파종 이후 보존기간(5.15, 10.15)까지 보존을 하지 아니한 때 : 미 파종으로 간주(감 100%)
- ※ 위에 해당할 경우 마을대표자에게 감액에 대해 충분히 설명

❖ 불일치 사유 ❖

- ① 휴경, ② 폐경, ③ 미재배, ④ 비대상작물, ⑤ 중복신청, ⑥ 실경작아님,
 - ⑦ 자진취소, ⑧ 기타
- ※ “불일치 사유” 란에 위 해당 번호를 기재

<< 직불금 계산식 >>

- 필지별 생육 및 개화면적이 파종면적 대비 70% 이상일 경우
 - 직불금액 = 파종면적 * 직불금단가
- 필지별 생육 및 개화면적이 파종면적 대비 70% 미만일 경우
 - 직불금액 = (파종면적*직불금단가*0.5) + (파종면적*직불금단가*0.5*생육 및 개화면적비율)
 - * 직불금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원/㎡, 준경관작물 100원/㎡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m ²)	신청내용		조사결과 (품목 및 면적(m ²))	비고 (불일치사유)
법정리동명	본번	부번		품목	면적(m ²)		

3.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경관보전직불제사업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확정 결과 보고
(사업대상확정, 보조금지급, 사업수요조사)

연번	지구명 (마을명)	위 치			참 여 농가수 (호)	경관 작물	대상 면적(m ²)				
		시군	읍면	리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합계											
1											
2											
3											
4											

사업비(천원)				지역활성화프로 그램 연계 내용
합계	경관작물재배관리			
	소계	국고	지방비	

- 주1.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 농촌지역개발사업, 농촌관광, 도농교류, 지역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 명을 기재
- 2. 경관작물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지원단가 적용
- 3. 작성은 엑셀로 작성하고, 사업수요조사 보고도 동일 서식 활용

경관보전직불제 지구별 집단화 확인

담당	주무	소장(과장)

□ 신청지구 현황

지구명(주소)			
추진위원장		주요품목	

□ 집단화 여부 확인

○ 신청 현황 및 확인 결과

신청 현황			확인 결과	
신청품목	공부상면적(㎡)	신청면적(㎡)	집단화 포함면적(㎡)	집단화 제외면적(㎡)
합 계				

* 집단화 제외 면적(해당 필지)은 사업대상지구에서 제외

○ 집단화 적정 여부("○" 또는 "√")

적 정	부적정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 준경관작물 10ha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이상 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이상이어야 함)

집단화 여부 확인 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세부사업명	경영이양직불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경영이양직불금	예산 (백만원)	43,978					
사업목적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							
사업 주요내용	65~74세 농업인이 전업·후계농 등에게 농지를 매도·임대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고령농의 소득안정과 젊은 농업인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지원자격 및 요건	65세~74세 이하의 농업인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 포함)							
지원한도	매도 330만원/ha/년, 임대 250만원/ha/년, 4ha까지 지원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54,686	50,960	46,461	43,978			
	국 고	54,686	50,960	46,461	43,97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농지여신부		조민경 이종문		044-201-1772 061-338-5916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Agrix 시스템							

1. 신청대상자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서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
 - 2019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74세 이하인 농업인(1945년 1월 1일 ~ 1954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다만, 질병이나 사고로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포함)

<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농업인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이 해제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의 농지를 경작하여 약정이 해지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 경영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임대·임대위탁 계약이 농업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농업인

<“경영이양”의 개념>

- 경영이양이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지목이 전·답·과수원)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사용대차 제외) 또는 임대위탁 하는 것을 말함
 - 한국농어촌공사
 - 64세 이하의 전업농업인등(매도자인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
 - * 전업농업인등 : 전업농업인, 전업농 육성 대상자(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등 포함), 후계농업경영인, 농업법인
 -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의 농업인 (매도자인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

2. 지급대상 농지

-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밭·과수원
 - 경영이양 이전에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처분한 간척농지를 매입(분할납부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논·밭·과수원
 - 경영이양 이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밭·과수원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논·밭·과수원
 - 농지가 3만 제곱미터 이상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로서 한국농어촌공사가 5년 이상 농업경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논·밭·과수원
- 한국농어촌공사는 위의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다년생식물 재배 등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농업경영에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상속·증여·환매받은 경우 3년 이상 농지소유의 판단 기준>

- 상속 : 피상속인의 소유기간과 상속인(경영이양 신청인) 소유기간을 합산
-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 증여자의 소유기간과 피증여자(경영이양 신청인)의 소유기간을 합산
-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 : 농업인(경영이양 신청인)이 공사로부터 임차하기 전 소유기간과 환매받은 후 소유한 기간을 합산

3. 보조금 지급요건

○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에게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체결 전날까지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이외 나머지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을 이양할 것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을 것

<경영이양 후에도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 농가의 자가소비량 생산을 위한 3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
- 해당 농지의 위치·경지정리 상태 등 경작여건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계속 경작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농지
 -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경우
 -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경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포함되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사업구역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4. 지원단가 및 지급액 산정

- 지급단가 : (매도) 제공미터당 330원/연, (임대) 제공미터당 250원/연
- 지급액 산정 : 경영이양면적(제공미터) × 지급단가 × 지급기간(연)
 - * 필지별로 산정하고 산출금액의 10원 미만은 절사

5. 지급상한 및 지급방법 등

- 지급상한 면적 : 4만 제곱미터(매도 및 임대이양 면적을 합산)
- 지급방법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경영이양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
 - ※ 경영이양자(약정체결자)가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또는 상속인은 지체없이 농어촌공사에 신고하고 그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 지급시기 : 약정 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매월 15일에 지급(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6. 경영이양보조금의 환수 및 절차

- 농어촌공사는 약정기간 중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함
 - * 약정기간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기간과 영농은퇴 기간을 포함한다

- 약정의 상대방(농업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해제한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에 지급한 다음 날부터 환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퍼센트의 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수

환수금액 = 기지급한 보조금 총액 + 가산금*

$$* \text{가산금} = \text{월별 기지급한 보조금} \times \frac{\text{반환일까지의 일수}}{365\text{일}} \times 10\%$$

- 약정을 해지한 경우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약정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지일까지 지급한 경영이양보조금을 환수

《 세부환수절차 》

- 농어촌공사는 지급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때에는 약정해지(해제)일부터 7일 이내에 경영이양자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통지하고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함
- 농어촌공사는 경영이양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때에는 아래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반환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반환독촉장을 3회에 걸쳐 매 납기경과 후 7일 이내에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독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반환독촉을 받고도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농어촌공사의 ‘소송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소 등 법적 조치

Ⅱ

사업추진체계

1. 세부계획 수립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공사가 신청한 시행계획을 검토·승인

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공사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2019년도 경영이양직불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019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 사업의 목표, 세부 추진계획, 시·군 또는 자치구별 지급대상 인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 조사·교육 및 홍보계획 등

2. 사업신청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공사는 사업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신문, 생활정보지, 반상회보, 시·군 홍보지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연중)
 - 경영이양보조금신청서를 받은 농어촌공사의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격과 대상농지 여부를 확인
 - 농업인이 확인을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직접 제출토록 안내
- ※ 신청서식(별지 제1호)의 뒤쪽 참조

○ 신청자 정보공개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어촌공사

- 정보공개 내용 :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 공개 기간 및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어촌공사의 홈페이지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15일 이상
-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 등을 제공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농어촌공사에 서면으로 신청
 - 이의신청을 받은 농어촌공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보

농업인

-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농어촌공사에 제출
- 신청시기 : 2019년도에 경영이양하는 농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사본 1부(64세 이하 전업농업인등 또는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 농업인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

3. 사업자 선정단계

○ 농어촌공사는 신청서류 검토,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선정 결과를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로 신청인에게 통보

*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도 제외사유를 통보(업무형편에 따라 유선 통보 가능)

- 신청서류 : 기재사항 누락 여부, 구비서류와의 일치 여부, 신청자 및 지급대상 농지의 지급요건 적합여부 검토

- 현지조사 : 신청인이 신청농지의 직접 경작하는지 여부,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의 농지를 경작하는지 여부,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고 있는지 여부, 연령 등 기타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현지조사서” 작성 비치

○ 농어촌공사는 지급요건 등에 적합한 신청자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아래 내용을 포함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

- 경영이양한 논·밭·과수원의 표시

-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액 및 지급기간

- 영농은퇴 기간(약정자가 8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요건을 준수하는 기간)

- 약정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경영이양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4. 이행점검 시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공사와 함께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실태, 법령 및 시행지침 준수여부 등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관리(반기 1회)

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공사는 적정한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경영이양자의 약정내용 준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 보조금의 지급요건 등을 위반하거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해야 함 다만,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기간은 종료되었으나, 영농은퇴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경고 및 약정의무를 이행(6개월 이내) 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정을 해제해야함
 - 약정의 상대방(농업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 경영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임대 또는 임대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경영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경영이양한 농지에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이나 그 밖에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 등의 영농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해지 또는 해제여부 판정

- 경영이양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유권이 변동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제 사유로 보되, 고의성 등 귀책사유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 약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경영이양보조금에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 환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퍼센트의 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수

※ 제재부가금의 부과

- 관 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
 - 보조금 반환이 발생한 경우 반환하여야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의 기준 등)

[별표 3의2]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 반 행 위	제 재 부 가 금 부과율
다. 법 제33조의2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 농어촌공사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약정을 해지·해제하지 아니하고 약정의 승계 또는 변경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농업인이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논·밭·과수원을 매도하여 경영이양하고자 농어촌공사의 동의를 받아 임대 또는 임대위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논·밭·과수원이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
 - 농업인이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논·밭·과수원이 경지정리, 공공용지 편입 등으로 면적이 변동되는 경우
 -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논·밭·과수원을 매도하거나 약정기간 이상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경우

5. 자금배정 및 보조금 지급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공사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세출예산 배정계획’의 범위 내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

한국농어촌공사

- 농어촌공사는 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매월 15일에 경영이양자에게 보조금을 지급
 - * 농업인 등은 e나라도움에 직접 가입하여 집행되지 아니하며, 농어촌공사가 경영이양보조금 수령자 정보를 직접입력(엑셀서식 등)하는 것으로 수행
- 농어촌공사는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현황 등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보조금 수령자 정보공개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어촌공사
 - 정보공개 내용 : 성명, 농지지번, 지급면적, 수령금액
 - 공개 기간 및 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어촌공사의 홈페이지에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15일 이상
 -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목적과 개인정보 등을 제공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농어촌공사에 서면으로 신청
 - 이의신청을 받은 농어촌공사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보

Ⅲ / 평가 및 환류

1. 성과 측정

- 농어촌공사는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의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분석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2020년 1월말까지 제출
- 농어촌공사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2019년 1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2. 사업평가 및 환류

가. 사업평가

- 농어촌공사는 2019년 사업평가결과를 2020년 2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나. 환 류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평가결과를 중장기 사업목표 점검 및 중기재정 운영계획 수립과 익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Ⅳ /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수요는 전산자료상의 65세~74세 농업인의 소유농지 현황 및 최근년도 경영이양실적 등을 감안하여 수요 추정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자의 연령이 2019년에 65세 이상 74세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2018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안내

[별지 제1호서식]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	-----

신청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구분	농지 소재지			지번	공부상 지목	면적 (㎡)	농업 진흥 지역	소유자	경작 구분	경영 이양 방법	비고
	시·군	읍·면	리·동								
지급신청 농지											
	지급신청 농지 면적 계										
잔여소유 농지											
	잔여소유 농지 면적 계										
임차경영 농지											
	임차경영 농지 면적 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인 첨부서류	1. 농지원부 등본 1부 2. 매매계약서 사본 1부(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직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2.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경영정보시스템
제출기관	거주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근거 법조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9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및 제12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등)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경영이양보조금 담당 직원이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제2호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업농등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업 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발농업보조금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농업진흥지역” 란은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 로 표시합니다.
- “소유자” 란에는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 성명을 적습니다.
- “경작구분” 란에는 자경·임대·임차·위탁·사용대·사용차 또는 휴경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경영이양 방법” 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가. 소유농자인 경우
 - 공사매도, 개인매도, 공사임대, 공사임대위탁
 - 나. 임차농자인 경우
 - 경작권중료, 경작권 이양, 경작권포기

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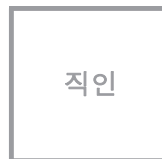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지급대상 농 지	농지 소재 지	지번	지 목		면적 (㎡)	농업진 흥지역 여부	경영이양 방법
			공 부	실 제			
지급약정 체 결	약정체결 기한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장 소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준비할 사항		신분증, 도장, 예금통장 사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서(표준안)

(신규, 재 약정)

1. 농지의 표시 및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액 등

- 지급대상 농지 : <별첨>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조서 및 청구서' 참조
 - 보조금 지급액
 - 총지급액 : 금 원(₩)
 - 월지급액 : 금 원(₩)
 - 보조금 지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총 년[월])
 - 영농 은퇴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총 년[월])
- * 영농은퇴 기간은 약정자가 80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로 한다.

위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를 “갑”이라 하고 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2. 약 정 내 용

제1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 “갑”은 위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경영이양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이 약정체결 후 “을”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이 약정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보조금 지급기간 동안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다만, 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③ 보조금은 “을”이 지정한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2조(경작허용농지 경작 및 추가 이양) ① “을”은 이 약정 체결 시 「별첨」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조서 및 보조금 청구서'에 따라 “갑”이 계속 경작을 허용한 소유농지 중 3천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약정체결 당시 개인 간 임대 농지,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포함) 및 개별법에 따른 개발 예정지역 내의 농지 이외에는 영농은퇴 기간 동안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다.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을”과 지급약정 체결 시 계속 경작을 허용한 농지 중 3천 제곱미터 이하(약정체결 당시 개인 간 임대 농지, 농지원부 미등재 농

지 포함)의 농지에 한하여 “을”이 추가로 경영이양을 신청할 경우 보조금 지급 연령에 따른 잔여 지급기간 동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다만, 이 약정 체결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을”은 이 약정 체결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제5조제3호에 따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약정의 해지·해제)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이 이 약정을 해지·해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약정해지 예정일 20일전까지 통지하고 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2. “을”이 보조금 지급 약정체결 시 경작이 허용된 농지(임차 또는 사용차한 농지를 포함) 이외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3. “을”이 경영이양 한 논·밭·과수원의 임대차(임대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이 해지된 경우
4. “을”이 임대 또는 임대위탁 한 논·밭·과수원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5. “을”이 보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6. “을”이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경영이양 한 논·밭·과수원에 공작물 설치, 기타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등의 영농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아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아니하고 약정의 승계 또는 변경조치 할 수 있다.

1. “을”이 임대 또는 임대위탁 한 논·밭·과수원을 매도로 경영이양하기 위하여 공사의 동의를 받아 임대 또는 임대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을”이 임대 또는 임대위탁 한 논·밭·과수원이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3. “을”이 보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배우자가 이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이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상속이전 등기를 완료한 이후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며, 상속 완료시 까지 보조금 지급을 일시 중지함. 또한 임대이양 약정 농지가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상속된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4. 임대이양 약정농지의 일부가 천재지변, 공익사업에 편입·전용, 농지 일부 소유권 변경 등으로 감소되었으나 나머지 농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감소 면적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감액 지급함)

5.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논·밭·과수원을 매도하거나 약정기간 이상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경우

③ “을”이 제1항에 따라 약정의 해제 또는 해지 통보에 대하여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갑”은 확인(자체심)한 후 정당하면 지급약정의 해제·해지 통보를 취소하고 미지급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약정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이 정한 기한 내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약정을 해제하고 “을”은 이미 수령한 보조금 총액과 매월 수령한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의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향후 5년, 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향후 3년간, 경영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임대·임대위탁 계약이 농업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 향후 3년간 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2. 제3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을 때에는 “갑”은 약정을 해제하고 이미 수령한 보조금 총액과 매월 수령한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의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3. “을”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보조금 지급을 중지한다. 이 경우 약정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날(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지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해지일까지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한다.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통지의무) “을”은 제1조에 따른 보조금을 수령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의 변경

2. 제1조제3항에 따른 본인의 보조금 지급 예금계좌번호의 변동
3. 제2조제3항에 따른 약정 체결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
4.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따른 약정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제6조(통지의 효력) ① “갑”은 “을”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송달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이 제5조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갑”이 제1항에 따라서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을”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의 송달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갑”이 “을”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경우에는 발송한 것으로 본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체결 당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관할법원) 이 약정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과 당해 계약목적물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법원 또는 “갑”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9조(정보의 제공 및 이용) 본 약정내용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임대기간에 대한 특약) 임대(임대위탁)기간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6조 [별표]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 이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임대기간 20 년 월 일이 종료되기 전에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기한(20 년 월 일) 이후까지로 임대(임대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임대위탁)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한다.

제11조(지급약정 중도해지사 등의 사후조치) “을”은 “갑”과 체결한 지급약정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중도에 지급약정을 해지하였을 경우에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향후 보조금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12조(출생연월일 정정) ①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며, 보조금 지급기간 종료시점을 재 산정하여 약정을 변경한다

“을”은 본 약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별 첨 :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 조서 및 보조금 청구서

년 월 일

“갑” 한국농어촌공사

지 사 장 (인)

“을”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별 첨>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조서 및 보조금 청구서

1. 지급대상자

경영이양자 (배우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①	년 월 일 ()	①	년 월 일 ()
	주 소			

2. 경영이양농지 및 보조금 약정내역

농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지급단가 (원/㎡)	보조금약정액 (원)		지급기간 임대기간 년 월-년 월(년) 년 월-년 월(년)	이양방법 (매매, 임대, 임대위탁)
					월액	총액		
계								

3. 경작 허용 농지 현황

유형별	농지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	경작여부		경작자	비 고 (임대기간)
					자경	임대		
1-1	계속경작농지							
1-2	개인간 임대							
1-3	농지원부 미등재							
2.	개발예정지역							
3	공사임대							
4	신규 취득후 임대							
계		필지						
※계속 경작허용 규모 (3,000㎡)		㎡(논 , 밭 , 과수원)						

* 허용 유형 : 1. 경작허용규모 (1-1. 계속경작 농지, 1-2. 개인간 임대농지, 1-3.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2. 개발예정 지역내 농지, 3. 공사 임대농지, 4. 신규취득 후 임대농지

* 경작허용규모는 3천㎡ 이하의 농지임(계속 경작농지, 개인간 임대농지, 농지원부 미등재농지)

4. 보조금 지급 청구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은행 :)

세부사업명	농기계임대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농기계임대사업소,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지원,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지원, 노후농기계대체	예산 (백만원)	42,000
사업목적	○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를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사업소 신규설치 또는 증설 시군구 임대사업소 설치 개소당 10억원 내외(국고 50%, 지방비 50%) ○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지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시군구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구입비 100백만원 내외(국고 50%, 지방비 50%) ○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지원) 주요 발작물의 규모화집단화된 지자체 또는 논 타작물 전환사업 추진 지자체에 임대농기계 구입비 지원 2억원(국고 50%, 지방비 50%) ○ (노후농기계대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시군구 임대사업소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교체비용 지원 2억원 내외(국고50%, 지방비 50%)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당 800~1,600백만원(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비 차등지원) ○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당 70~140백만원(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비 차등지원) ○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당 200백만원(사업비) ○ (노후농기계대체)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당 150~300백만원(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비 차등지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52,000	54,000	58,000	84,000			
	국 고		26,000	27,000	29,000	42,000			
	지방비		26,000	27,000	29,000	42,000			
	농기계임대사업 소 설치 지원	소계	52,000	42,000	32,000	24,000			
		국고	21,000	21,000	16,000	12,000			
		지방비	21,000	21,000	16,000	12,000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소계	6,000	6,000	6,000	6,000			
		국고	3,000	3,000	3,000	3,000			
		지방비	3,000	3,000	3,000	3,000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	소계	4,000	4,000	10,000	44,000			
		국고	2,000	2,000	5,000	22,000			
		지방비	2,000	2,000	5,000	22,000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소계	-	2,000	10,000	10,000				
	국고	-	1,000	5,000	5,000				
	지방비	-	1,000	5,000	5,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김수일 사무관 최승묵		044-201-1891 044-201-1840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친환경농업과 등 (직제에 따름)		사무분장 규정에 따름		-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0~11월)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①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지원

1. 사업대상자

-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요건

-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적기에 집행할 수 있어야 함
-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기계임대사업 전담 기술인력 또는 조직(농기계팀 등)을 확보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 임대, 임대료 수수 및 관리, 사후관리, 홍보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 관리

3. 임대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농업인
- 운 용
 -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3일 이상 임대 가능
 - * 주요곡물산업육성 지원사업,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과 연계 추진할 경우 3일 이상 임대 할 수 있음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에게도 임대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등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음
 - 미세먼지 종합대책(국무조정실 주관) 추진을 위해, 농업인이 잔가지 파쇄기 임대를 요구할 경우 우선 구입하여 임대하여야 함.
 - 국내 우수품종의 채종기반 유지를 위해,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채종용 농기계를 구입 임대할 수 있음.

4. 지원자금의 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 발농사용 농기계 및 발농사용 부속작업기와 부속작업기에 필요한 트랙터(80마력 이하)를 구입
 - 발농업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를 20%이상 구입하여야 함
 - *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우선 구입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및 관리시설(세차장, 임대농기계 관리 전산시스템)구축
 - 보관창고는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하되, 필요시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음. 단, 농기계 보관창고를 기 확보한 경우에는 추가 설치 불필요
 - 임대농기계 관리 전산시스템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보급하는 “농기계임대사업 입출고 관리 및 임대료 산정 프로그램”을 활용
-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 등 운영비(연간 30백만원 이내에서 집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비와 지방비를 활용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5.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24개소(차등지원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단가 : 800~1,600백만원/개소
 - * 매년 실시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비 : 24,000백만원(국고 12,000백만원, 지방비 12,000백만원)
- 사업대상 선정 우선순위 : ① 신규 ② 분점
 -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
 - * 신규 : 시·군·구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처음 설치하는 경우
 - * 분점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였으나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추가로 설치**
 - * 증설은 '19년부터 지원불가

②

여성친화형 농기계

1. 사업대상자

-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3. 임대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여성농업인을 우대
- 운 용
 -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함.

4. 지원자금의 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 여성친화형 농기계
 - * 여성친화형 농기계(부착식 포함) : 관리기(부속작업기 포함), 파종·정식기, 동력 운반차, 동력제초기, 수확기(예취, 굴취, 탈곡, 선별기 포함), 휴대용자동전동가위 등 편이장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농기계
 - * 파종·정식기와 수확기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우선 구입하여야 함.

5.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60개소(차등지원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단가 : 70~140백만원/개소
 - * 매년 실시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비 : 6,000백만원(국고 3,000백만원, 지방비 3,000백만원)

③ 주산지 일관기계화

1. 사업대상자

- 주요 발작물의 규모화·집단화된 지자체 또는 논 타작물 전환사업 추진 지자체
 - * 주요작물(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콩, 인삼, 참깨)을 우선 지원하나, 그 외의 작물도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의 작물 재배면적일 것

3. 임대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선회 등 발작물 공동경영체 조직과 논 타작물 전환사업단지 운영조직 등
- 운 용
 - 장기임대(임대농기계 내구연수 또는 그 이상 기간)를 원칙으로 하며, 임대한 농기계는 임차자가 보관 및 수리정비 등 유지관리를 하도록 함.
 - 임차자는 공동경영체 구성원의 농작업 뿐 만 아니라 주변 농가의 농작업을 일정면적(“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 농작업료는 해당지역의 임작업료 보다는 최소한 10%이상 저렴하게 수수하도록 함
 - 지자체는 연 1회 이상 임대농기계의 운영·관리실태 및 의무 농작업 면적 점검
 - 임대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주산지에 상주하면서, 공급한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한 표준재배양식과 농기계 사용방법 등을 상시 지도·교육하고 즉각적인 A/S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만약 공급한 농기계가 고장 등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차년도 임대농기계 공급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작물	작업명	농기계	연 작업면적/1대 (ha)
콩1	파종	트)파종기	30
	예취	콩예취기	10
	탈곡	콩탈곡기	17
콩2	파종	트)파종기	30
	예취+탈곡	콩콤바인	38
고구마	정식	동력정식기	8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23
감자	파종	동력파종기	11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13
무	파종	트)파종기	31
배추	정식	동력정식기	6
고추	정식	동력정식기	6
마늘	파종	트)파종기	10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22
양파	정식	동력정식기	10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22
참깨	수확	참깨예취기	12
인삼	정식	정식기	2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19

* 국립농업과학원 발작물 연 작업면적 산출 결과에 따른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산정

4. 지원자금의 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 작물별 일관 기계화(경운·정지에서 수확까지)에 투입되는 농업기계를 구입 하되 파종·정식 및 수확 작업기는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 단,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 구입은 한 기종을 구입하는 데 사업비의 50%를 넘지 못함.(예 : 콩 수확기 구입비는 95,000천원 이하이며, 나머지 95,000천원은 반드시 정식기나 파종기 등을 구입하여야 함)

· 정식기 1대의 작업면적이 8ha이고, 수확기의 작업면적이 25ha이면 정식기 2~3대와 수확기 1대로 구성 가능하며, 운전자는 반드시 2~3명을 확보해야함

*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우선 구입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사업량 : 220개소
- 사업단가 : 200백만원/개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비 : 44,000백만원 (국고 22,000백만원, 지방비 22,000백만원)

④	노후농기계 대체
---	----------

1. 사업대상자

-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 농기계임대사업 평가결과 우수임대사업소(지자체)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를 대체하는 신형농업기계 구입
 - 밭농사용 농기계와 밭농사용 부속작업기에 한정하여 구입하여야 하며, 부속작업기에 필요한 트랙터(80마력 이하)와 보통형 콤바인은 구입 가능

4.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사업량 : 50개소(차등지원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단가 : 300백만원~150백만원/개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비 : 10,000백만원 (국고 5,000백만원, 지방비 5,000백만원)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시·도

- 사업시행지침을 시·군·구에 시달(전년도 12월)
- 시·군·구에서 제출한 ‘농기계임대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임대농업 기계 수요조사 결과[별지 제2호 서식]’에 대해 현지확인 등 사업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신청(전년도 12월)

시·군·구

- 시·군·구는 사업계획의 적합여부 심사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지역 영농현황 및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며,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 사업계획 수립시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2016년 개정)’를 활용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

- 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
 - * 단,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를 포함하여 여성 2인 이상 포함
- 심의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의함.
 - * 단 구입할 임대농기계 선정, 수의계약으로 임대농기계를 구입시 업체선정, 지자체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시 장기적인 임대농기계 확보 계획을 감안하여 규모를 결정하고, 다단계재 방안 등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의 세척·정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 세차장 설치를 우선 고려

○ 임대농기계 구입 기종 선정

- 임대농업기계 구입기종 선정은 별지 제2호 서식(임대농기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 농업인의 수요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구입

*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는 임대사업소 이용농가, 각종 농업관련 교육참석 농업인, 설문조사, 홈페이지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의견 수렴

*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에 공급되는 파종·정식기 및 수확기는 수요조사를 제외 하되, 연·전시 등을 통해 공동경영체에서 요구하는 농기계를 구입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임대농기계 수요 조사서 첨부 여부, 사업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함(당년도 1월)

- 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하고 임대농기계 수요조사서를 미첨부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지원 제외

○ 사업 선정기준 및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결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해당지역의 경지면적 및 농가수, 전담인력 및 조직 확보여부, 농기계임대사업 부지확보 여부, 임대 농기계의 수요조사 반영여부, 홍보계획의 적정성 등

< 적정 운영인력 확보 기준 >

보유농기계	100대 미만	~200	~300	~400	~500	500대 이상
정규직	1	2	3	4	5	6
계약직	1	3	5	6	7	8
계	2	5	8	10	12	14

* 단, 본소가 있는 경우 계약직은 임대사업소(본소+분소) 개소수 × 2명이 되어야 함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하여 통보한 사업대상자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함(당년도 1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시·군·구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수시)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에서 변경 승인한 사업계획이 지침에 위배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음

시·군·구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1월 이후)
 -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대상자 확정·통보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후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1월 이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지자체의 별도 예산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임대농기계 추가 구입, 보관장고 확대 설치 등)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수시)
- 임대농기계를 영농적기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조기에 제정하고, 임대농기계 구입 및 이용에 따른 A/S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를 임대시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를 장기임대 할 경우에는 ‘농업기계 장기임대차 계약서(안)[별지 제3호 서식]’을 참조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 장기임대 임대차계약서에는 농기계 임대기간, 임대농기계 관리방안, 연 임대료, 농작업 대행 의무면적, 농작업료 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적시

-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기임대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가목을 적용하여 징수하여야 함. 만약 가목 이하로 임대료를 징수 할 경우에는 노후농기계 교체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사업단가 등 지원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 * 지자체에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감소화 등에 대비하여 고령농, 여성농 등을 대상으로 **농작업대행**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징수한 임대료를 활용하여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인건비(농작업 인력을 직접 채용) 또는 농작업대행기관(지역농협, 영농회사법인 등 민간조직)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우선 집행하여야 함.(권고)
 - 장기임대의 연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나목 또는 '장기 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안)[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징수하여야 함.
- 장기임대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장기임대 농업기계 운영 현황 및 농작업 추진실적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주요내용(임대대상 농기계, 임대료, 임대신청 방법 등)을 수록한 리후렛을 제작·배포하는 등 농업인에 대해 사업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 사업소의 명칭은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로 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도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

시·도

- 시·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농림축산식품부가 교부결정한 국고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
 - 사업대상 시·군·구에 보조금 교부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시·군·구

-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구입 및 사후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자금수요를 파악하고 시·도에 제출함
-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시행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업시행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농기계 구입절차 적정여부 등을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도하며, 특히 사업비의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서식 별도 통보]

자금관리주체(시·군·구)

- 임대농기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고장률 감축을 위해 반드시 안전사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기계 교육·훈련시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 강화
-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제·개정시 1부를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관리대장,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함
 - 다만, 농기계임대사업 관리프로그램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의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을 비치할 필요는 없음
- 임대농기계를 책임 관리하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임대농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임대농기계

이 농기계는 정부가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한 농기계입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금속재질(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하여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 고
임대 농기계 및 보관 창고	○기종별 내구연수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농업기계 내용연수 기준을 준용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10 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 불가 및 타 용도로 임의 사용 금지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 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기계는 계속 사용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 하지 않아도 수리비 과다 및 파손·망실되었을 경우 폐기처분 가능

* 농기계보관창고의 화재발생 예방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임대농기계의 처분

- 임대농기계의 특성상 평균적으로 일반농기계에 비해 내구연한이 짧으므로, 수리비 과다소요 및 파손 등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처리하고,
- 재배양식, 재배작물 변경에 따라 더 이상 농업인의 임대수요가 없는 농기계는 반드시 불용처리하여 임대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대농기계를 관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물품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임대농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보고서에 보조금의 이월 및 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시·군·구) 및 관련업체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군·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제외)
- 임대농기계 구입과정에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한 시·군·구는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

6. 성과측정단계

- '04년 이후 농기계임대사업(자체사업 포함)을 추진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당해연도 사업추진실적보고서[서식 별도 통보]를 익년 1.20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추진실적보고서를 분석하여 사업 성과를 측정함

Ⅲ

평가 및 환류

- (평가) 사업 평가회를 개최하여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 및 추가 지원시 우선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환류) 사업 설명회 및 평가회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19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함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내용 : 2019년과 동일
- 신청절차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세부계획서 불필요)
- 신청기한 : 2019. 2. 28까지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0년도 사업신청서와 세부계획서(양식 전년 동일)를 '19. 8월말까지 제출
- 기타사항은 '19년도와 동일함

임대농업기계 수요조사 결과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 .00.00~00.00(0일간)
- 조사대상 : 농업인 000명* (관내 농업인 0,000명)
- *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응답농업인)
- 조사방법 : 임대사업소 이용농가 설문조사, 00행사 참여농업인, 새해농업인 교육 참석자 등 대상 설문조사

□ 수요조사 결과

순위	기종명	구입 희망 농업인 (명)	비율 (%)	구입 계획 (대)	임대농기계 이용현황			비고(사유)
					보유 대수 (대)	이용 농가수 (명)	연간 임대일수 (일)	
1	땅속작물수확기(감자)	65		3	5	80	120	농가수요 증가로 추가구입 필요
2	농업용 굴삭기	57		2	-	-	-	
3	관리기	53		-	12	50	80	현보유 임대농기계로 수요 충족
4	승용동력제초기	45		3	2	45	60	
소계		000						

- * 농업인이 다수의 농기계에 대해 응답 할 수 있으므로 구입희망 농업인은 응답 농업인보다 많을 수 있음
- * '연간임대일수'는 해당 기종의 직전년도 연간임대일수
- * 수요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여성친화형농기계, 노후농기계대체 사업별 수요조사 결과서 작성

농업기계 장기임대차 계약서(안)

○○농업기술센터(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농업기계 장기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제4조에 명시된 임대 농업기계의 원활한 임대차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임대"라 함은 임대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동안 임차인이 관리 책임(보관, 고장수리 등)을 지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연수"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총임대료율"이라 함은 [임차인이 내용연수 동안 납부하는 임대료 합] ÷ [기계구입가격] 을 말한다.
4. "농작업대행" 이라 함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농업기계로 타인이 요청한 농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년 ○○월 ○○일(인도일)부터 ○○○○년 ○○월 ○○일(내용연수 기간)까지로 정한다.

제4조(임대 농업기계) ① 임대 대상 농업기계는 아래와 같다.

기종명	관리번호	제조회사	규격	부속물	구입가격	내용연수

② 임대 농업기계는 ○○○○년 ○○월 ○○일 ○○○○(장소)에서 인도하며, 임차인은 인수 시 제1항의 내용과 실물이 일치하는지, 하자는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 ① 임대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 원)

기종명	관리번호	연차별 임대료										
		1	2	3	4	5	6	7	8	9	10	계

②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임대료 징수방법이 정해지면 그 내용을 여기에 직접 기입해도 됨) 임대료를 매년 1회(또는 2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까지로 한다.

③ 임차인이 제②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①항에 의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연 15%)을 적용한 연체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 농업기계 이용) ① 임차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임작업 포함)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농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요구가 있으면 농작업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 대행을 한 경우 임작업료를 받을 수 있으나 임작업료는 민간 수준보다 비싸서는 안된다.

④ 임대인은 임차인이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7조(임대 농업기계 관리)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임차 농기계에 대한 보관 및 수리 등 모든 관리책임을 진다. 임차농기계를 분실, 파손, 또는 임의처분하여 정상적인 농작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최초 취득한 구입금액에서 기납부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농작업대행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소요

경비(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임대 농업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농기계종합보험을 임대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④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8조(임대 농업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한 농업기계 및 부속물을 즉시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원할 경우 해당 임대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대신 잔존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제9조(해지) ①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내용을 현저히 위반한 때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 임차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의 건강 또는 일신상의 이유가 있거나 영농 중단 시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③ 본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임차인은 해지 연차의 임대료와 임대 농업기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리비 등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사유는 제10조에 의해 계약이 승계될 때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며, 위약금은 잔여 임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료의 70%로 한다.

제10조(계약의 승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있으면 본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할 수 있다. 승계 이후 계약의 조건이나 임대료 납부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승계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책임진다.

제11조(조문해석)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있게 계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임대인 주소 :

○○시장(군수) ○ ○ ○ (인)

임차인 주소 :

전화번호 :

소속 : ○○작목반, △△농업법인 등

성명 : ○ ○ ○ (인)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안)

구입가 (천원)	내용연수별 연간 임대료(천원/년)						
	4	5	6	7	8	9	10
1,000	88	70	58	50	44	39	35
2,000	175	140	117	100	88	78	70
3,000	263	210	175	150	131	117	105
4,000	350	280	233	200	175	156	140
5,000	438	350	292	250	219	194	175
6,000	525	420	350	300	263	233	210
7,000	613	490	408	350	306	272	245
8,000	700	560	467	400	350	311	280
9,000	788	630	525	450	394	350	315

<임대농기계의 연간 임대료 산정방식>

- 구입한 임대 농업기계의 **내용연수**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여 표에서 제시한 연간 임대료를 계약서에 표기하면 됨**
 - 예를 들어, 구입가 9,000천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인 농기계는 매년 630천원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계약하면 됨.
 - 5년동안 총 3,150천원(630천원×5년=3,150)을 징수(구입가의 35%)하게 됨.

- 만약, 구입가가 90,000천원이라면 위 표의 구입가 9,000천원인 농기계의 연간 임대료에×10을 하면 됨
 - 예를 들어 구입가가 90,000천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인 농기계는 매년

6,300천원의 임대료를 받으면 됨

* 구입가가 90,000천원인 농기계는 위표의 9,000천원의 10배이므로 연 임대료는 630천원 \times 10=6,300천원이 되는 것임

○ 구입가격이 1,500천원인 경우 1,000천원일 때의 임대료와 2,000천원일 때의 임대료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계산

- 내용연수가 6년인 농기계의 경우, 1,000천원인 농기계의 연 임대료는 58천원이고, 2,000천원인 농기계의 연 임대료는 117천원이므로 1,500천원인 농기계의 연 임대료는 87,500원 $[(58,000\text{원}+117,000\text{원})/2=87,500\text{원}]$ 임

* 중간 가격은 비례법칙으로 계산하면 됨

장기임대 농업기계 운영 현황 및 농작업 추진실적

운영현황

기종명	관리실태	농작업면적	점검결과
예) 콩 파종기	양호/불량	농작업 면적을 합산하여 기재(농작업 추진실적을 합산)	시·군이 관리실태, 농작업면적 등에 대해 점검 후 기록

※ 장기임대 농기계명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농기계별 관리실태와 농작업면적을 기록

농작업 추진실적(농작업 일지)

기종명	농작업일자	작업면적	비고
예) 콩 파종기	2019.4.10.	1,000평(3300m ²)	농작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임작업료 입금 통장 사본 등) 첨부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	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
------	---------------------------------

구입금액(천원)	합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구입일자	년 월 일	폐기일자	년 월 일
형 식 명		규 격	
부착동력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 경운기, 관리기 등	제조번호	
성 능			
주요특징			
제조회사 · 구입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임대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세부사업명	밭농업직불제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밭농업직불금			예산 (백만원)	207,790			
사업목적	○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사업 주요내용	○ (밭고정) '12~'14년 기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 지급 ○ (논이모작)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98년 이후 조성된 논에서 동계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게 직불금 지급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밭고정) 지목과 상관없이 '12~'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상 농지 * (논이모작) 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98년 이후 조성된 것으로 고정직불금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 중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법상 농지							
지원한도	○ (밭고정) 지급단가: 55만원/ha * 상한면적: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 ○ (논이모작) 지급단가: 50만원/ha * 상한면적: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별경영체 400ha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200,221	179,038	193,103	207,790			
	국 고	200,221	179,038	193,103	207,79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김영민 김지순		044-201-1778 044-201-1779		
신청시기	2~4월(논이모작은 2~3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김원일 사무관 김영민 주무관 김지순 지자채 업무담당자 및 민원상담	044-201-1771 044-201-1778 044-201-1779 044-201-1781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직불제 시스템 상담)	스마트농정실 (Agrix)	시스템 상담지원 콜센터	1588-6830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2. 근거법령

- 받고정직접지불금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밭농업직접지불금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3. 재원구성 : 국고 100%

4.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190,646	193,738	207,790	계속
국 고	190,646	193,738	207,790	계속

1.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발농업직접지불금(이하 “발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발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자격요건은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이행점검 완료일(9.15.)까지 유지되어야 함

가. 지급대상 농지

① 발농업고정직접지불금(이하 “발고정직불금”)

-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농업에 이용된 「농지법」 상 농지
 - 단, '11년 12월 31일 이전 1년 이상 발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 기간에 발농업이 중단된 경우는 지급대상농지에 포함
- 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② 발농업직접지불보조금(이하 “논이모작직불금”)

- 지목과 상관없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법 상 농지로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발농업에 이용되는 논
 -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7조의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
-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농지법 상 농지(농지법 제2조)>

“농지”란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제외

<지급대상 제외 농지>

(「농업소득보전법」 제5조 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3 제2항)

①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단,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이상 발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인정

②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를 의제 되는 경우 포함)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단,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지구·지역의 농지 중 보상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발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 중 일부를 받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등록신청 연도에 발농업에 이용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가능

④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하여 등록제한기간(밭고정 5년, 논이모작 3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

* 제3자에게 임대한 농지, 등록제한 처분 이후 새로 구입한 농지 등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모든 농지를 의미

⑤ 중복지급이 불가능한 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구분	밭고정	논이모작	쌀직불	조건불리	경관보전	친환경
밭고정	/ / / / / / / /	×	×	×	○	○
논이모작	×	/ / / / / / / /	○	×	×	○

* 중복지급 가능(○), 중복지급 불가(×)

나. 지급대상자

① 받고정직불금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받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발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기본법”) 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①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 * 선정된 후 탈락된 자,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제외
-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 * 선정된 후 탈락된 자,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제외
- ③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다음을 충족하는 자
 - (농업인) 받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휴경 제외)에서 발농업에 종사하거나 발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 받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5만㎡ 이상(휴경 제외)에서 발농업에 종사하거나 발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② 논이모작직불금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논이모작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발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 단, 「기본법」 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③ 승계자

- 발농업직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 고령, 질병, 부상 등 발농업 종사가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해당 농지에서 계속 발농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
 - *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산입
 - ** 농업경영체등록 등으로 농업인 확인이 가능한 자
- 단,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기본법상 농촌에 주소를 두거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농업소득보전법」 시행령 제5조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9조)

「기본법」 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다음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 ① 같은 시·군·구(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같은 시·군·구(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5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 ③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 이상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해당 시·구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구를 말함

* 연접한 면·동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행정동(다만, 농업인에게 유리한 경우 법정면·법정동 적용)

<농촌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① 읍·면의 지역

②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 지역

③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

<지급대상 제외자>

(「농업소득보전법」 제6조 제3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4 제2항)

①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

** 단, 농업인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농업법인은 적용 예외

② 발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휴경면적은 면적 산정시 제외)

③ 지급대상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

* 등록제한기간 : 밭고정직불금 5년 이내, 논이모작직불금 3년 이내

④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농지에 한 함)

⑤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농지에 한 함)

<공동소유·경작 농지에 대한 처리>

○ (공동소유)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는 농지를 신청 하는 경우

- 공동소유자 중 한명이 다른 사람 지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 받아야 함

- 공동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농지를 임차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해당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 받아야 함

* 일부 공동소유자에게서 무단점유 증명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소유자 지분만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공동경작)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농지를 신청 하는 경우

- 신청자별로 경계를 명확히 설치하고,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발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일부위탁 포함)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신청 가능

<용어의 개념>

① 발농업의 범위

※ 「농업소득보전법」 제2조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조

- (밭고정) 지목과 상관없이 밭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보리, 밀, 콩, 그 밖에 농업인들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 **다만,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은 제외.**

- (논이모작) 논에서 보리, 밀, 콩 등 지급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

② 종사 및 일부위탁의 범위

- (종사)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일부위탁 포함)

- (일부위탁)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의미

다. 지급대상 품목

① 밭고정작물

- 모든 밭작물(휴경 및 시설면적 포함)
 - * 다만, 논벼, 연근, 미나리, 왕골은 제외

② 논이모작작물

- 식량 및 사료작물(휴경 및 시설면적 제외)
 - * 시설: 온실, 비가림시설 등과 같이 유리, 비닐 등으로 피복하고 사람이 들어가 농작업이 가능토록 설치한 것. 터널시설과 같이 사람이 들어가 작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미포함

<논이모작작물 지급대상 품목>

- ①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울무, 감자, 고구마
- ② 청보리,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등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사용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사료작물 및 목초류에 해당하는 품목
 - 사료작물 : 옥수수, 수단그라스, 호맥, 귀리, 사료용 유채, 이탈리아라이그라스 등
 - 목초류 : 알팔파,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Birds foot trefoil(버즈풋트레포일), 오차드그라스, Tall fescue(톨페스큐), 티모시, Perennial rye grass(페레니얼라이그라스), 켄터키블루그라스, Redtop(레드톱), Reed canarygrass(리이드 케너리그라스), Meadow fescue(메도우페스큐), Bromgrass(브롬그라스) 등

<논이모작작물 대상품목 재배양식별 지급대상 면적산정>

- ① 한 필지 내에 2개 이상의 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의 합을 측정하여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
- ② 한 필지 내에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을 섞어지을 경우(혼작, 간작, 색동재배, 디자인재배 등)
 - 대상품목 재배면적만을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하며, 비대상품목 재배면적은 제외
 - * (예시) 필지면적 1,000㎡, 색동재배 시 대상품목 재배비율이 80%일 경우 지급대상면적은 $1,000\text{㎡} \times 80\% = 800\text{㎡}$
 - * 다만, 필지 내 전체 재배면적 대비 대상품목 재배면적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며, 50% 미만일 경우 전체 필지 면적을 지급대상에서 제외
- ③ 한 필지 내에 일부는 대상품목을 식재하고, 일부는 휴경할 경우
 - 대상품목 재배면적만을 지급대상 면적으로 산정하며, 휴경면적은 제외

라. 지급요건

① 밭고정직불금

-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면서 지급대상 품목을 재배할 경우 지급
 - 단,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미충족시에는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② 논이모작직불금

-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면서 지급대상 품목을 재배할 경우에 지급
 - 단, 수확까지 이루어져야하며, 녹비용으로 재배시 지급대상에서 제외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요건*>

-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② 이웃 농지와 구분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③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3.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① 밭고정직불금

- 지급단가 : 1ha 당 평균 55만원 (m²당 55원)
 - (농업진흥지역 안) 702,938원/ha, (밖) 527,204원/ha
-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m²) × 지급대상 농지면적(m²)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원형태(재원) : 국고보조 100%(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② 논이모작직불금

- 지급단가 : 1ha 당 50만원 (m²당 50원)
-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m²) × 지급대상 농지면적(m²)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지원형태(재원) : 국고보조 100%(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① 밭고정직불금

- 농업인 : 4ha (40,000m²)
- 농업법인 : 10ha (100,000m²)

② 논이모작직불금

- 농업인 : 30ha (300,000m²),
- 농업법인 : 50ha (500,000m²)
-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 400ha (4,000,000m²)

<상한면적 초과 신청>

- 지급상한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농지를 모두 접수하되, 직불금은 지급상한면적까지만 지급

<용어의 개념>

① 법인

- 종사의 범위를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일부위탁 포함)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법인의 조합원이 해당 필지의 경작권 등을 보유하고 농산물이 조합원에게 최종 귀속된다면, 해당 법인은 해당 필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직불금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에 미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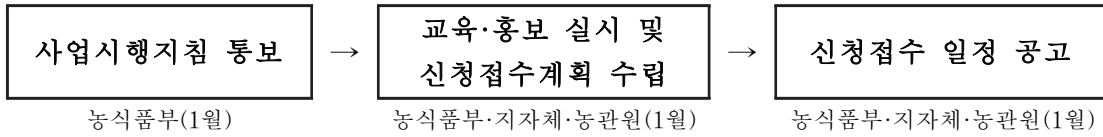
②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 25명 이상의 농업인으로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공동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등 「**논농업의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상한면적 확대 규정을 적용받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공동영농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업무흐름]	[시 기] * ()는이모작	[주 요 내 용]
① 신청·접수 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 교육·홍보 및 신청·접수계획 수립·실시(시군구, 농관원)
② 신청·접수	2월~4월 (2월~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신청(농업인등) 및 접수(읍면동, 농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 및 직불금 통합신청 추진 - 등록신청서 접수증 발급 ▶ 신청서 전산입력(읍면동)
③ 신청자 정보공개	5월~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지번, 면적, 품목 등 신청정보 공개 (농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④ 지급대상자 선정 및 등록증 발급	5월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시군구) ▶ 서류 및 현지조사(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농지 적격여부,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 ▶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개최(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경작여부, 무단점유여부 등 신청자의 밭농업 종사여부 심사 ▶ 지급대상자 선정(시군구) 및 등록증 발급(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제외자에게는 해당 사유 통보
⑤ 등록사항 변경 및 이행점검	5월~9월 (3월~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읍면동→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등록자에게 지급대상농지를 양수·임차한 경우 ▶ 농지의 기능 및 형상 유지여부 이행점검(농관원) ▶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 처리(농관원)
⑥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지급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자 확정(시군구) ▶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시군구)
⑦ 사후관리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령자 정보공개(농식품부, 농관원, 시군구 홈페이지) ▶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 사후관리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신청·접수 전(前) 단계



가.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등 관련기관에 시달

나.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농관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순회교육 실시
- 시·도(시·군·구) 및 농관원은 업무담당자 및 조사원을 대상으로 자체 실무교육 실시

다.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는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등 관련기관에 시달하고, 전년도 지급대상자에게 직불금 지급내역을 발송하는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
- 시·도(시·군·구) 및 농관원은 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홍보지, 지방지, 새해영농실용화 교육, 이동장 월례회, 현수막,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한 홍보 실시

라. 신청·접수계획 수립(시도, 시군구)

- 시·군·구는 관할지역 농관원과 업무협의*를 통해 시·군·구별 신청·접수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수립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1월)
 - 농관원과 협의내용, 읍·면별 집중접수 기간 및 일정, 기관 간 협조체계 등 포함
 - * 시·군·구 주관으로 농관원과 업무협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따라 공동접수센터 설치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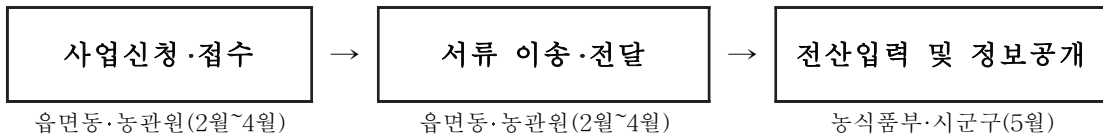
마. 등록신청 공고(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 및 지자체, 농관원은 접수일 7일 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등록신청 공고
 -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기간 및 방법 등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바. 보조원 및 조사원 채용(시군구, 농관원)

- 시·군·구는 사업신청 및 접수를 위한 전산입력 보조원 채용
- 농관원은 지원·사무소별로 이행점검을 위한 조사원 채용

2. 신청·접수 단계



가. 사업신청(농업인등)

- 밭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장소에서 등록 신청
- 신청기간: (논이모작) 2. 1. ~ 3. 8. (밭고정) 2. 1. ~ 4. 30.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
 -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 신청시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
 - (기존 수급자) 직전연도와 신청내용에 변동이 없을 경우
 - ⇒ 등록신청서만 제출
 - * 임대차계약기간, 지번변동 등 확인
 - (기존 수급자) 직전연도와 신청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 ⇒ 등록신청서, 변동된 내용에 대한 자격요건 증명서류
 - (신규신청자) 직불금 수령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 등록신청서, 지급대상자 증명, 지급대상 농지 증명, 경작사실 증명

구 분	첨부 서류	비 고
<p>① 지급대상 농지 증명</p> <p>①또는② 필요한 경우</p> <p>③</p>	<p>① '12년~'14년 동안 발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발농업에 이용된 농지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 확인자는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p> <p>② '11년 이전 1년 이상 발농업에 이용되었으나, '12년~'14년 동안 불가피하게 발농업이 중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각 1개 이상씩 ㉠ '11년 이전 1년 이상 발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대장, 농지원부, 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 '12년~'14년 동안 불가피하게 발농업이 중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 지원 확인서 등</p> <p>③ 지급대상 제외 농지이나 예외규정에 적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하천구역, 주·상·공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p>	<p>신규신청 농지만 해당 (과거에 1회 이상 발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 및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p>
<p>② 지급 대상자 증명</p> <p>①②③ 중 1개</p>	<p>①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p> <p>② 등록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발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을 경작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농업법인은 5만㎡) - ㉠, ㉡ 각 1개 이상씩 ㉠ 경작면적 증명: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 경작기간 증명: 신청자 명의의 해당 기간 중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등 * 2개 이상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농지도 면적계산에 포함되며, 휴경면적은 면적계산에 제외</p> <p>③ 등록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발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 ㉠, ㉡, ㉢ 중 1개 이상 ㉠ A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A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 도매시장,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p>	<p>신규신청 지만 해당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p>

구 분	필요 서류	비 고
<p>② - 1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증명 ①②③ 중 1개</p>	<p>①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한 농지 1만㎡ 이상을 경작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법인은 5만㎡ 이상)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1개 이상)</p> <p>② 전년도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 가, 나, 다 중 1개 이상 가 A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A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나 도매시장,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다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p> <p>③ 등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둔 시·구에 소재한 농지 1천㎡ 이상을 등록 직전 1년 이상 밭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 나, 다 각 1개 이상씩 가 주소지 증명 : 주민등록등본 등 나 경작면적 증명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다 경작기간 증명 : 신청자 명의의 해당 기간 중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등 *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연접한 읍·면·동 내 농지도 포함</p>	<p>농촌 외 지역 거주자만 해당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p>
<p>② - 2 승계 대상자 증명 ①②③④ 모두</p>	<p>① 등록자에게 발급된 등록증</p> <p>② 등록자가 사망,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진단서, 뇌사 판정서, 실종확인서, 수감확인서, 진단서 등 (1개 이상)</p> <p>③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 나, 라 또는 가, 다, 라 각 1개 이상씩 가 등록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다 등록자가 치료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이장확인서, 입원증명서 등 라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확인서를 의미</p> <p>④ 승계자의 승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승계의사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 등록자가 의식불명 등으로 확인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중 승계자 외의 자의 확인으로 갈음</p>	<p>승계자만 해당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p>

구 분	필요 서류	비 고
<p>② - 3 지급제외 대상자가 아님을 증명 ①② 모두</p>	<p>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p> <p>② 타인의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원칙) 임대차 계약서 - (허용) 농지주가 해외에 거주하는 등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의 필지번호, 계약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것 * 국·공유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면제(전산으로 확인)</p>	<p>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p>
<p>③ 경작사실 증명 ①② 모두</p>	<p>① 신청자가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작사실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 휴경으로 신청하는 필지는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p> <p>② 영농기록 - (관내경작자) ㉠ ~ ㉡ 중 1종 이상, (관외경작자) ㉢ ~ ㉣ 중 2종 이상 * 관내경작자 : 등록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연결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포함) ** 관외경작자 : 등록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신청인</p> <p>㉠ 농산물 판매 영수증 : A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A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도매시장,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p> <p>㉡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서류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등</p> <p>㉢ 종자·육묘 등 구매 서류 : 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획서 등</p> <p>㉣ 계약재배 증명서류 : 계약재배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p> <p>㉤ 기타 증명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 모든 증명서류는 신청자 명의여야 하며, 등록신청 해당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것으로 한정 ** 미올공동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하는 경우만 인정</p>	<p>신규 신청자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p> <p>전년도와 신청 농지가 같고</p> <p>① 주소가 같거나</p> <p>② 관내에서 주소가 변동 되거나</p> <p>③ 관외에서 관내로 이주한 경우</p> <p>제출생략</p>

나. 신청접수(지자체 및 농관원)

① 신청서류 접수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등록과 통합접수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에서 접수

② 신청서류 확인

-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 후 접수
 -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동에선 추후 일정 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기간 내 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 * 미비한 신청서류는 접수받은 읍·면·동에서 보완 완료 후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① 직불금 수령자 성명 및 계좌번호 확인 철저

- 직불금 신청자는 신청서 상 “수령자”와 동일해야하며, 신청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
-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번항목 중 ④

④(수령자 성명)	(연락처)	(은행명)
직불금 신청자 성명 기재		(계좌번호) 직불금 신청자 명의 계좌만 가능

② 임대차계약기간 확인 및 입력 철저

- 임대계약 기간 종료 시 증빙서류 제출 대상이나, 전년도와 변동이 없을 시 면제 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우므로 임대계약기간 종료시점 확인 필수

③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지급대상 제외 가능여부 안내 철저

- 공동경작 농업인 중 1인이 대표로 신청 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자격 요건을 필히 안내하여 민원사례 예방

④ 농지처분 명령 대상자(해당필지) 등 지급대상 농지요건 확인 철저

③ QR코드 스캔

- 접수 즉시 QR코드를 스캔하여 Agrix 접수정보에 입력
 -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여 신청서에 QR코드가 없는 경우에도 Agrix 접수정보에 입력
 - * QR코드 스캔은 전산입력 누락 방지장치이고, '19년부터는 QR코드 스캔정보를 이용해 등록신청서 접수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반드시 실시

④ 접수증 발급

- 신청인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때는 접수증(별지 제9호 서식) 발급

5 전산입력

- 입력기간: 2월 ~ 5월초(논이모작 3월중순)
- 입력내용: 등록신청서 2번항목의 '⑥ 직불정보'
- 입력기관: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
 - 신청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농관원에서 이송 받은 경우 포함)한 읍·면·동에서 전체 신청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급 관할 타 읍·면·동으로 이송
 - * 미이송에 따른 신청누락 책임은 최초 접수·입력한 읍·면·동에 있음
 - 관할 읍·면·동은 타 읍·면·동에서 이송된 신청서의 전산입력 정보 누락·적정 여부 및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을 최종 확인
 - * 전산입력 내용 및 첨부서류 확인에 관한 최종 책임은 지급관할 읍·면·동에 있음

<신청정보 전산입력>

- ① 타 읍·면·동에서 접수한 경우
 - 접수한 읍·면·동에서 타 읍·면·동 정보까지 모두 입력
- ② 농관원에서 접수한 경우
 - 농관원에서 서류를 이송받은 읍·면·동에서 모든 전산입력
- ③ 신청자가 신규 경영체 등록자인 경우
 - 농관원에서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후 읍·면·동에서 직불정보 입력
 - * 농관원에서는 신청·접수(3.8./4.30) 기간 내 신속히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 ④ 기존 경영체의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경영주 외 농업인 추가, 농지 추가)
 - 읍·면·동에서 직불정보를 우선 입력 후 농관원에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 * 농관원에서는 등록기간(3월/5월) 내 경영체정보 입력 후 읍·면·동은 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다. 서류의 이송·전달(읍면동, 농관원)

- 이송기간: (농관원↔지자체) 7일 이내, (지자체↔지자체) 10일 이내
- 이송방법: 우편, 방문, 팩스 등 업무여건에 따라 선택
 - 기관간 서류 이송 즉시 상호 “인계인수서(별지 제11호 서식)” 작성·교환
- 이송기관
 - (지자체 → 지자체) 지급 관할(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이송
 - (지자체 → 농관원) 주소지 농관원 지원·사무소로 이송
 - (농관원 → 지자체) 지급 관할(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이송
 - * 농지소재지 읍면동이 2곳 이상인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으로 서류 이송,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서류 접수 후 타 읍면동으로 서류 재이송

<집중 접수기간 설정 및 공동접수센터 설치·운영>

시·군은 관할지역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와 협의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동안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

- 집중 접수기간 중 읍·면·동장과 사무소장은 통합신청서를 공동으로 접수
- 집중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농업인들의 편의에 따라 읍·면·동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접수
 - * 읍·면·동은 공동접수센터에 전산장비 및 전화 등 신청접수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농관원은 읍·면·동별 접수반을 편성하여 사전에 읍·면·동에 통보하는 등 공동접수 준비
 - ** 지역여건에 따라 ① 접수규모가 소규모이거나 공동접수센터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② 접수규모가 대규모이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공동접수센터를 마을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지역은 마을(법정/행정리)에 설치하여 농업인의 편의 도모

<공동접수센터 운영시 접수처리>

① 접수증 발급 및 접수대장 관리

- 읍·면·동에서는 신청인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때는 등록신청서 접수증(별지 제9호 서식) 발급
 - * 읍·면·동에서 직불신청 정보 및 직불금 첨부서류 검토
 -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동에선 추후 일정 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 (기간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 대상 선정 취소)

② 서류의 이송·전달

- 접수 즉시 QR코드 스캔(필수)
- 같은 신청서에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접수한 읍·면·동에서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2번 항목) 및 관련 첨부서류를 지급 관할 타 읍·면·동에 이송
- ※ 공동접수센터에는 읍·면·동과 농관원 담당자가 반드시 모두 배석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 복사는 읍·면·동, 농관원 합동으로 진행

3. 신청자 정보공개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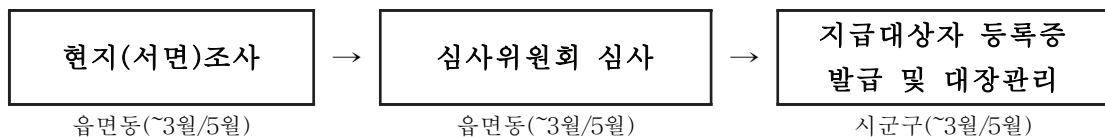
- 공개기간: 5월 ~ 9월
- 공개방법: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www.agrix.go.kr에 공개
- 공개내용: 신청자 성명(법인명), 신청 농지지면, 신청면적
- 열람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과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입력 후 열람
- 이의신청: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에 서면(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청

<주의사항>

직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개되고 열람되므로, 공개된 정보라도 정해진 방법 외에는 제공불가

*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고시) 참고

4. 지급대상자 선정 및 등록증 발급 단계



가.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읍면동)

- 조사 및 심사기간: 신청서 접수 후 등록증 발급 전까지
- 현지(서면)조사: 신청인이 밭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 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동일한 시·군·구 내 2개 이상 읍·면·동에 등록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 다만,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동에서는 등록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
- 신청자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AgriX시스템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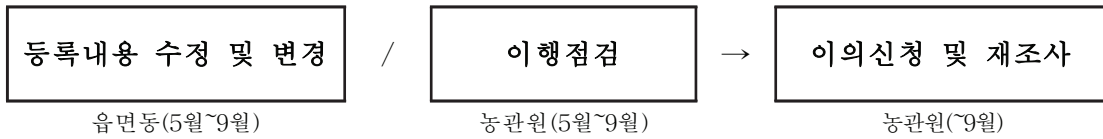
- 위원장 : 읍·면·동장
-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임기 2년, 재임 가능)
 - 읍·면·동 관할 리·통의 마을 대표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시·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담당자
- 제척·기피·회피 : 심의의 제척·기피·회피는 「행정절차법」 제29조를 준용
- 임무 : 실제 밭농업 종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
 - 조사대상에 관외경작자, 신규신청자, 전년도 부적격 판정 신청자는 필히 포함
 - 집중 심사 내용
 - ① 관외경작자의 밭농업 종사여부 확인 : 판매증빙서, 자재구입영수증, 영농기록 등
 - ② 사망, 고령, 중환 등으로 승계받는 자에 대한 심사
 - ③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
 - ④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 ⑤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 ⑥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 ⑦ 농지처분 명령 대상자(해당필지) 등 지급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 ⑧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나.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시군구, 읍면동)

- 발급권자: 시장·군수·구청장
- 발급기간: (논이모작) 3월내, (밭고정) 5월내
- 발급요건 확인
 - 지급대상 농지 적격여부(농지처분명령 대상자 신청 농지 등 제외)
 -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등 확인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 발급방법
 - ① 지급대상자 등록대장(별지 제13호 서식)에 등록
 - 등록증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구에서는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할 수 없음
 - * 읍·면·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 ② 지급대상자 등록증(별지 제14호 서식) 발급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 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 ③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해당자에게 제외사실을 통보(별지 제15호 서식)
 - * 지급대상 제외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등록증 발급에 대한 이의 신청 처리에 준하여 처리

등록증 및 지급대상자 제외 통보서는 이후 이의신청 등의 근거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반드시 도착해야 함

5. 등록사항 변경 및 이행점검 단계



가. 등록내용 수정 및 등록사항 변경(시군구, 읍면동)

① 등록내용 수정

- 수정사유: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발급받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결과조치: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

②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 변경기간: (논이모작) 5. 24.까지, (밭고정) 9. 15.까지
- 신청 대상자: 지급대상 농지 면적이 변동된 지급대상자
- 신고 대상자
 - 등록자에게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변경등록)
 -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내에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 승계자격요건을 갖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서* 제출: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 별지 제1호 서식(농업인)·제2호 서식(농업법인) 또는 제3호 서식

< 사망자 승계 가능 기간>

-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이후 직불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기간 중에 사망(뇌사 포함)하여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직불금 지급(해당 시군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단계) 이전까지 승계 신청(변경등록 신고가 아닌 신규 승계신청에 해당)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승계 신청시 승계 사유 및 승계확인 증명서류 제출)
 - 다만, 직불금은 일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보조금으로, 승계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사망한 지급대상자의 일반 상속인에게 지급은 불가함

구 분	필요 서류
변경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①②③ 모두	① 발급된 등록증 ②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③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서류 (단,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나목의 서류 (대상농지, 경작사실 확인, 무단점유 여부 관련)
변경등록 신고서 첨부서류 ①과③ 또는 ②와③	①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 임차,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② 사망 또는 뇌사 판정에 따른 직불금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단,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발급된 등록증 - 등록자가 사망,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서류 -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승계자의 승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서류(대상농지, 경작 사실 확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및 무단점유 여부 증빙 관련)

* 신청시 첨부서류 참고

③ 변경등록증 발급

- 시·군·구는 변경등록신청(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
 등록, 읍·면·동을 거쳐 신청(신고)인에게 등록증 발급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내용 수정’에
 준하여 처리

<주의사항>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등 자격요건이 미충족되었다하여 변경등록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신청자 변경 불가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음

<자격요건 상시검증>

시·군·구(읍·면·동)은 신청자 및 등록자가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자격요건을 지급 전까지 상시검증 실시

○ 지급대상 농지 적격여부

- 농지법 상 농지인지 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인지 여부
-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인지 여부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협의를 거친 농지인지 여부
-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인지 여부
-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인지 여부
- 중복지급 불가능한 보조금을 중복 신청한 농지인지 여부
- 진흥지역·비진흥지역 내 농지인지 여부

○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업인등인지 여부
-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법인 5만㎡) 이상이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법인 4천5백만원) 이상인지 여부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지 여부
- 지급대상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인지 여부
- 농지법에 따른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인지 여부(해당농지에 한 함)
-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인지 여부
- 실제 밭농업에 종사하는지 여부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나.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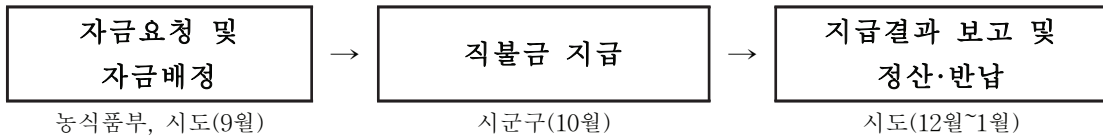
① 지급요건 검증(읍·면·동)

- 검증대상: 등록자 및 등록농지 전수 검증
- 검증방법: 유관기관 DB 및 AgriX시스템 등 활용
- 검증내용: 농외소득, 토지대장, 주민정보, 중복신청, 농지전용 등

② 이행점검 실시(농관원)

- 점검기간: (논이모작) 3월말 ~ 5. 24., (밭고정) 5월말 ~ 9. 15.
* 지자체 통보기간 포함
- 점검의뢰: 등록된 농지(농업인)에 대하여 농식품부에서 농관원으로 일괄 의뢰
- 의뢰시기 이후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현장점검 실시
- 점검대상: 발농업직불금 신청·등록된 농지(농업인)
- 등록된 농지(농업인) 중 경영체 DB 및 팜맵 등을 활용하여 부정신청이 의심되는 대상 위주로 선정(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전년도 부적격 신청자 필수 포함)
* 점검비율: (밭고정) 전체 대상 필지의 30% 이상(현장점검 20%)
(논이모작)전체 대상필지 대비 40% 이상(현장점검 40%)
- 점검내용
- (논이모작) 대상품목 재배여부 및 재배면적 등
- (밭고정)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여부 등
- 점검방법: 농관원은 세부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모바일 현장점검시스템, 팜맵, 드론 등을 활용(별지 제16호 서식 활용)
* 필요시 시·군·구(읍·면·동)에서 필지별 내역, 지적도면 등 관련자료 확보(지자체 협조)
- 특히, 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혼·간작 시 대상품목 재배면적 비율(논이모작) 및 동일 필지 공동경작 시 경계의 설치·관리(밭고정) 중점 점검 실시
- 의무 불이행사례 확인 시, 증빙자료(현장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확보·보유하되, 이의신청 제기 건에 대하여는 재조사 과정에서 (필요시)신청자의 확인서 징구
- 결과통보: 농관원은 부적합 내역이 있는 농업인에게 서면(별지 제17호 서식) 등으로 점검결과를 통보(매월)
* 점검결과에 대해 농업인 확인을 받을 시 서면통보 생략 가능
- 시·군·구에는 이행점검이 완료된 9.15.(논이모작 5.24.)까지 Agrix시스템을 통해 통보
- 이의신청: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통보를 받은 7일 이내 서면(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할 농관원으로 재조사 요청
- 이의신청을 받은 농관원은 즉시 재조사 후 그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
- 결과보고: 농관원은 이행점검 결과(별지 제19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서면으로 보고(9월)

6.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지급



가. 자금요청 및 교부결정(농식품부, 시·도)

- **자금요청:** 시·도는 시·군·구별 지급대상자, 면적, 소요자금 등을 확정하여 서면(별지 제20호 서식)으로 농식품부에 자금요청
- **교부결정:** 농식품부는 시·도의 자금요청 등을 토대로 시·도별 교부결정 통보
- **전산작업:** 시·도는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e-호조 및 e-나라도움 시스템 맵핑
- **자금교부:** 농식품부는 시·도에 자금교부, 시·도는 즉시 시·군·구에 전금

나. 직불금 지급(시·군·구, 읍·면·동)

- 지급시기: 10월
- 시·군·구(읍·면·동)는 시·도에서 자금을 교부받아 신속히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입금 시 발농업직불금임을 알 수 있도록 “농식품부 발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명기
 - 통장입금 명세서는 추후 이·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
 - * 통장입금 시 지급대상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다. 지급결과 보고(시·도)

- 시·도는 직불금 지급결과를 서면(별지 제21호 서식)으로 농식품부에 보고(12월)

라. 정산 및 반납(시·군·구, 읍·면·동)

- 시·도는 정산결과를 서면으로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시·도의 정산결과를 토대로 정산금액 확정
- 시·도는 집행잔액 반납

<주의사항>

시·도(시·군·구)는 자금교부 후 신속히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 시 추경, 성립전 등으로 필요예산을 편성하고, 지급 전 계좌검증 철저

7. 사후관리 단계

수령자 명단공개 및
사업추진 상황점검

부당신청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환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가. 수령자 명단공개

- 공개기간: 직불금 지급 후 30일 이내 공개 후 1년간
- 공개장소: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www.agrix.go.kr
- 공개내용: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열람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과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입력 후 열람
- 이의신청: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별지 제12호 서식)으로 신청
 - *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고시) 참고

나. 사업추진 상황점검

- 교차점검: 시·도는 시·군·구와 합동으로 관내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교차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간 교차점검 실시(4월, 10월)
- 중앙·지방 합동점검: 농식품부는 시·도, 농관원과 합동으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도별 2~3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합동점검 실시(5월, 12월)
-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등 사후관리
 - 농식품부는 부당수령금 등 사업비 회수 및 반납업무 처리상황을 정기 및 수시(필요시) 점검
 - 시·도는 관내 업무 추진상황 지도·점검 시 부당수령금 관리실태 점검
 - * 시·도 주관 교차점검(4월, 10월) 시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처리상황 점검

다. 부당수령 신고센터

- 부당수령 신고접수를 위해 부당신청 신고센터(시·군·구)와 콜센터 연중운영

< 신고 및 처리 절차 >

- ① 해당 시·군·구의 “부당수령 신고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또는 직불금 콜센터(1588-6830)를 통해 구두신고
 - * 신고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 ② 신고를 접수한 해당 시·군·구는 신고내용을 관리대장(별지 제23호 서식)에 등록
 - 구두신고의 경우, 콜센터에서 해당 시·군·구로 즉시 이송
 - * 콜센터 구두신고시 확인사항: 부당수령자 성명, 농지주소, 위반사항, 신고인 성명, 신고인 연락처
- ③ 시·군·구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와 협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해 현지조사
- ④ 부당수령자로 판명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직불금 회수조치 및 등록제한 등 조치
 - 조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확인 후 안내

라. 신고포상금

- 포상금: 건당 50만원, 1인 연 200만원 한도
- 대상자: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하여 부당수령임이 확인된 경우
- 수령절차
 - 시·도는 서면(별지 제24호 서식)으로 농식품부에 포상금 지급요청
 - 농식품부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신고자)의 계좌로 입금 조치 및 해당 시·도(시·도는 시·군·구)에 지급결과 통보
 - 해당 시·군·구는 신고자에게 지급결과 통보

<신고포상금 지급제외자>

- ① 신고대상자의 농업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한 사람
- ② 이미 신고된 자를 신고한 사람(부당수령자로 판명된 경우만 해당)
- ③ 농업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④ 신고대상자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 농지 소재지 거주자
- ⑤ 신고대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주의사항>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쌀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을 부당수령한 자를 신고한 자에 한함

마.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징수

- 직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특히 「농업소득법」 제14조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에 해당 될 경우에는 지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추가징수는 받고정만 해당)
 - * 납부의무자가 체납액 미납부시 체납액의 100분의 9범위 내에서 증가산금 부과
- 징수(회수)절차
 - ① 납입고지서 발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징수(회수) 사유가 발생하면 대상 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 ② 납입: 납부의무자가 부당수령금을 납부 시,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 순으로 납입
 - ③ 결과입력: 시·군·구(읍·면·동)는 부당수령금 회수 즉시 관련 정보(부당이득금, 가산금, 회수일자 등)를 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
 - *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바.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 「농업소득보전법」 제14조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10에 해당하는 경우 직불금의 일부 및 전부 미지급 및 등록제한 가능 (「농업소득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별표 기준)
 - * 등록제한 기준은 위반행위가 확인된 해당 연도를 시작연도로 하고, 제한기간 만료 후 다음해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마지막 연도 연말까지로 결정

사. 벌칙

- 아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거짓·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 신청하거나, 직불금을 수령한 자
 -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 거주자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직불제도 시행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관 련 서 식

- [별지 제1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농업인용)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과 동일(생략)
- [별지 제2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농업법인용)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과 동일(생략)
- [별지 제3호 서식]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과 동일(생략)

■ [별지 제4호 서식]

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계획(00시·군·구, 농관원 00사무소)

시·군·구 및 농관원 간 업무협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 참석기관 및 참석자 :
- 협의 사항 :

주요 협의 내용

- 집중 접수기간(읍·면별) 일정

시·도	시·군·구	읍·면·동	공동접수센터 운영여부(O/X)	운영일자

- 기관간 협조체계
- 기타 협의시 논의된 내용

향후 추진일정

○

※ 기타 기재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

■ [별지 제5호 서식]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신청구분 (논,밭,조건)	농지 소재지			면적(㎡)	대상직불 (쌀, 밭, 조건 중 택1)
		읍·면·동	리·통	지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제2호 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로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는 다음과 같이 이용된 농지(초지)임을 확인합니다.

- 쌀직불: '98.1.1.부터 '00.12.31.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
- 밭직불: '12.1.1.부터 '14.12.31.까지 밭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이외 작물 재배)
- 조건불리직불: '03.1.1.일부터 '05.12.31.까지 농업에 이용되거나 초지로 관리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료 한정
-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신청구분 (○표)	농지 소재지			공부상면적 (㎡)	농지이용		
		읍·면동	리·통	지번		재배면적(㎡)		재배 기간 (연도)
				벼	벼외	휴경		
	쌀, 밭, 조건							
	쌀, 밭, 조건							
	쌀, 밭, 조건							

※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곳의 []에 √ 표를 합니다.

[]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인이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기간 동안 중 1년(시행규칙 제3조제3호) 또는 직전 1년 이상(시행령 제5조 ‘농업 주업 요건’) 신청 대상 농지를 경작했음을 확인합니다.
----------------------------	--------------------------------------------------------------------------------------------------------------------------------------------------------------

[] 경작사실 확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농업소득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	-----------------------------------------------------------------------------------------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모든 경우에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별지 제7호 서식]

승계의사 확인서(밭고정·논이모작)

등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m ²)	농지이용면적(m ²)		
	읍·면·동	리·통	지번		합계	작물재배	휴경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5에 따라 등록자는 승계자()에 대해 ()의 사유로 승계함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등록자				
* 등록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승계자 외 1명 이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자와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 및 방법으로 위 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취소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쌀() 밭(고정, 논이모작) 조건불리()

<접수번호 : >

신청자 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 절 취 선 -----

<접수번호 :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쌀() 밭(고정, 논이모작) 조건불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대상농지 및 면적 등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 최종 확정 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읍·면·동장(사무소장) (인)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공통)

※ 해당 관할 지역 지급대상자에 대해 직접 접수받은 내역과 농관원(사무소) 및 타 지자체(읍·면·동)에서 이송받은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관리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접수 내역 ²⁾		이송 여부 ³⁾ (O,X)	전산 입력 여부 (O,X)	비고 (접수자)
		주소	생년월일	경영주 성명 ¹⁾ 지역 신청자 성명(전체)	직접 접수	이송			

- 1) 신청서의 경영주 이름을 기재하고, 점선 밑의 란에 관할 지역 내 신청자 전부 표기
 예시) ① 경영주와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같은 경우 : 경영주 성명 표기
 ②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를 포함하여 여러명인 경우 : 경영주를 포함한 신청자 모두 표기
 ③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와 다를 경우 : 신청자 명 표기(복수일 경우 전부 표기)
- 2) 직접 접수 받은 경우는 직접접수란에 ‘○’, 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1’, 타 지자체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2’로 표기
- 3) 직접 접수 또는 농관원으로부터 최초 이송받은 읍·면·동이 타 지급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하였는지 여부

통합 신청서 인수인계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 신청과 관련하여 ○○와 ○○ 간에 아래 사항에 대해 이상 없이 인수인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직불금 신청 내역 사본 000부

0000년 00월 00일

인 계 자 (소속) ○○ 직 이 름 서 명

인 수 자 (소속) ○○ 직 이 름 서 명

불임 : 인수인계 내역

인수인계서 내역

접수번호	경영체명 (신청자명)	주소지	신청내용("○" 표시)			
			쌀	밭	조건	비직불

■ [별지 제13호 서식]

밭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 기관명 :

등록 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 번호)	밭고정(㎡)					논 이모작 (㎡)	등록 연월일	변경 사항
			농업진흥지역			농지이용				
			합계	안	밖	작물 재배	휴경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4호 서식]

등록번호 제 호

년도 발농업(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마을명	농지 소재지			농지 소유자 성명	공부상 면적 (㎡)	농업진흥지역 구분(㎡)			농지이용면적(㎡)	
	읍·면	리·동	지번 (임시지번)			합계	안	밖	작물 재배	휴경
합계										

위 신청인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발농업(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
인

- * 등록증을 받은 후 등록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발농업(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9월 15일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농업(고정)직접지불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때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모든 농지의 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고,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제15조에 따른 부당이득금·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제3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 등록증은 발농업(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등록번호 제 호

년도 발농업(논이모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마을명	농지 소재지			소유자	공부상		농지이용	
	읍·면	리·동	지번 (임시지번)		지목	면적(m ²)	재배품목	신청면적(m)
		합계						

위 신청인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5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발농업(논이모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
인

- * 등록증을 받은 후 등록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발농업(논이모작)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5월 24일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농업(논이모작)직접지불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때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10제1항에 따라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 * 이 등록증은 발농업(논이모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 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지 제15호 서식]

번호 제 호

년도 발농업(밭고정, 논이모작)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①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③ 신청 내용	농지 소재지			④신청면적(m ²)		
	읍·면	리·동	지번 (가지번)	계	작물재배	휴경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5 규정에 의하여 발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제외사유 :

20 년 월 일

시장
군수 [인]
구청장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년 발농업(고정)직접지불금 신청농지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 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면적(㎡)			조사결과										
읍·면·동	본번	부번		합계	작물 재배	휴경	적합면적(㎡)			부적합면적(㎡)			불이행항목			비고 (불일치사유 등)	
			합계				재배	휴경	합계	폐경	기타	①	②	③			

※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①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관리 ②이웃 농지와 경계 설치 및 관리 ③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항목 중 불이행 항목란에 “○” 표시

※ 비고란에는 불일치 사유 및 면적(일부 부적합 포함) 등 기재

년 발농업(논이모작)직접지불금 신청농지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 재

결제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내역		조사결과				비고 (불일치 사유 등)
읍·면·동	본번	부번		품목	면적 (㎡)	적합면적 (㎡)	부적합면적 (㎡)			
						재배	휴경	폐경	기타	

※ 비고란에는 불일치 사유 및 면적 등 기재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등록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년 발농업(고정)직접지불금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면적(㎡)			조사결과										
읍·면·동	본번	부번		합계	작물 재배	휴경	적합면적(㎡)			부적합면적(㎡)			불이행항목			비고 (불일치사유 등)	
							합계	재배	휴경	합계	폐경	기타	①	②	③		
합계																	

※ 조사결과 항목별 내용

- ①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관리
- ② 이웃 농지와 경계 설치 및 관리
- ③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발농업(고정)직접지불금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동봉한 이의신청서(별지제18호서식)를 농지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사무소장 직인

년 발농업(논이모작)직접지불금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m ²)	신청내역		조사결과				
읍·면·동	본번	부번		품목	면적 (m ²)	적합면적 (m ²)	부적합면적 (m ²)			비고 (불일치 사유 등)
						재배	휴경	폐경	기타	
합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7에 따라 실시한 발농업(논이모작)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동봉한 이의신청서(별지제18호서식)를 농지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사무소장 직인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

2.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이행점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 1.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시·도별 발농업(고정/논이모작)직불제 이행점검 결과 보고

시도	지자체 요청			농관원 미점검(비표본)			농관원 점검(표본)									
	농기수	필지수	면적(ha)	농기수	필지수	면적(ha)	합계			적합			부적합			
							농기수	필지수	면적(ha)	농기수	필지수	면적(ha)	농기수	필지수	면적(ha)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밭고정, 논이모작 이행점검 결과 별도 작성

받농업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시·군·구	자금배정액 (천원)	지급자(명)			지급면적(m ²)					지급결과(천원)		
		합계	밭고정	논 이모작	합계	밭고정			논 이모작	합계	밭고정	논 이모작
						소계	진흥지역 안	진흥지역 밖				
합계												

○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별지 제23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 관리 대장

기관명 :

접수 번호	접수 연월 일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연락처	신고방법 (콜센터, 우편 등)	피신고 인 성명	농지주소	위반행위	직분류	처리 연월 일	처리내용	결과통 보 연월일	결과통보 방식 (전화 등) 우편	포상 금 지급 액	

■ [별지 제24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고개요	신고일자	피신고자	직불종류
	신고농지		
	신고내용		

포상금 지급신청	신청금액		원 / 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경유기관(시·도지사) 확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위 신청자가 신고포상금 수령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첨부서류	1. 통장사본 2.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3. 부당수령신고 처리결과서(해당 부당수령신고를 처리한 기관에서 첨부)
------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 처리결과서

1. 신고개요

- 신고일자 :
- 신고자 : (생년월일 :)
 - 주소지 :
 - 연락처 :
- 피신고자 : (생년월일 :)
- 신고농지 :
- 신고내용 :

2. 조사결과 및 처분결과

- 담당자 : (소속) (직급) (성명)
- 조사결과
 - 부당수령 연도 :
 - 부당수령 농지 : (면적 : m²)
 - 부당수령 직불 :
 - 부당수령 금액 : 원
 - 부당수령 내용 :
- 처분결과
 - 처분일자 :
 - 환수액 : 원 (부당수령액 원, 가산금 원)
 - 등록제한 : 년(년 ~ 년)

3. 부당수령 상세내역

- 부당수령자 : (생년월일 :)

직불 종류	수령 연도	농지 지번	면적 (m ²)	금액(원)		비고
				고정	변동	
합계						

세부사업명	쌀소득보전고정직불(지자체)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예산 (백만원)	802,770
사업목적	쌀값 하락에서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및 논의 공익적 가치 보전				
사업 주요내용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단가: 평균 100만원/ha)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지원자격 및 요건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1천㎡ 이상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는 자				
지원한도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400ha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읍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국 고	824,000	816,000	809,000	802,77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이지은 정광호	044-201-1776 044-201-1777
신청시기	정기(2월 ~ 4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사업시행지침서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김원일 사무관 이지은 주무관 정광호	044-201-1771 044-201-1776 044-201-1777
		지자체 및 민원 담당 사무관	044-201-1781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스마트농정실 (Agrix)	시스템 상담지원 콜센터 (부당수령 콜센터)	1588-6830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공급 과잉기조와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쌀 생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및 논의 공익적 가치 보전

2. 근거법령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재원구성 : 국고 100%

4. 추진경과

- (‘01) 논농업직불제 도입 *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
- (‘03)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 「쌀소득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05) 고정직불과 변동직불로 개편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 (‘15) 쌀직불금과 받고정직불금 통합 규정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

1. 지급대상 농지

- 지목과 상관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제외)
 - 단,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 중 다음 사유로 위 기간에 논농업이 중단된 경우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
 - 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연재해, 풍수해

< 지급대상 제외 농지 (법 제5조제1항) >

- ①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 단,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서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의 보상받지 않은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인정
- ②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약이 의제되는 경우 포함)
-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농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농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 단,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지구·지역의 농지 중 **보상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이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 중 일부를 받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등록신청 연도에 논농업에 이용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가능
- ④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하여 등록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
 - * 제3자에게 임대한 농지, 등록제한 처분 이후 새로 구입한 농지 등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모든 농지를 의미

2. 지급대상자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및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① '05~'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신규 대상자(① 이외의 자)

①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농업인

②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 선정된 후 탈락된 자,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제외

③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다음을 충족하는 자

- (농업인)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5만㎡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④ '04년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공사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경작하는 자로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농업인)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 직전 연도에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 (농업법인)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5만㎡ 이상(휴경면적은 제외)에서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 직전 연도에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③ 승계자

○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불가피한 사유: 고령, 질병, 부상 등 논농업에 종사가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 해당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

*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산입

**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확인서 등으로 농업인 확인이 가능한 자

○ 단,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촌에 주소를 두거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 지급대상 제외자 (법 제6조제3항 및 제14조) > —

- ①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
 - ** 농업인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농업법인은 적용 예외
- ②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휴경면적은 면적 산정시 제외)
- ③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농지에 한 함)
- ④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농지에 한 함)
- ⑤ 지급대상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

—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시행령 제5조)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상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둔 자**는 다음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 * 주소는 등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하며, 자격유지기간 내에 농촌지역에서 농촌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함
- * 예외: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승계자

- ①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또는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하는 **5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법인**
- ②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4천5백만원** 이상인 **농업법인**
- ③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해당 시·구에 두고 해당 시·구에 소재한 1천㎡ 이상의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신청인의 주소지 동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 중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 포함)를 직전 **1년 이상** 경작한 자
 - * 구 :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의미
 - * 해당 시·구 : 등록신청 당시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구를 의미
 - * 연접한 읍·면·동 :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행정면·행정동(농업인에게 유리한 경우 법정면·동 적용)

3. 지급요건

① 고정직불금

- 지급대상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할 경우 지급
 - 단,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요건” 미충족 시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시행령 제7조) >

- ①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②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③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 ④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 * ① 미충족 : 해당농지 고정·변동 전부 미지급
- ②~④ : (1개 미충족) 해당농지 고정 1/2 감액, 변동 전부 미지급 (2개이상 미충족) 고정·변동 전부 미지급

② 변동직불금

- 고정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할 경우 지급
 - 단,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기준” 미충족 시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시행규칙 제9조) >

- ① 농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 허용기준
- ② 화학비료 :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

- * ①, ② 중 1개 미충족 : 해당농지 1/2 감액, 모두 미충족 : 해당농지 전부 미지급

4.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 지급단가

- 고정직불금: 평균 1백만원/ha
- 변동직불금: 해당연도 수확기(10월~다음연도 1월) 산지 평균 쌀값이 발동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목표가격과 해당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
 - * 지급단가 = 【(목표가격 - 해당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 0.85】 - 고정직불금

○ 지급금액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 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고정직불금: 지급단가(원/m²) × 대상농지면적(m²)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원/80kg) × 평균생산량(가마/ha) × 재배면적(ha)

○ 지원형태: 국고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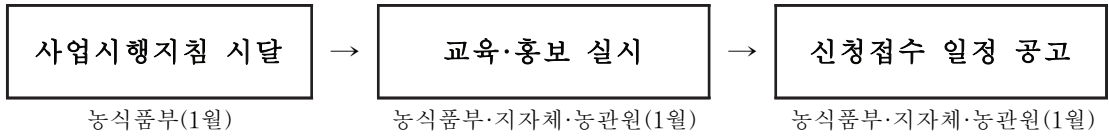
○ 지원한도: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

Ⅲ

사업추진체계

[업무 흐름]	[시기]	[주요 내용]
① 신청·접수 전	1월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시행지침 시달 ▶ 사업설명·홍보, 신청·접수 일정 공고
② 직불금 신청·등록	2~4월	▶ 등록신청서 제출(농업인등) - 농지소재지 읍·면·동 * 농업경영체등록과 통합 신청에 따라 농관원(지원·사무소)을 통해 제출 가능
③ 신청자 정보 공개	5~9월	▶ 농식품부 및 시·군·구 홈페이지 ▶ 공개된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④ 신청내용 조사(서면·현지) - 등록증 교부	5월	▶ 대상농지·농업인 여부 등 확인, 관외거주자 등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경우 경작사실 조사(읍·면·동) ▶ 등록증 교부 - 시장·군수·구청장 확정, 읍·면·동에서 출력·발급 * 등록 제외 사유, 이의 신청자 처리결과 등 통보
⑤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 등록내용 변경 신청(신고)	5~9월	▶ 지급요건 검증(농식품부, 지자체 등) * 농외소득, 토지대장, 주민정보, 중복신청, 농지 전용 등 ▶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벼 재배 등) 이행 점검(농관원) → 확인조사 결과 시·군·구청장에게 송부 * (필수점검) 전년도 부적격 신청자, 신규·관외 신청자, 팜맵·경영체정보 불일치, 전년대비 신청면적이 많은 경우 등 ▶ 등록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수정(읍·면·동)
⑥ 고정직불금 지급	10월	▶ 지급대상자·면적·금액 요청(시·군·구→시·도→농식품부) ▶ 통장계좌입금(시·군·구→지급대상자) ▶ 수령자 정보공개(15일 이상)
⑦ 농약잔류·토양 검사	9~11월	▶ 농약잔류검사(농관원) ▶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⑧ 변동직불금 지급	다음연도 2~3월	▶ 지급대상자 통장계좌입금 * 지급대행: 농협경제지주회사(시군 농정지원단)
⑨ 사후관리	연중	▶ 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 직불금 콜센터(1588-6830) 및 시·군 신고센터 ▶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

1. 신청·접수 준비



가.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등 관련기관에 시달

나.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농관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순회교육 실시
- 시·도(시·군·구) 및 농관원은 업무담당자 및 조사원을 대상으로 자체 실무교육 실시

다.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는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등 관련기관에 시달하고, 전년도 지급대상자에게 직불금 지급내역을 발송하는 등 홍보물 제작·배포
- 시·도(시·군·구) 및 농관원은 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홍보지, 지방지, 새해영농실용화 교육, 이통장 윌레회, 현수막,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한 홍보 실시

라. 신청·접수계획 수립(시·도, 시·군·구)

- 시·군·구는 관할지역 농관원과 업무협의*를 통해 시·군·구별 신청·접수계획(별지 제4호 서식)을 수립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1월)
 - 농관원과 협의내용, 읍·면별 공동접수센터 운영 일정, 기관 간 협조체계 등 포함
 - * 시·군·구 주관으로 농관원과 업무협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따라 공동접수센터 설치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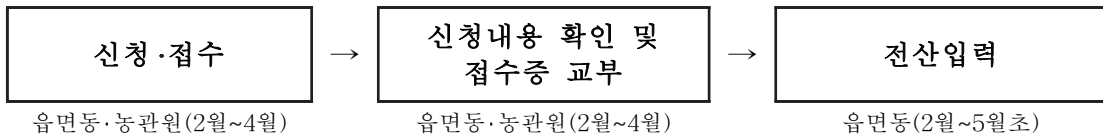
마. 등록신청 공고(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 및 지자체, 농관원은 접수일 7일 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등록신청 공고
 -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기간 및 방법 등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바. 보조원 및 조사원 채용(시·군·구, 농관원)

- 시·군·구는 사업신청 및 접수를 위한 전산입력 보조원 채용
- 농관원은 지원·사무소별로 이행점검을 위한 조사원 채용

2. 신청·등록



가. 직불금 신청(농업인등)

- 쌀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장소에서 등록 신청
- 신청기간: 2. 1. ~ 4. 30.
- 신청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 제출서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

나. 신청 접수·등록(지자체, 농관원)

① 신청서류 접수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에서 접수

< 공동접수센터 설치·운영 >

시·군은 관할지역 농관원 지원·사무소와 협의하여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

- ① 접수규모가 소규모이거나 그 밖에 공동접수센터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공동접수센터 미설치 가능
- ② 접수규모가 대규모이거나 접근성이 나빠 공동접수센터를 마을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지역은 마을(법정리·행정리)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
- ③ 공동접수센터에서는 지자체와 농관원 담당자가 합동근무 접수
 - 지자체 담당자는 직불 신청내용과 첨부서류 확인, 농관원 담당자는 경영체 정보 확인
 - 공동접수센터에는 지자체와 농관원 담당자가 반드시 모두 배석하여 신청서 접수
 - 공동접수센터에서 접수된 서류는 지자체 및 농관원 담당자가 합동으로 복사·이송
- ④ 공동접수센터 운영 이후에는 농업인이 읍·면·동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 제출

② 신청서류 확인

-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 후 접수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일정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기간 내 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 * 미비한 신청서류는 접수받은 읍·면·동에서 보완 완료 후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

③ QR코드 스캔

- 접수 즉시 QR코드를 스캔하여 Agrix 접수정보에 입력
 -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여 신청서에 QR코드가 없는 경우 Agrix 접수정보에 직접 입력
 - * QR코드 스캔은 전산입력 누락 방지장치이고, '19년부터는 QR코드 스캔정보를 이용해 등록신청서 접수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반드시 실시

④ 접수증 발급

- 신청인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때는 접수증(별지 제8호 서식) 발급

⑤ 전산입력

- 입력기간: 2월 ~ 5월초
- 입력내용: 등록신청서 2번항목의 '⑥ 직불정보'
- 입력기관: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 * 접수기관에서 타 읍·면·동 정보까지 모두 입력
 - 관할 읍·면·동에서는 신청서를 이송 받은 후 입력 내용 확인

< 신청정보 전산입력 >

① 타 읍·면·동에서 접수한 경우

- 접수한 읍·면·동에서 타 읍·면·동 정보까지 모두 입력

② 농관원에서 접수한 경우

- 농관원에서 서류를 이송받은 읍·면·동에서 모든 전산입력

③ 신청자가 신규 경영체 등록자인 경우

- 농관원에서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후 읍·면·동에서 직불정보 입력
 - * 농관원에서는 신청·접수 기간(4월) 내 신속히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④ 기존 경영체의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경영주 외 농업인 추가, 농지 추가)

- 읍·면·동에서 직불정보를 우선 입력 후 농관원에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 * 농관원에서 등록기간(5월) 내 경영체정보 입력 후 읍·면·동은 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⑥ 서류이송

- 이송기간: (농관원↔지자체) 7일 이내, (지자체↔지자체) 10일 이내
- 이송방법: 우편, 방문, 팩스 등 업무여건에 따라 선택
 - 기관간 서류 이송 즉시 상호 “인계인수서(별지 제10호 서식)” 작성·교환
- 이송기관
 - (지자체 → 지자체) 지급 관할(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이송
 - (지자체 → 농관원) 주소지 농관원 지원·사무소로 이송
 - (농관원 → 지자체) 지급 관할(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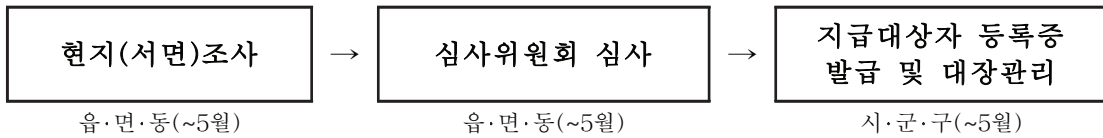
* 농지소재지 읍면동이 2곳 이상인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으로 서류 이송,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서류 접수 후 타 읍면동으로 서류 재이송

3. 신청자 정보공개

- 공개기간: 5월 ~ 9월
- 공개방법: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www.agrix.go.kr에 공개
- 공개내용: 신청자 성명(법인명), 신청 농지지번, 신청면적
- 열람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과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입력 후 열람
- 이의신청: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에 서면(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신청
 - 직불금을 등록신청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와 신청자가 다를 경우
 - 직불금을 등록신청한 농지면적 또는 지번이 사실과 다를 경우
 - 신청자가 쌀소득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등록신청한 농지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갖추 못한 경우

직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개되고 열람되므로, 공개된 정보라도 정해진 방법 외에는 제공불가

4. 신청내용 조사 및 등록증 교부



가.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읍·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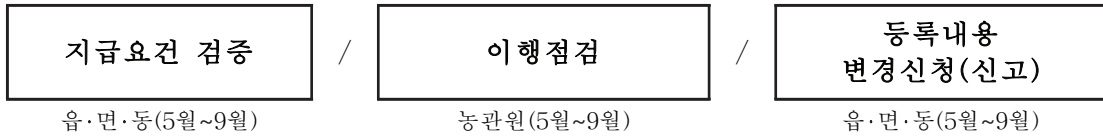
- 조사 및 심사기간: 신청서 접수 후 등록증 발급 전까지
- 현지(서면)조사: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동일한 시·군·구 내 2개 이상 읍·면·동에 등록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 다만, 다른 읍·면·동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동에서는 신청서 등을 전달 받아 조사에 활용
- 신청자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AgriX시스템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나.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시·군·구, 읍·면·동)

- 발급권자: 시장·군수·구청장
- 발급방법: 지급대상 농지·지급대상자 적격여부, 신청서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끝나면 신청자를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등록증 발급
 - 등록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등록 → 등록증(별지 제13호 서식) 발급
 - 등록증번호는 시·군·구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할 수 없음 * 읍·면·동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 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해당자에게 제외사실을 통보(별지 제14호 서식)
 - * 제외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등록증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준하여 처리

등록증 및 지급대상자 제외 통보서는 이후 이의신청 등의 근거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반드시 발급

5.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등록내용 변경 신청·신고)



가. 지급요건 검증(읍·면·동)

- 검증대상: 등록자 및 등록농지 전수 검증
- 검증방법: 유관기관 DB 및 AgriX시스템 등 활용
- 검증내용: 농외소득, 토지대장, 주민정보, 중복신청, 농지전용 등

나. 이행점검(농관원)

- 점검기간: 5월말 ~ 9.15.(지자체 통보 포함)
- 점검의뢰: 등록된 농지(농업인)에 대하여 농식품부에서 농관원으로 일괄 의뢰
- 의뢰시기 이후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현장점검 실시
- 점검대상: 쌀직불금 신청·등록된 농지(농업인)
 - 등록된 농지(농업인) 중 경영체 DB 및 팜맵 등을 활용하여 부정신청이 의심되는 대상 위주로 선정(등록 농지의 50% 이상(현장점검 30%))
 -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및 전년도 부적격 신청자는 필히 조사대상에 포함
- 점검내용: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고정),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했는지(변동)
 - 폐경 여부, 벼 재배 여부, 2명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경우 경계의 설치 및 관리여부 등 중점점검 * 필요시 지자체에서 필요자료 요구(지자체 협조)
- 점검방법: 농관원은 세부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모바일 현장점검시스템, 팜맵, 드론 등을 활용하여 점검 실시 * 이행점검표(별지 제16호 서식) 참고
 - 요건 미비 확인 시, 증빙자료(현장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확보·보유
- 결과통보: 농관원은 매월 부적합 내역이 있는 농업인에게 서면(별지 제17호 서식) 등으로 점검결과를 통보 * 점검결과에 대해 농업인 확인을 받을 시 서면통보 생략 가능
 - 시·군·구에는 이행점검이 완료되는 9.15.까지 AgriX시스템을 통해 통보
- 이의신청: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통보를 받은 7일 이내 서면(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할 농관원으로 재조사 요청
 - 이의신청을 받은 농관원은 즉시 재조사 후 그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
- 결과보고: 농관원은 이행점검 결과(별지 제19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서면으로 보고(9월)

다. 등록내용 수정 및 변경(시·군·구, 읍·면·동)

① 등록내용 수정

- 수정사유: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발급받은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결과조치: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

②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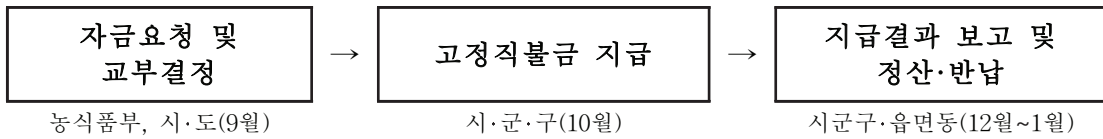
- 변경기간: 9. 15.까지
 - 신청 대상자: 등록농지의 면적 또는 벼재배 면적이 변경된 경우
 - 신고 대상자
 - 등록자에게 등록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 임차 또는 사용차하는 농업인등(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변경등록)
 -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내에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 승계자격요건을 갖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신청 및 신고서* 제출 :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
- * 별지 제1호 서식(농업인)·제2호 서식(농업법인) 또는 제3호 서식

③ 변경등록증 발급

- 시·군·구는 변경등록신청(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 등록, 읍·면·동을 거쳐 신청(신고)인에게 등록증 발급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내용 수정’에 준하여 처리

- 신청되지 않았던 농지, 농외소득 요건 등 자격요건이 미충족되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신청했던 농지는 변경등록 대상이 될 수 없음
- 등록사항 변경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음

6. 고정직불금 지급



가. 자금요청 및 교부결정(농식품부, 시·도)

- **자금요청:** 시·도는 시·군·구별 지급대상자, 면적, 소요자금 등을 확정하여 서면(별지 제20호 서식)으로 농식품부에 자금요청
- **교부결정:** 농식품부는 시·도의 자금요청 등을 토대로 시·도별 교부결정 통보
- **전산작업:** 시·도는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e-호조 및 e-나라도움 시스템 맵핑
- **자금교부:** 농식품부는 시·도에 자금교부, 시·도는 즉시 시·군·구에 전금

나. 고정직불금 지급(시·군·구, 읍·면·동)

- 지급시기: 10월
- 시·군·구(읍·면·동)는 시·도에서 자금을 교부받은 후 신속히 지급대상자 계좌에 고정직불금 입금
 - 입금 시 쌀직불금임을 알 수 있도록 “농식품부 쌀직불”이라 통장에 명기
 - 통장입금 명세서는 추후 이·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

다. 지급결과 보고(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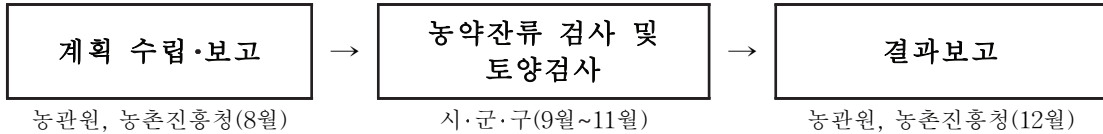
- 시·도는 고정직불금 지급결과를 서면(별지 제21호 서식)으로 농식품부에 보고(12월)

라. 정산 및 반납(시·군·구, 읍·면·동)

- 시·도는 고정직불금 정산결과를 서면으로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시·도의 정산결과를 토대로 고정직불금에 대한 정산을 확정
- 시·도는 고정직불금 집행잔액을 반납

시·도(시·군·구)는 자금교부 후 신속히 고정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시 추경, 성립전 등으로 필요예산을 편성하고, 지급 전 계좌검증 철저

7. 농약잔류·토양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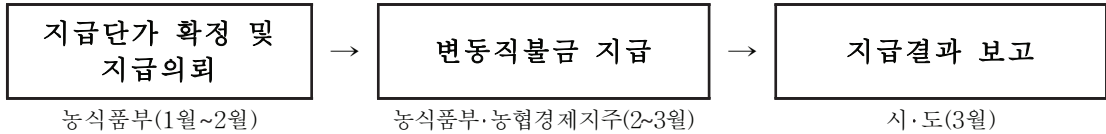
가. 농약잔류 검사(농관원)

- 검사기간: 9월 ~ 11월
- 검사대상: 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
 - 재배면적, 전년도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고루 분포 되도록 표본선정
 - * 전년도 농약잔류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농지(농업인)는 필히 포함
- 검사방법: 식약처장이 고시한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에 따라 분석
- 시료채취: Z자형 또는 W자형으로 구분, 최소 6개소 이상의 지점에서 무작위 채취
 - 수확 10일 전후에 시료를 채취하여 탈곡·건조·제현 후 현미 1~3kg으로 시료제조
- 판정기준: 식약처장이 고시한 생산단계 농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 결과통보: 농관원은 검사완료 후 1주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시·군·구에 통보
- 결과조치: 시·군·구는 검사결과 부적합 농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 결과보고: 농관원은 검사결과를 농식품부에 서면(별지 제27호 서식)으로 보고(12월)

나. 토양검사(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시·도 농업기술원)

- 검사기간: 9월 ~ 11월
- 검사대상: 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등록된 농지
 - ‘토양검사 세부시행계획’에 근거하여 대표성을 가지도록 표본선정
 - * ‘17년, ‘18년 토양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지(농업인)의 지속관리 및 과다시비로 도복된 논, 엽분석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필지는 1차년도 토양검사 대상에 포함
- 시료채취: 시·군 실정에 알맞은 시료채취 기간을 정하여, 대표성을 가지도록 채취
- 검사항목: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칼륨
- 판정기준: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을 토대로 판정
- 결과통보: 기술센터는 Agrix시스템을 통해 시·군·구 및 도 기술원, 농진청에 통보
 - 1차년도 특별관리, 2차년도 부적합으로 표시하여 명단 통보(없으면 ‘해당없음’ 통보)
- 결과조치: 시·군·구는 1차년도 특별관리 및 2차년도 부적합 농업인에 대해 토양관리 처방서를 발급하여 시비지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시행
- 결과보고: 농진청은 검사결과를 농식품부에 서면(별지 제28호 서식)으로 보고(12월)

8. 변동직불금 지급



가. 지급단가 확정(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목표가격 및 수확기산지쌀값을 반영하여 변동직불금 단가 확정·고시

나. 지급의뢰(시·도, 시·군·구)

- 시·도는 시·군·구별 지급대상자, 면적, 소요자금 등을 확정하여 서면(별지 제22호 서식)으로 농식품부에 자금요청
- 농식품부는 시·도의 요청을 토대로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자금배정
 -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시·군 농정지원단에 배정된 자금 전금
- 시·군·구는 관할 농정지원단에 변동직불금 지급의뢰(별지 제23호 서식)

다. 변동직불금 지급(농협경제지주·농정지원단)

- 지급시기: 2020년 2~3월
- 농협경제지주회사(농정지원단)는 시·군·구의 지급의뢰에 따라 신속히 지급대상자 계좌에 변동직불금 입금
 - 입금 시 쌀직불금임을 알 수 있도록 “농식품부 쌀직불”이라 통장에 명기

라. 지급결과 보고(시·도)

- 농협경제지주는 변동직불금 지급결과를 서면(별지 제24호 서식)으로 시·군·구 및 농식품부에 보고(3월)

9. 사후관리

가. 수령자 명단공개

- 공개기간: 직불금 지급 후 30일 이내 공개, 1년간
- 공개방법: 농식품부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www.agrix.go.kr
- 공개내용: 수령자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열람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과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입력 후 열람
- 이의신청: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에 서면(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신청

나. 사업추진 상황점검

- 교차점검: 시·도는 시·군·구와 합동으로 관내 시·군·구 전체를 대상으로 교차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간 교차점검 실시(4월, 10월)
- 중앙·지방 합동점검: 농식품부는 시·도, 농관원과 합동으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도별 2~3개 시·군·구를 선정하여 합동점검 실시(5월, 12월)
-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등 사후관리
 - 농식품부는 부당수령금 등 사업비 회수 및 반납업무 처리상황을 정기 및 수시(필요시) 점검
 - 시·도는 관내 업무 추진상황 지도·점검 시 부당수령금 관리실태 점검
 - * 시·도 주관 교차점검(4월, 10월) 시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처리상황 점검

다. 부당수령 신고센터

- 부당수령 신고접수를 위해 부당신청 신고센터(시·군·구)와 콜센터 연중운영

< 신고 및 처리 절차 >

- ① 해당 시·군·구의 “부당수령 신고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또는 직불금 콜센터 (1588-6830)를 통해 구두신고 * 신고서(별지 제25호 서식) 및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
- ② 신고를 접수한 해당 시·군·구는 신고내용을 관리대장(별지 제26호 서식)에 등록
 - 구두신고의 경우, 콜센터에서 해당 시·군·구로 즉시 이송
 - * 구두신고 시 최소 확인사항: 부당수령자 성명, 농지주소, 위반사항, 신고인 성명, 신고인 연락처
- ③ 시·군·구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와 협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해 현지조사
- ④ 부당수령자로 판명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직불금 회수 및 등록제한 등 조치
 - 조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확인 후 안내

라. 신고포상금

- 포상금: 건당 50만원, 1인 연 200만원 한도
- 대상자: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면서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한 자를 신고하여 부당수령임이 확인된 경우
- 수령절차
 - 시·도는 서면(별지 제29호 서식)으로 농식품부에 포상금 지급요청
 - 농식품부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신고자)의 계좌로 입금 조치 및 해당 시·도(시·도는 시·군·구)에 지급결과 통보
 - 해당 시·군·구는 신고자에게 지급결과 통보

<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

- ① 신고대상자의 농업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한 사람
- ② 이미 신고된 자를 신고한 사람(부당수령자로 판명된 경우만 해당)
- ③ 농업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④ 신고대상자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해 준 농지 소재지 거주자
- ⑤ 신고대상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마.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징수

- 직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특히 법 제14조제1항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에 해당 될 경우에는 지급액의 2배를 추가 징수
- * 납부의무자가 체납액 미납부시 체납액의 100분의 9범위 내에서 증가산금 부과

○ 징수(회수)절차

- 납입고지서 발급: 시·군·구는 징수(회수) 사유가 발생하면 대상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 * 시·군·구는 변동직불금 납입고지시 관할 농정지원단에도 회수 협조문서 시행(연산, 부당수령금, 대상자, 납부기한 등 포함)
- 납입: (고정)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
(변동) 시·군·구 → 농협경제지주회사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 * 시·군·구는 변동직불금 납입과 동시에 농정지원단에 납입내용 통보(연산, 납부자,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구분한 납입금액, 납입일시, 납입계좌 등은 반드시 포함)
- 결과입력: 시·군·구(읍·면·동)는 부당수령금 회수 즉시 관련 정보(부당이득금, 가산금, 회수일자 등)를 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
 - *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바.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 법 제1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불금의 일부 또는 전부 미지급 및 등록제한
 - * 등록제한 기준은 위반행위가 확인된 해당 연도를 시작연도로 하고, 제한기간 만료 후 다음해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마지막 연도 연말까지로 결정

사. 벌칙

- 아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거짓·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등록 신청하거나, 직불금을 수령한 자
 -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 준 농지소재지 거주자
 -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직불제도 시행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1. “논농업”

- ① **논농업**(법 제2조제2호) :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 연근, 미나리, 왕골 및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
 - 농작물: 식량·채소·과실·화훼작물, 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 (임업용 종자·묘목 제외) ※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 제2조
 - 다년생식물 :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 제외)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 ② **지급대상 농지에 적용되는 논농업**(법 제5조) :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98~’00년 동안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
 - ※ ‘98~’00년 동안 계속하여 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한 농지 및 ‘97년 이전 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재배가 중단된 농지에서 현재 작목을 전환하여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외에 소득증대를 위한 농작물 및 다년생식물을 재배(휴경 포함)하는 경우에도 쌀직불금 지급 가능

2. “종사”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일부위탁 포함)
- 일부위탁: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업에 필요한 농작업 중 일부를 직접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의미

3.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 ‘들녘경영체육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으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 법인구성원(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 농업인 25인 이상이 경작하는 50만㎡ 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공동영농 규약을 구비하고 육묘부터 수확까지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영농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법인
 - 법인구성원(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을 포함한 농업인 25인 이상으로부터 출자 또는 임대 받은 50만㎡ 이상의 농지를 대상으로 단일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공동경작하는 법인
 - 25인 이상의 농업인을 법인구성원(조합원, 주주 또는 사원)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50만㎡ 이상의 농지를 임대 받아 단일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공동경작하는 법인
 - 그밖에 위 각 호의 사항이 복합된 경우로서 25인 이상의 농업인을 참여시켜 50만㎡ 이상의 농지를 공동경작하는 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2015. 12. 23.]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2002.8.14.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 지구지역(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참고 3

신청·접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1. 자격유지기간 : 9월 15일까지

2. 신청서류 접수 및 확인 시 유의사항

- 신청자 서명, 농지소재지 이장·거주자의 서명 여부 확인 철저
- 직불금 수령자 성명 및 계좌번호 확인 철저
 - 직불금 “수령자”는 “신청자”와 동일해야하며, 신청자 명의 계좌만 가능
- 임대차계약기간 확인 철저
 - 신청농지가 전년도와 변동이 없을 시 제출 면제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우므로 임대계약기간 종료시점 확인 필수 * '19년부터 국·공유지의 임대차계약서 제출면제에 유의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지급대상 제외 가능여부 안내 철저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자격 요건을 필히 안내하여 민원사례 예방

3. 상한면적 초과 신청 시 처리요령

- 지급상한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농지를 모두 접수하되, 직불금은 지급상한면적까지만 지급

4. 공동소유·경작 농지에 대한 처리

- (공동소유)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는 농지를 신청 하는 경우
 - 공동소유자 중 한명이 다른 사람 지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 받아야 함
 - 공동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농지를 임차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해당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 받아야 함
 - * 일부 공동소유자에게서 무단점유 증명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소유자 지분만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공동경작)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농지를 신청 하는 경우
 - 신청자별로 경계를 명확히 설치하고,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일부위탁 포함)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신청 가능

5. 중복지급이 불가능한 지급대상 농지 * 중복지급 가능(○), 중복지급 불가(×)

구 분	밭고정	논이모작	조건불리	경관보전	친환경	논타작물
쌀고정	×	○	×	○	○	○
쌀변동	×	○	×	○	○	×

참고 4

신청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대상	비고
① 등록신청서	○ 모든 신청자(필수)	○ 매년 제출 ○ 생략 불가
②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과거 쌀직불금을 한 번도 지급받지 않은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	
③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최근 3년 이내에 쌀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자인 경우	
④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⑤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승계대상자일 경우	
⑥ 해당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경작사실 확인서 및 영농기록	○ '18년에 쌀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 ○ 관외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⑦ 지급대상 제외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및	○ 모든 신청자	
-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타인 소유의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	○ 국·공유지는 제출 생략

* 전산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가능

1 지급대상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또는 ②, 필요한 경우 ③

- ① '98년~'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 * 확인자는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② '97년 이전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되었으나, '98년~'00년 동안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 각 1개 이상씩
 - ㉠ '11년 이전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가경작 계약서, 간척지 사용료 납부자료, 토지대장, 농지원부, 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 ㉡ '98년~'00년 동안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경지정리 편입확인서, 공구별 준공처리 확인서, 재해보상 및 복구비 지원 확인서 등
- ③ 지급대상 제외 농지이나 예외규정에 적용됨을 증명하는 서류(하천구역, 주·상·공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신규농지만 해당 (과거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는 제외) / 전산확인 가능시 생략

2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① '05~'08년 중 1회 이상 쌀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③ 등록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을 경작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농업법인은 5만㎡) - ㉠, ㉡ 각 1개 이상씩
 - ㉠ 경작면적 증명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 ㉡ 경작기간 증명 : 신청자 명의의 해당 기간 중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경작사실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등
 - * 2개 이상 읍면동에 분산되어 있는 농지도 면적계산에 포함되며, 휴경면적은 면적계산에 제외
- ④ 등록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 ㉠, ㉡, ㉢ 중 1개 이상
 - ㉠ R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R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 ㉡ 도매시장,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
- ⑤ '04년 이전 1년 이상 논농업 종사하였고,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임대·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경작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중 1개
 - ㉠ 토지대장, 농지원부, 농어촌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확인한 서류 등
 - ㉡ 경작면적 증명서류 또는 농산물 판매액 증명서류 (③과 ④ 참고)

※ 최근 3년 이내에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는 제외 / 전산확인 가능시 생략

3]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① 같은 시군구(연접 시군구 포함)에 소재한 농지 1만㎡이상을 경작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법인은 5만㎡ 이상)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1개 이상)
- ② 전년도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 ㉠, ㉡, ㉢ 중 1개 이상
 - ㉠ R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R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 ㉡ 도매시장,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 ㉢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
- ③ 등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둔 시구에 소재한 농지 1천㎡이상을 등록 직전 1년 이상 논농업에 이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 각 1개 이상씩
 - ㉠ 주소지 증명 : 주민등록등본 등
 - ㉡ 경작면적 증명 : 신청자 명의의 농지원부, 토지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 ㉢ 경작기간 증명 : 신청자 명의의 해당 기간 중 영농자재 구입 또는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영수증, 경작사실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등

*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연접한 읍면동 내 농지도 포함

※ 농촌 외 지역 거주자만 해당 / 전산확인 가능시 생략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승계자는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제출생략

4]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②, ③, ④ 모두

- ① 등록자에게 발급된 등록증
- ② 등록자가 사망,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기 불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진단서, 뇌사 판정서, 실종확인서, 수감확인서, 진단서 등 (1개 이상)
- ③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또는 ㉣, ㉤, ㉥ 각 1개 이상씩
 - ㉠ 등록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 ㉢ 등록자가 치료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이장확인서, 입원증명서 등
 - ㉣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확인서를 의미
- ④ 승계자의 승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승계의사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 등록자가 의식불명 등으로 확인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중 승계자가 아닌 자의 확인으로 같음

※ 승계대상자만 해당 / 전산확인 가능시 생략

5]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② 모두

① 경작사실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

* 휴경으로 신청하는 필지는 경작사실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

② 영농기록

- (관내경작자) ㉠ ~ ㉣ 중 1종 이상, (관외경작자) ㉠ ~ ㉣ 중 2종 이상

* 관내경작자 : 등록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주소지 읍·면·동을 기준으로 연접한 읍·면·동 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포함)

** 관외경작자 : 등록신청하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신청인

㉠ 농산물 판매 영수증 : R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R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도매시장,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

㉡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서류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등

㉢ 종자·육묘 등 구매 서류 : 정부보급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획서 등

㉣ 계약재배 증명서류 : 계약재배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

㉤ 기타 증명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

* 모든 증명서류는 신청자 명의여야 하며, 등록신청 해당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것만 인정

** 마을공동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하는 경우만 인정

※ '18년에 신청자가 쌀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가 관외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제출 / 전산확인 가능시 생략

6] 지급대상 제외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①, ② 모두

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② 타인의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원칙) 임대차 계약서

- (허용)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기간은 매년 확인 필수

※ (농외소득) 모든 신청자. 다만, 전산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 (무단점유) 타인 소유의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만. 다만,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출생략(국·공유지 포함)

참고 5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개요

- **위원장** : 읍·면·동장
-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임기 2년, 재임 가능)
 - 읍·면·동 관할 리·통의 마을 대표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시·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담당자
- **제척·기피·회피** : 심의의 제척·기피·회피는 「행정절차법」 제29조를 준용
- **임무** : 실제 논농업 종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
 - 조사대상에 관외경작자, 신규신청자, 전년도 부적격 판정 신청자는 필히 포함
 - **집중 심사 내용**
 - ① 관외경작자의 논농업 종사여부 확인 : 판매증빙서, 자재구입영수증, 영농기록 등
 - ② 사망, 고령, 중환 등으로 승계받는 자에 대한 심사
 - ③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
 - ④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 ⑤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 ⑥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 ⑦ 농지처분 명령 대상자(해당필지) 등 지급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 ⑧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참고 6

토양검사 적합여부 판단기준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 범위내(1차년도 토양검사) : 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화학성분의 기준범위를 미달하여 벗어날 경우(2차년도 토양검사)

구 분	판 정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적 합
당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 전년도 수확후 토양화학성분	부적합

※ 토양검사 판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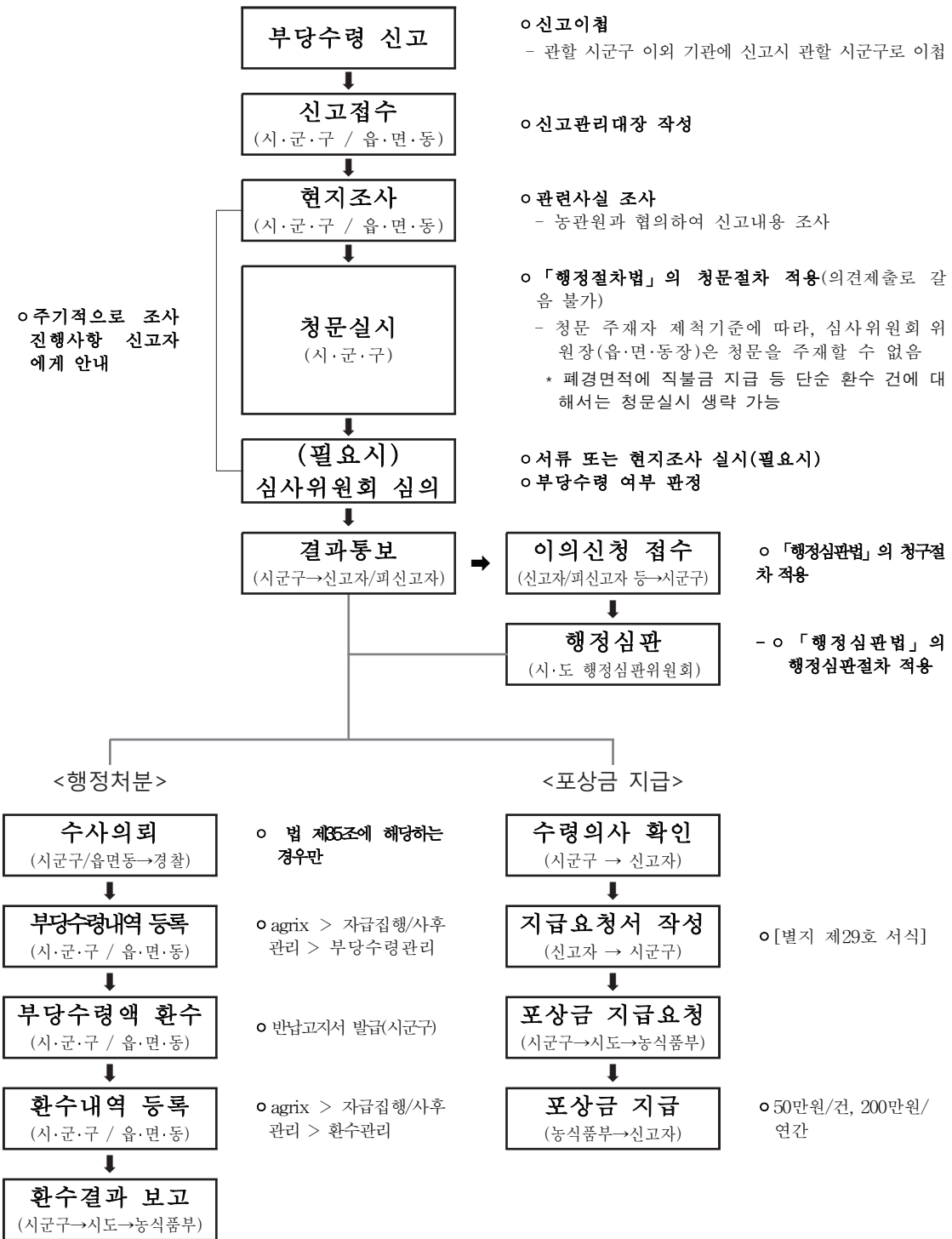
- 1차년도 토양검사결과 2개성분 이상이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함량”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해당농가에 대해서는 시비지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
- 2차년도 토양검사는 1차년도 검사결과 특별관리를 받은 해당필지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토양검사결과 2개 성분 이상이 부적합시 지급제한기준 적용

< 농지의 토양화학성분 기준 함량 >

구 분	유기물 함량 (g/kg)	유효인산함량 (mg/kg)	치환성칼리함량 (cmol+/kg)
일반 농지	11~40	150이하	0.30이하
간척지 농지	11~35	120이하	0.6이하
석회암지대 농지	11~50	150이하	0.3이하
특이산성 농지	20~50	150이하	0.3이하

* 토양화학성분 함량 기준치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에 의한 분석법을 적용하고 농경지 적정 양분함량 기준 등을 반영하여 조정한 수치임

참고 7 부당수령 신고·접수 시 처리절차



※ 부당수령자 중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와 같이 부당수령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경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관련서류를 확보하고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정리할 것

참고 8

직불금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기준(시행규칙 별표)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지급제한 기준은 제외한다)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호가목2)에 따른 등록제한 기간은 연 단위로 감경하여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등록제한 기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을 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1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을 한 경우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5년
나.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2호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다. 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3호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경우(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2)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라. 법 제6조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4호		
1)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2)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	-

위반사항	근거법조문	지급제한 기준	등록제한 기간
<p>마.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p> <p>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p> <p>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p> <p>가) 이웃 농지와 구분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p> <p>나)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p> <p>다)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농업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만 해당한다)</p> <p>3) 2)가)부터 다)까지 중 2개 이상을 위반한 경우</p>	<p>법 제14조 제1항제5호</p>	<p>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p> <p>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1/2 감액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p>	<p>-</p> <p>-</p>
<p>바.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기준 중 영 제10조에 따라 지급요건 기준을 갖춘 농지에 물을 가두는 방법으로 쌀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14조 제1항제5호</p>	<p>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p>	<p>-</p>
<p>사.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p> <p>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p> <p>가) 농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생산단계의 농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p> <p>나) 화학비료: 농촌진흥청장이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권장하는 시비량 기준</p> <p>2) 1)가) 및 나)를 모두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경우</p>	<p>법 제14조 제1항제5호</p>	<p>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1/2 감액</p>	<p>-</p>
<p>아.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경우</p>	<p>법 제14조 제1항제6호</p>	<p>해당 농지의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p> <p>해당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전부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 미지급</p>	<p>-</p>

■ [별지 제1호 서식]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등락 []변경등록 농업경영체 []신청서 (농업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조해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9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 다만, 직불금·보조금 신청을 수반하는 경우
			30일 90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배부기관	직접지불금·보조금 신청	[]별직불금 []발고정직불금 []농이모작보조금(발농업보조금) []신청 없음
------------	------	--------------	-----------------------------------------------

1. 일반현황

성명	국적		국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자우편
			국외			
주수 농업인	주민등록주소지		우편번호			
	미올명					
영농 이력	농업시작형태	[]전 생애 농업에 종사(신규포함) []다른 산업에서 전환(귀농포함)		농업종사형태 []진입 []겸업		
	농업종사기간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경영주와의 관계	연락처	농업시작형태	농업종사 형태	농업종사기간	③ 공동경영주 여부(O, X)
				[]전 생애 농업에 종사 []다른 산업에서 전환	[]진입 []겸업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경영주 외의 농업인				[]전 생애 농업에 종사 []다른 산업에서 전환	[]진입 []겸업	년(농업 시작 연도 : 년)	

※ ③ **공동경영주 여부**란 ② 경영주 외의 농업인란 중 **경영주와의 관계**란에 '배우자'로 기입한 경영주의 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O, 반대하는 경우 X로 표시합니다.
(경영주 외의 농업인에 대해서는 뒤쪽에 있는 작성방법 1. 일반현황 ②란 경영주 외의 농업인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2. 농지 및 농작물재배 / 직불금·보조금·신청 ⑥은 쌀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이 경우 ⑤-1 지목란을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경영주명(생년월일) : (서명 또는 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연락처 : 연락처 :

주민등록주소지 : (마을명 :)

④(신청인1 성명) (연락처) (은행명) (은행명)
 (계좌번호) (계좌번호) (계좌번호)

※ ④ 신청인란은 직불금 지급과 관련된 항목으로, 동일한 농업경영정보 등록부에 등록된 농업경영주 또는 농업경영주외의 농업인만 해당되며, 직불금 지급대상 필자별로 신청인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번호	⑤-1 지목		⑤-2 농지면적(m ²) A≥B+C+D		⑤-3 시설 현황		⑤-4 품목별 재배면적		⑥ 직불금·보조금 신청				필자삭제 사유	농지 소유자																			
	공부	실제	자경	임차	실적	종류	실적	재배	⑥-1 신청 사업명	⑥-2 재배 품목	⑥-3 신청 면적 (m ²)	⑥-4 농지 이용현황 (○, X) <기초연도> 쌀: '98~'00 밭: '12~'14 조건: '03~'05			⑥-5 신청인 성명 (○, X)	진흥 지역 여부 (○, X)																	
농지소재지	공부 실제	자경 임차 (... ~...)	실적 경작 면적 (B)	공부(A) A≥자경+임차	미이용	휴경 폐경 (C) (D)	실적	종류	실적	재배 품목	노지 (m ²)	시설	노지 (m ²)	⑥-1 신청 사업명	⑥-2 재배 품목	⑥-3 신청 면적 (m ²)	⑥-4 농지 이용현황 (○, X) <기초연도> 쌀: '98~'00 밭: '12~'14 조건: '03~'05	⑥-5 신청인 성명 (○, X)	진흥 지역 여부 (○, X)	필자삭제 사유	농지 소유자												

※ ⑤-4 시설종류(번호기입) : ① 온실(유리) ② 온실(경질판) ③ 온실(비닐) ④ 육묘장(유리) ⑤ 육묘장(경질판) ⑥ 육묘장(비닐) ⑦ 재배사
 ※ ⑥번 직불금·보조금의 등록신청은 쌀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근거 법령(「농업소득의 보
 장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쌀직불제도, 시행규칙」에 따른 쌀직불제도를 함께 제출합니다.(단, 쌀직불제도의 '보조금 신청시 첨부서류' 참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거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
 정」 제33조 또는 제40조의10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받은 경우 보조금 등을 환수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⑥-2 쌀직불금은 (벼/벼 이외/휴경), 밭고정직불금은 (경작/휴경), 조건불리보조금은 (경작/휴경), 논이모작보조금은 (실제 재배품목명)을 적습니다.

3. 가축·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축산·곤충사육 농업경영체가 이념

⑦ 사육시설 현황				⑦-3 사육정보	
⑦-1 번호	사육시설 소재지	시설면적(m ²)		경영 형태	용도 (축사 또는 부대시설)
		소재지 공부 면적(m ²)	공부 ⑦-2 실제		
				자영	
				임차	

4.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작성기준일 : 전년도 연간) ※ ⑩ 주요품목 및 제비면적(사육규모)이 기재된 농업경영체만 작성합니다.

⑩ 생산유통	⑩-1 주요 품목	재배면적(사육규모)	⑩-2 생산량	⑩-3 판매량	⑩-4 판매금액(만원)	⑩-5 주요 판매처
		식량				
	채소					
	과수					
	특용·약용					
	축산					
	기타					

* 주요 판매처(번호 기입) : ① 정부공공비축, ② 농협, ③ 민간도정가공업체, ④ 도매시장, ⑤ 직거래, ⑥ 기타(상세 내용) 중 비중이 높은 하나만 작성합니다.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 쌀직불금 [] 밭고정직불금, [] 조건불리보조금, [] 논이모작보조금(발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약정)을 신청합니다.
-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 쌀직불금, [] 밭고정직불금, [] 조건불리보조금, [] 논이모작보조금(발농업보조금)) 등록(약정)사항의 변경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1 (서명 또는 인)
 신청인 2 (서명 또는 인)
 담당·면장·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m²) 또는 중절지(80g/m²))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신시스템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신청인의 농지 소재지 및 가족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기입증명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교육인력포털시스템 (agriedu)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후계농/우수후계 농업경영인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축산업 등록제·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림사립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증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이 신청서에 기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신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쌀직불금, 밭고정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신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 위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신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쌀직불금, 밭고정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의 지급이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주)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용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발농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발농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주 외 농업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작성방법

※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적습니다.

1. 일반사항 : 농업인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①란의 경영주인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내에서 농작물의 경작, 가축의 사육, 임업 등 농업경영의 의사결정 및 농업소득의 귀속 주체가 되는 농업인을 말합니다.

②란의 경영주 외의 농업인은 경영주를 제외한 농업인을 말합니다.

* 경영주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경영주의 가족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부득이한 사유로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또는 경영주와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국내 체류자가 경영주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동일한 사람은 예외로 합니다)
- 경영주의 주소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나 제61조에 따른 농촌촌에 위치하는 경우로서 경영주와 실제 함께 거주하는 농업종사자인 가족 또는 경영주와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른 가족으로서 영농사실을 확인받은 가족
-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임의가입자(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18세 이상인 자만 해당합니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
- * 경영주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인 경우 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 * 경영주와의 관계: 가족원인 경우 주민등록상 관계를 자동으로 반영하며, 고용인의 경우 직접 작성합니다.
- ③란의 공동경영주 여부란은 경영주 외의 농업인이 경영주의 배우자인 경우에만 경영주의 배우자가 해당란에 표시합니다.

2. 농지 및 농작물재배 / 직불금·보조금 신청 : 해당 농업경영체가 경작하고 있는 모든 농지 정보를 작성합니다. 등록농지 중 직불금·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⑥란에 신청합니다.

④란은 직불금·보조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 성명,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신청인은 해당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농업인(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⑤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필지 삭제 시 삭제일자와 삭제사유를 작성합니다.

* 필지삭제 사유 구분 : 매매(증여, 상속 포함), 임대(자경농지 삭제), 임차종료(임차농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

⑤-1란은 해당 지번의 실제 이용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⑤-2란은 해당 지번의 면적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자경·임차 :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실제경작면적 :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경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농지면적

- 폐경면적 : 농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형상이 변경된 면적(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 기준 적용)

⑤-3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번호기입)

- 시설종류 : ①온실(유리), ②온실(경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유리),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비닐),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⑤-4란은 해당 지번의 재배현황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 해당 지번의 농지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재배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 노지인 경우 노지면적란, 시설인 경우 시설면적란에 적습니다.

작성방법

- ⑥란은 직불금·보조금 대상 농지에 대하여 쌀직불금, 밭고정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 ⑥-1란의 신청사업명은 쌀, 밭고정, 조건불리, 논이모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체크합니다.(다만, 쌀과 논이모작은 동시에 선택 가능함)
- ⑥-2란의 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제배품목을 반드시 적습니다.(제배품목에 따라 직불금·보조금 지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논이모작직불금 신청자는 겨울철 논에 제배한 사료·식량 작물의 품목을 적습니다.
- ⑥-3란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서 직불금·보조금 신청 면적을 작성합니다.
 - * 쌀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은 실제 경작면적과 휴경면적을 각각 해당란에 작성합니다.
 - * 논이모작은 논으로 이용되는 논지(쌀직불금 지급대상 논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논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논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해당 논지의 논농업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갈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등을 재배한 면적을 적습니다.
 - ⑥-4란은 아래의 기준연도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0, 해당하지 않는 경우 X로 표시합니다.(신규필지만 표시하고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신(=)을 굵고 수정합니다.)
 - * 쌀 : 1998. 1. 1. ~ 2000. 12. 31. 해당 농지를 논 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골)에 이용하였을 경우
 - * 밭고정 : 2012. 1. 1. ~ 2014. 12. 31. 해당 농지를 밭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 조건불리 : 2003. 1. 1. ~ 2005. 12. 31. 해당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초지로 관리하였을 경우
 - * 논이모작 : 쌀직불금 지급대상 논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논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논지
 - ⑥-5란은 직불금·보조금의 신청인 성명을 작성합니다. 신청인은 해당 농업경영체의 농업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④란의 신청자(은행, 계좌번호)에 반드시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가축·곤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⑦란은 가축·곤충 등 사육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 형태 및 용도(축사 또는 부대시설)를 적습니다(축산·곤충사육 농업인이 아닐 경우 축산·곤충사육 농업경영체가 아님에 체크합니다).
- ⑦-1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시설정보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1개의 시설이 여러 필지에 걸쳐 위치한 경우 동일한 시설번호를 적습니다.
- ⑦-2란은 실제 사육시설의 총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축산업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사육시설 면적 또는 부화용알 생산시설 면적을 적습니다.
- ⑦-3란은 사육하고 있는 가축 또는 곤충의 품목(종) 및 신청일 현재의 사육규모(마릿수/군/㎡)를 적습니다(다만, 신청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출하하여 가축이 없는 경우 연중 평균 마릿수를 기재하되, 부화업인 경우는 1회 평균 입란 개수를 기재합니다).

4.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 ⑧란은 주요 품목, 제배면적(사육규모)이 기재된 농업경영체만 작성하며, 전년도에 생산하여 판매한 농산물 등의 생산량, 판매량, 판매금액, 주요 판매처를 적습니다. 다만, 기재된 품목이 전년도에 제배되지 않았을 경우 제배면적(사육규모)란에 '0'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⑧-1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⑧-2란은 ⑧-1란에 기재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생산량을 적습니다.
- ⑧-3란은 ⑧-1란에 기재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량을 적습니다.
- ⑧-4란은 ⑧-1란에 기재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금액을 적습니다.
- ⑧-5란은 판매된 주요 품목의 주요 판매처 1개만 적습니다.(번호기입)
 - * 주요 판매처는 ① 정부공공비축, ② 농협, ③ 민간도정가공업체, ④ 도매시장, ⑤ 직거래, ⑥ 기타(상세 내용)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보조금등 신청 시 첨부서류

I. 쌀직불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갈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논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논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보조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 1) 관내(관내 이외의 자·공통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합니다)
 - 3)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합니다)
 - 4)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합니다)
 - 5) 버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 6) 그 밖에 논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1) 및 2)의 서류
 - 1) 관내(관내 이외의 자·공통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장·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2)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보조금등 신청 시 첨부서류

4. 신청인이 쌀직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II. 발고정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점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는 농지를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신청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그 외 증명서류는 1. 쌀직불금 신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III.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예시) 신청자 명의의 영농장제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계약서, 초지조성허가증 등
2. 임차·사용자 농업인·농업법인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또는 초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원칙)
 - * 다만, 농지소유자의 해외 장거 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택배 영수증 등 농지소유자가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로 갈음 가능
3. 논·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 * 다만, 이전 연도 신청(등록) 농지의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정당하게 직불금이 지급되었다면 생략 가능
- * 직불금 신청시 각종 증명서류의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료 한정
4. 그 외의 증명서류는 1. 쌀직불금 신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 [별지 제2호 서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농업경영체

[] 등록

신청서 (농업법인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십시오.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0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 다만, 직불금·보조금 신청을 수반하는 경우	30일 90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배부기관	직접지불금·보조금 신청 조금) [] 신청 없음	[] 쌀직불금 [] 받고정직불금 [] 조건불리보조금 []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1. 일반현황

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합명 [] 합자 [] 주식 [] 유한)	
① 법인현황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도	전화번호	팩스	
	법인 주소	본점	(마을명 :)	
		본점	(마을명 :)	
주요 사업	[] 생산 [] 가공 [] 유통 [] 수출 [] 농업서비스 [] 관광·휴양 [] 기타 [] 마을법인			
② 대표자	성명	국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국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③ 구성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직책	농업인 여부	증빙서류	구 분	출자자 수 (명)	출자액(만원)
						④ 출자규모		
						비농업인		
						계		

※ 영농조합법인 : 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 : 등기이사 및 농업인 출자자

⑤ 상용근로자 수	내국인	명	외국인	명
-----------	-----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농지 및 농작물재배 / 직불금·보조금 신청

※ ①은 쌀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농업임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이 경우 ⑥-1 지목란을 함께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명(생년월일) :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법인명 : ()
 보조금 등 수령계좌 : () 은행 (계좌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 ()
 법인주소지(마을명) : ()

⑥-1 지목		⑥-2 농지면적(m²) A≥B+C+D		⑥-3 시설 현황		⑦ 직불금·보조금 신청				필지삭제 사유 -매매 -임대 -임차종료 -폐경 -기타()	농지 소유자	
		공부(A) A≥자경+임차	실제 경작 면적(B)	미이용 휴경 폐경 (C) (D)	시설 종류	시설 면적	재배 품목	⑦-2 재배 품목	⑦-3 신청 면적 (m²)			⑦-4 농지 이용현황 (O, X) <기준연도> 셀: '98~'00 밭: '12~'14 조건: '03~'05
농지소재지 번호	공부	자경 (m²) (.....)	경작 면적 (B)	휴경 폐경 (C) (D)	시설 종류	시설 면적	재배 품목	⑦-2 재배 품목	⑦-3 신청 면적 (m²)	⑦-4 농지 이용현황 (O, X) <기준연도> 셀: '98~'00 밭: '12~'14 조건: '03~'05	진흥 지역 여부 (O, X)	농지 소유자
	실제	임차 (m²) (.....)	경작 면적 (B)	휴경 폐경 (C) (D)	시설 종류	시설 면적	재배 품목	⑦-2 재배 품목	⑦-3 신청 면적 (m²)	⑦-4 농지 이용현황 (O, X) <기준연도> 셀: '98~'00 밭: '12~'14 조건: '03~'05	진흥 지역 여부 (O, X)	

※ ⑥-3 시설종류(번호기인) : ① 온실(유리) ② 온실(경질판) ③ 온실(비닐) ④ 육묘장(유리) ⑤ 육묘장(경질판) ⑥ 육묘장(비닐) ⑦ 재배사

※ ⑦번 직불금·보조금의 등록신청은 쌀직불금,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농업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근거 법령(「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뒤쪽의 '보조금 등 신청시 첨부서류' 참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거나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 또는 제40조의10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받은 경우 보조금 등을 환수하거나 향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⑦-2 쌀직불금은 (벼/벼 이외/휴경), 밭고정직불금은 (경작/휴경), 조건불리보조금은 (경작/휴경), 논이모작보조금은 (실제 재배품목명)을 적습니다.

3. 기축·관충 사육시설 및 사육규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축산·관충사육 법인이 아님

⑧-1 번호	사육시설 소재지	⑧ 사육시설 현황				⑧-3 사육정보		
		소재지 공부 면적(㎡)	시설면적(㎡)		경영 형태	용도 (축사 또는 부대시 설)	사육품목	사육규모(마릿수 /군/㎡)
			공부	⑧-2 실제				

4.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작성기준일 : 전년도 연간)

(단위: ㎡, kg, 마릿수, %, 만원)

⑨-1 주요 품목	⑨-2 재배면적 (사육규모)	⑨-3 생산량	⑨-4 판매량	⑨-5 판매금액	⑨-6 판매처별 비율						품목	판매금액		
					정부공공비축	농협	민간도정 가공업체		직거래	기타				
							도매시장	농협계통출하					수집상	수집상
⑨ 생선 유통	식량													
	체소													
	과수													
	특용 약용													
축산														
기타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5. 추정 소득(전년도 연간)·자산·부채(작성기준일 : 전년도 12월말)

(단위: 만원)

⑪ 농업소득	⑫ 농업 외 소득	⑬ 자산	⑭ 부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40조의5제1항에 따라 ([] 쌀직불금 [] 밭고정직불금, [] 조건불리보조금, [] 논이모작보조금(발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약정)을 신청합니다.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 쌀직불금, [] 밭고정직불금, [] 조건불리보조금, [] 논이모작보조금(발농업보조금) 등록(약정)사항의 변경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 인	읍장·면장·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등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발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발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제공·활용 동의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항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항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외 조항원 또는 등기이사)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검토 및 확인	→	등록부 작성	→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발급
신청인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97mm×210mm [백상지(80g/㎡) 또는 증질지(80g/㎡)]

작성방법

※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적습니다.

1. 일반현황 : 농업법인과 관련한 사항을 등록합니다.

- ①란은 법인등기부상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설립연도, 연리처, 법인 소재지를 적습니다.
 - * 전화번호, 팩스 및 전자우편은 법인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적되, 법인이 소유·이용하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사용하는 것을 적습니다.
 - * 주요사업은 정관으로 정한 법인의 주요사업에 해당하는 []칸에 표시를 하되, 중복선택 가능합니다.
 - * 체험마을 등 마을단위로 농업법인을 만든 경우에는 마을법인을 표시 합니다.
- ②란은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습니다.
- ③란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영농조합법인은 대표자 포함 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등기이사외 농업인 출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직책, 농업인 여부, 농업인 증빙 제출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농업인확인서·고용계약서)를 적습니다.
- ④란의 출자규모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농업인)과 준조합원(비농업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과 비농업인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⑤란은 출자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

2. 농지 및 농작물재배 / 직불금·보조금 신청 : 해당 농업경영체가 경작하고 있는 모든 농지 정보를 작성합니다. 등록농지 중 직불금·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⑦란에 신청합니다.

- ⑥란은 필지별로 나누어 작성한 농지정보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필지 삭제 시 삭제일자외 삭제사유를 작성합니다.
 - * 사유구분 : 매해(중여, 상속 포함), 임대(자경농지 삭제), 임차종료(임차농지 삭제), 폐경, 기타(상세사유 기재)
- ⑥-1란은 해당 지번의 실제 이용형태에 따라 논, 밭, 과수원, 초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자경·임차 : 공부상 면적 기준, 자경 및 임차에 해당되는 각각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실제경작면적 : 공부상 면적 중 실제 경작(농작물 식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면적입니다.(공부상면적 ≥ 실제경작면적+휴경면적+폐경면적)
 - 휴경면적 :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경지이지만, 일시적으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농지면적
 - 폐경면적 : 농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농지정상이 변경된 면적(쌀고장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 기준 적용)
- ⑥-3란은 해당 지번의 시설종류와 시설면적을 작성합니다.(번호기입)
 - 시설종류 : ①온실(유리), ②온실(강질판), ③온실(비닐), ④육묘장(비닐), ⑤육묘장(경질판), ⑥육묘장(유리), ⑦재배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시설면적(㎡)은 해당 시설의 면적을 작성합니다.
- ⑥-4란은 해당 지번의 재배현황을 작성합니다.
 - 재배품목 : 해당 지번의 농지에 연간 재배하는 모든 품목을 적습니다.
 - 재배면적 : 노지인 경우 노지면적만, 시설인 경우 시설면적만에 적습니다.
- ⑦란은 보조금등 대상 농지에 대하여 쌀직불금, 밭고장직불금, 쌀고장직불금, 조간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 ⑦-1란의 신청사유명은 쌀, 밭고장, 조간불리, 논이모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체크합니다.(다만, 쌀과 논이모작보조금은 동시에 선택 가능합니다)
- ⑦-2란의 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재배품목을 반드시 적습니다.(재배품목에 따라 직불금·보조금 지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논이모작보조금 신청자는 겨울철 논에 사료·식량 작물을 재배한 품목을 적습니다.
 - ⑦-3란은 해당 사항을 참고해서 직불금·보조금 신청 면적을 작성합니다.
 - * 쌀직불금, 밭고장직불금, 조간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은 실제 경작면적과 휴경면적을 각각 해당란에 작성합니다.
 - * 논이모작은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에서 전년도 10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해당 농지의 논농업 휴경기간에 사료작물, 갈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등을 재배한 면적을 적습니다.
- ⑦-4란은 아래의 기준연도와 조간에 해당하는 경우 0, 해당농지를 논 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굴)에 이용하였을 경우
 - * 쌀 : 1998. 1. 1. ~ 2000. 12. 31. 해당농지를 논 농업(벼, 미나리, 연근, 왕굴)에 이용하였을 경우
 - * 밭고장 : 2012. 1. 1. ~ 2014. 12. 31. 해당농지를 밭농업에 이용하였을 경우
 - * 조간불리 : 2003. 1. 1. ~ 2005. 12. 31. 해당농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초지로 관리하였을 경우
 - * 논이모작 :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논의 형상과 기능을 갖춘 농지

작성방법

3. 가족·군중 사무시설 및 사유규모 :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①란은 가족·군중 사무시설의 소재지, 시설면적, 경영 형태 및 용도(숙사 또는 부대시설)를 적습니다.(숙산·군중 등 사유농가가 아닐 경우 축산·군중 등 사유농가 아님에 체크합니다)
- ②-1란은 필치별로 나누어 작성한 시설정보 순서대로 1번부터 적습니다. 1개의 시설이 여러 필지에 걸쳐 위치한 경우 동일한 시설번호를 적습니다.
- ②-2란은 실제 사무시설의 총면적을 적습니다. 다만, 축산입허가증 또는 가족사육업등록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사유시설 면적 또는 부화용알 생산시설 면적을 적습니다.
- ②-3란은 사유하고 있는 가족 또는 군중의 품목(종) 및 신청일 현재의 사유규모(미릿수군/㎡)를 적습니다(다만, 신청일 이전에 일시적으로 출하하여 가족이 없는 경우 영종 평균 미릿수를 기재 하되, 부화업인 경우는 1회 평균 입란 개수를 기재합니다).

4.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작성기준일 : 전년도 연간)

- ①란은 전년도에 유통·판매한 농산물의 실적입니다.
- ②-1란은 전년도 생산품목, 유통·판매 등 취급 농산물의 품목, 주요 서비스 종류를 적습니다.
- ②-2란은 ②-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제매면적을 적습니다. 제매 면적이 없는 범인의 경우에는 공란으로 둡니다.
- ②-3란은 ②-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생산량을 적습니다. 생산 실적이 없는 범인의 경우에는 공란으로 둡니다.
- ②-4란은 ②-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전년도 총 판매량을 적습니다.
- ②-5란은 ②-1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총 판매금액을 만원단위로 적습니다.
- ②-6란은 ②-5란에 기재한 주요 품목의 총 판매금액 중 판매처별 점유비율을 백분율(%)로 적습니다.
- ③란은 전년도에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한 품목의 명칭과 연간 판매금액을 만원 단위로 적습니다.

5. 추정 소득·자산·부채 : 전년도의 해당 소득금액을 적습니다.(작성기준일 준수)

- ①란은 전년도의 농업소득 총액을 적습니다.
- ②란은 아래의 농업 외 소득금액 총액을 적습니다.
 - 어업, 농산물 가공업, 농업서비스, 제조업 등 기타 산업 종사를 통해 전년도에 얻은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농업 외 산업 종사로 지급받은 임금 및 다른 농가에 고용되어 지급받은 소득을 적습니다.
 - 임대수입(농지, 대지, 시설물, 대농구 등), 이자·배당수입, 유가증권 매매차익 등의 금액을 적습니다.
 - 농업보조금, 실업수당, 산재보험금, 기초연금, 같이 살지 않는 가족 또는 친인척 등 다른 가구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은 용돈·생활비 등
 - 경조수입(축의금, 조의금 등), 퇴직일시금, 사고보상금, 이주비 주거대책비 일시금, 세무 환급금, 사례금 등 비정기적으로 정부, 공공기관, 다른 가구 등으로부터 얻은 소득금액
- ③란은 아래의 자산 총액을 적습니다.
 - 토지, 건물, 기계·기구 및 비품, 대(大)식물과 대(大)동물 등 고정자산의 금액
 - 현금, 예금, 저축성 보험금, 갯돈, 빌려준 돈, 미수금, 선금 등 금융자산의 금액
 - 소(小)동물, 미저분 농축산물, 미사용 구입자재 등 재고자산의 금액
- ④란은 아래의 부채 총액을 적습니다.
 - 생산성 자금 중 영농투자 확대(경작지, 건물, 기계, 비료, 농약, 동식물, 사료 구입 등)를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
 - 기계운영을 위한 생산성 자금(추거용 건물), 무화용품비, 관촬상제비, 의료비, 교육비, 기타 생활비 등 기계운영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
 - 생산성 자금 중 점검활동(토지·건물·기계 구입, 그 밖의 점검활동을 위한 지출)을 위하여 차입한 부채의 금액
 - 토지, 건물 등을 빌려주자 받은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생산성 자금을 위한 생산성 자금(검역 및 영농활동과 관계없이 재산증식을 위한 토지, 임야 등의 부동산 구입)을 위한 부채, 다른 사람의 채무 보증을 신 후 대신 갚게 된 부채 등의 금액

※ 등특신청서 아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 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확인서, 고용계약서 중 택 1 : 영농조합법인인 대표자를 포함한 조합원 5명 이상이 이사회(총회)회의록, 이사회(총회)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보조금등 신청 시 첨부서류

I. 쌀직불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농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1997년 12월 31일 이전 농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농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같은 규칙 제3조제3호 및 제4호나목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1)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서류
 - 1) 관내(관내 이외의 자 공통)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2) 쌀 등 농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판매분만 해당합니다)
 - 3) 농약·비료 등 농자재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합니다)
 - 4)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의 구매분만 해당합니다)
 - 5) 버 등의 계약재배를 증명하는 서류
 - 6) 그 밖에 농농업에 종사함을 증명하는 서류
 -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관내경작자 외의 자: 다음 1) 및 2)의 서류
 - 1) 관내(관내 이외의 자 공통)경작자용 경작사실 확인서.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되,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장·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2) 가목2)부터 6)까지 중 2개 이상의 서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보조금등 신청 시 첨부서류

4. 신청인이 쌀직불금의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 등 관련 서류. 다만, 신청인이 농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 관련 자료 확인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4호에 따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해당 농지가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직전 연도에 무단점유가 아닌 것으로 증명된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및 임대권·임차권의 변화가 없으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II. 받고정직불금,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신청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동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는 같은 항 제1호 단서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금을 받지 않은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2)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이전 밭농업에 1년 이상 이용된 농지로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불가피하게 밭농업이 중단된 농지인 경우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는 농지를 논이모작보조금(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등록신청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그 외 증명서류는 1. 쌀직불금 신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III.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되, 읍장·면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초지를 관리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예시) 신청자 명의의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영수증, 계약재배 계약서, 초지조성허가증 등
2. 임대차/사용차 농업인/농업법인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등 무단으로 점유한 농지 또는 초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원칙)
 - * 다만, 농지소유자의 해외 장기 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로 갈음 가능
3. 논·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확인서
 - * 다만, 이전 연도 신청(등록) 농지의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정당하게 직불금이 지급되었다면 생략 가능
 - * 직불금 신청시 각종 증빙서류의 농지 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등록신청자와 민번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료 한정
4. 그 외 증명서류는 1. 쌀직불금 신청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와 동일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 서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대상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법인명·대표자명)		
	주소		
제출 증명자료			

변경신청 내용

기존 등록 내용	변경신청 내용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
	주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정보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유의사항

- 신청인은 변경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2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변경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은 경영주 또는 법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등)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2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데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아래 확인사항 중 *표시된 사항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공공이용시스템
농지 소재지 및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교육인력포털시스템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후계농/우수후계농업경영인시스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해당 개별사업관리시스템
농업에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축산업 등록제·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정보	
농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친환경인증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농업경영체 등록 담당 공무원이 농업경영체 등록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며, 쌀직불금, 받고정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발농업보조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보조금 등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쌀직불금, 받고정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논이모작보조금(발농업보조금)의 지급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전망 지원, 용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농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그 밖에 농정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발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에 제공하고, 종합소득, 복지급여액, 면세유류 배정정보, 농기계·농자재 거래내역 등 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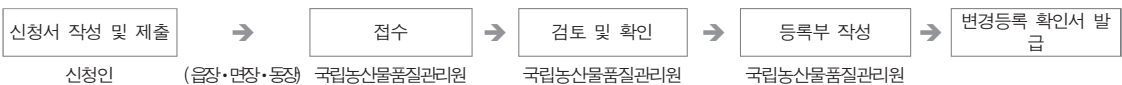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발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계획(00시·군·구, 농관원 00사무소)

시·군·구 및 농관원 간 업무협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 참석기관 및 참석자 :
- 협의 사항 :

주요 협의 내용

- 집중 접수기간(읍·면 별) 일정

시·도	시·군·구	읍·면·동	공동접수센터 운영여부(O/X)	운영일자

- 기관간 협조체계
- 기타 협의시 논의된 내용

향후 추진일정

-

※ 기타 기재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신청구분 (논,밭,조건)	농지 소재지			면적(㎡)	대상직불 (쌀, 밭, 조건 중 택1)
		읍·면·동	리·통	지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제2호 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로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는 다음과 같이 이용된 농지(초지)임을 확인합니다.

- 쌀직불 : '98.1.1부터 '00.12.31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
- 밭직불 : '12.1.1부터 '14.12.31까지 밭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이외 작물 재배)
- 조건불리직불 : '03.1.1일부터 '05.12.31.까지 농업에 이용되거나 초지로 관리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승계의사 확인서

등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농지	농지 소재지			면적(㎡)	농지이용면적(㎡)		
	읍·면·동	리·통	지번		벼 재배	벼 외 작물재배	휴경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등록자는 승계자 ()에게 ()의 사유로 승계함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등록자				
* 등록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승계자 외 1명 이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자와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 및 방법으로 위 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취소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경작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신청구분 (○표)	농지 소재지			공부상면적 (㎡)	농지이용			
		읍·면동	리·통	지번		재배면적(㎡)			재배 기간 (연도)
				벼	벼외	휴경			
	쌀, 밭, 조건								
	쌀, 밭, 조건								
쌀, 밭, 조건									

※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곳의 []에 √ 표를 합니다.

[] 1년 이상 경작사실 확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신청인이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기간 동안 중 1년(시행규칙 제3조제3호) 또는 직전 1년 이상(시행령 제5조 ‘농업 주업 요건’) 신청 대상 농지를 경작했음을 확인합니다.
----------------------------	--------------------------------------------------------------------------------------------------------------------------------------------------------------

[] 경작사실 확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청인이 농업소득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의 경작자임을 확인합니다.
-------------------	-----------------------------------------------------------------------------------------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모든 경우에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	--	--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 위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쌀() 밭(고정, 논이모작) 조건불리()

<접수번호 : >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 절 ----- 취 ----- 선 -----

<접수번호 :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쌀() 밭(고정, 논이모작) 조건불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대상농지 및 면적 등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 최종 확정 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읍·면·동장(사무소장) (인)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공통)

※ 해당 관할 지역 지급대상자에 대해 직접 접수받은 내역과 농관원(사무소) 및 타 지자체(읍·면·동)에서 이송받은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관리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접수 내역 ²⁾		이송 여부 ³⁾ (O,X)	전산 입력 여부 (O,X)	비고 (접수자)
		주소	생년월일	경영주 성명 ¹⁾ 지역 신청자 성명(전체)	직접 접수	이송			

- 1) 신청서의 경영주 이름을 기재하고, **점선 밑*의**란에 관할 지역 내 신청자 전부 표기
 예시) ① 경영주와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같은 경우 : 경영주 성명 표기
 ②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를 포함하여 여러명인 경우: 경영주를 포함한 신청자 모두 표기
 ③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와 다를 경우 : 신청자 명 표기(복수일 경우 전부 표기)
- 2) 직접 접수 받은 경우는 직접접수란에 ‘O’, 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1’, 타 지자체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2’로 표기
- 3) 직접 접수 또는 농관원으로부터 최초 이송받은 읍면·동이 타 지급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하였는지 여부

통합 신청서 인수인계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 신청과 관련하여 ○○와 ○○ 간에 아래 사항에 대해 이상 없이 인수인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직불금 신청 내역 사본 000부

0000년 00월 00일

인 계 자 (소속) ○○ 직 이름 서명

인 수 자 (소속) ○○ 직 이름 서명

붙임 : 인수인계 내역

인수인계서 내역

접수번호	경영체명 (신청자명)	주소지	신청내용			
			쌀	밭	조건	비직불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등록신청자 성명				
등록신청 농지 지번				
등록신청 농지 면적				
이의 신청 내용				
<p style="margin-top: 20px;">「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0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한 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이의신청자 (인)</p> <p style="margin-top: 20px;">○○○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p>				

■ [별지 제12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 월일 (법인 등록 번호)	농업진흥지역 구분(㎡)			농지이용 현황(㎡)				등록 연월일	변경 사항
			합계	안 면적	밖 면적	합계	벼재배 면적	벼 외 작물 재배 면적	휴경 면적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등록번호 제 호

년도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 대상 농지	농지 소재지			농지 소유자 성명	합계	농업진흥지역 구분		농지이용면적(m ²)		
	읍·면	리·동	지번 (임시지번)			안(m ²)	밖(m ²)	벼 재배	벼 외 작물재 배	휴경
합계										

위 신청인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 구청장 직
인

- * 등록증을 받은 후 등록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또는 쌀 생산농지의 면적이 변동되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9월 15일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때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모든 농지의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 전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제15조에 따른 부당이득금·가산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제3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이 등록증은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번호 제 호

년도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 내용	농지 소재지			신청면적(m ²)		
	읍·면	리·동	지번 (가지번)	벼 재배	타작물재배	휴경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보전(쌀 고정·변동)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제외사유 :

20 년 월 일

시장
군수 [인]
구청장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지불금 제외자 대장

번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신청면적(m ²)	제외사유

※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및 신청농지 전체가 대상농지에서 제외된 경우

20 년 월 일
○○ 시·군·구청장(읍·면·동장) (직인)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농지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 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m ²)	폐경 면적 (m ²)	신청면적(m ²)			조사결과 (불이행 항목 “○” 표시)					비고 (불일치 사유 등)
읍면동	본번	부번			벼	벼이외	휴경	①	②	③	④	⑤	

※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①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관리 ②이웃 농지와 경계 설치 및 관리 ③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④ 농지주변의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 ⑤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 항목 중 불이행 항목란에 “○” 표시

※ 비고란에는 불일치 사유 및 면적(일부 부적합 포함) 등 기재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등록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 상 면적 (m ²)	신청면적(m ²)			부적합 면적 (m ²)	조사결과 (불이행 항목 “○” 표시)					비고 (불이행 사유 등)
읍면동명	본번	부번		벼	벼이 외	휴경		①	②	③	④	⑤	

※ 조사결과 항목별 내용(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 : ①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 / ②이웃 농지와 경계 설치·관리
 ③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 제거 / ④ 농지주변의 용배수로 유지·관리
 ⑤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지 제18호 서식)를 농지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 · 사무소장

쌀소득보전직불금 이행점검 결과 보고

읍·면·동 (사·군·구)	등록신청 농가						이행 농가						불이행 농가						비고
	농가 수	필지 수	농지면적(m ²)				농가 수	필지 수	농지면적(m ²)				농가 수	필지 수	농지면적(m ²)				
			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계	벼 재배	벼 이외	휴경	
합계																			

※ 1ha = 10,000m²

○ 보고절차

- 농관원 사무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관원 시·도지원장
 - * 농관원 사무소는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농관원 시·도지원장 → 시·도지사 및 농관원장
- 농관원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년산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및 자금 요청

시·군·구	지급 대상		농약 잔류검사 부적합		토양검사 부적합		자금 소요액 (원)	농협경제지주회사 취급사무소
	인원	벼재배면적 (㎡)	인원	면적(㎡)	인원	면적(㎡)		
00시								

※ 1ha = 10,000㎡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농협경제지주회사 취급 사무소 : 관내 농협경제지주회사 농정지원단을 원칙으로 하되, 관내 농정지원단이 없는 경우 지역본부를 지급사무소로 선정·보고
- (예) 농협경제지주회사 시흥시농정지원단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인)

시·도지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년산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의뢰 명세표

기관명 : 시·군·구

(단위:원)

등록자 성명	생년월일	예금주	은행 코드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	비고

○ 자료제출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 → 농협경제지주회사 농정지원단장 또는 지역본부장

○ 자료 제출 양식

- 엑셀 또는 농협 지정사무소와 협의한 자료로 제출

○ 유의사항 : 농협 지정사무소에서는 등록자 성명과 예금주를 확인 후,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에 통보

※ 항목 세부사항

(1) 은행코드 : 금융결제원에서 정한 은행별 코드

- 예) 농협경제지주회사 : 11, 국민은행 : 04 등

(2) 비고 : 통장에 기장내역 인자처리 (예) 농림부쌀직불

20 년 월 일

제출자 : 시장·군수·구청장(인)

농협경제지주회사

농정지원단장(지역본부장) 귀하

년산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결과 보고

읍·면·동 (시·군·구)	자금배정액		지급 결과		비고
	인원	금액 (원)	인원	금액 (원)	
합계					

※ 1ha = 10,000m²

○ 보고 절차

- 농협경제지주회사 농정지원단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협지역
본부장
- 농협지역본부장 → 시·도지사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 시·도지사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시·도지사(농협경제지주회사)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서				처리기간
				60일
①신청인	성명			
	주소	전 화 번 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내용>				
부당수령자 성명		(전화번호)		
부당수령자 주소				
부당신청 농지 지번				
신 고 내 용				
<p>법 제33조에 따라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신고자 (인)</p> <p>○○○ 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p>구비서류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 부당수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고대상자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자의 사실확인서 2. 신고대상자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 이상의 사실확인서 3. 기타 부당수령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p>※ 신고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부당수령자에게 직불금을 지급한 시·군·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p>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6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 관리 대장

기관명 :

접수 번호	접수 연월 일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연락처	신고 방법 (콜센터, 우편 등)	피신고 인 성명	농지주소	위반 행위	진불 종류	처리 연월 일	처리 내용	결과 통보 연월일	과 결 통 보 방 식 (전화, 우편 등)	포상 금 지 액	

농약 잔류검사 결과 보고

읍·면·동 (시·군·구)	등록신청 농가		점검 농가		부적합 농가		비고
	농가수	벼재배면적 (m ²)	농가수	벼재배면적 (m ²)	농가수	벼재배면적 (m ²)	
합계							

※ 1ha = 10,000m²

○ 보고절차

- 농관원 사무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관원 시·도지원장
 - * 농관원 사무소는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 농가에 대한 농업인별, 농지별 검사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보고
- 농관원 시·도지원장 → 시·도지사 및 농관원장
- 농관원장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 년 월 일

보고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신고개요	신 고 일 자	피 신 고 자	직 불 종 류
	신 고 농 지		
	신 고 내 용		

포상금 지급신청	신 청 금 액		원 / 건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경유기관(시·도지사) 확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으며, 위 신청자가 신고포상금 수령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첨부서류	1. 통장사본 2.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3. 부당수령신고 처리결과서(해당 부당수령신고를 처리한 기관에서 첨부)
------	----------------------------------------------------------------------------------------------

농업소득보전직불금 부당수령 신고 처리결과서

1. 신고개요

- 신고일자 :
- 신고자 : (생년월일 :)
 - 주소지 :
 - 연락처 :
- 피신고자 : (생년월일 :)
- 신고농지 :
- 신고내용 :

2. 조사결과 및 처분결과

- 담당자 : (소속) (직급) (성명)
- 조사결과
 - 부당수령 연도 :
 - 부당수령 농지 : (면적 : m²)
 - 부당수령 직불 :
 - 부당수령 금액 : 원
 - 부당수령 내용 :
- 처분결과
 - 처분일자 :
 - 환수액 : 원 (부당수령액 원, 가산금 원)
 - 등록제한 : 년(년 ~ 년)

3. 부당수령 상세내역

- 부당수령자 : (생년월일 :)

직불 종류	수령 연도	농지 지번	면적 (m ²)	금액 (원)		비고
				고정	변동	
합계						

세부사업명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예산 (백만원)	300			
사업목적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지원자격 및 요건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 등 ○ 최근 지역내 야생동물 개체수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 등							
지원한도	○ 농업경영체당 포획시설 10개 이내							
재원구성 (%)	국고	40	지방비	40	용자	-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	-	-	750			
	국 고	-	-	-	300			
	지방비	-	-	-	300			
	자부담	-	-	-	1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강승규 안준영		044-201-1794 044-201-1795		
신청시기	사업년도 2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1. 사업대상자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농협조직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 * 지역조합, 품목조합, 중앙회가 출자·출연한 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제한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기본규정 제18조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확인된 농업경영체
 - 최근 2년간 세대원의 소유 농지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고 있는 농업경영체. 다만, 자연재해·농지개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필지에 대해 휴경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농가세대원 중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생활 등으로 주 생계수단이 농외 소득에 의존하여 농외소득*이 당해농가 연간 총수입의 50%이상인 농업인
 - * 통계청 발표 「세대원당 가계지출금액 조건표」 적용

3. 지원대상 우선순위

- i)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단년도의 농작물 피해가 10a 이상인 농업경영체
- ii)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단년도의 농작물 피해가 10a 미만인 농업경영체
- iii) 농작물의 피해는 없었으나 최근 지역내 야생동물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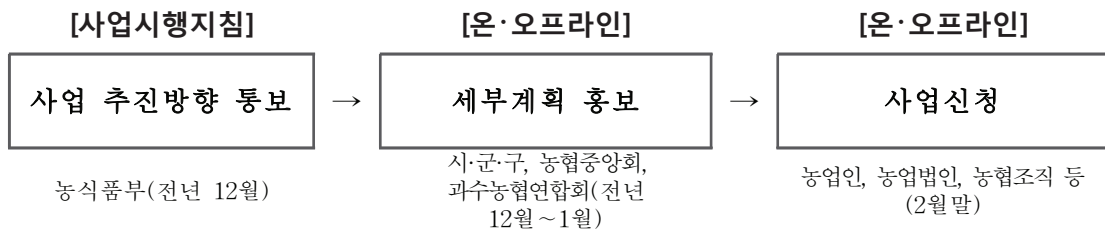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포획시설(트랩) 구입 및 설치
 - 포획시설 구조변경 등으로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사업자 부담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기간 : 1년
- 사업규모 : '19년도 450개 내외
 - * 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 지원조건 : 보조(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II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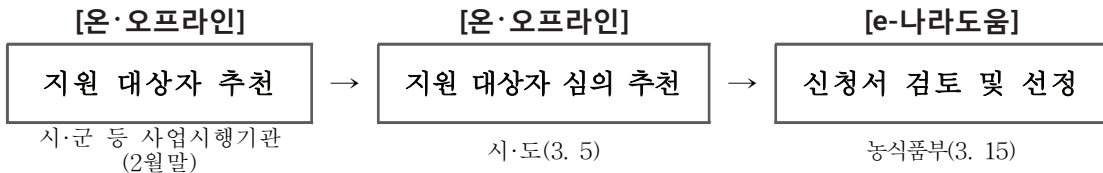
- 사업신청서 : 별지 서식 참조
 - * '19년도 사업 신청은 '19. 2월말까지이며, 선정은 3월 중 적격자 선정 예정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관내 농업인·농업법인·농협조직(이하 “사업자”라 함) 등에 사업내용 홍보(‘18. 12~’19. 1월말)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2월말)

《 타 법률 및 규정의 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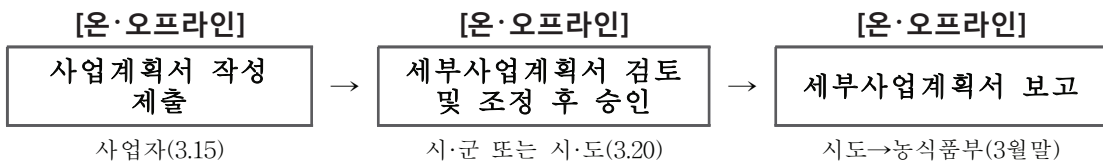
- 시장·군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유해 야생동물의 포획 허가 및 관리 등)를 근거로 환경부가 시·군·구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업무에 대해 규정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반드시 준수
- 또한, 사업참여 희망자에게 이 처리지침을 숙지한 후 사업에 참여토록 안내

2. 사업자 선정단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3. 5)
 - 사업대상지역 현장실사,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 추천
- 농식품부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도에 통보(3.15)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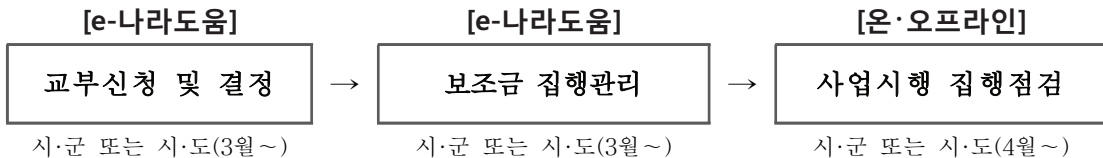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제출(3.15)
 - 사업신청시 제출한 계획서에 월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세부사업시행계획서를 검토·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3월말)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 착수

《 사업계획 변경절차 》

-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시설·장비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가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시행기관(시·도 또는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단, 지원단가 총액을 30%이상 초과 변경할 경우 농식품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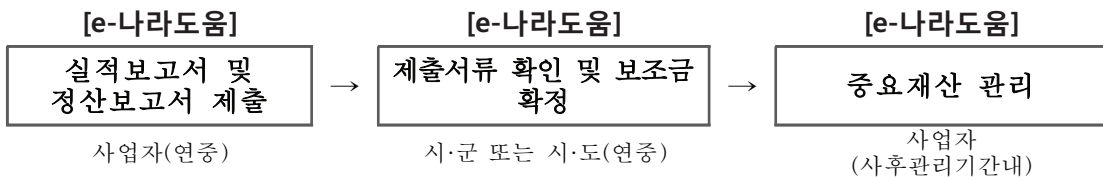
- 사업자는 시장·군수로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시 업무대행자를 통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등록
- 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자금배정〉

- 농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사업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농식품부에 요청
-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되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정산보고서 검증 필요시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 제출 가능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제63조의4에 따라 환수조치
 - 시·도지사(시장·군수)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 이행점검단계〉

- 사업비 집행단계 점검
 - 집행점검 : 사업추진 실적 및 집행행실적 점검(반기 1회)
(시·군 또는 시·도가 점검 → 농식품부로 집행실적 제출)
 -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 현장점검 : 8월 이전 기간을 정하여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

〈 사후관리단계〉

- 사업점검 시기, 방법 및 점검항목
 - 방 법 : 연1회(1월31일) 운영실적 점검
 - 점검항목 :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 사업추진효과 등

《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

《 제재 및 처벌내용 》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기본규정 제63조제1항(지원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Ⅲ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 환경부 지침 발체

1. 과도한 포획 예방

- 시장·군수는 포획틀은 불특정 다수의 동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수량과 피해지 인근 일정 범위를 지정하여 허가
 -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고발 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 포획틀은 사업 신청자가 환경부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별표3]의 포획틀 제작 및 운영·관리 기준을 숙지하여 제작 하거나 구매하여 허가지역에 설치 및 관리
 - * 자체 제작·구매·대여할 경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함

- 같은 지침 [별표4]의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를 사전 제작하여 사업 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사용되는 포획틀에 그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케 함으로서 불법 제작된 포획틀과 구별
 - *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 부착은 사용 시 떨어지지 않도록 철사 등으로 견고히 부착
- 허가한 동물 외 다른 동물을 포획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방사하도록 주시시키고, 부상을 입은 경우 즉시 허가기관에 알려 법 제11조의 야생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 등에서 치료 후 방사

2. 포획 동물의 처리

- 포획한 동물은 상업적으로 거래·유통되지 않도록 시군구, 피해농민, 포획대행자 등이 협의 하여 자체적으로 처리
 - 포획동물은 수렵인 자가소비, 피해농민 무상제공,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소각·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

IV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시행기관은 종료후 정산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를 시도를 거쳐 2019. 12월말 까지 농식품부로 제출

2. 사업평가

- 전년도 보조금을 받은 시도(시군구)에 대하여 i)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실적, ii) 이 사업의 자체사업 실적, iii) 자금집행 실적 등을 평가
- 필요시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 실시

3. 평가결과의 환류

- 2019년 12월 사업시행 지자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적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사업 지침 작성시) 반영

V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9년도 사업 수요조사

- 실시방법 및 시기 : 공문시행(농식품부 → 시·도지사, '18.11월)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
- 제출기한 : 사업자('19.2) → 시장·군수('19.3) → 시·도지사('19.3)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3. 참고

- [별지 제1호 서식]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 [별표] 환경부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별표3 및 별표4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농업경영체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 조직체가 아닌 개인인 경우 기입 생략			
	연 락 처	(휴대폰)	(자택)		
	주 소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에서 선택 기입			
	조직현황	공동농업경영체 출자자 수 ___명, 참여농가수 ___호, 공동경영면적 ___ha			
사 업 예정지	지 번	대상면적(m ²)	작 목	수량(과수인 경우)	피 해 면적(m ²)
					최근 3년간 누적 피해면적 (필요시 사진첨부)
희망 사업규모 (포획트랩 신청 수량)		대			
<p>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지원 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input type="checkbox"/>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p> <p><input type="checkbox"/> 사업추진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p> <p><input type="checkbox"/> 사업추진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p>					
2019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붙임 : 1.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2. 세부 사업계획 1부.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교육·홍보 등의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사업 계획서

사 업 예정지	지 번	대상면적(m ²)	작 목	수량(과수인 경우)	피 해면적(m ²)	
						최근 3년간 누적 피해면적
희망 사업규모 (포획트랩 신청 수량)		대				
월 별	세부 사업 내용					
	* (시군) 주관 사업설명회 참석 : 해당 지자체와 협의 작성					
	* 포획틀 제작 또는 구입 주문					
	* 지역내 유해조수 방제단과 포획 동물에 대한 사후 처리 협의					
	* 포획틀 설치(개소)					
	* 포획틀 설치(개소)					
	*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실적 통지(→ 시장.군수)					
	* 사업 성과 제출(→ 시장.군수) - 포획 실적, 농작물 피해 예방 효과 - 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차년도 사업 확대 계획 : ('19) 5대 설치 → ('20) 5대					

[별 표]

환경부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별표3 및 별표4

□ [별표3] 포획틀 제작 및 운영·관리기준

구 분	기 준
재질	아연도강관, 철재, 스틸파이프 등 안전성이 확보된 재질
규격	- 가로 680mm 이상 x 세로 2200mm 이상 x 높이 1030mm 이상 - 직사각형의 철제 틀로서 앞뒤 각 2개씩의 문틀과 출입문, 좌우측면의 시건장치 부착면과 미부착면, 바닥철판과 덮개철망으로 구성 등 이에 준하는 규격
모형1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style="text-align: center;">△ 여단이식</p>
모형2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style="text-align: center;">△ 개폐식</p>
운영방법	<p>- 포획틀을 이용한 포획허가 신청자는 농경지 등에 직접 설치(위치선정이 가장 중요)하고, 먹이공급 관리 및 시설물 점검을 주기적으로 관리 할 것</p> <p>※ 허가권자가 현장확인 시 먹이관리 부실 등 부적정하게 운영할 경우 허가취소</p>

□ [별표4]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

NO.(24~26)- 914-1



- 형태 : 원형(직경 3cm)
- 재질 : 은색 알루미늄
- 두께 : 1.0~1.5mm
- 글씨 : 양각 글씨
- 구멍 : 2mm내외
- 확인물의 번호(No)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국가 기초구역 번호를 활용한 다음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예” (24~26) - 914 - 1
(강원도) (영월군) (일련번호)
[시·도] [시·군·구] [일련번호]
- 본 지침 개정 이전 제작한 구형 확인표지는 소진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세부사업명	농업자금이차보전			세목	이차보전금			
내역사업명	농업자금이차보전			예산 (백만원)	420,608			
사업목적	농업자금 저리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사업 주요내용	농업자금(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차차액을 보전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11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6조, 제28조, 제29조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인 등 용자 100% 지원, 금융기관 이차보전							
지원한도	- (세부사업별 별도 적용)							
재원구성(%)	국고	100% 이차보전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217,459	210,123	221,227	420,608			
	이차보전	217,459	210,123	221,227	420,60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은행	농업금융정책과 농식품금융부		허정은 사무관 김종욱 팀장		044-201-1752 02-2080-7590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업자금이차보전 대상 사업별**로 아래에 기재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과 입니다.

농업자금이차보전 대상 사업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① 농축산경영자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이시혜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1 044-201-1752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기훈 차 장 오치연	02-2080-7581 02-2080-7588
② 농업종합자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이시혜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1 044-201-1752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이금자	02-2080-7590 02-2080-7592
③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 장 김정주 사무관 정순일	044-201-1831 044-201-1838
	지자체 (시·도 및 시·군)	농산유통과/농산과 등 (직제에 따름)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④ 농촌주택개량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김 철 사무관 이재영	044-201-1551 044-201-1558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기훈 차 장 오치연	02-2080-7581 02-2080-7588
⑤ 농업경영회생자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이시혜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1 044-201-1752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기훈 차 장 한지수	02-2080-7581 02-2080-7582

○ ‘농업자금이차보전’ 대상 사업 중 아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담당과에서 사업 시행지침을 별도로 지자체 등에 시달함**

- 농기계구입자금지원, 농기계사후관리지원 : (사업담당과) 농기자재정책팀, (담당자) 최승묵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840~1

※ 농기계구입자금지원 및 농기계사후관리지원 사업시행지침은 한국농기계공업 협동조합 홈페이지(www.kamico.c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 (사업담당과) 농촌산업과, (담당자) 이동민 사무관, 정혜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90~2
 - 후계농업인육성, 우수후계농업인추가지원 : (사업담당과) 경영인력과 김호균 서기관, (전화번호) 044-201-1532~3
 - 귀농인창업지원 : (사업담당과) 경영인력과 홍근훈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39, 1540
 -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 (사업담당과)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담당자) 권우순, 이상훈, 임지현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22~3, 2338~9, 2340~1
 - 축사시설현대화 : (사업담당과) 축산경영과, (담당자) 김성구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36~7
 - 축산경영종합자금 : (사업담당과) 축산경영과, (담당자) 홍성현, 이상훈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29, 2338~9
 - 인삼약용작물계열화 : (사업담당과) 원예산업과, (담당자) 손경문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84~5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자금 : (사업담당과) 농촌산업과, (담당자) 이창일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84~5
- * '농업자금이차보전' 대상사업(자금) 중 협동조합합병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부채대책자금(정책자금상환연기자금 등)은 별도의 사업시행지침 없음

① 농축산경영자금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이시혜	044-201-1751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2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기훈	02-2080-7581
		차 장 오치연	02-2080-7588

I 사업개요

1. 목적

-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축산법 제3조
-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이후
농축산경영자금(융자)	2,420,000	1,936,000	1,742,400	1,568,160	1,568,160	1,420,000	1,420,000

* 공공자금관리기금과 농협 등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액 융자로 지원

II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사업대상자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농업인

- 사업대상자는 영농 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확인(다만, 마을 영농회·작목반·축산계 등의 「대출신청 및 배정금액 심의자료」를 근거로 확인 가능)
- 대출 신청인은 전업적 직업보유 여부 등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각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서식은 대출취급기관 비치)

나. 지원제외자

① 사업대상자 중 아래의 직업보유자

- * 제출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 확인생략 :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
 - 2.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대환하려는자

구 분	세 부 내 용
직업보유자	▪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② 재해대책경영자금 중 기타사고(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자
- ③ 신규대출을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다만,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 ④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을 재배하는 자
 - 다만,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를 시설에서 배지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⑤ 농업종합자금 중 운전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다만,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 ⑥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단,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3조8호에 따른 “농가”는 지원 가능)
- ⑦ 대출대상자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하며, 부부간 중복대출은 불가. 다만,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부부 각각 지원 가능
 -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선정된 자는 경영주가 아니라도 지원 가능
- ⑧ 위탁농 등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및 수직계열화 된 농업경영체
- ⑨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⑩ 기타 이 지침 등에 의거 대출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 대출포기, 대출 불가능한 자 등 발생 시에는 차순위 자로 대출실행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공통사항

- 자금별(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한도는 각각 적용
 - 재해대책으로 상환 연기되거나 신규로 지원된 자금은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의 지원한도 및 대출금액 산정에서 제외
 - 복합농의 경우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의 지원한도는 각각 1천만원임

○ 지원 한도는 1회전 소요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6백만원** 이하 (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소요경영비 산출 및 생략은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 각각 적용
- 신규진입농은 대출금액에 관계없이 1회전 소요경영비 이내에서만 지원
- 재해대책경영자금은 별도로 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원
- 영농규모 확인서류는 소요경영비 심사대상자에 한하여 징구

* 1회전 소요경영비란 동일 농경지(과수, 축종 등)에 대하여 투입에서 출하까지 1회전(1기작) 기간에 필요한 경영비를 말하며, 1회전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경영비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함

○ 신규 진입농은 농업경영체 증명서, 임차계약서(또는 등기부 등본, 기타 공문서 등)(임차농), 영농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실질영농여부 및 경지면적 등을 확인하고 지원

나. 세부 지원요건

구분	세부 지원요건
① 농업경영자금	㉔ 지원대상: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의 경영비 ㉕ 지원한도: 농업경영체당 10백만원 이내 (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 예시) '19년도 경영자금으로 8백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상환기일전에 전액 상환한 후 당해 연도 추가대출을 신청할 경우 추가대출금액은 2백만원만 가능 ㉖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 단, 인삼식재농가에 지원되는 신규인삼 식재 자금은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인삼분야 신규인삼식재자금은 당해년도 신규인삼식재면적이 2,975㎡ 이하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자금년도별로 농가당 450만원이내에서 대출 * 신규 인삼식재면적이 2,975㎡을 초과하는 농가라도 농업종합자금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인삼식재자금 지원가능
② 축산경영자금	㉔ 지원대상: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 농가의 경영비 - 한(육)우·젓소 3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20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1만수 미만 및 기타 가축 ㉕ 지원한도: 농업경영체당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㉖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p>③ 재해대책 경영자금</p>	<p><법령에 의한 재해></p> <p>㉔ 재해 신규자금</p> <p>i) 지원대상: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 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p>ii) 지원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이내</p> <p>iii) 지원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다만 농업재해로 인하여 2년이상 정상적인 과실생산이 어려운 농가는 3년 연장 가능하며, 대상농가는 재해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지원지침'에 따름 * 과수피해 농가 상환연기 연장개정('12년) 이후 상환기간 미도래 과수 피해농가는 일괄 상환기간 연장조치 가능 *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연기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재해 신규자금 만기 도래 시 농업경영자금 또는 축산경영자금으로 대한 불가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8%)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p>㉕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p> <p>i) 지원대상: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p> <p>ii) 지원조건: 농가단위 피해율에 따라 차등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단위 피해율 30~50% :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p><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p> <p>㉔ 지원대상 :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병해충대발생 등)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가 고의성 유무를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 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p>㉕ 지원한도 : 재해 사건별 농가당 100만원이상 5천만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원(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한도 및 소요경영비 계산방식을 달리 정하여 지원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가축사육(농작물 경작) 규모에 대한 품목별 1회전 소요경영비 * 복합농(농업과 축산업에 종사)은 최대 1억원(농업 5천만원, 축산업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법인의 경우 2억원까지) <p>㉖ 지원조건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8%)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연기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3. 대출방법

-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및 농협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하되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의 신용대출 한도 범위내에서는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함
- 대출 취급기한은 당해연도 말(12월)까지임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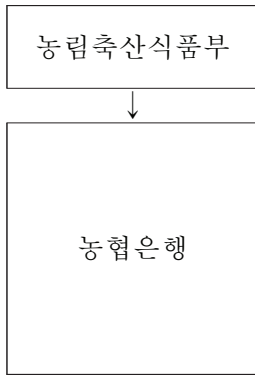
가. 공통사항

- 지역 농·축협은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전업적 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서를 징구한 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농협은행장이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후 시행

나. 자금별 세부절차

- 농업경영자금 : 농가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농회 및 작목반을 통하여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축산계 제외)에 신청
- 축산경영자금 : 축산농가가 지역축협과 품목축협(축산계) 또는 축산계장(또는 대의원)을 통하여 신청
- 재해대책경영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농가
 -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는 피해농가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역 농·축협 등과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농협 지역(영업)본부장을 거쳐 농협은행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농협은행장은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역(영업)본부장에게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지원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한 재해, 지원금액이 적은 농가부터 하되 피해율이 50%이상인 농가 우선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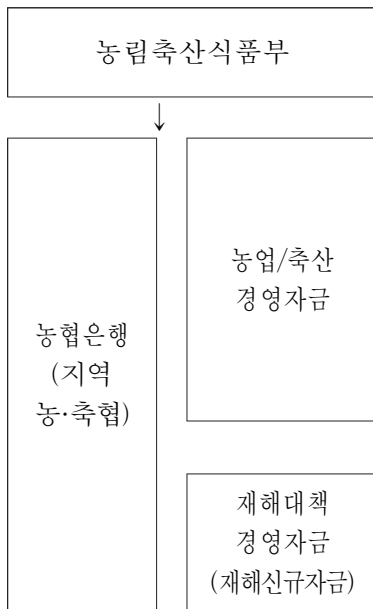
2.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중에 대출기관장에게 시달

- 농협은행장은 자금운용계획이 시달된 후 15일 이내 세부운용계획을 수립 시행
- 농협은행장은 자금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자금을 배정한 때에는 즉시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농협은행장은 자금의 대출 및 회수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매월말기준, 익월 10일까지

3.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별 소요자금을 자금소요시기에 따라 대출기관장에게 배정

- 농협은행장은 배정된 사업별 자금을 지역별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지역 농·축협**에 재배정
- **지역 농·축협**은 재배정된 자금을 제반 영농여건(작목특성, 영농규모 또는 축산규모, 자금조달능력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역 농·축협융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영농회별(또는 축산계, 작목반) 또는 대출 대상자별로 재배정
- 농협은행장은 배정된 자금을 지역 농·축협에 재배정
- 지역 농·축협은 재배정된 자금과 지자체에서 통보된 총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4. 이행점검단계

- 농협은행장은 지역 농·축협으로 하여금 자금의 대출과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감독
- 지역 농·축협은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하도록 지도 및 관리
- 지역 농·축협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대출된 자금이 타목적으로 사용된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

1. 사업평가

- 지원실적 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

2. 환류

-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② 농업종합자금지원

▶ 농업종합자금 시행지침 세부사업별 담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부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②-1. 농축산 생산 지원	가. 원예·축산 생산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이시혜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1 044-201-1752
	나. 스마트팜 지원 사업 다. 수출 및 규모화사업 라.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마. 친적 및 곤충사업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이금자	02-2080-7590 02-2080-7592
②-2. 가공사업 등 지원	가. 농산물가공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이시혜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1 044-201-1752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이금자	02-2080-7590 02-2080-7592
	나. 꿀·녹용가공산업육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송태복 사무관 김성구	044-201-2331 044-201-2336
		(사)한국양봉협회	총 괄	사무총장 김종상	02-3486-0883
		(사)한국양록협회	총 괄	부 장 신대복	02-587-4304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이금자	02-2080-7590 02-2080-7592
	다. 쌀가공산업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과 장 전한영 서기관 김정락	044-201-1811 044-201-1820
			식량산업과	과 장 김정주 사무관 이준익	044-201-1831 044-201-1842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기훈 과 장 임윤영	02-2080-7581 02-2080-7582
	라. 우수기술사업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과 장 지성훈 사무관 배태현	044-201-2451 044-201-2460
		농림식품 기술기획평가원	성과확산실	실 장 강민구 연구원 이정민	031-420-6721 031-420-6723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기훈 과 장 임윤영	02-2080-7581 02-2080-7582
②-3.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	가. 농기계 구입/농기계 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김수일 서기관 최승묵	044-201-1891 044-201-1840
		한국농기계협동조합	정책지원팀	팀 장 김경수 과 장 조한진	041-411-2121 041-411-2122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욱 과 장 김미영	02-2080-7590 02-2080-7584
	나. 무기질비료원료구입 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김수일 서기관 김규욱	044-201-1891 044-201-1892
		한국비료협회	-	부 장 조규용	02-552-2813 02-552-2812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이금자	02-2080-7590 02-2080-7592
②-4. 농촌관광 산업지원	가. 농촌 체험휴양마을 나. 관광농원 다. 농촌민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 장 김신재 사무관 이동민 사무관 정혜영	044-201-1581 044-201-1592 044-201-1590
		NH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이금자	02-2080-7590 02-2080-7592

1. 목적

-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취급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음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도농교류법’이하 함) 제6조,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농지법 제21조, 종자산업법 제10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농림수산물과학기술육성법 제13조비료관리법 제7조
- 농업종합자금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63호)

3. 용어의 정의

- “농업종합자금(이하 “종합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출취급기관이 농업경영체 등에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금을 말함(정부에서는 대출취급기관 융자금의 이차차액을 보전함)
 - * 이차보전 :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축산사업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차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말함
-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한 농업경영체를 말함
- 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이라 함은 종합자금의 대출과 대출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다음 기관을 말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 및 농협은행
 -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
- “자금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에서 총괄하며, 품목별·축종별 종합자금의 운용, 사업추진과 관련된 시책수립과 점검·평가업무는 각 사업담당부서 책임 하에 추진함

- “세부시행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은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각 기관별로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 및 농협은행의 세부지침은 농협은행에서 작성)
-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운용부서로부터 지침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세부지침의 효력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 날부터 발생. 세부지침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이후
합 계	2,021,000	2,505,000	2,781,500	2,955,740	2,806,940	3,002,600	2,702,300
용자(농협자금)	2,021,000	2,505,000	2,781,500	2,955,740	2,806,940	3,002,600	2,702,300

- *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다만, 당해년도 예산 중 스마트팜지원 1000억원, 수출및규모화 및 농산물가공사업 6000억원,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 지원사업 40억원,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132억원, 쌀가공산업육성지원 500억원 및 우수기술사업화지원 1,000억원, 농기계 생산지원 2,000억원,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220억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2,0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별 과부족 시 내역을 변경하여 집행가능)
- * 농기계 생산지원 :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설비, 농기계생산 원자재 구입 비촉지원
- *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 농기계수리용 장비, 농기계수리용 부품확보, 농기계 보관창고

II 주요내용

[공통사항]

- 1) (기본자격) 각 사업별 지원대상자로서 해당분야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동 기관으로부터 대출심사 및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자
- 2) (지원제외) 기본자격을 갖추었다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가)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 대출 신청시 직업보유 사실 확인은 대출취급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업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는 확인을 생략함

나) 농업경영체 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 대출취급담당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징구하거나 동 기관 홈페이지 "농업경영체등록여부 확인"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출력하여 대출증서에 첨부

다) 농업경영체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단, 시설 부족 등으로 영농활동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또는 도농교류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직접 영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지원가능)

라) 수직계열화 된 농업경영체가 신청한 운전자금(예, 계열주체로부터 가축, 사료 등을 지원받아 위탁생산하고 있는 경우)

마) 최근 결산일 기준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다음의 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인 법인

- 금차 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10억원 이상인 개인(단, 스마트팜 지원 사업은 당해 사업 이외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최초 대출지원 이후 도래하는 결산기부터 재무제표 의무 제출)

-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개인 및 법인)

- 관광농원사업자(단, 금차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7억원 이내인 신규사업자는 예외)

* 금차지원액을 포함한 종합자금 대출잔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와 지원금액 1천만원 미만의 농기계구입자금인 경우 재무제표 제출 생략(개인 및 법인)

바)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사) 미곡종합처리장(RPC)·도정공장(단,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은 적용 제외 하며, 미곡종합처리장은 곡물건조기, 곡물냉각기, 품질분석장비에 한하여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가능)

아) 타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차감하고 대출취급 가능

* 타 농업정책사업 관련 추후 중복지원이 밝혀질 경우 대출시점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회수

<지원한도 산출 예시>

- '보조금+자부담' 지원 사업(예, 보조 50%, 자부담 50% 사업인 경우) : 총 사업비(1억원) 중 대출한도액(80%, 8천만원) 내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3천만원)만큼 지원 가능
- '보조금+융자+자부담' 지원 사업 : 타 사업 자부담분 지원 불가

- 자) 종자개발·보급 등으로 인해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종자개발업자
다만,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
- 차) 축산법에 의거 축산업 허가대상이나 미허가인 자 또는 축산업 등록대상이나 미등록인 자(단, 허가대상이나 기 등록 중인 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카)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단, 농기계구입자금은 지원 가능)
 - 다만,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를 시설에서 배지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 상기 품목 외에 임산물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소진 후 농업종합자금 지원 가능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②-1. 농축산 생산 지원

1. 사업대상자

- 원예·축산업자 / 스마트팜지원사업자(일반 및 청년농업인) / 수출 및 규모화 사업 / 고품질우량종자사업자 /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원예·축산 생산업

- 원예·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 * '15년부터 친환경 묘삼 시설재배, 인삼 다단계시설물 원예생산업에 포함

나. 스마트팜지원사업(동일인당 50억원 이내에서 지원. 단, 청년농업인 대출한도 30억원 포함)

- (일반 스마트팜 사업자)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단, 농업생산과 관련없는 일반 법인이 출자한 농업법인은 제외)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사업자)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자
 -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
 - 정부가 지정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 * 연령기준 : 만 40세가 되는 해당년도의 12월 31일까지 지원 가능(자금지원 가능년도=출생년도 + 40)

다. 수출 및 규모화사업(동일인당 5억원 이상 42억원 이내 지원)

- 대출취급기관의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적격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생산 고도화 또는 수출 확대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축산물 생산을 하는 농업경영체
 - 자가 생산한 농·축·임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업경영체

※ 융자금의 회수

- '19.1.1부터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식품업체 및 생산자단체는 '농산물가공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지원하고,
- 기지원 받은 사업자가 '19.1.1 이후 만기도래한 융자를 '농산물가공사업'을 통하여 재약정(대환) 할 경우 대출금액의 20%이상을 상환하여야함
단, 2019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

라. 고품질수량종자개발사업

-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마. 천적 및 곤충사업

-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연리 1.0% 고정금리 적용(변동금리 적용 불가)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연리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적용

다. 수출 및 규모화사업 : 채무자별 신용도를 감안한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금리에서 정부의 이차보전 이율 **1.3%~2.8%**를 차감한 금리 적용

< 지원 금액별 정부이차보전 금리 >

- 지원금액 10억원 미만 : **2.8%**
- 10억 이상에서 30억 미만 : **2.3%**
- 30억원 이상 : **1.3%**
- * 다만, 고정금리 이차보전 실시 후 농가 실질부담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리에 대하여 정부에서 추가 이차보전

라.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단, 스마트팜지원사업의 시설·개보수자금은 변동금리 적용 불가)

-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마.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원예, 농산물가공, 고품질우량종자, 천적 및 곤충생산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축산, 유리온실 및 경질의 철골온실(인삼재배시설포함), 스마트팜
-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용도

- 원예·축산분야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 스마트팜 시설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시설물 자동 원격 제어장치를 설치한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시설
- * 원예재배시설 중 인삼다단계재배시설은 사업수요가 있을 경우 원예산업과와 사전 협의 요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6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 i) 택지·도로·댐·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다른 목적의 개발계획이 고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ii) 토지(잡종지 등)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토지에 작목재배·생산, 작목재배·생산용시설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 iii) 벼농사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 iv) 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 v) 농림분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토지를 재구입하는 경우 지원제외(단, 정책자금 잔액이 없는 경우 지원가능)
- vi) 가족(동일세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 법인과 법인구성원간의 거래

-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단,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하되 청년 스마트팜의 경우 10억원 이하는 100%)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미만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 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 지원금액과 무관하게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함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앙기, 콤팩트) 구입 시에는 용자대상에서 제외함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분뇨지원사업(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단,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하되 청년 스마트팜의 경우 10억원 이하는 100%)

다. 운전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 다만, 인삼식재자금은 연근별로 4~6년 이내, 수출 및 규모화사업은 3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가축입식자금, 농·축산물 매취자금(농산물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 원예·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전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하는 경우(단, 인삼식재자금은 제외)

* 운전자금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대환 가능(단, 종합자금이 농신보 보증서 담보인 경우에는 대환대상 농축산경영자금도 농신보 보증서 담보이어야 함)

3)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

라. 기타 유의사항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 불가

②-2. 가공사업 등 지원

②-2-가. 농산물가공사업

1. 사업대상자 : 농산물가공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축·임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 하는 농·축산물가공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농·축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증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 국산 농·축·임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식품업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대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생산자단체

3. 대출금리

-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1) 대출기간

- 시설자금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개보수, 운전자금 : <②-1. 농축산생산 지원>의 개보수자금과 동일

2) 지원용도

- 시설자금 : 농산물가공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개보수자금 : 기존 시설의 개수 보완, 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운전자금 : 지원대상자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3) 지원한도 : 동일인당 50억원 이내

4) 용자금의 회수

- 농산물가공사업으로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 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2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단, 2019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
- 운전자금 대출잔액(30억이상) 보유자에 대해 신규(추가) 운전자금 대출 제한

②-2-나. 꿀·녹용가공산업육성

1. 사업대상자

- 꿀, 녹용을 원료로 하여 벌꿀, 녹용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간 벌꿀 사용실적이 20톤 이상인 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업체는 예외)로 <사>한국양봉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및 생산자단체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 우선 선정

- 연간 녹용 사용실적이 1톤 이상인 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는 예외)로 <사>한국양록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및 생산자단체

3. 대출금리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시설, 개보수 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 운전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3) 지원한도 : <사>한국양봉협회, <사>한국양록협회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업체별 한도 이내

* 꿀, 녹용가공산업육성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개소당 5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

* 단, 선정심의위원회에서 5억원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②-2-다. 쌀가공산업육성지원

1. 사업대상자

- 쌀(정부 관리양곡 포함)을 원료로 하여 쌀가공제품(식품 및 비식품제품 포함)을 생산하는 업체

- 정부 관리양곡의 도정 및 보관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쌀가공업체(일반) :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

○ 쌀가공업체(신규) : 연간 쌀 사용실적이 없거나 10톤 미만이라도, 사업 등록한지 1년 미만인 업체 혹은 식품업 등을 1년 이상 영위하였으나 쌀 가공 식품을 제조·판매한지 1년 이내인 업체

○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 2019.2월 기준 정부양곡 도정·보관 계약 체결 업체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영·수매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쌀 가공식품 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의 생산시설 등의 신·증축에 소요되는 자금 및 쌀가공제품 전문판매점의 점포 시설비

* 시설부지 및 건물 구입비 등은 지원제외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②-1. 농축산생산 지원>의 개보수자금과 동일

2) 지원용도 : 기존 시설 개수·보완 또는 기계·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다. 운전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3)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금액 이내

라. 수매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가공용 쌀 계약재배 후 계약재배 된 쌀의 수매 지원자금

3)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금액 이내

②-2-라. 우수 기술사업화 지원

1. 지원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을 실용·사업화 하는 중소기업체 또는 농업법인

2. 대상기술 및 요건

- 대상기술 : 장관이 확인한 우수기술, 장관이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신기술, 정부가 인증한 NEP·NET·이노비즈(INO_BIZ) 기술
- 요건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우수 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대상자” 확인서를 받아야함

* 우수 기술사업화 자금 규모는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 결과’를 반영

3. 대출금리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1)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 지원한도 :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10억원 이내

- 평가비의 50%(농기평의 우수 실용기술평가 사업비에서 지원)

나. 운전자금

- 농림축산식품분야 R&D에 대한 실용·산업화를 위한 운전자금(인건비, 원자재 구입, 시제품생산비 등)

다. 시설자금

-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단, 토지구입비 및 건물구입비는 자금지원 제외)
- 농산물·식품의 생산·가공시설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장비 및 시설(연구개발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라. 개보수자금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기계·장비(중고포함), 중고시설 자재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②-3.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

②-3-가.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1. 사업대상자

- 정부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기계 구입자금

-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나.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유통업체

다.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라.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3. 대출금리

가. 농기계구입·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다.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사업 : 연리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농기계 구입자금

1) 대출기간

농기계구분		대출기간
신제품	기종에 따라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
중고	잔여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균분상환
	잔여내용연수 3년 미만 또는 내용연수 경과	3년 이내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3) 지원한도

<신제품 농업기계>

- 용자지원 한도액 내에서 실판매 가격
-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판매금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용자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등의 부속작업기는 70만원 미만인 모델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지원가능(다만, 가동시간계측기는 적용을 제외함)
- * 정부의 용자금과 지방비로 농업기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지원 대상자를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중고 농업기계>

- 중고 농업기계 용자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하되 해당 농업기계의 관련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과 동시에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 기존 대출잔액을 채무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잔액까지 가능
- * 중고농업기계 관련 대출금이 농가부채 대책(2004)에 따라 중장기 대환대출금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나.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 토지매입자금 지원불가

2) 지원용도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 한도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총 사업비의 90% 이내

다.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농기계 수리용 장비지원자금
- * 농기계생산사업과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은 개보수자금 지원 불가

2) 지원용도 및 지원 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라. 운전자금

1) 대출기간

- 1년 이내 상환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농기계 수리용 부품 확보자금

※ 용자금의 회수

- 기지원 받은 사업자가 '19.1.1 이후 만기도래한 용자를 '농기계 생산지원사업'과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사업'을 통하여 재대출(대환) 할 경우 대출금액의 20%이상을 상환하여야함

단, 2019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

- *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은 운전자금 지원 불가

2) 지원용도 및 지원 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마. 유의사항

○ 농기계 구입자금

-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부착대상 기종에 대하여 표지판이 부착되지 않았거나 훼손되어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기로 작성된 경우 또는 제조번호가 중복된 경우에는 용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출사무소는 공급자가 농가에게 농기계를 인도할 때 용자금 지불 위임장 및 기계대금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다만, 대출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②-3-나.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1. 지원대상자

- 무기질(화학)비료 생산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비료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3. 대출금리 : 연리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운전자금 지원조건

1) 대출기간 : 1년 이내 상환(운전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2) 지원용도 : 무기질비료 생산을 위한 원료구입자금

3) 지원한도 : 한국비료협회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②-4. 농촌관광산업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1. 사업대상자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관광농원사업자, 농촌민박사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촌체험휴양마을

-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증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나.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서(사업계획 변경 시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를 발급 받은 농업경영체

다. 농촌민박

- 시장·군수로부터 농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사업변경 시는 사업변경 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농업인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
(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공동시설 및 장비(체험관, 판매, 음식, 숙박, 체육, 놀이, 휴양, 정보 및 커뮤니티 시설 등) 설치,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

- 관광농원 시설 설치,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단, 매각 또는 임대 시설물은 자금지원 제외)

- 기존 민박시설(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의 증축(금차 증축 면적을 포함한 주택 연면적 230㎡ 미만)에 소요되는 자금(신축자금은 지원불가)

* 토지매입자금 지원불가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사업자는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개발승인을 받거나 농촌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②-1. 농축산생산 지원>의 개보수자금과 동일

2) 지원용도

- 농촌체험휴양마을 : 기존 시설 및 장비의 개수·보완, 중고시설 자재구입에 필요한 자금

- 관광농원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구입에 필요한 자금

* **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구입 시에는 용자대상에서 제외함**

- 농촌민박 : 기존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을 민박용도 개보수 또는 기존 민박시설을 개보수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단 전부개축은 지원 불가)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다. 운전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운전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3)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의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 (단, 농어촌민박은 최근 2년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연매출액 평균금액의 50%이내-사업신고를 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신고 연매출액의 50% 이내-로 하되 최대 700만원까지)

* 연매출액 신고는 하였으나 해당사업으로 신고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추정매출액과 신고액 중 적은 금액을 연매출액으로 인정

< 기타사항(공통) >

- i)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사업별 담당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ii) 채권보전심사 등 대출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 규정에 의함
- iii) 농촌관광분야(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농기계구입,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설비지원, 농기계보관창고지원,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의 세부사항은 각 사업담당부서에서 별도 시행하는 사업시행지침 참조

1.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가. 대출절차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내용과 사업타당성 검토·분석 후 지원액 결정 및 대출 실행 (다만, 대출금액 1천만원 미만 농기계구입자금은 사업계획 심사 제외)
- 대출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연도 중에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12월 31일(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해야 함
- 부득이하게 12월 31일(대출마감일)까지 대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출마감일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취급기관에서 농식품부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익년 12월말까지 연장 가능
- 연도 중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고 대출실행이 전혀 안된 경우에는 익년도 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음(연장신청 절차 불필요)

나. 적격여부 심사절차

- “원예·축산 생산업, 농산물가공사업,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천적 및 곤충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시설자금 취급 시 대출취급기관은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터 등)에 사업계획과 관련된 인·허가 및 기술검토사항(예, 원예시설의 경우 내재해 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적부 등 지원적격여부에 관한 의견을 요청해야 하며,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터 등)에서는 지원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을 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고, 적격하다고 회신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 기존시설물구입자금은 행정기관에 지원적격여부 의견 요청을 생략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건축 인·허가를 받은 시설물은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인·허가 관련 서류로 지원적격 회신의견을 같음

- 스마트팜지원사업 시설자금 취급 시 대출취급기관은 사업계획 및 투자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다. 원예시설 적정여부 확인절차

- 원예시설물 설치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사전에 설계도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터 등)에 내재해 기준 적합 여부를 의뢰하여 적정여부를 공문으로 회신을 받아야 하며,
 - 시설물이 완공된 후에는 대출취급기관과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터 등) 합동으로 현지 출장점검을 실시하고,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시설물이 내재해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다는 확인서(서식은 농협에서 제공)를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라. 경영실태조사

- 대출취급기관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에 대해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 1월 3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 대출잔액은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 농촌민박사업, 농기계보관창고사업에 한함

마. 기타 시행절차

- 대출취급기관에서 종합자금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한 후 시행(변경 시에도 동일)

IV /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지원실적 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

2. 환류

-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③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입니다.

농업자금 이차보전 대상사업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사무관 정순일	044-201-1838
			주무관 위철승	044-201-1839
	농협경제지주 RPC 관련 협회	양곡부	과장 김기춘	02-2080-6305
		(사)한국RPC협회	상무 서용류	031-423-0872
(사)전국RPC연합회	전무 윤명중	044-866-4204		
(사)대한곡물협회	부장 최용수	042-826-9458		

I 사업개요

1. 목 적

-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 RPC) 등에 벼 매입자금을 지원하여 수확기 농가 벼 판로를 확보하고 산지 쌀 유통기능 활성화

2.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1,230,800	1,230,800	1,230,800	매년 1,230,800
○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1,230,800	1,230,800	1,230,800	매년 1,230,800
- 용 자	1,230,800	1,230,800	1,230,800	매년 1,230,800

1.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정부지원 RPC를 운영 중인 농협, 법인 등
 - * 비 농협조직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법인 등은 지원 제외
 - * 정부지원 RPC : 정부지원 RPC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RPC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정부지원 RPC 심사기준(붙임 1) 참고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비 확보(계약재배, 매입(매취) 및 수탁)에 필요한 자금
 - 농가비 매입 및 수탁, 계약재배 관련 자금(계약금, 중도금, 선금, 잔금)
 - * 용도의 사용(예시) : 타 대출금 상환, 외상 매입금·매출금 상환, 시설·설비 개보수, 장비 구입, 인건비, 공과금, 부동산 및 주식·채권 투자 등

4. 지원형태

- 재원 : 시중은행 자금(이차보전) / 농특회계
- 지원기준 : RPC 쌀산업 기여도 평가 결과 및 통합실적, 전년도 수확기 비매입실적, 계약재배,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총 지원규모 : 연간 1조 2천 308억원 내외
- 지원형태(사업의무량 150% 기준)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 사업의무량 150% 기준 : 지원액 100% + 자부담 25% + 자금 회전 25%(수확기에 확보한 벼를 판매 후 추가 확보)

○ 지원조건 : 연리 0~2%, 10개월 이내 일시 상환

- * 금리는 매년 기여도평가 및 계약재배실적, 원물확보대행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 대출은 매년 9월 1일 기준 실행, 상환은 익년도 6월 30일 기준 상환(대출일에 관계없이 만기일 통일)
- * 통합·연합RPC는 “통합 및 연합 RPC 경영개선 및 사후관리방안(붙임 2)”에 따라 우대자금(무이자) 지원
- * 민간RPC 중 생산자단체로 전환한 RPC는 우대자금(3년간 지원자금 중 최대 25억을 무이자로 전환 또는 추가 지원 등) 지원
- * 사업참여 농가 등에게 자금지원(계약금, 선금, 중도금 등) 시 금리 및 수수료 부과 금지
- * 원물확보대행 자금에 부과된 금리는 원물확보대행 요청 RPC가 부담하여야 함 (관련 이자는 자금을 배정한 RPC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수수료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자를 대행업체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

- 협조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농협중앙회(경제지주)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연간 최소 10억원 이상 최대 250억원 이내

<등급별 최대 지원금액>

(단위 : 억원)

등급	A	B	C	D	E	F
금액	250	200	150	100	50	25

- * 다만, 비 생산자단체 최대 지원한도는 130억원 이내(‘20년은 100억원, ’21년은 50억원, ’22년부터 20억원)
- * 통합RPC 우대자금은 당초 지원기간동안 지원한도액에 관계없이 지원 예정
- * 생산자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 고시) 적용
- * 자금 배정단위 : 1억원

○ 지원 신청범위

- 최대 신청한도 : 전년도 수확기 벼 매입량의 80% 이내 신청
- 최소 신청한도 : 통합·연합RPC 30억원 이상, 일반RPC 10억원 이상
- * 최소 신청한도는 매년 일반RPC는 3억원(통합·연합RPC는 5억원)씩 상향하여 '22년부터는 20억원(통합·연합RPC는 50억원) 이상

6. 사업 의무액

○ 의무사항

- 수확기*에 당해연도 지원자금**의 150% 이상 농가벼 매입
 - * 통합RPC는 '20년은 130%, '21년은 140%, '22년은 150%로 단계적 상향
 - * 기존 통합RPC 우대자금은 '20년은 110%, '21년은 130%, '22년은 150%로 단계적 상향
 - * 수확기는 당해연도 9.1.부터 12.31.까지로 정의하되, 작황에 따라 조정 가능
 - ** 지원자금은 당해연도 배정 금액 기준(연장 후 반납액 및 미 대출액, 중도 상환액 포함)
- 사업실적 불인정 : 지원자금 사용용도 이외의 집행실적, 정부 지원 타 사업자금에서 지원받은 벼 매입자금 집행실적(중복 불인정)

7. 제재 및 감경 기준

- 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여신관계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사용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지원중단 등을 조치
- 지원자금을 사용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지원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의무량 150% 기준), 이하 같다) 보다 낮은 경우 :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적용, 2년간 해당 자금 지원 중단
- 지원자금을 사용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 이상이지만 사업의무부담액 보다 낮은 경우 :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회수, 농협은행의 6개월

만기 정기에금 금리 적용,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금액의 3배를 차기 지원시 차감

- 양곡 생산·유통 및 보조금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혐의사실이 확정된 경우 :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적용, “6. 법규 위반시 제재기준의 ② 개별기준”에 따라 자금 지원 중단 및 감액
 - * 양곡 생산·유통 및 보조금 관련 법규 :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지원 사업시행지침,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대출금 회수,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적용, 기본규정 제79조에 의거 1 ~ 5년간 지원 중단
- 이차보전 대출취급은행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적용, 기본규정 제79조에 의거 1 ~ 5년간 지원 중단
- 부도, 휴업·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적용, 기본규정 제79조에 의거 1 ~ 5년간 지원 중단
- 통합 RPC 이행조건(통합법인 출범 또는 잉여가공시설 폐쇄 등) 미 이행시에는 일반RPC로 전환하고, 대출금 전액 회수,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적용, 이행할 때까지 지원 중단
- 지원자금 미대출시 미대출금액을 차기 자금 지원시 차감
- 정부지원 DSC를 지원받기 위하여 정부지원 RPC와 체결한 출하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 이행기간에는 자금 지원 중단(약정 체결 양 당사자)

- 이차보전 대출취급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즉시 보고
- 기타 이 지침에서 세부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제30조(대출 제한), 제31조(위약금의 징수) 등 준용

○ 제재 감경기준

- 지원대상 업체 소재 시·군의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사업지역 면적의 30% 이상 피해 발생) 및 화재 등 시설 피해(전체시설의 30% 이상 피해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농가 벼를 확보할 수 없다고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원자금의 100% 미만 농가 벼 매입시 자금을 회수(정책자금 연체금리는 적용하지 않음)하되, 차기 차감 및 지원중단 대상에서 제외. 단, 이 경우 해당 시·군의 재해 피해발생 확인서 필요
- 업체별 평균 매입량(최근 5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매입한 경우에는 미 이행금액은 회수(연체금리 적용)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제재 감경
 - 가. 매입량 120% 이상 : 지원 중단 미 적용, 적용금리 0.5%p 상향 적용
 - 나. 매입량 100% 이상 : 지원 중단 미 적용, 적용금리 최고금리 적용

1. 사업신청단계

- 벼 매입자금 지원 및 정부지원 RPC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Agrix를 통해 RPC 쌀산업 기여도 평가와 함께 벼 매입자금 신청(농협RPC 중 통합은 1.21.까지, 개별은 2.11.까지, 민간RPC는 2.28.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 aT는 정부지원 RPC 심사 기준(붙임 1)에 따라 신규 진입 및 제외 평가를 실시한 후 농식품부에 제출(4.30.까지)
- 농식품부에서는 aT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5.31까지)

3. 자금배정 단계

- 농식품부는 자금배정 기준을 aT에 통보
- aT는 배정기준을 근거로 업체별 자금 배정(안)을 농식품부에 제출(5.31.까지)
 - * 양곡 생산·유통 및 보조금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6. 법규 위반자 제재 기준”을 적용하여 배정
- 농식품부는 이차보전 대출취급은행에 자금 배정(6.30까지)
- 이차보전 대출취급은행은 사업자의 해당 시·군지부(영업소)로 자금 재배정
- 사업자는 해당 은행에 자금 대출신청 및 실행
- 자금배정 권한 : RPC의 계약재배 물량 확대와 부족한 대출담보능력 상쇄, 안정적 원물확보 기반 확대 등을 위하여 통합RPC 참여농협 및 원물확보 대행업체(DSC농협 등 비RPC조직)에 대한 자금 배정권한 부여(붙임 3 참조)
 - 통합RPC 참여농협 및 원물확보 대행업체(DSC농협 등 비RPC조직)는 1개의 RPC와 원물확보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자금 신청·배정 받아야 하며, 대출은 대출취급은행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음(관련 이자는 자금을 배정한 RPC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수수료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자를 대행업체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 사업시행단계

- 대출기간 : 익년도 6월 30일까지(대출일에 관계없이 만기일 통일)
- 대출시기 : 매년 9월 1일
 - *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 전용계좌(계정)를 개설하여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용계좌(계정)를 통하여 수확기에 농가벼 매입 등을 하여야 함
 - * 농식품부 자금배정 후 2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배정금액은 전액 환수 후 연장여부 또는 재배정 실시
 - * 연장은 대출예정은행의 대출가능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재배정은 “II. 주요내용,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에 관계없이 실제 대출 가능 RPC에게 우선 배정하여 수확기에 대출이 실행되어 농가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
 - * 또한, 매년 연말까지 대출되지 않는 자금은 환수를 원칙으로 하고, 농식품부의 대출마감일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함
 - * 대출취급은행 : NH농협은행(농협 시·군지부 정책 대부계) 및 농업정책자금 대출 취급은행으로 추가된 은행(부산은행, 광주은행, DGB대구은행, KEB하나은행 / '18.12월 기준)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이차보전 대출 취급은행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함
- 농가 벼 매입시 대금(수탁선도금 포함) 지급은 농가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 * '19년 수확기부터 현금 지급 거래 불인정

5. 이행점검단계

- 농식품부는 자금 대출현황, 수확기 벼 매입상황 등 점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6월, 10~11월)
 - 점검반 : 농식품부, 농관원, aT,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민간RPC 협회 등 합동 현지 방문 점검

- RPC는 벼 수확기 이전에 호퍼스케일(수분·중량), 제현율 자동측정기 등의 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가급적 전문대행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으로 받아야 함
 - RPC 시설 변경시 농관원(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매년 시설능력(건조·저장·가공)을 정기 조사 실시(교정검사 및 시설능력 조사결과는 계통보고)
 - 시설 교정검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공인검사기관에서 받도록 조치
- 사업자는 수확기 자체매입 등 원료 벼의 확보·가공 및 판매현황을 명확히 기록한 관련대장 비치(보관기간 3년)하고, 농가 벼 확보관련 증빙자료(통장입금 자료, 현금지급 증빙서류, 호퍼스케일 기록자료 등)를 별도 편철하여 비치
- 이차보전 대출취급은행은 RPC 벼 매입자금 대출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 까지 농식품부 및 aT로 보고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민간 RPC 협회에서는 대출포기 등 자금의 전배 조치 사유 발생시는 수시 보고
- 농관원장은 수확기 자체매입실적이 포함된 당해연도 벼 매입실적 등 벼 매입자금 사용 실적 및 용도의 사용 등을 조사하여 익년 1월말까지 농식품부로 보고(사무소 → 지원 → 본원 → 농식품부)
 - 매입실적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관원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필요시 수시 확인·점검 실시(붙임 4, 5 참고)
 - 조사 대상 업체는 원료벼 매입실적(붙임 9) 및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조사 시작 7일 이내 농관원에 제출하고, 원료벼 매입량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 농관원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 이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농관원(사무소)은 관련 장부, 증빙자료, 농가통장 입금자료, 현장(창고 및 사일로) 조사 등을 통해 실제 매입여부 확인
 - * 농관원에서 보고한 벼 확보실적은 최종적으로 RPC 쌀산업 기여도 평가를 통하여 검증·확인
 - * 사업자는 농관원에서 자체매입실적 등 벼 확보실적 점검·확인시 적극 협조

- 농관원장은 연도말 기준, RPC 및 DSC 사업자의 벼 건조·저장·가공능력을 조사하여 익년 1월말까지 농식품부로 보고(사무소 → 지원 → 본원 → 농식품부)(붙임 1 참고)
 - 조사 대상 업체는 RPC 시설능력 현지조사표(붙임 10, 11) 및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조사 시작 7일 이내 농관원에 제출하고, RPC 시설능력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 농관원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 이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농관원장 및 시·도지사는 양곡 생산·유통 및 보조금 관련 법규 위반, 부정 업체에 대하여 익년 1월말까지 농식품부로 보고
 - 보고내용 : 양곡 생산·유통 및 보조금 관련 법규 위반내용, 적발일시, 처분일시 및 결과, 처분기관 등
- RPC는 쌀산업 기여도 평가 대비 평가항목별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서류 미 구비시 실적 미인정
 - 매입실적을 입증할 호퍼스케일, 트럭스케일 등 매입량 계측 자료를 구비
 - 수탁매입 선도금은 농가와 RPC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되, 수확기 이후 수탁매입벼(쌀) 판매가와 연계하여 정산한 경우 등 정상적인 수탁거래인 경우만 수탁매입실적으로 인정(수확기 중이라도 쌀로 판매 후 쌀값과 연계하여 정산한 경우에는 수탁매입 인정)
 - 계약재배는 특정품종을 농가 또는 작목반 등과 사전 계약한 후 매입시 품종 혼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관리한 경우만 인정
- RPC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시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민간협회 등을 통해 농식품부로 승인 요청
 - 승인 이후에만 대출 승계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차보전 대출취급은행은 농식품부 승인 여부 확인 후 채무자 변경 등 필요사항 처리
 -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변경시에는 제외
- 기존 정부지원 RPC를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승계 전(양곡가공업 승계 이전) aT에 최근 2년간 운영상황 등을 제출하여 “정부지원 RPC 신규 진입기준

(붙임 1)”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주요 확인사항 : 시설·부지 양도, 운영자금 확보, 고용승계, 주요거래처 유지여부 등

- 양곡 생산·유통 및 보조금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II. 주요내용 중 6. 사업의무액의 의무사항 미준수시 제재”를 적용하여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지원중단 등 조치

6. 법규위반시 제재기준

①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제재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재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제재기준이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제재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제재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재가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그 제재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양곡가공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벼 매입자금 지원업체의 대표, 소속직원, 실제 운영자 등이 양곡 생산·유통 및 보조금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업체에 제재기준을 적용
- 통합 RPC에 대해서는 시설통합이행 여부(잉여도정시설의 폐쇄 후 DSC 전환) 등을 평가하여 미이행시 일반RPC로 전환하고, 이행할 때까지 통합RPC

우대자금 지원 중단 및 기 지원자금에 대한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부과 후 회수

- 고품질쌀 현대화사업을 조건부로 지원(취급기준 5년 이내 충족) 받은 RPC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지원 RPC에서 영구제외 및 “II. 주요 내용 중 6. 사업의무액의 의무사항 미준수시 제재”를 적용하여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지원중단 등 조치

② 개별기준

위반사항		위반 횟수별 제재기준		
		연간 1회	연간 2회 또는 2년 연속	연간 3회 또는 3년 연속
가. 양곡 생산·유통 및 보조금 관련 법규 위반	① 금고형 이상 벌칙에 처한 경우	2년간 지원중단	3년간 지원중단	영구 지원중단
	② 벌금형 벌칙에 처한 경우	1년간 지원중단	2년간 지원중단	3년간 지원중단
	③ 선고유예·기소유예 벌칙에 처한 경우	50% 감액	1년간 지원중단	2년간 지원중단
	④ 과태료 처분	경고	25% 감액	1년간 지원중단
나. 공공비축 산물벼 임의 처분과 관련한 벌칙에 처한 경우		5년간 지원중단	영구 지원중단	-

- * 기타 양곡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적용
- * 감액기준은 전년도 배정금액 또는 당해연도 산출금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함
- * 과태료 처분 연간 2회 또는 2년 연속 적용은 나중에 부과된 과태료를 기준으로 함 (예시 : 1회 50만원 부과, 2회 100만원 부과된 경우 자금 15% 감액 적용)

③ 제재조치 시기

- 제재시기는 1차 처분 또는 판결일부터 적용하되,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는 “II. 주요내용 중 6. 사업의무액의 의무사항 미준수시 제재”를 적용하여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지원중단 등 조치
- * 정부지원 대상에서 영구제외되는 RPC가 업체명, 대표자명을 변경하더라도 정부지원 진입불가

1. 성과측정단계

- 농관원의 벼 매입실적 보고자료를 활용하여 유통량 대비 RPC 처리량 등 측정
 - 농관원은 RPC 벼 매입실적을 농식품부로 보고(익년 1월말까지)

2.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RPC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해 매년 쌀산업기여도 평가 실시
 - 평가결과 우수한 RPC는 정부지원(시설 및 매입자금 등)을 우대하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RPC에 대해서는 통합 등 구조조정 유도
 - 통합 RPC는 벼 매입자금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우대 조치
 - 쌀산업기여도 평가 결과는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고(붙임 7)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 확인서(붙임 8)를 발급할 수 있음.

3. 2019년도 쌀산업기여도 평가 계획

- 평가기관 : aT(협조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 평가방법 및 기준 : 자세한 사항은 별도 시달
 - 농식품부는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aT, 지자체,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민간 협회 등 관련기관·단체에 통보(전년도 12.5.까지)
 - 벼 매입자금 지원 및 정부지원 RPC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Agrix를 통해 RPC 쌀산업 기여도 평가와 함께 벼 매입자금 신청(농협RPC 중 통합 RPC는 1.21.까지, 개별RPC는 2.11.까지, 민간RPC는 2.28.까지)
- aT는 평가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쌀산업기여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5.15.까지)
- 농식품부에서는 aT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결과 확정(6.30까지)

<붙임 1>

정부지원 RPC 심사기준

정부지원 RPC 신규 진입기준

1. 신청자격

- 「양곡관리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에 한함) 신고 또는 승계신고를 한 자 중 벼 건조·저장·가공시설을 일관설치하고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업체. 단, 부도 RPC 인수업체의 경우 정상 운영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적용('18년 신청분부터 적용)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자격이 없음
 - ① 타 업체를 인수한 경우 인수한 대표자 명의로 2년(부도 RPC 인수업체는 3년) 미만 운영
 - ② 법규 위반 등으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처분 중인 업체

2. 심사기준

가. 시설기준(세부 조사방법은 붙임 6 참고)

- 공통기준
 - 실제 가동·운영 중인 시설·장비에 한하며,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장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시설능력 및 용량 등은 생산업체에서 제시한 규격을 기준으로 조사
- 원료투입구 시설 : 산물벼 반입을 위한 2개소 이상(가공시설 전용 투입시설은 제외)
 - 설치기준 : 원료투입 건축구조+조선기(시간당 20톤 이상)+호퍼스케일+집진시설

- 건조능력 : 2,000톤 이상
 - 반입시설과 연계하여 산물상태로 건조할 수 있는 구조
- 저장능력 : 2,000톤 이상
 - 산물형태로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구조
- 가공능력 : 2.5톤/시간 이상
- 색채 선별기 : 1대 이상(3톤/시간당)
 - 제조업체의 사양서에 따라 색채 선별기 능력을 조사
- 품질검사 시스템 : 원료 벼 반입 시 수분, 중량, 제현율 등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

나. 운영기준(전년도 1.1 ~ 12.31 운영실적)

- 가동기간 : 일관처리시설 설치 후 2년(부도 RPC 인수업체는 3년)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업체
- 쌀 판매실적 : 쌀 매출액이 50억원(세무 신고자료) 이상
- 취급물량(① ~ ⑤ 동시 충족 조건) : ① 벼 5,000톤 이상 매입, ② 쌀 3,500톤 이상 판매, ③ 수확기 벼 2,500톤 이상 매입, ④ 원료벼 계약재배 1,000톤 이상, ⑤ 매입량 대비 가공율이 50% 이상
- 당해연도 운영자금 : 10억원 이상 확보 가능
- 당해연도 쌀산업기여도 평가 : F등급 중 15점 이상 업체
 - ※ 운영기준을 일부(계약재배물량, 운영자금 확보)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RPC 예비대상자”로 지정하여 2년간 매입자금을 별도로 지원하여 신규RPC로 육성 (10억원 내외, 금리 2%)

다. 지역기준

- 시·군별 RPC 개소당 논면적 : 1,500ha 이상 확보
 - * 단, 친환경, 특수미 전용 RPC는 인증단지 등과의 계약재배면적으로 적용(연접 시·군 포함)
- 통합 RPC의 위성DSC 및 개별DSC는 개소당 1,000ha로 산정
- 통합RPC는 통합에 참여한 RPC(DSC 포함) 개수로 산정
- 정부지원 RPC가 소재한 읍·면에는 RPC 신규진입 금지
 - * 다만, '17년 이전에 설치·가동 중인 도정업체 중 시설 및 운영실적이 심사기준 이상 충족하고, RPC당 논면적이 1,500ha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신청 허용
 - * 문1) A군 논 면적 10,000ha이고, 정부지원 RPC 4개소와 정부지원 DSC 2개소가 있을 경우 신규로 정부지원 RPC 또는 정부지원 DSC 인정 가능 여부
 - ▶ $10,000\text{ha} - [(4\text{개소} \times 1,500\text{ha}) + (2\text{개소} \times 1,000\text{ha})] = 2,000\text{ha}$
 - ⇒ RPC 1개소 또는 DSC 2개소 가능
 - * 문2) B군 논 면적 10,000ha이고, 정부지원 RPC 5개소이며, RPC 중 1개소는 2개 RPC와 1개 정부지원 DSC가 통합된 RPC일 경우는?
 - ▶ $10,000\text{ha} - [(4\text{개소} \times 1,500\text{ha}) + (2\text{개소} \times 1,500\text{ha}) + (1\text{개소} \times 1,000\text{ha})] = 0\text{ha}$
 - ⇒ RPC 또는 DSC 모두 불가
 - * 문3) C군 논 면적 3,400ha이고, 정부지원 RPC 1개소와 정부지원 DSC 1개소가 있을 경우 신규로 정부지원 RPC 또는 정부지원 DSC 인정 가능 여부
 - ▶ $3,400\text{ha} - [(1\text{개소} \times 1,500\text{ha}) + (1\text{개소} \times 1,000\text{ha})] = 900\text{ha}$
 - ⇒ RPC 또는 DSC 모두 불가
 - * 논면적은 통계청 자료 기준

정부지원 RPC 제외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정부지원 RPC에서 제외

① 시설기준 미달 RPC(당해년도 시설능력 조사결과 기준)

② 운영기준 미달 RPC(전년도 1.1 ~ 12.31 운영실적 기준)

- 쌀 매출액이 50억원(세무 신고자료) 미만

- 벼 5,000톤 미만 매입(다만, 2019년에 한해 2년 연속 연간 벼 3,000톤 미만 매입으로 유예 운영)

- 쌀 3,500톤 미만 판매(다만, 2019년에 한해 2년 연속 연간 쌀 2,100톤 미만 판매로 유예 운영)

- 수확기 벼 2,500톤 미만 매입(다만, 2019년에 한해 2년 연속 수확기 벼 2,500톤 미만 매입으로 유예 운영)

- 원료벼 계약재배 1,000톤 미만

- 매입량 대비 가공율이 50% 이하

③ 운영자금 및 기여도 평가(당해년도 기준)

- 운영자금 : 10억원 미만 확보

- 쌀산업기여도 평가 미 신청

- 쌀산업기여 평가 결과 F등급 RPC 중 15점 미만 업체

④ 기타

- 부도 RPC(법원회생신청 포함)

- 통합탈퇴 RPC

- 해산된 통합 RPC

- 양곡 생산·유통 및 보조금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처분, 공공비축
미 벼 임의처분, 원산지표시 위반 등

- 통합RPC 지원 조건 미 충족자

※ 자연재해 등으로(사업지역면적의 30% 이상 피해가 발생했으며, 해당 시·군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불가피하게 벼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는
RPC 제외를 1년간 유예할 수 있음

※ 위 ⑦,⑧의 사유(통합탈퇴, 해산통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RPC에서
영구제외

※ 고품질쌀 현대화사업을 조건부로 지원(취급기준 5년 이내 충족) 받은 RPC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지원 RPC에서 영구 제외

<붙임 2>

통합 및 연합 RPC 경영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

- 통합 및 연합 RPC에 대한 벼 매입자금 우대지원 : 통합 및 연합 초기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 참여 개소수에 따라 벼 매입자금 등 우대지원
 -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자 선정시 우대, 정부보급종 우선배정 등
- 단기간 내에 통합이 어려운 경우 연합RPC로 일정기간 운영 후 통합으로 전환할 경우 벼 매입자금 및 시설개보수 우대지원
 - 연합RPC는 3년간 벼 매입자금 우대지원
 - 연합RPC 운영 후 취급기준(벼 10천톤 매입, 쌀 7.5천톤 판매)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설개보수 조건부 지원(5년 이내 충족)
 - * 단, 고품질쌀 현대화사업을 조건부로 지원(취급기준 5년 이내 충족) 받은 RPC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지원 RPC에서 영구제외되고, “II. 주요내용 중 6. 사업의무액의 의무사항 미준수시 제재”를 적용하여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지원중단 등 조치
- 통합 및 연합 RPC 참여업체가 탈퇴(해산 포함)시 탈퇴 및 해산업체 몫으로 지원된 벼 매입자금에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하여 회수
 - 자금회수 범위 : 탈퇴(해산 포함) RPC의 기본등급 지원액 + 우대지원액
 - 탈퇴 및 해산 RPC는 정부지원 RPC에서 영구 제외
- 2년차 이상 통합 RPC에 대해서는 시설통합이행 여부(잉여도정시설의 폐쇄 후 DSC 전환) 등을 평가하여 미이행시 일반RPC로 전환하고, 이행할 때까지 통합RPC 우대자금 지원 중단 및 기 지원자금에 대한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부과 후 회수
 - 본소 도정시설의 가동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부도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시설통합 이행으로 간주

- 수확기 농가벼 매입시 적정가격으로 매입토록 지도(농협중앙회(경제지주), 한국RPC협회, 전국RPC연합회, 대한곡물협회)
 -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의 통합 RPC 이사회 등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토록 하되, 농가장려금 지급 등은 배제(필요한 경우 참여농협 등에서 지급)
- 통합 RPC 등의 고품질쌀 생산·유통체계 구축(지자체 등)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규모화 된 우수브랜드 경영체로 육성, 계약재배 내실화로 원료확보체계 확립, 경영우수사례 발굴 및 성공적인 통합 및 연합 모델 제시, 통합 RPC 등의 고품질쌀 생산·유통 및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시상 등
- 통합 I유형(농협 + 농협)
 - ① 2개 이상 농협RPC가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한 후 통합·운영하는 경우
 - ② 시·군내 농협RPC가 1개소인 경우 관내 농협의 50% 이상이 참여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 ③ 농협RPC를 보유하고 있는 농협간 합병하여 통합·운영하는 경우
- 통합 II유형(농협 + 민간)
 - ① 농협RPC와 민간RPC간 별도 법인(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법인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 ② 농협RPC와 민간RPC간 자산인수(DSC, 비RPC 포함)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하여 운영하는 경우
 - ③ 농협RPC 또는 민간RPC가 연간 6천톤 이상 가공실적을 보유한 민간도정업체(비RPC) 또는 농협도정업체(비RPC)와 시설을 통합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하여 운영하는 경우
 - ④ 농협RPC 또는 민간RPC가 민간DSC 또는 농협DSC와 5년 이상 계약체결(수탁판매 또는 위탁가공) 후 운영하는 경우

○ 통합 III 유형(민간 + 민간)

- ① 2개 이상 민간RPC가 통합(합병 또는 자산인수)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하여 운영하는 경우
- ② 민간RPC가 연간 6천톤 이상 가공실적을 보유한 민간도정업체(비RPC)와 시설을 통합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하여 운영하는 경우
- ③ 4개 이상 민간RPC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연합하여 쌀판매 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 ④ 2개 이상 민간RPC가 백미 전용 도정법인을 설립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경우
- ⑤ 민간RPC가 민간DSC와 5년 이상 계약체결(수탁판매 또는 위탁가공) 후 운영하는 경우

○ 통합 IV 유형(광역)

- ① 2개 이상 시·군의 RPC간 통합·운영하는 경우
- ② 1개 시·군의 지역 통합RPC(2개 이상 RPC 참여한 경우만 해당)가 2개 이상의 타 시·군 DSC·비RPC농협이 참여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 연합 I 유형(농협 + 농협)

- (농촌연합형) 시·군내 농협RPC가 1개소인 경우 관내 농협이 모두 참여하여 연합·운영하는 경우

○ 공통 기준

- 통합 및 연합 대상은 최근 3년간 경영평가 수검 등 정상적인 경영상태인 RPC이어야 함
- 통합 인정 후 도정시설은 1개로 통합·운영하여야 함
- * 다만, 주 도정시설의 가동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부 도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시설통합 이행으로 인정 가능

- 통합RPC로 인정받은 경우 생산자단체(「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 고시) 적용)이어야 함
- 통합 및 연합 RPC에 참여하는 DSC(수탁판매 또는 위탁가공 계약체결)는 수확기 벼 매입실적 800톤 이상, 1개 품종 매입, 계약물량은 취급량의 80% 또는 최소 3천톤 이상이어야 함
- 통합 및 연합 불인정 및 제외 기준
 - 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농협 RPC가 탈퇴하거나 해산하여 자체 또는 타 농협과 통합 또는 연합 RPC를 구성한 경우
 - 광역통합의 경우 통합 이후 타 시·군의 DSC시설을 폐쇄하고 한 시·군에서만 운영할 경우
 - 통합계획(통합법인 출범, 잉여가공시설 폐쇄, 인력배치, 책임경영체제 구축, 원료비 확보 및 마케팅창구 단일화 등)을 미 이행한 경우
 - 통합 및 연합에서 탈퇴한 RPC와 참여 조합·업체(DSC 포함), 해산된 통합 RPC와 참여 조합·업체(DSC 포함) 등은 정부지원 RPC 영구제외
- 통합 및 연합 인정 절차
 - 통합 I유형(농협 + 농협), 연합 I유형 : 주관 농협 → 농협중앙회(경제지주)(검토의견 첨부) → 농식품부(최종 승인)
 - 통합 II유형(농협 + 민간)과 통합 III유형(민간 + 민간) : 희망 농협 또는 업체 → 시·군(검토의견 첨부) → 시·도(검토의견 첨부) → 농식품부(최종 승인)
 - 통합 IV유형(광역) : 농협간의 통합은 I유형 적용, 민간이 포함된 통합은 II유형 적용
- 통합계획 이행여부 평가
 - 평가내용 : 통합계획 이행여부
 - 평가방법 : 매년 쌀산업기여도 평가시 별도 실시
 - 결과활용 : 통합계획 미이행 RPC는 “II. 주요내용 중 6. 사업의무액의 의무사항

미준수시 제재”를 적용(일반RPC 전환, 대출금 전액 회수, 농협은행의 연체 대출금리 적용, 이행할 때까지 지원 중단)

○ 우대자금 지원 세부내용

- 지원기간 : 통합 5년, 연합 3년

* 연합 후 통합시에는 6년

- 지원금리 : 무이자

- 지원액 : 통합 및 연합 참여 RPC 개소당 5~50억원, 비RPC조합 또는 DSC
개소당 1~2억원

<동일 시·군 지역통합>

(A) 1개 RPC 통합 : 5억원 + (1억원 × DSC · 비RPC 농협수)

* DSC·비RPC농협 한도 4개소

(B) 2개 RPC 통합 : (10억원 × RPC수) + (2억원 × DSC · 비RPC농협수)

* 비RPC농협 한도 8개소

(C) 3개 RPC 이상 통합 : (20억원 × RPC수) + (2억원 × DSC · 비RPC농협수)

* 비RPC농협 한도 8개소

<광역통합>

(D) 통합RPC간 광역통합 : (50억원 × RPC수) + (2 × DSC · 비RPC농협수)

* DSC·비RPC농협 한도 12개소

(E) 일반RPC간 광역통합 : (30억원 × RPC수) + (2 × DSC · 비RPC농협수)

* DSC·비RPC농협 한도 12개소

(F) 통합-일반RPC간 광역통합 : (50억원 × 통합RPC수) + (30억원 × 일반RPC수)
+ (2억원 × DSC·비RPC농협수)

* DSC·비RPC농협 한도 12개소

<연합유형>

(G) (A)타입 적용

<통합 유형별 지원타입>

- 통합 I-① : B 또는 C타입
- 통합 I-② : A타입
- 통합 I-③ : A타입
- 통합 II-① : B 또는 C타입
- 통합 II-② : B 또는 C타입
- 통합 II-③ : A타입
- 통합 II-④ : A타입
- 통합 III-① : B 또는 C타입
- 통합 III-② : A타입
- 통합 III-③ : C타입
- 통합 III-④ : B타입
- 통합 III-⑤ : A타입
- 통합 IV-① : D 또는 E 또는 F 타입
- 통합 IV-② : F 타입
- 연합 I-① : G타입(A타입)
- 연합 I-② : A타입

<붙임 3>

원물확보 대행사업

- 민간RPC가 원물확보 대행업체(DSC농협 등 비RPC조직)와 계약 체결
- 계약 체결을 근거로 배정된 자금을 대행업체에 배정
- 소속 협회를 통해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 농식품부 승인 후 대행업체에서 자금 대출(부과된 금리는 RPC에서 부담 원칙, 추후 수수료로 정산하여야 함)
- 대행업체에서는 대출받은 자금의 150%에 해당하는 물량을 확보(대행업체의 물량확보 방식(계약재배, 수탁출하, 단순 매입 등)은 자율)
- RPC에서 요청할 경우 원료 비 입고(대행업체에 보관시설이 없어서 수확기에 바로 RPC에 원료비를 입고하거나, 대금지급이 일정기간 이후에 실시되는 경우 채권보전방법은 쌍방간 합의 결정)
- RPC는 원료비 입고 후 2일 이내에 대행업체에 대금 지급
- (장기 보유형) 최대 익년 6월말까지 원료비 인도 및 일시상환 조건(의무량 150%)
 - * 민간RPC 또는 대행업체는 사업의무량 중 나머지 50% 물량을 상호 협의하여 수확기에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 (장기 회전형) 대행업체는 1차 대금 입금 후 수확기 내에 원물 추가 확보 (50%), 최대 익년 6월말까지 원료비 인도 및 일시상환 조건(의무량 150%)

<붙임 4>

수탁사업 시행요령

○ 계약체결

- 사업대상RPC가 수탁희망농가 또는 법인화된 단지와 자율적으로 수탁판매 약정 체결하고, 사업대상 RPC는 벼 수탁판매 약정농가 관리대장 비치하고 기록 유지
- 들녘경영체 등 계열화단지를 중심으로 RPC별로 수탁사업에 대한 농가 홍보 실시 후 수탁계약 체결
- 수탁계약은 RPC와 농가 또는 법인화된 단지간에 직접 체결하여야 함(단, 법인화가 안 된 경우에도 단지대표가 계약에 대한 행정처리는 일괄수행 가능)
- 계약금 및 선도금(우선지급금)은 계약체결 또는 수탁물량 인수도시 RPC가 농가 또는 법인에 지급하되 지급비율(50% 미만)은 농가 등과 자율적으로 결정
- 선도금의 기준가격은 해당 RPC에서 동일품종 매입가격으로 결정
- 계약금 및 선도금의 지급은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현금 지급 불인정)
- * 계약금과 선도금 지급은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진행 가능

○ 수탁물량 인수도

- 수탁사업 약정농가는 수확기에 수탁약정 물량을 RPC에 판매위탁하고 RPC는 농가에 수탁보관증 발급
- 수탁보관증은 약정농가와 RPC가 상호날인하여 농가와 RPC가 각각 보관
- RPC 책임하에 수탁물량 인수도 시점부터 판매시까지 수탁물량을 안전하게 보관
- 수탁물량 보관 중 도난, 변질, 부패, 침수, 화재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RPC가 부담

○ 판매 및 정산

- 최종정산은 공동계산방식으로 정산(투기를 조장하고 상생 취지를 훼손하는 개별정산은 불인정)
- 판매 후 수탁판매 대금에서 선도금과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농가 통장으로 지급
- * 공동정산 : 판매 완료 후 또는 기간별로 평균 판매가격을 산출하여 정산 (다음년도 2월 1일 이후 50% 이상 지급하는 조건 만족시에만 인정)
- * 개별정산 : 농가가 희망하는 시기에 당시의 시가로 정산
- 수수료는 RPC가 농가 등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약정농가에 사전 고지 후 사업 추진

○ 수탁협의회 구성

- RPC는 수탁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반사항(선도금 지급비율, 수수료율, 판매 및 정산기준 등)을 협의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농가대표(단지대표 등), RPC, 농협, 농관원, 시군 등이 참여한 수탁협의회를 구성 운영

<붙임 5>

RPC 벼 매입실적 조사 방법

1. 목적

- 정부지원 RPC에 지원하고 있는 벼 매입자금을 이용한 매입 실적을 현장 확인하여 정책 자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2. 조사대상 업체 : 209개소

- '18년에 정부지원 RPC로 지정된 RPC 및 신규진입 신청예정자
 - RPC 209개소(농협 141, 민간 68)

3. 조사대상 물량

- 기간('18.1.1~ '19.1.31) 중에 RPC가 실제 매입하여 농관원에 제출할 자료
 - 금회조사는 '18.1.1~12.31까지(12개월분)와 '19.1.1~1.31(1개월분) 매입실적을 각각 조사함

4. 조사 항목

- 공공비축매입(산물), 계약재배매입(매취·수탁), 일반매입(매취·수탁), 공매, 수확기 자체매입(물량·매입단가), 야적물량, 수탁지급 대행실적
 - 조사 항목별 매입단가가 각기 다를 경우 항목별 총 매입금액을 항목별 총 매입물량으로 나눠 산출
 - * 매입단가 = 매입금액(천원)/매입량(톤)×40kg

5. 조사 요령

- 공공비축용 정부 산물수매 조사시 매입단가('18년 산물벼 단가 적용)
 - * 포대벼 포장 제비용을 제외한 상기 금액으로 매입금액 산정
 - 총물량은 톤으로 기재하고, 단가는 40kg/대 평균가격을 기재
- 계약재배 : 재배품종이 명시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RPC로 출하되어 구분 보관하는 물량만 인정
- 수탁매입 : 농가와 RPC간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선도급은 농가와 RPC간 자율적 결정하며, 수탁매입벼(쌀) 판매가와 연계하여 정산한 경우만 수탁 매입으로 인정

- * 수탁가격 : 해당 RPC의 동일 품종 실제 매입가격(농가와 RPC간 합의 결정)
- 특별한 사유없이 시세보다 비싼 경우 사유와 입증 자료를 제출토록하여 확인
- 수확기 매입 : '18년산 신곡만 수확기 매입량으로 인정('18.9.1~'18.12.31)
- * '18.8월에 원료벼 매입실적이 있어도 '18년산 신곡이 확인될 경우 수확기 매입량으로 인정
- * '18.9월 이후에 원료벼 매입실적이 있어도 '18년산 신곡이 아닐 경우 수확기 매입량으로 미인정
- 사업의무량 매입 : '18년산 신곡만 사업의무량 매입으로 인정(수확기 매입 + '19.1월 중 매입량)
- * 세부기준은 수확기 매입기준과 동일
-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실적 :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농협이 소재한 사무소에서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을 신청한 RPC에 대하여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체결 계약서”를 확인하고,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실적을 조사(수탁물량도 확인)후 RPC가 소재한 사무소 및 해당지원에 조사결과를 공문 통보

6. 확인 내용

- RPC가 매입한 벼 확보 실적과 비교하여 실제 매입여부를 확인
 - 관련 장부, 농가통장 입금 자료(통장 미 입금시 현금지급 증빙자료) 등 확인
 - * (참고) '19년도 수확기부터 현금거래 실적은 불인정 예정
 - 현 재고량과 판매량 등을 비교 검토
- 수탁물량 확인, 허위여부 점검
 - 벼 수탁판매약정 농가 관리대장 및 수탁계약서
 - * 수탁 계약서가 없을 경우 수탁 미 인정(매입(매취)로 인정)
 - 농가 수탁판매약정 체결 서류
 - 선도금 지급 서류, 농가 수탁보관 발급 서류(농가 수탁증 등)
 - 벼 수탁보관 정산 서류(수수료 포함)
 - RPC별 수탁물량 확인(참고 등)

-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실적(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농협에서 확인)
 -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체결 계약서(계약서가 없을 경우 미 인정)
 - 실제 RPC 입고물량(창고 등)

7. 인정범위

- 원료 벼 매입관리 대장(서식1)에 작성된 매입실적을 인정
- 자체매입 실적은 연산구분 없이 모두 인정
- 수확기 자체 매입량은 '18년산 신곡만 인정(구곡 미 인정)
 - 사업의무량 매입도 '18년산 신곡만 인정
- 공매는 연산구분 없이 인정(자체매입에 미포함, 합계에만 포함)
- 순수한 벼(매벼·찰벼·특수벼) 매입만 실적으로 인정(쌀, 보리, 잡곡은 미 인정)
 - 단, 도서지역 등 지역특성상 벼를 쌀로 가공·판매 후 정산하는 쌀 수탁은 인정(벼로 환산해서 실적 인정, 쌀 매입량 ÷ 0.72)
- 농가벼를 직접 매입한 경우와 비RPC농협에서 매입한 경우만 인정
 - 비RPC농협 : RPC를 운영하지 않고 농가로부터 벼를 매입한 농협
 - 자도·타도간 지역을 구분하지 않음
 - 조곡상 거래는 매입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 확보 시에만 인정
 - RPC간 거래는 미 인정(단, 정부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
- 통합RPC의 경우 참여농협이 벼를 매입한 실적도 조사
 - 통합RPC 참여농협이 벼를 매입한 경우 통합RPC 실적으로 인정(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격, 물량 등을 명시하고 통합RPC가 인수한다는 내용의 의결서 또는 증빙서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
 - * 통합RPC의 참여농협 현황은 붙임의 '통합RPC 현황'을 참조
-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확인시 농관원은 RPC와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농협간 체결 계약서를 확인 후 벼가 보관된 장소 파악(농협, RPC)
 - 계약서가 없으면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미 인정

- 계약서가 있으나 벼가 농가에 있으면 미 인정
- 계약서가 있고, 농협 또는 RPC에 벼 보관(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인정)
- 수탁인정 조건에 해당되나 선도금 금액이 아닌 최종 정산가격으로 농협이 농가에 지급시에는 농협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인정(농협이 우선 모든 금액을 농가에 지급하고 차후 RPC에서 차액을 받아 충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 농협이 선도금, RPC가 선도금의 차액을 지불한 경우가 원칙적인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에 해당함

<용어정의>

- 1) 수탁 : RPC가 농가로부터 벼 값의 일부(농가와 협의결정)를 지급하고 매입·보관하고 시세에 맞춰 판매함으로써 보관, 가공 등 제반 비용의 차액을 정산(다음년도 2월 1일 이후 50% 이상 지급 조건)하고 수익의 일부를 농가에 돌려주는 제도(농가는 판로확보가 가능, RPC는 벼 가격의 일부 금액으로 많은 양의 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보관·관리를 맡아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이 가능)
 - * 선도금을 주지 않고 RPC가 판매 후 정산한 것도 수탁에 해당함
 - * '18년 실적('19년초 조사 시)에 한해 개별정산(특정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인정
 - 2) 매입(매취) : RPC가 농가로부터 매입당시 시세로 전액 정산하여 매입하는 제도(모든 수익은 RPC 소유)
 - 3) 수탁선도금 : 수탁을 위해 RPC와 농가가 협의하여 벼 값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금액(판매 후 정산시 나머지 금액 지급)
8. 기타
- 조사 업체에서 자료 제출거부 또는 자료 미비치 등 확인 조사가 불가능 할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사유기재
 - 기타 조사관련 의문사항은 농관원 본원 품질검사과(054-429-4114) 또는 농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로 문의

* 주관에 의한 자의적인 판단 조사는 지양(이의신청 등 민원발생)

- 영업상 답변이 곤란한 사적 질문 및 조사내용 누설 금지,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조사 태도를 지양하고 친절히 응대

9. 행정사항

- RPC(DSC) 원료벼 매입 실적 확인 및 수탁대행 실적 보고

- 사무소 → 지원 : 2. 28(목)까지

- 지원 → 본원 : 3. 15(금)까지

* 지원에서는 검토 철저 : 매입가격이 고가인 경우, 매입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톤 → Kg 환산여부 등) 등

- 본원 → 농식품부(아그릭스 입력) : 3. 29(금)까지

<매입량 조사 예시>

<예시1> 통합RPC 참여농협이 통합RPC와 무관하게 벼 매입 후 통합RPC에 인도한 경우(이사회 의결이 없는 경우)

⇒ 참여농협이 매입한 실적은 통합RPC 실적에서 제외

<예시2> 수탁선도금을 주지 않고 농가와 수탁한 경우

⇒ 수탁 계약체결 등 증빙서류가 있으면 수탁인정

<예시3> 수탁대행농협과 RPC간 수탁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농협이 수탁대행 하였을 경우

⇒ 수탁매입 실적 미 인정

<예시4> 수탁대행 농협이 RPC로부터 받은 수탁잔금 금액과 다르게 농가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 수탁대행 농협이 RPC로부터 받은 잔금을 농가에 정산해 준 경우만 수탁매입으로 인정, 농협이 별도 정한 가격으로 정산한 경우 농협이 매입한 것으로 간주

<예시5> 일반매입시 3천톤은 50,000원/40kg으로, 2천톤은 53,000원으로 매입한 경우 매입단가

⇒ 매입단가(40kg) : 51,200원 = (3,750백만원+2,650백만원)/5천톤×40kg

* 3,750백만원 = (3,000,000kg ÷ 40kg) × 50,000원

* 2,650백만원 = (2,000,000kg ÷ 40kg) × 53,000원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관련 참고사항

-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업체가 대출받은 자금보다 적게 매입하거나, RPC로 입고하지 않았을 경우 Ⅱ. 주요내용, 7. 제재 및 감경 기준 적용(사업실적이 자부담액 이상이지만 사업의무부담액 보다 낮은 경우 적용)
- 배정받은 금액은 Ⅱ. 주요내용, 4. 지원형태와 Ⅲ. 사업추진체계, 3. 자금배정 단계와 4. 사업시행단계의 기준에 따라 대출을 받아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대행업체는 자격 박탈
-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요청RPC에 차년도 벼 매입자금 배정시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업체가 반납한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원

RPC 및 DSC 시설능력 조사 방법

1. 조사 개요

조사대상

-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건조저장시설(DSC) 사업자
 - 통합RPC의 경우 참여농협이 출자한 시설도 조사에 포함

조사기준일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조사시기 : 매년 2월말까지

- RPC(DSC) 시설능력 실적 보고
 - 사무소 → 지원 : 2. 28(목)까지
 - 지원 → 본원 : 3. 15(금)까지
 - 본원 → 농식품부(아그릭스 입력) : 3. 29(금)까지

2. 조사항목

- 원료투입구 시설별 보유현황 및 투입능력
- 건조시설(순환식, 연속식, 사각빈, 사일로)별 보유현황 및 연간 건조능력
- 저장시설(사각빈, 사일로, 평창고)별 보유현황 및 연간 저장능력
- 연간 정곡 가공능력
- 매입장비(호퍼스케일, 제현율 자동측정기, 동력제현기) 보유현황

※ RPC 시설 및 장비의 용량 및 규격은 성적서 등에 따른 규격을 인정

* 조사 대상업체는 조사 시작 기준일 7일 전까지 시설 별 규격서(성적서)를 준비하여 농관원에 제출하고,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규격서 미비치 업체는 시설능력 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조사요령

○ 공통기준

- 실제 가동·운영 중인 시설·장비에 한하며,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장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시설능력 및 용량 등은 생산업체에서 제시한 규격을 기준으로 조사

○ 원료투입구 시설

- 산물벼 반입을 위한 2개소 이상(가공시설 전용 투입시설은 제외)
- 설치기준 : 원료투입 건축구조+조선기(시간당 20톤 이상)+호퍼스케일+집진시설

○ 건조능력

- 순환식 건조기 : Σ 단위기계(기당용량(톤) \times 1.7회전(1일) \times 25일)
- * 건조기준 : 함수율 24% \rightarrow 16%, 시간당 0.8%/hr 건조, 원료투입·배출에 1.5시간 소요, 1일 20시간 가동, 연간 25일 가동
- * 1.7회전 = $20\text{hr} / \{[(24\%-16\%)/0.8\%]+1.5\text{hr}\}$
- 연속식 건조기 : Σ 단위기계(기당용량(톤) \times 20시간 \times 25일 \div (4회전 \times 0.5시간))
- * 건조기준 : 16%건조를 위해 평균 건조기 4회 통과, 건조기 통과에 0.5시간 소요, 1일 20시간 가동, 연간 25일 가동
- 저장빈 및 사일로 : 저장능력을 건조능력으로 100% 인정(상온통풍)

○ 저장능력

- 사각빈 및 사일로 : 설계도 및 기기별 사양 인정(가공시설의 원료탱크와 겸용 사용시 제외)
- 평창고(1,000m²(300평) 기준)
 - (i) 창고높이가 5m 이상 : 3.3m²(평)당 4톤
 - (i) 창고높이가 5m 미만 : 64.6(적재가능면적) \times 2.3톤(평당 단단 적재량) \times 적재단수 \times 91%(이용율)
- * 창고높이가 5m 이상으로 3단 적재 할 경우 저장능력은 평당 약 4톤 수준

○ 가공능력

-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증을 근거로 조사
- * 가공능력 산출 : 시간당 가공능력 × 8시간/일 × 250일 기준
- * 도정기계 제조업체의 사양서에 따른 가공능력과 신고증의 가공능력이 다를 경우 변경 신고 후 재조사 실시

○ 색채 선별기

- 제조업체의 사양서에 따라 색채 선별기 능력을 조사

○ 매입 장비

- 호퍼스케일, 제현율자동측정기, 동력제현기 보유현황을 조사하되,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참고]

□ 건조능력 조사 산출 예시

- 시설현황 : 순환식 건조기 6톤 4대, 사각빈 50톤 12기, 싸일로(상온통풍) 200톤 3기
- ⇒ 건조능력 산출 : 2,220톤(㉠+㉡+㉢)
- ㉠ 순환식 건조기 건조능력 : 6톤 × 4대 × 1.7회전 × 25일 = 1,020톤
- ㉡ 사각빈 건조능력(상온통풍) : 50톤 × 12기 = 600톤
- ㉢ 사일로 건조능력(상온통풍) : 200톤 × 3기 = 600톤

□ 저장능력 조사 산출 예시

<예시1>

- 시설현황 : 사각빈 50톤 12기, 사일로 400톤 3기
- ⇒ 건조능력 산출 : (50톤 × 12기) + (400톤 × 3기) = 1,800톤

<예시2>

- 시설현황 : 사각빈 50톤 12기, 평창고 100평
- ⇒ 저장능력 산출 : 1,000톤(㉠+㉡)
- ㉠ 사각빈 : 50톤 × 12기 = 600톤
- ㉡ 평창고 : 64.6평 × 2.3톤 × 3단 × 91% ≒ 400톤

<붙임 7>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 - 238호

「양곡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미곡종합처리장 비 매입자금 지원)에 따라 “2018년도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을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8년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1 농협RPC(141개소)

구분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세종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울산
RPC 업체명	강화통합	갈말농협	괴산농협	갈산농협	계화농협	강진통합	경주통합	가락농협
	김포통합	김화농협	남보은농협	고대농협	고창통합	곡성연합	남포항농협	거창통합
	대월농협	동송농협	내수농협	공주통합	공덕농협	광주통합	농협양곡(주)	고성통합
	모가농협	문막농협-	농협양곡(주)	금마농협	금만농협	구례통합	안동	김해통합
	부발농협	사천농협	진천	당진통합	김제통합	군서농협	달성연합	두북농협
	송탄농협	양구농협	보은농협	대산농협	남원농협	금성농협	산동농협	사천연합
	수라청연합	철원농협	음성통합	둔포농협	농협양곡(주)	남평농협	상주농협	산동농협
	안성통합	횡성통합	제천농협	면천농협	익산	농협양곡(주)	서청도농협	산청농협
	안중농협		증평농협	보령통합	대야농협	무안	신산농협	울산연합
	양주연합		청원통합-	부여통합	동계농협	다시농협	안계농협	의령농협
	양평농협		추풍령농협	서산동부연합	동김제농협	담양연합	영주연합	진주통합
	여주통합		충주통합	서산서부연합	백구농협	동강농협	예천통합	창녕통합
	연천농협			서천통합	부안농협	마한농협	의성통합	창원통합
	용인통합			석문농협	부안중앙	보성통합	함창농협	하동통합
	이천남부통합			세종통합	서김제통합	북신안농협	해평농협	함양농협
	이천농협			신평농협	옥구농협	선진농협	홍해농협	합천연합

구분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세종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울산
	조암농협 과주통합 팔탄농협 팽성농협			연무농협 영인농협 예산통합 우강농협 원북농협 천안통합 태안농협 합덕농협	익산농협 임실통합 장수농협 정읍통합 황등농협 회현농협	순천농협 영광통합 영암통합 완도연합 장성통합 장흥통합 함평통합 해남옥천 화산농협 황산농협 홍양농협		
계	20	8	11	24	21	26	15	16

2 민간RPC(68개소)

구분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세종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울산
RPC 업체명	강화농산 대한농산 독정RPC 미농RPC 미야토 안성곡산 이천농산 협성농산 화성농산	새마을금고- 푸른곡산 햇곡원	광복영농 우농RPC	금성농산 대동RPC 대원RPC 새들만RPC 신금산영농 예산RPC 천수만RPC 천안RPC 황산별RPC	금양머쉬본 남농영농 동진협동 등룡RPC 라이스프라자 명천영농 부성 새만금농산 오성RPC 완주영농 에브리임코이라 이택영농 ㈜삼보 ㈜옥정영농 중신영농 지리산쌀 한결영농	고흥미곡 금호미곡 나주평야동강 대우미곡 무등미곡 수영산업 여주농산 영암미곡 인수영농 조양영농 주영농산	건양RPC 동양미곡 상일RPC 유천RPC 조양곡물 청구RPC 풍년RPC 한가위RPC 한국라이스텍 합동RPC 화원미곡	두보식품 송림영농 제일영농 주흥RPC 창원청결미- 평화영농-
계	9	3	2	9	17	11	11	6

제 호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확인서		
업체정보	업체명	홍길동
	대표자명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양곡가공업 정보	신고번호	세종-1호
	신고일자	2012.12.12.
	일 가공능력	40톤
유효기간		2018.8.1.~2019.7.31.
<p>위 업체는 「양곡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미곡종합처리장 버 매입자금 지원)에 따라 2018년도 정부지원 미곡 종합처리장(RPC)으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p>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 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붙임 9>

벼 매입 실적관리 대장

매입구분 (참고)	① 계약 매취
	② 계약 수탁
	③ 일반 매취
	④ 일반 수탁

매입일자	계약여부	매입방법	매입처 (농가)	생산년도	수량(kg)	매입가격(원)	수탁 선도 금	수탁 정산 일	비고 (기 타)
3/2	계약	매취	홍길동	2017	1,600	2,120,000			
4/2	계약	수탁	김철수	2017	3,203	4,243,900	2,000,000	2019.1.20 또는 미정산	
9/28	일반	매취	부흥농산	2016	250,000	331,200,000			
10/22	일반	수탁	이만기	2017	2,050	10,729,700	5,000,000	2019.1.10	

- * 일자별 매입 실적을 작성
- * 계약재배 여부 및 매입방법(매취, 수탁) 기록
- * 수탁의 경우 쌀로 판매 후 정산하지 않았을 경우 매입가격에 기준가격 기록(수탁으로 미인정 될 수 있음), 수탁선도금 지급시 수탁 선도금 기록

<붙임 10>

업체별 건조능력 조사표(업체명 : _____)

○ 건조기 시설

순환식 건조기			연속식 건조기			비고
기당용량 (톤)	보유기수	건조능력 (톤)	기당용량 (톤)	보유기수	건조능력 (톤)	
계			계			

○ 저장빈(사각빈) 및 사일로

저장빈			사일로			비고
용량(톤)	보유기수	건조능력 (톤)	용량(톤)	보유기수	건조능력 (톤)	
계			계			

※ 저장빈과 사일로의 건조능력(용량별 보유기수 등)은 저장능력(시트2)자료와 비교 검토.
 - 저장능력만 있고 건조능력이 없는 빈과 사일로는 제외하고 조사(저장능력의 수량과 같거나 적어야 함)

○ 건조, 가공능력

건조능력 합계(톤)	가공능력 (톤)	가공능력 (시간당/톤)

○ 매입장비(단위 : 대, 개)

호퍼 스케일	제현율 측정기	동력 제현기	원료 투입구

<붙임 11>

업체별 저장능력 조사표(업체명 : _____)

▣ 저장시설 능력

저장빈(사각빈)		사일로		평창고(높이 5M이상 기준)			총 저장 능력 (톤)
저장능력 (톤)	보유기수 (기)	저장능력 (톤)	보유기수 (기)	면적(평)	보유동수	저장능력 (톤)	

※ 저장빈과 사일로의 저장능력(용량별 보유기수 등)은 건조능력(시트1)자료와 검토.

▣ 저온, 냉각, 단열시설 능력

저온(평창고)			냉각(빈, 사일로)		단열(사일로)		비 고
면적(평)	보유동수	저장능력 (톤)	저장능력 (톤)	시설기수 (기)	저장능력 (톤)	시설기수 (기)	

※ 저온시설: 평창고중 연중 15도 이하로 보관이 가능한 시설

※ 냉각시설: 빈, 사일로중 냉각기가 설치되어 연중 15도 이하로 보관이 가능한 시설(이동식 냉각기 포함)

※ 단열시설: 사일로중 우레탄 처리된 시설

☞ 냉각시설과 단열시설은 중복 가능

④ 농촌주택개량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장 김철 사무관 이재영 전문관 김두환	- 044-201-1558 044-201-1559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장 김기훈 과장 오치연	02-2080-7581 02-2080-7588

I 사업개요

1. 목적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항, 제55조제6항, 제67조, 제108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500,000	500,000	550,000	550,000
○ 농촌주택개량자금	500,000	500,000	550,000	550,000
-용자(농협은행자금)	500,000	500,000	550,000	550,000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 이 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용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자는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이 정하는 배(신용등급, 담보능력 등)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시중금리와 용자금리의 차이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개량·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용자대출
 -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주택용자정책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불가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및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 불가
 - 주택개량 사업대상자와 신축·개량하는 건축물의 소유주가 동일인 이어야 함
 -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및 대출기관의 여신규정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개량 전에 관할 시·군·구에 소재한 농·축협에 용자금 대출 관련 상담을 실시(대출가능액, 시기, 제출서류 등)
 - *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가능액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 필요
 -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 불가
 - 사업대상자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포기자로 간주
- ※ 2018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고 사업을 연장한 경우에는 2018년도 지침 적용

II 주요내용

1. 사업시행자 및 사업대상자

가.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대상자 : 아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대상자와 신축·개량하는 주택의 소유주가 동일하여야 함)

1) 농어촌지역¹⁾(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농촌지역”이라 한다.)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인 자

- 다만, 신축의 경우 용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 개량 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2)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인 자
- 3)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용자 신청일 이전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주택 신축 완료 후 주택 취득일* 이전에 농촌지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인 자

* 주택 취득일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른 취득일을 말함

** 용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규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의 경우 상기 1)~3)의 규정은 2020년 신규지구(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연도 기준)부터 적용

다. 건축행위 진행 중인 경우의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전에 이미 건축 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건축신고 전까지만 신청 가능)
다만, '19년도에 한해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 건축신고(허가)를 하였거나, 건축신고(허가)를 하지 않고 사전 건축행위를 한 경우

2. 사업대상지역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1)에 의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서 타 법에 의한 건축행위에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 1) 읍·면의 지역
- 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15.12.23)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 3)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동(洞)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

3. 사업대상주택 : 연면적 150㎡이하

가.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용어정의는 건축법 제2조 참조)

나. 사업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부속건축물'은 설비, 대피, 물품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호 서식상의 연면적을 말함

다. 부속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단일 건축물에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이 별동으로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예시) 2층 건축물 1동 (1층 창고 및 차고, 2층 주택)

** 예시) 1층 건축물 2동 (주동 : 단독주택, 부속동 : 창고 또는 차고 등)

라. 증축의 경우 기존 단독주택과 증축하려는 단독주택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부속건축물만 추가로 증축할 수 없음

마. 주택용이 아닌 기존 별동의 부속건축물*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 '주 건축물'은 상시 거주하며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을 말하며, '부속건축물'은 설비, 대피, 물품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를 말함

바. 동일 필지 안에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상가 등이 혼재되어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목적과 맞지 경우에는 사업신청 불가

사. 대수선, 리모델링 등은 「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 상기 가.~사. 규정 위반 시 사업대상자 취소 및 용자금 회수

4. 용자대출한도 및 사업실적확인

가. 용자대출한도

○ (대출한도)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결정

*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은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한도

<대출한도 금액 산출 예시① : 신축의 경우> *개축·재축·대수선, 증축·리모델링도 동일

-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 확인서」 상의 금액 : 8천만원
-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결과 대출가능금액: 1억 2천만원
- ⇒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의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나 사업실적 확인서 범위내에서 대출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최종 대출한도는 8천만원임'

<대출한도 금액 산출 예시② : 신축의 경우> *개축·재축·대수선, 증축·리모델링도 동일

-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 확인서」 상의 금액 : 1억원
-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결과 대출가능금액: 7천만원
- ⇒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의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나 사업실적 확인서 범위내에서 대출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최종 대출한도는 7천만원임'

- 선금(중도금) : 당해 사업장의 담보가능 한도 내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최대 3,000만원 이내 대출(증축·리모델링은 1,500만원 이내)

구분	선금	중도금	완공대출금
신축·개축·재축·대수선	선금+중도금=최대 3,000만원 이내		최대 2억원 한도
증축·리모델링	선금+중도금=최대 1,500만원 이내		최대 1억원 한도

- 사업대상자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 발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을 통해 대출 가능

○ (대출금리)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
 - * 변동금리 선택 시 고정금리로, 고정금리 선택 시 변동금리로 변경 불가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대출금리 변동 적용

○ (상환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나. 사업실적확인

- 사업대상자가 사업실적확인서(서식5)와 사업실적(주택건축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는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

* 2018년도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고 사업을 연장한 경우는 2018년 시행지침 적용

【사업실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목록】

- ① 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② 주택건축과 관련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 주택도급계약을 한 주택건축사업자, 주택건축 공정별(토목, 건축, 설비, 전기, 조경 등) 사업자, 건축자재사업자 등

** 세금계산서 :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준용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 영수증	자필·카드·현금 영수증	계산서

- 사업대상자가 공사를 직접 자가시공 하는 경우에도 증빙자료는 동일

* 다만, **총사업비 1억원 이하의 자가시공시 노무비**는 총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영수증을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가 직접 작성한 것과 동일한 증빙으로 인정가능 (총사업비가 1억원 초과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에 대한 노무비 지급 불허용)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에 대한 노무비 지급시 사업대상자 본인 및 사업대상자의 가족은 1인에 한해 총사업비의 1/10 한도 내 인정

다. 선금(중도금 포함)

- 선금은 착공증명서·대상자선정 공문 제출 시, 중도금은 사업실적확인서 제출 시 해당 사업장의 담보(토지 등) 가능 한도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은 **최대 3,000만원 이내**,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500만원 이내**에서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지급 가능

- 해당 사업장의 담보 부족시 다른 담보 물건 등으로 추가 담보 가능

- 단, 해당 사업장의 토지 주택 등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이 외의 물건 등으로만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

- 농협은 선금수령자 명단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
- 선금을 대출받은 사업대상자가 취소된 경우, 시·군·구는 취소한 사업대상자를 해당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기 지급한 선금을 즉시 회수 조치

라. 토지구입비용

-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 **660㎡이내**)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토지매입비*를 **7천만원 이내**(담보제공 필요) 에서 지원 가능
 - * 토지매입비는 주택건축 완료 후 대출 시 사업실적확인 금액(주택건축비)에 미포함
- 무주택자 증명을 위해 대출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와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7> 제출

5. 세금 및 수수료 감면

- (세금감면)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

* 2018년 사업대상자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따름(취득세 감면, 재산세는 부과)

- (지적측량수수료)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
 - 시·군·구 지적측량고객담당에게 신청(지자체 발급 사업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필요)
 - 지원대상자 선정일 이후부터 감면, 대상자 선정일 이전 측량은 소급적용 불가

※ 세금 및 수수료 감면은 해당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요건, 절차 등을 적용

6. 임대주택사업자 등 용자지원

- (지원대상) 농공단지 등 농촌지역 입주기업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기업체 대표(법인)
- (필요조건) 대출신청 시 사업지구 전체 토지를 주택건축 예정 개별필지로 구분하여 필지별 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대출 신청
- 상기 항목 외에는 동 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 공통 적용

7.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 발생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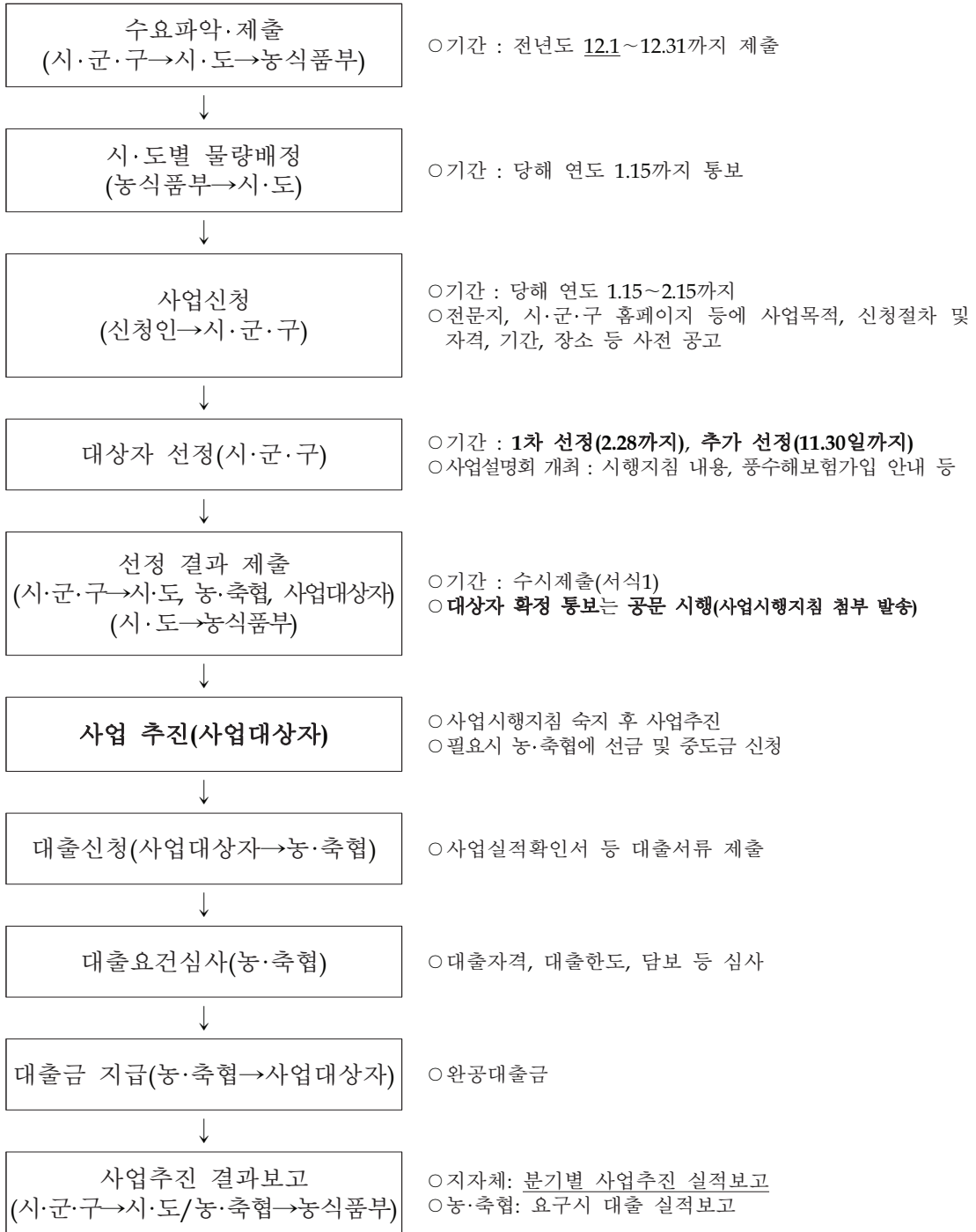
- 사업대상자가 부정수급 사유* 또는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에 따라 자금을 회수
하며, 이차보전금 신청대상에서 제외

* (부정수급 사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
하여 대출받은 경우 등

** (중도회수 사유)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1년이상 사업 미추진 등

1. 표준프로세스(SP)



* 사정에 따라 절차 병행 또는 일정 변경 가능

2. 사업주체별 역할 및 유의 사항

가. 사업대상자

1) 사업신청 전

- (사전상담 : 시·군·구) 주택건축 신고 및 인·허가 전에 사업대상자 대상여부 등 대해 시·군·구 담당자와 사전 상담
- (사전상담 : 농협)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가능여부, 신용도, 담보가능 금액, 대출서류, 사업대상자가 지정하는 건축업자에게 대출금 바로 지급 여부 등에 대해 농협 담당자와 사전 상담

2) 사업신청

- 사업 신청 시 무주택자의 경우 무주택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서약서 <서식8>,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제출
- 농식품부의 다른 주택용자정책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용자대출을 받을 수 없음
 - 농식품부 이외의 부처 및 지자체의 주택용자지원 사업과 중복 용자 가능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

3) 주택건축

-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건축계약 등을 통해 주택건축을 추진하고, 주택 설계, 신고, 인·허가 등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령 준수
 -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 농촌 경관을 고려한 주택 건축
 -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제작·보급하는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를 주택설계 도면으로 사용 가능

*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 문의처 : 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042-610-1935)

-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해야하는 사업대상자는 아래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철거 실적을 시·군·구에 제출
 - 철거 전·후 사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말소 증빙 자료 등
- 주택건축 및 용자대출은 '19.12.31일(연장시는 '20.8.31)까지 완료해야 함
 - (사업연장) '19.12.15일까지 착공신고 또는 선금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 해 사업기간 및 용자대출기한을 '20.8.31일로 연장 신청가능<서식4>

- * 사업연장자는 '20.8.31일까지 용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20.6.30일 이전에 주택건축 완료
- (사업포기·취소 처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는 사업포기 처리,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취소 처리하며 용자대출 및 세금감면 대상에서 제외
- * 기 지급받은 대출금은 일반대출로 전환 또는 일시상환 조치

4) 용자대출

- (신청방법) 시·군·구에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후 농·축협에 용자대출 신청
- (사업실적확인) 사업대상자는 사업실적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자가시공자도 동일)
- * 사업실적확인서 제출시 사업실적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포함 제출
- (대출신청) 사업대상지 관할 농·축협에 용자대출 신청
- * 사업실적확인서, 무주택자의 경우 무주택자 각서(서식7), 기타 여신규정에 따른 서류 등
- (용자재원 소진시) 당해 연도에 용자대출 재원이 소진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대출가능
-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규마을조성사업 등의 입주(예정)자가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을 사업대상자 명의로 개별등기 완료 후 용자대출 가능

5) 사업대상자 자격변동시 통보 의무

- (자격변경시 통보) 용자대출금 전부 상환 이전에 사업대상자의 사망, 상속, 증여, 매매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관할 시·군·구 및 농협에 바로 통보
- 위와 같은 변동 상황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자는 직계 가족 등에게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주택을 개량한 사실을 알려야 함

나. 시·군·구

1)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수요조사,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 (우선순위)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어린자녀보육가정 등 취약가정,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및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자, 기타 별도지원이 필요한 자

- 무주택자 조건 해당 사업대상자에게 무주택자 확인 각서<서식8>를 징구

※ 농지원부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필수서류가 아니므로 의무제출 요구 금지

○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절차, 사업시행지침,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 세제 혜택, 사업실적확인서 발급방법, 풍수해보험 등에 대해 사업대상자에게 설명하여 민원 사전 예방

* 추가 선정하는 사업대상자에게는 개별 설명 실시

- 특히,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시행지침**을 반드시 **전달(서면 발송)**하고,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안내

○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후보를 확보하고, 이미 선정된 사업자 이외에 추가 수요가 있을시 시·군·구에 배정된 물량에서 자체 조정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시·도에 배정된 물량에서 시·군·구간 조정을 시·도에 요청

- 1차 선정 후의 추가 선정은 '19.11.30일까지(농식품부 통보일 기준) 가능

- 추가 선정시 시·군·구에서는 추가 선정 내역을 시·도 및 농협에 통보

2) 주택건축

○ 주택설계, 신고, 인·허가 등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안내

-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 농촌 경관을 고려한 주택 건축 등

○ 선금, 중도금 등 용자대출에 필요한 서류(사업실적확인서 등)를 발급하고, 선금수령자가 사업기간 내에 건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선금 수령자가 선금 수령 후 **90일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용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후 농협에 용자대출금 지원 철회대상자로 통보

○ 사업대상자가 선정 연도에 건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19.12.15일까지** 연장조치하고 사업연장결과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 대상 주택의 건축물대장 비고란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반드시 표기

3) 기존 노후주택 철거

-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해야하는 사업대상자의 기존주택 철거여부 확인
 - 철거 전·후 사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말소 증빙 자료 등 징구
- 기존 노후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도록 협조

4) 용자대출

- 용자 대출 기한 관련 아래 사항을 사업대상자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안내

※ 주택건축 및 용자대출은 '19.12.31일까지 완료해야 함

- 다만, '19.12.15일까지 착공신고 또는 선금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사업기간 및 용자대출기한을 '20.8.31일까지로 연장 신청 가능
-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포기자로 간주
- 사업연장자는 '20.8.31일 이후에는 용자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자진 사업포기자로 간주
- 사업연장자는 '20.8.31일까지 용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20.6.30일 이전에 주택건축 완료

- 용자대출 재원 소진으로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대출 지원
-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발급
 - 용자를 받기 위해 사업대상자가 작성·제출한 사업실적확인서와 증빙자료 검토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시 건축(단독주택 + 부속건축물) 연면적 150㎡초과 여부를 확인, 초과 시 사업실적확인서 미발급
 - 시·군·구는 발급한 사업실적확인서 사본을 농협에 공문으로 송부

다. 농협

- NH농협은행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소요자금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 조성

- NH농협은행장은 농촌주택개량자금이 적기에 대출될 수 있도록 농협 해당 시·군·구 지부로 자금을 교부
- 사업대상자에게 용자 상담 대출조건, 신용 및 담보평가, 대출서류, 대출 마감일 등을 명확히 안내
- 농협 여신관련 제 규정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용자대출 실행
 - 주소지 이전(전입신고) 여부 등 주민등록등본 반드시 확인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인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대출 신청일 전에 도시지역 주택 처분(매매, 증여 등)여부*를 확인
 - * 서약서, 재산세 납입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 선금수령자 명단을 시·군·구에 통보 및 관리
 - 시·군·구로부터 선금 수령자에 대한 사업대상자 취소 통보를 받으면, 기 지급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
- '19년에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 및 용자대출금 이월조치
- 채무자의 사망,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금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5조 및 제78조 준수
- 농촌주택개량자금 대출시 동의자에 한해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에 따른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6>」을 징구

3. 이행점검

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상황 점검, 현장의견 수렴,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나. 시·군·구 및 시·도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건축, 용자대출, 지침준수 여부 등 사업추진현황을 분기별로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농식품부에 보고<서식3>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19.12.15일까지 원인행위(착공신고 또는 선금대출)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연장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농협에 즉시 통보

다. 농협

- 주택개량사업 대출상담 및 자금집행 적정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시·군·구로부터 지원 철회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대출제한

4. 성과측정

가. '19년 성과지표 : 농촌주택개량실적 88.0%

$$* \text{산식} = (\text{당해 연도 사업완료 동수} / \text{당해 연도 추진계획 동수}) \times 100$$

나. 측정개요

- 측정시기 : 2019. 12월
- 측정방법 : 각 시·도의 사업추진실적을 집계하여 성과지표 달성률 평가

5. 사업평가 및 환류

가. (시·도) 시·군·구별 추진실적(신축완료 건수 등), 지침위반 및 민원발생 횟수 등을 종합하여 시·군·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물량 배정시 반영

나. (농협은행) 농협별 대출실적, 민원 대응 등을 종합평가하여 포상

다. (농식품부) 사업실적·민원 등을 감안, 지자체 공무원 및 농협 관계자 등 표창

6. 사후관리

가. (시·군·구) 사업 완료 후 용자대상자에 대해 **용자금 상환시까지***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은 '17년도 사업대상자부터 소급 적용하며, '16년 이전 사업대상자는 해당연도의 사후관리 기간을 적용하되 용자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사후관리 제외

- 아래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취소하고, 관할 농협에 취소 결과(용자금 회수 대상자)를 통보
 - ① 증축(연면적 150㎡ 초과), 용도변경(식당, 민박 등) 등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사업대상 주택에 상시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대상 주택에 상시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매매, 상속 등으로 인해 사업대상자 변경 시, **변경연도**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용자금 회수대상자와 채무인수자 농·축협에 통보

나. **(농협)** 시·군·구 등으로부터 용자금 회수대상자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용자금 회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농협여신규정 등

○ 용자금 회수대상자와 협의하여 일반대출로 전환조치 가능

○ 적합한 채무인수 이행시 양도인의 금리를 양수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 채무자의 사망, 사업포기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또는 채무자의 사망,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통보하고 대출금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 처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5조 및 제78조 준수

7. 2020년도 수요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2020년도 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 수요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서식2>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2019. 12. 31일까지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농촌주택개량대상자 선정결과 : 2월말(시·군·구 →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결과보고 : 분기별 (시·군·구 → 시·도/농협 →농림축산식품부)

2. 평가

- (시·도) 시·군·구별 추진실적(신축완료 건수 등), 지침위반 및 민원발생 횟수 등을 종합하여 시·군·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물량 배정시 반영
- (농협은행) 농협별 대출실적, 민원 대응 등을 종합평가하여 포상
- (농식품부) 사업실적, 민원 발생 등을 감안, 우수 지자체 및 농협 관계자 등 표창

⑤ 농업경영회생자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이시혜	044-201-1751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2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기훈	02-2080-7581
		차 장 한지수	02-2080-7582

I 사업개요

1. 목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이후
농업경영회생자금(용자)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

II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제외대상 :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및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대상 농업인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 연체 중인 농업인 우선지원
- * 농업경영위기(예시) : <별표 1>
- * 준전업농 규모 기준(예시) : <별표 2>

나. 지원제외 대상자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 이상 등록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다만, 매도가 곤란하여 빈 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가 주택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단,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함)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 비농업용 부동산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로 확인

3.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3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연체대출금 및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경영회생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된다고 인정 하는 경우는 경영회생기간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 지원 가능
 - 신청당해년도 대출금 중 지원사유 발생일 이후 신규대출금은 제외

- 지원신청일의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3년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종묘·비닐·비료 등 농자재 및 농업관련 연체채무 :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연체이자 감면)
 - 단, 경제사업 연체채무는 약정한도 초과금액을 제외하며, 사료대는 일반업체의 연체대금(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까지 포함
-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단,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및 재해관련 보험(공제)금 수령확인서 등 증빙자료 징구)
 - 보조 또는 재해복구자금으로 지원(된)되는 자금과 각종 재해보험·공제금 수령액 제외
-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 '01.1.8 이후 타대출금으로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
- 시설 및 개보수 자금
- 품목별 1회전 운전자금.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농업경영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전 운전자금의 1.5배 이내에서 지원 가능
 - *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할 경우에는 상기 지원대상자금에 배우자분을 포함하여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 다만, 순수연체이자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

5.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경영평가

-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에 회생 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경영평가위원회 설치·운영
-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기본자격 대상여부 등을 사전평가한 후, 지원 신청금액에 따라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 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 실시
-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경영평가단의 사전평가 결과와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나.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경영회생자금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을 지원하되, 융자 90%이내, 자부담 10%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우선지원
- 인수자금 :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대출금리 : 연리 1%(이자는 1년 후취)

○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원 불가. 단,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의결을 거친 경우는 가능

○ 지원한도 : 회생(또는 인수)에 필요한 최소자금으로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 다만, 위 금액은 20억원(농업법인의 경우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1. 사업신청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사업지침 시달

나. 농협은행

- 농업경영회생자금 세부 지침 시달

다.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 경영평가 사전평가

라. 해당 농업인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지역 농·축협, 농협은행 시·군지부 등)에 신청

*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요건('11.2. 지원자격 및 요건' 부분 참조)에 대한 해당 사항 여부를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농협은행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경영평가위원회

-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에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

- 신청규모에 따라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또는 지역 농·축협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중앙본부 5억원 초과, 영업본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또는 지역 농·축협 3억원 이하

- 구 성 : 5명 내외로 위촉하되 농업인이 반드시 포함

- 구성원은 농업인, 공무원, 농협은행·농업협동조합·농신보 관계자 등으로 하며, 농협은행 세부시행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 임 무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사전 평가한 기본자격 평가, 자구계획 평가

결과, 경영체 유형 및 자금지원계획 심의 확정

- 자구계획 보완지시 및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 등
-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은 현장 실사 및 경영평가 등을 위해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
- 경영평가 결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평가표는 농협은행의 세부시행 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 평가사항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자구계획의 현실성, 소요자금 신청규모의 적정 여부 등
- 평가유형
 - 정 상 : 회생자금 지원이 없어도 정상경영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가능 : 경영위기에 처해 있으나 자금지원으로 회생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불능 : 지원하여도 회생이 불가능한 농업인(구조조정대상 농업인)

3. 세부계획수립 · 시행 및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가. 회생가능 농업인

- 경영회생자금 지원
 - 대 상 : 경영평가결과 자구계획 이행과 회생자금 지원 시 회생가능으로 판정된 농업인
 - 지원방안
 - 1) 신 청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지역 농·축협, 농협은행 시·군지부 등)에 신청
 - 2)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은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여부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 중앙본부 5억원 초과, 영업본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또는 지역 농·축협 3억원 이하
 - 대출취급기관은 사전평가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정밀경영

평가 의뢰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사전평가결과를 통보

3)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평가단의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여부를 심의
- 경영상태 및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4) 자금 지원

-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금 지원
- * 연체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연체해소 후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나. 회생불능 농업인으로서 시설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

○ 인수 및 운전자금 지원

- 대상

-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되어 자금을 지원하여도 경영회생이 불가능한 농업경영체의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인수할 경우 본래의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할 수 있는 농업인
- 농업인 스스로 회생불능을 이유로 구조조정 차원(농업분야에서 타분야 이전)에서 제3자에게 인도하고자 할 경우,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이 가능하다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판정된 농업인

- 지원방안

1) 신청 : 인수희망자는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출취급기관(조합 등)에 제출

2)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 대출취급기관은 인수 및 운영계획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경영평가표 등)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중앙본부 5억원 초과, 영업본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또는 지역 농·축협 3억원 이하

3)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상태,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정밀 경영평가하여 인수자금 등의 지원여부를 심의

4) 자금 지원

-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수 및 운전자금 지원

5) 정책사업 대상자 변경 승인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주관기관(시·군 등)에 요청하여 보조 및 정책자금 융자금 승계 조치

※ (참고) 농신보·대손보전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 관련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로 동 자금을 지원받을시 보증비율은 85%임(부분보증제)
-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보전대상(90% 보전)임
 - 단,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한도는 대출취급시점의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잔액을 합산하여 동일인당 **10억원**으로 한다. 다만, 담보대출 잔액 합산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취급한 신규대출(대환포함)로 한다.
-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제6조(신용대출)에 의한 신용대출한도(**3,000만원**)의 적용을 배제함
 - 단, 기 지원받은 신용대출금의 대환대출에 한정함

4.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농협은행 · 지역 농축협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전년 말 대출잔액 **1억원 이상** 농업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구계획, 인수·운영계획 등 이행상황 점검
 - 지원결정 된 자금에 대하여 현지 실태점검(모니터링)
 - 필요시 「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사업」, 「농업금융 컨설팅」 등 과 연계 컨설팅 실시
 - 사후관리 대상농가에 향후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의 상환스케줄 자료를

제공 하는 간이컨설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주관)와 농협은행 합동으로 지역 농·축협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현지방문 점검

나. 제재

농협은행 · 지역 농축협

- 점검결과 자구계획,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불이행하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자금도 회수
- 점검결과 비농업용 자산이 있을 시는 자산매각 등을 통한 부채정리 의무 부과
 - 단, 비농업용 부동산은 '07.7.1 이후, 골프회원권은 '08.12.1 이후 신규 대출 농가에 한함
-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등 농림수산 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동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

IV / 평가 및 환류

- 농협은행은 매분기말 기준으로 지원 실적 및 현황을 분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지원실적·현황 분석 및 현지점검 결과 등을 검토,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검토

<별표 1>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농업경영위기(예시)

농업경영위기(예시)

① 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농업재해

-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폭염, 병충해,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함

*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에 대한 정의는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의 정의를 준용

② 그밖의 사유

- 방화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
- 농업인인 보증인이 농업용 자금을 대위변제한(할) 경우
- 예년과 다른 이상기후로 전년대비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 전년 대비 농업용 원자재(비료·농약·사료·유류·농업용 시설자재 등)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거나 농산물 시장가격(도매시장, 산지시세)이 15% 이상 하락하여 농업소득이 감소한 경우

* 가격하락, 원가상승 등에 따른 피해규모 판단은 유통정보, 공판장가격정보, 산지가격정보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그 낙폭을 피해규모로 정함

- 수출의 경우 수입제한 등으로 수출이 불가하거나 환율의 급락(전년평균 대비 15%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 연체기간이 발생하지 않았던 농업인이 최근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사업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의 확인서 제출 필요

- 기타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일시적 경영위기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

<별표 2>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품목별 준전업농규모 기준(예시)

품목별 준전업농규모 기준(예시)

품 목	규 모	비 고
미 곡	1.5ha이상	
밭작물(식량류)	1.5ha이상	
채 소		
- 노지채소	1.0ha이상	
- 시설채소	900평이상	- 유리온실은 300평이상
과 수	0.75ha이상	- 시설일 경우 시설채소 기준
화 훼		
- 절화류	시설 600평이상	- 유리온실은 200평 이상
- 분화류	시설 450평이상	- 유리온실은 150평 이상
특용작물		- 기타 버섯 품목
- 느타리버섯	100평이상	· 병 재배시설은 팽이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양송이버섯	150평이상	· 균상 재배시설은 느타리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팽이버섯	60평이상	
- 약용작물	1.5ha이상	
- 인삼	1.5ha이상	
축 산		
- 한우	25두이상	- 번식우는 33두 이상
- 젖소	25두이상	- 착유마리수 기준
- 돼지	500두이상	- 모돈 기준으로 50두 이상
- 닭, 오리	15,000수이상	
- 흑염소	250두이상	
- 꽃사슴	65두이상	- 수컷 기준
- 레드미어사슴	100두이상	- 수컷 기준
- 엘크사슴	55두이상	
- 기타 가축		- 한우 소득기준의 규모에 따름
산 립		
- 산림경영	5ha이상	- 조림면적 기준
- 묘목생산	500평이상	
- 밤	1.25ha이상	

※ 복합영농일 경우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도 준전업농규모에 해당

※ 임차농일 경우 임차농지도 100% 경작지에 포함(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차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세부사업명	조건불리지역직불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예산 (백만원)	54,647			
사업목적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소득 보전 및 지역활성화							
사업 주요내용	○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03~'05년 기간 동안 농지 또는 초지로 이용·관리된 토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초지를 이용·관리하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 지급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4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조건불리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대상지역) 경지율·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한 지역 * 조건불리지역: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이하, 경기경사도 14%이상인 법정리(제주도를 포함한 도서지역은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와 관계없이 읍·면지역 모든 법정리 해당) ○ (지원대상) 대상지역에 거주하면서 지급대상 토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등 * 조건불리지역에 있고, '03~'05년 기간 동안 농업에 이용되거나 관리된 농지법상 농지 또는 초지법상 초지							
지원한도	○ (농지) 지급단가: 65만원/ha * 상한면적: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 ○ (초지) 지급단가: 40만원/ha * 상한면적: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재원구성(%)	국고	80	지방비	2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48,294	57,875	63,000	68,309			
	국 고	38,635	46,300	50,400	54,647			
	지방비	9,659	11,575	12,600	13,66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김영민 김지순		044-201-1778 044-201-1779		
신청시기	2~4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단 장 김원일 사무관 김영민 주무관 김지순 지자체 업무담당자 및 민원상담	044-201-1771 044-201-1778 044-201-1779 044-201-1781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직불제시스템 상담)	스마트농정실 (Agrix)	시스템 상담지원 콜센터	1588-6830

I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하여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 지역 공동화가 우려되는 지역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3. 재원구성 : 국고 80%, 지방비 20%

4.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58,795	63,160	68,309	계속
국 고	47,220	50,560	54,647	계속
지방비	11,575	12,600	13,662	계속

1. 사업대상지역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이하 “조건불리지역” 또는 “대상법정리”)
 - 육지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이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가 14% 이상인 농지면적을 50% 이상 포함하고 있는 법정리
 -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이 읍·면지역 모든 법정리
- ※ 전국 읍·면지역 법정리별 경지율 및 경지 경사도 일제조사 결과('19년 1월) 등에 따라 선정된 조건불리지역 법정리를 대상으로 지급 (동(洞)지역은 도서(島嶼)를 불문하고 모두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이하 “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상 토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농업인등
- * 자격요건은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이행점검 완료일(9.15.)까지 유지되어야 함

가. 지급대상 토지

-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법」 상 농지 및 「초지법」 상 초지로,
 -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되거나 관리된 토지

<지급대상 제외 토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①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

* 단,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받지 않은 토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가 1년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으로 인정

②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농지전용허가·신고·협약이 의제 되는 경우 포함)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토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농지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

* 단,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지구·지역의 농지 중 보상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해 시장·군수가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보상금 중 일부를 받은 농지분에 대해서는 등록신청 연도에 농업에 이용하도록 사업시행자와 협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급대상 농지로 인정 가능

④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하여 등록제한기간(3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농지

* 제3자에게 임대한 농지, 등록제한 처분 이후 새로 구입한 농지 등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모든 농지를 의미

⑤ 「초지법」 상 초지이나, 관리가 미흡한 하급초지 또는 목초·사료작물 이외 논·밭·과수농업에 이용되는 초지

⑥ 다음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구 분	쌀직불	밭고정	논이모작	경관보전	친환경	논타작물
조건불리	×	×	×	○	○	○

* 중복지급 가능(○), 중복지급 불가(×)

⑦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그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아래 농작물을 재배하는 토지

- 과수·뽕나무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
- 임산물, 다만 밤, 잣 등 임산유실수나 목초, 수목류(조경 또는 관상용수목과 그 묘목 제외) 재배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에 관계없이 지원에서 제외

<임산물의 조건불리직불금 해당여부 적용예>

○ 임산유실수(농림축산통계연보의 "수실")는 제외

: 밤, 잣, 호도, 도토리, 은행, 산딸기, 머루, 다래, 산초, 초피 등

- 대추는 "수실"에 포함되나 수종갱신 등으로 밭 재배가 일반화되었으므로 임야에 형질을 변경하고 재배 시 지원
- 다만, 복분자딸기, 머루, 다래 등을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시설을 갖추고 재배·관리하는 경우 지원

○ 수목류는 제외

: 소나무 등 조경수나 두충나무·헛개나무·읍나무·참죽나무, 녹차 등 식재 후 자연 상태에서 자라는 나무류

- 다만, 땅두릅, 녹차 등 재배가 일반화 된 것은 임야에 형질을 변경하고 재배하는 경우 지원

○ 더덕, 고사리 등 산나물류, 버섯류, 약초류 및 약용류

- 임야가 형질변경되어 명확히 밭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고, 묘목 구입 등을 통하여 재배하는 경우 지원
- 다만, 오미자와 같이 시설을 갖추고 재배·관리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관행처럼 임야에 형질변경 없이 재배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지급대상자

-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으로,
-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지급대상 토지를 농업에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자
 - 토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상 범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경작자만 인정
 - * 거주지: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의미
 - ** 연접: 행정구역 간 경계면이 잇닿아 있는 것을 의미. 강, 바다 등으로 경계면이 잇닿지 않은 경우는 연접으로 인정 불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연접지역 기준(예시)>

외곡리에 토지가 있을 경우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은?

- * 토지면, 화개면, 간전면
- * 외곡리와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경우 신청 가능



외곡리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 * 토지면, 화개면(용강리, 탐리), 간전면(윤천리)
- * 토지면에 연접한 법정리에 소재한 토지



<승계대상자>

- 조건불리직불금 등록자가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 고령, 중환, 부상 등 농업 종사가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경우
-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하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
 - * 치료를 목적으로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을 산입
 - ** 농업경영체등록 등으로 농업인 확인이 가능한 자
- 단,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기본법상 농촌에 주소를 두거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공동소유·경작 농지에 대한 처리>

- (공동소유)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는 농지를 신청 하는 경우
 - 공동소유자 중 한명이 다른 사람 지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 받아야 함
 - 공동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농지를 임차하여 신청하는 경우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해당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확인 받아야 함
 - * 일부 공동소유자에게서 무단점유 증명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소유자 지분만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공동경작) 2인 이상이 공동경작하는 농지를 신청 하는 경우
 - 신청자별로 경계를 명확히 설치하고,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논농업에 필요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일부위탁 포함)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신청 가능

<지급대상 제외자>

- ①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및 임업(02)"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
 - ** 단, 농업인의 경우에만 적용하며, 농업법인은 적용 예외
- ② 농업에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농지면적 또는 초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면적은 면적 산정시 제외)
- ③ 지급대상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
- ④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농지에 한 함)
- ⑤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농지에 한 함)

다. 지급요건

-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이행점검 완료일(9.15.)까지 계속하여 조건불리지역에 거주
 - 단, 농지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 * 지급요건 충족여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세부 점검기준에 따름

<농지관리의무>

- 농업인등은 사업시행기간(신청~이행점검 완료일) 동안 지급대상 토지를 아래사항 중 어느 하나로 경작 또는 관리(제초·잡목제거 등)할 것
 - ① 농업의 다원적 기능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생산
 - ② 작목은 재배하지 않더라도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경운
- 불가피하게 경작(관리)하지 못한 사유*가 인정(지자체장이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작(관리)한 것으로 간주
 - * 불가피한 사유 : 중환, 징집 또는 소집, 수용 등(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함은 농업인 등이 증빙)

3.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급단가: (농지)1ha 당 65만원 (㎡당 65원), (초지)1ha 당 40만원 (㎡당 40원)
- 지급금액: 지급단가(원/㎡) × 지급대상 토지면적(㎡)
 -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로 합산
 - * 공부상 잔·답·과수원을 방목용 초지로 활용할 경우에는 초지단가로 지급
- 지원형태(재원): 국고보조 80%(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방비 20%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인: 밭(과수원 포함) 4ha, 논·초지 각각 30ha
- 농업법인: 밭(과수원 포함) 10ha, 논·초지 각각 50ha

<상한면적 초과 신청>

- 지급상한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농지를 모두 접수하되, 직불금은 지급상한면적까지만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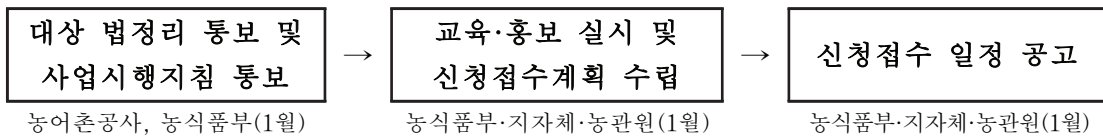
Ⅲ

사업추진체계

[업무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신청·접수 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범정리 선정·통지(농식품부) ▶ 마을기금 조성여부 결정 및 통보(시·군) ▶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 교육·홍보 및 신청·접수계획 수립·실시(시·군, 농관원)
② 신청·접수	2월~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신청(농업인등) 및 접수(읍·면, 농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 및 직불금 통합신청 추진 - 등록신청서 접수증 발급 ▶ 신청서 전산입력(~4월, 읍·면)
③ 지급대상마을 선정(해당마을 만)	4월~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운영위원회 구성(3~5인) ▶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 제출 ▶ 지급대상 마을 선정 및 통보
④ 신청자 정보공개	5월~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지번, 면적, 품목 등 신청정보 공개(농식품부 및 시·군 홈페이지)
⑤ 지급대상자 선정 및 등록증 발급, 관리협약 체결	5월~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공개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시·군) ▶ 서류 및 현지조사(읍·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농지 적격여부,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첨부서류 구비여부 등 ▶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개최(읍·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경작 여부, 무단점유 여부 등 신청자의 농업종사 여부 심사 ▶ 지급대상자 선정(시·군) 및 등록증 발급(읍·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 제외자에게는 해당 사유 통보 ▶ 관리협약 체결(해당 마을만)
⑥ 등록사항 변경 및 이행점검	5월~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증 재발급(읍·면→시·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등록자에게 지급대상농지를 양수·임차한 경우 ▶ 농지관리의무 및 관리협약 이행점검(농관원, 시·도) ▶ 이행점검 결과 이의신청 처리(농관원)
⑦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지급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대상자 확정(시·군) ▶ 지급대상자 계좌로 입금(시·군)
⑧ 사후관리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령자 정보공개(농식품부, 농관원, 시·군 홈페이지) ▶ 부당신청신고센터 운영 등 사후관리

※ 상기 일정은 업무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사업신청·접수 전(前) 단계



가. 조건불리지역 선정 및 통보(농어촌공사, 농식품부, 시·도, 시·군 등)

-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는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조건불리지역 선정자료를 제출하고, 근거자료**는 보관
 - * 법정리별 경지율 자료, 연속지적도 및 수치지형도(시·도에서는 자료제공 협조)
 - ** 법정리별 경사도 자료, 법정리 변동자료 등
- 농식품부는 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고, 시·도 및 농관원, 공사, 농정원 등에 통지
- 시·도는 시·군을 통하여 읍·면에 통지하고, 읍·면은 게시관에 10일 이상 공고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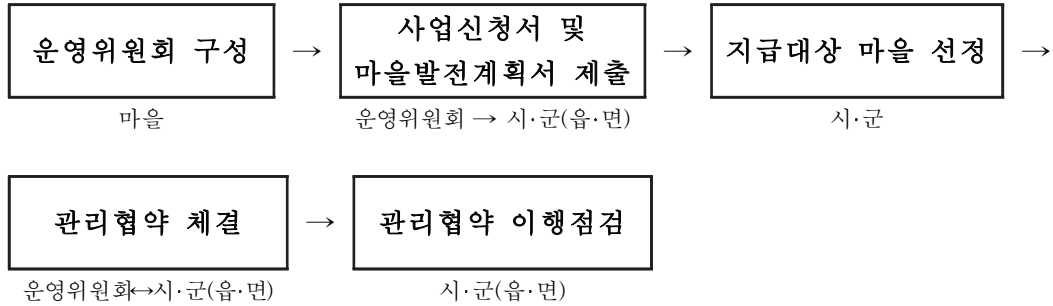
- 해당 읍·면의 조건불리지역(법정리·행정리) 및 변동사항
- 조건불리직불금 제도변경 사항
- 보조금 신청대상자, 지급대상 토지, 지급요건, 지급단가,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시·군별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 및 적립비율 결정사항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보조금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장·군수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 결정(시·도, 시·군)

- 시·도는 시·군과 협의하여, 시·군별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 및 최소 적립비율을 결정하고, 그 결과(별지 제4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보고(1월)
 - 다만, 시·군이 기금을 조성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라도 마을에서 기금 조성을 희망할 경우 해당 마을에 한하여 기금조성 허용 가능
 - 시·군이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한 경우도, 마을에서 기금조성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해당 마을에 한하여 기금을 조성하지 않도록 허용 가능
- 시·군은 마을공동기금 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조건불리지역 선정결과와 함께 공고하고, 관할 대상 마을에 안내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에 따른 사업추진체계>

○ 기금을 조성할 경우: 기존 절차대로 진행



* 절차별 세부내용은 해당항목 참고

○ 기금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상기과정 생략

- 다만, 기금적립금이 남아있는 마을의 경우 '19년에 기금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관리협약 이행점검'은 실시

다. 사업시행지침 시달(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등 관련기관에 시달

라.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는 지자체 및 농관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시·도별 순회교육 실시
- 시·도(시·군·구) 및 농관원은 업무담당자 및 조사원을 대상으로 자체 실무교육 실시

마. 홍보계획 수립 및 실시(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는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등 관련기관에 시달하고, 전년도 지급대상자에게 직불금 지급내역을 발송하는 등 홍보물을 제작·배포
- 시·도(시·군·구) 및 농관원은 관련기관(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홍보지, 지방지, 새해영농실용화 교육, 이통장 월례회, 현수막,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한 홍보 실시

<주의사항>

마을공동기금 적립 자율화 및 이에 따른 기존 적립금 사용방법 등을 적극 홍보

바. 신청·접수계획 수립(시·도, 시·군)

- 시·군은 관할지역 농관원과 업무협의를*를 통해 시·군별 신청·접수계획(별지 제5호 서식)을 수립하여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1월)
- 농관원과 협의내용, 읍·면별 집중접수 기간 및 일정, 기관 간 협조체계 등 포함
- * 시·군 주관으로 농관원과 업무협의를 통해 지역 여건에 따라 공동접수센터 설치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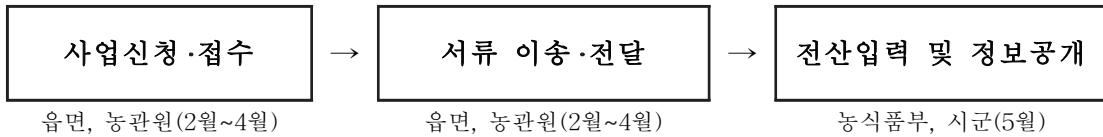
사. 등록신청 공고(농식품부, 시·도, 농관원)

- 농식품부 및 지자체, 농관원은 접수일 7일 전까지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 및 인터넷에 등록신청 공고
-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기간 및 방법 등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

아. 보조원 및 조사원 채용(시·군, 농관원)

- 시·군은 사업신청 및 접수를 위한 전산입력 보조원 채용
- 농관원은 지원·사무소별로 이행점검을 위한 조사원 채용

2. 신청·접수 단계



가. 사업신청(농업인등)

- 조건불리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장소에서 등록신청
- 신청기간: 2. 1. ~ 4. 30.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
 -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또는 시·군)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 신청
- 신청시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
 - (기존 수급자) 직전연도와 신청내용에 변동이 없을 경우
 - ⇒ 등록신청서만 제출
 - * 임대차계약기간, 지번변동 등 확인
 - (기존 수급자) 직전연도와 신청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 ⇒ 등록신청서, 변동된 내용에 대한 자격요건 증명서류
 - (신규신청자) 직불금 수령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 등록신청서, 지급대상자 증명, 지급대상 농지 증명, 경작사실 증명

구 분	첨부 서류	비 고
① 지급대상 토지 증명 ① 필요한 경우 ②	① '03년~'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되거나 관리된 토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 조건불리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 ② 지급대상 제외 토지이나 예외규정에 적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하천구역, 주·상·공지역, 산업단지, 농공단지, 택지개발지구 등) - 관련 기관 등에서 발급한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 과거에 1회 이상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한 농지는 제출생략	신규신청 농지만 해당
② 지급 대상자 증명 ①	① 조건불리지역 또는 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함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신규신청 자만 해당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
② - 1 승계 대상자 증명 ①②③④ 모두	① 등록자에게 발급된 등록증 ② 등록자가 사망,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서류 - 사망진단서, 뇌사 판정서, 실종확인서, 수감확인서, 진단서 등 (1개 이상) ③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 나, 라 또는 가, 다, 라 각 1개 이상씩 가 등록자의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나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다 등록자가 치료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하여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하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이장확인서, 입원증명서 등 라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확인서를 의미 ④ 승계자의 승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승계의사 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 등록자가 의식불명 등으로 확인서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중 승계자 외의 자의 확인으로 갈음	승계자만 해당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

구 분	필요 서류	비 고
<p>② - 2 지급제외 대상자가 아님을 증명 ①② 모두</p>	<p>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p> <p>② 타인의 농지를 무단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원칙) 임대차 계약서 - (허용)농지주가 해외에 거주하는 등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 농장주 확인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임차비용으로 제공한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신청인의 경작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의 필지지번, 계약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것 * 국·공유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면제(전산으로 확인)</p>	<p>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p>
<p>③ 경작사실 증명 ①</p>	<p>① 영농기록 - ㉠ ~ ㉣ 중 1개 이상</p> <p>㉠ 농산물 판매 영수증 : APC 전산출력물, 대금입금 영수증, APC 직인이 찍힌 판매증명서, 도매시장, 농산물 구입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제외), 전자상거래 입금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내역 서류 등</p> <p>㉡ 농약·비료 등 농자재 구매 서류 :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행정기관(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받은 확인서 등</p> <p>㉢ 종자·육묘 등 구매 서류 : 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 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획서 등</p> <p>㉣ 계약재배 증명서류 : 계약재배 계약서, 일부위탁 계약서 등</p> <p>㉤ 기타 증명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농업시설 설치 영수증, 농기계 구입 영수증 등</p> <p>* 모든 증명서류는 신청자 명의여야 하며, 등록신청 해당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것으로 한정</p> <p>** 마을공동으로 구입한 경우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하는 경우만 인정</p>	<p>신규 신청자 (전산확인 가능 시 생략)</p>

나. 신청접수(지자체 및 농관원)

① 신청서류 접수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등록과 통합접수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또는 시·군·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농관원에서 접수

② 신청서류 확인

-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 후 접수
 -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에선 추후 일정 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기간 내 미제출시 지급대상 제외)
 - * 미비한 신청서류는 접수받은 읍·면·동에서 보완 완료 후 관할 읍·면으로 이송

<신청접수 시 유의사항>

① 직불금 수령자 성명 및 계좌번호 확인 철저

- 직불금 신청자는 신청서 상 “수령자”와 동일해야하며, 신청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 가능
-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번호목 중 ④

④(수령자 성명)	(연락처)	(은행명)
직불금 신청자 성명 기재		(계좌번호) 직불금 신청자 명의 계좌만 가능

② 임대차계약기간 확인 및 입력 철저

- 임대계약 기간 종료 시 증빙서류 제출 대상이나, 전년도와 변동이 없을 시 면제 대상으로 오인하기 쉬우므로 임대계약기간 종료시점 확인 필수

③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지급대상 제외 가능여부 안내 철저

- 공동경작 농업인 중 1인이 대표로 신청 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자격 요건을 필히 안내하여 민원사례 예방

④ 농지처분 명령 대상자(해당필지) 등 지급대상 농지요건 확인 철저

③ QR코드 스캔

- 접수 즉시 QR코드를 스캔하여 Agrix 접수정보에 입력
 - 직불금을 처음 신청하여 신청서에 QR코드가 없는 경우에도 Agrix 접수정보에 입력
 - * QR코드 스캔은 전산입력 누락 방지장치이고, '19년부터는 QR코드 스캔정보를 이용해 등록신청서 접수관리대장을 전산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반드시 실시

④ 접수증 발급

- 신청인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때는 접수증(별지 제10호 서식) 발급

5 전산입력

- 입력기간: 2월 ~ 5월초
- 입력내용: 등록신청서 2번항목의 '⑥ 직불정보'
- 입력기관: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
 - 신청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 포함)한 읍·면·동에서 전체 신청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급 관할 타 읍·면·동으로 이송
 - * 미이송에 따른 신청누락 책임은 최초 접수·입력한 읍·면·동에 있음
 - 관할 읍·면·동은 타 읍·면·동에서 이송된 신청서의 전산입력 정보 누락·적정 여부 및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을 최종 확인
 - * 전산입력 내용 및 첨부서류 확인에 관한 최종 책임은 지급관할 읍·면·동에 있음

<신청정보 전산입력>

- ① 타 읍·면·동에서 접수한 경우
 - 접수한 읍·면·동에서 타 읍·면·동 정보까지 모두 입력
- ② 농관원에서 접수한 경우
 - 농관원에서 서류를 이송받은 읍·면·동에서 모든 전산입력
- ③ 신청자가 신규 경영체 등록자인 경우
 - 농관원에서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후 읍·면·동에서 직불정보 입력
 - * 농관원에서는 신청·접수(4월) 기간 내 신속히 신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 ④ 기존 경영체의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경영주 외 농업인 추가, 농지 추가)
 - 읍·면·동에서 직불정보를 우선 입력 후 농관원에서 경영체 등록정보 입력
 - * 농관원에서 등록기간(5월) 내 경영체정보 입력 후 읍·면·동은 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다. 서류의 이송·전달(읍면, 농관원)

- 이송기간: (농관원↔지자체) 7일 이내, (지자체↔지자체) 10일 이내
- 이송방법: 우편, 방문, 팩스 등 업무여건에 따라 선택
 - 기관간 서류 이송 즉시 상호 “인계인수서(별지 제12호 서식)” 작성·교환
- 이송기관
 - (지자체 → 지자체) 지급 관할(농지소재지) 읍·면·동으로 이송
 - (지자체 → 농관원) 주소지 농관원 지원·사무소로 이송
 - (농관원 → 지자체) 지급 관할(농지소재지) 읍·면으로 이송
 - * 농지소재지 읍면이 2곳 이상인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으로 서류 이송,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에서 서류 접수 후 타 읍면으로 서류 재이송

<집중 접수기간 설정 및 공동접수센터 설치·운영>

시·군은 관할지역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와 협의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동안 '공동접수센터'를 설치·운영

- 집중 접수기간 중 읍·면장과 사무소장은 통합신청서를 공동으로 접수
- 집중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농업인들의 편의에 따라 읍·면 또는 농관원 사무소에 방문·접수
 - * 읍·면은 공동접수센터에 전산장비 및 전화 등 신청접수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농관원은 읍·면·별 접수반을 편성하여 사전에 읍·면에 통보하는 등 공동접수 준비
 - ** 지역여건에 따라 ① 접수규모가 소규모이거나 공동접수센터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② 접수규모가 대규모이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공동접수센터를 마을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 지역은 마을(법정/행정리)에 설치하여 농업인의 편의 도모

<공동접수센터 운영시 접수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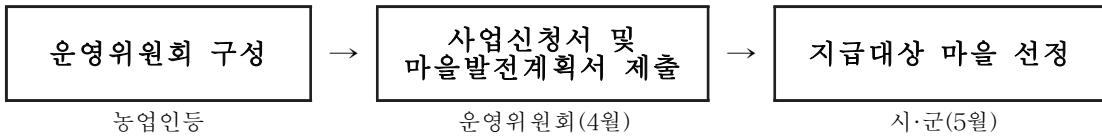
① 접수증 발급 및 접수대장 관리

- 읍·면에서는 신청인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때는 등록신청서 접수증(별지 제10호 서식) 발급
 - * 읍·면에서 직불신청 정보 및 직불금 첨부서류 검토
 - **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 우선 접수처리 하되, 읍·면에선 추후 일정 기간을 두고 필요한 구비서류를 추가 제출토록 조치 (기간 내에 추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 대상 선정 취소)

② 서류의 이송·전달

- 접수 즉시 QR코드 스캔(필수)
- 같은 신청서에 직불금 지급 관할 읍·면·동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접수한 읍·면에서 직불금 신청 농지 전체를 전산에 입력하고, 신청서(2번 항목) 및 관련 첨부서류 사본을 지급 관할 타 읍·면에 이송
- ※ 공동접수센터에는 읍·면과 농관원 담당자가 반드시 모두 배석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 복사는 읍·면, 농관원 합동으로 진행

3. 지급대상마을 선정 단계(기금을 조성할 경우만)



가.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 구성(농업인등)

-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려는 농업인등은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단위로 조건 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
 - **의결내용:** 마을공동기금 조성 여부 및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개회조건:** 마을주민 과반의 출석으로 개회
 - **의결기준:** 출석인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 **총회구성:** 해당 마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마을주민 전원(보조금 신청여부와 무관)
 - * 마을총회에서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마을에 거주하면서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반드시 기금조성에 참여하여야 함
 - * 조건불리지역과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면서 해당마을에 소재한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는 자율적으로 기금조성에 참여가능(참여희망자는 관리협약에 명시)
 - * **마을총회 의결에 따라 조건불리직불금 신청 철회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접수 기간 내 타 직불제로 변경신청토록 안내**

<신청자의 주소지 별 마을공동기금 참여의무>		
신청자의 주소지	마을별 기금 조성여부	
	조성	미조성
해당마을 거주	반드시 기금조성 참여	기금 미조성
연접 읍·면 거주	신청자 자율적으로 기금조성 참여여부 결정 가능	

- 운영위원회는 보조금 신청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함

<마을총회 의결서(예시)>

0000년 조건불리지역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OO마을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일 자:

□ 장 소:

□ 참석인원: 마을주민 00명 중 00명

□ 의결내용

○ 안건 1. 2018년 조건불리직불제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 및 조성비율

⇒ (의결내용) 2018년 조건불리직불제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조성비율은 조건불리직불금의 00%로 한다.

참석인원	찬성	반대	기권	찬성비율
00	00	00	00	00%

○ 안건 2. 2018년 조건불리직불제 마을운영위원회 구성

⇒ (의결내용) 2018년 조건불리직불제 마을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기로 한다.

운영위원장 000

운영위원회 000

운영위원회 000

참석인원	찬성	반대	기권	찬성비율
00	00	00	00	00%

0000년 00월 00일

OO마을 대표 000

붙임 마을총회 참석자 서명부 1부

※ 의결기준 총족여부가 명확히 명시될 수 있도록 찬성비율 명시 및 참석자 서명부 필히 포함

나.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 제출(농업인등, 읍·면)

- 제출시기: 4월
- 운영위원회는 제출기한 내에 사업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마을발전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를 결정한 마을총회 의결서와 함께 관할 읍·면장에 제출
- 대상 마을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민통선 및 섬지역의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지급대상 법정리가 속한 읍·면에 거주하면서 영농하는 경우
 - 지급대상 법정리에 연결한 읍·면에 거주하면서 영농을 하는 경우
 - * 읍·면장은 운영위원회의 사업신청서 및 마을발전계획서 작성을 지도·협조
 - * 마을발전계획서에는 지역현황, 마을발전목표 및 추진 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다. 지급대상 마을 선정

-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지급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읍·면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알립(5월)
- 시장·군수는 지급대상 마을 선정결과(별지 제29호 서식)를 시·도로 보고하고, 시·도는 이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5월)
- 시장·군수는 마을신청서를 Agrix 전산시스템에 등록

4. 신청자 정보공개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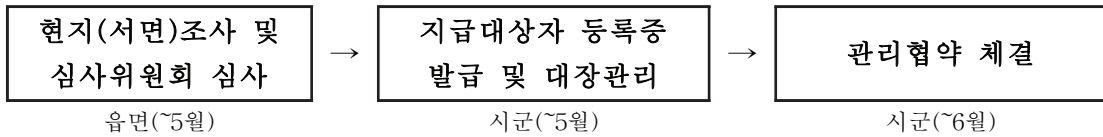
- 공개기간: 5월 ~ 9월
- 공개방법: 농식품부 또는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www.agrix.go.kr에 공개
- 공개내용: 신청자 성명(법인명), 신청 농지지번, 신청면적
- 열람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과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입력 후 열람
- 이의신청: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에 서면(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신청

<주의사항>

직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는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공개되고 열람되므로, 공개된 정보라도 정해진 방법 외에는 제공불가

- *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고시) 참고

5. 지급대상자 선정 단계



가. 현지(서면)조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읍면)

- 조사 및 심사기간: 신청서 접수 후 등록증 발급 전까지
- 현지(서면)조사: 신청인이 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동일한 시·군·구 내 2개 이상 읍·면·동에 등록신청 농지가 있는 경우
 -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에서 서면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
 - 다만, 다른 읍·면의 농지가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농지면적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에 현지조사를 의뢰
 -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읍·면에서는 등록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받아 조사에 활용
- 신청자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현지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읍·면·동장은 AgriX시스템에서 등록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AgriX시스템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나. 지급대상자 등록증 발급(시군, 읍면)

- 발급권자: 시장·군수
- 발급기간: 5월내
- 발급요건 확인
 - 지급대상 농지 적격여부(농지처분명령 대상자 신청 농지 등 제외)
 -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확인
- 발급방법
 - ① 지급대상자 등록대장(별지 제14호 서식)에 등록
 - 등록증번호는 시·군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시·군·구에서는 기 부여된 등록증 번호는 변경할 수 없음
 - * 읍·면에서는 등록대장을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

② 지급대상자 등록증(별지 제15호 서식) 발급

- 등록증 발급대상자 현황을 전산시스템에서 출력하여 서면 또는 전산 시스템으로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등록증 발급

③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

-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해당자에게 제외사실을 통보(별지 제16호 서식)

* 지급대상 제외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등록증 발급에 대한 이의 신청 처리에 준하여 처리

등록증 및 지급대상자 제외 통보서는 이후 이의신청 등의 근거서류가 되므로 신청자에게 반드시 도착해야 함

<경작사실 심사위원회>

□ **위원장:** 읍·면장

□ **위원:**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임기 2년, 재임 가능)

- 읍·면·동 관할 리·통의 마을 대표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 해당 읍·면·동을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시·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농관원 지원·사무소 담당자

□ **제척·기피·회피:** 심의의 제척·기피·회피는 「행정절차법」 제29조를 준용

□ **임무:** 실제 농업 종사여부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

- 조사대상에 관외경작자, 신규신청자, 전년도 부적격 판정 신청자는 필히 포함

○ **집중 심사 내용**

- ① 사망, 고령, 중환 등으로 승계받는 자에 대한 심사
- ② 신규 신청자 및 신규로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심사
- ③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경작자 확인
- ④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확인
- ⑤ 자기 소유 농지가 아닌 자의 무단점유 여부
- ⑥ 농지처분 명령 대상자(해당필지) 등 지급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 ⑦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 **개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 **의결 :**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다.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통보(기금을 조성할 경우만)

- 시·군은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서면(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읍·면 및 운영위원회에 통보
- 읍·면 및 운영위원회는 해당 결과를 농업인들에게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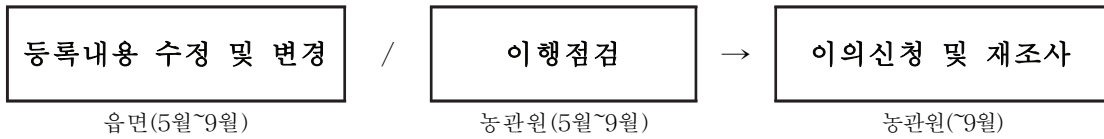
라.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체결(기금을 조성할 경우만)

-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위원장은 운영위원과 협의하여 관리협약(별지 제18호 서식)을 작성하여 지급대상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6월)
- 시장·군수는 관리협약 내용이 사업신청 시 제출된 마을발전계획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적합할 경우 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을 체결(6월)
- 협약기간 중 합의내용의 변경은 상기 체결절차와 동일한 절차로 실시

<관리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자 및 농지·초지 현황
- 운영위원회의 임무
-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 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 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
 - 관리협약 미이행 시 제재사항
- 조건불리직불금의 신청 대상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
- 마을 공동기금의 조성 비율 및 사용 용도

6. 등록사항 변경 및 이행점검 단계



가. 등록내용 수정 및 등록사항 변경(시군, 읍면)

㉠ 등록내용

- 수정사유: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 신청기간: 발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신청기관: 발급받은 읍·면장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신청
- 신청서류: 발급받은 등록증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 결과조치: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을 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재발급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

- 변경기간: 9.15.까지
- 신청 대상자: 지급대상 농지 면적이 변동된 지급대상자
- 신고 대상자
 - 등록자에게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讓受),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하는 농업인등(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변경등록)
 -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내에 사망(뇌사 포함)한 경우 승계자격요건을 갖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변경내용을 신고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
- 변경등록 신청 및 신고서* 제출: 읍·면을 거쳐 시장·군수
 - * 별지 제1호 서식(농업인)·제2호 서식(농업법인) 또는 제3호 서식

< 사망자 승계 가능 기간>

- 신청자가 변경등록 기간 이후 직불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기간 중에 사망(뇌사 포함)하여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직불금 지급(해당 시군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단계) 이전까지 승계 신청(변경등록 신고가 아닌 신규 승계신청에 해당)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승계(승계 신청시 승계 사유 및 승계확인 증명서류 제출)
 - 다만, 직불금은 일반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보조금으로, 승계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을 경우 사망한 지급대상자의 일반 상속인에게 지급은 불가함

구 분	필요 서류
변경등록 신청서 첨부서류 ①②③ 모두	① 발급된 등록증 ② 면적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③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서류 (단, 읍·면·동장이 농지원부, 토지대장 등본, 농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나목의 서류 (대상농지, 경작사실 확인, 무단점유 여부 관련)
변경등록 신고서 첨부서류 ①과③ 또는 ②와③	① 지급대상 농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수, 임차, 사용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② 사망 또는 뇌사 판정에 따른 직불금 승계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단, 읍·면·동장이 농업경영체등록정보, 주민등록정보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 - 발급된 등록증 - 등록자가 사망, 중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지 못함을 증명하는 서류 - 승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승계자의 승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4호의 서류(대상농지, 경작 사실 확인,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및 무단점유 여부 증빙 관련)

* 신청시 첨부서류 참고

㉓ 변경등록증 발급

- 시·군은 변경등록신청(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지급대상 농지 등 변경사항을 확인
 (지급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변경등록,
 읍·면·동을 거쳐 신청(신고)인에게 등록증 발급
- 등록증을 받은 자가 등록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내용 수정’에
 준하여 처리

<주의사항>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등 자격요건이 미충족되었다하여 변경등록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신청자 변경 불가
- 등록사항 변경 신청 및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등록증이 발급된 자를 변경할
 수 없음

<자격요건 상시검증>

시·군(읍·면)은 신청자 및 등록자가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자격요건을 지급 전까지 상시검증 실시

○ 지급대상 농지 적격여부

- 농지법 상 농지 및 초지법 상 초지인지 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토지인지 여부
-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에 있는 토지인지 여부
-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협의를 거친 농지인지 여부
- 다른 법률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인지 여부
- 등록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가 소유한 토지인지 여부
- 중복지급 불가능한 보조금을 중복 신청한 토지인지 여부

○ 지급대상자 적격여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업인등인지 여부
- 대상 법정리에 계속하여 주소지가 유지되어 있는지 여부
-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 또는 초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지 여부
- 등록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지 여부
- 지급대상자 등록제한기간 중인 자인지 여부
- 농지법에 따른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인지 여부(해당농지에 한 함)
-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인지 여부
-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지 여부

○ 등록신청서 첨부서류 구비 여부 등

나. 지급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 지급요건 검증(읍·면·동)

- 검증대상: 등록자 및 등록농지 전수 검증
- 검증방법: 유관기관 DB 및 AgriX시스템 등 활용
- 검증내용: 농외소득, 토지대장, 주민정보, 중복신청, 농지전용 등

② 이행점검 실시(농관원)

- 점검기간: 5월말 ~ 9. 15.(지자체 통보기간 포함)
- 점검의뢰: 등록된 농지(농업인)에 대하여 농식품부에서 농관원으로 일괄 의뢰
 - 의뢰시기 이후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현장점검 실시
- 점검대상: 조건불리보조금 신청·등록된 농지(농업인)
 - 등록된 토지(농업인) 중 경영체 DB 및 팜맵 등을 활용하여 부정신청이 의심되는 대상 위주로 선정(신규신청자, 전년도 부적격 신청자 필수 포함)
 - * 점검비율: 전체 대상 필지의 30% 이상(현장점검 30%)
- 점검내용
 - 실제 농지(초지)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경운했는지 여부 등
- 점검방법: 농관원은 세부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모바일 현장점검시스템, 팜맵, 드론 등을 활용(별지 제19호 서식 활용)
 - * 필요시 시·군(읍·면)에서 필지별 내역, 지적도면 등 관련자료 확보(지자체 협조)
 - 특히, 동일 필지 공동경작 시 경계의 설치·관리 중점 점검 실시
 - 의무 불이행사례 확인 시, 증빙자료(현장사진 및 조사자 소견서)를 확보·보유하되, 이의신청 제기 건에 대하여는 재조사 과정에서 (필요시)신청자의 확인서 징구
- 결과통보: 농관원은 부적합 내역이 있는 농업인에게 서면(별지 제20호 서식) 등으로 점검결과를 통보(매월)
 - * 점검결과에 대해 농업인 확인을 받을 시 서면통보 생략 가능
 - 시·군에는 이행점검이 완료된 9.15.까지 Agrix시스템을 통해 통보
- 이의신청: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통보를 받은 7일 이내 서면(별지 제21호 서식)으로 관할 농관원으로 재조사 요청
 - 이의신청을 받은 농관원은 즉시 재조사 후 그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
- 결과보고: 농관원은 이행점검 결과(별지 제22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서면으로 보고(9월)

다. 관리협약 이행점검(시·군, 읍·면)

※ 기금잔액이 있거나 해당연도에 기금을 조성한 마을만 해당

- 시·군 및 읍·면은 관리협약 이행점검표(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기금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상태를 연 1회 이상 점검
 - * 집행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통장거래내역 확인을 통한 기금의 사적 유용여부 등 점검
- 점검결과(별지 제24호 서식)는 시·도를 통하여 농식품부에 서면 보고(12월)

<마을공동기금의 용도 및 집행절차 등>

◆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한 마을은 관리협약 이행,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경비 및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

* 민통선, 섬지역 등 사업대상 법정리 또는 행정리 내에 거주자가 없거나, 극소수인 경우에 조성된 마을공동기금은 제출한 마을발전계획서대로 농지소재 지원대상 법정리의 활성화를 위해서만 사용 가능(신청자들의 거주지 마을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공동기금 사용 불가)

◆ 기금은 관리협약에 명시된 사업에 한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인들의 마을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다만, 운영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5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자율적 집행 가능

○ 조건불리지역에서 제외된 마을 또는 마을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않은 마을의 마을공동기금 잔액은 마을협약의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마무리, 마을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비용 등으로 계속 사용하되, 신규 사업은 마을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마을공동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구분 관리하되,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관련서류 집행 후 5년간 보관)

○ 마을 타 계좌로 이체 불가, 집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출하고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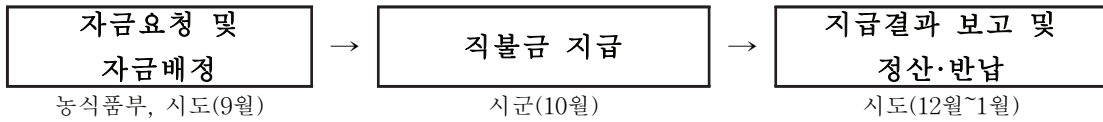
○ 계좌는 가능한한 마을명으로 개설하고 위원장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조건불리지역직불기금'임을 부기하고, 운영위원의 인감을 공동 날인하는 등 엄격히 관리

* 기금적립 등의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마을활성화 실천활동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예시)>

- ◆ **마을활성화 실천활동** :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운영(그린투어리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향토축제 개최, 마을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한계농지 정비사업, 마을공동 보관창고 건립, 재능기부 등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의 공공성 비용, 소득유망 품목 시험재배 및 도입 등
- ◆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 친환경농업 지원, 환경개선(경관작물 식재, 꽃길 조성 등), 토양유실방지 농업(초생대, 승수로(물이음도랑) 설치 등), 겨울철 사료·녹비 작물 재배, 한계농지 조림(조경·관상수 식재), 경작포기 농지의 보전관리, 마을 공동방역, 붕괴된 제방 등의 재해복구, 도로 진출입로 개선 등
- ◆ **농용지 보전활동** :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 간이 기반정비, 공동 농로·수로 정비, 토지개량사업 등
- ◆ **지역마케팅 활동** : 마을 웹사이트 개설, 전자 상거래, 정보화 교육, 산지 공동 저장, 출하 및 특산물 판매시설, 트랙터·지게차·선별기 등 공동 생산·가공 등을 위한 기계구입 등
- ◆ **마을주민 복리향상** : 마을회관 개보수·비품구입 및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효도관광, 마을주민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 등
 - 부지매입 : 마을회관 건립, 폐비닐 공동수거장 설치 등 마을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적 기능증진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마을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마을명의’로 등기
 - 제세·공과금 :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에만 가능(냉·난방비, 전기료 등)
 - 재해보험 :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재해보험에 집행하는 경우에만 가능
 - 연구용역 :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개선 방안, 지역특산품 개발, 농업기술개발 등 연구용역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만 가능(관련서류 집행 후 5년간 보관)
- ◆ **기타** : 공동방역, 공동수로 정비 등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및 농용지 보전활동에 부합되는 사업수행 시 행정비(인건비 포함) 집행가능
 - * 단, 인건비는 마을총회를 거쳐 참석인원 전체 동의한 경우에 한해 1년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집행가능(증빙자료 구비 철저)

7. 지급대상자 확정 및 직불금 지급



가. 자금요청 및 교부결정(농식품부, 시·도)

- **자금요청**: 시·도는 시·군별 지급대상자, 면적, 소요자금 등을 확정하여 서면(별지 제25호 서식)으로 농식품부에 자금요청
- **교부결정**: 농식품부는 시·도의 자금요청 등을 토대로 시·도별 교부결정 통보
- **전산작업**: 시·도는 자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e-호조 및 e-나라도움 시스템 맵핑
- **자금교부**: 농식품부는 시·도에 자금교부, 시·도는 즉시 시·군에 전금

나. 직불금 지급(시·군, 읍·면)

- 지급시기: 10월
- 시·군(읍·면)은 시·도에서 자금을 교부받아 신속히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입금 시 조건불리보조금임을 알 수 있도록 “농식품부 조건불직불”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명기
 - 통장입금 명세서는 추후 이·통장을 통해 농업인에게 전달
 - * 통장입금 시 지급대상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한 후 같은 사람일 경우 입금

다. 지급결과 보고(시·도)

- 시·도는 직불금 지급결과를 서면(별지 제26호 서식)으로 농식품부에 보고(12월)

라. 정산 및 반납(시·군·구, 읍·면·동)

- 시·도는 정산결과를 서면으로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시·도의 정산결과를 토대로 정산금액 확정
- 시·도는 집행잔액 반납

<주의사항>

시·도(시·군)는 자금교부 후 신속히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시 추경, 성립전 등으로 필요예산을 편성하고, 지급 전 계좌검증 철저

8. 사후관리 단계

수령자 명단공개 및
사업추진 상황점검

부당신청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환수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가. 수령자 명단공개

- 공개기간: 직불금 지급 후 30일 이내 공개 후 1년간
- 공개장소: 농식품부 또는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www.agrix.go.kr
- 공개내용: 성명(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수령금액
- 열람방법: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과 열람하고자 하는 목적 입력 후 열람
-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서면(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신청
 - *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수령자의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 및 이의신청 방법」(고시) 참고

나. 사업추진 상황점검

- 교차점검: 시·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관내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교차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간 교차점검 실시(4월, 10월)
- 중앙·지방 합동점검: 농식품부는 시·도, 농관원과 합동으로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도별 2~3개 시·군을 선정하여 합동점검 실시(5월, 12월)
-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등 사후관리
 - 농식품부는 부당수령금 등 사업비 회수 및 반납업무 처리상황을 정기 및 수시(필요시) 점검
 - 시·도는 관내 업무 추진상황 지도·점검 시 부당수령금 관리실태 점검
 - * 시·도 주관 교차점검(4월, 10월) 시 부당수령금 회수·반납 처리상황 점검

다. 부당수령 신고센터

- 부당수령 신고접수를 위해 부당신청 신고센터(시·군)와 콜센터 연중운영

< 신고 및 처리 절차 >	
① 해당 시·군의 “부당수령 신고센터”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또는 직불금 콜센터(1588-6830)를 통해 구두신고	
* 신고서(별지 제27호 서식) 및 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② 신고를 접수한 해당 시·군은 신고내용을 관리대장(별지 제28호 서식)에 등록 - 구두신고의 경우, 콜센터에서 해당 시·군으로 즉시 이송	
* 콜센터 구두신고시 확인사항: 부당수령자 성명, 농지주소, 위반사항, 신고인 성명, 신고인 연락처	
③ 시·군은 관할 농관원 사무소와 협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대해 현지조사	
④ 부당수령자로 판명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직불금 회수조치 및 등록제한 등 조치하고 조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	

라.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 「시행규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직불금의 일부 및 전부 미지급 및 등록제한 가능
 - * 등록제한 기준은 위반행위가 확인된 해당 연도를 시작연도로 하고, 제한기간 만료 후 다음해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마지막 연도 연말까지로 결정

<보조금의 지급중지 및 환수에 대한 세부기준>		
지급요건	점검결과	제 재 기 준
농지관리 의무 (농업인)	불이행	○ 1회: 경고 및 불이행 농지면적 보조금 미지급 ○ 2회: 보조금 지급중단(2년간) ○ 3회 이상: 보조금 지급중단(3년간)
마을공동기금 사용 (마을공동기금 적립마을)	용도외 사용	○ 해당금액 마을공동기금으로 환수 ○ 관리협약에 따른 제재
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증진 등 (마을공동기금 적립마을)	협약 불이행	○ 해당금액 마을공동기금으로 환수 ○ 관리협약에 따른 제재

※ 마을공동기금을 유용·횡령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경우 시·군에서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조치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기준 및 사후관리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 조치
 - 마을공동기금을 적립한 경우 해당 적립한 기금도 환수조치하고, 부정수급자는 향후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
 - * 마을공동기금 적립마을일 경우 시·군에서 관리협약에 따라 제재조치

마.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징수

- 직불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고, 부정수급자는 향후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
- 징수(회수)절차
 - ① 납입고지서 발급: 시장·군수는 징수(회수) 사유가 발생하면 대상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
 - * 납입고지서는 수령인의 수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
 - ② 납입: 납부의무자가 부당수령금을 납부 시, 시·군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 순으로 납입
 - ③ 결과입력: 시·군(읍·면)은 부당수령금 회수 즉시 관련 정보(부당이득금, 가산금, 회수일자 등)를 전산시스템에 입력·관리
 - * 납부의무자가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관 련 서 식

■ [별지 제1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농업인용)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과 동일(생략)

■ [별지 제2호 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농업법인용)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과 동일(생략)

■ [별지 제3호 서식]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과 동일(생략)

■ [별지 제4호 서식]

년 조건불리보조금 시·군별 마을공동기금 조성여부 결정 결과

시·도	시·군	대상 법정리 (개소)	대상 행정리 (개소)	최소 적립비율	'18년도 지급현황		비고
					참여인원 (명)	참여농지 (㎡)	

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계획(00시·군·구, 농관원 00사무소)

시·군·구 및 농관원 간 업무협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 참석기관 및 참석자 :
- 협의 사항 :

주요 협의 내용

- 집중 접수기간(읍·면별) 일정

시·도	시·군·구	읍·면·동	공동접수센터 운영여부(O/X)	운영일자

- 기관간 협조체계
- 기타 협의시 논의된 내용

향후 추진일정

-

※ 기타 기재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기재

■ [별지 제6호 서식]

조건불리보조금 사업신청서												
1.대상지역	시.도			시.군		읍.면			리 (법정리명)			
									리 (행정리명)			
2.지역현황 (예시)	인구수(명)			남자					여자			
	가구수(호)			농가					비농가			
	경지면적(ha)			논		밭			과수원			
	초지면적(ha)											
* 성과지표 작성 (매년입력)	'19 농가수(호)		총	증감원인		사망		이주		기타		
	정주농 비율(%)		*자동계산('19정주농비율/최근 5년간 평균정주농비율)×10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농가수(호)											
3.지역자원	마을내			마을외(차량10분)			기타					
	마을 또는 지역 상징물 (전설, 정자목, 마을숲 등)											
	자연자원 (보호동식물, 해수욕장, 계곡, 천연기념물 등)											
	문화자원 (유형.무형 문화재 등)											
4.지역특산품 (예시)	친환경인증농산물				지역특산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운영위원회 주 소 : (전화 :) 위 원 장 성 명 : (서명 또는 인) </div>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귀하												
첨부 : ○○리 마을발전계획서 1부 * 법정리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지한 조건불리지역 법정리명을 기재												

210mm×297mm[일반용지 60g/m(재활용품)]

■ [별지 7호 서식]

○○리 마을발전계획서(예시)

1. 대상지역 : 시.도 시.군 읍.면 리(행정리)

2. 지역현황

(1) 인구 및 가구수

(단위 : 명, 호)

인구수						가구수		
계		남자		여자		계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농가	비농가			

- 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 지역의 세부특징을 설명

(2) 경지면적

(단위 : ha)

총면적	답			전			과수원			초 지		
	소계	경작지	휴경지	소계	경작지	휴경지	소계	경작지	휴경지	소계	활용	미활용

- 농경지 활용측면에서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점 또는 장점을 간략히 설명

3. 지역자원

- 마을 상징물(전설, 정자목, 마을숲 등) :
- 자연자원(보호동식물, 해수욕장, 계곡, 천연기념물 등) :
- 문화자원(유형·무형문화재) :
- 기타 마을 고유의 자원 :

4. 지역특산품 등

- 친환경인증 농산물 :
- 지역특산품 :
- 기타 :

5. 마을 공동체 활동현황

조직명	조직구성	모임횟수	등록일시	주요활동내역	비고
영농회 청년회 :	○○명	○회/월			

- 지역공동체 및 지역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역 내 각종 공동체를 표시하고, 활동 내용을 간략히 설명

6. 마을 발전 계획

○ 발전목표 설정

(예 : 친환경농업마을, 전통문화마을, 농촌관광마을 등 자체개발)

- 발전목표 설정 이유
- 마을 내 지역특화 자원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작성
- 시·군 발전계획 등 관련 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 마을 주민 전체의 참여를 통해 작성

○ 향후 5년간 추진계획

- 발전목표를 토대로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구체적인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작성
- 소득증대를 위한 특화작목 개발, 친환경농업 육성 노력, 마을 경관 조성 및 환경개선 노력, 주민참여 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마을기금 활용 계획

- 마을주민의 동의하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기금이 조성될 경우 투자계획을 작성

○ 마을 발전계획 작성 경과

- 계획 작성 과정의 주민참여 활동(마을회의 개최 등)을 상세히 서술

※ 작성요령

- 마을발전계획은 마을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이 직접 작성
- 필요에 따라 사진 등을 첨부하는 등 상세히 설명
- 계획서는 본 시행지침에 주어진 양식을 참고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작성
- 기 작성 제출된 경우는 실행여부 점검, 새로운 내용과 미진한 사항 보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신청구분 (논,밭,조건)	농지 소재지			면적(m ²)	대상작물 (쌀, 밭, 조건 중 택1)
		읍·면·동	리·통	지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7조제2호 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농지로 등록을 신청하는 농지는 다음과 같이 이용된 농지(초지)임을 확인합니다.

- 쌀직불: '98.1.1.부터 '00.12.31.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
- 밭직불: '12.1.1.부터 '14.12.31.까지 밭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이외 작물 재배)
- 조건불리직불: '03.1.1.일부터 '05.12.31.까지 농업에 이용되거나 초지로 관리

확인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농지 소재지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이(통)장과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 * 위 경작사실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확인을 해 준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별지 제9호 서식]

승계 의사 확인서(조건불리)

등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록농지	농지 소재지			공부상 면적(m ²)	이용면적(m ²)				
	읍·면·동	리·통	지번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 29조에 따라 등록자는 승계자 ()에 대해 ()의 사유로 승계함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등록자				
* 등록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승계자 외 1명 이상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자와의 관계)				

○○시장·군수 귀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 및 방법으로 위 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쌀() 밭(고정, 논이모작) 조건불리()

<접수번호 : >

□ 신청자 내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절-----취-----선-----

<접수번호 : >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증

쌀() 밭(고정, 논이모작) 조건불리()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대상농지 및 면적 등은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 최종 확정 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읍·면장(사무소장) (인)

■ [별지 제11호 서식]

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접수 관리대장(공통, 지자체용)

※ 해당 관할 지역 지급대상자에 대해 직접 접수받은 내역과 농관원(사무소) 및 타 지자체(읍·면·동)에서 이송받은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관리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접수 내역 ²⁾		이송 여부 ³⁾ (O,X)	전산 입력 여부 (O,X)	비고 (접수자)
		주소	생년월일	경영주 성명 ¹⁾ 지역 신청자 성명(전체)	직접 접수	이송			

- 1) 신청서의 경영주 이름을 기재하고, 점선 밑의 란에 관할 지역 내 신청자 전부 표기
 예시) ① 경영주와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같은 경우 : 경영주 성명 표기
 ②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를 포함하여 여러명인 경우 : 경영주를 포함한 신청자 모두 표기
 ③ 관할지역 내 직불 신청자가 경영주와 다를 경우 : 신청자 명 표기(복수일 경우 전부 표기)
- 2) 직접 접수 받은 경우는 직접접수란에 ‘○’, 농관원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1’, 타 지자체에서 이송받은 경우는 이송란에 ‘2’로 표기
- 3) 직접 접수 또는 농관원으로부터 최초 이송받은 읍·면·동이 타 지급 관할 읍·면·동으로 이송하였는지 여부

■ [별지 제12호 서식]

통합 신청서 인수인계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금 통합 신청과 관련하여 ○○와 ○○ 간에 아래 사항에 대해 이상 없이 인수인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직불금 신청 내역 사본 000부

2019년 00월 00일

인 계 자 (소속) ○○ 직 이 름 서 명

인 수 자 (소속) ○○ 직 이 름 서 명

붙임 : 인수인계 내역

인수인계서 내역

접수번호	경영체명 (신청자명)	주소지	신청내용("○" 표시)			
			쌀	밭	조건	비직불

■ [별지 제13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등록신청자 성명				
등록신청 농지 지번				
등록신청 농지 면적				
이의 신청 내용				
<p>「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0조, 동 규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등록신청한 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이의신청자 (인)</p> <p>○○○ 시장.군수 (귀하)</p>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별지 제14호 서식]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

등록 번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 번호)	지급대상 마을명	지급대상면적(㎡)					등록 연월일	변경 사항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5호 서식]

등록번호 제 호

년도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신청자별/마을별)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지급 대상 마을명	농지 소재지			농지 소유자 성명	공부상 면적 (㎡)	지급대상면적(㎡)				
	읍·면	리·동	지번 (임시지번)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합계										

위 신청인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 * 등록증을 받은 후 등록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초지)의 매매 및 임대, 신청자 사망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9.15.까지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건불리보조금을 등록하거나 수령한 때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이 등록증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내용에 대한 확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6호 서식]

번호 제 호

년도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통보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농지 소재지		④신청현황(m ²)			제외 사유	
	읍·면	리·동	지번 (가지번)	마을명	지목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건불리
보조금 지급대상자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제외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
균수 [인]

* 위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변경) 통지서

1. 운영위원회 현황

마을명		위원장 성명	
주소		전화	

2. 지급 대상자 및 대상토지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지급대상면적(m ²)					보조금 예상액 (원)
				합계	논	밭	과수원	초지	
합 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조건불리지역 관리 협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직인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대상자별 지급대상면적을 기재
 ※ 위원장은 선정결과를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법정리(마을명)	시·도	시·군	읍·면	리(마을)
협약 참가자	총	명(자연인	, 법인)
대상면적	총	m ² (논,	밭,	과수원, 초지)

협 약 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 시장·군수
○○ 마을 운영위원회

조건불리지역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영농활동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마을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를 “갑”이라 하고 ○○마을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를 “을”이라 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1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관리협약기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협약내용

제1조(지급대상자) 이 협약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시행규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갑”이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 농업인등으로 마을공동기금 구성에 동참한 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2조(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 이 협약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는 시행규정 제27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이하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① 운영위원회는 시행규정 제26조 따른 조건불리 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운영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운영위원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마을발전계획서 작성, 마을활성화 활동 추진, 마을공동기금 조성·관리 및 조건불리 보조금 지급요건 이행점검 등 위원장 및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④ 위원장은 마을공동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 또는 지급대상자 중에서 운영위원의 동의를 얻어 회계담당자를 선임한다.

⑤ 회계담당자는 마을공동기금의 입출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며,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여 차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한다.

⑥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등) ① “을”의 각 지급대상자는 “갑”이 제시하는 농지관리 의무 및 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실천 등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농지관리 의무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시작 연도부터 사업시행 기간 동안 지급대상 농지 및 초지의 경작·관리 의무

2. 마을공동기금 조성 의무

- 가. 지급대상자간에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조성하기로 관리협약에 명시한 마을공동기금의 조성
- 나. 마을공동기금을 관리협약의 이행, 관리협약의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소요 경비로 사용할 의무
- 다. 기타 마을공동기금과 관련된 지급대상자간의 합의 사항 준수 의무

3.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실천 의무

- 마을 여건과 지급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그린투어리즘 등 마을활성화 실천과 경관작물 재배 등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을 관리협약 합의내용(붙임)에 반영

② 위원장은 지급대상자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의·지도하고, ‘관리협약 이행표’를 작성하여 매년도 9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③ 지급대상자는 위원장·운영위원 및 회계담당자와 협력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1항에서 정한 의무사항 이행점검 결과 불이행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 사업시행지침(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 및 관리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을” 또는 지급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중단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자격 상실) ① “갑”은 지급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을”을 경유하여 해당 지급대상자에게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을”에게 지급대상자의 자격 상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해당 지급대상자의 자격을 상실시켜야 한다.

제6조(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시기) ① “갑”은 “을” 및 각 지급대상자가 제4조의 의무사항을 이행한 것을 확인하고,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갑”은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대상자가 신고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 “갑”은 지급대상자간 합의로 관리협약에 명시한 마을공동기금 조성 비율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운영위원회가 신고한 마을공동기금계좌에 직접 입금한다.

제7조(지급제한 등) “을” 및 지급대상자는 제4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자격이 상실되어 “갑”으로부터 사업 시행지침 및 관리협약에서 정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

3. 관리협약 대상 지급대상자 및 토지 현황

연번	지급대상자				대상 면적(m ²)					서명 (인)
	읍·면	리	성 명	생년월일	합계	논	밭	과수원	초 지	

* 본 표는 위원장 및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지급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지급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

4. 20 년도 관리협약 합의내용

가. 마을의 공동 발전 목표(장기목표)

-
- * 마을발전계획서의 마을발전목표 기재

나. 장기목표 실현을 위한 추진계획(사업기간 내)

-
- * 위 장기목표 실현을 위한 사업기간(5년) 동안의 구체적 추진계획 기재

다. 마을공동기금 조성비율 및 사용용도

- 조성 비율 : 보조금 수령액의 %(조성 예정금액 천원)
- 사용 용도

구체적 사업내용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계 획	
	추진 기간	예 산
		원
		원
		원
		원
		원

라. 지급제한 및 등록제한

- 이행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기준

의무 사항	점검결과	제 재 기 준(예시)
마을공동기금 사용	용도외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금액 마을공동기금으로 환수 ○ 모든 집행내역에 대한 시장·군수 승인(자율집행 금지) ○ 분기별 사용내역 정산 보고
마을활성화 실천 및 공익적 기능증진 등	협약 불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금액 마을공동기금으로 환수 ○ 모든 집행내역에 대한 시장·군수 승인(자율집행 금지) ○ 분기별 사용내역 정산 보고

위 관리협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관리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	인
“을” 마을대표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 성명 :	인
운영위원(회계담당) 성명 :	인

<작성 요령>

- ① 1란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전개, 전통문화·생활풍습 등의 전승을 통한 도시주민과의 교류추진 등 마을의 공동목표 및 발전방향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작성
- ② 2란은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장, 운영위원 및 회계담당자 명단을 작성
- ③ 3란은 마을공동기금의 조성 비율 및 조성 예정금액을 작성하고,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별 추진기간 및 사용 예정금액을 구체적으로 작성

<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 활동 등 실천 권장 사항>

- ◆ **마을활성화 실천활동** : 체험농원 및 주말농장 설치·운영(그린투어리즘), 도시주민과의 교류활동, 향토축제 개최, 마을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한계농지 정비사업, 마을공동 보관창고 건립, 재능기부 등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의 공공성 비용, 소득유망 품목 시험재배 및 도입 등
- ◆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 친환경농업 지원, 환경개선(경관작물 식재, 꽃길 조성 등), 토양유실방지 농업(초생대, 승수로(물이음도랑) 설치 등), 겨울철 사료·녹비 작물 재배, 한계농지 조림(조경·관상수 식재), 경작포기 농지의 보전관리, 마을 공동방역, 붕괴된 제방 등의 재해복구, 도로 진출입로 개선 등
- ◆ **농용지 보전활동** : 농약 빈병 및 폐비닐 수거장 설치, 간이 기반정비, 공동 농로·수로 정비, 토지개량사업 등
- ◆ **지역마케팅 활동** : 마을 웹사이트 개설, 전자 상거래, 정보화 교육, 산지 공동 저장, 출하 및 특산물 판매시설, 트랙터·지게차·선별기 등 공동 생산·가공 등을 위한 기계구입 등
- ◆ **마을주민 복리향상** : 마을회관 개보수·비품구입 및 선진지 견학, 마을 경로잔치, 효도관광, 마을주민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 등
- **부지매입** : 마을회관 건립, 폐비닐 공동수거장 설치 등 마을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적 기능증진에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마을총회를 거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마을명의'로 등기
- **제세·공과금** :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에만 가능(냉·난방비, 전기료 등)
- **재해보험** :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화재보험, 재해보험에 집행하는 경우에만 가능
- **연구용역** : 마을총회를 거쳐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 지역특산품 개발, 농업기술개발 등 연구용역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만 가능(관련서류 집행 후 5년간 보관)
- ◆ **기타** : 공동방역, 공동수로 정비 등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및 농용지 보전활동에 부합되는 사업수행 시 행정비(인건비 포함) 집행가능
 - * 단, 인건비는 마을총회를 거쳐 참석인원 전체 동의를 한 경우에 한해 1년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집행가능(증빙자료 구비 철저)

년 조건불리보조금 신청농지 이행점검표

담당	주무	소장(과장)	결재

결재년월일 : 년 월 일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내역 및 조사결과

농지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내용		조사결과 (지목, 재배·경운면적)	비고 (불일치사유)
읍·면	본번	부번	공부상 지목		지목	면적 (㎡)		

※ 신청내용의 지목중 목장용지는 초지를 의미합니다.

※ 불일치사유 판단 기준

- 미재배(미경운) : 이전년도까지 작물재배 또는 경운을 한 경우
- 휴경 : 2년 이상 작물재배 또는 경운을 하지 아니한 경우(농지형태 확인가능)
- 폐경 : 묘지, 도로, 잡목이 있는 등 농지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농지형태 확인 불가능)

3. 조사자 확인

○ 위와 같이 현지조사를 틀림없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년 월 일	조사자 : (인)
<특이 사항>	

4. 신청인 확인(필요시)

○ 등록신청 농지의 현지조사 결과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조사일자 :	신청인 (인)	연락처 :

<사 진>

* 현지 조사표 하단 또는 뒷면에 부착

년 조건불리보조금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농지소재지			공부상 지목	공부상면적 (㎡)	신청면적 (㎡)	적합면적 (㎡)	부적합면적 (㎡)	비고 (불일치사유, 면적 등)
읍·면	본번	부번						
합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동봉한 이의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를 농지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사무소장

직인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	

2.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쌀·밭·조건불리직불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밭·조건불리직불금 이행점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지원장·사무소장 (귀하)

- 구비서류 : 1.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이행점검표(20 년)

조사자 : ○○시·군 ○○읍·면 직 성명 서명

마을 현황

마을명		법정리명		위원장 성명	
대상농지면적	m ²		지급대상자수	명	

이행 상황

이행점검결과

농지관리 의무

① 대상 농지관리(경작) 및 초지관리 의무 이행 여부

* 이행점검결과 란에 “이행” 또는 “불이행” 을 기재하고 “불이행” 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마을공동기금 적정 관리 의무

① 회계담당자 지정 여부

② 마을공동기금 관련 증빙서류 보관 여부

③ 마을공동기금 사용의 적정 여부

* 이행점검결과 란에 “여” 또는 “부”를 기재하고 “부”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선택적 의무 이행 상황

마을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 실천 의무

①

- 이행기간 : 월 일 ~ 월 일
- 실천사항 :

②

- 이행기간 : 월 일 ~ 월 일
- 실천사항 :

③

- 이행기간 : 월 일 ~ 월 일
- 실천사항 :

* 이행점검결과 란에 “이행” 또는 “불이행”을 기재하고 “불이행”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

마을공동기금 집행현황

(단위 : 원)

'19년도 마을공동기금 조성현황			기금 조성 총액 (~현재까지) (D)	기금 집행 총액 (~현재까지) (E)	기금 집행잔액 [F=D-E]
직불금 지급액 (A)	기금 조성액 (B)	기금 조성율 (C=B/A×100)			

* 기금잔액 때문에 점검하는 경우 '마을공동기금 적정 관리 의무' 및 '마을공동기금 집행현황'만 작성

■ [별지 제24호 서식]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 이행점검결과(20년)

사도	사군	읍면	법정리	행정리 (마을명)	'19년도 조성현황*					기금 조성액 (~현재까지) (D)	기금 총액 집행총액 (~현재까지) (E)	기금 집행잔액 [F=D-E]	부적합 내역	비고
					참여인원 (명)	참여농지 (m)	직불금 지급액 (A)	기금 조성액 (B)	기금 조성율 (C=B/A*100)					

※ '19년도에 마을공동기금을 자율적으로 적립한 마을 또는 '19년도 이전에 조성되어 기금 잔액이 있는 마을 모두 작성
 ※ ['19년도 조성현황]은 '19년도에 마을공동기금을 자율적으로 적립한 마을을 대상으로 작성

■ [별지 제25호 서식]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확정) 결과

< ○○○도 >

□ 보조금 지급예정금액 :

친원 (국비) : 친원 지방비 : 친원 (친원)

사도 시군구	읍면동 (수)	법정리 (수)	행정리 (수)	신청현황					신청(확정)결과					보조금 지급예정금액 (천원)												
				농가수	계	경지계	논	밭	과수원	초지	농가수	계	경지계		논	밭	과수원	초지								
합계																										

* 보조금 지급예정액은 행정비를 제외한 조건불리보조금액임

* 경지계 = 논+밭+과수원, * 계 = 경지계+초지

■ [별지 제26호 서식]

조건불리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 ○○○도 >

시군	자금 배정액 (천원)	지급 마을수 (개)	지급인원 (명)	지급 면적(㎡)		지급 결과(천원)			
				계	농지	계	농지		
합계				계	농지	계	농지	초지	초지

■ [별지 제28호 서식]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 신고 관리 대장

기관명 :

접수 번호	접수 연월 일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연락처	신고방 법 (콜센터 , 우편 등)	피신고 인 성명	농지주소	위반행 위	지불류 종	처리 연월 일	처리내 용	결과통 보 연월일	결과통 보식 (전화, 우편 등)	포상 금 지급 액	

■ [별지 제29호 서식]

0000년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마을 선정 결과

사·도	사·군	읍·면	행정리 (마을명)	'18년 기금조성여부		적립비율 <small>*조성사만 작성</small>	비고
				조성	미조성		

세부사업명	친환경농업직불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친환경농업직불			예산 (백만원)	22,445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인증단계별·품목군별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3~5년간 직불금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 지급), 유기지속직불금은 기한 없이 지급 * (유기) 논 700천원/ha, 밭(과수) 1,400, 밭(채소·특작·기타) 1,300 (무농약) 논 500천원/ha, 밭(과수) 1200, 밭(채소·특작·기타) 1100 (유기지속) 논 350천원/ha, 밭(과수) 700, 밭(채소·특작·기타) 650							
국고보조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6~2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0.1~5.0ha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25,893	23,943	26,392	22,445			
	국 고	25,893	23,943	26,392	22,44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친환경농업과 시·군·구 담당과		김진수 최기정 담당자		044-201-2432 044-201-2433		
신청시기	정기(~3.31.)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능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일체
- 지원대상 농지: 2019년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사업기간 중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작물 재배가 관련이 없거나 토양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필지
- 경운, 시비, 율타리 등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거나 식별하기 어려워 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필지
-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필지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 (토양관리가 이루어지는 원목재배 형태 버섯재배는 지급대상에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재원: 농특회계
- 지원형태: 지자체 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고 100%
- 지급단가(단위: 천원/ha)

인증단계	논	밭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하되 채소·특작·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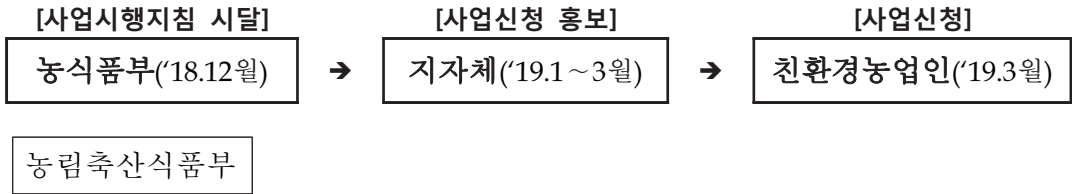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0.1~5.0ha
 -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신청 면적 합이 5ha를 초과할 수 있음. 이 때 각 구성원의 지급한도는 5ha를 초과할 수 없음.
 - * 예시) 법인에 소속된 개별 생산자 A(7ha), B(6ha), C(4ha)의 경우 법인 대표가 14ha를 신청, A, B, C는 각각 5ha, 5ha, 4ha에 대한 직불금 수령
- 지급 기간 및 방법: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수령 가능
 - 같은 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유기·무농약)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3회) 지급, 유기인증의 경우에는 추가 2년(2회) 지급
 - * 최초 인증필지(유기·무농약 인증 종류 무관) 3년(3회) + 유기는 추가 2년(2회) 지급
 -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무농약 →유기 또는 유기→무농약)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 지급
 - * 이행점검 종료일(10.31.)을 기준으로 함.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 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II 사업 추진 체계

1. 사업 신청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인증기관 등에 시달('18. 12월~'19. 1월)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홍보('19. 1~3월)

사·도, 시·군·구(지자체)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19. 1월~3월)
 -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게시판 공고(시·군·구, 읍·면·동), 반상회보 게재 등
 - * '19년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읍·면·동)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기간 중 인증이 종료 예정인 농업인에게는 향후 인증 종료 전에 인증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공지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 (개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필요 시)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 신청서류: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친환경농산물인증서(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 (생산자단체) 단체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신청내역을 종합하여 단체 명의로 공동 신청 가능
- * 신청서류: ①, ②와 신청인 정보, 입금계좌, 인증종류, 품목, 농지 소재지, 재배면적이 포함된 세부 신청 현황
- 신청기간: '19. 3. 1. ~ 3. 31.(전산입력 기간: '19. 3. 1. ~ 4. 10.)
 - * 농업경영정보를 참조할 수 없는 임야 등 필지는 AgriX에 개별 자료 입력 필요
- 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 신청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 '18년 중 신규 인증을 받은 필지는 '19년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19년 중 반드시 인증갱신을 통해 '19. 1. 1.~12. 31.까지 인증기관의 관리가 지속되어야 함.(인증기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 인증기관의 관리 중인 것으로 인정)

2. 사업자 선정 단계

가.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 시장·군수 등은 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9. 5. 10까지)
- 신청 자격, 논·밭 구분, 인증단계별 지급단가, 농가당 지급한도, 지급기간 초과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단가 조정
- * 읍·면·동 담당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참고하여 인증기간, 인증필지·면적 등을 반드시 확인

나. 신청내용 변경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 변경)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 * 사업 대상 필지의 경작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직불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
 - ** 인증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직불금 최종 수령일 전까지 인증정보 변경과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인증기관) 사업 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 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신청 농지의 주소(지번) 변경, 필지 수 및 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 상의 농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 * 인증대상자,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야 함.(인증기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 포함)
- 변경신청 기간: 변경 및 승계 승인일자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청장(읍·면·동)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
 - 변경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AgriX 운영기관(1588-6830)에 변경기능 허용 요청 후 자료 입력(AgriX 운영기관은 시·군·구의 요청 시 즉시 조치할 것)

다. 사업량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5. 20.까지)

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시·군·구)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시·군·구 → 신청인, 5. 31.까지)
 - 시·군·구에서는 배정된 사업량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지[별지 제2호 서식]
 - * 단, 이행점검 결과 등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3. 이행점검 단계

- 시·군·구 및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 대상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와 제40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농업 이행 여부 및 인증 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
- 기관별 점검 사항
 - (농관원) 인증정보의 유효성 전산 검증
 - * 인증정보(인증번호, 인증사업자, 인증면적 및 필지 등과 직불금 신청정보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지자체에 전송
 - (시·군·구)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지급한도 초과 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

* 농관원이 전송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 인증기준 위반 의심 농가는 현장점검 의뢰

○ 이행점검 요청(시·군·구 → 농관원)

- 시·군·구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대상자의 신청정보에 대해 농관원에 전산검증 요청('19. 5. 21.까지)

○ 이행점검 기간: '19. 5. 21. ~ 10. 31.

- (시·군·구) 농관원에서 회신한 전산검증 결과 확인 후 조치

- (농관원) 인증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농가 발생 시 인증기관과 협조하여 생산과정조사 등 추진

○ 검증 결과 회신(농관원 → 시·군·구)

- 농관원에서는 인증정보를 시·군·구에 회신(정기/수시, '19. 10. 31.까지)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가.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시·군·구)

○ 시·군·구청장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통보 결과를 참조하여 이행점검을 마감하고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 인증 취소, 인증기간 종료, 신청 포기, 면적 불일치 등 부적격자(필지) 제외

○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자체별로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19. 11. 25.까지)

나.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지급(농림축산식품부 → 시·군·구)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별 친환경농업직불금 소요예산액 교부('19. 11월말)

○ 각 시도(시·군·구)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19. 12월)

5. 자금 집행 후 관리 단계

가. 사후관리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연도 내(1.1.~12.31.) 인증취소, 인증종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종료(10.31.) 후에도 당해연도 말(12.31.)까지 친환경농업직불제 대상농가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여부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

나. 제재

- 농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
 - 환수절차: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각 시·도지사는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보고

Ⅲ / 평가 및 환류

1.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020년도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붙임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19. 3. 1. ~ 3. 31.)

[별표]

사업 추진 체계

< 세부계획 >

< 시기 >

< 주요내용 >

① 지침시달 및 홍보	('18.12월~ '19.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지침 설명, 공고·홍보(시·군·구, 읍·면·동)
② 사업신청	(3.1.~3.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농지소재지 읍·면·동)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4.1.~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4.30.) · 선정결과 보고(시·도 → 농식품부, 5.10.)
④ 사업량 배정통보	(5.11.~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식품부, 5.20.)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농업인 통보 (시·군·구 → 신청인, 5.31.까지)
⑤ 이행점검	(5.21.~10.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대상자 명단을 인증기관에 송부하고 이행점검 요청(시·군·구 담당자, 5. 21.까지) · 이행여부 확인결과에 따른 확인·수정 후 이행점검 재차 요청(읍면동 담당자) · 인증기관에서 이행점검 결과 통보(인증기관 → 시·군·구, 10.31.까지) * 인증기관에서는 시·군·구의 요청 이전에도 이행점검 가능, 이후 시스템 입력
⑥ 사업대상자 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1.19.~1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대상자 검토 후 이행마감 조치를 통한 소요액 신청(시·도 → 농식품부, 11.25.까지)
⑦ 보조금 지급	(12.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예산액 교부(농식품부 → 시·도, 11월말) · 보조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12월)

[별지 제1호 서식]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재배 면적 (㎡)	쌀소득등보 전직불제 대 상여부(O,X)	과거 지급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0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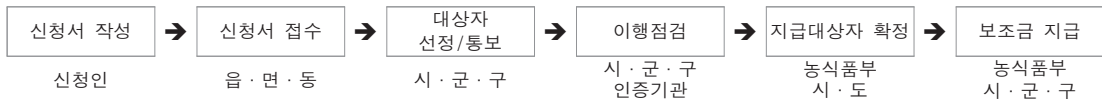
첨부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2. 친환경농업직불금 세부 신청 내역	수수료 없음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	
근거 법조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0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 방법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란에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4. “계좌번호”란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5. “인증종류”란에는 유기, 무농약 중 하나를 적습니다.
6. “품목”란에 대분류에는 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적고, 소분류에는 실제 경작품목명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담당 직원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직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업농 등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발농업보조금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세부현황

신청인 이름	생년 월일	구분	인증 종류	품목	농 지 소 재 지				재배면적 (㎡)	쌀소득등 보전직불 대상여부 (O/X)	과거 지급현황 (횟수)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1. 인 적 사 항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2. 지급대상 농지

구분	인증 종류	실제경작 품목	농지 소재지				지급대상 면적(㎡)	쌀소득등 보전직불 제대상여 부(○,×)	지급 보조금 예상액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지급보조금 예상액 합계									

※ 1ha=10,000㎡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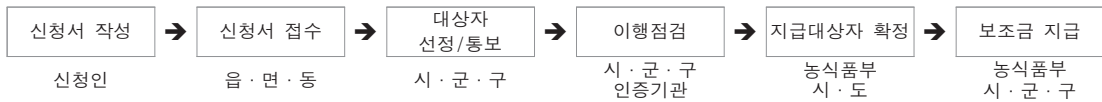
직인

<div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 margin-bottom: 0;">친환경농업보조금 사업신청 변경신고서</div>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②신청 변경사항 :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			
구분	당초	변경	변경일자
사업대상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지현황	농지 주소		
	농지 면적		
*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등 변경에 따른 신청농지 변경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③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p>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신청내용(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p>			
※ 구비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2.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사업대상자 변경에 한함)			수수료 없음

작성 방법

- ① 신청인: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변경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
 -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동시 기재
- ② 신청 변경사항
 - 사업대상자: 당초 신청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승계한 경우
 - 인증기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신청농지의 주소변경, 필지수, 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상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 ③ 입금계좌: 신청내용 변경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할 농업인의 계좌를 기재

처리 절차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담당 직원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직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업농등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발농업보조금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4. 국제협력협상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세부사업명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컨설팅-해외인턴		예산 (백만원)	513				
사업목적	○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산업의 저변확대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해외 식량 확보 기반 마련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환경조사 : 해외진출기업이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진출국의 농업 투자 환경, 농업 인프라 등에 대한 시장조사,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의 제경비 및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을 지원 ○ 컨설팅 : 해외진출 및 정착과 관련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가 현지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각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컨설팅을 지원 ○ 해외인턴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진출 및 정착을 위해 해외현지에서 근무할 인턴채용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3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보조)							
지원자격 및 요건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농기업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사업 : 최대 6개월 이내, 대기업(50%), 중견 및 중소기업(70%) ○ 해외인턴 : 인건비(최대 6개월 이내), 항공로 등 지원 							
재원구성(%)	국고	50-7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30-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조사사업	71	355	330	468	500		
해외인턴	25	33	61	45	66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국장		주정제 이은수		044-201-2040 031-345-6566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사)해외농업자원 개발협회		
관련자료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보조)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해외농업개발서비스 홈페이지(http://www.oads.or.kr)							

1. 사업대상자

- 해외농업진출을 희망하는 사업자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사업법인의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 우선지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급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 우선 지원
-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 * 인턴사원 : 만 20세 이상 해외 현지 근무 가능자

3. 지원내용 및 용도

- (민간환경조사)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농기업이 진출계획 수립을 위해 진출국의 농업투자환경, 인프라 등 구체적인 현지조사시 소요되는 경비 및 전문업체를 통한 현지조사시 소요되는 경비 일부 지원
 - 조사자 항공료, 여비 및 제경비, 전문가 자문료 등
- (컨설팅)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진출 및 정착시 현지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및 현지 각 분야 전문가 및 전문업체를 통한 컨설팅시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컨설팅 지원분야) 각 법률, 사업성분석, 경영자문, 재배, 생산기반, 저장 건조, 무역, 유통, 농기계 등
 - * 기자재 구입, 운영자금 등 사업자의 사업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불가
 - (지원내용) 전문가 컨설팅은 자문료, 항공료, 여비 및 제경비 지원
전문업체를 통한 컨설팅시 컨설팅업체에 제공하는 컨설팅비
 - 사업대상자별 국내 전문가는 5인 이내, 현지 전문가는 5인 이내 지원

- (해외인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진출 및 정착을 위해 사업자의 국내외법인에서 근무할 인턴채용을 지원
 - 인턴사원 인건비(최저임금), 항공료, 파견준비비(비자발급비, 보험료, 예방접종비) 지원
 - * 인건비는 최저임금(월 1,745천원)까지 지원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
 - * 국내법인 근무 시, 인턴사원에게 해외농업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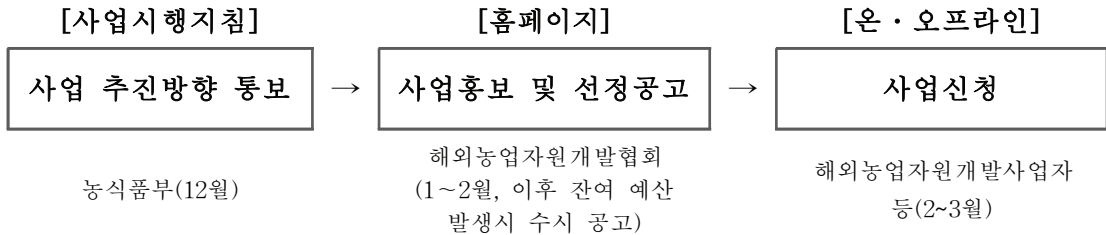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국고 50~70%, 자부담 30~50%
 - (대기업) 국고 50%, 자부담 50%, (중소·중견기업) 국고 70%, 자부담 30%
 - 총사업비 한도를 초과한 사업비는 국고보조 한도액까지만 지원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가능
 - 사업대상자는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자부담 집행분을 포함하여 보고
- (해외인턴) 인턴사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최저임금), 항공료, 파견준비비(비자발급비, 보험료, 예방접종비) 등 지원
 - * 인건비 최저임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운영기업이 지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 지원한도: (중소·중견기업) 사업자별 총사업비 143백만원(국고 보조 한도 100백만원) 이내, (대기업) 사업자별 총사업비 200백만원(국고 보조 한도 100백만원) 이내
 - * 연도별로 구분하여 예비조사,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집행 및 지원액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액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 지원기간: 최대 6개월 이내
- (해외인턴)
 - 지원한도: 사업자별 인턴 최대 2명 이내
 - 지원기간: 최소 2개월~최대 6개월 이내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년도 12월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추진계획을 시달
- 사업시행기관인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는 시달된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전년도 12월~금년도 1월중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의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여 사업시행기관에 통보하고,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농식품 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보조)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을 공고
-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홍보 및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실시(홈페이지 게재 등)
 - 사업대상자 선정공고는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사업자 선정 이후 잔여 예산 발생시 사업시행기관은 지체없이 재공고를 실시(수시)
 - * 홈페이지: 해외농업자원개발서비스(www.oads.or.kr)
- 사업신청자는 사업자 선정 공고에 따라 신청기간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시행기관인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사업 신청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구비서류>

- ① 민간환경조사·컨설팅 사업 신청서, ② 민간환경조사·컨설팅 사업계획서,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④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최근 3년), ⑤ 납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⑥ 중견, 중소기업 확인서 1부(미제출시 대기업으로 분류), ⑦ 전문가 이력서 등 경력증빙서류, ⑧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⑨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⑩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자금 지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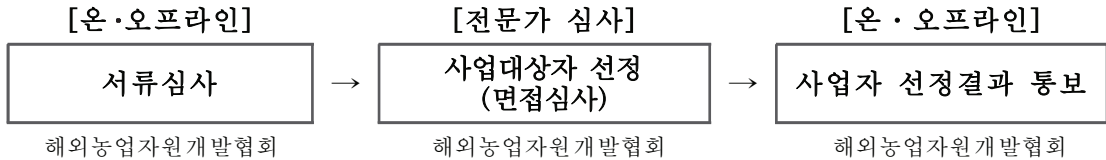
<해외인턴사업 구비서류>

- ① 해외인턴 참여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② 사업자 등록증,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④ 인턴사원 선발의 공정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모집기간, 절차 및 수단, 결과가 명시), ⑤ 인턴사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⑥ 인턴사원 자격증 및 학력 관련 증빙서류, ⑦ 인턴사원 서약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⑧ 보호자 동의서(학생일 경우), ⑨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협회에서 인턴사원 모집 요청 시 ④~⑧ 서류 제출 생략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민간환경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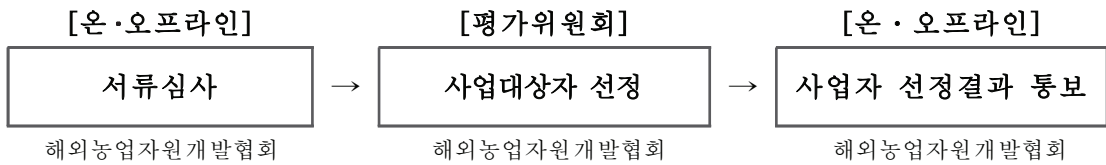
- (서류심사) 사업시행기관은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등을 바탕으로 서류심사 실시
 - 서류심사를 위해 사업시행기관은 필요시 사업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관련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면접심사)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해외농업자원개발 경험자, 학계 등 외부 전문가 3인 내외를 포함하여 면접심사를 진행
 - 면접심사시 사업신청자는 민간환경조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 (선정결과 통보) 사업시행기관은 서류 및 면접심사를 종합하여 사업대상자와 지원액을 선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협약 체결)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와 민간환경조사사업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

<민간환경조사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채점기준>

- ◇ 1차 서류심사 : 재무건정성, 사업계획(조사적정성, 조사충실성 등) 심사
- ◇ 2차 면접심사 :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

나.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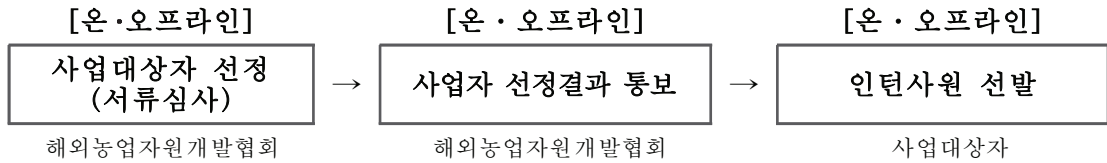


- (서류심사) 사업시행기관은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등을 바탕으로 서류심사 실시
 - 서류심사를 위해 사업시행기관은 필요시 사업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관련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및 지원액을 결정
- (선정결과 통보)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협약 체결)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통지받은 사업대상자는 세부 컨설팅시행 계획서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고 컨설팅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

<컨설팅 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채점기준>

- ◇ 기업평가, 투자기반 및 환경, 컨설팅 계획, 활용계획

다. 해외인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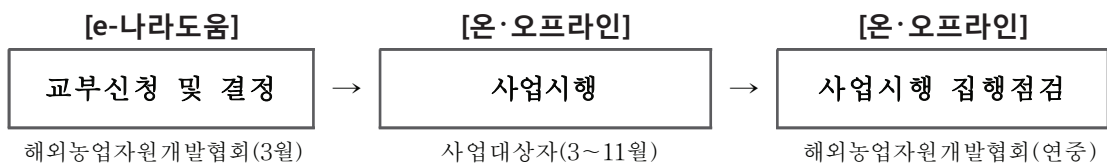


-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시행기관은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사업대상자(지원대상 기업)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지
 - 서류심사를 위해 사업시행기관은 필요시 사업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관련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인턴사원 선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공개모집 등 공정한 방법을 통해 인턴사원을 선발하고 선발결과를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 필요 시 협회는 공개모집 등 선발절차 지원
 - * 사업대상자 선정과 인턴사원 선발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음
- (협약 체결)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인턴사업 선발결과를 검토하고 사업대상자와 해외인턴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

<해외인턴 참여기업 선정 평가항목 및 채점기준>

◇ 기업평가 : 채용연계 가능성, 운영계획(운영계획의 적합성, 구체성 등)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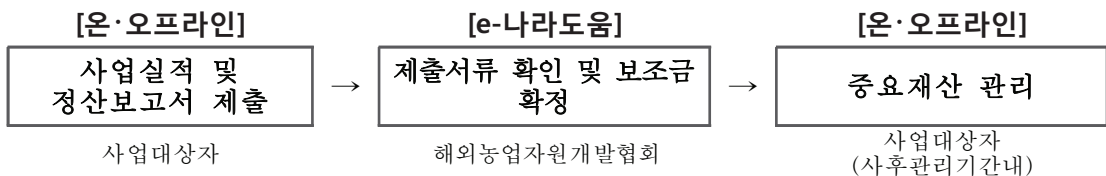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보조금 교부) 사업시행기관은 분기별 자금집행계획 등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및 개산급 지급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에게 보조금 교부 및 개산급 지급
- (보조금 선금 지급) 지원사업에 대한 약정 및 협약 등을 체결한 사업대상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보조금 선금 지급을 신청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지원액의 60%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하고 사업 종료시 사업비 정산 후 잔금 지급
 - * 선금 신청시, 선금금 지급 보증 보험 제출 필수
 - (해외인턴) 항공료 및 비자발급비 등 파견경비의 100%, 인건비의 50% 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하고 사업종료시 사업비 정산 후 잔금 지급
- (사업시행)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11.30까지 집행 및 정산을 완료하되 부득이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는 사업시행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연장
- (협약의 변경) 협약 체결 이후 협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는 사업시행기관에 변경된 사업계획을 제출·승인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의 협약 변경요청시 변경사항이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지원내용 및 용도 등에 부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사업자에게 통지
- (집행점검) 사업시행기관은 분기별로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필요시,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집행 확인 및 현장지원을 위하여 민간환경조사 및 컨설팅 등 사업에 대해 현지조사에 동행할 수 있음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사업실적보고)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시행기관에 제출
 - (민간환경조사) 사업시행기관은 민간환경조사사업 결과발표회를 개최, 사업 대상자의 조사보고서를 검수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정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지급할 보조금을 확정하고 잔금을 지급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 사업시행기관은 정산전문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정산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정산시 민간환경조사, 컨설팅사업 등 자부담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비율만큼 자부담이 집행되었는지도 함께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말까지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게 승인 요청
- (사후관리)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 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사업대상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아래와 같이 참여제한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제 재 사 유	참여 제한	환수금	비고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기업에 선정된 경우	3년	지원금 전액	
지원금 유용, 사업비 사용실적 허위 작성	2년	유용, 허위 사용액	
지원기업에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을 중지하거나 정상 추진되지 못한 경우	2년	-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금 집행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	-	
그밖에 계약상의 의무 위반, 보고 기한 미준수 등	1년	-	

- (해외인턴)

- 사업대상자의 위법·불법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가능
- 인턴사원의 계약 위반 또는, 위법적인 행위로 근무 지속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한 경우 필요 시, 인턴철수 및 기 지급된 지원금 환수 가능

Ⅲ / 평가 및 환류

1. 평가

- 사업대상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
- (민간환경조사) 사업시행기관은 민간환경조사사업 결과발표회를 개최, 사업대상자의 조사보고서를 평가 및 검수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조사보고서 평가결과 당초 사업계획에 비해 부진한 경우, 이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감액하여 최종 지급할 수 있음
 - * 사업시행기관은 검수를 위해 필요시 해외농업자원개발 경험자, 학계 등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음
 -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결과발표회에 해외농업개발에 관심있는 기업들을 참석시켜 공개 발표회로 개최할 수 있음, 다만 공개 발표회시 사업대상자와 협의하여 경영상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은 발표내용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외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 및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19.상반기)
-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1월)
 - 2019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2020년도 예산 확정 후 사업시행지침 시달
- 기타사항
 -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는 사업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관리를 위하여 동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세부사업명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용자)		세목	용자금				
내역사업명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용자)		예산 (백만원)	11,970				
사업목적	○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산업의 저변확대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해외 식량 확보 기반 마련							
사업 주요내용	○ 해외농업개발사업자가 해외농업진출에 필요한 자금 용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용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자금용자 대상)							
지원자격 및 요건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용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지원한도	○ 용자 지원대상 사업비의 70%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용자	70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12,600	12,600	12,600	11,970			
	용 자	12,600	12,600	12,600	11,97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국제협력총괄과 해외진출지원부		주정제 최호진		044-201-2040 061-338-6551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용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해외농업개발서비스 홈페이지(http://www.oads.or.kr)							

1. 사업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용자 결정 후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의 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
- 우선지원 요건
 -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수급 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로 해외농업자원개발하는 사업자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민간환경조사사업, ODA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중소기업인 사업자

3. 자금용자 대상 및 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 해외농업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용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 * 해외농업자원 : 밀, 콩, 옥수수, 면화, 원유(原乳),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서 정하는 농산물 중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농작물재배업과 제2호의 축산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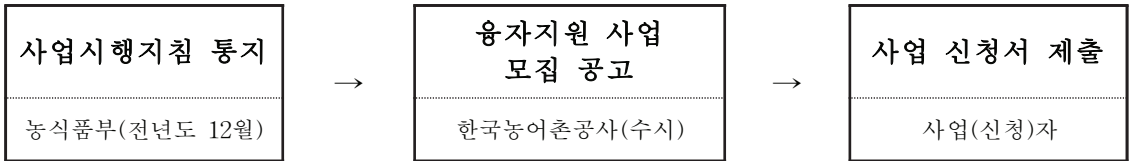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 용자지원(금리 연 2.0%,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기준) 총 사업 소요액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당해 연도 총 사업 소요액의 70%에서 유사사업 지원액을 뺀 나머지 소요액 이내를 지원
- 사업 의무량
 - (토지, 시설 등의 설치, 매입, 임차) 시설 완료 및 취득
 - (영농비 및 운영자금) 사업실적이 지원액의 143% 이상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규 용자지원사업은 40억원, 기 지원 용자지원사업은 30억원 이내
 - 단, 하반기에는 용자금 집행상황, 지원사업자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한도액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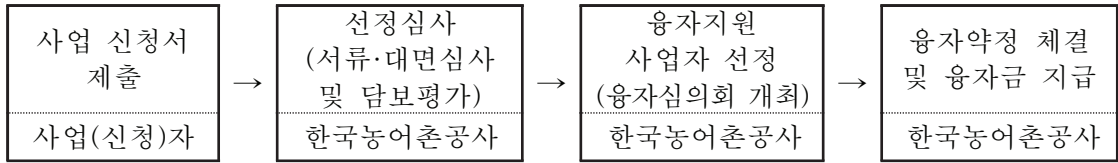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년도 12월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추진계획을 시달
- 사업시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시달된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전년도 12월~금년도 1월중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의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여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홍보 및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실시(홈페이지 게재 등)
 - 일정간격(1~2개월)을 두고 연속적인 사업공고를 통해 기업들이 언제든지 융자금을 신청토록 조치(수시)
 - * 매년 1월 해외농업개발신고기업으로부터 '진행상황 보고' 자료수집시 용자사업 안내 병행
 - ** 홈페이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해외농업자원개발서비스(www.oads.or.kr) 등
- 사업신청자는 사업자 선정 공고에 따라 신청기간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시행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 신청

<구비서류>

- ①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용자(대출)신청서, ②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
- ③ 국내 및 해외 현지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 ④ 사업에 관한 계약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 ⑤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 ⑥ 담보 관련 서류 (지급보증확약서 또는 부동산 담보인 경우 공증된 담보제공 확약서와 탁상감정 결과 등), ⑦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실적증빙, ⑧ 중소기업확인서, ⑨ 해외농업개발 관련 정책사업 참여실적 증빙

2. 사업자 선정단계



* 선정심사단계에서 신규진출기업 또는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지실사 실시

- (서류 심사) 사업시행기관은 용자 지원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바탕으로 서류심사를 실시
 - 사업시행기관은 서류심사 및 사전평가를 위해 필요시 사업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용자신청서 등에 대한 보완·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사업신청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용자신청서 등에 대한 보완·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제출
- * 사업 신청자가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용자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등 검토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회계·법률 등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 의뢰할 수 있음
- (담보평가) 사업시행기관은 서류심사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담보에 대한 평가를 함께 실시
- (대면심사) 사업시행기관은 서류심사 및 담보평가를 통과한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대면심사 실시
 - * 필요시 해외농업개발 경험자, 학계 등 외부 전문가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음
- (사업자 선정안 마련) 사업시행기관은 서류심사·담보평가 및 대면심사를 종합, 지원 사업자 및 지원액 등을 반영한 “용자 지원 사업자 선정(안)” 마련
- (용자심의회) 사업시행기관은 용자심의회를 개최하여 용자 지원 사업자 선정(안) 심의·의결
- (선정결과 통보) 사업시행기관은 선정결과를 용자지원 사업자에게 통지
 - 용자 지원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진출국가의 사정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용자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향후 2년간 용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지원사업자 평가항목 및 채점기준>

◇ 사업준비

- 사업준비 충실성(현지법인설립, 토지확보 등), 자료의 신뢰성, 담보 및 자부담 확보

◇ 사업계획

- 사업내용의 적정성(사업타당성, 생산·유통계획, 위험대비책 및 경제성 등 종합 평가), 집행계획의 타당성(융자금 적기집행 가능성 등)

◇ 정책참여

- 곡물중심 개발(밀, 콩, 옥수수 등 국내수입 많은 식량, 사료작물 우대), 국내반입 실적, 중소기업 여부, 정책사업 참여실적(민간환경조사, 컨설팅, 해외인턴, ODA)

3.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 (자금배정) 사업시행기관은 농지관리기금 수탁관리자와 농식품산업 해외 진출지원사업(융자) 자금 대여약정서를 체결(1~2월)
- (대출신청) 융자지원 사업자 선정을 통보받은 사업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융자금 대출 신청
- (융자약정 체결) 사업시행기관은 융자지원 사업자로부터 담보를 취득하고 융자약정을 체결한 후 융자금 지급
 - 사업시행기관은 융자지원 사업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한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자금집행) 융자지원 사업자는 융자 약정에 따라 지급된 융자금을 지급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집행
 - 단, 현지여건이나 사업추진일정의 변화로 집행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융자지원 사업자는 융자금 집행과정에서 집행계획에 중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즉시 관련 자료 제출
- 사업시행기관은 분기별로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비 정산) 사업시행기관은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말까지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 ※ 담보, 용자 약정 및 관리 등 용자에 관한 세부사항은 용자업무 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별도로 정하여 추진

4. 이행점검단계

- 용자지원 사업자는 관련 법령, 사업시행지침 및 용자 약정 등에 따라 용자금 집행 완료 후 집행내역 및 관련 증빙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
- (집행점검) 사업시행기관은 용자지원 사업자가 제출한 집행내역 및 관련 증빙을 검토하여 용자금과 자부담 집행 비율 및 용자 약정에 따른 집행 여부 등을 확인
 - 집행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시행기관은 필요시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음
 - * 현지방문시 효율적인 집행점검을 위해 관련 전문가를 동행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단계, 사업완료 이후의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 개선 사항 발굴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사항은 제도개선 추진

5. 사후관리단계

- 용자지원 사업자는 용자금 집행 완료 후 용자금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말을 기준으로 사업운영상황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
 - 사업 운영 상황 파악에 필요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 확인 시 협조
- 사업시행기관은 관련 규정 및 용자약정 등에 의거 대출한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수시 점검
 - 사후관리를 위한 현장점검은 5년마다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용자지원 사업자의 사업운영상황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강
- 사업시행기관은 용자금 목적외 사용 확인 시 시정요구 및 용자금 회수 등 조치
 -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1. 사업평가

- 사업시행기관은 당해 연도 사업 종료 후 사업평가 실시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에 대해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별도로 설정하여 추진할 수 있음

2. 환류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사항 등을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3.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19년 1월)
 - * 반기별 사업 진행상황 보고와 연계하여 실시
-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9년 사업시행지침, 용자기준 등을 준용하되, 2020년도 예산 확정 후 사업시행지침 시달 예정(12월)
- 기타사항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관리를 위하여 동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농업분야

2-5 기술개발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세부사업명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세목	연구개발출연금			
내역사업명	-			예산 (백만원)	179,021			
사업목적	과학기술기반의 농업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							
사업 주요내용	농생명산업기술개발, 농축산물안전유통소비기술개발, 첨단생산기술개발,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기술사업화지원,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수출전략기술개발,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Golden Seed 프로젝트, 농식품수출비즈니스전략모델구축, 미래형혁신식품기술개발, 1세대스마트팜산업화기술개발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지원자격 및 요건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2항에 명시한 기관 : 농산업체, 대학, 출연연, 기업							
지원한도	각 사업별 예산 범위 내(사업 공고 및 RFP 명시)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0	융자	0	자부담	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178,118	169,586	176,882	179,021			
	국 고	178,118	169,586	176,882	179,021			
	지방비	-	-	-	-			
	융 자	-	-	-	-			
자부담	-	-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안형근 배태현		044-201-2457 044-201-2460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종자생명산업과 식품산업정책과 농생명·ARC사업실 식품사업실 첨단·가축질병사업팀 수출·사업화팀 GSP사업운영실		양미희 정찬민 김준현 장제연 채명희 김민석 김동현		044-201-2481 044-201-2121 031-420-6762 031-420-6771 031-420-6782 031-420-6791 031-420-6883		
신청시기	정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www.fris.go.kr)							

1. 사업대상자

- 농업경영체, 농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민(단체)등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서 기술개발 능력(연구인력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업 또는 창업자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추진)
 -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6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한 농업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방 농업관련 연구기관 포함)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기술개발촉진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으로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3. 지원대상

- 농생명산업기술개발 : 생명자원 부가가치 제고기술, 생명자원 생산·관리기술 등
- 첨단생산기술개발 : 첨단기자재 생산, ICT 융복합시스템 등
- 수출전략기술개발 : 수출전략형 상품개발기술, 수출지원 유통·검역기술 등
- 기술사업화지원 : 현장 연계 고부가가치 제품 사업화 지원, 민간연구지원조직 육성 등
- 농림축산식품 연구센터 지원 : 첨단 융합형 R&D 장기 지원으로 농업분야 산업을 견인할 핵심기술 확보 및 우수 연구집단 육성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 기능성·전통식품, 식품품질관리, 식품핵심소재, 기자재·신가공 기술 개발 등

- Golden seed 프로젝트 : 20개 품목에 대한 강점기술 기반의 수출 및 수입 대체 전략 종자개발, 해외 종자수출을 위한 전주기적 R&D 지원
-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 : 진단·예방기술 개발, 검역·방역기술 개발, 확산방지 및 사후관리, 동물약품 개발, 사회문제해결형 감염병 대응기술 개발 등
- 포스트게놈 다부처유전체 : 조기성과 창출형 미생물 유전체 핵심전략 연구, 목적지향적 유전체 연구역량 강화사업, 부처공동 Host-microbe 사업
- 농축산물안전유통소비기술개발 : 농축산물 잔류 독성성분 탐지기술, 농축산물 유통 신뢰성 강화 기술, 역매칭 시범사업
-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 에너지절감 자재, 환경부하 저감 자재, 노동력 절감 자재 개발
- 농식품연구성과후속지원 : 국가연구개발성과 후속지원, 벤처창업 바우처 지원 등
- (신규) 농식품 수출 비즈니스 전략 모델 : 농식품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맞춤형 패키지 수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을 통해 수출 시장·기술 선점을 위한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
- (신규) 미래형혁신식품기술개발 : 향후 성장이 유망한 선도 식품분의 원천기술 개발 지원 및 천연물 기반의 식품첨가물 개발 지원
- (신규) 1세대스마트플랜트·애니멀팜 고도화 : 스마트팜 기술의 산업화 및 현장적용에 필요한 기술 개발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연구개발비
 -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수행 직·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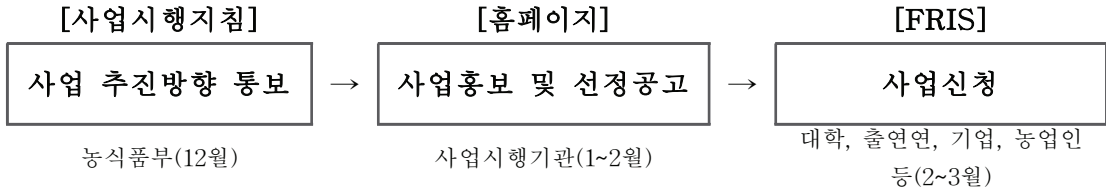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기술성, 산업화 가능성, 연구팀의 연구수행능력 등 공개평가
- 참여기업 부담금(Matching Fund)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이상 /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40%이상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 / 중소기업규모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총 연구개발비의 20%이상 부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연구과제 당 10억원 이내(연구과제 특성과 분야에 따라 초과 가능)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일간지 및 농업관련 전문지, 농림축산식품부·대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공고 실시(1~2월)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신청서 접수방법 상세히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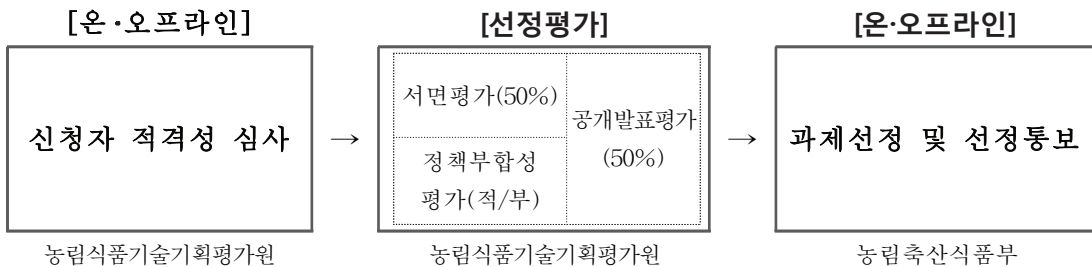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인터넷(www.fris.go.kr) 접수

- 신청양식(연구개발계획서)은 농림축산식품부(mafra.go.kr), 농림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fris.go.kr),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ipet.re.kr) 홈페이지에 게재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신청자는 대식품 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 선정평가지 서면 및 공개발표평가 비중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 적격성 심사(사전검토)

- 지정공모과제 제안요구서(RFP) 충족 여부,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유무, 위반사항에 따른 제재여부, 신청서류 구비여부, 유사·중복성 검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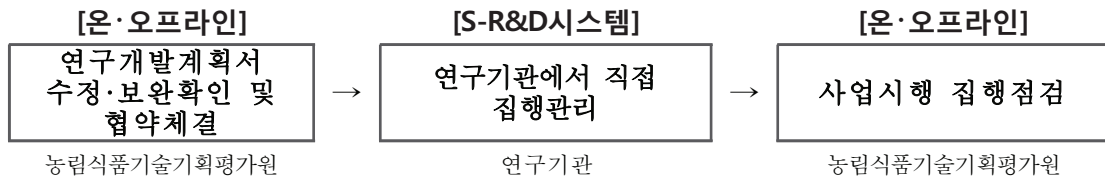
- 공고 시 지원자격 및 과제구성요건 부합 여부 검토
 - 공고에서 별도로 제시한 지원자격 준수
 - 지정공모과제별 제안요구서(RFP)의 과제(분야)구성요건, 연구팀 구성요건 부합
-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유무 검토
 - 연구책임자의 자격 준수 : 공고에서 제시한 자격기준 충족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 제한 준수
 -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최대 5개 과제 까지 참여 가능하며 이중 연구책임자로는 3개 과제까지 참여 가능
 - 위반사항에 따른 제재 여부 검토
 - *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지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기준 준수
 - *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는 일시적으로 참여율 130%까지 계상 가능)
- 신청서류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확인서 등 제출서류 일체의 적정성 및 미비사항 검토
- 유사·중복성 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내용과의 중복여부는 NTIS를 활용하여 검색한 결과를 선정평가 시 연구과제평가단에 제공하여 검토 후 평가에 반영토록 조치
- 선행기술조사
 -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의 요약서 내용을 토대로 국내·외 공개된 특허 및 논문의 조사·분석 실시(연구과제평가단에 분석결과 제공)
- 선정평가
 - 관련 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과제평가단에서 서면평가, 정책부합성 평가, 공개발표평가 실시(각 평가단계별 60점 미만 과제는 탈락)
 - * 연구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 중 위원별 최고 및 최저 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로 평균점수 산출(정책부합성평가는 점수없이 탈락여부만 결정)

<선정기준>

- 연구개발수행의 필요성 및 시의성
- 연구개발목표의 명확성,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연구책임자 연구팀의 우수성, 연구개발비 규모, 연구기관 및 연구수행방법의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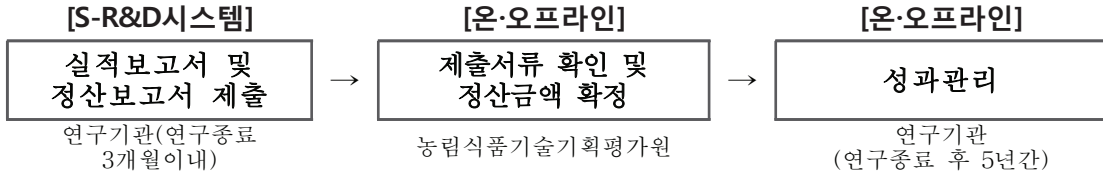
- 기술의 산업화·실용화 가능성
-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기대효과 등이 우수한 과제
 - 서면평가 점수 50%와 공개발표평가 점수 50%, 가·감점을 반영하여 종합 점수 산출(서면평가 및 공개발표 평가 점수 비중은 변동될 수 있음)
 - *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가·감점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 참조
- 공고된 분야 또는 과제별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과제선정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과제 선정결과 및 연구계획서 수정·보완요구사항 통보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 주관연구기관의 장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과제 선정과정에서 제기된 요구사항을 수정·보완한 연구개발계획서와 협약서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
 - 모든 연구수행기관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지정하는 은행에서 연구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기업부담금을 입금한 후 증빙자료 제출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제출한 협약서(수정·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 포함)를 검토한 후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모든 연구수행기관은 연구비 전용계좌를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S-R&D)에 등록하고 연구비 전용 신용카드를 발부 받아 집행 가능
 - 연구비 집행은 S-R&D시스템에 집행내역을 등록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연구종료 후 5년간 보존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수시로 연구비 집행내역을 모니터링하며 연구기관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비 집행 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2조 준수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비 관리자를 지정하고 연 1회 이상 연구비 관리 교육 이수(미이수시 연구책임자 감점 조치)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주관연구기관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적정성을 검증받은 후 사용실적보고서와 검증 결과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 제출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주관연구기관이 제출한 사용실적보고서를 확인하여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집행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된 금액 등 정산 금액을 확정하여 통보
 - 연구수행기관은 정산금액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 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사유로 참여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 이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
 -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은 용도 외로 사용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함(「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위반사항별 제재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부터 제27조의5까지 규정에 따름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주관연구기관은 연차종료 2개월 전 연차실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종료 4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최종평가 실시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 종료년도의 다음해부터 향후 5년까지 매년 1월과 7월에 ‘연구성과활용결과보고서’ 제출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연구종료 후 3년 이내 과제를 대상으로 추적평가 실시
 -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과제 선정 시 가(감)점 부여

2. 평가

- 중간평가
 - 평가결과 연구결과가 미흡(60점 미만)하거나 다른 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인 과제는 지원 중단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정밀정산, 연구과제 선정 시 감점부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조치
- 최종평가
 -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정밀정산, 연구과제 선정 시 감점부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등 조치
 - 연구결과가 우수한 과제(90점 이상)는 연구과제 선정 시 가점부여

식량 분야

3-1. 경쟁력 제고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세부사업명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세목	자치단체자본 보조 및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 RPC 가공시설현대화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DSC) · RPC 경영평가(RPC 쌀산업 기여도평가)				예산 (백만원)	14,340		
사업목적	○ 벼 가공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여 생산유통거점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 향상 ○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지원으로 쌀의 고품질 유지 및 수확기 농가벼 판로 확보							
사업 주요내용	○ 감리, 기계 및 장비, 건축 및 토목 등 가공(도정)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지원 ○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감리 등 산물 벼 건조저장 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양곡관리법 제22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기준사업비 30억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사업자의 여건 등에 따라 기준사업비 증감 가능 ○ 통합 RPC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일반 RPC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저온저장고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통합RPC 9억원, 일반RPC 6억원, 저온저장고 3억원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사업자의 여건 등에 따라 기준사업비 증감 가능							
지원한도	사업비 심의에 따라 차등지원							
재원구성 (%)	국고	30·4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40·5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37,800	37,800	36,390	41,770			
	국 고	14,490	14,490	14,370	14,340			
	지방비	6,780	6,780	6,600	8,645			
	자부담	16,530	16,530	15,420	18,78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정순일 사무관 위철승 주무관		044-201-1838 044-201-1839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	미곡부		장호광 차장 김봉선 사원		061-931-0758 061-931-0791			
신청시기	전년도 3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1. 사업대상자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 비 생산자단체는 '22년부터 용자지원 예정

2. 지원 자격 및 요건

- ※ '19년부터는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수립·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자격 부여(붙임 5 참고)

가.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 공통기준

- 최근 3년간 평균 ①원료벼 매입량이 10천톤 이상이고, ②쌀 판매량이 7,500톤 이상인 ③정부지원 RPC 운영 사업자(①, ②, ③ 동시 충족 조건)

- 다만, 농협RPC 중 1개 시·군에 농협간 합병 및 통합 또는 연합하여 1개 농협RPC만 있는 경우 향후 5년 이내에 ①, ②를 충족하는 조건부 지원 자격 부여(5년 이내 미 충족시 정부지원 RPC 영구제외, 벼 매입자금 지원 회수 및 중단 등 조치)

* 경과규정 : 최근 3년간 평균 쌀 판매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당해년도 쌀 판매량 계획이 7,500톤 이상인 경우이면 신청 가능(판매량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 선정은 취소됨, '19년까지만 한시 적용)

* 2007년부터 1개 시·군에 최대 2개소(농협 1, 민간 1)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의 식량산업종합계획과 벼 생산량 등을 평가하여 2~3개소 추가 가능

*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이란 일정요건을 갖추고 당해연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이 된 업체를 말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 개별기준

- 농협RPC : 통합RPC

* 단서 및 경과규정

- ① 통합 추진을 전제로 조건부 지원 자격 부여. 단, 사업비는 통합법인 출범 후 지원
- ② 1개 시·군 내에 있는 모든 농협이 합병하여 1개 농협RPC만 있는 경우 통합 RPC에 준해 지원 자격 부여
- ③ '23년 신청자부터는 1 시·군, 1 통합RPC로 통합이 완료된 경우에만 지원 자격 부여

<농협RPC 통합 추진 방안>

- ▶ 목표 : (현행) 141개소 → (목표) 120개소
- ▶ 대상 : 벼 생산량 1만톤 이상 118개 지역(36개소는 제외)
- ▶ 현황 : (완료) 39개소, (통합 중) 10, (연합) 10, (미 추진) 59
 - * 벼 생산량 1만톤 미만(36개소)는 인근 시·군 통합RPC에 참여(광역통합)
- ▶ 방안 : 3년간 연합RPC 운영(69개소) 후 통합법인 설립 추진
- ※ 우대자금 3년간 지원, 시설 개보수는 취급물량 5년 이내 조건부 충족

- 민간RPC : 가공물량을 최근 5년 평균 20%(또는 시간당 2.5톤) 이상 확대 되는 시설 투자 또는 통합 추진 조건부 지원 자격 부여

나. 벼 건조·저장시설(DSC) 지원

○ 전년도 벼 매입량이 3,000톤 이상인 사업자

* 단서 및 경과규정

- ① '19년도 신청자에 한해 정부지원 RPC가 아닌 생산자단체는 자체 가공시설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 RPC(최대 2개소)에 향후 5년간 매입량의 80% 이상을 출하약정 체결하는 경우 지원 자격 부여
- ② '20년 신청자부터는 정부지원 RPC 또는 정부지원 RPC(최대 2개소)에 향후 5년간 매입량의 80% 이상을 출하약정 체결하는 경우에만 지원 자격 부여
- ③ '23년 신청자부터는 통합RPC에만 지원 자격 부여(민간RPC는 제외)
- ④ '25년 신청자부터는 1 시·군, 1 통합RPC로 통합이 완료된 경우에만 지원 자격 부여(민간RPC는 제외)

다. 별도요건(비 농협조직)

- ※ 신청자가 농협조직이 아닌 경우(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인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출자액(자본금)이 6억원 이상(DSC 신청 사업자는 3억원 이상)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0년 이상(DSC 신청 사업자는 5년 이상)
 - * 경과규정 : 농업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는 기존 비 농업법인(개인사업자 및 상법상 주식회사 등)의 운영실적 승계 인정
-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 * 단, 자기자본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면, 출자액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 기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에 따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 법인은 지원 제외
- ※ 출자액 및 조합원(농업인 주주), 운영실적 등 기준일자는 본 사업 신청일 기준임

**** 비 농협조직은 가급적 생산자단체로 전환하고 아래 기준을 충족할 것을 권장함(권고사항, '22년부터 적용 예정)**

※ 생산자단체 전환 민간RPC는 비 매입자금 인센티브(무이자) 제공

-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20명 이상(DSC 신청 사업자는 10명 이상)
- 농업회사법인·협동조합의 경우 생산자 지분이 50%를 초과(생산자단체는 생산자의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라. 지원제한 기준

- 당해연도 RPC 쌀산업 기여도평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평가결과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 단, DSC 신청자 중 ② 정부지원 DSC, ③ 비RPC 농협, ④ 정부지원 RPC·DSC가 없는 시·군의 도정업체 등은 지원 가능
- 최종 사업종료 다음년도부터 2년간 지원 제한
 - * '19년 사업자('18년 신청자)부터 적용('19년 사업자는 '20~'21년에는 지원 제한, '22년부터 지원 가능[사업신청을 전년도에 하므로 '21년부터 사업신청 가능])
- 시설지원사업의 총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향후 10년간)
 - * '18년 이전에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1회로 적용('19년 사업자('18년 신청자)는 향후 10년간 1~2회 추가 지원 가능)
 - * 동일한 연도에 여러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1회로 봄
- 사업 신청 후 신청을 철회한 경우와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 '18년 신청자(포기는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에 신청 철회 및 포기할 경우 '19년~'21년(이월 포기는 '23년)까지 지원 제한
- 사업비를 이월한 지역(시·군) 또는 사업자는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귀책사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적용)
 - *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 사업비가 이월되면 '21~'25년까지 신청 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면 '19년~'21년까지 신청 제한)
 - 지방비 확보가 지연(추경 편성 및 다음연도 편성)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 '19년 지방비 편성부터 적용('18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경우는 미 적용하며, 만약 '19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지역은 '20~'22년까지 지원 제한[사업신청은 '19~'21년까지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 '18년 사업신청 서류부터 적용('18년 신청서류가 허위일 경우 '19년~'23년까지 사업신청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정부지원 DSC를 지원받기 위하여 정부지원 RPC와 체결한 출하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약정 체결 양 당사자)

3. 지원대상

가.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 기존 정부지원 RPC 증·개축으로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시설
 - 지원내용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설치규모 : RPC 여건에 따라 정곡 기준으로 시간당 5~10톤 수준 설치(단, 특수미 도정라인 및 위성가공시설 증설의 경우 시간당 5톤 이하 수준 설치 가능)
 - * 처리용량과 기준사업비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단계에서 최종 결정
 - *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되, 별도 부지로 이전·신축할 경우는 물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고 기존 시설 활용계획(가공시설 폐쇄, DSC전환 등)을 수립할 것
- 위성 가공시설은 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원 RPC가 없었던 시·군

- ② 최근 5년간 도정시설 가동률이 80% 이상인 정부지원 RPC 사업자가 건립하는 가공시설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저장용량 확대를 위한 신축 및 기존 시설 증축(단순 개보수는 제외)으로 총 사업비가 7억원 이상인 시설
 - 지원내용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감리 등
 - 설치규모 : 조곡 기준으로 저장능력 1,000톤 기준으로 설치(단, 저온저장 시설은 저온저장능력 400톤 기준으로 설치 가능)
 - * 통합RPC는 잉여도정시설을 DSC로 전환하는 용도(도정시설 철거 후 저장시설로 개조)로 자금사용 가능
 - * 입·출고시설, 건조시설, 자동제어시설 및 품질검사장비 등 기타시설은 신규 저장시설과 연계되어 설치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
 - * 노후화된 벼 건조·저장시설의 내용연수 초과 등으로 개보수의 경제성이 없고 계속 사용시 시설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기존 벼 건조·저장시설 폐기 후 대체 시설 설치 가능(대체 시설 설치시 일부 상태가 양호한 시설은 폐기하지 않고 활용 원칙)
 - * 저온저장시설의 경우 기존 RPC 및 DSC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내에만 설치 가능
 - * ‘증설’은 RPC 등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내(원료의 일괄처리가 가능토록 버킷 엘리베이터, 체인·벨트컨베이어 등으로 연결 작업권내)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위성’은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 * 처리용량과 기준사업비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단계에서 최종 결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 감리비 등 : 감리비 및 사업추진 컨설팅 등
 - * 사업추진 컨설팅은 30백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이후에 실시하는 컨설팅에 한함

- * 간이설계(최소 3종 이상)는 사업신청년도 2월말, 실시설계는 9월말까지 총 사업비 외 순수 자부담으로 추진
- 토목공사 : 부지내 기초공사(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설비공사 등
 -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현미가공장, 백미가공장, 포장장, 출하장, 제어실 및 품질검사실, 사무실, 회의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현미부 : 원료정선기, 현미기, 현미분리기, 현미석발기, 현미색채선별기, 현미부 집진기, 원료탱크, 현미탱크 등
 - 백미부 : 정미기, 연미기, 백미석발기, 색채선별기, 백미부 집진기, 백미탱크, 품질검사장비, 특수미 가공시설(무세미 등) 등
 - 포장부 및 제어부 : 체선별기, (비철)금속선별기, 포장기(PET 등 소포장기 포함), 로봇적재시스템, MMI에 의한 PC제어시스템, 재고관리시스템, 실시간 자동품질관리시스템 등
 - * 가공기계 : 연중 균일한 품질(외관, 식미 등)의 안전한 고품질 쌀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치
 - * 품질검사장비는 계량, 성분, 백도, 외관 및 기타 품질분석이 자동처리되어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설치(벼 수매용 품질검사장비는 제외)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청소기, 건조기 등
 - * 유통 및 위생시설·장비류는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 RPC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 등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별표5)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시설) 지정을 받아야 함
-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 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감리비 등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단, 컨설팅은 15백만원 이내로 제한)
- 토목공사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
- 건축공사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하되 핵심 기계·설비 보호를 위한 면적으로 최소화
-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
- 기계·장비별 설치 기준
 - 입·출고시설 :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설치
 - 건조시설 :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
 - 저장시설 : 연간 산물형태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단열처리(우레탄 단열재 벽체 7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 효과 이상)되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치
 - 자동제어시설 : 입고·건조·저장·출고·곡온관리 등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할 수 있도록 설치(MMI에 의한 PC제어시스템, 재고관리 시스템, 실시간 자동품질관리시스템 등 설치 가능)
 - 품질검사장비 : 원료투입시설과 연계되어 벼 수매과정에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원료 품위 및 단백질측정기, 제현율측정장치, 시료 건조기, 함수율측정기 등)
 - 저온저장시설 : 단열처리(우레탄단열재 벽체 10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효과 이상)와 냉각시설(장치)이 설치되어 연중 15℃이하로

벼를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 또는 사일로 형태 등의 구조

- * 기존 건조능력 및 저장능력, 원료반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시설 위주로 지원
- * DSC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 등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 가공시설 설치지원은 제외
-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5. 지원형태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가공시설현대화 지원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국고 30% 또는 40%, 지방비 20, 자부담 50 또는 40
 - * 통합RPC 및 저온저장시설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 일반RPC 및 DSC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사업기간 : 1~3년
- 사업주관 : 지자체장(시장·군수)
- 주의사항
 -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및 자부담 부담 비율을 변경시 반드시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 지방비 부담 비율은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10~50%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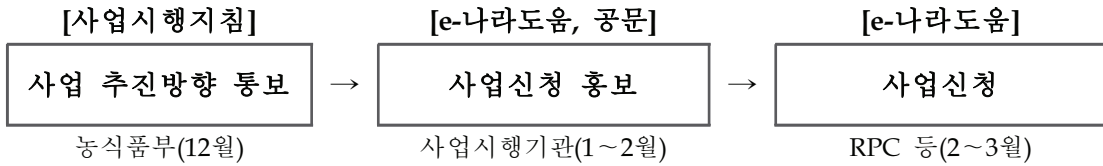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가공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 30억원을 기준사업비로 지원하되, 해당사업자의 여건(건조·저장·가공능력, 취급규모, 해당지역 생산여건 등)에 따라 기준

사업비 증액 가능

- * '17년까지 가공시설현대화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들녘경영체육성' 사업에서 교육·홍보·컨설팅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은 7억원을 기준사업비로 지원하되, 해당사업자의 여건(건조·저장능력, 취급규모, 해당지역 생산여건 등)에 따라 기준사업비 증액 가능
- 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기준사업비 지원단가는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기본모델(한국식품연구원) 기준단가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적용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별 세부지원 내용 및 사업신청 요령, 평가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다음연도 사업지침 수립 시달(매년 12.31.까지)

사업자(신청업체)

가.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 해당 RPC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매년 2.28.까지)
- 농가조직화 등 들녘단위 공동농업을 위한 세부 발전전략, 연도별 사업목표 설정, 브랜드쌀 생산기반 조성,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계획, 가공시설 현대화 공사추진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
- 사업계획 수립시 쌀 생산·유통 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의 의견 수렴·반영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매년 2.28.까지)
- * 신청서, 사업계획서 양식 및 심사기준표는 우리 부 홈페이지 또는 Agrix 참조

다.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간이설계도(최소 3종 이상) 및 조감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비교 견적서(나라장터를 이용한 최소 3개소 이상), 법인등기부등본,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RPC 및 DSC 건립 의제), 부지 관련 사진(위성

사진 또는 전경사진),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 제도 활용), 기존 건축물대장, 최근 5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비 매입량, 쌀 가공량 및 판매실적 등),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본요건 점검표(붙임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자부담금 확보계획서

○ 비 농협조직 추가 구비서류

-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부담금 확보증빙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출자액(자본금) 사용 내역서

○ 정부지원 RPC가 아닌 생산자단체 추가 구비서류

- 정부지원 RPC와의 출하약정서(향후 5년간 매입량의 80% 이상 출하 조건)

○ 지자체 제출서류

- 농정심의회(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서

라. 신청 제한 기준

○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이어야 하고, 농협의 경우도 사업부지(농지 등 비 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에 가등기하여 구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됨

* 부지에는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됨

○ 자부담이 미 확보된 경우(비 농협조직)

- 각 단계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한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제출 의무화(비 농협조직)

* 사업신청(2월28일) 총 5%, 가내시(9월5일) 추가 5%(총 10%), 보조금교부 결정 전(다음년도 2월28일) 추가 40%(총 50%)

* 비 농협조직의 자부담금은 해당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지도 및 관리(통장 인감 병행 사용 등)한 경우에만 인정

- 2. 지원자격 및 요건 중 라. 지원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대상자인 경우

지자체(시·군)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었고,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한 사업자에 한해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3.31.까지)
 - 가공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 해당지역의 식량산업 발전방향과 이에 부합한 RPC 통합, 대표 브랜드 육성 가능성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
 - * 2개 시·군 이상 연계해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주관 시·군에서 사업신청서 제출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시 농가편의성, RPC간 경합 관계, 관내 저장시설 분포현황 등 종합 검토
 -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부담 확보 가능 여부,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성(사업추진일정), 인허가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 여부 등에 대해 철저 확인
 -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출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보고서 첨부 제출

지자체(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로 제출(매년 4.30.까지)
 - 시·도지사는 해당지역 식량산업 발전방향과의 부합성, 발전가능성, 시·군비 및 자부담 확보 여부, 정상적인 공사추진여부 등을 중점 검토
 -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 aT에서 산·학·연 전문평가단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평가 → 농식품부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 후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가. 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매년 6.30.까지)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현장, 발표평가 실시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시 선정
 - * 서면평가(70점) → 현장평가(결격사유 유무) → 발표평가(80점)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평가위원 구성방법
 - 외부위원 : 산·학·연 관련 전문가 POOL에서 3~5인으로 구성
 - aT에서 평가위원 POOL 구성 후 농식품부 보고 → 농식품부에서 우선순위 확정 → 평가위원 섭외
 - 내부위원 및 간사 : 농식품부 담당관, aT 업무담당자 등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과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기준 등 충족여부, 구비서류 누락여부, 신청 제한기준 해당여부, 중복투자 여부 등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구비서류를 누락,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평가 제외

< 2단계 : 서면평가 >

○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3~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브랜드 육성계획 및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및 수확후 관리, 부지 확보 및 투자의 적절성, 판매 및 마케팅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

< 3단계 : 현장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협조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1명 내외 + 간사 1명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계약재배농가 면담, 부지 및 투자 적절성, 연내 건립 가능성 등 현장 확인 사항과 서면평가 지적사항 보완여부 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사업대상부지 실사
- 조치내용 :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4단계 : 발표평가 >

○ 현장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3~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브랜드 육성계획 및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및 수확후 관리, 부지 확보 및 투자의 적절성, 판매 및 마케팅 등의 적정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예비대상자로 선정

나. 예비대상자 선정

- aT는 다단계 평가를 완료한 후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매년 6.10.까지)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에서 예비대상자 선정 및 통보(매년 6.15.까지)

다. 사업비 심의·조정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사업비 심의 및 조정
 - 주 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심의단(심의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간이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 심의
 - 평가진행 : 간이설계와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심의위원 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 aT는 사업비 심의를 완료한 후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매년 6.25.까지)
 -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에서 세부 사업비 조정 및 통보(매년 6.30.까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 사업비 심의 완료 후 전문심사단 의견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간이설계 및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를 지자체를 통해 aT로 제출(매년 9.30.까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및 보조금(안) 통보(가내시)(매년 9.15.까지)
 -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예산범위(정부안)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후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
- 사업대상 시·도에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매년 12.15.까지)
 - * 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지자체(시·도)

- 사업대상 시·군에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매년 12.20.까지)

지자체(시·군)

- 사업자에게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매년 12.25.까지)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업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 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매년 9.30.까지)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군 보고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등 :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시에는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검토 후 조정
 - 사업부지 변경 :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aT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 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 실시설계 금액이 당초 사업예산의 150% 이내일 경우 세부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 (단,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변경이 없어야 하며, 입찰 등에 따른 초과 사업비는 추가 자부담 추진 원칙임)
 -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조정 건의 승인 요청은 총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금액의 합계가 총 사업비(예산)의 15% 이하는 자체 조정 가능, 15% 초과부터 30% 이하는 시·군 승인, 30% 초과부터 50% 이하는

시·도 승인, 50%를 초과 시는 aT의 승인 후 시행(단, 변경금액의 합계가 15% 이하라도 5억원 이상이면 시·군 승인, 15억원 이상이면 시·도, 30억원 이상이면 aT 승인 후 조정·시행)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 계획 등 포함)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10.15.까지)

○ 시·도는 관할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제출(매년 10.31.까지)

○ 세부시행계획 변경 등 계획변경 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시·군 승인

-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 조정 비율에 따라 해당 주체 승인

* 시·군(시·도)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 (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aT)로 제출

- 사업부지 변경 :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에 집행 가능(단, 기존시설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은 제외)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른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사업자

- 자부담 확보 결과 제출(비 농협조직)
 - 총 자부담의 10%를 확보한 증빙서류를 시·군에 제출(매년 9.5.까지)
 - 총 자부담의 50%를 확보한 증빙서류를 시·군에 제출(다음년도 2.28.까지)
 - 총 자부담의 추가 50%를 확보한 증빙서류를 시·군에 제출(자부담 50% 집행완료시까지)
- 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관련 인허가, 시행업체 선정 등은 아래 일정에 맞추어 추진한 후 시·군에 결과 제출
 - 실시설계 : 9월말까지
 -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 10월말까지
 - 관련 인허가 : 12월말까지
 - 시행(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 사업추진년도 1월말까지
 - 시행업체 선정 및 계약 : 2월말까지
 - 사업착공 : 3월말까지
 - 준공 : 9월말까지
 - 사업비 정산 : 11월말까지
- ※ 2년차 이상의 사업도 모든 건축물 및 시설, 장비 등은 일괄 설계·발주·계약·시공 및 납품을 추진하여야 함
- ※ 「국가재정법」 제23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가. 시행업체의 자격

- 설계 및 감리업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건설 등 관계법령상 자격업체
- 설비업체 등 : 건축·건설·전기·통신·소방·환경 등 분야별로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 참여 허용
- A/S 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의 사업참여 제한 가능
- *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설계·감리·설비업체 등은 1년간 사업참여 제한

나. 시행업체 선정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선정 및 계약 체결
- 입찰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군 홈페이지, 관련 시행업체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사업자(농협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두 공고하여야 함
- 입찰공고 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신속한 발주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 긴급입찰(7 ~ 40일 → 5일) 적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 입찰 및 개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 ※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계약 체결 원칙
 - ※ 수의계약은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에 따라 계약 가능(일반 건설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2천만원 이하. 단,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등)
- 입찰대행은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영체의 자체 입찰 허용으로 신속한 입찰 및 예산낭비 최소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5. 민간자본이전 참고)
-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및 수확기 이전 조기완공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도 시행업체(시공 및 납품 등) 선정을 위한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 계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은 가능. 단, 계약은 보조금 교부결

정 이후에 실시하여야 함

다. 설계·감리 및 기계·장비 선정 등 사업시행

- 사업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시공업체가 설계·감리를 할 수 없음)
- 사업자가 농협조직인 경우에는 세부시설 설치 전 설계과정에서 각종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농협중앙회(경제지주)와 협의하여야 함
 - 비 농협조직은 가급적 전문기관의 자문을 참고하여야 함
- 단위기계 및 장비 등은 성능, 형식, 안전성 등에 대해 검정을 거친 모델을 사용(단, 검정이 완료된 기계·장비는 사용 의무화)

라. 성능시험(사일로 형태의 건조·저장시설은 필요시 실시)

- 가공시설현대화 및 저온저장시설공사 완료 후에는 사업자 주관으로 성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 자체 성능시험 시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협회 관계자의 입회와 결과 보고서 제출(농협중앙회·협회 → 지자체)
 - 시설설치(공사완료) →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잔금) 지급
 - * 성능시험 대행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지자체(시·군)

- 자부담 확보 결과 제출(비 농협조직)
 - 총 자부담의 10%를 확보한 증빙서류를 시·도에 제출(매년 9.7.까지)
- 지방비 확보 결과 제출
 -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시·도에 제출(매년 10.31.까지)
 -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3일 이내에 시·도에 제출
- 준공검사 : 토목·건축부분 준공검사는 시·군 토목·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지자체(시·도)

- 자부담 확보 결과 제출(비 농협조직)
 - 총 자부담의 10%를 확보한 증빙서류를 농식품부에 제출(매년 9.10.까지)
- 지방비 확보 결과 제출
 - 광역 및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농식품부에 제출(매년 11.10.까지)
 - 광역 및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3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제출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다음년도 1.15.까지)
 - ※ 관련 인·허가 미완료 및 자부담 미확보 사업자와 지방비를 확보하지 않은 지자체는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시·도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시 보조금 배정(수시)

지자체(시·도)

-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다음년도 1.10.까지)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다음년도 1.20.까지)
-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시 보조금 배정(수시)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사업자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지자체(시·군)

- 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안내(매년 12.25.까지)

- 사·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다음년도 1.5.까지)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다음년도 1.25.까지)
 - * 단, 비 농협조직의 경우에는 시행업체 선정 이후에 통보 가능(다음년도 2.28.까지)
- 사업자가 자부담 50%를 우선 집행한 것을 확인한 후 기성고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 후 배정(수시)
- 사업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 적극행정을 통한 집행을 제고 및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등을 위하여 선금지급 활성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선금 지급 활성화기준 ▶

- 제도개요
 -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 조치사항
 - 선금지급 확대 :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다만, 계약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밀어내기식의 선금집행은 지양

- 선금지급 기간 단축 : 14일 이내 → 3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39호, '18.7.9)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2. 선금 지급대상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나,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가능함

⇒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에 조기집행 목적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해당됨(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330(2016.3.23.)

○ 보조금 집행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6장 집행관리 등에 따라 시행, 집행

- 보조금 사용방식은 e나라도움을 활용하며, 전용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정함

* 세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확인·집행

○ 연말까지 미 집행한 국고 보조금 예산은 이월 집행 금지

* 다만, 불가피하게 이월 집행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실시

○ 시장·군수 및 사업대상자는 사업의 수행·정산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 의무를 지님

사업자

○ 사·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매년 12.31.까지)

○ 자금 집행금액에 대한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구비하여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집행하며,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를 e나라도움 및 문서로 시·군에 제출

○ 자부담 50%를 우선 집행한 후 기성고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수시)

5. 이행점검단계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 농식품부는 공사추진상황, 자금집행의 적절성 등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6월, 11~12월)
- 점검반 : 농식품부(주관), 시·도, aT,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민간 RPC협회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사업비 정산》

사업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10일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기본규정 제62조)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다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
 - * 보조금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2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 처리 시, e나라도움 등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를 별도 반납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될 때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하고 익년 1월 20일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확인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후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통보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시장·군수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6. 사후관리단계

- 시장·군수는 RPC 시설관리 전담책임자 지정, 정기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하고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사업대상자는 중요재산을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사후관리기간 종료 이전까지 변동사항이 발생 시 매년 6월 15일, 12월 15일까지 변동현황을 제출해야함
 - * (중요재산)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 및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 그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현황이 공시되어야 함.
 - **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6조) 보조금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준공일 부터	10년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u>5 ~ 10년간</u> 사후관리를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의 승인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 담보제공에 따른 대출금은 비 매입자금 용도로만 사용 가능
부동산의 종물 (건조, 저장, 가공시설 포함)	준공일 부터	7년간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구입일 부터	<u>5년간</u>	

- 모든 시설·장비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명의로 등기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를 완료해야 함

* 특히, 특정인의 사유화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설비 등은 중점 관리 필요

《 부기등기의 내용 》

이 부동산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 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모든 시설·장비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비치 등 시·군의 관리책임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
- 시장·군수는 기본규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사업성 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세부사업계획 이행, 자금집행 및 중요재산 관리의 적정성 등
-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시·군의 점검시기를 별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단독 또는 시·군 합동으로 점검 실시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의 용도의 사용,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처분 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부도·폐휴업·사업포기·사망 또는 1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배재(최대 5년간)와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등이 부과·징수됨

* 보조금법 제30조부터 제33조의3, 기본규정 제78조부터 제88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3931호, '16.1.28) 이후, 보조금 법령 위반에 대한 명단 등의 공포 및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제40조 내지 제43조를 참조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RPC 시설능력 및 벼 매입량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브랜드 경영체 살 유통비중 및 유통량 대비 RPC 저장능력 측정
- RPC 시설능력 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년 실적을 1월말까지 조사

Ⅳ 2020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 2019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사업 신청

< 붙 임 1 >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휴대폰)				
	주 소							
	법인 설립일				양곡 관련 사업 개시일 (가공업, 저장업 등)			
	사업조직형태	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 등	전년 매출액	00억원	계약재배 농가수	00호	대표 브랜드	
신 청 내 역	사 업 명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요약)							
	사 업 비	가공시설 현대화	계(백만원)	국 고	지방비	자 부 담		
		건조저장 시설						
	사업별 규모	가공시설 현대화						
건조저장 시설								
<p>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p> <p>*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p>								

<첨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계획서

1. 현 황

가. 해당 시·군 일반현황

(2개 시·군 이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시·군 현황 모두 적시)

- 지 역 : 시·도 시·군
- 전체인구 및 농가인구 : 가구수(호), 인구수(명), 농가비율 등 기재
- 쌀 생산현황
 - 재배면적 :
 - 주 재배품종명 :
 - 생산실태 : 쌀 전업농 현황, 생산법인 현황 등 기재
 - 친환경농업실천 농가수 및 면적 : 호, ha

<세부 생산현황>

구 분	농가 (호)	벼 재배면적 (ha)	생산량(톤)		생산비중(%)	
			조곡	정곡	전국대비	시·도대비

* 최근 3년 실적 기재

- 쌀 산지 유통현황
 - 관내 산지유통업체 현황 : RPC, DSC, 임도정업체, 가공·판매하는 생산법인 등 기재

- 각 산지유통업체 현황

순위	업체명	구분	법인격	취급규모(톤)		시설능력		
				연간 벼 매입량	수확기 벼 매입량	건조 (조곡톤)	저장 (조곡톤)	가공 (정곡톤)
1		RPC, 임도장업체 등	조합공동법인 농협, 영농법인 등					
2								
...								

- 생산 처리현황

구분	총생산량 (A+B+C)	자가소비 (A)	공공비축 (B)	민간매입(C)		
				농협RPC	민간RPC	기타
물량(조곡톤)						
비율(%)	100					

나. 해당 시·군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향후 5년)

- 해당 시군의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을 요약해서 기재

다. 사업신청 RPC현황

- RPC명 : ○ 대표자명 : ○ 사업 시작년도 :
- 출자현황 :
- 보유시설 현황
- 수확후 관리시설

위치	건조(조곡톤)			저장(조곡톤)			가공(정곡톤)
	열풍	상온통풍	소계	상온	저온	소계	
합계							

- 생산시설 등

공동육묘장	상토제조기	방제기	공동 퇴비장	친환경자재 생산시설	왕겨처리 시설	기 타
개소 (ha)	()	()	()	()	()	()

* () 안은 처리 가능면적 기재, 기타 : 세부내역 별지 첨부

○ 기 지원받은 현황(보조사업)

라. 신청RPC 사업실적

○ 운영실적

구분	조곡 매입량		판매량		매출액	손익
	연간	수확기	조곡	쌀		
	M/T	M/T	M/T	M/T	백만원	백만원

* 최근 3년 실적 기재

○ 브랜드쌀 생산·유통실적

- 대표브랜드 출하비율 : $\%(\text{대표브랜드 출하량} / \text{전체출하량} \times 100)$

구분	브랜드명	판매량(정곡톤)	매출액(억원)	주요 판매처
대표브랜드				
일반브랜드				
계	-			

○ 시중 브랜드쌀 평가 수상실적 :

○ 계약재배 실적(최근 3년실적 기재)

- 계약재배 매입량 및 그 중 친환경쌀 매입량: 조곡 00톤

- 계약재배 비율 : $\%(\text{계약재배 매입량} / \text{RPC 총 매입량} \times 100)$

- 친환경쌀 매입비율 : $\%(\text{친환경쌀 매입량} / \text{계약재배 매입량} \times 100)$

- 계약재배 품종 및 농법 표준화 정도

계약재배면적	재배품종	계약재배 약관 유·무	재배기술지도		
			자체실시	기술센터 협조	기 타

* 계약재배 약관 첨부

* 재배기술지도 : 해당 “란”에 O표시하고 증빙자료 첨부

- 계약재배 세부내용

조직명(단지명)	참여 농가수 (호)	약정현황		약정 중 RPC 매입량(톤)	농가조직화 약관 유·무
		재배면적(ha)	생산량 (톤)		
합계					

* 계약재배는 서면약정 기준, 농가조직 관리규약은 별도첨부

- 계약재배 쌀전업농수 :

2.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가. 여건분석

- 해당 RPC의 상태,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

나. 추진목표

-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RPC의 비전 및 사업목표 도출

<주요 실적목표>

구분	총 생산량	벼 매입 물량	매출액	손익	계약재배				
					약정		RPC 매입		재배 단지수
					면적	생산량	물량	전체 매입량 대비 계약물량비율	

* 향후 5년간 목표치 기재

<대표 브랜드 품질관리 목표>

구분	대표브랜드		품질지표			
	대표브랜드 물량	총 취급물량 대비 대표브랜드비율	질소질 비료사용량(10a당)	완전미비율 (%)	단백질함량 (%)	재배 품종

* 향후 5년간 목표치 기재

다. 세부 추진계획 및 전략

- *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고, 자자체의 지원계획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할 것

- 고품질 원료 확보 및 품질관리 목표 달성계획 및 전략 등

- 쌀 품질관리 기준 설정, 계약재배 약관 등 대표(공동) 브랜드 관리를 위한 규약 또는 지침서 마련 및 준수현황

- 계약재배 내실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실적 및 교육·홍보 등 조직화 전략 및 계획(지자체, 농협 포함)
- 품질관리, 영농지도 등 전문인력 확보실적 및 계획
- 브랜드 품질기준에 맞는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한 육묘, 이앙, 방제 등 생산 관리방안 등
- 통합 등 RPC 규모 확대 계획 및 전략
 - 브랜드 경영체 통합실적 및 추진 계획, 브랜드 경영체 취급규모 확대실적 및 계획
 - 브랜드 통합실적 및 추진계획 등
- 수확 후 관리시설 확충(또는 정비) 계획 및 전략
 - 건조, 저장, 가공시설의 확충 및 정비 계획, 잉여가공시설 정비계획 등
- 야적벼 물량 감축 계획 제출(향후 5년간 계획)
 - 야적 현황, 야적벼 가공 및 판매현황, 향후 5년간 저장시설 확충 계획 등
- 수확기 벼 매입물량 확대 계획(향후 5년간 계획)
 - 수확기 매입 현황, 향후 5년간 매입물량 확대 계획 등
- 수확기 반입예약제 확대 계획(향후 5년간 계획)
 - 수확기 반입예약제 운영 현황, 향후 5년간 확대 계획 등
- 판매/마케팅 계획 및 전략
 - 대표(공동) 브랜드 개발활용 현황 및 추진 계획, 마케팅 전문인력 확보 실적 및 계획
 - 대표(공동)브랜드 홍보실적 및 계획, 대표(공동) 브랜드쌀 판매실적 및 계획
 - 출하처 확보 및 개발방안,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자체규약 제정 및 운영 내역 등

3. 사업 시행계획

가.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국고보조	지자체보조	자부담
시설현대화	감리 및 컨설팅				
	기계 및 장비				
	건축 및 토목				
합계					

- * 부지구입비, 기반정비 등 기초토목 공사비용은 제외
- * 총사업비는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 기준으로 산정하고, 설립규모(처리용량 5~10톤/hr)는 해당RPC의 여건에 맞게 설정
- *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자료 등) 및 평균 낙찰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되, 사업비 산정시 지자체와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민간협회 등에서 지도, 점검

나. 부지확보현황

- 부지 확보여부 : 확보완료, 확보 중(가등기)
 - * 현 부지를 활용할 경우는 확보완료로 작성하고, 기존공장 활용계획(DSC 전환) 적시
- 위치 : 시·도 시·군 대로·로·가 (읍·면·동 번지)
 - 물류, 교통, 기존 위성시설과의 거리 등 부지의 특성 자세히 기재
- 부지면적 : m^2 (평)
- 건폐율, 용적율,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관련 법령상 저축여부 등 관련규제 검토 결과 : 상세히 기재(관련 인허가 부서의 검토결과 반드시 첨부 - 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사전심사 예시>

구 분		해당사항	검토의견	공장입지 제한내용 (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도시 관리 계획	용도 지역	농림지역 (농업진흥 구역)	조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인 경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농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름.
농지, 산지 등	농지법	농업(진 흥, 보호 구역)	가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건물 철거 후 신축하는 상황이므로 허가가능.
	농어촌 정비법	기 타	조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신설 부지는 우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북모지구 경지정리 연결지역으로 공장부지 진출입로로 계획된 북모리 457-17(구거)번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대상입니다. ○ 사업장 부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농업용수공급 및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히 정화처리 후 배출하여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 피해방지에 철저를 기하시고 피해발생시 사업주가 즉시 정비,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공장신설 시 지적경계 측량 후 농업기반시설 (농로, 배수로)과 이격하여 건축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동 건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와 피해보상 및 민원 등은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도로, 하천 등	하수도 법	배수구역, 개인하수 처리시설	조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수를 공공하수관로에 연결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건축물사용승인 이전까지 납부 ○ 폐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공공하수도에 오수연결 허가 가능하며 우수는 신청 토지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 ○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에 해당됨으로 건축허가 시 하수도법 34조 규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구 분		해당사항	검토의견	공장입지 제한내용 (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도로법	도로, 접도구역	조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구간은 제출서류로만 검토하였을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결하가 금지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연결은 가능한 지역입니다. ○ 변속차로의 길이는 건축물의 업종 및 법정 주차대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불가할 수 있으며, 기존 버스 포켓차선과 도로점용연결 허가로 설치되는 가속차로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환 경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조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의 의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임. ○ 건축허가 후 수도신청 시 “급수공사 시행승인신청”에 의함. ○ 부지 내 수도계량기 설치 공간 (0.8 x 0.6) 확보 요함. ○ 급수관 분기위치 및 관경, 급수 가능 여부 등 세부사항 착공 전 별도협의
	소음, 진동 관리법	배출시설 설치허가	조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 소음, 진동 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특정 공사 사정신고를 하여야 함.
	대기 환경 보전법	총량규제 지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조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및 소음배출시설 시행규칙 별표1의 배출시설은 설치할 시 대기,소음 배출시설 신고대상임. ○ 연면적 1,000㎡ 이상 공사일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전(착공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환경 영향	영향평가 대상사업	조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부지 개발면적이 7,500㎡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므

구 분		해당사항	검토의견	공장입지 제한내용 (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평가법	등			로, 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또는 지정 등(허가) 전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양향평가 협의를 득하여야 함 (도로점용허가 포함)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조건부	○ 당해공사로 인해 5톤 이상 건설폐기물 발생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기 타	문화재 보호법	보호구역	조건부	○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 등이 확인되면 “매자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7조에 의거 신고.
	자연 재해 대책법	자연재해 위험지구	조건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16조의 2규정 의거 공장설립에 따른 제조시설 면적 500㎡이상일 경우 우수 유출저감 대책 제출.
기 타 사 항	[건축관련] ○ 건축법 제44조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도록 계획할 경우 건축허가 가능함.			
	[개발행위관련]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도로)의 도로확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공작물 설치 시 무게 150t, 부피 150㎥, 수평투영면적 150㎡를 초과하는 경우 개발행위(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함.(단,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등의 대상인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름)			
종 합 의 견	[지적관련] ○ 지적 소관청에 지적공부정리(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입지기준명세상의 조건 등의 이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위 확인사항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드론 활용 전경사진),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 (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존 건축물대장 등

다. 세부 시행계획

○ 시설현대화 계획

- 대략적인 계획이 아닌 실제 실행계획을 자세히 작성하고, 조감도 및 간이 설계도(최소 3종 이상), 비교견적서(3개소 이상) 등은 반드시 첨부
-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하여 첨부(엑셀양식: 별도통보)

<가공시설현대화사업>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1. 감리 및 컨설팅						
- 기계공사 감리						
- 토목·건축공사 감리						
- 컨설팅 (성능시험 등)						
감리 및 컨설팅 합계						
2. 기계 및 장비						
2-1) 현미부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소계						
2-2) 백미부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품질검사장비						
-						
소계						
2-3) 포장부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소계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기계 및 장비 합계						
3. 건축 및 토목						
3-1) 건축						
- 가공부(현미부, 백미부 등)						
- 회의실						
-						
소계						
3-2) 토목및쌍등기타						
- 토목공사						
- 1차수전공사						
- 소방 및 통신						
-						
소계						
건축 및 토목 합계						
4. 기타						
4-1)유통시설						
- 지게차						
-						
소계						
4-2) 위생시설						
- 오수처리시설						
-						
소계						
건축 및 토목 합계						
총사업비						

* 본 자료는 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

<벼 건조저장시설>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1. 감리 및 컨설팅						
- 기계공사 감리						
- 토목·건축공사 감리						
-						
소계						
2. 원료투입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품질검사장비						
-						
소계						
3. 건조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소계						
4. 저장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출고시설						
-						
소계						
5. 토목 및 건축공사						
-						
-						
소계						
총사업비						

* 본 자료는 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계,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 예정

* 저온창고, 통합RPC가 잉여가공시설을 DSC로 전환할 경우 등은 양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작성

라. 사업추진일정(계획)

구분	사업신청년도(2019년)												사업추진년도(20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방침 결정																								
이사회																								
정기총회																								
기본설계																								
설계업체 선정																								
실시설계																								
설계검토																								
일상감사																								
인허가																								
시공업체 선정입찰																								
보조금 교부결정																								
시공업체 선정계약																								
공사착공 (건축)																								
공사착공 (기계)																								
시운전																								
성능검사																								
공사준공																								
정산																								
기타																								

* 공사종류별 공정계획을 자세히 작성할 것

마. 사업비 확보현황

○ 지방비 확보(증빙서류 첨부)

* 지자체 방침 문서(예산부서 협조 포함, 시·군은 반드시 시장·군수 결재분), 지방의원 설명 근거 및 지방의회 동의(협조) 문서 등

○ 자부담 확보 현황 및 계획(증빙서류 첨부)

(단위 : 천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기 확보	계획
합 계		합 계		
○ 부지매입		○ 자부담		
		- 출자액 (자본금)		
○ 부지조성공사		- 이익잉여금		
		- 신규출자		
○ 설치사업비		- 기타		
		○ 보조금		

* 농협조직은 이사회 결의서 및 출자협약서 등 제출

* 비 농협조직은 해당 시·군에서 지도 및 관리(통장 인감병행 사용 등)하는 통장에 자부담의 5%를 예치하고 통장사본과 잔액증명서 제출

1.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

-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며, 컴퓨터 파일이 아닌 첨부 자료는 스캔작업을 거쳐 컴퓨터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 첨부서류(컴퓨터 파일로만 제출)

- 간이설계도(최소 3종 이상) 및 조감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비교 견적서(나라장터를 이용한 최소 3개소 이상), 법인등기부등본,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RPC 및 DSC 건립 의제),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전경사진),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 계획확인서,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기존 건축물대장, 최근 5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벼 매입량, 쌀 가공량 및 판매실적 등),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본요건 점검표(붙임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자부담금 확보계획서

※ 비 농협조직 추가 구비서류

-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부담금 확보증빙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에금증서 등), 출자액(자본금) 사용 내역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지원계획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 자부담금 조달계획서(입증자료)
- 기타 사업실적 등에 대한 입증자료 등

※ 정부지원 RPC가 아닌 생산자단체 추가 구비서류

- 정부지원 RPC와의 출하약정서(향후 5년간 매입량의 80% 이상 출하 조건)

※ 지자체 제출서류

- 농정심의회(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서

2.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 사업시행 지침서의 사업내용을 숙지하여 작성
- 자료인용시 출처 명시
- 사업계획서 분량은 제한 없으나 최대한 간소화
- 모든 첨부자료는 사업계획서와 합철하고 별도목차를 작성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서면&발표 평가표

평가 항목	배점	평가심사 기준
1. <u>식량산업 종합계획 연계성</u> (20점)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단위 <u>식량산업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은 적절한가?</u> - 지역내 식량산업 구조와 사업신청자의 역할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가? - 생산구조 발전방안과 <u>사업신청자의 역할이</u> 실현 가능성이 있게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유통구조 발전방안과 <u>사업신청자의 역할이</u> 실현 가능성이 있게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지자체 차원의 시책, 예산지원 등이 <u>식량산업을 발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는가?</u>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단위 생산조정제 참여계획 및 목표는 적절한가? - 지역내 논 타작물 재배 계획 및 목표의 적절성 등 (매우 우수 : 15% 이상, 우수 : 10% 이상, 보통 : 7% 이상, 미흡 : 5% 이상, 매우 미흡 : 5% 미만)
2. 세부 추진계획 및 전략 (50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원료확보 및 품질관리 목표 달성계획 및 전략 등은 적절한가? - 쌀 품질관리 기준 설정, 계약재배 약관 등 대표(공동) 브랜드 관리를 위한 규약 또는 지침서 마련 및 준수현황 - 계약재배 내실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실적 및 교육·홍보 등 조직화 전략 및 계획(지자체, 농협 포함) - 품질관리, 영농지도 등 전문인력 확보실적 및 계획 - 브랜드 품질기준에 맞는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한 육묘, 이앙, 방제 등 생산 관리방안 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등 RPC 규모 확대 계획 및 전략 - 브랜드 경영체 통합실적 및 추진 계획, 브랜드 경영체 취급규모 확대실적 및 계획 - 브랜드 통합실적 및 추진계획 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확 후 관리시설 확충(또는 정비) 계획 및 전략 - 건조, 저장, 가공시설의 확충 및 정비 계획, 잉여가공시설 정비계획 등 ○ 야적벼 물량 감축 계획 제출(향후 5년간 계획)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확기 벼 매입물량 확대 계획(향후 5년간 계획) - 농가 희망 물량 전량 수매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

평가 항목	배점	평가심사 기준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마케팅 계획 및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공동) 브랜드 개발활용 현황 및 추진 계획 - 대표(공동)브랜드 홍보실적 및 계획, 대표(공동) 브랜드쌀 판매 실적 및 계획 - 마케팅 전문인력 확보실적 및 계획 - 출하처 확보 및 개발방안,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자체규약 제정 및 운영 내역 등
3. 시행 계획 적절성 (20점)	10	<p><부지선정 적절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규에 따른 규제사항은 정확히 검토하였는가?(공통) ○ 교통 여건 등 입지조건에 따른 경영비 절감 가능여부는?(공통) ○ 적정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였는가?(신축 또는 증축) ○ 건축은 계획대로 가능한가?(신축 또는 증축)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은 없는가? 있다면 추후 처리계획은 적절한가?(개보수) ○ 기존사업부지의 옥외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개보수)
	10	<p><건축 및 시설 적절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물량 및 시설설치, 처리공정 등의 적정성, 위생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및 기존시설의 활용, RPC간 통합 및 계열화 등 구조조정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 사업추진 일정은 실현가능하고 적절한가? <p><자금운용 및 조달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부담금 조달계획은 적절한가? ○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은 적절한가?
4. 종합 의견 (10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적으로 볼 때 인근 들녘의 공동농업경영체와 지역 대표 브랜드 경영체로 성공 가능한가? ○ 정상적으로 연내에 사업(공사)가 완료 가능한가?
합 계	100	<p>< 최종점수 산정방법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면평가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발표평가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예비대상자로 선정

< 붙임 3 >

평가위원 평가의견서

평가대상 :

평가자 :

(서명)

평가 항목	배점	평가의견	평점
1. 식량산업 종합계획 연계성	20		
2. 세부 추진계획 및 전략	50		
3. 시행 계획 적절성	20		
4. 종합 의견	10		
합 계	100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양곡가공업(도정업) 신고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양곡)입니까?			
운영 실적	가공시설	최근 3년간 평균 벼 매입량이 1만톤 이상입니까?		
		최근 3년간 평균 쌀 판매량이 7,500톤 이상입니까? (미 충족시 당해연도 쌀 판매계획 7,500톤 이상이 있는지로 대체 가능)		
		정부지원 RPC 운영 사업자입니까?		
		2007년부터 동일 시군에 지원한 개소수가 5개소 이내입니까?		
		농협RPC : 통합 또는 통합 추진 중에 있나요? 민간RPC : 가공물량을 최근 5년 평균 20% 또는 시간당 2.5톤 이상 확대하나요?		
		금년도 RPC 쌀산업 기여도 평가를 신청하였나요?		
	벼 건조· 저장시설	전년도 벼 매입량이 3,000톤 이상입니까?		
(정부지원 RPC가 아닌 경우) 인근의 정부지원 RPC에 향후 5년간 매입량의 80% 이상에 대한 출하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까?				
법인요건 (비 농협조직)	총 출자액이 6억원(DSC는 3억원) 이상입니까?			
	설립 후 운영실적이 10년(DSC는 5년) 이상입니까(경과규정 적용)? (최근 10개년(또는 5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되었고,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 기준)이 자부담금의 50%이상 확보되었습니까? - 단,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습니까?(개인사업자 및 상법상 법인은 제외)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농업법인인가요?			
지원 제한 기준 (대부분 '19년 신청부터 적용)	최종 사업종료 다음년도부터 2년 안에 시설보완사업을 지원받으려 하십니까? (* '19년 사업자('18년 신청자)부터 적용('19년 사업자는 '20~'21년에는 지원 제한, '22년부터 지원 가능[사업신청을 전년도에 하므로 '21년부터 사업신청 가능])			
	총 지원횟수가 3회를 초과하여 사업을 지원받으려 하십니까? (* '18년 이전에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1회로 적용('19년 사업자('18년 신청자)는 향후 10년간 1~2회 추가 지원 가능)			
	사업신청 후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 '18년 사업자(포기는 신청자)부터 적용('18년에 신청 철회 및 포기할 경우 '19년~'21년(이월 포기는 '23년)까지 신청 제한)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비를 이월한 이력이 있는 적이 있습니까?(시·군과 사업자 각각 확인) (*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 사업비가 이월되면 '19~'21년까지 신청 제한))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 한 이력이 있는 지역입니까? (*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면 '19년~'21년까지 신청 제한)		
		지방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추경 편성 및 다음연도 편성) (* '19년 지방비 편성부터 적용('18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경우는 미 적용하며, 만약 '19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지역은 '20~'22년까지 지원 제한[사업신청은 '19~'21년까지 제한])		
		사업신청시 서류서류 등을 제출한 이력이 있습니까? (* '18년 사업신청 서류부터 적용('18년 신청서류가 허위일 경우 '19년~'23년까지 사업신청 제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 한 적이 있습니까?		
시설 규모	가공시설	기존 정부지원 RPC이고,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입니까?		
		(위성가공시설) 최근 5년간 정부지원 RPC가 없었던 지역이고, 도정시설 가동율 이 80% 이상입니까?		
	비 건조· 저장시설	저장용량 확대를 위한 신축이나 기존 시설 증축입니까?		
		총 사업비가 7억원 이상입니까?		
		단순 개보수입니까?		
	저온저장시설의 경우 기존 RPC 및 DSC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내에 설치하는가?			
사업부지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사업자 명의 여부 확인)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나요?		
		관련 인허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되었습니까? (관련 인허가에 금지사항은 없는지 여부 등)		
		부지 성토 및 다지기 공사가 연말 안에 가능합니까?		
자체 심의회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를 받았습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습니까?(해당이 없을 경우 그 사유서 기재 제출)		
자 부 담	농협조직	자부담 확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비 농협조직	총 사업비의 자부담이 5% 이상 확보되었습니까? (사업신청단계 총 5%, 가내시 이전 총 10%,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단계 총 50%)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시설 검토	공통	사업추진 컨설팅은 30백만원(DSC는 15백만원) 이내로 책정되었습니까?		
		토목공사는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 공사비가 포함되었나요?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이 총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유통 및 위생시설, 장비류는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수확기 안정적 물량 확보 및 야적물량 감소를 위한 시설투자를 검토하였습니까?		
	가공시설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품질검사장비는 계량, 성분, 백도, 외관 및 기타 품질분석이 자동처리되어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검토하였습니까?		
	벼 건조· 저장시설	건축공사가 핵심 기계·설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입·출고시설은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건조시설은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저장시설은 단열처리 기준을 충족하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자동제어시설은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 할 수 있도록 검토되었습니까?		
		품질검사장비는 원료투입시설과 연계되어 벼 수매과정에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로 검토되었습니까?		
		저온저장시설은 단열처리와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연중 15℃ 이하로 벼를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 또는 사일로 형태의 구조로 검토되었습니까?		
	구비서류	지침에 명시된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1.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 1부 및 사본 10부		
		2. 기본설계도(간이 설계도)		
3. 조감도				
4.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5. 비교 견적서(나라장터를 이용한 최소 3개소 이상)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6. 법인등기부등본		
	7.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RPC 및 DSC 건립 의제)		
	8.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드론 활용 전경사진)		
	9. 지적도		
	10.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1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2.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13. 기존 건축물대장(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14. 최근 5년간 <u>결산재무제표</u>		
	15. <u>최근 5년간</u> 벼 매입량		
	16. <u>최근 5년간</u> 쌀 가공량 및 판매실적		
	17. 납세증명서(구. 국세원납증명서)		
	18. 지방세 납세증명서		
	19. 기본요건 점검표		
	20. 자부담금 <u>확보계획서</u>		
	(비 농협조직 추가 구비서류) 21.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2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23. 출자액(자본금) 사용 내역서		
	(지자체 준비서류) 24.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25.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26. <u>사업성 검토서</u> (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27.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서(해당이 없을 경우 그 사유서 기재 제출)		

* 음영이 아닌 곳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 및 선정 제외(단,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및 선정·평가 절차

I. 추진배경

- 지자체별로 쌀 이외 식량작물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점 하에서 생산·가공·유통 계획 수립 부재 및 지역 내 적정투자 소요 검토 미흡, 농가조직화와 기존 시설의 가동률 제고 등 종합적인 분석 및 중장기 계획 하에서 체계적인 투자 부족
- 시·군별로 식량산업분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정 자금률 제고 및 시설 투자 수요 등을 분석하여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지역 단위의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추진
 - ① RPC 중심의 농가조직화 및 계열화, ② 타작물 전환 계획, ③ 식량작물 농가조직화 및 계열화 계획 등 식량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위주로 수립
 - 지자체 주관으로 5개년 단위로 중기재정계획 범위 내에서 계획 수립
- 그동안 5개 시범지역* 선정 후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모델을 제시하고, 지자체 설명회 개최 등 실시
 - * 5개 시범지역(당진, 김제, 익산, 해남, 경주) 선정 후 예시 모델 제시
 - 지역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 '18.3 ~ 8월
 - 권역별 순회 설명회(3개 권역, 300여명) : '18.9.4 ~ 9.7(3일간)
 -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신청 등 안내 : '18.9.11(수)
 -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협의회 : '18.11.19(월)
 - 개별 시·군별 계획수립 및 협의회 실시 : '18.9월 ~ 11월
 - 종합계획 선정·평가 접수 : '18.12.3(월) 예정

II. 식량산업종합계획 주요 내용 및 수립절차

□ 주요 내용

- 시·군 단위 식량산업 발전전략과 미곡 생산 및 유통체계화, 발작물 생산 및 유통체계화, 시설투자 및 운영, 협의체 구성 및 역할분담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지역단위 식량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 관련 유관기관·품목별 농가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계획에 대한 추진경과 포함
- 지역 내 식량산업에 대한 생산 및 유통현황 기초분석, 품목별 생산 조정제에 따른 생산계획 등
- 미곡분야 생산 및 유통 체계화는 거점RPC 중심의 계열화 방안, 계약 재배단지 및 들녘경영체 육성을 농가조직화 방안, 생산지도 계획, 마케팅 전략, 지역소비 활성화 계획, 시설운영 효율화 방안 제시
- 식량작물 생산 및 유통체계화는 타 작물 전환 계획, 전략품목 선정 및 육성방향, 공동경영체 및 공선출하회 등을 통한 농가조직화 방안, 마케팅계획, 지역소비 활성화 계획, 시설 운영 효율화 계획 등 제시

기본방향



유통 시설·주체의 대상범위



□ 수립절차



□ 계획수립 방향 및 운영 체계

- **(성격)** 식량산업 종합계획은 ① RPC 중심의 농가조직화 및 계열화, ② 타작물 전환 계획, ③ 식량작물 농가조직화 및 계열화 계획 등 식량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임
- **(시간적 범위)** 수립 · 승인년도부터 5개년
- **(계획수립 대상 및 수립주체)**
 - 계획 수립은 지자체 · 조직이 자율적 수립
 - *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RPC 및 DSC 사업자, 들녘경영체, 식량작물 대표 조직, 생산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계획 수립 및 추진
 - * 품목 : 미곡, 발작물(맥류, 잡곡, 두류, 서류 등), 원예작물은 제외
- **(재정적 범위)** 지자체의 경우 지역 중기재정계획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가능성이 부족한 과대 계획은 지양

○ **(계획 선정·평가)** 매년 평가단을 구성하여 선정 및 이행평가 실시

- (심사) 3단계(서면-현장-발표) 나눠서 심사평가 진행
- (승인요건) : 평가 결과 80점 이상이면 승인

○ **(계획의 효력)** 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와 RPC 및 DSC, 들녘경영체, 식량작물 대표조직, 참여농가에 대해 아래의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 부여하거나,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

○ 식량산업 종합계획 승인에 따른 연계 지원사업(안)

사업명	세부사업	연계방식(안)	적용시기(안)	비고
들녘경영체 육성사업 * 식량작물 공동경영체육성 사업으로 개편(19)	교육컨설팅 지원	신청자격	2020년	보조
	시설장비 지원	신청자격	2020년	
	사업다각화	신청자격	2019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RPC 시설현대화	신청자격	2019년	
	DSC 시설지원	신청자격	2019년	
(신규)(가칭)잡곡자금확충기반 *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내역사업으로 편성		신청자격	2020년 (잠정)	
쌀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		가점	미정	
공공비축미 배정		우선배정(일부)	미정	제도
정부보급중 공급		우선배정(일부)	미정	
RPC 비매입자금		우대금리 적용 및 추가자금 배정	2019년	융자
농기계사업		가점	미정	

* 2018년 12월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최종적으로 반영할 계획임

○ **(평가환류)** 先 계획 - 後 지원 원칙하에 매년 이행평가를 통한 사업 추진 점검

- 이행평가 과정을 통해 현실에 맞도록 목표조정 및 변경, 보완계획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피드백 체계 구축
- 이행평가 우수등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미흡등급에 대해서는 지원 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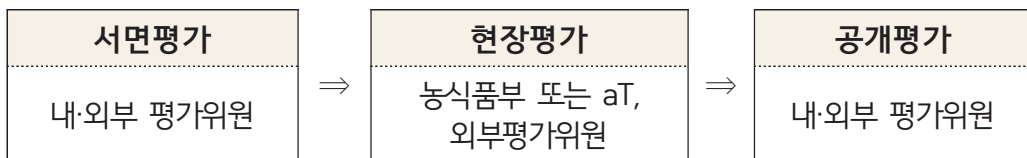
Ⅲ. 선정 · 평가절차

□ 산·학·연 전문평가단을 통한 다단계 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수행,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 실시

□ 평가위원 구성방법

- 외부위원 : 산·학·연 관련 전문가 POOL에서 3인으로 구성
- aT에서 평가위원 POOL 구성 후 농식품부 보고 → 농식품부에서 우선 순위 확정 → 평가위원 섭외
- 내부위원 : 농식품부 담당관, aT 업무담당자 등 2명으로 구성

□ 단계별 평가절차



- 지자체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현장, 발표평가 실시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시 선정
 - * 서면평가(70점) → 현장평가(결격사유 유무) → 발표평가(80점)

□ 1단계 : 서면평가(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주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평가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3~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미곡 생산 및 유통체계화, 발작물 생산 및 유통체계화, 시설 투자 및 운영, 협의체 구성 및 역할분담 계획 등 시·군 단위 식량산업 발전전략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현장 평가 대상으로 선정

※ 서면평가 통과 시·군은 차기 서면평가 1회 면제

□ 2단계 현장평가(서면평가를 통과한 시·군)

- 주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협조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1명 내외 + 간사 1명 구성)
- 참석대상 :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RPC 및 DSC 사업자, 들녘경영체, 식량작물 대표조직, 생산자 등으로 협의회 구성원
- 평가내용 : ① 지역 거버넌스 구축, ② 생산 및 유통현황 분석, ③ 식량산업 육성 목표 및 전략, ④ 미곡분야 생산·유통체계화, ⑤ 발작물 생산·유통체계화, ⑥ 실행계획 및 투자계획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현장평가 통과 시·군은 차기 서면·현장평가 1회 면제

□ 3단계 발표평가(현장평가를 통과한 시·군)

- 주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평가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3~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RPC 및 DSC 사업자, 들녘경영체, 식량작물 대표조직, 생산자 등으로 협의회 구성원
- 평가내용 : ① 지역 거버넌스 구축, ② 생산 및 유통현황 분석, ③ 식량산업 육성 목표 및 전략, ④ 미곡분야 생산·유통체계화, ⑤ 발작물 생산·유통체계화, ⑥ 실행계획 및 투자계획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선정

< 참고 1 > 목표 지표(안)

○ 공통지표

품목	분야	목표지표	비고
미곡	농가조직화	들녘경영체 재배면적(비중)	
		계약재배(약정출하) 면적(비중)	
		공동영농 면적(육묘, 이앙, 방제, 수확 등)	각 항목별 제시
	적정·고품질 생산	쌀 생산조정 면적(비중)	
		고품질 품종 재배면적(비중)	
	유통·가공·브랜드	생산량 대비 RPC 수확기 매입량(비중)	
		생산량 대비 저장시설 용량(비중)	상온, 저온 구분
		관내 RPC 수	통합 등
		RPC 취급량 대비 공동(대표) 브랜드 출하량(비중)	
	발작물	농가조직화	발작물경영체 재배면적
공동출하실적(매출액)			
고품질·안전 생산		품목별 생산면적 또는 비중 / 계약재배 면적 또는 비중	
유통·가공·소비		관내 생산량 대비 유통시설 경유율	품목별 기준 설정
		공동브랜드 판매실적(매출액)	

○ 자율지표

품목	분야	목표지표	비고
미국	농가조직화	수탁사업 면적(비중)	
		대표브랜드 계약재배 면적(비중)	
		· · · · ·	
	적정·고품질 생산	친환경·GAP 재배면적(비중)	
		질소질 비료 저감율	저감 계획
		공동육묘량	
		· · · · ·	
	유통·가공·브랜드	생산량 대비 현대화시설 RPC 정곡출하량(비중)	
		고품질쌀완전미 비율	감축 계획
		지역 내 소비량	로컬푸드, 급식 등
		· · · · ·	
	밭작물	농가조직화	공동출하실적(매출액)
수탁사업 면적(비중)			
농작업 기계화율			
· · · · ·			
고품질·안전 생산		친환경·GAP 재배면적(비중)	
		· · · · ·	
유통·가공·소비		식량작물 전문 유통조직 실적(매출액)	품목별 기준 설정
		대표브랜드 소비자 인지도	
		지역 내 소비량	
		· · · · ·	

< 참고 2 > 선정지표(안)

대분류	평가항목		배점
	중분류	소분류	최소~최대
1. 사업계획 (25점)	1.1. 사업계획 수립과정의 적절성(10점) (거버넌스 운영의 적정성) * 식량산업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5점) * 지자체, 거점유통조직, 참여조직, 농가조직 등의 역할분담 체계는 적절한가?(5점)		2~10
	1-2.사업목표와 추진전략의 적절성(15점) * 해당지역 특성에 맞는 적절한 사업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는가? (10점) * 지자체 자체 사업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작성되었는가? (5점)		2~10
			1~5
2. 실행계획 (60점) * 지역별 여건에 따라 미곡과 밭 식량작물 과의 점수 배점 조정 가능	2-1. 미곡분야 생산유통 체계화 추진계획 (30점)	농가조직화 및 고품질 생산계획 * 계약재배단지 육성, 들녘경영체 육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생산 지도와 농가조직화, 고품질쌀 및 계약재배 확대 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10점)	2~10
		RPC 거점화 및 운영효율화 계획 * RPC 거점화 및 운영효율화 계획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10점)	2~10
		브랜드 육성 계획 * 거점(통합) RPC를 중심으로 공동브랜드 육성계획과 품질관리체계는 적절한가?(5점)	1~5
		적정시설 확보 및 운영 효율화 계획 * RPC 및 DSC 등 신규시설 설치 및 기존시설 보완계획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5점)	1~5
	2-2 밭 식량작물 생산유통 체계화 추진계획 (30점)	타작물 전환 및 전략품목 육성 * 타 작물 전환계획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지역단위 식량작물의 전략품목은 적절하게 선정되었는가 (10점)	2~10
		농가조직화 및 생산지도 연계성 *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계약재배 확대 및 농가조직화, 이를 위한 생산지도는 적절한가?(5점)	1~5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방향 * 품목별 대표 유통조직은 적절하게 선정하였는가? 대표조직 육성을 위한 계획은 적절한가?(5점)	1~5
		마케팅 차별화 계획 * 품목별 마케팅 차별화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5점)	1~5
		시설운영 효율화 * 산지유통시설 등 신규시설 및 기존시설 보완계획은 적절하게 제시 되었는가?(5점)	1~5
3. 투자계획 (15점)	3-1.연차별실행계획(5점) * 연차별 실행계획은 수립되었으며, 실현가능성은 적정인가?(5점)		1~5
	3-2.종합평가(10점) *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실현가능인가?(10점)		2~10
가점 (10)	GAP, 친환경 재배면적 비율 * GAP, 친환경 합산 재배면적 비율은 10% 기준으로 2%p 상승시1점씩 부여 (최대 5점)		0~5
	식량산업발전을 위한 조례 등 활성화 노력 * 조례제정시 3점, 기타 노력 2점 (최대 5점)		0~5
합 계			100점(110점)

< 참고 3 > 이행지표(안)

평가항목			배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최소~최대
1. 이행 실적 (25점)	1.1 이행실적 보고서 적정성(10점) * 이행실적보고서는 종합계획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 * 증빙자료는 성실하게 첨부하였는가? (15점)		3~15
		1-2.자율평가보고서 적절성(10점) * 자율평가를 위해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여 실시하였는가? 자율평가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 (10점)	2~10
2. 성과 목표 달성도 (60점) * 지역별 여건에 따라 미곡과 쌀 식량작물과의 점수 배점 조정 가능	2-1. 미곡분야 생산유통 체계화 달성도 (30점)	농가조직화 및 고품질 생산계획 * 계약재배단지 육성, 들녘경영체 육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생산지도와 농가조직화, 고품질쌀 및 계약재배 확대 계획은 이행하였는가?(10점)	2~10
		RPC 운영효율화 및 거점화 이행 * RPC 거점화 및 운영효율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는가?(10점)	2~10
		브랜드 육성 및 통합 이행 * 거점(통합) RPC를 중심으로 공동브랜드 육성계획과 품질관리체계를 이행하였는가?(5점)	1~5
		시설운영 효율화 * 시설설치는 계획대로 추진하였는가(5점)	1~5
	2-2. 발작물 생산유통 체계화 달성도 (30점)	타 작물 전환 이행, 전략품목 선정 * 타 작물 전환 이행, 전략품목의 생산계획은 적절하게 추진하였는가?(10점)	2~10
		농가조직화 및 생산지도 연계성 * 농가조직화를 위한 공동경영체 육성 및 생산지도는 추진하였는가?(5점)	1~5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 품목별 대표조직의 실적은 향상되었는가?(5점)	1~5
		마케팅 차별화 실적 * 품목별 마케팅 차별화를 위해 마케팅 추진실적은 보유하고 있는가?(5점)	1~5
		시설운영 효율화 * 시설설치는 계획대로 추진하였는가?(5점)	1~5
	3. 연차별 추진성과 (15점)	3-1.연차별 실행관리 방안(5점) * 연차별 사업추진 달성을 위한 실행관리가 계획대로 이루어졌는가? (5점)	
3-2.종합평가(10점) *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은 적정한가?(10점)			2~10
합 계			100점

세부사업명	쌀소비 활성화 사업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라이스랩 설치·운영 지원			예산 (백만원)	400			
사업목적	소비자 요구가 반영된 쌀 가공식품 개발·상품화를 유도할 수 있는 라이스랩 운영을 통해 쌀가공산업 육성 도모							
사업 주요내용	쌀 제품 홍보, 소비자 반응 테스트, 판매 등이 이루어지는 복합 공간 운영 - 상품개발, 소비자 수요 조사, 청년 창업자 교육 및 홍보·마케팅, 다양한 쌀 가공제품 판매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양곡관리법」 제26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원자격 및 요건	해당 지자체와 연계하여 라이스랩 운영·관리, 쌀 관련 제품 개발, 쌀 제품 전시·판매, 지역 쌀·농업과의 연계 등이 가능한 사업 참여 희망자, 라이스랩을 독립매장형(단독매장, 층분리형 또는 벽체분리형 복합매장) 또는 숍인숍 형식으로 상시(주5일 이상) 운영 필수							
지원한도	1개소당 2억원 이내 지원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800	800	800	800			
	국 고	400	400	400	400			
	지방비	400	400	400	400			
	융 자	-	-	-	-			
자부담	-	-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임수현 주무관		044-201-1843		
신청시기	별도 통보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쌀 관련 제품, 요리 등을 개발 및 판매를 통해 쌀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해당 지자체와 연계하여 리스랩 운영·관리, 쌀 관련 제품 개발, 쌀 제품 전시·판매, 지역 쌀·농업과의 연계 등이 가능한 사업 참여 희망자
- 리스랩을 독립매장형(단독매장, 층분리형 또는 벽체분리형 복합매장) 또는 쇼인숍 형식으로 상시(주5일 이상) 운영 필수

3. 지원대상

- 쌀의 신수요 발굴을 위한 리스랩 운영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리스랩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식재료비, 교육·홍보비, 연구개발비, 인테리어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규모 : '19년 리스랩 4개소 운영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각 리스랩 별 2억원 이내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
 - * 다만, 해당 대상자의 신청액 미달시에는 리스랩별 배정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1월 말까지 사업 추진방향 등을 담은 사업시행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방법 등을 안내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과 별도로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의 준비를 자세히 안내
- 라이스랩 사업 신청자는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한다)」 제28조제8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시·군은 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대상*, 사업성 검토 등 검토·평가 이후, 신청서 등 제출서류 및 평가의견을 시·도로 제출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 시·도는 시·군 제출자료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 후 평가, 심의 등을 통해 사업 신청인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정하고 신청서 등 제출서류 및 평가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로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식품부는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포함한 지원 대상자 선정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산이 확정된 이후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
- 농식품부는 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및 보조금 가내시 통보, 지원 대상자·보조금 확정 통보

- 사업시행기관은 농식품부의 사업 계획 보완 및 소요 예산 검토 의견 등을 감안하여 세부 사업계획서 수립 제출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시·군은 e나라도움에 선정결과를 등록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지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약교부 신청
 - * e나라도움을 통해 예약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않음
- 사업시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부결정 조건 이외에도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에게 교부결정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
 - 기본규정 제56조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지원 대상자는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되, 사정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집행
 - * 계획 내 기존사업 내용에서 금액 등이 경미하게 변경될 경우, 승인 없이 변경사항을 시·군에 제출·검토하는 것으로 같음
 - 시·군의 교부결정 통보 이후, 사업포기서 제출 시 기본규정 제78조, 제79조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 1~5년 지원 제한
 -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정산 시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원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기본규정 제28조 및 제58조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에 문의하여 처리
 -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등

- 보조금 집행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6장 집행관리 등에 따라 시행, 집행
 - 보조금 사용방식은 e나라도움을 활용하며, 전용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정함
 - * 세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확인·집행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 시장·군수 및 지원 대상자는 사업의 수행·정산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 의무를 지님
- 사업시행기관은 라이스랩의 세부 계획서 추진 여부 등을 점검하여 반기별 진행 상황 보고(별지 제2호 서식)
 - 점검시기 : 당해연도 3월말, 9월말을 기준으로 점검 후 익월 10일까지 제출
 - 제출내용 : 사업개요, 사업추진 현황, 분기말 예산집행상황, 계획대비 사업 추진 부진사유 및 조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농식품부는 지자체로부터 주기적(반기별)으로 '사업 수행상황(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필요한 지도·점검 실시
 - 보조금 예산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시 라이스랩 운영 기관·대표에게 보고 하게 하거나, 현장에서 보조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 현황 등 점검·확인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지원대상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지원 대상자가 계약·조달지연 등 원인행위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사업비의 이월 신청·처리(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 지원 대상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보고 및 공시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46조(별지 제3호)에 따르면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 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자가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처분 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배재와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등이 부과·징수됨

* 보조금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의2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3931호, '16.1.28) 이후, 보조금 법령 위반에 대한 명단 등의 공포 및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제40조 내지 제43조를 참조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시행기관은 라이스랩 사업 실적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별지 제3호 서식)

2. 평가

- 「라이스랩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운영실태 및 성과 등을 연 1회 평가
 - 평가 결과에 따라 라이스랩 설치·운영사업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또는 라이스랩의 예산을 감액 조정하거나 선정 취소 등 조치

3. 환류

- 기존 운영기관의 사업평가 후 신규 선정 필요시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공고 예정

<별지 제1호 서식>

'00년 라이스 랩 사업신청서					
지자체 현 황	지자체명	○○도 ○○시(군)청		주관부서	○○○○과
	주 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사 업 담당자	직위		연락처	전 화 (휴대전화)
성명			e-mail		
신 청 내 용	사업명	'00년 라이스 랩 운영 사업			
	사업기간	20 . . . ~ 20 . . . (개월)			
	사업내용	사업 프로젝트에 적합한 사업내용을 간략히 기술			
	사업장소	구체적인 장소 명기			
	총 사업비	총 200,000천원	국 비	100,000천원 (50%)	
지방비			100,000천원 (50%)		
동일·유사 사업 지원여부	동일 사업내용으로 타 부처나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한 보조금 중복지원이 있을 경우 신청 여부 표기				
첨부서류	1. 사업계획 요약서 2. 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00년 라이스 랩 운영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기관장 또는 대표자)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제활용품))

[1-1] 사업계획 요약서

사 업 명				
단 체 명				
대 상 지 역				
제안배경	- 개조식으로 작성 유도 - 간결한 작성 유도			
성과목표	- 정량적 목표 * 5줄 내외로 요약하여 기록 - 정성적 목표 * 10줄 내외로 요약하여 기록			
주요내용				
담당자	직 책		성명	(인)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주소			

※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개조식(간단정리)으로 작성
- 응모계획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작성하며, 계획서의 차례와 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기술

‘00년 라이스 랩(Rice Lab) 사업계획서

단체·기관명

목 차

1. 사업개요	1
2. 사업목표 및 전략	
1.	3
2.	4
3. 세부 추진내용	
1.	0
2.	0
4. 기대효과	
1.	0
5. 추진일정	
1.	0
6. 사업수행인력	
1.	0
7. 소요예산	
1.	0
[붙임 #1]	0
[붙임 #2]	0
[붙임 #3]	0

사업명

- 소제목 -

중고덕 15p, 글상자선 이중테두리

(본문에 문서 취지가 포함될 시 본 글상자는 생략 가능)

1. 사업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등에 관해 자세히 기술, (휴먼명조, 16p)

기관명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유형 : (매장 공유형, 셰프 주도형, 기업주도형, 협동조합형 중 택1)

사업규모 : 부지면적 m^2 , 건축연면적 m^2 (지상○층, 지하○층)

2. 사업목표 및 전략

사업목표

○

추진체계

○ 사업추진기관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등 기술

추진방향

○

3. 세부추진내용

시설 및 공간별 조성계획

- 면적, 세부 공간 기능 및 조성방안, 시설배치계획 등(도면 포함)

관리운영 계획

- 관리운영주체 설정, 주체의 구성 및 관리활동 계획
- 부문별 시설운영계획 등

운영 활성화 계획

- 창업자 교육, 홍보, 마케팅, 이벤트 계획, 지역연계 프로그램 계획 등
- * 시설 및 공간별 조성계획, 관리 운영 계획, 운영 활성화 계획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외 필요한 사업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

4. 기대효과

- 기대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5.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6. 사업수행인력(담당자, 운영자, 관리자 등 기재)

업무 구분	성명	성별	소속/직위	연락처	주요 활동 경력
○					
○					
○					
○					
○					

7.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세부산출내역 (예시)
총 계			
	직접사업비		
	운영비		
	계		
	직접사업비	소계	
		시공비(예시)	○○원×○회
		기계비(예시)	○○원×○회
			○○원×○○명×○식×○회
			○○원×○○부×○회
	운영비	소계	
		인건비(예시)	○○원×○명×○회
		식료품비(예시)	○○원×○회

<작성 유의사항>

- ①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을 기본원칙으로 함
- ② 예산 비목은 사업 프로젝트별로 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직접사업비와 운영경비로 구분하여 기재
- ③ 직접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고 운영경비는 가급적 필수 불가결한 비용만 반영
- ④ 재료비는 소모성 재료비 위주로 편성하고, 비품을 포함한 자산성 재료비나 소요 비용이 과다한 경우는 기관 단체부담 또는 후원 등으로 계획 수립
- ⑤ 산출내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지원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음

'00년 라이스랩 사업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서

1. 사업개요

- 대상자(라이스랩) :
- 사업유형 및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소요사업비 :
- 사업비 분담률 : 국고 %, 시도비 %, 자부담 %

2. 사업 추진현황

- 사업추진 상황(방문객 수, 판매·전시 현황 등)
-

3. 반기말 예산집행 상황

(단위 : 천원)

구 분	'00예산 (A)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상반기	하반기		
계						
○국고						
○자부담						
○기타						

4. 문제점 및 조치계획 등

< 문제점 >

- (정상추진여부, 집행부진사유, 민원발생사유, 사업추진상 장애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조치계획 등 >

-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을 기술)

<별지 제3호 서식>

‘00년 라이스랩 사업 추진 결과 보고서

구분	소속	이름	연락처
지자체			
라이스랩			

□ 사업개요

○ 대상자(라이스랩) :

* 사업지 주소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소요사업비 :

* 사업비 분담률 : 국고 %, 도비 %, 시비 %

□ 사업 추진현황

○ 라이스랩 운영 현황

구분	방문객수(명)	쌀		쌀가공품	
		판매량(kg)	매출액(천원)	판매량(kg)	매출액(천원)
00라이스랩					

* '18.1월~11월 기준

- 판매·전시 현황 등 라이스랩 운영 관련 사항

○ 연구개발 현황

○ 홍보 현황

○

□ 사업 추진 성과

○ 사업 운영시 성과 등 기술

□ 라이스랩 운영 시 문제점 및 조치계획 등

< 문제점 >

- 정상추진여부, 집행부진사유, 민원발생사유, 사업추진상 장애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조치계획 등 >

-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기술

□ 지자체 의견

- 사업 지속의 필요성 여부, 문제점 및 보완해야할 사항 등 기술

□ 2018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사업	'18년 예산(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집행액(D)	차년도 이월액(E)	불용액 (F=C-D-E)
00라이스랩						

○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집행내역	세부집행 내역	집행내역	비고
		합계	200,000,000	
국고	인건비	총괄 매니저(00 원×00개월) 매니저(00 원×00개월) ...		
	식재료비	...		
	운영비	...		
	교육비	...		
	홍보비	...		
	마케팅비	...		
		
지방비				
자부담				

참고

00행사 추진 결과(개요, 사진 등) 등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세부사업명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예산 (백만원)	1,500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시설·장비 지원							6,750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다각화 지원							4,367
사업목적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집단화된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시설 및 장비, 사업다각화를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 등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전환과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시설 및 장비, 사업다각화 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1항,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의3 제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							
지원자격 및 요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인정 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지원한도	교육·컨설팅 : 사업기간 1년, 경영체당 3천만원, 총 5회까지 지원							
	시설·장비 : 사업기간 1~2년, 2억원(다만, 사업자 선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1 ~ 5억원 내에서 차등 지원), 총 3회까지 지원 사업다각화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교육·컨설팅 지원) 3년 이상 사업을 추진한 우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재원구성 (%)	국고	40~50	지방비	40	융자	-	자부담	10~20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22,200	23,000	24,000	26,308			
	국 고	9,780	10,100	10,300	12,617			
	지방비	8,880	9,200	9,600	10,807			
	자부담	3,540	3,700	4,100	2,88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정순일 박춘민		044-201-1838 044-201-1837		
신청시기	사업 전년도 3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쌀선도경영체교육훈련, RPC 교육·홍보·컨설팅 사업시행지침은 별도로 규정

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인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인정 기준 》

-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을 대상으로 2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참여하여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파종·육묘에서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예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 * 농지 기준 :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논과 밭. 다만, 과수원, 목장 등은 제외
- * 공동영농 농지가 일부 분산되어 있더라도 공동 농작업 수행이 가능한 형태로서 공동영농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로 인정
- *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50ha 이상 공동경영단지를 1개소로 인정하되, 농지가 강이나 산으로 구분되거나 공동경영 면적이 400ha 이상인 경우는 별도 경영체로 구성 가능
- * 잡곡(맥류, 두류, 서류 포함, 찹쌀·흑미 등 미곡은 제외) 전문 경영체는 10ha 이상(다만, 행정구역 및 집단화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50ha 이상이면 인정)

-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수립·선정된 지역이어야 함
 - * (경과규정) : 시설·장비는 '20년 신청자, 교육·컨설팅은 '21년 신청자부터 적용
 - *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및 선정·평가 절차 등은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사업 붙임 5 참고

- 쌀은 정부지원 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출하하여야 함
 - 계약재배 약정체결만 하고 지도·감독, 공동생산 및 출하 등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 * 다만, 농업법인으로 연간 쌀 1,000톤 이상 가공실적이 있는 도정공장을 자체보유 하거나, 그러한 도정공장과 계약재배 후 출하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 '20년 신청자부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 농지(논)에서 생산되는 벼를
① 일정비율, ② 일정기간 이상 출하한 실적이 있어야 지원 자격 부여
 - * 일정비율 및 기간 : [교육·컨설팅] (최초 신청) 출하약정 체결, (2년차) ① 5%, ② 1년, (3년차) ① 10%, ② 2년, (4년차) ① 15%, ② 3년, (5년차) ① 20%, ② 4년, [시설·장비] ① 10%, ② 2년, [사업다각화] ① 20%, ② 3년
-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별표6)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 고시)에 적합하여야 함
 - * 조합원 5인(시설·장비 10인, 다각화는 15인) 이상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 조합원 요건은 향후 5명씩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 예정
 - * 총 출자액 1억원(시설·장비 2억원, 다각화는 3억원) 이상
 - *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 * 설립 후 운영실적이 (교육·컨설팅) 1년, (시설·장비) 2년, (다각화) 3년 이상
 - * 사업 신청 시부터 충족되어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까지 유지되어야 함
- 구성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업경영체이어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내역사업별 지원자격 및 요건

- (교육·컨설팅 지원)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인 (예비)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 * 지자체 자체 평가결과 (읍·면) 2개소 이내, (시·군) 5개소 이내('20년 신청자부터 적용)
- (시설·장비 지원)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2년 이상 추진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 * 지자체 자체 평가결과 (읍·면) 1개소 이내, (시·군) 3개소 이내('20년 신청자부터 적용)
- (사업다각화 지원)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3년 이상 추진한 우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 * 지자체 자체 평가결과 (읍·면) 1개소 이내, (시·군) 1개소 이내('20년 신청자부터 적용)
- (공통)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지원 적용사항
 - ① 사업신청 당시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상반기에 70% 이상 추진한 경우에만 자격 부여(초과 실적을 보유한 경우 미 적용)
 - ② (경과규정) '19년에 한해 1회 이상 추진한 경우(①항목 충족 조건)도 자격 부여
 - ③ 유사 또는 자체사업으로 교육·컨설팅사업을 추진한 경우 별도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 결정

○ 지원제한 기준

- 세부사업별 총 지원횟수는 (교육·컨설팅) 5회, (시설·장비) 3회, (다각화) 2회까지 지원(최근 10년간)
-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는 사업추진 중에는 추가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최종 사업종료(정산일 기준) 다음년도부터 2년간 지원 제한
 - * '17년 사업자('16년 신청자)부터 적용('17년 사업자는 '18~'19년에는 지원 제한, '20년부터 지원 가능[사업은 전년도에 신청하므로 '19년부터 사업신청 가능]), 시설·장비는 '18년 사업자('17년 신청자)부터 적용
- 사업 신청 후 신청을 철회한 경우와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18년 신청자(포기는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에 신청 철회 및 포기할 경우 '19년~'21년(이월 포기는 '23년)까지 지원 제한

- 사업비를 이월한 지역(시·군) 또는 사업자는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귀책사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적용)

*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 사업비가 이월되면 '21~'25년까지 신청 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면 '20년~'22년까지 신청 제한)

- 지방비 확보가 지연(추경 편성 및 다음연도 편성)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20년 지방비 편성부터 적용('19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경우는 미 적용하며, 만약 '20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지역은 '21~'23년까지 지원 제한[사업신청은 '20~'22년까지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19년 사업신청 서류부터 적용('19년 신청서류가 허위일 경우 '20년~'24년까지 사업신청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정부지원 RPC 등과 체결한 출하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 이행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 신청 및 지원 제한(다만, 컨테이너 형태의 사무실은 인정)

○ 잡곡전문 들녘경영체 경과규정

- 잡곡전문 들녘경영체는 지원자격 및 요건을 1 ~ 4년간 유예 적용

* 잡곡전문 들녘경영체 : 잡곡(맥류, 두류, 서류 포함, 찹쌀·흑미 등 미곡은 제외) 생산·유통이 50% 이상인 경우

구분 (적용시기)	잡곡전문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공동영농면적 (50ha)	10ha (‘23년)	10ha (‘22년)	10ha (‘21년)
참여 농가수	25명	25명	25명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및 선정)	미 적용 (‘22년)	미 적용 (‘21년)	미 적용 (‘20년)
교육·컨설팅 (수행실적[2~3회])	해당없음	해당없음 (‘21년)	해당없음 (‘22년)
출자액 (2 ~ 3억원)	1억원	1억원 (‘21년)	2억원 (‘20년)
출자 조합원 (10 ~ 15명)	5명	5명 (‘21년)	10명 (‘20년)
운영실적 (2 ~ 3년)	1년	1년 (‘21년)	2년 (‘20년)

* 적용시기 : ‘19년에 사업을 신청하는 경영체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예정

3. 지원대상

- (교육·컨설팅 지원)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 (시설·장비 지원) 공동영농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지원
- (사업다각화 지원) 생산 및 생산 이후 과정의 다각화를 위한 타작물 재배 등 논 이용의 다양화, 발작물과의 연계 등을 통한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 연계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등 지원
- (공통)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여부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최종결정하며, 과잉보유 시설·장비(유사사업 지원 등)의 추가지원은 불가
- 벼 건조·저장 시설 및 쌀 도정시설은 신청·지원 불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등으로 신청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교육·컨설팅 지원

— <<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 메뉴얼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설정·운영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개발한 교육·컨설팅 표준 메뉴얼을 전수(傳受) 교육 및 인증 받은 컨설팅 업체(컨설팅트)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② 교육비와 컨설팅비는 개별 사용이 불가하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단위로 통합·운용되어야 함
 - 교육·컨설팅은 전문 컨설팅 인증업체를 통해 일괄 추진하여야 함
- ③ 본 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타 보조금 또는 지방비 부담금이 재원인 교육·컨설팅 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교육비)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인식전환, 계약재배, 타 작물재배, 작부체계 전환, 발작물 연계 등 생산 및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및 친환경 인증 취득, 선진지 견학 등
- (컨설팅비)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수립(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경영개선(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활성화,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향토자원 활용,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작목 및 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생산비 절감 등) 등

나. 시설·장비 지원

-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논 타작물 재배 및 발작물과의 연계를 위한 작부체계 전환 등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논 타작물 및 동계 조사료 재배, 발작물과의 연계 등 경영체의 작부체계 특성에 따라 타작물 파종기 및 수확기, 조사료(건초) 생산장비 등
 - 공동육묘장의 경우 사업다각화 지원의 건축물 기준 준용

다. 사업다각화 지원

◀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 계획수립 시 유의사항 ▶

- (방향) 농지 이용의 다양화·전문 단지화(논 타작물 전환, 발작물 연계, 기능성 특수미, 가공용 등), 생산된 식량작물을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사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
 - 규모화로 발생한 농지·인력 등의 유희자원과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쌀 중심의 소득구조를 다원화하고 참여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방식) 타작물 재배 및 발작물 연계, 타 산업 분야 확대를 중심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기존 쌀 중심의 규모화 계획 수립은 최소화
 - 사업다각화는 크게 타작물 재배, 발작물 연계, 이모작 확대, 생산 농산물 가공·유통, 체험·관광 연계 부문으로 나누어 계획 수립
- ① 타작물 재배, 발작물 연계, 조사료 및 이모작 확대, 6차산업화를 위한 가공·유통 설비 및 건축물은 총사업비 내에서 별도 한도 없이 수립 가능
 - 발작물 연계 및 논 타작물 재배를 통한 잡곡 및 맥류, 조사료, 찰벼, 유색미 등을 활용한 6차 산업화 포함
 - 단순가공 이외 제분·제면·라면·빵·떡·한과·주류 제조, TMR 등 가공사업도 포함
- ②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시설은 취급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해당 취급 품목 수급상황에 따라 조기 출하 또는 출하 연기 등 정부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만일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후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음)
- ③ 건축물 신축·리모델링 시 체험·교육·전시·홍보관은 총 사업비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하며, 숙박시설 및 축사는 제외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숙박시설은 필요 시 지역숙박업체 등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계
- ④ 쌀 관련 생산·유통기반 구축은 기존 시설·장비 지원, 쌀 적정 생산 및 RPC 중심의 통합·규모화를 고려하여 총사업비의 최대 30% 한도에서 수립
 - 일반 벼 건조·저장, 도정을 위한 시설·장비는 제외하여야 함
- ⑤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은 각각 총사업비의 최소 5% ~ 최대 10% 한도 수립

《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 계획수립 시 유의사항 》

- 다각화에 수반되는 전문 교육·컨설팅과 공동영농 및 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포함하여 수립. 단,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 부분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에 준해 실시하여야 함
- 출자·배당·적립, 공동정산 등 회계, 공동경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위한 회계·법무법인 자문계획 포함 수립
- 참여농가의 소속감 부여, 온라인 직거래 등 공동마케팅을 위한 식량 작물공동(들녘)경영체별 브랜드, BI, 상품 포장지 등 개발에 필요한 컨설팅 계획 포함 수립
- 홍보, 회계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등 계획 포함 수립
- 본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자체 교육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⑥ 인건비, 유류비, 종자대 등 운영비는 제외하여야 함

- (컨설팅) 사업영역 확대에 따라 필요한 법인의 조직관리·경영 및 인사·회계 관련 분야,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소득창출 및 일자리 연계·창출 방안 등
- (기반정비) 쌀 중심에서 타작물 재배 및 발작물 연계, 이모작 확대를 위한 배수개선, 토양개량 등 생산기반 정비
- (시설·장비)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판매, 체험·관광과 연계를 위한 시설·장비, 생산품목 변화·사업규모 확대에 필요한 시설·장비
- 선별 및 가공시설 등 : 입고, 건조, 정선, 선별, 색채선별, 석발, 집진, 정맥, 연맥, 통밀 도정, 제분, 블랜드, 제면(호화건면, 숙면 등 포함), 라면, 빵, 떡, 한과, 엿, 누룽지, 주류, TMR, 포장, 로봇적재시스템, 제어시스템, 재고 관리시스템, 자동품질관리시스템, 출고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청소기, 건조기 등
- * 유통 및 위생시설·장비류는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 사업다각화 지원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 등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건축물) 가공·판매 및 체험·교육 등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감리, 건축·토목, 건축물 부속 기계·설비 등

- 감리비 :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

* 간이설계는 사업신청년도 3월말, 실시설계는 9월말까지 총 사업비 외 순수 추가 자부담으로 추진

- 토목공사 : 부지내 기초공사(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설비공사 등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가공공장, 포장장, 출하장, 제어실 및 품질검사실, 판매장, 체험장, 홍보관,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가공시설을 건립하는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별표5)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시설) 지정을 받아야 함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 기계·장비별 설치 기준

- 입·출고시설 :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원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설치

- 건조시설 :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

- 저장시설 : 연간 산물형태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단열처리(우레탄 단열재 벽체 7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 효과 이상)되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치

- 자동제어시설 : 입고·건조·저장·출고·곡온관리 등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할 수 있도록 설치(MMI에 의한 PC제어시스템, 재고관리 시스템, 실시간 자동품질관리시스템 등 설치 가능)

- 품질검사장비 : 원료투입시설과 연계되어 원물 수매과정에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원료 품위 및 단백질측정기, 제현율측정장치, 시료 건조기, 함수율측정기, NIR 성분등급판정기, 이미지 외관검사기 등)로 설치

- 저온저장시설 : 단열처리(우레탄단열재 벽체 10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효과 이상)와 냉각시설(장치)이 설치되어 연중 일정온도 이하 (보관 품목에 따라 저장조건 등 설정)로 원물을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 또는 사일로 형태 등의 구조로 설치

* 기존 건조능력 및 저장능력, 원료반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시설 위주로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가. 교육·컨설팅 지원

○ 지원기준 : 30백만원

- 사업의무량(붙임 1 참고)

▶ 회원 농가 대상 교육 : 3회 이상, 1회당 3시간(강사 1명 이상) 이상

▶ 리더 농가 대상 교육 : 3회 이상, 1회당 6시간(강사 1명 이상) 이상

▶ 실습교육(선진지 견학 등) : 1회(리더 및 회원 농가 대상 교육과 통합 실시 가능)

▶ 컨설팅 : 10회 이상, 컨설턴트 2명 이상 참여, 8개월 이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 메뉴얼(참고 2) 기준

○ 사업기간 : 1년(총 5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연차평가를 마련·시행하여 2021년도 신청자부터 적용(추후 안내)

- * 시설·장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컨설팅 지원은 자동 선정
- * 사업다각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컨설팅 지원은 제외(중복 지원 방지 목적, 사업다각화 지원기간 동안에는 추가 신청할 수 없음)

○ 사업규모 : 매년 100개소 내외

- * 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나. 시설·장비 지원

○ 지원기준 : 2억원(다만, 사업자 선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 상위 30% 이내 : 3억원, 31 ~ 60% 이내 : 2억원, 60% 미만 : 1억원

- * 논 타작물 전환 및 밭작물 관련 전용장비는 1~2억원 이내에서 사업계획 및 전환면적 등에 따라 추가 지원

- * 논 타작물 전환을 위한 배수개선(무굴착 암거배수 및 굴착식 암거배수 등)은 재배규모에 따라 추가 지원

무굴착 암거배수(1ha 기준)	굴착식 암거배수(1ha 기준)
○ 암거 유공관 비용 = 2,600천원 * 랩핑 암거관(Ø50mm) 매설기준(5m 간격)	○ 암거 유공관 비용 = 3,000천원 * 유공 암거관(Ø100mm) 매설기준(7m 간격)
○ 자재비용 = 700천원 - 농수관(급·배수관), 엘보, 정타, 소수재(왕겨)	○ 자재비용 = 4,302천원 - 필터매터, 배수밸브, 소켓, 소수재(자갈)
○ 지하수위 조절기 = 1,300천원	○ 지하수위 조절기 = 1,300천원
○ 암거관 매설비용 = 1,900천원 - 트랙터 및 굴삭기 임대, 인건비	○ 암거관 매설비용 = 5,100천원 - 트랙터 및 굴삭기 임대, 인건비
합계(A) = 6,500천원	합계(A) = 13,702천원

○ 사업기간 : 1~2년(총 3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사업규모 : 매년 40개소 내외

- * 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다. 사업 다각화 지원

- 지원기준 : 5~50억원 내외
 - * 사업계획 평가 검토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사업기간 : 1~3년(총 2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 사업기간 및 연차별 지원비율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사업규모 : 매년 5~10개소 내외
 - * 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 지원조건 : 보조(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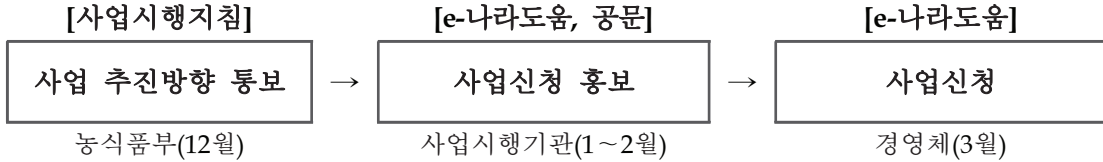
라. 공통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주의사항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및 자부담 부담 비율을 변경시 반드시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지방비 부담 비율은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10~50%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별 세부지원 내용 및 사업신청 요령, 평가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다음연도 사업지침 수립 시달(12.31.까지)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사업시행기관(지자체)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방법,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공고 및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 안내(1.31.까지)
 - * 시·군은 e나라도움 상에 공모내역등록(세부추진계획·예산집행계획 필수입력 여부 설정을 “N” 처리, 별도 신청서 등 제출)하고, 신청인은 e나라도움으로 사업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과 별도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준비를 자세히 안내

사업자(신청업체)

- 다음연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신청업체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3.31.까지)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납세증명서(구.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참여 의제), 출자액(자본금) 사용내역서(농협 제외), 출자액 통장 입출금 내역서 사본(농협 제외),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 사무실 내·외부 사진 및 관련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가설 건축물은 신고서 등, 농협 제외), 경영체 소유 부동산 및 농기계 등 목록과 사진
- 공동영농작업단 구성 및 운영현황, 공동영농일지(최근 2년간), 공동육묘장 운영메뉴얼, 공동육묘일지(최근 2년간), 공동방제기 운영메뉴얼, 공동방제 일지(최근 2년간)
- 계약재배 약정서(최근 2년간), 농가별 영농일지(최근 2년간), 정부지원 RPC 등에 출하내역서(최근 2년간), 교육 이수·확인증
- 참여농가 명부, 공동영농 농지현황, 들녘 항공사진(면 단위 축적기준)
- 논 타작물 생산현황(지원금 지급내역 등), 동계 답리작 생산현황(직불금 지급 내역 등),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류실적(협회 가입, 양해각서, 농기계 대여 등)
- 내부 운영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록(최근 2년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규약, 수익환원 내역(최근 2년간),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출자내역 포함, 농협 제외)
- 표준생산메뉴얼, 농약안전사용기준 매뉴얼, 생산관리자 지정 및 운영현황(최근 2년간), 계약재배 약정 현황(최근 2년간), 재해보험 가입현황
-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운영규정, 재산관리 표지 부착, 운영일지 등), 경영일지(수입·지출 관리내역서)(최근 2년간)
-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 또는 납품 실적, GAP 생산단지 지정서, 친환경인증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리더교육 수료증

- 자부담금 확보계획서,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비교 견적서(최소 3개소 이상, 교육·컨설팅은 제외)
- (건축물(육묘장 포함)이 포함되었을 경우)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전경사진),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기존 건축물대장(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간이설계도(최소 3종 이상) 및 조감도 등
- (지자체 제출서류) 농정심의회(또는 전문가 심의회) 결과서,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 기본요건 점검표(붙임 2)

○ 신청 제한 기준

-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이어야 하고, 농협의 경우도 사업부지(농지 등 비 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에 가등기하여 구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 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됨
 - * 부지에는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됨
- 2. 지원자격 및 요건 중 지원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지자체(시·군)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었고,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한 사업자에 한해 농정 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제출(4.30.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대상*,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부담 확보 가능 여부,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성(사업추진일정), 인허가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 여부 등에 대해 철저 확인

지자체(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자의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와 제출서류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로 제출(5.31.까지)

-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식품부는 평가단* 구성·운영을 포함한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를 선정(8월말까지)하고, 예산 확정된 이후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12월말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외부 전문 평가기관(주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평가 및 심의 운영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가. 선정절차(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8.31.까지)

- 신청인(신청, 사업추진 전년도 3월) → 지방자치단체(검토·평가, 전년도 4~5월)
→ 평가단(평가·선정, 전년도 6~8월) → 농식품부(확정, 전년도 12월)

* 교육·컨설팅(서면평가), 시설·장비(서면, 현장평가), 사업다각화(서면, 현장 및 발표평가)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 평가기관과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현장, 발표평가 실시

- 평가항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붙임 3) 참조
- 선정원칙 : 품목별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공동농업경영 및 논 타작물 재배 실적, 밭작물과의 연계가 우수한 경영체 우선 선정 지원
- 평가위원 구성방법
 - 외부위원 : 산·학·연 관련 전문가 POOL에서 3~5인으로 구성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서 평가위원 POOL 구성 후 농식품부 보고 → 농식품부에서 우선순위 확정 → 평가위원 섭외
 - 내부위원 및 간사 : 농식품부 및 농정원 담당자 등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과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6월)
 - 평가대상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들녘경영체
 - 평가내용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 등 충족여부, 구비서류 누락여부, 신청 제한기준 해당여부, 중복투자 여부 등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평가조치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구비서류 누락, 지원 제외대상·거짓 및 허위 신청,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평가 제외

<2단계 : 서면평가>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의한 서면평가(6월)
 - 주 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평가자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서 위촉한 평가위원(3명 내외)
 - 평가대상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들녘경영체
 - 평가내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현황(공동영농 현황 및 계획, 주요 시설 운영현황 및 계획 등), 품질향상 및 경영안정 노력, 지원여건, 논 타작

물 재배 참여현황, 지자체 자체평가 등(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서류 검증·평가, 시·군 평가의견 재확인)

- 평가조치 :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 시설·장비 지원은 예산의 1.2배 내외 규모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 다만,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소 시·도별 1~2개소 포함 가능
 - ▶ 사업다각화 지원은 예산의 2배 내외 규모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3단계 : 현장평가>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다각화는 6월, 시설·장비는 7월)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평가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1명 내외 + 간사 1명 구성)
 - 평가대상 :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들녘경영체
 - 참석대상 : 경영체 대표 및 임원, 참여 농가, 해당 지자체(시·군)
 - * 시설·장비는 사업물량에 따라 권역별 현장실사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음
 - 평가내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역량평가, 지원 시설·장비의 적정성,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의지, 사업계획의 정책부합도 및 충실도, 참여농가 면담,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부담 및 지방비 확보 가능 여부,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성(사업추진일정), 인허가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 여부 등
 - 평가진행 : 공동영농 현장방문 후 사업계획 설명, 질의 및 응답, 사업대상 부지 실사 등
 - 조치내용
 - ▶ 시설·장비 지원 :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 사업다각화 지원 :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4단계 : 발표평가>

- 현장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6월)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평가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4~6명 내외 구성)
 - 평가대상 : 사업다각화 지원 들녘경영체
 - 참석대상 : 경영체 대표 및 임원,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역량 및 교육·컨설팅 추진실적, 식량 산업융합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업다각화를 통한 비전·성과목표·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각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각각 1개)를 제외한 산술 평균 수치로 우선 순위 선정
 - * 평가위원이 4명 이하일 경우에는 단순 산술평균으로 우선순위 선정

나. 예비대상자 선정

- 다단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대상자 선정 및 통보(8.31.까지)
 - 통보대상 :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들녘경영체

다. 사업비 심의·조정

- 심의대상 :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들녘경영체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사업비 심의 및 조정(다각화는 7월초, 시설·장비는 8.31.까지)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평가자 : 산·학·연 전문심의단(심의위원 3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경영체 대표 및 임원,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간이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 심의
- 평가진행 : 간이설계와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심의위원 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후 통보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 사업비 심의 완료 후 전문심사단 의견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간이설계 및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를 지자체를 통해 농식품부로 제출(11.30.까지)

농림축산식품부

- 단계별 평가절차에 따른 결과를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8.31.까지)
 - 사업다각화 선정 대상자는 교육·컨설팅 선정에서 제외(중복 지원 방지)
- 사업신청 시·도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9.15.까지)
 -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예산범위(정부안)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후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
 - * 재정집행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별도의 사업준비 상황을 점검 실시
- 사업대상 시·도에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12.15.까지)
 - * 사전준비상황(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지자체(시·도)

- 사업신청 시·군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9.20.까지)
- 사업대상 시·군에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12.20.까지)

지자체(시·군)

- 사업신청 경영체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9.25.까지)
- 사업대상자에게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12.26.까지)
 - e나라도움에 선정결과를 등록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지(12.31.까지)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업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11.10.까지)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군 보고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등 :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시에는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검토 후 조정
 - 사업부지 변경 :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농식품부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실시설계 금액이 당초 사업예산의 150% 이내일 경우 세부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다만,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변경이 없어야 하며, 입찰 등에 따른

초과 사업비는 추가 자부담 추진 원칙임)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조정 건의 승인 요청은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금액의 합계가 총 사업비(예산)의 30% 이하는 시·군 승인, 30% 초과부터 50% 이하는 시·도 승인, 50%를 초과 시는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시행(다만, 변경금액의 합계가 30% 이하라도 3억원 이상이면 시·도 승인, 5억원 이상이면 농식품부 승인 후 조정·시행)

○ 참여농가 및 공동영농 면적 조정은 10% 이하는 시·군 승인, 10% 초과부터 20% 이하는 시·도 승인, 20% 초과부터 30% 이하는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시행, 30%를 초과 시는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시·군은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11.20.까지)

-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

○ 시·도는 관할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제출(11.30.까지)

- 광역 및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

○ 세부시행계획 변경 등 계획변경 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시·군 승인

-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 조정 비율에 따라 해당 주체 승인

* 시·군(시·도)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번

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부지 변경 :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에 집행 가능(다만, 기존시설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은 제외)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른 초과금액은 추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사업자

○ 건축물(육묘장 포함) 등이 있는 경우 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관련 인허가 등은 아래 일정에 맞추어 추진한 후 시·군에 결과 제출

- 실시설계 : 9월말까지

-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 10월말까지

- 관련 인허가 : 12월말까지

○ 자부담 확보 결과를 시·군에 제출(12.15.까지)

- (농협조직) 이사회 회의록(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된 것)

- (농업법인) 총 자부담의 100%를 별도 통장에 입금 후 사본(통장 인감 등록 부분과 입금 금액 표시 부분)과 이사회 회의록(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된 것) 제출

▶ 통장 인감은 법인인감과 시·군 담당자 도장을 병행 등록(자부담을 사업

개시 전에 인출해서 허위서류 제출과 행정기관을 속이는 실수 방지 목적)

○ 시행업체 선정 등은 아래 일정에 맞추어 추진한 후 시·군에 결과 제출

- 계약 및 입찰 관련 일상감사 등 지자체 검토 : 12월말까지

- 교육·컨설팅은 사업추진년도 1월말까지 수의계약 실시

- 시설·장비 및 가공시설 등 시행(납품 및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 사업추진년도 1월말까지

- 시행(납품 및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 사업추진년도 2월말까지

- 사업착수 및 착공 : 사업추진년도 3월초까지

- 시설·장비 등 납품 : 사업추진년도 3월말까지(사업다각화의 가공시설 등은 건축물 준공 전까지)

- 준공 : 사업추진년도 6월말까지(다만, 육묘장은 사업추진년도 4월말까지)

- 건축물 대장 등재 : 사업추진년도 7월초까지(다만, 육묘장은 가설건축물 대장에 5월초까지 등재)

- 건물등기부등본(부기등기) 등재 : 사업추진년도 7월말까지

- 사업완료 : 사업추진년도 11월말까지(시설·장비(육묘장 포함)는 4월말, 사업다각화는 8월말, 교육은 9월말, 컨설팅은 11월말까지)

-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년도 12월초까지(시설·장비(육묘장 포함)는 5월말, 사업다각화는 9월말까지, 교육·컨설팅은 12월초까지)

※ 2년차 이상의 사업도 모든 건축물 및 시설, 장비 등은 일괄 설계·발주·계약·시공 및 납품을 추진하여야 함

※ 「국가재정법」 제23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시행(납품)업체 선정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선정 및

계약 체결

- 입찰 및 개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계약 체결 원칙

※ 수의계약은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에 따라 계약 가능(일반 건설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2천만원 이하.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등)

○ 시행업체의 자격

-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업체는 농정원에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수행업체로 인증한 업체 및 컨설턴트에 한 함(붙임 4 참조)

※ 사업수행 한도 : 업체별 최대 20개소, 컨설턴트별 최대 5개소까지만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 한도 초과 수행, 자부담 대납 등 보조금 부당사용에 관계된 업체 및 현장 모니터링(고객만족도조사 등) 결과 최하위권에 속하는 업체 등은 배제

- 건축물(육묘장 포함)이 포함되었을 경우 시행업체의 자격

▶ 설계 및 감리업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건설 등 관계법령상 자격업체

▶ 설비업체 등 : 건축·건설·전기·통신·소방·환경 등 분야별로 관계 법령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 참여 허용

▶ A/S 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의 사업참여 제한 가능

*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설계·감리·설비업체 등은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사업시행 기준

- 설계·감리 및 기계·장비 선정 등 사업시행

▶ 사업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시공업체가 설계·감리를 할 수 없음)

▶ 사업자가 농협조직인 경우에는 세부시설 설치 전 설계과정에서 각종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농협중앙회(경제지주)와 협의하여야 함

* 비 농협조직은 가급적 전문기관의 자문을 참고하여야 함

▶ 단위기계 및 장비 등은 성능, 형식, 안전성 등에 대해 검정을 거친 모델을 사용(다만, 검정이 완료된 기계·장비는 사용 의무화)

- 성능시험(사일로 형태의 건조·저장시설은 필요시 실시)

▶ 가공시설현대화 및 저온저장시설공사 완료 후에는 사업자 주관으로 성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시설설치(공사완료) →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잔금) 지급

○ 입찰공고 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신속한 발주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 긴급입찰(7 ~ 40일 → 5일) 적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 입찰대행은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영체의 자체 입찰 허용으로 신속한 입찰 및 예산낭비 최소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5. 민간자본이전 참고)

○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및 수확기 이전 조기완공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도 시행업체(시공 및 납품 등) 선정을 위한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 계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은 가능. 다만, 계약은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실시하여야 함

지자체(시·군)

○ 자부담 확보 결과를 시·도에 제출(12.20.까지)

○ 지방비 확보 결과를 시·도에 제출(12.20.까지)

-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예산 편성서(사본)을 3일 이내에 시·도에 제출

○ 준공검사 : 토목·건축부분 준공검사는 시·군 토목·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지자체(시·도)

○ 자부담 확보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2.26.까지)

○ 지방비 확보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2.26.까지)

- 광역 및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예산 편성서(사본)을 3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제출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사업추진년도 1.15.까지)

- 사전준비상황(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시·도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시 보조금 배정(수시)

지자체(시·도)

○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사업추진년도 1.10.까지)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사업추진년도 1.20.까지)

○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시 보조금 배정(수시)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사업자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지자체(시·군)

○ 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안내(12.26.까지)

○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사업추진년도 1.5.까지)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사업추진년도 1.25.까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부결정 조건 이외에도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에게 교부결정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
- 기본규정 제56조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사업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적극행정을 통한 집행을 제고 및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등을 위하여 선금지급 활성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교육·컨설팅지원은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선금 50%를 의무적으로 지급

◀ 선금 지급 활성화기준 ▶

○ 제도개요

-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 조치사항

- 선금지급 확대 :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 다만, 계약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밀어내기식의 선금집행은 지양
- 선금지급 기간 단축 : 14일 이내 → 3일 이내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39호, '18.7.9)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2. 선금 지급대상
 -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나,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가능함
 - ⇒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에 조기집행 목적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해당됨(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330(2016.3.23.))

○ 보조금 집행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6장 집행관리 등에 따라 시행, 집행

- 보조금 사용방식은 e나라도움을 활용하며, 전용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정함
- * 세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부 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확인·집행

○ 연말까지 미 집행한 국고 보조금 예산은 이월 집행 금지

* 다만, 불가피하게 이월 집행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실시

○ 시장·군수 및 사업대상자는 사업의 수행·정산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 의무를 지님

사업자

-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12.31.까지)
- 자금 집행금액에 대한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구비하여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집행하며,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를 e나라도움 및 문서로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생산비 절감율에 대한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는 등 경영장부를 기록·보관해야함

5. 이행점검 및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단계

《사업추진 등 이행점검》

- 농식품부는 공사추진상황, 자금집행의 적절성, 컨설팅업체 모니터링 등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3~5월, 7~9월)

- 점검반 : 농식품부(주관), 시·도, 농정원,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등

* 농정원은 교육·컨설팅업체 인증 점검 및 모니터링 수행

《사업비 정산》

사업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0일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기본규정 제62조)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다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 받은 후 제출

* 보조금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2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 처리 시, e나라도움 등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를 별도 반납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될 때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하고 익년 1월 20일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확인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특히 정산시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을 확정하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후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통보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시장·군수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사업대상자는 중요재산을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사후관리기간 종료 이전까지 변동사항이 발생 시 매년 6월 15일, 12월 15일까지 변동현황을 제출해야함

* (중요재산)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 및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 그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현황이 공시되어야 함.

**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6조) 보조금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증물 * (육묘장, 저장고, 창고, 홍보관, 작업장, 가공·도정공장 등)	준공일부터	10년간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함(보조금법 제3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 * 재산처분 기준 : 기본 규정 제77조제2항
○ 부동산의 증물(건물 내 기계설비 등)	준공일부터	7년간	
○ 무인항공방제기	구입일부터	6년간	
○ 주요 기계·장비 * 광역방제기, 콤팩트, 트랙터, 차량 등	구입일부터	5년간	

○ 모든 시설·장비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를 완료해야 함

* 특히, 특정인의 사유화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설비 등은 중점 관리 필요

《 부기 등기의 내용 》

이 부동산(건물)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 사업대상자는 기본규정 제7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비치 등 시·군의 관리책임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
- 시장·군수는 기본규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일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점검항목 : 세부사업계획 이행, 자금집행 및 중요재산 관리의 적정성 등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처분 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부도·폐휴업·사업포기·사망 또는 1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배재(최대 5년간)와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등이 부과·징수됨

* 보조금법 제30조부터 제33조의3, 기본규정 제78조부터 제88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3931호, '16.1.28) 이후, 보조금 법령 위반에 대한 명단 등의 공포 및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제40조 내지 제43조를 참조

1.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성과가 우수한 사업자는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교육·컨설팅 최대 5년간 연속 지원, 공동영농작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지원, 정부보급종 사전주문을 통한 우선 공급
- 향후, 교육·컨설팅 지원 및 사업다각화 지원에 대한 연차평가를 개발, 개별 경영체 지원에 반영(2021년 사업신청자부터 적용)

2. 2020년 사업신청 등 공지사항

- 2020년 사업신청 세부사항은 별도의 공고('19.1월)를 참조하며,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19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

3. 참고서식

- <붙임 1> 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사업의무량 및 예산산출내역
- <붙임 2>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붙임 3>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붙임 4> 교육·컨설팅 수행업체 인증제도
- [별지 제1호 서식]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세부사업계획서

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사업의무량 및 예산산출내역

- 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수행업체 대상 사업 의무량 검토(안)
 - (교육) 리더/회원농가 대상 각 3회 + 선진지 견학 1회(리더/회원농가 대상 교육과 통합 실시 가능)
 - * 4/4분기 교육·컨설팅 성과보고 및 차년도 추진계획 공유 등 보고회 성격의 교육 필수 실시
 - (컨설팅) 개소 당 10회(8개월 내외), 회당 6시간
 - * 조직진단, 농가조직화 계획 수립 등 전체 컨설팅 내용의 70% 내외 7월까지 완료
- 예산 산출내역(안): 1개소당 30,000천원(보조 90%, 자부담 10%)
 - 교육비 15,100천원(50.3%) + 컨설팅 14,900천원(49.7%) = 30,000천원

< 들녘경영체 개소별 교육·컨설팅 예산내역(안) >

단위: 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교육	- 핵심리더교육: 30명 × 3회 × 64,444원 ≙ 5,800,000원 - 회원농가교육: 100명 × 3회 × 15,333원 = 4,600,000원 - 선진지견학(1회): 4,700,000원 * 강사비, 원고료, 교재, 실습교육비 등 포함(참고1. 참고) * '17년 개발된 표준모델 활용 <필수과정> ①(리더/ 17h) 들녘경영체 및 조직화 이해, 우수 들녘경영체 벤치마킹, 리더 워크숍, 회원농가 관리방안, 운영규약 및 사업계획 수립 등 ②(회원/ 3h) 들녘경영체 이해 및 운영규약 공유 등	15,100
컨설팅	- 1개소, 8개월 수행 기준 * 컨설턴트 인건비, 운영비 등 포함(참고1. 참고) * 조직진단에 기반하여 기초(1단계)→심화(2단계)→고급(3단계) 단계별 컨설팅 실시 * (1단계) 공감대 형성과 농가조직화→ (2단계) 조직화촉진 사업수행→ (3단계) 신사업 추진전략 수립	14,900
합계		30,000

* 교육과 컨설팅 간 사업비 전배 금지(산출내역은 사업의무량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참고 1>

< 들녘경영체 개소별 교육·컨설팅 세부 산출내역(안) >

	구분	세부산출내역	예산(원)
교육	강의비	- (리더) 200,000원 × 1명 × 3회 × 6시간 = 3,600,000 - (회원) 200,000원 × 1명 × 3회 × 3시간 = 1,800,000 * 퍼실리테이터, 원고료 등 포함	5,400,000
	선진지 견학 (1박2일)	- (강의비) 200,000원 × 1명 × 7시간 = 1,400,000 * 1일차 5h, 2일차 2h 기준(퍼실리테이터, 원고료 등 포함) - (숙박비) 30,000원 × 30명 × 1일 = 900,000 - (식비/다과) 10,000원 × 30명 × 4식 = 1,200,000 - (차량, 시설임차비) 600,000원 × 2일 = 1,200,000 ※ 선진지 견학은 리더/회원농가 교육과 통합 추진 가능	4,700,000
	교재	- (리더) 10,000원 × 3회 × 30부 = 900,000 - (회원) 5,000원 × 3회 × 100부 = 1,500,000	2,400,000
	식비	- (리더/회원) 10,000원 × 200명 × 1식 * 다과 포함	2,000,000
	실습교육비	- (리더/회원) 100,000원 × 6회 * 문구용품, 플랜카드 등	600,000
	교육 소계(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포함)		
컨설팅	인건비	(책임급) 6,338,646원 × 8개월 × 1명 × 15% * 총 10회, 회당 6시간 기준	7,606,375
		(연구원) 4,860,388원 × 8개월 × 1명 × 15% * 총 10회, 회당 6시간 기준	5,832,465
	교통비	50,000원 × 2명 × 10회	1,000,000
	책자제작	(보고서 등) 15,372원 × 30부	461,160
	컨설팅 소계(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포함)		
총 계			30,000,000

※ <참고>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18년)

등급	2017년 월 임금	2018년 월 임금	
	(용역 참여율, 50%)	용역 참여율(50%)	용역 참여율(100%)
책임연구원	월 3,110,229원	월 3,169,323원	월 6,338,646원
연구원	월 2,384,881원	월 2,430,194원	월 4,860,388원
연구보조원	월 1,594,213원	월 1,624,503원	월 3,249,006원
보조원	월 1,195,701원	월 1,218,419원	월 2,436,838원

<참고 2>

< 교육프로그램 및 컨설팅 표준모델(예시) >

1. 리더능가 대상 교육프로그램(예)

구분	과정명	교육내용	대상	시간	강사	교육방법
리더 능가 1회차	<왜 지금 들녘경영체인가?> 쌀 산업 발전과 들녘경영체의 시대적 역할	- 쌀 산업 여건 - 들녘경영체 육성 필요성 - 들녘경영체 육성 과제 - 조직화의 시대적 중요성	리더/ 참여 능가	2.0hr	외부 강사	강의
	<들녘경영체 조직수준 이해> 우리 들녘경영체 조직수준 이해	- 들녘경영체 현황분석 결과설명 - 조직진단 결과 공유 - 조직화 강화를 위한 우리 들녘경 영체의 과제와 해결방안 논의 및 전략수립 * 퍼실리테이터 활용한 실습 중심의 참여학습	리더/참 여 능가	4.0hr	외부 강사	참여 학습
선조지 견학 및 리더 워크숍	<우수 들녘경영체 벤치마킹>	- 들녘경영체 우수사례 발표 및 현장견학 - 현장 간담회를 통한 조직운영 노하우 상호공유 및 질의 응답	리더능 가	5.0hr	내부 외부 강사 (컨설팅팀)	견학 (참여학습)
	<리더 워크숍> 우리 들녘경영체 돌아보기	-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소감 공유 우리 경영체의 조직화 수준과 특징점 발견 * 퍼실리테이터 활용한 실습 중심의 참여학습	리더/참 여 능가	2.0hr	외부 강사	참여 학습
리더 능가 2회차	<우리 들녘경영체의 운영 틀 잡기>	- 타 들녘경영체 포함 우수 운영사례 공유 및 핵심성공 요인 도출 - 우리 경영체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전략 수립 - 참여능가 효율적 관리방안 - 조직체계 수립, 조직 운영 방안 마련 - 운영규약 및 사업계획 수립 * 각 과제에 대해서 퍼실리테 이터를 활용한 실습 중심의 참여학습(논의, 전략수립)	리더 능가	4.0hr	외부 강사	참여 학습
계				17.0hr		

2. 참여농가 대상 교육프로그램(예)

구분	과정명	교육내용	대상	시간	강사
회원 농가 교육	<왜, 지금 들녘경영체인가?> 쌀 산업 발전과 들녘경영체의 시대적 역할	- 쌀 산업 여건 - 들녘경영체 육성 필요성 - 들녘경영체 육성 과제 - 조직화의 시대적 중요성	리더 / 참여 농가	1.0hr	외부강사
	<들녘경영체 조직수준 이해하기> 우리 들녘경영체 조직수준 이해	- 들녘경영체 현황분석 결과설명 - 조직진단 결과 공유 - 조직화 강화를 위한 우리 들녘경영체의 과제와 해결방안 논의 및 전략수립	리더 / 참 여 농가	1.0hr	컨설턴트 (내부강사)
	<나와 우리, 들녘경영체 발전을 위한 약속 지키기> 우리 들녘경영체 조직과 운영규약 이해	- 조직운영 체계도 설명 - 들녘경영체 운영규약 설명 - 질의 응답 * 리더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조직체계, 운영규약 등을 공유	리더 / 참 여 농가	1.0hr	컨설턴트 (내부강사)
계				3hr	

3. 교육컨설팅 과제별 세부과업 내용

구분	과제명	세부과업	비고
1	들녘경영체 조직현황진단	01. 들녘경영체 조직현황 진단하기	1년차 필수
		02. 이해관계자 면담 조사하기	
		03. 교육컨설팅 추진방향 설정하기	
2	농가조직화 전략수립	01. 조직화 수준 진단하기	1년차 필수
		02. 참여농가 관리하기	
		03. 조직운영 체계도 작성하기	
		04. 들녘경영체 운영규약 작성하기	
3	농가조직화 교육실행	01. 참여농가 교육계획 수립하기	1.2.3 년차 필수
		02. 참여농가 교육 실행하기	
		03. 참여농가 의식 조사하기	
		04. 교육결과 보고서 작성하기	
4	조직화촉진 사업전략수립	01. 공동경영 사업계획 수립하기	1년차 필수
		02. 고품질 쌀 및 농산물 생산계획 수립하기	
		03. 자금 운영계획 수립하기	
		04. 조직화촉진 사업신청서 작성하기	
5	공동사업 활성화전략수립	01. 공동사업 확대전략 수립하기	2년차 필수
		02. 공동사업 운영계획 수립하기	
		03. 공동사업 참여농가 확보하기	
		04. 공동사업 추진성과 분석하기	
6	신사업 추진전략수립	01. 산업여건과 시장환경 분석하기	3년차 필수
		02. 들녘경영체 현황 분석하기	
		03. 신사업 추진전략 수립하기	
		04. 신사업 추진계획 작성하기	
7	사업성과분석 및 사업계획수립	01. 당해연도 사업성과 분석하기	2.3차년차 필수
		02. 차기년도 사업계획 수립하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협회사법인) 또는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입니까?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인정기준	집단화된 농지가 50ha 이상입니까?(잡곡 전문은 10ha 또는 50ha)		
	참여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 25명 이상입니까?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였습니까?		
	파종·육묘에서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식량산업 종합계획	시·군 단위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을 수립·선정된 지역입니까? (경과규정) : 시설·장비는 '20년 신청자, 교육·컨설팅은 '21년 신청자부터 적용 (잡곡 전문은 '20년 신청자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정부지원 RPC 연계	쌀은 정부지원 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출하하고 있습니까? (정부지원 RPC가 아닌 경우) 농업법인으로 연간 쌀 1,000톤 이상 가공설적이 있는 도정공장을 자체보유하거나, 그러한 도정공장과 계약재배 후 출하하고 있습니까?		
지원 자격 및 요건	조합원 5인(시설·장비는 10인, 다각화는 1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입니까?(잡곡 전문은 다각화만 10명)		
	총 출자액은 (교육·컨설팅) 1억원, (시설·장비) 2억원, (다각화) 3억원 이상입니까? (잡곡 전문은 다각화만 2억원)		
	출자액(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을 확보하였습니까?		
	설립 후 운영실적이 (교육·컨설팅) 1년, (시설·장비) 2년, (다각화) 3년 이상입니까? (잡곡 전문은 다각화만 2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였습니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 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입니까?		
세부 사업별 자격 및 요건	(교육·컨설팅 지원)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		
	(시설·장비 지원)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2년 이상 추진하였습니까? ('19년에 처음 실시하는 경우 상반기에 70% 이상 추진이 가능한가요?) (잡곡 전문은 '21년 신청자부터 적용)		
	(사업다각화 지원)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3년 이상 추진하였습니까? ('19년에 처음 실시하는 경우 상반기에 70% 이상 추진이 가능한가요?) (잡곡 전문은 '22년 신청자부터 적용)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없는 경우) 교육·컨설팅을 다른 유사 사업이나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원 제한 기준	총 지원횟수가 (교육·컨설팅) 5회, (시설·장비) 3회, (다각화) 2회 이내에서 지원 받으려 하십니까?(최근 10년간)	X	X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를 최종 지원년도 이후 2년이 경과하였나요? (‘17년 사업자(‘16년 신청자)부터 적용(‘17년 사업자는 ‘18~‘19년에는 지원 제한, ‘20년부터 지원 가능[사업은 전년도에 신청하므로 ‘19년부터 사업신청 가능])		
	사업신청 후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18년 신청자(포기는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에 신청 철회 및 포기할 경우 ‘19년~‘21년(이월 포기는 ‘23년)까지 지원 제한)		
	사업비를 이월한 이력이 있는 적이 있습니까?(시·군과 사업자 각각 확인)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 사업비가 이월되면 ‘21~‘25년까지 신청 제한))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 한 이력이 있는 지역입니까?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면 ‘20 년~‘21년까지 신청 제한)		
	지방비 확보가 지연(추경 편성 및 다음연도 편성)된 지역(시·군)된 적이 있습니까? (‘20년 지방비 편성부터 적용(‘19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경우는 미 적용하며, 만약 ‘20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지역은 ‘21~‘23년까지 지원 제한[사업신청은 ‘20~‘22년까지 제한])		
	사업신청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이력이 있습니까? (‘19년 사업신청 서류부터 적용(‘19년 신청서류가 허위일 경우 ‘20년~‘24년까지 사업신청 제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 한 적이 있습니까?		
	정부지원 RPC 등과 체결한 출하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있습니까?(컨테이너 형태 사무실 인정)		
	벼 건조·저장 시설 및 쌀 도정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업다각화	건축물 신축·리모델링 시 체험·교육·전시·홍보관은 총 사업비의 최대 30%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숙박시설 및 축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쌀 관련 생산·유통기반 구축은 기존 시설·장비 지원, 쌀 적정 생산 및 RPC 중 심의 통합·규모화를 고려하여 총사업비의 최대 30%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 습니까?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은 각각 총사업비의 최소 5% ~ 최대 10% 한도에서 수립하였습니까?		
	다각화에 수반되는 전문 교육·컨설팅과 공동영농 및 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을 포함하여 수립하였는가?		
	출자·배당·적립, 공동정산 등 회계, 공동경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위한 회계· 법무법인 자문계획 포함 수립하였는가?		
	참여농가의 소속감 부여, 온라인 직거래 등 공동마케팅을 위한 식량작물공동 (들녘)경영체별 브랜드, BI, 상품 포장지 등 개발에 필요한 컨설팅 계획 포함 수립하였는가?		
	홍보, 회계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등 계획 포함 수립하였는가?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본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자체 교육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하였는가?		
	인건비, 유틸비, 종자대 등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통 및 위생시설·장비류는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건축물 및 관련 시설·장비 (육묘장 포함)	간이설계를 실시하였습니까?		
	간이설계도를 최소 3종 이상 검토하였습니까?		
	실시설계가 9월말까지 가능합니까?		
	토목공사는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가공시설에 대해서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입·출고시설은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원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건조시설은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저장시설은 단열처리 기준을 충족하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자동제어시설은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 할 수 있도록 검토되었습니까?		
	품질검사장비는 계량, 성분, 백도, 외관 및 기타 품질분석이 자동처리되어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검토하였습니까?		
	저온저장시설은 단열처리와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연중 15℃ 이하로 원물을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 또는 사일로 형태의 구조로 검토되었습니까?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사업자 명의 여부 확인, 농협은 가등기 완료)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나요?		
	부지에는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이 있나요?		
	부지 성토 및 다지기 공사가 연말 안에 가능합니까?		
관련 인허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되었습니까? (관련 인허가에 금지사항은 없는지 여부 등)			
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여 견폐율, 용적율,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관련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결과를 받았나요?			
농정 심의회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를 받았습니까?		
지방비 (다각화만 해당)	지방비 확보를 위해 시장·군수 방침(예산부서 협조)을 받았나요?		
	지방의원 대상 설명 및 지방의회에 사전 협조를 실시하였나요?		
자부담	자부담 확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구비서류	지침에 명시된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까?		
	1. 신청서		
	2. 세부사업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5. 납세증명서(구. 국세완납증명서)		
	6. 지방세 납세증명서		
	7.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참여 의제)		
	8. 출자액(자본금) 사용내역서(농협 제외)		
	9. 출자액(자본금) 통장 입출금 내역서 사본(농협 제외)		
	10.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11.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12. 사무실 내·외부 사진 및 관련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가설 건축물은 신고서 등, 농협 제외)		
	13. 경영체 소유 부동산 및 농기계 등 목록과 사진		
	14. 공동영농작업단 구성 및 운영현황		
	15. 공동영농일지(최근 2년간)		
	16. 공동육묘장 운영메뉴얼		
	17. 공동육묘일지(최근 2년간)		
	18. 공동방제기 운영메뉴얼		
	19. 공동방제일지(최근 2년간)		
	20. 계약재배 약정서(최근 2년간)		
	21. 농가별 영농일지(최근 2년간)		
	22. 정부지원 RPC 등과의 출하약정서(자체 도정시설 보유시 쌀 가공실적이 1,000톤 이상임을 확인하는 서류)		
	23. 정부지원 RPC 등에 출하내역서(최근 2년간)		
	24. 교육 이수·확인증		
	25. 참여농가 명부		
	26. 공동영농 농지현황		
	27. 들녘 항공사진(면 단위 축적기준)		
	28. 논 타작물 생산현황(지원금 지급내역 등)		
	29. 동계 답리작 생산현황(직불금 지급내역 등)		
	30.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류실적(협회 가입, 양해각서, 농기계 대여 등)		
	31. 내부 운영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록(최근 2년간)		
32.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규약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33.	수익환원 내역(최근 2년간)		
34.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출자내역 포함, 농협 제외)		
35.	표준생산매뉴얼		
36.	농약안전사용기준 매뉴얼		
37.	생산관리자 지정 및 운영현황(최근 2년간)		
38.	계약재배 약정 현황(최근 2년간)		
39.	재해보험 가입현황		
40.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운영규정, 재산관리 표지 부착, 운영일지 등)		
41.	경영일지(수입·지출 관리내역서)(최근 2년간)		
42.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 또는 납품 실적		
43.	GAP 생산단지 지정서		
44.	친환경인증서		
45.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리더교육 수료증		
46.	자부담금 확보계획서		
47.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48.	비교 견적서(최소 3개소 이상, 교육·컨설팅은 제외)		
49.	(건축물 관련)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및 전경사진)		
50.	(건축물 관련)지적도		
51.	(건축물 관련)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52.	(건축물 관련)토지이용계획확인원		
53.	(건축물 관련)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54.	(건축물 관련)기존 건축물대장(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55.	(건축물 관련)간이 설계도(최소 3종 이상)		
56.	(건축물 관련)조감도		
57.	(지자체 준비서류)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58.	(지자체 준비서류)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 음영이 아닌 곳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 및 선정 제외(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구분 : 교육·컨설팅 지원(서면평가, 우선순위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운영 현황 (32점)	10	○ 공동영농 발전정도 - 공동영농작업 조직체 구성 여부(5점), 수행작업 종류*(개당 1점) * ① 공동육묘, ② 공동이앙, ③ 공동방제, ④ 공동수확, ⑤ 공동출하
	10	○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컨설팅 참여 실적 - 대표 또는 관리자의 '18~'19년 농식품부 지정교육* 이수(5점)와 참여농가 교육 이수(5점)**를 구분, 해당사항* 입증 시 점수 합산 * '18~'19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설명회·워크숍,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리더 교육(농정원 시행) 중 1회 이상 참석 시 5점 인정 ** 인정되는 교육의 건 별 '참여 농업인수/전체 농업인 수 × 교육 일수'의 총합, (배점기준) 1~2일 미만 3점, 2~3일 미만 4점, 3일 이상 5점
	4	○ 영세·소농 참여를 반영한 참여농가의 평균 경작면적 * 1.5ha 미만(4점), 1.5~2.0ha 미만(3점), 2ha 이상(2점), 2ha 이상(1점)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 생산 현황 ① 논 타작물을 공동경영면적의 5% 미만(1점), 5~10%(2점), 10~15%(3점), 15% 이상(4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② 동계작물(밀·보리·사료작물 등)을 공동경영 면적의 20% 이상(1점), 30% 이상(2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2	○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최근 1년간 교류실적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1점씩 부여(최대 2점)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관련 협회·협의회 활동, ②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자매결연, MOU 등 체결 후 교류행사 개최, ③ 영농과정에서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장비대여 등 교류(증빙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인정)
2. 운영 형태 (26점)	4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 운영위원회·협의회 운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협의기구 설립 여부(2점), 최근 1년간 회의개최 입증 여부(2점)를 구분, 입증 시 점수 합산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규약의 내실화 - 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7	○ 운영 수익에 대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 혜택('농협' 평가 제외)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7점 부여 * ① 출자배당 등 현금지급, ② 비료·피복 등 현물지급, ③ 참여농가 영농교육·선진지 견학 ④ 운영수익 등을 활용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투자, ⑤ 영농작업료 할인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출자입증 여부('농협' 평가 제외) - 5인 이상(1점), 6인(2점), 7인(3점), 8~9인(4점), 10~14인(5점), 15인 이상(6점)
	(6.5)	○ 농협에 대한 평가 제외요소(2가지)에 대해 일괄 '6.5점 농협에 부여
3	○ 공동경영농지의 집단지화 정도 - 2개 이하 단지로 구성(3점), 2개 초과 단지로 구성(1점)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3. 품질 향상 및 경영 안정 노력 (15점)	6	○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 건당 2점 부여, 점수 합산 * ① 생산 매뉴얼 구비, ② 생산관리 과정 또는 제재사항 존재, ③ 고품질 생산에 따른 인센티브(농협·RPC·경영체의 수확량 감소에 따른 보전금, 지자체 등의 보조사업 우선선정 등) 여부	
	5	○ RPC 등과 단지 내 단일품종 계약재배 비율 - 입증이 가능한 공동경영면적 대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계약재배 면적 * ① 10~20% 미만 1점, ② 20~30% 미만 2점, ③ 30~40% 미만 3점, ④ 40~50% 미만 4점, ⑤ 50% 이상 5점	
	4	○ 공동경영면적의 재해보험 가입면적 비율 - 가입면적 비율 30% 이상(2점), 50% 이상(4점)	
4. 지자체 평가	4-1. 논 타작물 재배 참여 (5점)	5	○ '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실적 등 쌀 수급안정 기여 - 공동경작 면적 내 논 타작물 재배 면적 비율로 산출('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면적, 농지매입사업, 간척지 임대 조건 등으로 미참여·휴경 면적 포함) * 계산식 : 신청비율 ÷ 0.4 × 0.1점(0.4% 당 0.1점, 최대 5점)
		4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 - 경영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4점 * 예시) 공동영농참여정도가 최대 80%일 경우, 0.8×4=3.2점 부여. 공동영농 참여 입증이 안 될 경우 "0"점 부여
	4-2. 자체 평가 (12점)	3	○ 국가·지자체의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 적정 여부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개별 1점 부여, 점수 합산 * ① 재산의 운영규정 등 제정 여부, ② 재산에 안내 '표지' 부착 여부, ③ 시설·장비의 작업 및 운용 일지 작성 여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 및 제73조 참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 보조사업 지원이력이 없을 시 일괄 1.5점 부여
		3	○ 최근 1년간 경영일지 작성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에 따라 개별 1점 부여, 점수 합산 * ① 수입, ② 지출, ③ 영농작업의 기록 여부
		2	○ 보조사업 대상자 적합성(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 기 보조사업의 실적, 성과, 수익배분, 사업연계 등을 고려 자체판단
5. 가점 (6점)	(6)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개별 가점 2점(합산) * ①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② GAP 농산물 생산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③ 공동경영면적의 30% 이상 친환경인증 면적인 경우	
6. 종합평가	10	○ 사업계획서 충실성 등 종합평가 *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부여 예정	
합계	100점 (6점)		

□ 구분 : 시설·장비 지원(서면평가, 현장평가 대상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운영현황 (14점)	4	○ 영세·소농 참여를 반영한 참여농가의 평균 경작면적 * 1.5ha 미만(4점), 1.5~2.0ha 미만(3점), 2ha 이상(2점), 2ha 이상(1점)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 생산 현황 ① 논 타작물을 공동경영면적의 5% 미만(1점), 5~10%(2점), 10~15%(3점), 15% 이상(4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② 동계작물(밀·보리·사료작물 등)을 공동경영 면적의 20% 이상(1점), 30% 이상(2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4	○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최근 1년간 교류실적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2점씩 부여(최대 4점)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관련 협회·협의회 활동, ②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와 자매결연, MOU 등 체결 후 교류행사 개최, ③ 영농과정에서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장비대여 등 교류(증빙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인정)
2. 운영형태 (20점)	4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 운영위원회·협의회 운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협의기구 설립 여부(2점), 최근 1년간 회의개최 실적 입증 여부(2점)를 구분, 입증 시 점수 합산
	4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규약의 내실화 - 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6	○ 운영 수익에 대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 혜택(‘농협’ 평가 제외)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6점 부여 * ① 출자배당 등 현금지급, ② 비료, 피복 등 현물지급, ③ 참여농가 영농교육·선진지 견학 ④ 운영수익 등을 활용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투자, ⑤ 영농작업료 할인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출자여부(‘농협’ 평가 제외) - 10인 이상(1점), 11인(2점), 12인(3점), 13인(4점), 14인(5점), 15인 이상(6점)
	(6)	○ 농협에 대한 평가 제외요소(2가지)에 대해 일괄 ‘6점’ 농협에 부여
3. 품질향상 및 경영 안정노력 (16점)	6	○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 건당 2점씩 부여, 점수 합산 * ① 생산 매뉴얼 구비, ② 생산관리 과정·제재사항 존재, ③ 고품질 생산에 따른 인센티브(농협·RPC·경영체의 수확량 감소에 따른 보전금, 지자체 등의 보조사업 우선선정 등) 여부
	6	○ RPC 등과 단지 내 단일품종 계약재배 비율 - 입증이 가능한 공동경영면적 대비 단일품종 계약재배 면적 * 10% 미만 1점, 10~20% 2점, 20~30% 3점, 30~40% 4점, 40~50% 5점, 50% 이상 6점
	4	○ 공동경영면적의 재해보험 가입면적 비율 - 가입면적 비율 30% 미만 1점, 30~40% 2점, 40~50% 3점, 50% 이상 4점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4. 시설·장비 지원여건 (10점)	8	○ 신청 시설·장비의 공동영농활용 적합성 - 타작물(밭작물) 전환 전용장비(8점), 전용+겸용장비(6점), 겸용장비(4점), 벼(충체벼 제외) 재배 전용장비(2점)	
	2	○ 공동경영농지의 집단화 정도 - 2개 이하 단지로 구성(2점), 2개 초과 단지로 구성(1점)	
5. 지자체 평가	5-1. 논타작물 재배참여 (10점)	10	○ '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실적 등 쌀 수급안정 기여 - 공동경작 면적 내 논 타작물 재배 면적 비율로 산출('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면적, 농지매입사업, 간척지 임대 조건 등으로 미참여·휴경 면적 포함) * 계산식 : 신청비율 ÷ 0.2 × 0.1점(0.2% 당 0.1점, 최대 10점)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 - 경영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6점 * 예시) 공동영농참여정도가 최대 80%일 경우, 0.8×6=4.8점 부여. 공동영농 참여 입증이 안 될 경우 "0"점 부여
	5-2. 자체평가 (16점)	6	○ 최근 1년간 경영일지 작성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에 대해 개별 2점씩 부여, 점수 합산 * 신청단체의 최근 1년간 ① 수입, ② 지출, ③ 영농작업의 기록 여부
		4	○ 보조사업 대상자 적합성 (매우우수 : 4점, 우수 : 3점, 보통 : 2점, 미흡 : 1점, 매우미흡 0점) - 기 보조사업 수혜 정도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 실시 * 보조사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 최근 5년간·최대 3회까지 동일한 내용 및 대상의 자본보조금 지원조건 내에서 판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6. 식량산업 종합발전 계획수립 (4점)	4	○ 시·군 단위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 수립 여부 - 수립·선정(4점), 수립·미선정(2점), 수립 중(1점), 미수립(0점)	
7. 가점 (8점)	(8)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개별 가점 2점(합산) * ①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② GAP 농산물 생산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③ 공동경영면적의 30% 이상 친환경인증 면적인 경우, ④ 대표 또는 관리자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리더 교육(농정원 시행) 수료 여부	
8. 종합평가	10	○ 사업계획서 충실성 등 종합평가 *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부여 예정	
합계	100점 (8점)		

□ 구분 : 시설·장비 지원(현장평가, 우선순위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역량평가 (30점)	2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이해, 역량, 실적, 성과 등에 대한 현장평가 - 5개 요소*(개별 4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 및 사업의 이해도(공동영농 조직 구성·운영, 논 타작물·답리작, 고품질 생산 등 농정시책에 대한 입장) ②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공동영농활동 내용 및 추진 의지(농기계 공동이용 등 공동영농작업 형태 및 실적, 규모 대비 활동정도) ③ 교육·컨설팅 추진 실태 및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 접목 성과 ④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 이후 성과 창출 여부 ⑤ 생산비 기록 등 경영일지 작성 및 비치 여부
	1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진 역량 (매우우수 : 10점, 우수 : 8점, 보통 : 5점, 미흡 : 2점, 매우미흡 0점) - 식량산업 여건변화에 대한 운영진 면접심사로 평가
2. 지원 시설·장비의 적정성 (30점)	10	○ 국가·지자체의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 적정 여부 - 3개 요소(개별 3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모두 해당 시 10점 부여 * ① 재산의 운영규정 등 제정 여부, ② 재산에 안내 '표지' 부착 여부, ③ 시설·장비의 작업 및 운용 일지 작성 여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 및 제73조 참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 보조사업 지원이력이 없을 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소유의 재산관리 적정성 여부로 대체, 해당없음 시 5점 부여
	2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신청 시설·장비의 지원대상으로 적절성 - 타작물 전환 전용장비, 전용+겸용장비, 겸용장비, 벼(총체벼 제외) 재배 전용장비 여부 등을 현장점검을 통해 필요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
3.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의지 (40점)	4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발전 가능성 평가 - 3개 요소*(개별 13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모두 해당 시 40점 부여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향후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②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계획 수립 여부(쌀 생산이외의 논 타작물 전환, 가공·체험·관광 등 사업의 다각화 여건 및 계획) ③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자체 노력 실행 여부(조직화 노력, 들녘단위 농산물 판매촉진 활동 등)
4. 평가대상 제외		○ 현장평가 과정에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 즉시제외 * ①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공동농업 경영 실적이 없는 등 지원자격 및 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거나, 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③ 거짓 신청 사실이 확인된 경우 (좋은 평가를 위한 지원품목 거짓신청 포함)
합계	100점	

□ 구분 : 사업다각화 지원(서면평가, 현장평가 대상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운영현황 (14점)	4	○ 영세·소농 참여를 반영한 참여농가의 평균 경작면적 * 1.5ha 미만(4점), 1.5~2.0ha 미만(3점), 2ha 이상(2점), 2ha 이상(1점)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 생산 현황 ① 논 타작물을 공동경영면적의 5% 미만(1점), 5~10%(2점), 10~15%(3점), 15% 이상(4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② 동계작물(밀·보리·사료작물 등)을 공동경영 면적의 20% 이상(1점), 30% 이상(2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4	○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최근 1년간 교류실적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2점씩 부여(최대 4점)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관련 협회·협의회 활동, ②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자매결연, MOU 등 체결 후 교류행사 개최, ③ 영농과정에서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장비대여 등 교류(증빙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인정)
2. 운영형태 (20점)	4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 운영위원회·협의회 운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협의기구 설립 여부(2점), 최근 1년간 회의개최 실적 입증 여부(2점)를 구분, 입증 시 점수 합산
	2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규약의 내실화 - 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4	○ 운영 수익에 대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 혜택('농협' 평가 제외)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4점 부여 * ① 출자배당 등 현금지급, ② 비료, 피복 등 현물지급, ③ 참여농가 영농교육·선진지 견학 ④ 운영수익 등을 활용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투자, ⑤ 영농작업료 할인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출자여부('농협' 평가 제외) - 15인 이상(1점), 16~17인(2점), 18~19인(3점), 20~21인(4점), 21~22인(5점), 23인 이상(6점)
	(5)	○ 농협에 대한 평가 제외요소(2가지)에 대해 일괄 5점 농협에 부여
	4	○ 수입·지출 등 결산의 투명성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2개 요소(개별 2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 ① 수입·지출의 기록정리 제출, ② 이사회 등 참여농가 보고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3. 품질향상 및 경영안정노력 (16점)		6	○ 쌀 수급안정 등을 고려한 쌀 대체작물(콩·감자 등), 조사료 등 타작물 생산구축 여부 - 신청당시 쌀 대체작물을 재배 중에 있고 확대 계획을 바탕으로 신청한 사업계획인 경우
		6	○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 개당 2점 * ① 생산 매뉴얼 구비, ② 생산관리 과정·제재사항 존재, ③ 고품질 생산에 따른 인센티브(농협·RPC·경영체의 수확량 감소에 따른 보전금, 지자체 등의 보조사업 우선선정 등) 여부
		4	○ 공동경영면적의 재해보험 가입면적 비율 - 가입면적 비율 30% 미만 1점, 30~40% 2점, 40~50% 3점, 50% 이상 4점
4. 지자체 평가	4-1. 논타작물 재배참여 (10점)	10	○ '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실적 등 쌀 수급안정 기여 - 공동경작 면적 내 논 타작물 재배 면적 비율로 산출('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면적, 농지매입사업, 간척지 임대 조건 등으로 미참여·휴경 면적 포함) * 계산식 : 신청비율 ÷ 0.35 × 0.1점(0.35% 당 0.1점, 최대 5점)
	4-2. 자체평가 (14점)	8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 - 경영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8점 * 예시) 공동영농참여정도가 최대 80%일 경우, 0.8×8=6.4점 부여. 공동영농 참여 입증이 안 될 경우 "0"점 부여
		6	○ 최근 1년간 경영일지 작성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에 대해 개별 1점 부여, 점수 합산 * 신청단체의 최근 1년간 ①수입, ②지출, ③영농작업의 기록 여부
	5. 지원 적합성	8	○ 신청 시설·장비 등의 적합성 - 타작물 관련 전용(8점), 전용+겸용(6점), 겸용(4점), 벼(총체벼 제외) 재배 전용(2점)
	6. 식량산업 종합발전 계획수립 (8점)	8	○ 시·군 단위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 수립 여부 - 수립·선정(8점), 수립·미선정(5점), 수립 중(2점), 미수립(0점)
	7. 가점 (8점)	(8)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개별 가점 2점(합산) * ①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② GAP 농산물 생산단지 지정받은 경우, ③ 공동경영면적의 30% 이상 친환경인증 면적인 경우, ④ 대표 또는 관리자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리더 교육(농정원 시행) 수료 여부
	9. 종합평가	10	○ 사업계획서 충실성 등 종합평가 *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부여 예정
	합계	100점 (8점)	

□ 구분 : 사업다각화 지원(현장 및 발표평가, 우선순위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사업추진 의지·역량 여건(40점)	1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역량 및 외부자원의 반영 - 조직·인력구성 등 내부여건에 대한 고려와 특산물·어메니티 등 지역자원의 연계성을 반영한 계획 여부
	1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추진 실적 및 계획 우수성 - 조직화, 다각화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실적 및 계획
	10	○ 구성원 참여정도 - 계획수립 시 조합원 등 다수의 참여농업인 의견 반영
	10	○ 계획 수립 시 시·군의 농정정책의 반영 등 지자체 참여
2. 사업계획의 정책부합성 및 충실도 (40점)	20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 연차별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및 실제운영 가능성
	10	○ 사업계획서상 사업다각화를 통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비전, 성과목표·계획의 적정성 - 사업다각화를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명확한 목표 설정
	10	○ 참여농가 및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기대효과
3. 지원 적합성	10	○ 신청 시설·장비 등의 적합성 - 타작물 관련 전용(8점), 전용+겸용(6점), 겸용(4점), 벼(총체 벼 제외) 재배 전용(2점), 기존 시설·장비와의 연계성(2점 추가)
4. 식량산업 종합발전 계획(10점)	10	○ 시·군 단위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과의 연계성 (매우우수 : 10점, 우수 : 8점, 보통 : 6점, 미흡 : 4점, 매우미흡 2점)
5. 평가대상 제외		○ 발표평가 과정에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 즉시제외 * ①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공동농업경영 실적이 없는 등 지원자격 및 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거나, 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③ 거짓 신청 사실이 확인된 경우(평가만을 위해 거짓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포함)
합계	100 점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잠곡분야 평가지표

평가항목		등급					등급심사기준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1. 사업 계획의 적정성 (50점)	1-1. 해당 품목의 시장경쟁력(10)	10	8	6	4	2	① 해당 품목이 국내 수요기반, 품질, 가격 등을 감안시 시장 경쟁력 및 성장가능성이 있는가?
	1-2. 타 지역 대비 해당 지역 품목의 경쟁력(10)	10	8	6	4	2	① 타 지역 대비 해당 지역의 품목이 품질, 가격, 브랜드 등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가?
	1-3. 사업목표의 명확성(5)	5	4	3	2	1	① 해당품목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 농업혁신 차원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가? ② 사업목표는 경영체의 역량과 해당작물의 시장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되었는가?
	1-4. 사업 추진전략의 적정성(10)	10	8	6	4	2	① 생산·가공·유통·홍보를 연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② 최종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사업목표 및 추진일정(로드맵)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1-5. 자금 투자계획 적정성(5)	5	4	3	2	1	① 사업계획서 상 제시된 연차별 투융자계획이 적절한가? (금액, 재원 확보 방식 등) ② 세부 사업별 산출근거, 지원단가가 명확하고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투자규모 적정성 등)
	1-6. 신청 시설·장비 등의 적정성(10)	10	8	6	4	2	① 신규시설·장비의 설치, 기존 시설·장비의 활용, 지역 내 시설·장비의 연계 활용 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중복 투자 등) ② 개별 시설·장비 이용수준을 넘어선 종합적인 시설·장비 활용 계획의 유무
2. 사업 추진 역량의 충분성 (40점)	2-1. 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 (15)	10	8	6	4	2	① 경영체의 조직기반이 충분한가? (사업경험, 사업규모, 관내 생산량 대비 물량 점유율, 조직 운영체계, 확고한 의지·비전 등)
	2-2. 생산계획 및 생산성 향상(10)	5	4	3	2	1	② 시·군 내 해당 품목 농가에 대한 조직화 수준이 충분한가? (관내 해당품목 생산농가 대비 계약재배 참여율, 관리체계 등)
		5	4	3	2	1	① 생산면적의 규모화, 단지화 여부 ② 생산비, 노동력 절감을 위한 적정 수준의 시설·장비 및 재배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2-3. 판로 확보 및 홍보·마케팅 계획(10)	10	8	6	4	2	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품종, 재배관리, 친환경인증 등) ② 대량수요처 확보 등 생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③ 홍보, 마케팅 등 판로 확대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2-4. 성장 가능성(5)	5	4	3	2	1	① 사업기반과 역량을 고려할 때 경영체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3. 농정 거버넌스 기반 (10점)	3-1. 시·군단위 식량 산업종합발전 계획 연계성(5)	5	4	3	2	1	① 시·군단위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과 해당 품목의 연계성 여부
	3-2. 농정 및 사업 조직간 협력 체계의 충분성 및 지자체장의 의지(5)	5	4	3	2	1	① 경영체 등과 지자체가 농정 파트너로서의 협력체계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② 해당 품목 및 경영체에 대한 지자체장의 육성·지원의지가 충분한가?
4. 가점	4. 가점(10)						① 수급조절 등 정책 협조도 및 수행능력
합계	100점						

교육·컨설팅 수행업체 인증제도

I.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조직화 촉진을 위해 사업 이해와 조직화 컨설팅 역량을 갖춘 컨설팅업체를 인증·활용하여 교육컨설팅 사업 내실화·활성화 도모

□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추진방향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컨설팅업체 인증기준 설정 시 농업경영컨설팅 등 타 사업을 참고하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
 - 컨설팅업체 기본 자격요건을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발표심사 시 조직화, 공동농업경영 이해, 수행역량 등 심층적인 심사 실시
- 서면·현장평가, 발표심사, 최종인증심의 등 전문가를 활용한 단계별 심사를 통해 조직화에 대한 이해와 수행역량을 갖춘 컨설팅업체 인증
- 컨설턴트는 컨설팅업체 인증 시 자격수준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심사
 - 컨설턴트 검증기준에 부합하는 전문 컨설턴트가 업체당 최소 2인 이상(인증신청자격)이어야 함
- 인증제도 관련 컨설팅업체 대상 간담회 및 설명회를 실시, 의견 수렴과 제도 설명 등을 통해 인증제의 적용성과 수용성 제고
 - 공고 이후 컨설팅업체 대상 인증제도 설명을 위한 설명회 실시
- 인증컨설팅업체는 농정원이 주관하는 설명회·워크숍(4시간 이상) 의무 참여
- 인증업체 풀을 시·도, 시·군·구와 선정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 제공하여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업체 매칭 시 활용토록 의무화
 - * '19년부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수행업체로 인증한 업체 및 전문컨설턴트에 한하여 사업 참여 가능

○ 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는 서면·현장평가를 제외하고, 조직화 및 공동농업 경영에 대한 이해, 수행역량 등을 컨설팅업체 발표를 통해 심사하여 최종인 증심의위원회에서 확정

* 심사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신청 필수서류 제출)하여 업체 부담 완화

○ 컨설팅 품질 향상 및 적절한 경쟁체제 유지를 위해 업체 및 컨설턴트별 사업량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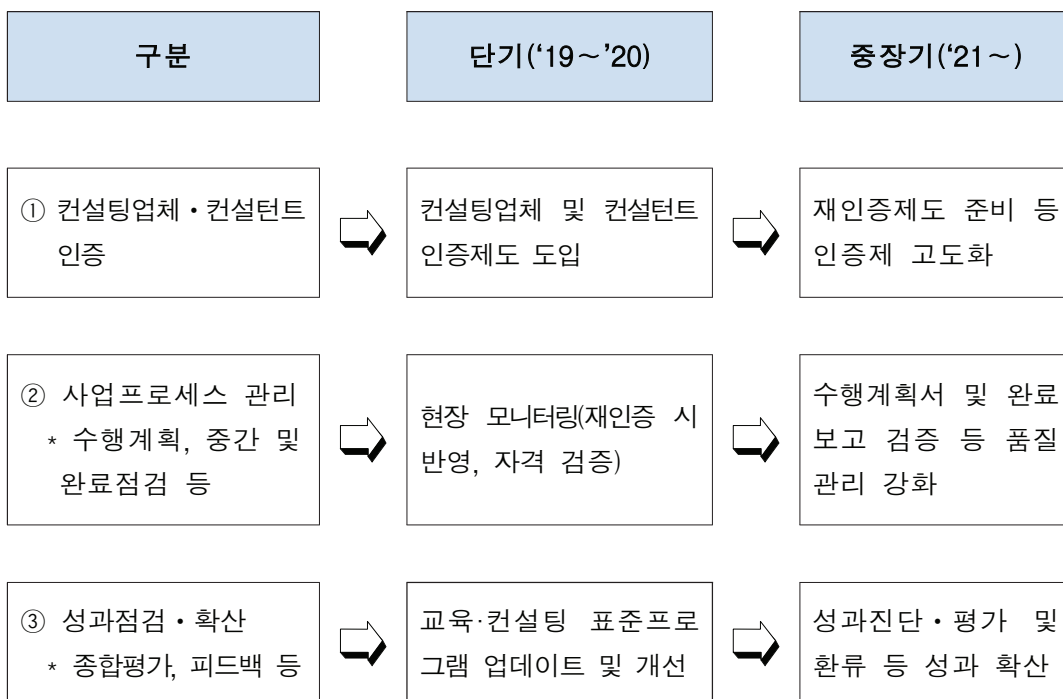
* 예) 업체별 20개소, 컨설턴트별 5개소 이내 등

○ 인증은 매년 운영하되,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4분기 실시

○ 재인증은 2년마다 실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교육·컨설팅 품질 제고

* 업체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재인증 평가 시 결과 반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업체 인증 추진방안 >



* 예산·인력 등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단기·중장기 과제를 구분, '19년도 사업에는 컨설팅업체 인증 및 컨설턴트 검증을 우선 적용('18년 인증 실시)

II. 세부 추진계획

□ 추진대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컨설팅 업체(신규/재인증)
 - * 신규인증 후 2년이 경과하여 인증이 만료된 업체는 재인증심사 실시

□ 추진절차

- 공고·접수(10월) → 인증심사(서면·현장·발표, 11월) → 최종인증심의(12월)

- ① 신규인증: 1차(서면·현장평가) → 2차(발표심사) → 3차(최종인증심의)
- ② 재인증: 1차(서면평가) → 2차(최종인증심의)

* 사업설명회는 공고 이후 1주 내외 실시

□ 신청자격

- 신규인증: 신청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컨설팅업체
 - * 제출된 증빙자료를 근거로 심사 실시

- ① (설립목적)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을 필하고 사업목적에 컨설팅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② (업체업력) 회사업력 2년 이상으로 최근 2개년도('16~'17년) 결산을 마친 업체
- ③ (보유인력) 전문 컨설턴트 2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 *분야별 최소요건(경영분야 1, 농업기술분야 1)을 충족하는 업체

* (전문컨설턴트) 컨설턴트 검증기준**을 획득한 상근인력(4대보험 납입 근로자)으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지원 컨설팅업체 인증계획'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경영분야 1인) 경영분야 전공자 및 해당 분야 컨설팅 경력자
- (농업기술분야 1인) 농업기술분야 전공자 및 해당분야 컨설팅 경력자

** 컨설턴트 검증기준: 컨설팅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학력 등을 종합심사하여 60점 이상인 자(60점 미만, 40점 이상일 경우는 컨설턴트 활동은 가능하나 전문 컨설턴트로는 인정 불가(일반컨설턴트))

- ④ (수행실적) 최근 1년간 총 계약금액 기준 5천만원 이상의 컨설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전 산업분야 컨설팅 수행실적 모두 인정)
- ⑤ (재무건전성)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필하거나 재무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업체

○ 재인증: 인증기간(2년)이 만료 예정인 컨설팅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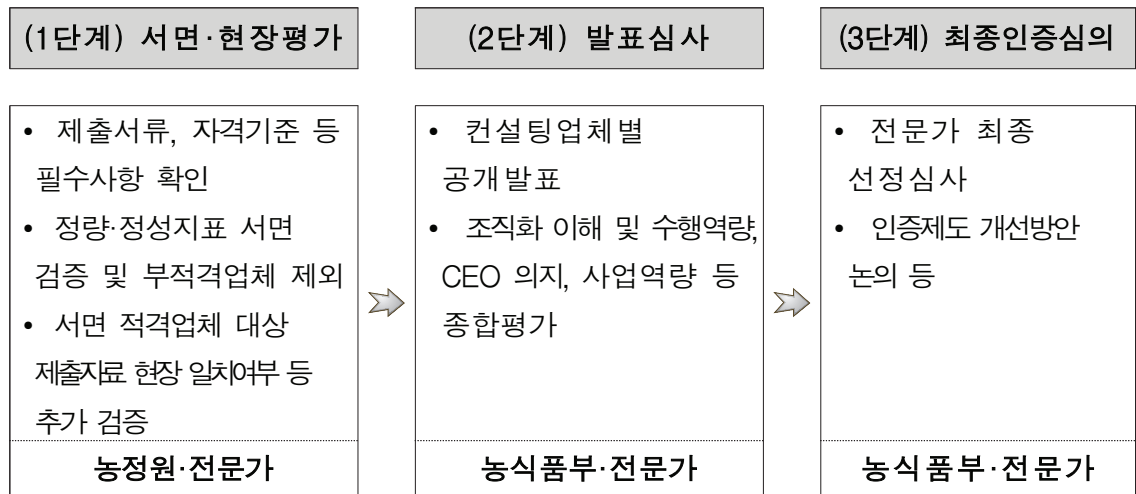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지원 사업 수행업체 재인증은 '21년부터 적용('19년 신규인증업체 대상)

① (인증만료) 인증기간 2년을 경과하여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업체

- * 인증신청기간 내 재인증신청서(일체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한함
 - 컨설팅업체별 인증기간 동안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컨설팅지원사업의 컨설팅 수행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

□ 심사방법

■ 신규인증



○ (1단계) 서류 및 현장점검을 통한 인증평가(농정원·전문가)

- 제출자료 토대로 기본요건 충족, 필수서류 제출여부, 충실성 등 종합평가
- 전문가, 농정원의 역할분담을 통해 심층평가(서면: 전문가 + 현장: 농정원)

<서면평가>

- 전문가를 통해 사업여건 및 조직안정성 등 기본 자격요건을 평가
 - * 수행실적, 매출액, 구성인원, 재무건전성, 제출자료의 신뢰성, 사업체계성 등 정량·정성 평가

- 농정원은 회계법인 등을 통해 정량지표를 사전검증하고, 전문가는 최종적으로 적격 여부를 종합평가
- 필수서류 미제출, 서면평가 정량 기준요건(60점 미만), 정성지표 미흡 등 자격 미달 시 탈락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업체 인증 서면 평가표 참조

<현장평가>

- 농정원 사업담당자는 서면평가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제출자료의 현장 일치 여부 등 추가 검증 및 현장평가
- 서면 제출자료와 불일치, 확인 불가 등 부적격 사안 발생 시 탈락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업체 인증 현장 평가표 참조

○ (2단계) 컨설팅업체 발표를 통한 인증심사(농식품부·전문가)

- 외부전문가를 활용, 발표심사 실시(적/부 평가)
- 조직화 및 공동농업경영에 대한 이해, 수행역량, 사업수행의지 등 정성지표 심사
 - * 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는 서면·현장평가를 제외하고, 발표심사 실시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업체 인증 발표 심사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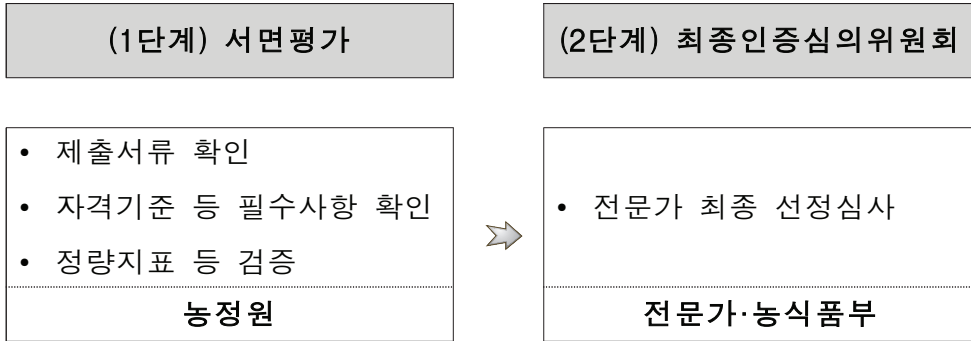
○ (3단계) 최종인증심의위원회(농식품부·전문가)

- (위원회구성) 농식품부, 관련 전문가 등 5인 내외로 구성
- (심의내용) 인증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인증업체 확정
- (심의결과) 서면·현장 및 발표심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최종 인증

< 최종 신규 인증 >

① 서면·현장평가(60점, 보통 이상) → ② 발표심사(적/부) →
 ③ 최종인증심의위원회(최종 선정)

2 재인증



○ (1단계) 서류점검을 통한 인증평가(농정원)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컨설팅 인증업체 신청 서류의 전문성, 사업실적, 인력구성, 재무건전성 등 평가
- * 필수서류 미제출, 서류평가 기준요건(60점) 등 자격 미달 시 인증대상 제외

○ (2단계) 인증심의위원회(농식품부·전문가)

- (인증위원회 구성) 컨설팅 관련 분야별 전문가 5인 내외 구성
- (심의내용) 인증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인증업체 확정

(수행실적) 인증기간(2년)동안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컨설팅 실적
3건 미만인 경우 인증취소

- (심사결과) 심사결과 **60점 이상** 인증(60점 미만 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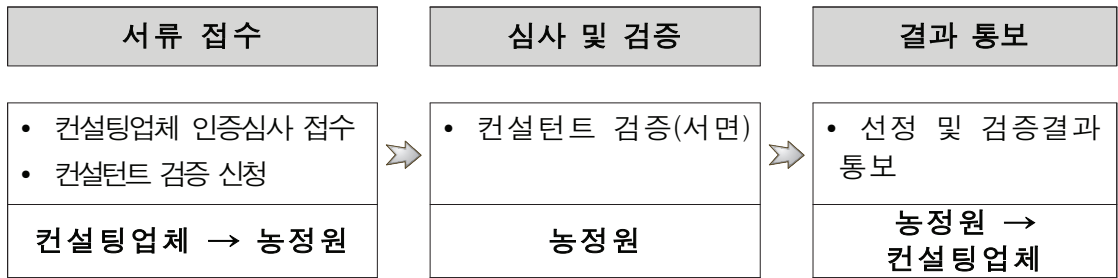
○ (현장 모니터링) 인증 기간('19~'20년) 중 업체별 1회 이상 현장 모니터링 필수 실시(농식품부, 농정원)

- 현장 모니터링 결과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의 경우 재인증 **최종심의 시 점수와 관계없이 재인증 자격 재검토**

< 재인증 >

① 현장모니터링 → ② 서면 인증평가 → 인증심의위원회(적격 여부)

□ 컨설턴트 검증



○ **추진목적:** 컨설팅업체 인증 시 소속 컨설턴트 검증을 실시, 전문 컨설턴트 발굴 및 풀 관리를 통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품질 제고

○ **추진대상:** '19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인증 희망업체 소속 컨설턴트

○ 검증기준

- 컨설턴트는 컨설팅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자로서 학력 및 경력, 컨설팅 실적 등을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검증
- * **컨설팅 경력이 1년 미만인 자**는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없으나, **컨설팅 보조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에 참여가능한 컨설턴트는 최소 4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업체 인증 시 신청자격에서 인정되는 **'전문컨설턴트'(최소 2인)는 60점 이상**을 득한 자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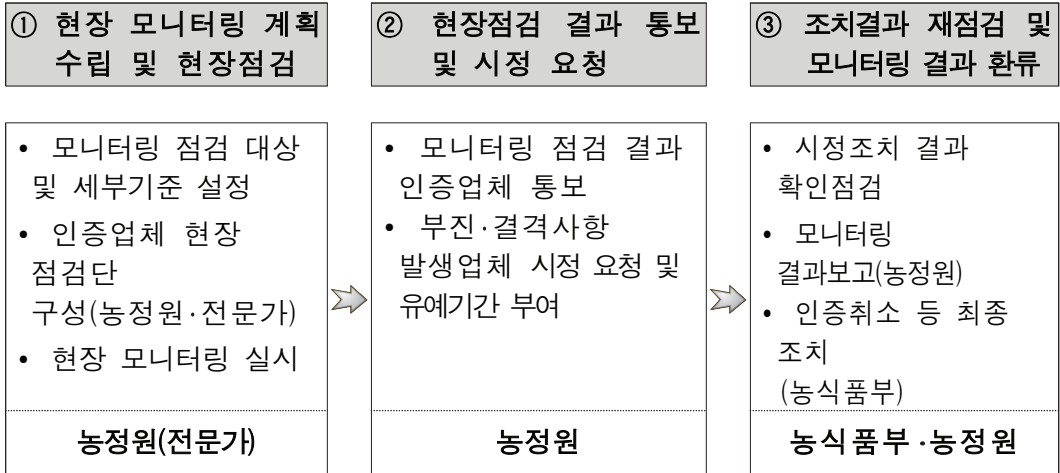
* **평가지표 및 기준 :** 컨설팅 경력(40), 학력 및 자격(30), 컨설팅 실적(30)

- 검증은 컨설턴트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반기별로 지속 실시할 계획이며, 신규 컨설턴트 채용, 이직, 기존 컨설턴트 이력 수정 등 소속 컨설턴트의 변경사항 발생 시 컨설턴트 검증 요청

- 컨설팅업체 재인증 시 신규 컨설턴트 참여 또는 기존 컨설턴트의 경력·실적 및 학력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증 요청(기존 컨설턴트의 경우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컨설턴트 명단과 재직 관련 서류 제출로 같음)

□ 사후관리

○ 인증기간 중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1회 이상)하여 사업 품질관리 및 개선



① **(현장 모니터링)** 농정원은 현장 모니터링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모니터링 세부 기준을 설정,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컨설팅업체 점검

* 예) 인증 조건 충족 여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매뉴얼’ 활용 여부, 조직화 컨설팅 내용·방식의 적절성 등 기준 설정

② **(시정 요청)** 점검 결과 수행업체의 인증자격 미확보, 사업지침 위반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시정 요청 및 유예기간 부여

③ **(결과 환류)**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 점검하고, 농식품부는 결과보고에 따른 최종 조치 실시

- 농정원은 결격사항 발생업체 대상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최종 모니터링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인증 취소 등 최종 조치를 실시

* 시정사항의 중대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 점검 실시

* 국가보조금법 및 컨설팅 계약 위반사항,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 교육·컨설팅 표준매뉴얼 활용방법 및 이해 제고 등을 위해 인증업체 소속 컨설턴트 교육을 실시(연 1회, 4시간 이상)

○ 지자체·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컨설팅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를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모니터링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매뉴얼, 인증평가 지표의 지속적 개선·보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사 업 명 칭

* 잡곡 전문 들녘경영체 세부사업계획서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수립 2000년 00월 00일

1차 수정 2000년 00월 00일

2차 수정 2000년 00월 00일

0000법인

목 차

I. 식량작물공동(들넉)경영체 현황	00
II. 식량작물공동(들넉)경영체 운영성과	00
III. 공동농업경영 추진계획	00
IV. 사업다각화 추진계획	00
V. 사업비 확보계획	00
VI. 기대효과	00

I.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현황

1)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기본현황

경영체명		대표자	
연락처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설립일		공동영농 개시일	
출자액(천원)		출자자 수(명)	
운영진 수(명)		참여농가 수(명)	
공동경영면적(ha)	논 : ha 밭 : ha	주요 생산품목	
주요 품종	벼 : , 보리 : , 밀 : , 콩 : , 기타 :		
시설·장비 보유현황	육묘장 : 동 m ²	이앙기 : 대	파종기 : 대
	광역방제기 : 대	무인헬기 : 대	드론 : 대
	트랙터 : 대	콤바인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시설·장비 임대현황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자체 가공·유통현황	가공품명	연간 생산량	연간 판매액
		톤	백만원
		톤	백만원
교육·컨설팅 지원 이력	지원연도, 사업비	시설·장비 지원 이력	지원연도, 사업비
	주요내용		지원품목
	지원연도, 사업비		지원연도, 사업비
	주요내용		지원품목

* 작성 단위는 공동농업경영체 단위로, 농업법인·농협조직 단위(운영주체)가 아님

2)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연계 RPC 기본현황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주소						
연간 가공량		톤	연간 판매액		백만원	
				주요 브랜드		
○ 계약재배현황						
구분	계약재배 면적(ha)	GAP쌀 인증면적	친환경쌀 인증면적	매입량 (톤)	계약재배 농가수(호)	
					농가조직체수	농가수
전체						
식량작물공동 (들녘)경영체						

3)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경영 현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 목적 및 발전 방향(비전)

-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주요사업

-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구성현황

(단위 : 천원, 명)

구분	1구좌 금액	총 출자액	총 출자자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인원 수	공동영농 활동자 수	영농 위탁 의뢰자 수
법인 결성시						
현재						
향후 계획						

* 주요출자자 현황(상위 10명)

(단위 : 천원)

출자자	출자액	출자자	출자액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재해보험 가입 현황

-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류현황

- 단체 가입현황,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자매결연 및 MOU 현황 등 기술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조직체계(조직도)

-

*



* 대표, 이사, 감사, 총무, 기획, 공동농작업단, 품질관리, 기술지도 등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관리 실태(2019년 3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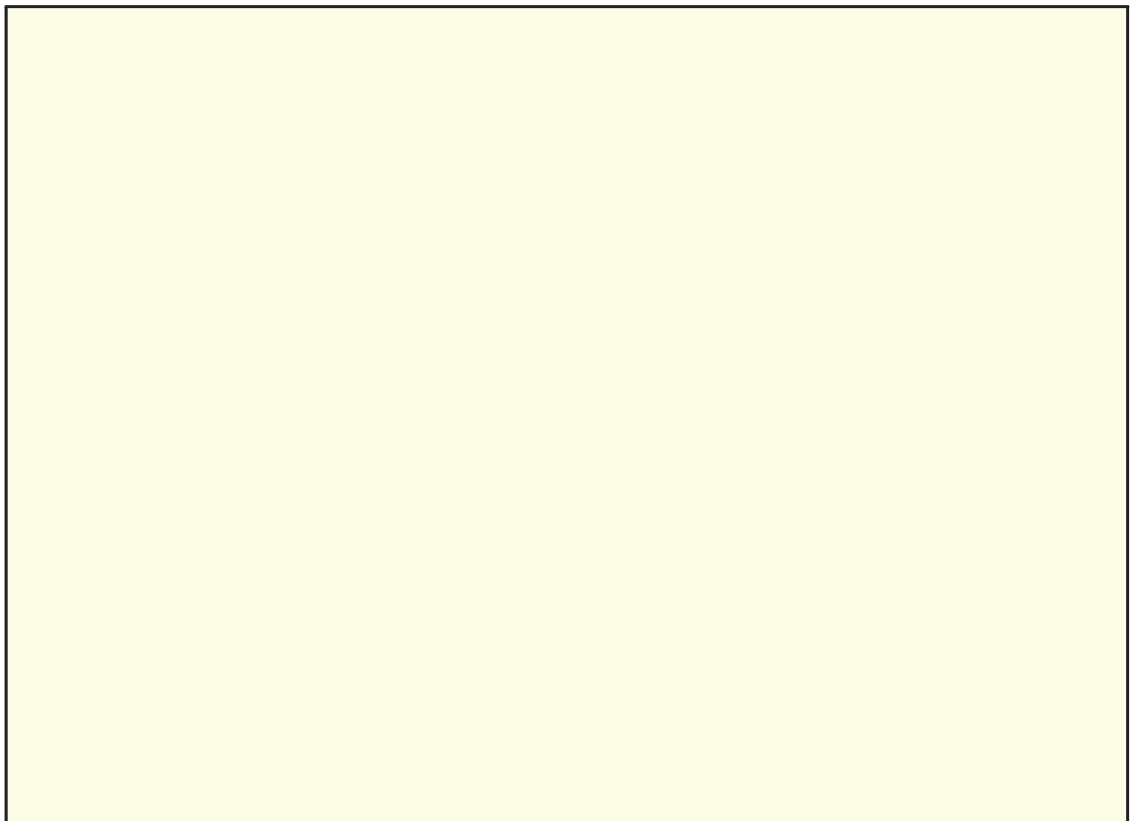
사무실 존재 여부(여, 부)		현황판 비치 여부(여, 부)	
이사회 등 대표자 회의 연간 개최실적(총 횟수 및 참석자 수)		총회 등 참여농업인 전체회의 연간 개최실적(총 횟수 및 참석자 수)	
회의록 작성 여부(여, 부)		공동영농 작업일지 작성 여부(여, 부)	
회계서류 보관 여부(여, 부)		2017년 재무제표 작성 여부(여, 부)	
RPC 약정 계약서 작성 여부(여, 부)		기술정보 등 교육책자 배부·비치 여부(여, 부)	
최근 1년간 운영수익 환원 여부(여, 부)		최근 1년간 운영수익 환원 방법 및 금액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최근 1년간 교육·컨설팅 주요실적

교육명	주관기관		참석자		교육내용	교육시간 (시간)	교육비용	
	기관명	소재지	구분	인원수(명)			금액(천원)	처리방식
계				총 명				
예시)		전남 나주	임원	대표 등8명	식량작물공동(들 녘) 경영체 육성 사업다각화 교육			국가·지자체 보조
		전북 전주	조직원	50명	000재배기술 교육			수익자부담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교육·컨설팅에 한함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재배단지 지적도



* 분포유형 : 집단화 단지형(평야지 50ha이상, 산간지 30ha이상) ha, 분산형(4ha이상) 개

○ 최근 3년간 품목별 용도별 재배면적

단위 : ha

구분	품목명	고품질	친환경	GAP	가공용	수출용	특수용()
2017	쌀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2018	쌀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2019(계획)	쌀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 논 이모작/타작물 재배면적

논 면적(A)	이모작 면적(B)	타작물재배면적(C)	비율(%)	
			B/A	C/A
ha	ha	ha		

※ 이모작 재배 현황(2018년 수확 기준)

이모작 재배작목	면적(ha)	총 생산량(ton)

※ 논 하계 타작물 재배 현황(2019년 재배계획 기준)

타작물 재배작목	면적(ha)	총 생산량(ton)

-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미 신청 사유 기술(농지매입사업(농지매매, 비축 농지 임대), 간척지 임대조건, 신기술 보급사업 등)

※ 추후 이행점검 결과 확인 예정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회원 농기계 이용실태(2018년)

기종	소유자	성능 (마력)	작업면적(ha)		기종	소유자	성능 (마력)	작업면적(ha)	
			자기논	타인논				자기논	타인논
이앙기									
파종기									
살포기									
드론									
무인헬기									
콤바인									
트랙터									

* 농작업료 : 트랙터(원/ha), 이앙기(원/ha), 콤바인(원/ha)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 가축사육 실태(2019년 2월말 기준)

한우사육		젖소사육		돼지사육		닭/오리 사육	
농가수(호)	두수	농가수(호)	두수	농가수(호)	두수	농가수(호)	마릿수
						/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 경축순환농업의 도입 및 이용실태

① 사업유무 :

② 경축순환형태 : 면적 ha, 농가수 호, 생산형태 퇴구비 톤, 액비 톤

○ ‘경축순환’ 관련 사업 지원이력

사업명					
지원년도					
지원내용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기타

○ 공동육묘 운영현황(2018년)

운영주체	00농협, 00법인	공동육묘장 규모	총 개동, m ²
육묘장 형태		공동육묘 착수년도	
공동육묘규모(장/년)	/	공동육묘 공급률	
공동육묘장 부대시설	모판상자수 ____ 상자, 지게차 ____ 대, 온탕기 ____ 대,		
	파종기 ____ 대, 육묘대 ____ 층 ____ 대, ____ 형태		
육묘 1장당 가격(원)		연 투여 인력(명)	명/일, 일/년
자재 사용규모	종자량 ____ kg/년, 상토량 ____ 톤/년, 농약 ____ 원/년		

- * 공동육묘장 운영 매뉴얼 유무 :
- * 육묘일지 작성 여부 :
- * 주변지역 육묘 가격 : _____ 원/장
- * 자재비용 : 종자비 _____ 원/년, 상토비 _____ 원/년, 인건비 _____ 원/년
- * 혜택 농가 수 : ____ 명
- * 시군별 지원여부
- * 총매출액(A) : _____ 천원 / 총비용(B) : _____ 천원 / 경영이익(A-B) : _____ 천원
- * 이익금 처분내용 :
- * 공동육묘장 활용계획 : 농기계·농자재 보관 타작물 재배, 농산물 건조, 체험공간 활용 안함 등

○ 공동방제 현황(2018년)

운영주체	00농협, 00법인	공동방제 장비 현황	
공동방제 착수연도		공동방제 공급률	
공동방제 규모(ha)	자체 방제면적 ____ ha * ____ 회, 임대방제면적 ____ ha * ____ 회		
방제단가(원/ha)	자체 방제단가 ____ 원/ha, 임대방제단가 ____ 원/ha		
방제기 운영 인력(명)		면허 보유여부	
물 공급방법		약제 구입방법	
부대장비	트럭 ____ 대(____ 톤)		

- * 공동방제기 운영 매뉴얼 유무 :
- * 공동방제 일지 작성여부 :
- * 총매출액(A) : _____ 천원 / 총비용(B) : _____ 천원 / 경영이익(A-B) : _____ 천원
- * 이익금 처분내용 :
- * 방제기 활용계획 : 축산방제, 건축물 폭파, 산림방제, 종자파종 등
- * 기타 공동농작업 면적 :

○ 표준생산매뉴얼 준수 여부

표준생산매뉴얼 유무		생산지침 제공유무	
교육·지도 방법	교육시간 _____ 시간/년, 현장지도 _____ 시간/년		
작업단계	생산매뉴얼 주요내용		
품종선정			
토양 채취 및 분석			
논둑조성			
봄갈이			
종자 파종량	_____ g/상자		
10a당 상자 수	_____ 상자수/10a		
종자소독방법	온탕침법, 약제 침지 등		
육묘형태	어린모, 치묘, 중묘, 성묘		
이앙시기 및 방법	적정시기 _____, 적정이앙주수 _____ 주/3.3㎡		
잡초관리	논두렁 _____ 본답 _____		
시비관리	밑거름 _____ kg/10a 새끼거름 _____ kg/10a 이삭거름 _____ kg/10a		
병해충관리	기본방제 _____ 보완방제 _____		
	병해충자재 종류 _____		
물 관리	중간물떼기, 물걸러대기, 완전물떼기		
수확시기	적정수확시기		
수매	산물수매시(지정 톤백사용), 건조수매시 45~50℃(중자용 40℃)		
벼짚 환원			
이모작 파종			
가을갈이			

- * 농가 영농일지 작성 여부 :
- * 농약안전사용기준·친환경유기허용자재 준수 여부 :
- * 생산관리자 운영 여부 :

II.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성과

1. 현재까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지원 세부이력

- (교육·컨설팅)
 - 2016년 사업비 20백만원(농가교육 5회, 선진지 견학 2회 등)
- (시설·장비)
 - 2017년 사업비 200백만원, 공동육묘장

2. 지원 전·후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성과

※ 변화된 점을 수치 위주로 객관적 기술

구분	지원 전 (20○○년도)	지원 후 (20○○년도)
공동경영면적	ha	ha
참여농가 수	호	호
출자자 수	명	명
총 출자액	백만원	백만원
‘법인등기부등본’ 내 출자액의 총액	백만원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백만원
영업이익	천원	천원
쌀 생산비 (천원/10a)	천원	천원
재해보험가입 농가수 등 기타	명	명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부분에 대한 부분만 산출

Ⅲ. 공동농업경영 추진계획

1. 추진전략 및 세부 실행방안

□ '중장기 비전' 기술

-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 설정하여 기술
-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과제' 또는 '실행방안'을 명료하게 기술

2. 공동농업경영 현황 및 계획

□ 공동 영농작업 현황 및 계획

- 농작업내용 : 육묘, 경운·정지, 이앙(파종), 시비, 병해충 방제, 물관리, 수확, 건조·저장, 출하, 기타 등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공동영농 작업면적, 향후 3년 이내의 계획 및 추진방안
 - ()작업 : 현 공동 작업면적(____ha), 계획면적(____ha)
 - ()작업 : 현 공동 작업면적(____ha), 계획면적(____ha)
 - ()작업 : 현 공동 작업면적(____ha), 계획면적(____ha)
 - 공동작업별 추진방안 작성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2019년 공동영농 작업료 책정 계획
 - ()작업 : 계획(____원/300평), 인근지역 농작업료(____원/300평)
 - ()작업 : 계획(____원/300평), 인근지역 농작업료(____원/300평)
 - ()작업 : 계획(____원/300평), 인근지역 농작업료(____원/300평)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가 공동영농에 필요한 주요 농자재 구입방안
 - (보조사업)
 - (자체구입)

□ 주요 시설 운영 현황 및 계획

- 공동영농에 필요한 주요 시설 운영 현황과 부족한 시설의 추가 확보 방안
(확보방안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지원인 경우, 신청사유, 규모,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① 공동육묘장

- 현재 보유현황(동, m²), 확보계획(년 동, m²)
-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시설규모 등

② 건조시설

- 현재 보유현황(), 확보계획()
- 확보방안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시설·장비 지원 사업으로 신청 불가)

③ (기타 시설명)

- 현재 보유현황(), 확보계획()
- 확보방안 :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공동소유 시설 마련에 소요자금 확보 계획

-

□ 주요 장비 운영 현황 및 계획

- 공동영농에 필요한 장비 보유현황, 추가확보 및 과잉 농기계 처분방안(확보방안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지원인 경우, 신청사유, 사양, 예상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술)

① 광역살포기

- 현재 보유현황(기종, 대), 확보대수(년, 기종, 대)
-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사양 등

② 드론, 무인헬기

- 현재 보유현황(기종, 대), 확보대수(년, 기종, 대)
-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사양 등

③ 트랙터

- 현재 보유대수(주요 마력수별 대수), 추가 필요대수(), 처분대수()
-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사양 등
- 처분방안 : (내용연수 2년 지난 중형 5대, 중고농기계로 판매예정)

④ 콤바인

- 현재 보유대수(3조, 4조, 5조, 6조별 대수), 추가 필요대수(), 처분대수()
- 추가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사양 등
- 처분방안 :

⑤ 이앙기

- 현재 보유대수(6조, 8조별 대수), 추가 필요대수(), 처분대수()
- 추가 확보방안 :
- 처분방안 :

⑥ 기타 장비

- 현재 보유대수(6조, 8조별 대수), 추가 필요대수(), 처분대수()
- 추가 확보방안 :
- 처분방안 :

인력 확보 및 이용 방안

- 공동영농작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 방안
 -
- 공동영농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잉여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
 -
 -

조직원 교육·컨설팅 지원 방안

- 향후 1년 이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추진계획

연번	수행업체	참여대상	교육·컨설팅계획			비고
			교육·컨설팅명	교육·컨설팅내용	예상금액(천원)	
총계		명			천원	
1						
2						
3						

대외협력 강화 방안

- 관련 협회 가입,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교류를 통하여 정보취득, 공동구매·농기계 이용 등의 공동농업경영 성과제고 방안을 기술

-

3. 고품질 농산물 생산

□ 품목별 계약재배 면적 및 품종

- 계약재배 품목, 품종, 품종별 계약재배 면적(물량) 기술
- 계약재배 대상 RPC, 농협, 업체 등 관련내용 기술

□ 품목별 품질기준 및 생산지도

- 품목별 인증현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서 공동경작하는 농산물에 대한 GAP·친환경농산물 등 인증 관련 인증기관, 인증종류, 유효기간, 인증품목, 인증 재배면적 기술
- 품질기준
 - 지역에 적합한 고품질 벼 품종 선정, 작부체계 운영, 토양관리 등 생산일관관리 내용, 품질기준 준수 방안 등 기술
- 고품질 생산(재배) 체계구축
 - 매뉴얼 구비·준수 확인 절차, 교육 등 기술
- 생산지도
 - 품질기준에 맞는 벼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지도, 토양 수질·생산물 검사 및 평가 지도 방안
- 제재사항
 - 품질기준 위반 시 제재사항

4. 경영체 운영 계획

농가의 공동영농 비용 처리 방법

○ 비용 납부 대상, 방법 등

-

*

농가로부터 받은 공동영농 작업료 및 이익금 처리 방법

○ 농작업 위탁 농업인으로부터 받은 농작업료의 관리방안

-

*

○ 수입과 지출에 대한 조합원(주주)와 참여농가 공유 방식 및 내용

-

*

○ 식량작물공동(들넉)경영체에서 공동농작업으로 창출된 이익금 처리방안

-

*

5. 세부 추진계획

○ 교육·컨설팅 세부내역

교육·컨설팅명	교육·컨설팅내용	예산금액(천원)	산출기준	추진시기
		천원		

○ 시설·장비 세부내역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 * 본 자료는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비교견적서(3개소 이상) 등은 반드시 첨부)
- * **육묘장은 사업다각화의 가공시설 건립계획과 사업추진일정, 부지확보현황 서식을 이용해서 작성**

○ 사업추진일정(계획)

구분	사업신청년도(2019년)												사업추진년도(20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방침 결정																								
이사회																								
정기총회																								
설계검토																								
일상감사																								
시행업체 선정입찰																								
보조금 교부결정																								
시행업체 선정계약																								
사업착수																								
교육																								
컨설팅																								
기계납품																								
시험운행																								
검수																								
정산																								
기타																								

* 각 단계별 추진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일정을 최대한 자세히 작성할 것

IV. 사업다각화 추진계획

*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신청자는 삭제 후 제출

1. 사업개요

사업명칭				
사업기간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투자계획 (천원)	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2. 추진목적

1)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산업별 여건
- 지역적 여건
- 내부 역량

2) 시장·환경 분석

- 마케팅 분석
 - 해외·국내 유사사례 등
- 장단점 분석 및 대응전략

3) 비전과 목표

- '사업다각화'를 통한 중장기 비전 제시
 - 비전달성을 위한 목표 설정(향후 5년 이내)

3. 사업추진 의견수렴 현황 및 계획

○

-

4. 세부계획

1) 사업추진체계

○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과제(공동농업 추진 관련 세부실행 방안 제시)

- 조직화 부분 전략
- 생산 부분 전략
- 교육훈련 등 인력관리 전략
- 가공 유통 부분 전략
- 홍보·마케팅 부분 전략

2) 세부 추진계획

○ 사업추진 로드맵

구분	2019년(사업준비)	2020년(사업기간)	2021년(사업기간)
목표 및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과제 및 실행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 계획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 계획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 계획 • - • - • - • -

* 연차별 추진목표 및 지표(정량화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와 실행계획을 제시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추진과제	현황과 문제점	실행계획	세부사업 내용
<p>예시) 교육·컨설팅 농업인 역량강화 조직화 법인 운영 등</p>			
<p>예시) 생산 기반 강화 이모작 타작물</p>			
<p>예시) 농산물 가공 기반 조성</p>			
<p>예시) 농산물 유통 기반 조성</p>			

○ 투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세부사업 내용	재원	2020년	2021년	합계
예시) 생산 기반 강화 이모작 타작물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예시) 체험·관광 기반 구축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예시) 농산물 가공 기반 조성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예시) 농산물 유통 기반 조성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예시) 농업인 역량강화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3) 2020년 사업예산 요구액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비중(%)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추진과제						
- 사업내용						
· 물품명						
· 용역명						
○						
-						
-						
·						
○						
-						
-						
·						
○						
-						
·						

4) 2021년 사업예산 요구액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비중(%)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추진과제						
- 사업내용						
· 물품명						
· 용역명						
○						
-						
-						
·						
○						
-						
-						
·						
○						
-						
-						
·						

○ 가공시설 건립계획

-

* 대략적인 계획이 아닌 실제 실행계획을 자세히 작성하고, 조감도 및 간이 설계도(최소 3종 이상), 비교견적서(3개소 이상) 등은 반드시 첨부

*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하여 첨부(엑셀양식: 별도통보)

<가공시설>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1. 감리 및 컨설팅						
- 기계공사 감리						
- 토목·건축공사 감리						
- 컨설팅 (성능시험 등)						
감리 및 컨설팅 합계						
2. 기계 및 장비						
2-1) 가공부(I)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소계						
2-2) 가공부(II)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품질검사장비						
-						
소계						
2-3) 포장부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소계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기계 및 장비 합계						
3. 건축 및 토목						
3-1) 건축						
- 가공부						
- 회의실						
-						
소계						
3-2) 토목및쌍등기타						
- 토목공사						
- 1차수전공사						
- 소방 및 통신						
-						
소계						
건축 및 토목 합계						
4. 기타						
4-1)유통시설						
- 지게차						
-						
소계						
4-2) 위생시설						
- 오수처리시설						
-						
소계						
건축 및 토목 합계						
총사업비						

- * 본 자료는 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
- * 유사시설은 양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작성

<건조저장시설>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1. 감리 및 컨설팅						
- 기계공사 감리						
- 토목·건축공사 감리						
-						
소계						
2. 원료투입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품질검사장비						
-						
소계						
3. 건조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소계						
4. 저장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출고시설						
-						
소계						
5. 토목 및 건축공사						
-						
-						
소계						
총사업비						

- * 본 자료는 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 예정
- * 저온창고 등은 양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작성

○ 사업추진일정(계획)

구분	사업신청년도(2019년)												사업추진년도(20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방침 결정																								
이사회																								
정기총회																								
기본설계																								
설계업체 선정																								
실시설계																								
설계검토																								
일상감사																								
인허가																								
시공업체 선정입찰																								
보조금 교부결정																								
시공업체 선정계약																								
공사착공 (건축)																								
공사착공 (기계)																								
시운전																								
성능검사																								
공사준공																								
정산																								
기타																								

* 각 단계별 추진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일정을 최대한 자세히 작성할 것

5. 부지 확보현황

- 부지 확보여부 : 확보완료, 확보 중(가등기)
- 위치 : 시·도 시·군 대로·로·가 (읍·면·동 번지)
 * 물류, 교통, 기존 위성시설과의 거리 등 부지의 특성 자세히 기재
- 부지면적 : m2(평)
-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드론 활용 전경사진),



-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존 건축물대장 등
- 건폐율, 용적율,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관련규제 검토 결과 : 상세히 기재(관련 인허가 부서의 검토결과 반드시 첨부 - 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사전심사 예시>

구 분		해당사항	검토의견	공장입지 제한내용 (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도시 관리 계획	용도 지역	농림지역 (농업진흥 구역)	조건부	○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인 경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농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름.
농지, 산지 등	농지법	농업(진흥, 보호구역)	가 능	○ 기존건물 철거 후 신축하는 상황이므로 허가 가능.
	농어촌 정비법	기 타	조건부	○ 공장신설 부지는 우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복모 지구 경지정리 연접지역으로 공장부지 진출입

구 분		해당사항	검토의견	공장입지 제한내용 (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p>로로 계획된 북모리 457-17(구거)번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대상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부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농업용수공급 및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히 정화처리 후 배출하여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 피해방지에 철저를 기하시고 피해발생시 사업주가 즉시 정비, 처리하여야 합니다. ○ 공장신설 시 지적경계 측량 후 농업기반시설(농로, 배수로)과 이격하여 건축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동 건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와 피해보상 및 민원 등은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도로, 하천 등	하수도 법	배수구역, 개인하수 처리시설	조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수를 공공하수관로에 연결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건축물사용승인 이전까지 납부 ○ 폐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공공하수도에 오수연결 허가 가능하며 우수는 신청 토지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 ○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에 해당됨으로 건축허가 시 하수도법 34조 규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도로법	도로, 접도구역	조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구간은 제출서류로만 검토하였을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연결은 가능한 지역입니다. ○ 변속차로의 길이는 건축물의 업종 및 법정주차대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불가할 수 있으며, 기존 버스 포켓차선과 도로점용연결 허가로 설치되는 가속차로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환 경	수도법	상수원	조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구 분		해당사항	검토의견	공장입지 제한내용 (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보호구역		<p>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의 의거 상수도원인 자부담금 부과대상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 후 수도신청 시 “급수공사 시행승인 신청”에 의함. ○ 부지 내 수도계량기 설치 공간 (0.8 x 0.6) 확보 요함. ○ 급수관 분기위치 및 관경, 급수 가능 여부등 세부사항 착공 전 별도협의
	소음, 진동 관리법	배출시설 설치허가	조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 소음, 진동 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특정 공사 사정신고를 하여야 함.
	대기 환경 보전법	총량규제 지역 배출시설 설치허가	조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및 소음배출 시설 시행규칙 별표1의 배출시설은 설치 할 시 대기,소음 배출시설 신고대상임. ○ 연면적 1,000㎡ 이상 공사일 경우 대기환경보 전법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전(착공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환경 영향 평가법	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조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부지 개발면적이 7,500㎡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또는 지정 등(허가) 전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하여야 함 (도로점 용허가 포함)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계획	조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공사로 인해 5톤 이상 건설폐기물 발생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구 분		해당사항	검토의견	공장입지 제한내용 (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 타	문화재 보호법	보호구역	조건부	○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 등이 확인되면 “매자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7조에 의거 신공.
	자연재해 대책법	자연재해 위험지구	조건부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16조의 2규정 의거 공장설립에 따른 제조시설 면적 500㎡이상일 경우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제출.
기 타 사항	[건축관련] ○ 건축법 제44조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도록 계획할 경우 건축허가 가능함.			
	[개발행위관련]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도로)의 도로확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공작물 설치 시 무게 150t, 부피 150㎥, 수평투영면적 150㎡를 초과하는 경우 개발행위(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함.(다만,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축조 신고 등의 대상인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름)			
	[지적관련] ○ 지적 소관청에 지적공부정리(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종합 의견	입지기준명세상의 조건 등의 이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위 확인사항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V. 사업비 확보계획

1. 지방비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추진현황

- 지방비 확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기재

○ 향후계획

- 지방비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을 기재

* 지자체 방침 문서(예산부서 협조 포함, 시·군은 반드시 시장·군수 결재본), 지방의원 설명 근거 및 지방의회 동의(협조) 문서 등

2. 자부담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자부담 확보 현황 및 계획(증빙서류 첨부)

(단위 : 천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기 확보	계획
합 계		합 계		
○ 부지매입		○ 자부담		
		- 출자액 (자본금)		
○ 부지조성공사		- 이익잉여금		
		- 신규출자		
○ 설치사업비		- 기타		
		○ 보조금		

- 자부담 확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향후 계획을 기재

* 이사회 결의서 및 출자협약서 등 제출

VI. 기대효과

1. 정량적 성과지표

구분	추진계획					
	농가수(호)	공동경영면적(ha)	답리직(ha)	타작물(ha)	출자자수(호)	매출액(백만원)
2019년(A)						
2020년						
2021년						
2022년(B)						
증감%(B-A)/A						

* 공동농작업율 증대(%), GAP·친환경 인증 증가, 일자리 창출효과, 방문객 수 등 작성 가능

2. 정량적 성과지표 이외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기술

○ (생산분야)

-

*

○ (가공분야)

-

*

○ (유통분야)

-

*

○ (기타)

-

*

3-2. 생산기반확충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세부사업명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세목	자치단체 경상정보조			
내역사업명	20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예산 (백만원)	149,600			
사업목적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사료 및 쌀 이외 식량작물 등의 자급률 제고							
사업 주요내용	55,000ha 농지에 벼 대신 다른 작물재배 추진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지원자격 및 요건	<p>①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이 지원금 수령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p> <p>② '18년산 변동직불금 수령대상 농지 또는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사업신청 시 증빙자료 제출) 농지에 '19년에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휴경 포함) 의향이 있는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 *단,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휴경' 신청은 최근 3년('16~'18)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또는 법인)만 해당</p> <p>③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법인) 1인 기준 최소 1,000m²이상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단 농업인 또는 법인이 10ha내외 규모(최소 5ha이상)로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단지 내 1,000m²미만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최소면적 요건 예외 인정</p> <p>*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시장·군수)가 '타작물 재배 단지'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농작업 편의성 등을 위해 농지가 집단화된 상태를 말함</p>							
지원한도	<p>작물별 타작물 전환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면적·단가) 조사료 10천ha(430만원/ha), 일반작물 15(340), 두류 20(325), 휴경 10(280) * 시·도별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평균단가 340만원/ha) 내에서 품목별 지원 단가 조정 가능(단,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필요)</p> <p>- (지원금액) 187,000백만원(55천ha×340만원)</p>							
재원구성(%)	국고	80	지방비	20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	-	170,000	187,000			
	국고	-	-	136,000	149,600			
	지방비	-	-	34,000	37,400			
	용자	-	-	-	-			
자부담	-	-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장 김정주 사무관 송재원		044-201-1831 044-201-183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		과장 권혁일 사무관 최동철		054-429-4071 054-429-4077			
신청시기	정기(당해년도 6.28.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관련자료								

1. 사업 대상

1) 대상 농지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 단, '18년 논 타작물 재배 사업에 참여하여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후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다만, '18년 사업 시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농지의 작물을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19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 사업 참여 가능)
-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사업신청시 증빙자료 첨부) 제출 농지
 - * 단,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18년산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중 변동직접지불금(이하 '변동직불금'이라 한다) 수령 대상 농지

2) 대상 농업인(또는 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이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대상 농지에서 논 타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인 등으로
 - ①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농업인(또는 법인)
 - ② '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업인(또는 법인)은 아니지만 '18년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또는 법인)
 - ③ '18년산 농업소득보전 등 직접지불금 중 변동직불금(이하, '변동직불금'이라 한다) 수령 대상 농업인(또는 법인)
 - ④ '휴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16~'18)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또는 법인)
 - * 위 농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농업인도 허용(실경작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000m²이상 사업을 신청하여야 함. 단, 농업인 또는 법인이 10ha내외 규모(최소 5ha이상)로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로써 단지 내 1,000m²미만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최소면적 요건 예외 인정
 -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시장·군수)가 '타작물 재배 단지'로 인정하는 경우로써 농작업 편의성 등을 위해 농지가 집단화된 상태를 말함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작물 및 농지

- ①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제외 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 * 특정작물의 수급불안(공급과잉)이 우려되는 경우는 신청단계에서 조정 가능
- ②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위(염전, 연못 조성 등) 시 부적합 처리
- 이웃 농지와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이웃 농지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를 제거할 것
- 농지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 ③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 농지(하계작물 해당) 등을 대상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3. 지원 조건

(단위 : %)

내역사업명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100	80	20	-	

4. 지원대상

-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대상 농지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사업이행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대상 농업인(또는 법인)에게 지원금 지원
- * 벼 이외 다른 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 '19년 이행점검 시 재배작물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 *** 단, 동계조사료는 이행점검 시 재배 여부만 확인(사일리지 제조 확인 생략) 후 풋거름 작물에 준해 지원금 지급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벼 재배 농업인(또는 법인)이 논에 타작물 재배 시 단위면적당 일정 규모의 지원금 지급

6.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지원형태 : 국비 80%, 지방비 20%
- 신청기준 : 필지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또는 법인)당 최소 1,000㎡이상
 - * 단, 농업인 또는 법인이 10ha내외 규모(최소 5ha이상)로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로써 단지 내 1,000㎡미만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최소면적 요건 예외 인정
- 사업 의무량 : 사업 신청한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

○ 지급시기 : '19. 12월

- * 조사료의 경우 사일리지 제조 확인 후 지급(단, 동계조사료는 사일리지 제조 확인을 생략하고 ‘풋거름작물’에 준하여 지원금 지급)
- ** 단, 사업신청 농지 중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하여 피해가 확정된 농지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지자체) 농지를 대상으로 수확 불능, 상품가치 상실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당해연도 해당농지에 벼를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 관할 이행점검 기관장(농관원 사무소장)이 종자 파종(조사료 포함)여부, 사업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해당 품목군의 지원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다만, 품목군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두류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금 지급)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인(법인)별 최소 신청면적은 1,000㎡이며 상한면적 한도는 없음
- * 단, 농업인 또는 법인이 10ha내외 규모(최소 5ha이상)로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로써 단지 내 1,000㎡미만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최소면적 요건 예외 인정
- '19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지급

구 분	이행점검(전수조사) 기간 : '19.7.1.~10.31.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류	휴경	전체(평균)
지원금액(만원/ha)	430	340	325	280	340
목표면적(ha)	10,000	15,000	20,000	10,000	5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밭작물 재배 지원 사업 대상 농지는 지원금 수령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19년에 벼를 재배하지 않아야 함 ○ (사업신청 대상 제외 작물) 무, 배추, 고추, 대파(이행점검 기간 중 사업대상 농지에 제외작물 재배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 10a 전환기준 하계조사료 43만원, 일반·풋거름작물·동계조사료 34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을 지급하되 '19년 이행점검 시 재배작물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단, 10월말까지 파종하여 이듬해 수확하는 동계조사료는 풋거름 작물에 준해 지원금 지급) ○ '19년 사업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1~6월까지(상반기) 작물 재배하고 이후 사업기간(7.1.~10.31.) 동안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경 지원 단가(280만원/ha)를 적용하여 지원금 지급 ○ 조사료 재배 농지(피해 농지 제외) 중 10월말까지 사일리지 제조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수확하지 않는 경우에 사료용벼는 부적합 처리하고 그 외 조사료 품목에 대해서는 풋거름 작물에 준해 지원금 지급 					

- 위 기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되 시·도별 여건을 감안, 예산 범위(평균단가 340만원/ha) 내에서 품목별 지원단가 조정 가능(단,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필요)
- ▶ (조사료) 사료용벼, 옥수수, 사료용피, 수단그라스 등(단, 수단그라스는 판로확보 또는 자가소비 농가에 한해 권장)
- * 조사료 재배 농지(피해 농지 제외) 중 10월말까지 사일리지 제조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수확하지 않는

경우에 시료용비는 부적합 처리하고 그 외 조사료 품목에 대해서는 풋거름 작물에 준해 지원금 지급

- ▶ (일반작물) 일반작물은 조사료, 두류, 풋거름작물, 벼,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모든 작물
- ▶ (풋거름작물) 풋베기콩, 헤어리베치, 세스바니아, 네마장황, 수단그라스, 옥수수, 수수, 트리티케일, 호밀, 해바라기, 코스모스, 유채, 메밀 등 재배
- * 단, 두류 재배 시 2개작물 이상 혼합재배(혼파)하는 경우에만 풋거름 작물로 인정[두류 단일 품종만 재배(단파) 시 두류에 준해 지원금(325만원/ha) 지급]
- ▶ (두류) 일반콩(장류용, 두부용, 나물용, 밥밀용), 강낭콩, 동부, 완두, 작두, 잠두, 팥, 녹두, 땅콩 등
- ▶ (휴경) 7.1~10.31.까지 농작물을 수확·판매 등을 목적으로 재배하지 않아야 하며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여야 함(단, 1월~6월말까지 작물을 재배하고 이후 사업기간(7.1~10.31. 동안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경 지원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금 지급)

8. (참고사항)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시 '휴경' 신청 농업인의 직불금 수령 및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유의사항

- ① '휴경' 농업인은 휴경으로 인해 농지면적 1,000㎡미만을 경작할 경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시 '휴경' 기간은 경작 기간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업신청 단계

- 사업신청 :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신청('19.1.22.~'19.6.28.)
 - * 단, 현장 상황에 따라 신청기한(6.28.) 이후라도 추가신청이 필요한 농지는 해당 시도지사·특광역시장이 판단하여 7.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 선정 완료(7.15.까지)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선정내역 통보(7.20.까지)
 - 읍·면·동 주민센터 및 마을대표 농가에 비치한 해당 양식을 마을대표의 확인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
 -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신청기간 연장여부 결정
 - 신청접수 기관 :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 사업신청 서류
 -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약정서 2부 [별지 제2호 서식]
 - 2018년도 벼 재배사실 확인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별지3호 서식]은 해당지만 제출
 - * 단, [별지 제3호 서식 제출 시 벼 재배사실 증빙 자료' 1개 이상 첨부
- * <벼 재배사실 증빙 자료>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자료(R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벼 재해보험 가입자료,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기타 농지 지번이 기재된 증빙가능 자료
 - 1년 이상 경작 사실 확인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별지4호 서식]은 해당지만 제출
 - 2019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별지5호 서식]은 해당지만 제출
 - * 위 [별지 5호 서식]은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하계조사료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또는 법인)이 자가소비 외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 사업신청 방법 : 신청농지는 필지단위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농지 중 사업 대상 적합농지의 면적 총합이 1,000㎡ 이상이어야 하며 상한 면적은 없음
 - * 단, 농업인 또는 법인이 10ha내외 규모(최소 5ha이상)로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로써 단지 내 1,000㎡미만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최소면적 요건 예외 인정
 - 사업신청자와 지원금 수령용 예금계좌의 명의가 같아야 함
 - 공동명의로 소유농지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
 - 동일지번에 2인 이상이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 지자체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 운영주체 : 시도지사·특광역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
 - 구성 : 농산부서, 축산부서, 기술원(센터), 쌀·축산농업인 등 15명 내외
 - 기능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계획 심의조정, 지역특화 작물육성 등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논 타작물 재배에 따른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및 타작물 수급

안정을 고려하여 사전 신청단계부터 다음사항에 유의하여 신청 접수와 대책마련

<p>< 사업대상 1년생 작물 ></p> <p>① 당년에 파종하고 당년에 수확하는 작물</p> <p>② 당년에 수확하지 않더라도 마늘, 양파 등 10월말까지 파종하는 작물(단, 동계 조사료는 풋거름 작물에 준하여 지원금 지급)</p> <p>< 우선 고려 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특화 작목으로 육성코자 하는 작물 ○ 국내 자급률이 낮고 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작물 ○ 최근 가격이 꾸준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작물 ○ 지역내 기존 시설(선별·저장·가공·포장 등) 활용과 판매처 확보가 용이한 작물 ○ 농식품부 및 지자체 정책사업과 연계추진이 용이한 작물 ○ 농업관측 결과 재배면적 감소가 예상되는 작물 <p>< 신청결과 대책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결과 특정작물 쏠림 발생 시 타작물 전환 적극유도 등 	<p>< 사업대상 다년생 작물 ></p> <p>① 약초, 과수, 수목 등 당년에 파종(또는 이식)하고 2년이상 재배하는 작물</p> <p>② 파종 이후 생육기간이 12개월 이상 초과하여 재배하는 작물</p> <p>*고정식 비닐하우스의 경우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다년생으로 분류하되, 이동식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재배 작물에 따라서 일년생·다년생으로 분류</p> <p>< 우선고려 사항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차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2년차 부터는 지원금 지원 중단(1회만 지원) <p>< 신청결과 대책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결과 특정작물 과다 재배 시 타작물 전환 적극유도 등 * 지자체별 자체 관리 계획에 따라 육성 및 제한 가능
<p>※ 농업인이 신청서에 기재한 작물은 이행점검 전까지 자율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18년 논 타작물 재배 사업에 참여하여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후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다만, '18년 다년생 작물 식재 사업 참여 농지라도 해당 작물을 지하부까지 모두 제거한 후 '19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 사업 참여 가능)</p>	

- '19년 주요 전환 작물(조사료, 두류)의 적정 재배 면적 관리
 - 주요 전환 작물은 지자체별 전년도 벼 재배면적 비율에 따라 적정재배 면적을 확보하는 한편, 이외 작물에 대하여는 지자체별 자체 관리 계획에 따라 지역 특화 작물 육성 및 제한 가능
 - * 농식품부는 필요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량의 조정 및 재배정(수시)
 - 간척지가 사업 참여 농지에 포함된 각 시도에서는 재배 작물 선정 시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협의하여 염해, 수해 등 피해방안 마련(상습 피해 지역은 사료용벼 등 재배 권장)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자 선정주체(공통) : 시장·군수(읍·면·동장)·구청장
 - 읍·면·동 또는 시·군별 목표 면적 범위내에서 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우선 대상(공통)

- ① 10ha내외 규모(최소 5ha 이상)로 단지화*하여 신청한 농지
 -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자체(시장·군수)가 ‘타작물 재배 단지’로 인정하는 경우로써 농작업 편의성 등을 위해 농지가 집단화된 상태를 말함
 - ② '19년 농식품부 선정 청년농업인이 신청한 농지
 - ③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④ '18년산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 ⑤ 논 타작물 생산에 따른 판로(유통업체 등 계약재배)가 확보되어 있는 농지
 - ⑥ 진흥지역의 농지
 - ⑦ 들녘경영체 등 집단화·규모화된 지역
 - ⑧ 사업참여 농지 면적이 많은 신청자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 작물 및 농지
 - ①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제외 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 * 특정작물의 수급불안(공급과잉)이 우려되는 경우는 신청단계에서 조정 가능
 - ②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③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 농지(하계작물 해당) 등을 대상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 농림축산식품부(시·도)는 필요시 시·도(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량의 조정 및 재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신청자와 신청농지의 적합여부, 중복신청여부 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전산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확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사업신청 시 제출받았던 약정서에 서명날인 후 2부중 1부를 사업대상 농지 선정내역과 함께 사업신청인에게 신속히 통지
 -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인에게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
- 사업선정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지하여 약정이행사항을 관리토록 함
- (참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원

-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지원 : 종자대 지원(국비 30%),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6만원/톤, 국비 30%, 지방비 60%), 기계·장비 지원(경영체: 국비 10%, 지방비 30%, 용자: 30% / 농가: 용자 80%) 등
- * 기타 지원세부사항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참조
- 농식품부(농진청) 다른 정책사업과 연계 추진 : 지역특화 작물 육성을 위해 다른 농림사업과 연계지원이 필요한 지자체는 구체적인 연계지원 사업계획서 제출시 적극 지원

4. 자금배정단계

- 자금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도(시·군·구)에 '19년 9월중 배정
- 자금지원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약정이행 점검결과를 토대로 농업인에게 '19.12월중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단가 : 1ha당 평균 340만원(340원/m², 필지별 10원 미만 절사)을 기준으로 해당 작물의 지급단가 적용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은 사업시행 지침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점검 실시
 - 약정이행 점검시 세부 확인요령은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농지에 타작물재배 사업 세부시행지침을 반영하여 작성
- 시장·군수·구청장과 마을대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확인에 적극 협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장)은 약정사항 이행점검 결과를 계통보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해당 시·군·구에 통보

《제재》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금 회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

《약정이행 점검 내용》

- 점검기간 : 7.1~10.31.(1월~6월말까지 작물을 재배하고 이후 사업기간(7.1~10.31.) 동안 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경에 준함, 단, 벼는 재배시기와 관계없이 당년에 벼 재배가 확인된 경우 사업대상 농지에서 제외)
 - '19년 벼 재배 농지 여부 등 대상조건 병행 점검
- 점검내용

- 약정농지에 비 이외 약정 품목군(품목)별 타작물 재배 이행여부
- 약정면적과 약정품목별 전환면적의 이행 일치여부
- * 하계 조사료의 경우 사일리지 제조 여부 확인
- ** 단, 사업신청 농지 중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하여 피해가 확정된 농지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지자체) 농지를 대상으로 수확 불능, 상품가치 상실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당해연도 해당농지에 벼를 재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 관할 이행점검 기관장(농관원 사무소장)이 종자 파종(조사료 포함)여부, 사업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해당 품목군의 지원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다만, 품목군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두류 단가를 적용하여 지원금 지급)
- 위반사항 조치
 - 점검시 위반내역은 약정체결자 또는 마을대표의 확인서(현장사진 포함) 징구 등의 조치로 사후문제 발생소지 방지(확인서 날인 거부시 농관원, 지자체 공무원 2명이상 서명하여 완료)
- 이행점검 결과 통보(시·군·구, 읍·면·동, 농관원)
 - 이행점검 결과 통보 : 농관원(11.5.까지) → 시·군·구(읍·면·동), 11.11.까지 → 신청자
 - * 시·군·구, 읍·면·동은 농관원의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 받은 후 부적합 내역이 있는 신청인에게 서면(별지 6호서식)으로 통보
- 이의신청 처리(시·군·구, 읍·면·동, 농관원)
 - 이의신청 기간 : 2019. 11. 19일까지 마감
 - 농업인은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과통보를 받은 7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재조사 요청(별지 제7호 서식)
 - 이의신청을 받은 시·군·구 및 읍·면·동은 이의신청을 받은 즉시 농관원에 재조사 요청
 - 농관원은 재조사 요청을 받은 즉시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 및 읍·면·동에 통보
-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시·군·구, 읍·면·동, 농관원)
 - 시·군(읍·면)은 농관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시행
 - 농관원은 시·도별 이행점검 결과(별지 제8호 서식)를 포함한 이행점검 결과를 농식품부에 서면으로 보고

6. 성과측정단계(공통)

- 지자체별 사업대상 면적중 이행점검 결과와 통계청 발표 '19년 벼 재배면적 및 쌀생산량 조사결과를 토대로 성과 측정
 - 성과측정 시기 : '19. 12월중

Ⅲ 평가 및 환류

-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활용한 지역특화 작물 육성을 위하여 농식품부의 다른 정책사업과 연계 필요 시 지원
- 지자체별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시상 계획
 -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목표면적 달성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 및 경영체 단지를 중점 발굴
 - 사료작물·지역특화작목·논콩 재배단지 등 대체작물 확대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 유공자, 경영체 단지 정부포상 추진
 - * 우수 지자체 및 유공자 시상 확대(장관표창)
-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추진
 - 공공비축미 배정 등 연계
 - 농식품부 다른 정책사업 연계 시 우대지원

※ 사업 신청시 주의 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7월중에 통보됩니다(문의사항은 접수처에 전화로 문의).
- 약정기간은 1년이므로 약정이행시 1년간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18년산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외 '18년 벼 재배 농지는 사업신청 시 '2018년도 벼 재배 사실 확인서(증빙자료 첨부) 추가 제출
- '휴경' 신청 농업인은 '1년 이상 경작 사실 확인서' 추가 제출(단,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업인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최근 3년간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는 제출 생략)
-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하계조사료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또는 법인)이 자가 소비 외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019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추가 제출

※ 작성방법(신청인)

- ①란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②란은 신청인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 ②-1란은 품목군별 작물명을 기입하고 작성합니다.
 - * 조사료 신청 품목 중 '수단그라스'는 판로가 확보되었거나 자가소비 농가에 한해 신청을 권장
 - ** '18년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및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단,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다년생 작물인 경우 지하부까지 제거 후 '19년 신규작물을 식재하는 경우는 예외 인정)
- ③란은 신청농지의 신청면적을 해당 란에 m² 단위로 기입[신규 ③-1 : '18년산 변동직불금 수령대상 농지, 신규 ③-2 : '18년 벼 재배 사실 확인 농지(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 / '18. 사업 참여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지]
 - * '18 사업 참여 농지(다년생 작물 재배 여부 등) 면적 등은 지자체가 확인
- ④란은 신청농지가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본인",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타인",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를 기입합니다.
- ⑤란은 신청인이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나 인접 시·군·구에서 신청농지에 대해 실제 출입경작하는 경우에 한해서 "경작"이라고 기입합니다.
- ⑨-1란은 재배희망 작물을 기입(아울러,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단지화 신청면적'을 기재)
 - * 10ha내외의 규모(최소 5ha이상)로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로써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⑩란은 신청인 성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 ⑪란은 약정대상자 변경시 당초 신청인의 성명을 기입합니다.

※ 읍·면·동 확인시 주의사항

- ⑥란은 사업신청 농지면적 합이 1,000m²이상인 경우로써 첫째,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후 지원금 수령 농지, 둘째, '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대상 농지, 셋째, '18년 벼 재배 사실 확인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 위와 다른 경우 및 정부 매입비축농지 등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해당 내용(예시 : "대상아님")을 기입합니다.
 - * '18년 사업 참여 후 지원금 수령 농지 중 다년생 작물 재배여부 및 기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지자체가 확인
- ⑦란은 사업신청 접수 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시 작성합니다. 신청농지의 적합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향후 약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약정면적", 약정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기입(예시 : 대상농지 부적격, 중복신청, 신청인 부적격, 우선순위에 따른 배제 등)하며, 별지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 ⑧란은 사업신청 접수 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 시 작성하며, 신청농지 중 약정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 ⑨-1란면적 합계는 ⑦란의 약정면적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⑫란은 신청인 확인 결과란에 자적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표기하고, 신청농지의 적합 또는 부적합 농지에 대한 결과를 기입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 약정대상 선정 시 활용합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사업』 약정서

() 시장·군수·구청장
() 신청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간 : 2019년 월 일부터 2019년 월 일까지

2. 약정내용

제1조(“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약정대상 농지) 약정 대상 농지는 “을”이 약정 대상으로 신청한 농지중에서 “갑”이 선정하여 통지한 농지로 한다.

제2조(약정 이행) ① “을”은 “갑”이 제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약정 대상농지에 2019년 벼 이외 타작물을 1,000㎡이상 재배(무, 배추, 고추, 대파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2. 약정내용 및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 서류와 함께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제5조의 마을대표와 협력하여 약정 이행여부 점검에 적극 동참·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갑”은 “을”이 제2조제①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2019년 12월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② “갑”은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지급기준에 따라 “을”이 약정 신청시 신고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4조(지원금의 지급 제한 등) ① “갑”은 “을”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 체결자(약정 대상 농지를 포함한다)로 선정되었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조금법 및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지원금 미지급, 지원금 회수 및 기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을”이 제2조제①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 점검결과 불이행 판정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갑”은 “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을”이 제2조제①항제2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한 지원금 지급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 ④ “갑”은 “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할 경우에는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대표) ①“갑”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약정 대상 농지가 있는 마을의 이장 또는 그와 유사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마을대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적절한 마을대표를 선임할 수 없거나 선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에는 “갑”이 마을대표를 대신할 수 있다.

② 마을대표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약정 대상 농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마을을

대표하며, 사업신청, 약정이행 여부의 점검 등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관련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6조(약정 해지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약정이 해지되며, “갑”은 “을”에 대해 보조금법 및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지원금 미지급 및 추가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 1. 특정작물 과다재배가 우려되는 작목은 변경 또는 제외
- 2.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위
- 3.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 농지(하계작물 해당) 등을 대상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 4. “을”이 허위,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 5. “을”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② 다만, 제①항제5호의 경우 다른 신청인이 약정을 승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승계할 수 있다.(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준용)

③ 약정 대상농지의 변경은 농지의 매매·수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요청할 수 있다.

④ 다만, 제②항 내지 제③항의 경우 신청인은 '19.7.10일까지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약정 변경 허용은 제시받은 근거자료를 검토하여 “갑”이 결정한다.

* 단, 추가신청(7.1.~7.10.)인은 '19.7.25일까지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해석) ①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 체결 당시의 시·도별 세부사업 시행계획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해석에 따른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해석이 명백히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 체결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농림축산식품 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특약사항)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 시·도별 사업 세부시행계획과 본 약정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특약사항 기재칸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마을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월 일

“갑”시장·군수·구청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마을대표 성명 :	인 또는 서명

2018년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농지	농지 소재지			※ 아래 '18년 벼 재배사실 증빙 자료를 1개 이상 첨부 ○ 계약재배를 확인하는 자료(RPC와 농업인 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벼 재해보험 가입 서류, 마을 공동으로 구입한 영농자재·종자 구입 등 영농기록은 해당 읍·면·동장 또는 이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인정 가능, 기타 농지 지번이 기재된 증빙가능 자료 등
	읍·면·동	리·통	지번	
			'18년 벼 재배 면적(m ²)	

위 농지는 2018년도 벼 재배 농지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료 한정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19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위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금 회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1년 이상 경작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경작 농지	농지 소재지			신청 구분 (○표)	면적 (㎡)	농지 이용		
	읍·면·동	리·통	지번			면적(㎡)		기간 (연도)
				벼 재배	벼 외 작물 재배			
				쌀 밭				
				쌀 밭				
				쌀 밭				
			쌀 밭					

위 신청인은 최근 3년('16~'18)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18년 논 티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업인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최근 3년간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는 '1년 이상 경작 사실 확인서(별지 4호 서식) 제출 생략

구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날짜	서명
농지소재지 ○○이(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은 신청자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 외의 자로 한정					
농지소재지 거주자					
농지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농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표시)

사업추진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사업추진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19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위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금 회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019년산 하계조사료 출하약정 확인서

농가(법인) 명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농지	농지 소재지			하계조사료 (약정품목 명)	출하약정 면적 (㎡)	출하 약정일	출하약정 기관명	
	읍·면·동	리·통	지번					
								인
								인
								인
								인
	합계							인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하여 위와 같이 2019년산 하계조사료 출하 약정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 확인서는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하계조사료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또는 법인)이 자가소비 외 유통·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

농가(법인)명

직
인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불입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불입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귀하

* 위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금 회수, 농림축산식품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농지소재지			공부상면적 (m ²)	신청면적 (m ²)	적합면적 (m ²)	부적합면적 (m ²)	비고 (불일치사유, 면적 등)
읍·면·동	리·동	지번					
합계							

* 불일치 사유는 필요시 별지 작성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이행점검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점검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11월 19일까지 동봉한 이의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직인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전화번호

2.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이행점검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자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 (귀하)

- 구비서류 : 1. 이행점검결과 통보서
2.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이행점검 결과 보고

시·도	이행조사 결과			신청 면적						이행 면적				비고	
	합계	적합	부적합	합계	조사료 (동계)	조사료 (하계)	일반· 꽃기름 작물	두류	휴경	합계	조사료 (동계)	조사료 (하계)	일반· 꽃기름 작물		두류
합계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m ²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 심의,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급 등 사후관리
 - 사업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센티브(공공비축미 배정, 영농자재 제공 등) 제공을 위하여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등에 개인정보 제공을 통한 사업 참여 농업인의 지번별 타작물 재배면적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농지 지번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성명, 주소 및 연락처, 농지 지번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교육·홍보 등의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정책 추진과 관련한 시행·위탁 기관 및 농협중앙회(지역농협), 한국농어촌공사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심의,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 사업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인센티브(공공비축미 배정, 영농자재 제공 등) 제공을 위하여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등에 개인정보 제공을 통한 사업 참여 농업인의 지번별 타작물 재배면적 확인
 - 사업참여 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을 위한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농지 지번 등)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성명, 주소 및 연락처, 농지 지번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축 산 분 야

4-1. 경쟁력 제고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세부사업명	말산업육성지원		세목	지자체·농경보조 기타민간 용자 및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말산업 수요확충 및 연관산업 육성, 말산업기반조성, 경쟁력 강화 및 말산업 지속발전 기반 구축		예산 (백만원)	33,590				
사업목적	○ 말산업 육성을 통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말산업을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추진							
사업 주요내용	○ 승용마 조련, 승마대회, 학생승마체험,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등 지원 ○ 기승능력인증제, 말산업실태조사, 말산업 박람회 및 홍보 등 실시							
국고보조 근거법령	○ 말산업 육성법							
지원자격 및 요건	○ 학생승마체험 : 학교장이 추천한 초·중·고등학교 학생 ○ 승마대회 : 승마대회 지원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된 경우 지원 ○ 승마시설 설치 지원 : 승마시설의 신규·개보수를 위한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및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 ○ 기승능력인증, 박람회, 실태조사 등 : 마사회를 통한 사업 추진							
지원한도	○ (승마시설 신설) 공공승마시설, 말문화시설 8억원, 농어촌형 승마시설 1.4억원, 승마길 조성 2억, 거점조련시설 12억, 유청소년 5억 ○ (승마시설 개보수) 공공승마시설, 말문화시설 2.8억원, 농어촌형 승마시설 0.6억원 ○ (말산업특구) 지정된 말산업특구 대상 전년도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국비 30억 내외 50:50 매칭), 등급별 20~50% 차등지원 등							
재원구성 (%)	국고	20~100	지방비	20~50	용자	30	자부담	30~4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보조	30,920	31,247	29,434	31,514			
	용자	3,340	3,340	1,950	1,950			
	지방비	23,382	21,885	23,696	24,926			
	자부담	8,277	6,438	11,918	12,546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한병윤		044-201-2325		
신청시기	'19년도 1분기			사업시행기관		말산업육성전담기관 (한국마사회)		
관련자료	2019년 말산업 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최명철 사무관 이덕진	044-201-2324~5
한국마사회	말산업진흥처 승마진흥단장 말산업교육개발처	처 장 추완호 단 장 강현수 처 장 박한용	02-6006-3692~5

I. 사업개요

1. 목 적

- 내실있고 균형잡힌 말산업 기반 강화로 농축산 미래 성장동력 창조를 위한 인프라 구축·경쟁력 강화·교육 및 홍보 강화에 필요한 사업 지원

2. 근거법령

- 「말산업 육성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14조(말의 수급·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및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등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합 계	57,450	65,919	62,910	66,998	70,936	미정
보 조	32,950	30,920	31,247	29,434	31,514	-
용 자	4,100	3,340	3,340	1,950	1,950	-
지방비	18,300	23,382	21,885	23,696	24,926	-
자부담	2,100	8,277	6,438	11,918	12,546	-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

- ① 말산업 특구지원 (4p)
- ②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5p)
- ③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6p)
- ④ 인공수정용 번식 씨수말 도입 (8p)
- ⑤ 승용마 조련강화 (9p)
- ⑥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 (11p)
- ⑦ 학생 승마체험 (14p)
- ⑧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17p)
- ⑨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18p)

① 말산업 특구지원

1. 사업 대상자

- 「말산업육성법」 제20조에 따라 말산업특구로 지정된 기초지방자치단체

2. 지정자격 및 요건

- 「말산업육성법」 제21조 및 동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한 말산업 특구

* 신규지정의 경우는 별도의 지정 절차에 따름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말산업 진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4.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보 조	지방비	용 자	자부담	비 고
말산업 특구 지원	50	50	-	-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국고 용자		
신규 말산업 특구 지원(개소당)	1년차	4,000	2,000	2,000	-	-
	2년차	6,000	3,000	3,000	-	-
특구활성화 (3년차 이상 기존 지정 특구)	4,000	2,000	2,000			특구진흥계획 상대평가 후 예산 범위내 차등지원

* 특구지역 민자유치 차원에서 지방비는 자부담으로 지원 가능

** 상기 특구활성화 지원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말산업 특구 지원	10,000	5,000	5,000	-

②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1. 사업대상자

- 「말산업 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말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

2. 지원자격 및 요건

- 「말산업 육성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양성 계획을 수립한 기관으로서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① (자본 보조) 설비 및 기자재 지원
 - 연수교재, 실습기자재 및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장비 등
 - 교육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개수·보수 경비 등
 - ② (경상 보조) 기타 운영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 전문교수인력(말 관련 국가 자격자 한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
 -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
- * 사료비, 깔짚비 등 사양관리비는 미지원

4. 지원형태

(단위 : %)

사 업 명	보조	지방비	융자	자부담	비 고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50	50	-	-	-

5.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비 분담금액				비 고
			국고 보조	지방비 보 조	국고 융자	자부담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자본보조	2,700	1,350	1,350	-	-	운영실적 평가 후 예산 범위내 기관별(11개소) 차등지원
	경상보조	600	300	300	-	-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③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1. 사업대상자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승마시설 또는 승마장 운영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자등록을 하고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 말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
 - * 사업기간 중 고용계약서(성명 및 고용기간, 소지자격 등 명시) 제출
- 사업장 소재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지역을 말함
- 사업자 등록증 보유, 영업배상 책임보험 필수 가입
- 기승 안전장구 보유 승마장(안전모, 안전조끼, 첩, 장갑 등)
- 외승 프로그램 참여자 : 승마시설에서 자체 기승능력 확인 후 참여
 - * 개인 상해보험 가입 필수(스포츠안전서비스 가입(5인 이상 단체), 레저상해보험(승마플랜) 등)
- 지원금액 및 횟수 : 개인별 승마 상품별 60% 지원 및 최대 5회
- 그룹별 안전요원 배치 : 최소 1인 이상
 - * 안전요원 자격 :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어촌지역 승마시설에서 운영하는 외승관광승마 프로그램의 참여비 지원
 - * 한도 금액내에서 지역별로 자체 운영기간 등 설정

4.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30	30	40

-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개소당	150	45	45	60	

- * 재원별 지원 한도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1,800	540	540	720

④ 인공수정용 번식 씨수말 도입

1. 사업대상자

- 지자체(산하 기관, 공공승마시설 포함), 말산업육성전담기관

2. 지원자격 및 요건

- 승용마 번식지원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 확보 또는 계획이 있는 지자체 (산하 기관, 공공승마시설 포함)

구 분	시설 및 인력요건
마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수말 마사 • 교배 및 인공수정 대기 씨암말 마사
방목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씨수말 방목초지 * 서틀랜드포니, 웰시포니B(두당 1,000㎡이상) / 하프링거, 워블러드(두당 2,000㎡이상)
관리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 관리인력 : 씨수말 3두당 1인 이상 보유 • 말 수의사 : 직접 고용 또는 근거리 민간 수의사 1인 이상 확보
교배 관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배시설, 번식검사시설(보정틀, 세척장비 등) • 인공수정 실험실(정액채취, 보관 등) 확보

* 워블러드 : 하노베리안, 홀스타이너, 셸프랑세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씨수말 도입(해외 현지 씨수말 라이선스 취득 씨수말에 한함)
 - * 도입된 씨수말은 인공수정 또는 자연교배에 이용
 - * 도입지원 품종 : 서틀랜드포니, 웰시포니B, 하프링거, 하노베리안, 홀스타이너, 셸프랑세
- 씨수말 선정, 현지 검수, 계약, 수출입 검역, 보험, 통관, 운송, 진료 등 구매 및 도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일체

4.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인공수정용 번식 씨수말 도입	80	20	-	농가 보급 씨암말과 동일 품종의 교배지원 수말

5. 지원 한도액 기준(씨수말 1두당)

(단위 : 천원)

구분	품종	사업비 (1두 기준)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포니	서틀랜드포니	25,000	20,000	5,000	-
	웰시포니B	30,000	24,000	6,000	-
	하프링거	30,000	24,000	6,000	-
웜블러드	하노베리안	140,000	112,000	28,000	-
	홀스타이너				
	셀프랑세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인공수정용 번식 씨수말 도입	180	144	36	-

* 사업비 초과분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⑤

승용마 조련강화

1. 사업대상자

- 한국마사회 말등록원에 등록된 말 소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마사회 말등록원에 등록된 2개월령~6세의 국산 승용마(3두 이하로 신청)로서 거점 승용조련센터 또는 한국마사회 협력승마시설(승용조련)에 위탁 조련 중이거나 예정인 말
 - * 2개월령~6세 판단기준 : 2019.1.1.기준(2013.1.1.~2017.01.31. 출생한 말 신청 가능)
 - * 지정 승용조련시설 : 농식품부 지정 거점조련센터 및 마사회 지정 협력승마시설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육성된 「전문승용마 생산농장」의 생산마의 경우 심사 시 가점 부여
 - *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 제1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12)에 의거하여 육성된 전문 승용마 생산 농장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 소유자가 농식품부 지정 거점조련센터 및 마사회 지정 협력승마시설(승용조련시설)에서 소요되는 조련 비용
 - 위탁조련(최소 3개월부터 최대 6개월) 또는 경매 참여 과정 중 필요한 사양, 보건, 진료, 순치, 조련, 운송, 보험, 품평 등 사업비
 - * 위탁가능 거점조련센터, 마사회 협력승마시설(승용조련)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으로 문의(02-509-2981)
 - * 위탁조련비용은 조련시설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조련사업 지원 말은 필히 한국마사회 주관 품평을 통해 조련 성과 검증 및 차년도 사업선정 실적 반영(품평일정 및 기준은 말산업육성전담기관에서 사업자에게 별도 공지)

4. 지원형태

(단위: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승용마 조련강화	40	40	20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1두 기준)

○ 1두당 지원 총 사업비(위탁조련 + 경매상장(선택))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100)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20)
		국비(40)	지방비(40)	
위탁조련	5,000	2,000	2,000	1,000
경매상장(선택)	3,000	1,200	1,200	600

- 위탁조련 : 지정된 시설에 대한 위탁조련비용(3~6개월분, 운송, 사양, 진료, 보건, 조련 등)
- 경매상장 : 경매 준비 및 상장 과정 중 발생 비용(운송, 조련[2개월 이내], 경매수수료, 사양관리, 기승료 등)

* 상기 지원대상 및 한도액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지정 승용조련시설이 자가 소유마로 본 사업을 신청할 경우에는 타 사업자의 소유마 3두 이상 수탁 중이어야 가능

○ 위탁조련 기간별 사업비 지원 기준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비고
지원 기준금액	2,500	3,330	4,170	5,000	일할 계산 시 1일 27천원 적용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사업비 분담금액			비고
		국비	지방비	자부담	
승용마 조련 강화	450	180	180	90	-

⑥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

1. 사업대상자

- 공공 승마시설, 말관련 문화시설 :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서 말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을 말함
 - * 문화시설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연장,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시설 및 기타 유사시설을 말함
- 농어촌형 승마시설 : 농업인, 농업 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 * 40세미만 청년농업인은 가점 부여
- 승마길 조성 : 지자체, 농축협
-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 지자체, 농축협, 대규모(50두 이상) 민간 승마시설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 지자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공 승마시설
 - 기승 가능한 승용마를 최소 20두 이상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자
 - * 지자체는 농축협, 법인 등과 업무협약 체결 후 승마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기존의 승마시설(「말산업 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된 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말관련 문화시설
 - 말, 승마, 말산업 등 말을 주제로 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시설로 승인을 받고, 관련법령에 등록·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기존 문화시설을 말과 관련된 문화시설로 변경 또는 기존 말관련 문화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또는 말 등을 활용한 전통 문화·유산 등에 준하는 시설 등을 운영·설치하고자 하거나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형 승마시설
 -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시설 및 안전기준에 따라 신규로 승마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기존의 승마시설(「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승마길 조성
 - 산악·수변승마 등을 위한 승마길(외승로) 신규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자체 (외승로가 연접한 지자체를 통과할 경우 복수의 지자체가 협의하여 신청 가능)
 - 조성되는 승마길은 기승 시 30분 이상 외승가능 거리이어야 하며, 휴게시설, 안전표지 등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지자체의 정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 사업대상자(지자체, 농축협 등)는 말 사육농가 또는 승마시설 운영자와 승용마 조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조련사를 1년 이상 고용할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 공통 요건
 - 정부 지원을 받아 신규로 설치하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완공 이후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 지원된 시설에서 사육하는 말은 「말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설·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

- 공공 승마시설 : 실내·외 마장, 원형마장, 워킹머신, 마사, 관리자, 편의시설 (휴게실 포함), 교육장 및 관련시설, 재활승마 관련시설(장애인 승마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창고, 퇴비사 등 승마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시설, 말 운송차량(공공 승마시설, 조련시설에 한정) 등
 - * 승마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구입비는 제외, 지자체의 경우 기존 시설 매입도 지원 가능
- 말관련 문화시설 :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 미술관 등 말관련 문화시설 또는 부속건물 등
- 농어촌형 승마시설 : 공공승마시설과 같음 * 다만, 말운송차량은 제외
- 승마길 조성 : 승마길 및 목책·휴게시설·표지 등 부속시설 설치 등
 - * 승마길 조성을 위한 토지구입비는 제외
-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 승용마 조련에 필요한 시설 등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 유·청소년 승마교육을 위한 시설 설계비, 설치 등

4.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국고 융자	자부담	용자조건
공공 승마시설 또는 말 문화시설	지자체	40	40	-	2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연리 3%(농업인 2%) * 용자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추진
	대학· 공공기관*	40	40	20	-	
농어촌형 승마시설	20	20	30	30		
승마길 구성	지자체	40	60	-	-	
	농축협	40			60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지자체	50	50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지자체	40	60	-	-	
	농축협/ 민간	40	-	-	60	

*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승마시설 신설					승마시설 개보수				
		사업비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국고 융자	자부담	사업비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국고 융자	자부담
공공 승마, 말 문화시설 (1개 시설당)	지자체	2,000	800	800	-	400	700	280	280	-	140
	대학· 공공기관	2,000	800	800	400	-	700	280	280	140	-
농어촌형 승마시설		700	140	140	210	210	300	60	60	90	90
승마길 구성	지자체	500	200	300	-	-	-	-	-	-	-
	농축협	500	200	-	-	300	-	-	-	-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지자체	1,000	500	500	-	-	-	-	-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지자체	3,000	1,200	1,800	-	-	-	-	-	-	
	농축협/ 민간	3,000	1,200	-	-	1,800	-	-	-	-	

⑦ 학생승마 체험

1. 사업대상자 : 초·중·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2. 참여 대상시설

- 사업자등록을 하고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우선 지원

2. 지원기준(1명 기준)

-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 32만원(3.2만원 × 10회)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32만원(3.2만원 × 10회)
- 사회공익 승마체험
 - 생활승마 32만원(3.2만원 × 10회)
 - 재활승마 42만원(4.2만원 × 10회)
- * 지원기준금액에는 보험료 2만원 포함임

3. 지원형태

(단위: %)

구 분	보조	지방비	자부담	비고
일반 승마체험	30	40	30	자부담은 지자체(또는 교육청)에서 부담가능
사회공익 승마체험	50	50	-	

- * 지방비는 교육청에서 부담 가능
- ** 자부담은 기본적으로 학생승마체험 대상자 납부 원칙
- *** ‘학교체육 정규교과 승마 도입’ 시범 사업과 연계시에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4. 학생승마체험 대상 및 요건

-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자유학기제 참여 중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 사회공익 승마체험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중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다문화 가정의 학생, 장애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학생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 안전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한국재활승마학회 지정 재활승마 곤란 장애학생은 제외(참고4-2)
- 추천자 :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 *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가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 후 잔여 사업량은 지자체장 승인 학생 추진
 - * 학교 부적응 학생(자퇴, 퇴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은 학교장(이전 학교 또는 인근학교) 또는 읍면동장 승인 하에 참여 가능
- 참여학생은 승용마 기승에 대한 부모(또는 친권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하며, 기승자 보험 가입 필수
 - * 기승자 보험은 보장규모(상해사망후유장해 2억원 이상(15세 이상은 5천만원 이상), 골절진단비 50만원 이상)이상 일 것. 개인상해보험 기 가입자는 보장 범위에 승마가 포함될 경우 인정(보험증권 제출 必)
- 승마체험 시설의 구비요건
 -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일 것
 - ② 체육시설업자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을 필할 것
 - * 버스 등을 이용하여 학생 수송 시 차량보험 별도 가입 필요
 - ③ 안전요원 보유 (고용 증빙이 가능한 4대 보험증, 급여 무통장 입금증, 고용계약서 등 확인)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경우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조련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 「말산업 육성법」 제3조3항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10두 미만의 승용마를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한함)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의 경우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 재활승마의 경우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PATH(구 북미재활승마협회), AHA(미국치료승마협회), RDA-UK(영국재활승마협회), RDA-HK(홍콩재활승마협회), DKThR(독일재활승마협회) 등에서 발급한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재활승마치료사 자격증 보유자

- ④ 포니 등 소형마와 중형마를 충분히 보유할 것(승용마 등록된 말 5두 이상)
 - * 승용마 등록 홈페이지 참조(<http://allhorse.kra.co.kr>)
- ⑤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등자 등 기승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승마 체험인원에 비례하여 보유할 것
- ⑥ 기타 편의시설을 보유할 것
- ⑦ 승마장별 학생 체험승마 기준

구분	체험일수	馬 배정	1회당 강습시간*	강습반당 학생수
내용	10일	2인/1두 이하	약 60분/1인 (기승 30분 이상)	10명 내외

* 1회당 강습시간은 60분을 엄수할 것

** 재활승마의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재활승마지도사의 판단 하에 기승시간은 20~30분 범위내로 조정 가능(조정사유를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1회당 강습시간은 60분 준수)

○ 기승능력인증제 시행에 관한 사항

- 승마시설에서는 학생승마체험 10회 종료 후 희망자에 한하여 기승능력인증 최하위단계 응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승마시설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체험인원, 기승능력응시인원, 합격자 명단)를 한국마사회에 통보

*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기승능력인증제 관련 교육을 수료한 코치가 심사 가능하며 세부 심사 방법에 대한 교육은 별도 시행 예정. 합격자에게는 한국마사회장 명의의 인증서 발급

5. 세부 사업별 지원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비고 (대상인원)
		국비	지방비		
일반 승마체험	21,000	6,300	8,400	6,300	65,600
사회공익 승마체험	생활승마	600	300	-	1,875
	재활승마	1,080	540	-	2,571
계	22,680	7,140	9,240	6,300	70,046명

* 총사업비 및 지원금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 승마가 보장되는 보험 기가입자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지원

⑧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1. 사업대상자 및 지원기준

구 분	사업대상자	지원기준 (1:1 매칭)		
		국비(50%)	지방비(50%)	계(100%)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시·도(시·군·구), 승마시설 운영자	40백만원 이내	40백만원 이내	80백만원 이내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기존 유소년 승마단 운영자	10백만원 이내	10백만원 이내	20백만원 이내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우선 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 시·도(시·군·구), 승마시설 운영자 중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희망하는 자
-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 유소년 승마단 운영기간(창단일~운영 지원금 지급 예정일)이 1년 이상이고, 승마대회 활동실적이 있는 시·도(시·군·구), 승마시설 운영자, 초·중학교에서 운영 중인 승마단
- 공통요건
 - 승마시설 운영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 운영자에 한함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구분	창단지원	운영지원
말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소년 승마단 운영에 필요한 포니(체고151cm 이하)에 한함 * 체고 기준 : 편자 착용 후 측정치 	미 해당
물품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장구 : 헬멧, 프로텍터, 승마장갑 ▪ 승마용품 : 승마복 상·하의, (반)부츠, 책 등 ▪ 유니폼 : 훈련용 및 대회용 단체 유니폼 	좌동
운영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소년 승마단 교육비(강습비) ▪ 대회참가비용 : 선수등록비, 말 수송비, 대회참가비, 체재비 등 ▪ 기승자 보험 가입비,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비용 	좌동

4. 세부 사업별 지원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비 고
		국비	지방비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1,600	800	800	20개소 × 40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800	400	400	40개소 × 10
계	2,400	1,200	1,200	-

* 총사업비 및 지원금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⑨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1. 사업대상자 : 지자체

* 지자체는 승마관련단체(한국마사회, 대한승마협회, 말산업중앙회, 마상무예격구협회 등)와 공동 주최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말관련 축제(행사) 등과 연계하여 승마 붐 조성을 목적으로 지방비가(자부담 포함) 국고 비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 투입하는 지자체
- (비용운영방법) 총지원비(100%) 중 대회운영비(40%), 상금(40%), 축제(행사·홍보)(20%)의 기준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정부예산 지침 기준에 의하여 운영
- (국산마 장려) 국내 생산마의 보급을 위한 국내 생산마만 참가하는 종목을 1개 이상 유치(상금이 있는 국산마 승마대회 1개 종목 이상 유치)
- (어린말 승마대회) 국산 어린승용마(3~7세)로 한정하는 연령별 승마종목 2개 이상 유치
- (유소년 장려) 유소년이 참가하는 종목 1개 이상 유치
- (승용마 유통·조련 연계) 대회 중 승용마 경매, 품평회 유치 권고
* 대회는 국내산 승용마 경매, 품평회 계획 중 1개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함
- (결과보고) 승마대회, 축제(행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성과분석 및 참가자 만족도 조사서 제출

3. 지원기준

- 정부예산 지침기준에 의하여 운영하며, 지자체 사업예산이 축산발전기금 지원 금액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 확보한 지자체에 한하여 지원(지방비 매칭)

4. 지원자금 운영

- 승마대회 및 말관련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예산 지침기준(운영비/상금/홍보비 : 40%/40%/20%의 비율)에 의하여 운영

5.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국비	지방비(자부담)	비 고
지자체 승마대회	50%이하	50%이상	▪ 승마대회 개최계획서 심사를 통한 차등지원 추진

세부사업명	가축개량지원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신품종 별 보급지원			예산 (백만원)	150			
사업목적	신품종 여왕별 보급을 통한 양봉농가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사업 주요내용	양봉농가의 신품종 별(장원별) 사육을 위한 별통 구입비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지원자격 및 요건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신품종 별 생산 농가 또는 단체에서 생산한 여왕별(장원별) 구입을 희망하는 양봉농가							
지원한도	15천원/별통, 75천원/군(잠정)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융자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300	300	300	300			
	국 고	150	150	150	150			
	자부담	150	150	150	1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성구 이종화		044-201-2336 044-201-2337		
자치단체		축산관련부서						
신청시기	연말 ~ 연초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신품종 별(장원별)을 구입하려는 양봉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신품종 별 생산 농가 또는 단체*에서 생산한 여왕별(장원별) 구입을 희망하는 양봉농가

* 신품종 육종 농가·단체는 지자체를 통하여 별도 통보

3. 지원대상

- 신품종(장원별) 여왕별 보급용 벌통 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품종(장원별) 여왕별 보급용 벌통 구입비를 지원(벌통은 반드시 신품종 사육에 사용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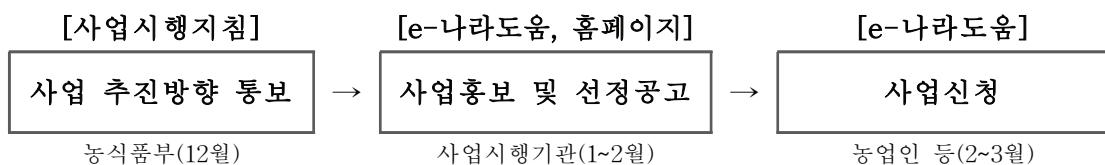
- 재원 : 축산발전기금(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잠정)

- 군당 최대 5개 벌통을 지원(지원한도액 : 75천원/군, 15천원/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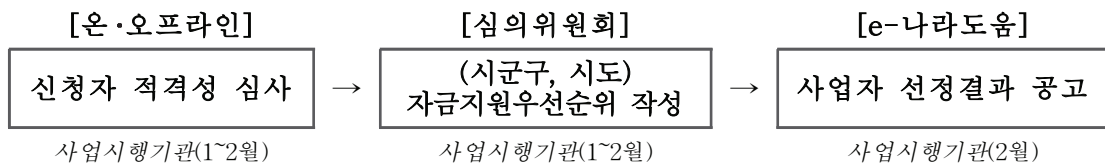
* 추후 변경 가능하며, 변경시 지자체를 통하여 통보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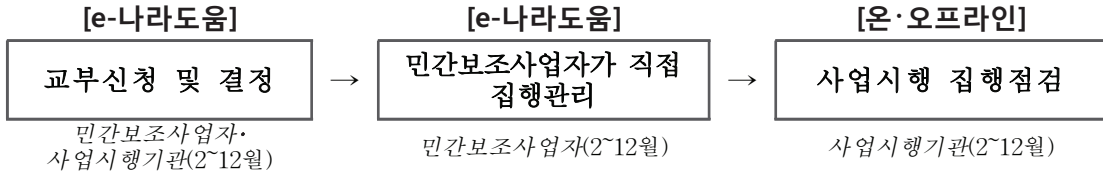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 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가능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
 - 농식품사업이 융자사업 등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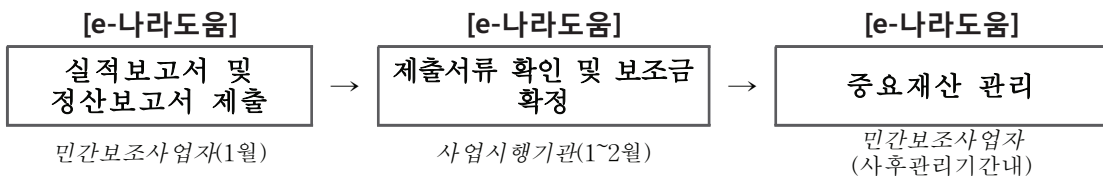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 농법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할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기본규정 제28조 및 제58조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기간중 1회 이상 집행현장 점검 및 지도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 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Ⅲ /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시 추진실적보고서(증빙사진을 첨부)를 제출

2. 평가

- 사업시행기관은 지원자금의 교부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고 성과우수자에 대해서는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

세부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	예산 (백만원)	3,000 (보조 500, 용자2500)					
사업목적	우량 송아지 생산단지 및 사육시설을 지원하여 지역 농가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공급토록 함으로써 품질고급화 및 송아지 생산비 절감 등 도모							
사업 주요내용	축사, 축사시설 및 내부기자재 등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축산법」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기관, 육종농가, 브랜드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지원한도	보조 10%(100백만원), 용자 50%(500백만원) 개소당 1,200백만원(한도내 2년차 사업으로 추진 가능)							
재원구성(%)	국고	10	지방비	20	용자	5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5,000	5,000	5,000	5,000			
	국 고	500	500	500	500			
	지방비	1,000	1,000	1,000	1,000			
	용 자	2,500	2,500	2,500	2,500			
	자부담	1,000	1,000	1,000	1,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축산경영과 축산관련과		조재성		044-201-2332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1.30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S)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한우 :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한우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는 육종농가,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육우 :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기관, 육종농가, 브랜드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5조제9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부당 사용 등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 *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경영체)의 송아지생산비육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지원
 -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소독·환기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등), 퇴비시설 및 관리자,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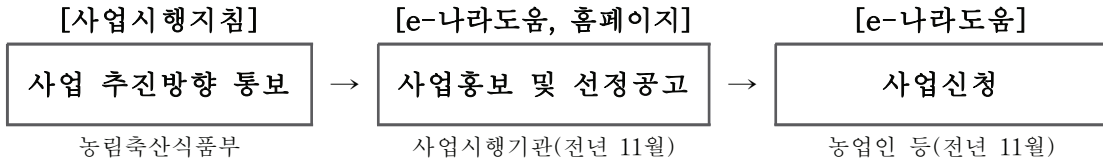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FTA기금 및 국고융자 정액지원
- 조건 : 국고보조 10%, 국고융자 5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2.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부담 추진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국고지원기준 : 보조 10%(100백만원), 융자 50%(500백만원)
- 국고지원한도 : 개소당 1,200백만원(한도내 2년차 사업으로 추진 가능)
 - *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 추진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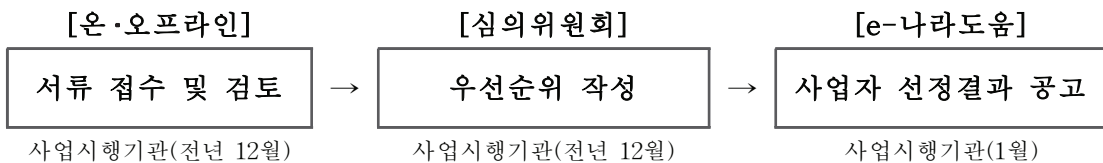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사업시행기관(시·도)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 신청 또는 사업등록(11.30일 까지)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내용, 견적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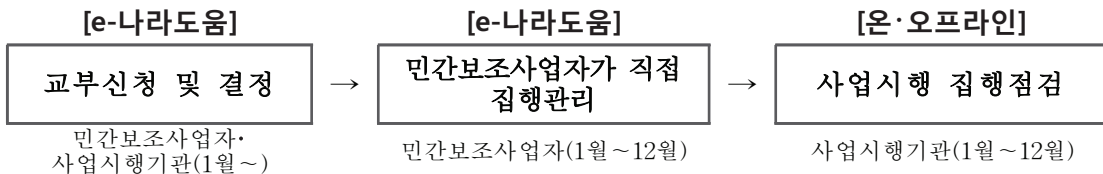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시행기관(시·도)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 농법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시·도)에서는 사업내용 확인(현지실사 보고서) 및 심의
 - 선정기준표(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표(별지 제 3-2호 서식)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12.12일 까지)
 - * 관련증빙서류는 시·도지사가 보관(농림축산식품부 사본 제출)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순위에 따라 시·도별 대상자를 선정·통보(12.31일 까지)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경우 사업 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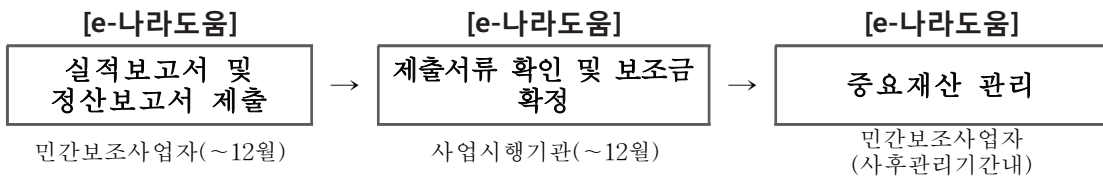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
 -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부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용자는 사업시행기관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집행
 - 사업시행기관(시·군협조)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 실행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집행현장 점검 및 지도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 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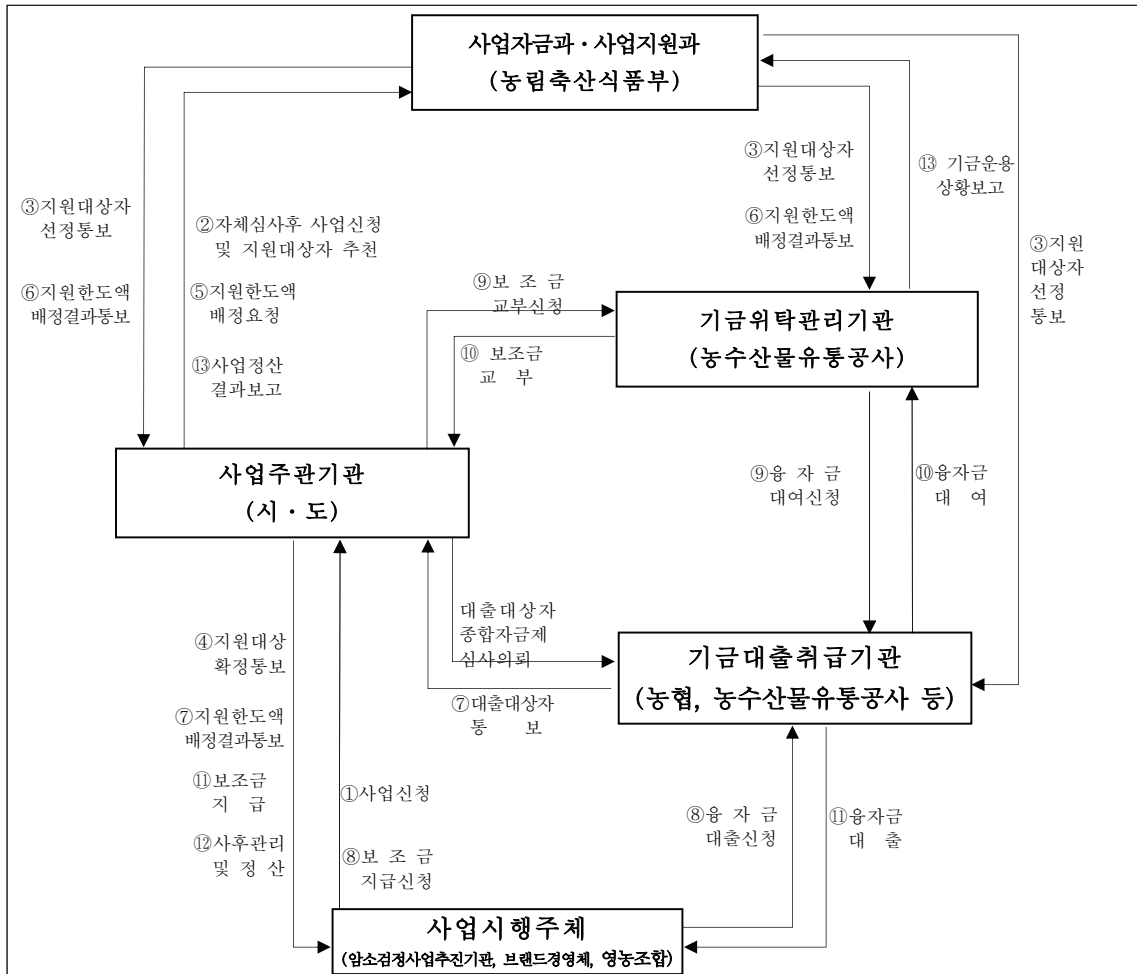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체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참고 : 사업비 집행 체계도>



1. 평 가

- 평가주관기관 : 시·도(지자체)
- 평가기간 및 제출기한 : 2월말까지
- 평가대상 : 지원 사업자
- 평가기준 : 고등 등록우 현황 및 사업 추진정도
 - 고등 등록우 두수 증가율[(당년말 등록우 두수-전년말 등록우 두수)/전년말 등록우 두수], 사업계획 대비 추진정도
 - 고등 등록우 두수 증가율 : 사업 추진정도 = 50 : 50 비율로 점수를 산정하고 사양관리는 참고사항으로 명시할 것
 - * 육우의 경우는 고등등록우 평가 부문은 제외
- 자금 운용의 적정성(타 용도 사용 등 점검)에 대하여도 점검 추진

2. 환 류

- 사업성과와 관련하여 경영체 인센티브 부여 등은 성과결과에 따라 조치여부 검토
 - 고등 등록우 증가 등 사업성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경영체는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성과달성 촉진
- 자금 운용상 적절하지 못하게 진행되어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문제가 발생한 경영체에 대하여 융자금 회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과의 검토에 따라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사업시행체계》

경영체, 법인 등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11.30) ·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서식 “추후 통보”)	지원신청 → ← 지원/사후관리 ← → 제출 ← 통보/사후관리	시·도 · 지원서 심사·확인 (농협 지역본부와 협조) · 농림축산식품부 추천 (12.12) · 보고서 검토·확인 후 제출	추천 → ← 지도/조정 → ← 제출 ← 통보/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현지실사 또는 농협에 실사 요청 · 사업대상자 심의·선정 (12.31) ·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 (지자체 또는 농협과 합동조사)
------------------------------------------------------------------------	-----------------------------------------------------------	------------------------------------------------------------------------------	-------------------------------------------------------	--------------------------------------------------------------------------------------------

<별지 제1호 서식>

00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자

- 사업자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사업자 주소 :
- 조직체명 :
 - 주소 :

2. 사업 경영체 현황

- 법인 현황 : 설립일, 회원수, 전담직원수(직책 및 인원수)
- 회원 농가 총 사육두수 : 총 두
 - 비육 두, 번식 두, 송아지 두
- 1등급 출현율 : 출하 두, 1등급 출현 두(%)
- 연간 매출액 :
- 고등 등록우 확보 계획

(단위 : 두)

구분	'18	'19	'20	'21
고등 등록우 두수				

3.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사업비																							
		00년					00년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측사																									
기자재																									
계																									

*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담추진 가능

- 현재 시설현황(동수 및 측사면적 등) : 시설이 있는 경우
- 개보수 또는 신축내용 :
 - 첨부 : 평면도, 견적서 등
- 연차별 상환계획

4. 사업 추진 일정

세부내 용	00년도(1년차)												00년도(2년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색채우기 또는 화살표로 표시

5. 별첨 :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신 출 청		자 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천원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인)

(인)

00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선정기준표

(사업신청 경영체 작성용)

참여 경영체명 :

신청자명 :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특점	비고
고등 등록우 보유 두수 (60)	○2,000두이상 ○1,500두이상~2,000두미만 ○1000두이상~1,500두미만 ○500두이상~1,000두미만 ○500두미만	60 50 40 30 20		*'18.4.1일 기준 현재 *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중축개량협회 확인서류 *육우는 동 항목 평가 제외
사육규모 (50)	○30,000두이상 ○20,000두이상~30,000두미만 ○10,000두이상~20,000두미만 ○5,000두이상~10,000두미만 ○5,000두미만	50 40 30 20 10		*'18.4.1일 기준 현재 *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HACCP 관련 (10)	○HACCP 지정 신청 또는 컨설팅 계약 농가 비율(비율에 따라 배점) - HACCP 지정 신청 또는 컨설팅 계약 / 회원농가 사육두수×100×0.1 * HACCP 또는 컨설팅 계약도 사육두수			*HACCP지정 및 신청은 (사)축산물 HACCP 기준원의 지정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확보
추진 가능성 (30)	○사업부지가 선정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선정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선정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30 20 10 0		*신청시점 기준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수상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등)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중앙관서) 30 시 도 10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브랜드 출하두수 (20)	○5,000두 이상 ○4,000두 이상 ~ 5,000두 미만 ○3,000두 이상 ~ 4,000두 미만 ○3,000두 미만	20 15 10 5		*'18.4.1일 기준 현재 *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연간공급능력 고려 *축산물품질평가원 확인서류
계(200)				

주) 관련 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00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우선순위표

(시·도지사 작성용)

□ 우선순위표

연 번	경 영 체 명	농장소재지	평 가 점 수						
			고 등 등 록 우 보 유 두 수 (60)	사 육 규 모 (50)	HACCP (10)	추 진 가 능 성 (30)	수 상 (30)	브 랜 드 출 하 두 수 (20)	계 (200)
1									
2									
3									
4									
5									
계									

○ 작성자 : 부서명 , 직함 , 성명
- 연락처 : 사무실 , Mobile

※ 작성방법 : 한우와 육우를 분리하여 작성

사업 신청 경영체 시·도지사 의견서

순위	경영체명	검토항목 적정성 여부			
		인·허가에 따른 사업일정	민원여부	융자실행 가능성	지침서상 각 요건 적합여부
1					
2					
3					
4					
5					
;					
계					

주1) 지침서상 각 요건 적합여부는 사업대상자, 지원내용, 지원한도액(지원조건 비율, 축사 면적당(m²) 최대 지원한도액, 개소당 최대 총 지원한도액 등), 순위 등의 적합여부임

주2) 적합여부는 적합, 보통, 부적합 중 하나로 작성

위와 같이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지원」 사업을 위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시·도지사(인)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사업개요

- 사업자 성명(사업기관 명) :
- 주소 :

추진(완료)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 자명	사업계획	사 업 량			사 업 비										B/A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	계 (A)	보 조	응 자	지 방	자 담	계 (B)	보 조	응 자	지 방	자 담		
		○ 축사시설 : ○ 퇴비사 : ○ 관리사 : ○ 전기시설 : ○ 용수시설 :															
		소 계															

※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 기준으로 작성

기타

- 사업완료시 건축물·시설 사진, 건축물 준공허가서류, 등기서류,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등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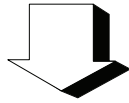
【 참고 : 사업신청시 기관별 제출서류 】

구 분

작성 및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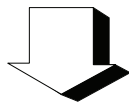
사업대상 경영체

사업대상 경영체 사업신청서,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기준표 및 관련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 등



시·도

사업대상 경영체 사업신청서,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기준표 및 관련증빙서류,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 우선순위표, 사업신청 경영체 시·도지사 의견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 등 사본제출
* 원본은 시·도지사가 보관



농림축산식품부

세부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민간)			예산 (백만원)	250		
사업목적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 체계화						
사업 주요내용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사후관리 및 사업개선, 축산표준설계도 개발을 위한 제반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농협경제지주						
지원한도	500백만원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후		
	합 계	500	500	500	500		
	국 고	500	500	500	2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성구 이종화		044-201-2336 044-201-2337	
자치단체		축산관련부서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농협경제지주

2.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사시설현대화 사후관리 조사 기관(농협)

3. 지원대상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사후관리 및 사업개선, 축산표준설계도 개발 등을 위한 제반비용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완료농가 성과조사 및 분석, 축사표준설계도 개발 및 보급, 축사시설현대화 담당자 워크숍, 축산농가 교육 및 홍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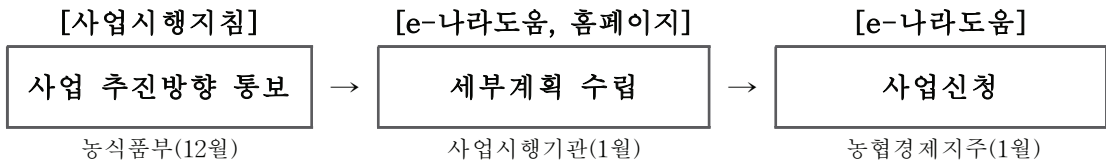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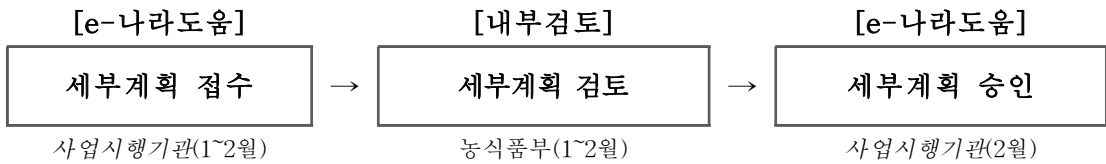
- 500백만원(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사업계획 범위내 집행)
 - 계획 변경,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세부사업간 예산조정, 이월(집행기간 연장)시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 필요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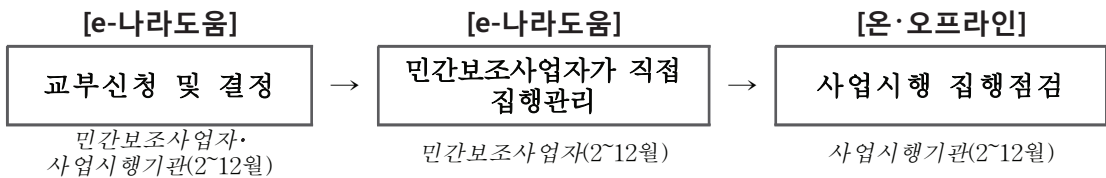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농협경제지주는 1월까지 세부계획 수립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완료농가 성과조사 및 분석, 축사표준설계도 개발 및 보급, 축사시설현대화 담당자 워크숍, 축산농가 교육 및 홍보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편성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수립한 세부사업계획에 대해 보조사업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검토
 - 각 세사업의 내용, 세사업별 예산 신청규모의 적정성, 추진일정 등을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는 세부사업계획을 확정 및 승인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인 농협경제지주에 문서로써 통보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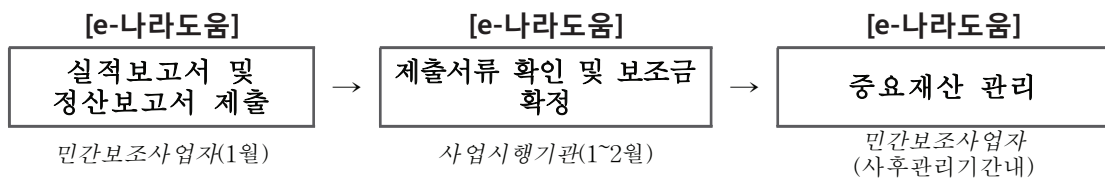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기본규정 제28조 및 제58조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기간중 1회이상 집행현장 점검 및 지도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시 추진실적보고서(증빙사진을 첨부)를 제출

2. 평가

- 사업시행기관은 지원자금의 교부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고 성과우수자에 대해서는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축산관련종사자 교육비 및 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예산 (백만원)	1,816		
사업목적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축산법규, 가축방역, 질병관리, 친환경축산 등을 교육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사업 주요내용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신규, 보수)의 비용 일부 지원 및 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 제33조의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지원자격 및 요건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및 받은 자,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려는 자 및 등록한 자,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 및 등록한 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 3에 따른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지원한도	1인당 교육비 35,820원의 70%, 운영비 100%						
재원구성(%)	국고	70~100	지방비		융자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2,021	2,266	2,266	2,266		
	국 고	1,641	1,816	1,816	1,816		
	지방비						
	융 자						
자부담	380	450	450	4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홍성현		044-201-2329	
신청시기	매월(수시)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kr)						

1. 사업대상자

- 교육총괄기관 : 농협경제지주는 교육총괄기관으로 축산법 시행규칙 제36조의 3제2항 별표 3의4에서 정하는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16.1.1. 부터 온라인(모바일 포함) 보수교육(축산업허가·등록자 : 6시간, 가축거래상인·종사자 : 4시간) 실시
- 교육운영기관 : 관련법령에 의거 고시된 농·축협, 시·군농업기술센터, 축산관련 대학·협회·기관·단체 등(시·군·구 등 지자체 협조)
 - * 축산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8-1호('18.14.8.)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6-75호('16.3.15.)에 준함
 -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단체는 교육총괄기관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
 - * 지정신청서는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www.farmedu.kr) 알림마당 / 자료실에 등재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강사는 <붙임1>의 자격기준에 의거 교육운영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교육 강사로 지정
- 교육대상자 :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와 경영하는 자(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자,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려는 자), 축산차량종사자(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차량무선인식장치(GPS) 장착 차량)
 - *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축사육업)
 - * 축산법 제33조의2 (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 * 축산법 시행규칙 제36조의3(교육총괄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
 - *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제6조(가축방역교육),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 *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시행규칙 제8조(가축방역교육 실시 등), 제20조의6(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에 대한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
 - *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 2016-75호 「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2. 지원자격 및 요건

<의무교육>

- (허가대상) 신규로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16.2.23일 이후 사육시설 면적이 소·돼지·닭·오리의 사육면적이 50㎡을 초과하는 가축사육업을 하려는 자(농가, 법인)
 - * 허가 전 교육이수 필수, 교육시간 24시간

- (등록대상) 허가대상 면적에 해당되지 않는 소·돼지·닭·오리 및 사슴·양(염소·산양 포함) 신규 가축사육업자 및 사육시설면적 10㎡~50㎡ 이하의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의 가축사육업자, 가축거래상인

* 등록 전 교육이수 필수, 교육시간 6시간

-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차량종사자)

* 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 이내, 교육시간 6시간

<보수교육>

- 허가대상 가축사육업자

* 의무교육 수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교육시간 6시간

- 등록대상 가축사육업자, 가축거래상인,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 의무교육 수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교육시간 4시간

3. 지원대상

-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신규, 보수)의 비용 일부 지원(국고 70%+자부담 30%) 및 교육기관 운영비(국고 100%) 지원

- 직접교육비 : 강사료, 여비, 원고료, 교육장 사용료, 현수막, 사무용품비, 다과비 등
- 교육운영비 : 직접교육비의 20%(교육운영요원 진행비 포함)
- 교육생 자부담 교육비 : 총교육비의 30%

교육시간	24시간	8시간	6시간		4시간		2시간	
			집합	온라인	집합	온라인	집합	온라인
자부담 교육비	40,000	12,000	10,000	9,000	8,000	6,000	4,000	3,000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강사료 : 강사료 지급액 기준에 따름

- 교육강사의 자격 기준 : <붙임 1>
-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강사용) <붙임 6>: 금액에 상관없이 항상 징구
- 강사비 지급 후 무통장입금표 보관(현금지급 불가)
- 해당강사가 등록이 안 될 경우 해당과목 강사인지, 강사등급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 신규강사는 교육강사이력카드 <붙임 2>를 작성 → 교육총괄기관에 강사등록 신청(FAX, 전자우편)
- 외부강사의 경우 자격요건 확인절차 필요 : 등기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대학 교수와 전임강사의 확실한 구분 등

- 부득이 강사 1명이 3시간 이상 1개 과목 이상 강의할 경우 최대 3시간에 대한 강사료 지급, 예) 1명의 강사가 4시간 강의시 3시간까지만 강사료 지급(일부강사 편중 방지)

<강사료 지급액 기준>

구분	지급기준	지급액	기 준
1급 강사	최초 1시간	20만원	공무원 4급 이상,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 부교수 이상, 명예교수, 관련기관·단체·협회 대표, 조합장
	초과(매시간)	10만원	
2급 강사	최초 1시간	12만원	공무원 5급, 대학 전임강사 이하, 전문대 조교수 이하, 겸임교수, 관련기관·단체·협회·조합의 임원 (법인등기부상 등기 임원)
	초과(매시간)	10만원	
3급 강사	최초 1시간	10만원	공무원 6급 이하, 대학 시간강사, 기관·협회·농·축협 직원
	초과(매시간)	8만원	
외부 강사	최초 1시간	12만원	컨설팅업체 대표, 개인동물병원장 등 기관에 소속되어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자
	초과(매시간)	10만원	
지도 강사	최초 1시간	10만원	현장 교육(실습, 견학 등)시 지도 강사
	초과(매시간)	8만원	

- <주> 1. 30분단위 강의시 단가는 시간당 지급액의 50% 범위내에서 지급.
 2. 자격요건 확인 철저 : 등기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대학교수와 전임강사는 확실히 구분하는 등 확인 필요
 3. 임원 : 소속기관, 단체 등 정관상 법인의 등기임원으로서 교육운영기관의 강사 인력풀에 포함되어 있는 자
 4. 직원 : 소속기관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 받는 자(4대보험 적용 대상자)
 5. 공무원 등 공직자 강사료(원고료 포함) 상한액 : 1시간 기준 - 4급 이상 : 최대 30만원, 5급이하 : 최대 20만원, 1시간 초과 - 4급 이상 : 최대 45만원, 5급이하 : 최대 30만원

○ 예비(강사 및 교육운영요원)

- 관내 또는 관외, 교통수단 구분없이 일괄 3만원을 지급하되 다음 사항은 **지급 제외**
- 교육운영기관(내부직원)소속 강사인 경우. 단, 2개이상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조합의 경우 교육장소와 교육진행요원의 소속 사무실이 다른 경우에는 지급 가능하지만 소속사무소 자체 예비와 이중 지급을 금함
- 외부강사라 하더라도 교육장소와 외부강사 사무실(주소지) 소재지가 행정구역상 동일 지역 (시·군)에 위치한 경우

○ 원고료

<산정기준>

- 원고료는 최초 1회만 지급하며, 동일과목으로 강의시 및 원고 수정시에는 미지급
- 2012~2017년 기간 중 원고료 수령자는 2018년에 원고료 지급 제외

- 원고료 수령 강사가 있을시 제출 원고파일을 교육총괄기관으로 전송
- 원고료 지급은 A4용지로 환산하여 지급(A4 1매당 10천원)
 - * A4 1매=원고내용이 15p 글자 A4 지면 50% 이상=프리젠테이션용 슬라이드 4매
 - * A4 1매=원고내용이 15p 글자 A4 지면 50% 미만일 경우는 2매 (A4 1면 : 글자크기 15p, 줄간격 160%, 용지 상·하 여백 15 및 좌·우 여백 20, 머리말 및 꼬리말 여백 15를 기준으로 함)
 - * 원고 작성은 배부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교재」를 기본으로 하며 교육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문맥상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할 수 있음

<원천징수 관련>

- 강사료, 원고료 등 수당 지급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신고 납부 의무
- 강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징구, 기타소득 입력 및 원천징수 <붙임 6>
- 강사료와 원고료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 교육과정당 한사람에게 25만 원초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한 후 교육운영기관 소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
- 강사료, 원고료 등을 지급한 경우는 무통장입금표를 편철 보관(현금지급 불가)

○ 교재비 : 17천원 이내 / 교육생 1인 / 1과정

- 교육교재 제작 부수 한도 : 교육이수자 수 + 강사 수 + 신청 후 미참석자 인정분 10부 + 자체 보관용 3부 + 행정기관용 1부 + 교육총괄기관 제출용 1부
- 기타 : “AI 차단방역 수칙”,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요령”, “축산차량등록제 확대” 리플릿 등 교육생에게 필요한 홍보물 제작은 교재비로 함께 처리

○ 교육장 및 실습장 등 사용료

- 교육장과 실습장 각각 사용료(1일당) : 300천원(150명 이내), 500천원(150명 이상)
- 실습(현장견학)장 이동시 버스임차료 : 소요 대수 당 400천원 이내(45인승 기준)
- 실습(현장견학)과목에 필요한 1인당 실습비 : 10천원 이내(방역복, 실습재료 등)
- 교육운영기관이 자체시설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장소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출 증빙은 교육일 실내·실외 교육장을 사용한 사진 첨부로 같음 : <붙임 12>
- 공공기관(국유, 지자체 등)임대시설 이용으로 실비지급 시 무통장입금표, 법정지출 증빙서류 등 첨부

○ 현수막 : 1~2매(90천원 한도 내)까지 사용 가능

- 주최는 농림축산식품부·농협경제지주, 주관은 교육운영기관명 표기

○ 사무용품비 : 과정당 교육생 1인 4천원 이내

- 매 교육과정 준비시 사용되는 자체 사무용품과 교육 실시를 위해 발송되는 안내문 비용, 교육수료증 발급 비용, 교육시 지급되는 필기도구 등
- * (예) 축산농가(24h) 교육과정을 3일간 나눠 실시 → 사무용품비 4천원 이내 집행

- 다과비 : 1일(8시간) 교육생 1인당 4천원 이내
 - 교육시 교육생에게 지급되는 음료 및 간식(제과, 제빵 등 포함) 등(단, 음식점(식당) 관련 법정증빙서류 불가)
 - * (예) 축산농가(6h, 8h) 교육과정을 2일간 나눠 실시 → 다과비 4천원 이내 집행
- 교육운영비(교육과정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 수수료)
 - 교육운영기관 수수료 : 직접교육비 20% - 교육운영요원 진행비
 - 교육의 질 향상이나 만족도 제고를 위한 편의제공 비용으로 사용 가능
 - 집행한도 : 교육운영기관의 과정당 교육비 합계액의 20%이내 지급
 - 교육운영요원 진행비 : 교육운영비 내에서 반드시 지급
 - 지급한도 : 1일(8시간 이내) 최대 2명까지 각각 5만원씩 지급 가능(단, 교육수료 인원이 30명 미만은 1명만 지급)
 - 지출증빙은 강사료(원고료, 강사여비, 교육운영요원 진행비) 수령 확인서에 지급내역 명기하고 무통장입금표(또는 통장사본)를 뒷면에 증빙으로 첨부(현금지급 불가)

<항목별 지급단가 및 기준>

항 목		단 가	기 준
직 접 교 육 비	1급강사	200천원(초과매시간당 100)	○ 강사 1명이 한 교육과정에서 3시간 이상 강의 시 3시간 이내 강사료 지급 - 30분단위 강의시는 시간당 단가의 50%지급함.
	2급강사/외부강사	120천원(초과매시간당 100)	
	3급강사/ 실습지도강사	100천원(초과매시간당 80)	
	여비 (강사, 교육운영요원)	30천원/ 1일	○ 교육장소와 사무실(거소)이 행정구역상 동일 시·군일 경우 제외
	원고료	10천원 이내/ A4 1매	- A4 1매는 PPT 4매 기준, 최대 10만원 한도
	교재비	17천원 이내/ 1인/ 1과정당	
	교육장사용료 등	300천원(150명 이내) 500천원(150명 이상)	○ 6시간 이하 과정은 1일 이내
	현수막	90천원 이내	○ 2매 이내
	사무용품비	4천원 이내/ 1인/ 1과정당	
	다과비	4천원 이내/ 1인/ 1일	
	합계(A)		
교육운영비(B) (A×20%)		수수료 : [교육비 합계(A) × 20%] - 교육운영요원 진행비(C) 교육운영요원 진행비(C) : 1일(8시간이내) 5만원 2명까지	
국고보조금 청구액(D)		교육비(A) + 교육운영비(B) - 자부담 교육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213)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1100)농업인력육성및창업-(1130)농업인교육지원
-(331)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축산관련종사자 교육비 및 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신규, 보수)의 비용 일부 지원(국고 70%+자부담 30%) 및 교육기관 운영비(국고 100%) 지원
 - 직접교육비 : 국고 70%(정률)
 - 교육운영비 : 국고 100%
 - 교육생 자부담 교육비 : 총교육비의 30%
- 교육비 처리방법
 - 교육운영기관은 교육전용 법인통장을 반드시 개설하고 모든 비용은 통장을 통해 집행 (교육전용 법인통장 = 보조원장)
 - 자부담 교육비는 징수 후 교육당일 또는 익일까지 교육전용 법인통장에 입금
 - 교육비 정산신청 후 국고보조금이 입금되면 교육전용 통장에서 교육비 집행
- 국고보조금 정산방법
 - 교육운영기관은 직접교육비에서 아래 순서대로 자부담비를 차감한 후 과부족액과 교육운영비에 대해 국고보조금 정산신청
 - 자부담비 차감순서(차감순서는 교육운영기관 실정에 맞게 변경 가능)
 - * 단, 강사료 선지급 시 교육총괄기관에 강사료 및 원고료 사전 확인 후 지급
 - ① 사무용품비 ② 다과비 ③ 현수막 ④ 교육장 사용료 ⑤ 교재비
 - * 국고보조금 = [직접교육비 - 자부담비] + 교육운영비
 - * 자부담비 = [교육수료 인원 × 자부담액]
 - * 교육운영비 = 직접교육비 × 20%
 - 교육총괄기관은 교육비 정산결과 보고서에 의해 정산 내역을 확인
 - 교육운영비는 교육전용 법인통장에서 교육운영기관의 다른 법인통장으로 계좌이체한 것으로 증빙 가능
 - 교육총괄기관은 교육운영기관에 국고보조금 정산 지급 시 내부 양식의 지급회의서, 전표 등으로 갈음
- 국고보조금 관리
 - 교육운영기관은 교육 용도의 전용 법인통장을 별도 개설관리(교육운영기관 명의)하고 보조금 청구 시 통장사본 첨부

- 교육비 지출 시 교육계획서(내부결재), 지급회의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무통장)입금표, 현금영수증 등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법정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함
- 교육운영기관은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사용목적별로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감독기관(감사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나 교육총괄기관(농협경제지주)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정책사업 지침에 의거 매년 2회 이상 농식품부 현지점검 실시 진행
- 교육운영지침상 국고보조금 집행 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의 지도가 목적이므로 교육운영기관에서는 교육비 집행 관련 장부, 법정지출증빙서류 등 자료를 제출
- 국고보조금 정산 시 제출서류

의무 제출서류	제출서식	제출방법	신청기한	정산기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결과 및 국고보조금 정산신청 지급증빙	붙임 【11, 12, 13】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스캔파일 등재	교육 종료 후 5일 이내	정산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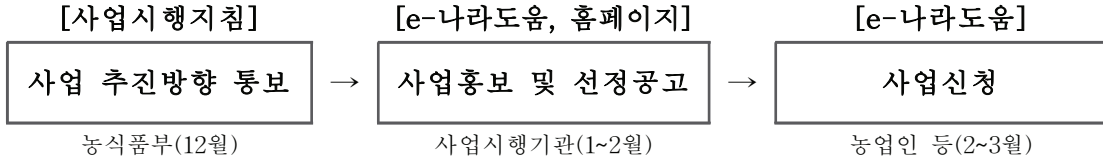
- 교육운영기관 보관서류

구 분	양 식	비 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교육생용, 강사용), 위임장(법인용)과 필요서류	【붙임 4~7】	원본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결과 및 국고보조금 정산신청서	【붙임 8】	원본
교육출석기록부, 교육수료자 명단	【붙임 9, 10】	원본
교육비 법정지출증빙서류, 자체교육장(실습장) 시설이용 사진 등	【붙임 11~13】	원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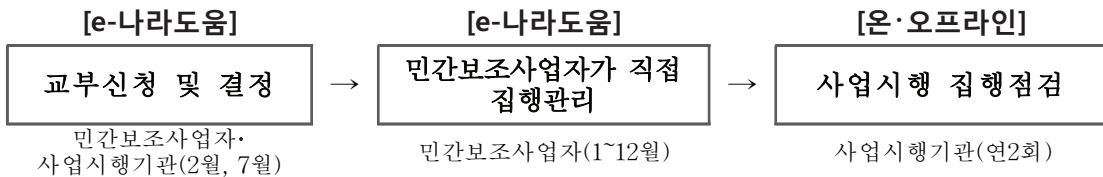
- 교육생 1인당 교육비 35,820원의 70%, 교육운영비 100%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28조제8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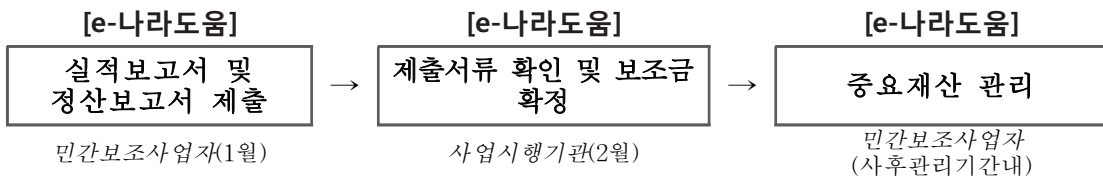
2.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인 시설공사,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구매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을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기본규정 제28조 및 제58조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등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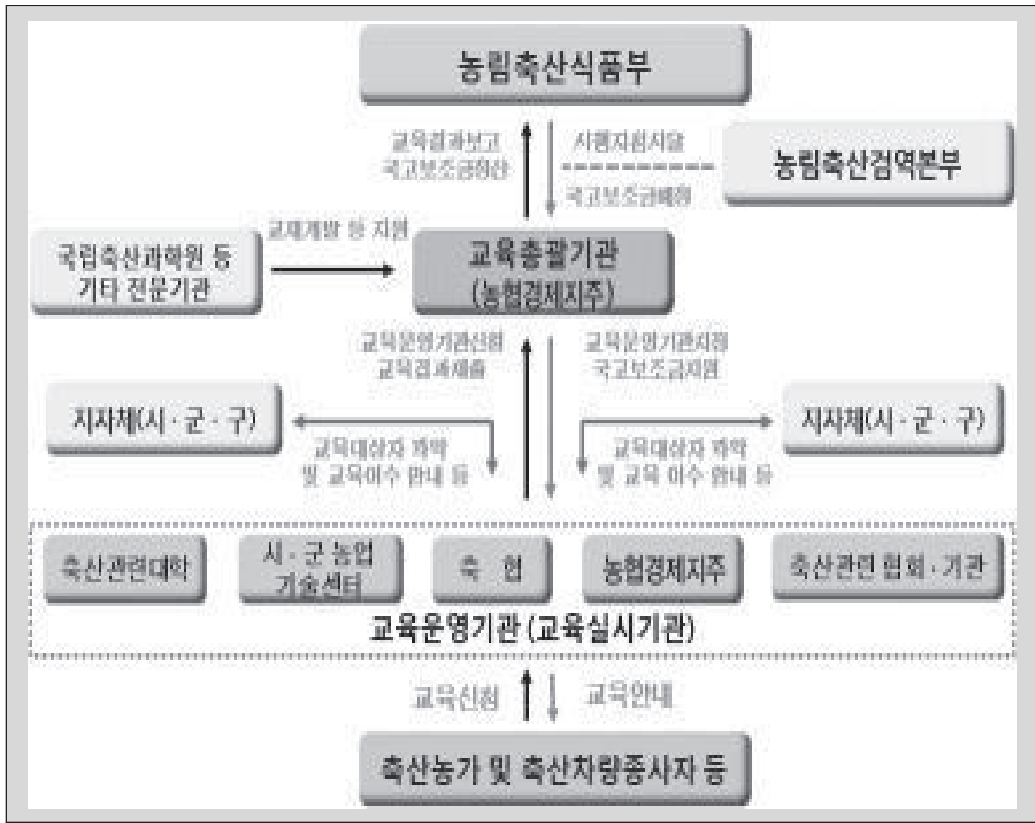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을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보고 및 공시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46조(별지 제3호)에 따르면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 등록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 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교육체계도



○ 교육운영

<교육방식>

- 집합교육 : 교육운영기관에서 지정한 강의실
- 온라인(모바일)교육 : 보수교육에 한해서 집합 또는 온라인(모바일)교육 선택 가능
- 컴퓨터(모바일)로 개별 신청하고 진도율 100% 달성시 수료 처리

<교육 프로그램 편성>

- 교육과목은 필수과목(6시간)과 선택과목 (24시간 교육만 해당)으로 구성
- 교육과목 중 현장실습은 현장 견학 등으로 대체 가능
- 선택과목은 교육운영기관에서 자율편성 실시

<교육대상자 모집>

- 총괄기관 : 전국 축산업 허가·등록자 현황 및 시도별 교육수료 현황을 상호 대사하여 분기별로 교육정보시스템에 이수율을 등록 및 반영
- 교육운영기관 : 교육정보시스템의 보고서관리 화면에서 시도별 시군별 의무(보수)교육현황을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제공하고 교육대상자 명단을 수령한 후 교육(보수교육 대상자는 교육정보시스템 보수교육대상자조회 화면에서 명단 조회)

<교육정보시스템 등록>

- 전국 교육운영기관은 2019년 교육계획을 2019년 1월말까지 교육정보시스템에 등록(교육일정, 대상, 장소, 정원 등)
- 교육생 출결관리, 수료정보 등록 및 정산관리
- 교육수료 관리(필요시 수료증 출력)

구분	세부실행	기한
교육실시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계획 세부내용 교육정보시스템 입력 - 교육계획서, 교육일정, 대상, 장소 등 ※ 2018년 교육개설 12월 7일 기준 마감 	교육실시 1개월 전에 등록
교육생 DB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별 교육생 DB 입력 - 의무교육의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확인 후 입력 - 보수교육의 경우 대상자(교육생) 사전 등록 	교육실시 후 2일 이내 교육실시 1일전까지
교육생 출석 및 수수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중 과목별 출결관리, 교육종료 후 수수료증 출력 안내 ○ 교육종료 후 수수료일로부터 2일 이내 출석 및 수수료 처리 	교육기간 중 교육종료 후 2일 이내
교육비 집행 시스템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운영기관별 교재, 사무용품, 다과, 현수막, 교육장 임차 및 강사료 등 국고집행에 필요한 전산신청서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등 자부담 및 국고집행 교육비용의 시스템 입력 ○ 과정별 교육결과 및 국고보조금 정산신청서 제출 	교육종료 후 5일 이내
교육비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총괄기관 정산신청서 검토 및 국고지원 완료 ※ 2018년 국고보조금(교육비 정산) 신청 12월 14일 기준 마감 	신청접수 후 7일 이내

※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기한 연장 가능

○ 교육 실행절차

기관별	주요 역할
교육운영기관	○ 2018년 교육계획을 2018년 1월말까지 홈페이지에 등재
↓	
지자체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교육 미이수자 및 보수교육 대상자 파악 교육운영기관 전달 ○ 교육대상자 파악 및 교육이수 안내·홍보 등 제반 사항 협조 ○ 교육대상자에 대한 점검 및 관리
↓	
교육대상자 (축산관련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운영기관 선택 및 교육 신청 등록 ○ 교육과정 개강 계획을 월단위로 확인하여 승인
↓	
교육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 교육대상자에게 교육 실시 및 참석안내 ○ 교육 실시 및 교육생 출결 확인 ○ 교육비 수납 및 개인정보동의서 징구 ○ 교육비 정산 신청 및 교육결과 제출 ○ 보수교육대상자 수료처리시 축산업등록번호 필수입력
↓	
교육총괄기관	○ 국고보조금 정산 및 교육수료자 관리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사업 정산 결과 및 실적 보고서 제출(익년 1월)

2. 평가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실적 및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강사 자격기준

분야	자 격 기 준
축산법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직 공무원, 정부출연기관 직원으로 해당 분야 1년 이상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 1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해당분야 소양을 갖춘 사람 5. 그 밖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사 면허증 소지자로 해당분야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 1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해당분야 소양을 갖춘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직 공무원, 정부출연기관 직원으로서 해당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동물복지 및 축산환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실무경력 또는 현장 컨설팅 경력 3년 이상으로 강의경험이 있는 자 4.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 1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해당분야 소양을 갖춘 사람 5. 국가 또는 지방직 공무원, 정부출연기관 직원으로서 해당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그 밖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HACC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또는 해당 분야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현장컨설팅 실무경력 2년 이상으로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3. 관련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양, 경영, 개량, 유통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현장컨설팅 또는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강의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직 공무원, 정부출연기관 직원으로서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 1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해당분야 소양을 갖춘 사람 5. 그 밖의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현장교육 (실습 등)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친환경축산·동물복지 및 축산환경·HACCP·사양·개량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동 강사로 지정된 사람
축산차량 등록요령	<o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그 산하기관 등 국가 또는 지방직 공무원, 정부출연기관 직원으로서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현재 축산법규 및 가축방역·질병관리 강사로 지정된 사람 3. 축산법규 및 가축방역·질병관리 분야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2018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강사 이력카드

1. 인적사항				제출일자	
성 명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6자리)		
현 주 소				우편번호	-
자택전화			휴대전화		
E-mail					
직장명	부서		직급		직명
직장주소			담당업무		
직장전화	팩스		홈페이지		
2.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명	학과명(전공과목)		학 위	
~					
~					
3. 전문분야					
○					
○					
4. 주요 강의경력(최근 3개년)					
연도별	강 의 명	강의분야	교육대상	출강기관	
5. 활동내역 및 저서수상					
활동내역	기 간	경력사항		기타	
	~				
	~				
저서수상	기 간	저서/수상내역		시행기관	
	~				

※ 성명과 같은 굵은 글씨체는 필수 입력항목임.

6. 자기소개	
7. 강의영역	
강의경력	<input type="checkbox"/> 대학 <input type="checkbox"/> 농업마이스터대학 <input type="checkbox"/> 농고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input type="checkbox"/> 컨설팅기관 <input type="checkbox"/> 농가 <input type="checkbox"/> 농업기술센터 <input type="checkbox"/> 교육센터 <input type="checkbox"/> 민간기업(업체) <input type="checkbox"/> 협회 <input type="checkbox"/> 농축협 <input type="checkbox"/> 기타()
강의분야	<input type="checkbox"/> 정책·축산관련 법규 <input type="checkbox"/> 가축방역 <input type="checkbox"/> 가축질병분야 <input type="checkbox"/> HACCP <input type="checkbox"/> 경영·회계 <input type="checkbox"/> 사양기술분야 <input type="checkbox"/> 축산환경·동물복지 <input type="checkbox"/> 가축분뇨 <input type="checkbox"/> 유통·마케팅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input type="checkbox"/> 차량등록요령 <input type="checkbox"/> 실습
강의축종	<input type="checkbox"/> 공통 <input type="checkbox"/> 한우 <input type="checkbox"/> 낙농 <input type="checkbox"/> 양돈 <input type="checkbox"/> 양계 <input type="checkbox"/> 오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8. 정보제공 동의	
<h2 style="margin: 20px 0;">개인정보제공 동의서</h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및 동 시행령 제15조, 축산법 시행령 제 26조의 2,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시행령 제15조의2등 2. 사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관련종사자교육정보시스템에서 강사DB 등록·관리 및 교육운영기관의 강사섭외 목적 및 원천징수대상시 등에 사용 3. 정보 제공 범위 : 강사카드에 기재한 내용 중 강사이름, 전화번호, 소속, 전공분야 및 강의과목, 강의영역 4. 정보 열람 범위 : 본인,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포함), 교육운영기관 5. 정보 등록 주체 : 본인,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포함), 교육운영기관 6. 정보주체의 권리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상 필요할 경우 강사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동의를 한 경우에만 수집되므로 동의 없이 등록된 경우에는 삭제요청할 수 있다. 7. 보유 및 사용기간 : 개인정보제공 동의한 날로부터 강사요원 탈퇴시까지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본인의 강사정보를 위의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동의자 성명 : (인)</p>	

※ 강의영역과 같은 굵은 글씨체는 필수 입력항목임.

【붙임 3】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특별승인 요청서

1. 교육 신청인원 : 명 (실제 수료자 : 명)
2. 특별승인 요청사유(구체적으로)
 -
 -
3. 교육일자 : 2018 . . .
4. 교육장소 :
5. 기타사항 :

2018년 월 일

교육운영기관장 (인)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귀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축산업허가제)

축산업 허가제 (가축거래상인 포함)										
성 명 (위임받은자)		<input type="checkbox"/> 남자 <input type="checkbox"/> 여자		전 화 번 호	자택	-		-		
					휴대폰	-		-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 6자리]								
법인명				-		사업자번호		-		
법인번호		-		대표자명		대표자생년월일				
주 소	자택	축 산 농 가	<input type="checkbox"/> 한육우 <input type="checkbox"/> 낙농 <input type="checkbox"/> 양돈 <input type="checkbox"/> 산란계 <input type="checkbox"/> 육계 <input type="checkbox"/> 오리 <input type="checkbox"/> 거위 <input type="checkbox"/> 메추리 <input type="checkbox"/> 칠면조 <input type="checkbox"/> 타조 <input type="checkbox"/> 꿩 <input type="checkbox"/> 사슴 <input type="checkbox"/> 양(산양·염소 포함)							
			종축업		<input type="checkbox"/> 돼지 <input type="checkbox"/> 닭 <input type="checkbox"/> 오리					
			부화업		<input type="checkbox"/> 닭 <input type="checkbox"/> 오리					
	농장		정액등처리업		<input type="checkbox"/> 소 <input type="checkbox"/> 돼지					
			<input type="checkbox"/> 가축거래상인							
			농장면적		m ²		두수			
		축산업 시작일		: 년 월						
		축산업 등록번호		:						
축산차량 소유여부 (승용차 제외)		<input type="checkbox"/> 소유 (<input type="checkbox"/> 가축운반 <input type="checkbox"/> 사료운반 <input type="checkbox"/> 퇴비운반 <input type="checkbox"/> 분뇨운반 <input type="checkbox"/> 알운반) <input type="checkbox"/> 미소유								

교육이력관리 동의서

1.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의 2,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5조의 2

2. 사용목적 : 축산업 허가제 및 이와 연계된 교육관련 모든 업무,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등록제 및 이와 연계된 교육관련 모든 업무, 수료증 발급확인용 등 교육관련 업무

3. 정보제공 범위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상에 기재한 내용 및 교육이력정보

4. 정보열람 범위 : 본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교육관련기관

5. 정보제공 주체 : 본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교육관련기관

6. 정보주체의 권리 : 축산법 33조의2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및 교육이력 정보를 제공하며 이의 열람은 축산관련종사자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가능하되 누락정보 등록 및 정정요청을 할 수 있다.

7. 보유 및 사용기간 : 개인정보제공 동의한 날로부터 ~ 축산업 종료시까지
본인의 교육이력을 위의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대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_____ (서명 또는 인)

(교육운영기관장) 귀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축산차량종사자)

축산시설 출입차량 등록, 가축거래상인

성 명	<input type="checkbox"/> 남자 <input type="checkbox"/> 여자		전화 번호	자택	- -
	[주민번호 앞 6자리]			휴대폰	- -
자택주소	종 사 구 분		<input type="checkbox"/> 가축운반 <input type="checkbox"/> 원유운반 <input type="checkbox"/> 알운반 <input type="checkbox"/> 사료운반 <input type="checkbox"/> 왕겨운반 <input type="checkbox"/> 퇴비운반 <input type="checkbox"/> 진료 <input type="checkbox"/> 가축분뇨운반 <input type="checkbox"/> 동물약품운반 <input type="checkbox"/> 시료채취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input type="checkbox"/> 인공수정 <input type="checkbox"/> 기계수리 <input type="checkbox"/> 방역 <input type="checkbox"/> 가축거래상인		
소 유 여 부	<input type="checkbox"/> 소유자	법인명		법인번호	-
	<input type="checkbox"/> 운전자	사업자번호			- -
축산차량 번호					

교육이력관리 동의서

1.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5조, 축산법 시행령 제26조의 2,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5조의 2
2. 사용 목적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등록제 및 이와 연계된 교육관련 모든 업무
수료증 발급확인용 등 교육관련 업무, 축산업 허가제 및 이와 연계된 교육관련 모든 업무
3. 정보 제공 범위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상에 기재한 내용 및 교육이력정보
4. 정보 열람 범위 : 본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교육관련기관
5. 정보 제공 주체 : 본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교육관련기관
6. 정보주체의 권리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 제4항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 및 교육이력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의 열람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가능하되 누락정보 등록 및 정정요청을 할 수 있다.
7. 보유 및 사용기간 : 개인정보제공 동의한 날로부터 ~ 축산관련업 종료시까지
본인의 교육이력을 위의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교육운영기관장) 귀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강사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원천징수대상거래)

○○축협/◇◇농업기술센터/△△대학교 귀중

귀회와의 재화 및 용역 거래와 관련하여 귀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회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제공 목적	○○축협과 재화 및 용역 거래에 대한 지출증빙자료로 거래사실을 입증시 활용
수집·이용·제공 할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휴대폰번호)
보유·이용·제공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일이 속하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까지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증빙서 원본 및 전산자료)·이용됩니다. ※ 본회 업무방법상 거래에 대한 지출증빙 자료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간 보관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에는 본회 및 소득세법 제145조2항에 따른 지출증빙자료로 거래사실 입증자료로 이용 못하여 본회와의 재화 및 용역 거래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제공 동의 여부	귀 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고유식별 정보 동의여부	귀 회가 소득세법 제145조2항에 따른 거래사실을 증명과 동법에 따른 신고를 위하여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연락처 (휴대폰번호) : 주민등록번호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위임장(법인용)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본인과의 관계	
소속법인	법인명		법인번호	- -
	주소		사업자번호	-
위임내용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에 대한 대리 참석			
<p style="text-align: center;">상기 법인은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과 관련하여 위 내용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년 월 일</p> <p>사무소 주소 : (☎) _____</p> <p>대표자 성명 : (인)</p> <p>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p> <p style="margin-top: 20px;">교육운영기관장 귀하</p> <p>※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p>				

【 붙임 8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결과 및 국고보조금 정산신청서

(교육운영기관명)

1. 신청일 : 20 . . .

2. 교육결과보고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신청인원	수료인원	교육장소	교육일자	담당자	전화번호
허가제+차량, 차량종사자 등		명	명				

3. 교육과목 및 강사 인적사항

교육과목	강사등급	강의시간	강사 인적사항				
			소속	직급	직명	성명	사무실 시·군·구
축산법규							
가축방역/질병관리							
친환경축산/동물복지							
축산차량등록							
HACCP							
(선택과목)							
(선택과목)							
실습지도강사							
교육운영요원							
교육운영요원							

4. 국고보조금 신청액

(단위 : 원)

구분	수료자수	자부담 징수액(A)	자부담 사용내역		총교육비(C)	국고보조금(C-A)
			항목	금액(B)		
자부담액	4천원		다과비			
	8천원		사무용품비			
	10천원		현수막			
	12천원		교육장사용료 등			
	40천원		교재비			
합계						

※ 자부담 징수액 합계와 자부담 사용내역 합계는 동일할 것

5. 세부항목별 정산 내역

(단위 : 원)

구 분		산출근기	집행액	법정지출증빙서류
직	강의료	(과목명) 강사명 (지급액 = +)		(무통장)입금표, 원천징수영수증, 강사로 수령 확인서, 원고료 지급 산출근기
		(과목명) 강사명 (지급액 = +)		
		(과목명) 강사명 (지급액 = +)		
		(과목명) 강사명 (지급액 = +)		
		실습지도강사 강사명 (지급액 = +)		
접	원고료	(강사명) 매 × 원		
		(강사명) 매 × 원		
교	여비	30,000원 (거소가 동일 사군구 야일 경우)		(무통장)입금표
육	교재비	부 × 17,000원 이내 [수료생수+강사수+추가인정용(15부)]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무통장)입금표, 현금영수증 등
비	교육장 사용료 등	일 × 300,000원 이내 [300천원/ 1일(8시간)]		자체시설이용사진, (전자)세금계산서 등
	현수막	원 × 매 [1~2매, 90천원 이내]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무통장)입금표, 현금영수증
	사무용품	1인/ 1과정당/ 4천원 이내		
	다과비	1인/ 8시간/ 4천원 이내		
	합계(E)		-	
교육 운영비 (F=E × 20%)		수수료:=[교육비 합계(E) × 20%] - 진행비(D) 교육운영요원 진행비(D) : 명 × 50천원		(무통장)입금표 등
총 교육비(G=E+F)				
자부담 교육비(H)		-		교육전용통장 사본
국고보조금 신청액(G-H)		직접교육비 합계(E) + 교육운영비(F) - 자부담교육비(H)		

6. 입금계좌 : - - [교육전용 법인통장 사본 첨부, 기 제출 기관은 제외]
7. 교육수료자 명단 : 명 【붙임 10】
8. 교육비 법정지출증명서류 : 【붙임 11】
9. 자체 교육장 등 시설이용 사진 : 【붙임 12】
10. 강사비(원고료, 강사여비) 수령확인서 : 【붙임 13】

(교육운영기관 대표 인)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귀하

교육 출석기록부(서명부)

- 과정명 : 신규농가교육(허가제, 등록제), 축산차량종사자 등
- 교육일시 :
- 교육장소 :

구분	성명	생년월일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축산관련 법 규	가축방역, 질병관리	동물복지, 축산환경	선택과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교육수료자 명부

- 교육일자 :
- 수료인원 :
- 수료자 명단

순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대상구분	연락처	자부담금액
1						
2						
3						
4						
5						
6						
7						
8						
9						
10	(전산에서 출력한 수료자 명단 첨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교육비 법정지출증빙서류 (부착방법 예시)

- 교육일자 :
- 해당항목 : 교재비/ 교육장사용료/ 현수막/ 사무용품비/ 다과비/
※ 강사료/ 여비/ 원고료는 강사비 수령확인서로 같음

<u>(교재비) 법정지출증빙서류</u>	
지출일자 :	/ , /
지출액 :	원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법정지출증명서류 <u>사본</u>	

자체 교육장(실습장) 시설이용 사진

□ 교육일자 :

사진 1(자체 교육장)

사진 2(자체 교육장)

사진 3(실습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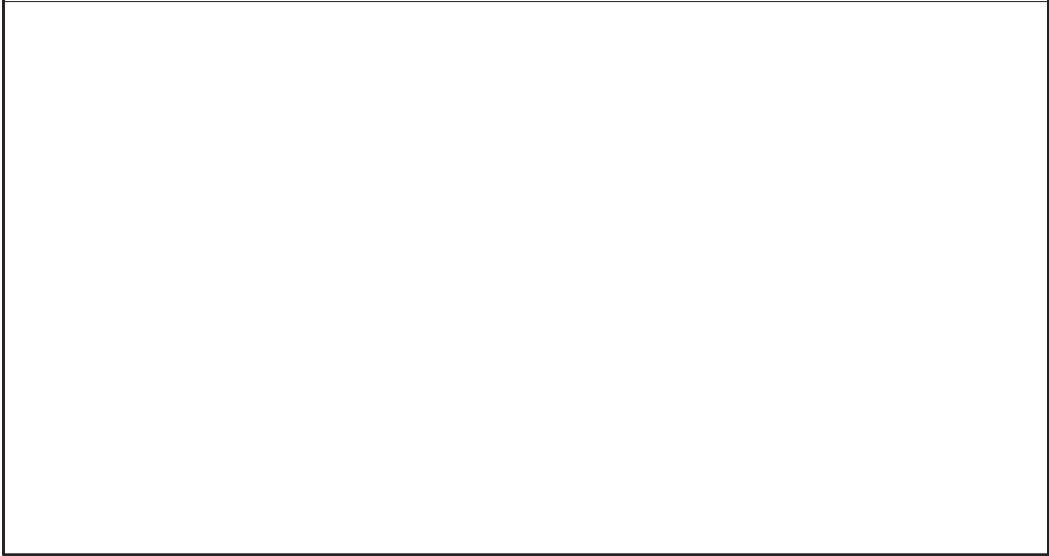


사진 4(실습현장)



강사료 (원고료, 여비, 교육 운영요원 진행비) 수령 확인서

□ 교육일자 :

강의내용 과목	강의 시간	강사 인적 사항			강의료	원고료	원천 징수 내역				강사 여비 (E)	지급 총액 (D+E)	서명	
		소속	직급	성명			계좌번호	지급액 (A)	기타소득금 액(B) (A×20%)	원천징수세 액(C) (B×22%)				차감 후 지급액 (D=A-C)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은행									
교육 운영 요원														
교육 운영 요원														

- ※ 기타 소득금액(B)이 5만원 초과외의 경우에만 원천징수.
- ※ 이면에 (무통장)입금표를 반드시 첨부하여 지급을 명확히 할 것.
- ※ 원고료 청구 시 반드시 지급전 검수를 위한 PPT파일 이메일 첨부(K_J_H3101@nonghyup.com)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참가필증

<p style="text-align: center;">축산종사자 교육 참가필증 (교육기관 제출용)</p> <p>□ 교육과정 : 농가교육 / 차량종사자교육 선택</p> <p>□ 교육일자 : '18. . .</p> <p>□ 교육장소 :</p> <p>□ 교육생 성명 : (서명)</p> <p>위 사람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에 참석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8. . . . 교육운영기관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50px; height: 50px;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직인 날인 </div>	<p style="text-align: center;">축산종사자 교육 참가필증 (교육생 보관용)</p> <p>□ 교육과정 : 농가교육 / 차량종사자교육 선택</p> <p>□ 교육일자 : '18. . .</p> <p>□ 교육장소 :</p> <p>□ 교육생 성명 : (서명)</p> <p>위 사람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에 참석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8. . . . 교육운영기관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50px; height: 50px;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직인 날인 </div>
-------------------------------------------------------------------------------------------------------------------------------------------------------------------------------------------------------------------------------------------------------------------------------------------------------------------------------------------------------------------------------------------------------------------------------------------------------------------------------------------	------------------------------------------------------------------------------------------------------------------------------------------------------------------------------------------------------------------------------------------------------------------------------------------------------------------------------------------------------------------------------------------------------------------------------------------------------------------------------------------

<p style="text-align: center;">축산종사자 교육 참가필증 (교육기관 제출용)</p> <p>□ 교육과정 : 농가교육 / 차량종사자교육 선택</p> <p>□ 교육일자 : '18. . .</p> <p>□ 교육장소 :</p> <p>□ 교육생 성명 : (서명)</p> <p>위 사람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에 참석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8. . . . 교육운영기관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50px; height: 50px;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직인 날인 </div>	<p style="text-align: center;">축산종사자 교육 참가필증 (교육생 보관용)</p> <p>□ 교육과정 : 농가교육 / 차량종사자교육 선택</p> <p>□ 교육일자 : '18. . .</p> <p>□ 교육장소 :</p> <p>□ 교육생 성명 : (서명)</p> <p>위 사람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에 참석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8. . . . 교육운영기관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50px; height: 50px;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직인 날인 </div>
-------------------------------------------------------------------------------------------------------------------------------------------------------------------------------------------------------------------------------------------------------------------------------------------------------------------------------------------------------------------------------------------------------------------------------------------------------------------------------------------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비 영수증

축산관련종사자 교육비 영수증
(교육기관 제출용)

□ 교육과정 : 농가교육 / 차량종사자교육 선택
□ 교육일자 : '18. . .
□ 성 명 :
□ 금 액 :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2018. . .

교육운영기관명 직인
날인

축산관련종사자 교육비 영수증
(교육생 보관용)

□ 교육과정 : 농가교육 / 차량종사자교육 선택
□ 교육일자 : '18. . .
□ 성 명 :
□ 금 액 :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2018. . .

교육운영기관명 직인
날인

축산관련종사자 교육비 영수증
(교육기관 제출용)

□ 교육과정 : 농가교육 / 차량종사자교육 선택
□ 교육일자 : '18. . .
□ 성 명 :
□ 금 액 :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2018. . .

교육운영기관명 직인
날인

축산관련종사자 교육비 영수증
(교육생 보관용)

□ 교육과정 : 농가교육 / 차량종사자교육 선택
□ 교육일자 : '18. . .
□ 성 명 :
□ 금 액 :

상기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2018. . .

교육운영기관명 직인
날인

(기관번호) - (년도) - (일련번호)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수료증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교육기간 : '18. . . ~ '18. . .

위 사람은 축산법 제33조의2에 의거 (교육운영기관명)에서 실시한 축산업 허가제 [신규대상+차량(24시간)] 교육과정을 이수 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18년 월 일

교육운영기관장 (인)

차기 보수교육일 : . . . ~ . . .
차차기 보수교육일 : . . . ~ . . .

(기관번호) - (년도) - (일련번호)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수료증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교육기간 : '18. . . ~ '18. . .

위 사람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3제4항에 의거 (교육운영기관명)에서 실시한 축산차량등록제 교육 과정을 이수 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18년 월 일

교육운영기관장 (인)

차기 보수교육일 : . . . ~ . . .

차차기 보수교육일 : . . . ~ . . .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운영요원 명찰 양식

2018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진행요원 과장 홍길동
교육운영기관명

2018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진행요원 과장 홍길동
교육운영기관명

2018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진행요원 과장 홍길동
교육운영기관명

2018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진행요원 과장 홍길동
교육운영기관명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생 좌석표 양식

<u>2018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u>	
번 호	
성 명	
교육운영기관	○○○○축협

<u>2018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u>	
번 호	
성 명	
교육운영기관	○○○○축협

세부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24,000					
사업목적	○ 축산농가에 ICT융복합 장비를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							
사업 주요내용	○ 외부환경 및 내부환경 모니터링 장비 등 ICT 융복합 시설 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지원자격 및 요건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양돈, 양계, 낙농, 한우, 오리, 사슴분야 농업경영체							
지원한도	○ 1,00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	용자	5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19,520	25,840	48,000	64,000			
	국 고	7,820	9,690	18,000	24,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안정모		044-201-2335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							

I.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사양관리) 사료빈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의 제어를 통한 사양관리
 - (경영관리) 생산관리, 경영관리,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축산농가에 최적의 사양관리를 통한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보급 확산
 - 스마트 축사 적용하여 생산성 향상 20% 달성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 생산성 향상	20%	'19.12월	설치 전후 생산량 및 품질 등의 비교분석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실증·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19,520	25,840	48,000	64,000
국 고	7,320	9,690	18,000	24,000
용 자	12,200	16,150	30,000	40,000

II.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22조)
 - ※ 지원 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기본 조건>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이후 ‘(가칭)빅데이터 플랫폼(’19~, 농정원)’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도 적용

<우선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의 평가 점수 상 부지와 시설이 미비하여 평가 항목 중 시설조건의 점수가 0점인 경우
 - ※ 현대화된 축사가 아닌,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샌드위치판넬) 형태의 축사 지원 불가
- 축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축산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 「축산법」 제33조2에 따라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이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경영체 등록 전이라도 축산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을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 다만, 사업 완료 시 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년도 해당 축종의 의무자조금(계란·닭고기·오리)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 축종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조금납부확인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함(참고 서식4)
 - * '18.1~12월 동안 납입 실적(닭·계란은 '16~'18년)
 - 최근 2년 동안 본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사업 지원 前 컨설팅 기관이 수행하는 컨설팅(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장비 및 종류 등에 대한 안내)에 대한 태도가 불성실하여 사업주관기관이 컨설팅이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농업경영체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 기간 및 용자상황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규정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에 따라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는 최소 5년이상의 사후관리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함

※ **농가 및 지자체 준수 사항** : 사업신청자는 지원 제외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지 아니하며, 지자체는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상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대상자의 지원 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하여야함

<평가 시 가점부여>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 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지원대상>

-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번식, 질병, 사양, 경영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농장경영관리프로그램
-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 환경관리기, 환풍기, 냉난방기, 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열풍기, 조도관리기(LED), 통합 S/W 등
 - 악취측정, 악취저감시스템,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등
 -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CCTV
 -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원격제어,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에 한함
 - ※ 축사 내부에서만 관찰가능하고 타 장비와 연계성이 없는 아날로그형 CCTV는 지원 제외
-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 (양돈) 자동급이기, 컴퓨터액상급이기, 음수관리기, 군사급이기, 사료효율 측정기, 사료빈관리기, 출하돈선별기, 발정/임신진단기, 체중측정기 등
 - (양계·오리) 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난선별기, 부화기, 음수관리기, 사료 빈관리기, 체중측정기 등

- (낙농·한우) 착유기, 로봇착유기, 자동급이기, 사료빈관리기, 음수관리기, 발정탐지기, TMR배합기, TMR자동급이기, 분만알리미, 자동포유기, 조사료정리기, 체중측정기, 원유냉각기, BCS측정기 등
-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지원유형>

□ 일반형과 전문형으로 구분함

- 일반형은 환경관리기, CCTV 등 단일장비만 도입하여 단순히 활용하는 경우 (사업비 중 단일장비의 비중이 90% 이상인 경우)
- 전문형은 장비의 종류를 두 가지 이상 도입하여 해당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 등 활용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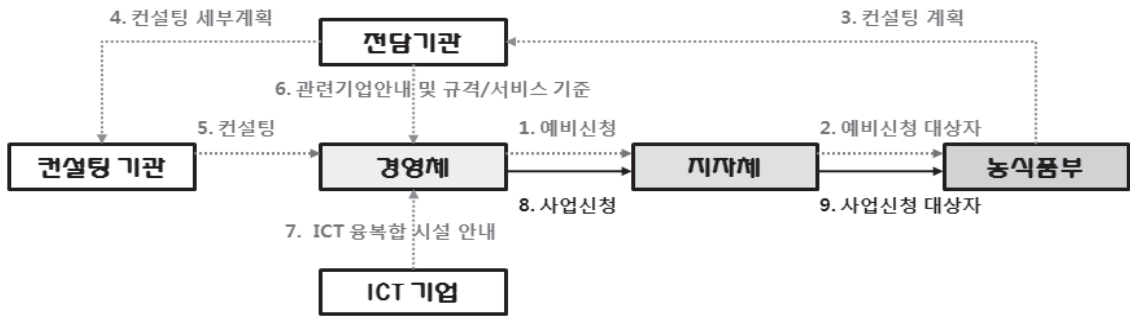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표준사업비 : 100백만원
 - *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15,000수),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100백만원을 기준으로,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 하되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농장 사정에 맞도록 실소요액을 반영
 - *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이 국고(100%)로 계획 수립 후, 대상농가에 지원
- 사업비 상한액 기준 : 1,500백만원
 - * 단, 양돈·양계·오리 일반형(환경관리, CCTV, 사양관리 SW 중심)의 사업비 기준은 30백만원(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종계 10,000수), 오리전업농 /20,000수), 낙농·한우·사슴 일반형의 사업비 기준은 50백만원, 상한 200백만원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수립 및 통보('19.7월)

지자체

-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예비신청 대상자를 모집하고 그 명단을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19.8월)
- * 시·군은 사업비 내에서 예비사업자를 수시로 발굴하고, 시·도는 매월 말일에 시·군의 예비사업 수요자를 일괄취합하여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 제출

전담기관

- 컨설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여 지자체 및 사업신청 대상자에게 통보('18.7월)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19.7월)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상의 사업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 후,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18.8월)
- 정책방향과 사업목표 등이 상이한 대상자는 시·도 검토 시 신청에서 제외

시 · 군

-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을 위해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서 지정(안내)하는 컨설팅기관 및 ICT 융복합 기업을 안내('19.8월)
- 시장·군수는 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경영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전담기관에 제출('19.10월)

경영체

- 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건적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19.10월)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
 - * 중도 포기자는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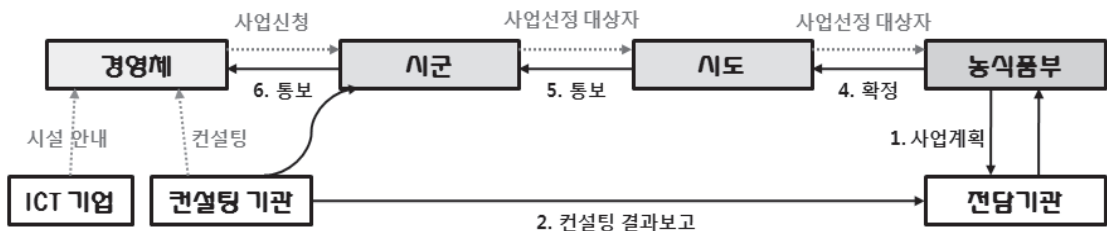
전담기관

- 사업전담기관(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컨설팅 선정기관 규격 및 서비스 기준, 관련 ICT 융복합 기업을 경영체와 지자체에 안내('19.8월)

컨설팅 기관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의 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도, 시·군 및 전담기관에 통보('19.10월)
 -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9.11월)
- * 컨설팅결과 및 사업비 신청내용에 등에 대한 전담기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사업내역 및 비용조정 등

시·도

- 시·도지사는 시·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우선순위에 대해 본 시행지침상의 우선지원 요건과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표를 토대로, 적격 여부 및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그 명단을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보고('19.12월)

시·군

- 시·도에서 배정된 예산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19.12월)

전담기관

-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및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신청 농업경영체별 사업추진 내역 및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농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함('19.12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농업경영체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하고,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 결정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시설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변경하여 집행
-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계약에 관한 사항(계약서 사본, 계약내용 등 계약서류 일체)를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통지

사업변경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조직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로 제출(시·도는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
- 사업시행주체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4. 자금배정단계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 기성고(준공) 확인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보조금 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 자 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이나, 시장·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자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이고, 자부담 금액이 200백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금액의 50%만 선집행하면 국고 집행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추진

5.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연 2회(반기별 1회)
 - 점검반 : 농식품부,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및 진척도, 시설장비 선정의 적합성, 지자체 및 자부담 조달계획 등
 - * 점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물량 우선배정 등

지자체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컨설팅 기관의 시설설치컨설팅 결과보고서(증빙서류, 현장사진 등 포함)를 활용한 현장 확인 실시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 사업자 선정 이후부터 실집행금액 등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매월 말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컨설팅 기관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에 시설이 효과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 및 시·군에 제출

전담기관

- 컨설팅기관의 사전 컨설팅, 시설설치 컨설팅, 확인점검 컨설팅에 대한 추진 현황 점검 및 확인
 - 컨설팅 추진현황 파악하여 매월 말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의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으로 현지방문 점검 실시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주요시설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 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융자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 규정」(훈령 제260호) 제16조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후 농식품부 보고
- *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 성과측정단계(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시기 : 차년도 12월말 기준(구축 전후비교)
- 평가방법
 - 전담기관 및 시장·군수(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물량 배정 조정 등의 조치

시·도(지자체)

- 주관기관 : 시장·군수(시도지사)
- 평가시기 : 구축 후 2개월 이내
-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등을 활용하여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결과보고

전담기관

- 사업성과 지표 개발 및 측정
- 운영현황조사 및 현장실사(주관기관 적극 협조)
 - 전담기관은 컨설팅결과의 기대효과 및 지자체의 자체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사업성과 지표에 따라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세부사업명	축산자조금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축산자조금 운영	예산 (백만원)	26,000					
사업목적	○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발전을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수급안정, 조사연구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2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축산단체							
지원한도	○ 국고보조50%(농가거출금의 100%범위내 매칭지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50,000	52,000	52,000	52,000			
	국 고	25,000	26,000	26,000	26,000			
	자부담	25,000	26,000	26,000	26,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안정모		044-201-2335			
신청시기	당해연도 수시		사업시행기관		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			
관련자료	축산자조금운영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자조금관리위원회
-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품목별 비영리법인인 전국 단위의 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의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자조금을 조성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위원회

3. 지원대상

- 축산물의 소비촉진, 수급안정 등 축산자조금법에 의한 자조금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 축산업자 및 소비자, 중도매인 등과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 축산물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 그밖에 자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다만,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은 축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중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의 광고(방송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는 제외한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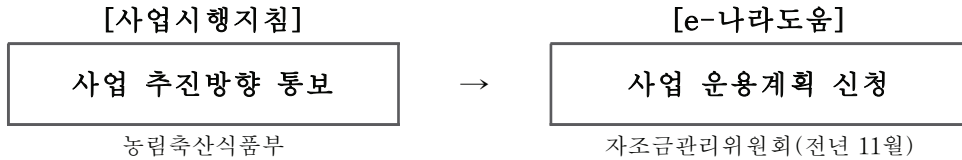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농가거출금의 100%범위 이내에서 지원(다만, 사업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축산물(쇠고기, 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오리고기, 녹용, 꿀 등) 소비촉진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농가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자조금 조성액 범위 내에서 보조지원
- 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거출금의 금액은 대의원회(의무자조금) 또는 임의자조금위원회(임의자조금)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정함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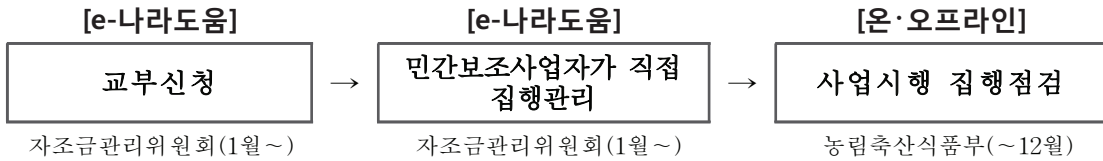


- 자조금사업 운용계획 제출
 - 자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조금관리위원회(축산단체)는 자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위원회 심의)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자조금의 명칭, 자조금의 목적 및 내용, 수입 및 지출계획, 자조금의 운영 방법 및 절차, 자조금 조성방법 및 일정, 소비촉진 사업 등을 포함
 -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은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공시(홈페이지 게시)
- 자조금 조성 의사결정, 운영방법 등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행

2. 사업 승인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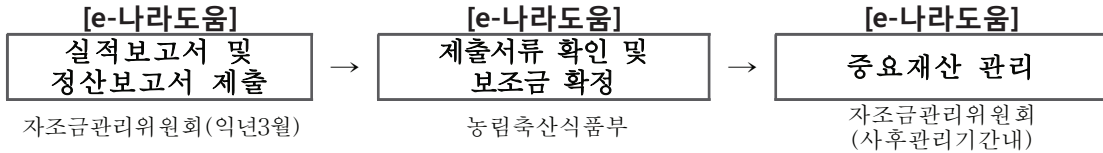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사업담당부서)는 자조금관리위원회(축산단체)에서 자조금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제출시 축산자조금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승인
 - 사업계획 승인시 동일 축산물내에 복수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등 자조금 설치시 관련 축산단체의 참여 여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부합하는지 여부, 거출금 및 촉발기금지원액 등 자조금 재원의 타당성 등을 확인 후 승인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임의자조금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임의자조금위원회)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
 -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부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임의자조금위원회)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임의자조금위원회)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임의자조금위원회)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농림축산식품부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임의자조금위원회)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1. 평 가

- 자조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매년 사업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인센티브 지원을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음

2. 환 류

- 사업실적 평가결과 제기된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지침 및 관련규정 개선과 예산편성 반영

《사업시행체계》



축 산 분 야

4-2. 생산기반확충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세부사업명	가축분뇨처리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성분분석기 지원 ·가축분뇨 부속도 판정기 지원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 지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장비 지원 ·공동자원화 퇴액비화 시설장비 지원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악취측정ICT기계장비 ·액비유통전문조직 ·액비저장조 지원 ·정착촌 분뇨처리시설장비 지원 	예산 (백만원)	30,072				
사업목적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 하여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						
사업 주요내용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기존 정화 시설 보수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지원자격 및 요건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원한도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폐 지	한 우	젓 소	닭	
						평사	케이지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개 별 농가	500	3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 정착촌분뇨처리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준함				
	· 액비저장조	신규		20(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개보수		9(200톤 규모기준, 슬러지 제거비용 포함)			
	· 액비유통센터		200(최초 지원시)				
	· 액비살포비		200천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				
· 액비성분분석기		37					
· 액비부속도판정기		30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1.2					

		(단위 : 백만원/톤)							
		용량(톤/일)		70	100	150	200	250	300
공동자원화시설									
퇴·액비화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액비화 50%이상 생산)				70	64	56	51	47	43
퇴비화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				70	64	56	51	47	43
에너지화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100	92	81	73	67	62
바이오가스 연계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54	50	44	40	36	34
<p>※ 제시되지 않은 용량의 사업비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백만원 이하 단위 절사</p> $y = y^1 - \frac{(x - x^1)(y^1 - y^2)}{(x^2 - x^1)}$ <p>x : 당해 시설용량, x^1 : 작은 시설용량, x^2 : 큰 시설용량 y : 당해 사업비, y^1 : 작은 시설용량 단가, y^2 : 큰 시설용량 단가</p>									
재원구성 (%)	국고	20~100	지방비	20~50	용자	20~70	자부담	10~3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202,096	179,962	153,865	133,606				
	국고	48,898	43,223	36,908	35,050				
	지방비	53,648	43,205	39,509	33,162				
	용자	70,892	65,822	55,710	48,295				
	자부담	28,658	27,712	21,738	17,099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농협경제지주 등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김상돈		044-201-2357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3.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개별처리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계열화 사업 주체, 농업기술센터
- 공동자원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정착촌분뇨처리 : 한센인 정착촌의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등), 축산농가, 한빛복지협회, 지방자치단체
- 액비저장조 : 전문유통주체, 축산농가, 농업경영체(단, 농업경영체는 액비유통센터 주체와 3년이상 액비납품 계약서가 체결된 경우)
 - * 전문유통주체 :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 농경지 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액비 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가 지정한 재(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경종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액비유통센터, 액비살포비 : 전문유통주체(액비유통센터)
- 액비성분분석기, 부속도판정기,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 주체
 - * 관련법령: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 적용사항 》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라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준수(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도 동일 적용)
 -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 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 공통 적용사항 》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 자기자본 >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등(이하 [별표6] 적용)
 - * 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법인의 운영실적 범위를 축산업, 가축분뇨관련 영업, 가축분퇴비 생산·판매, 환경시설 및 바이오가스에너지 등 사업자 선정계획에 별도 명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 농어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닌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등은 제외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돼지, 한우, 젓소, 닭, 오리)는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함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별지 제21호서식],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별지 제22호 서식]

○ 개별처리시설

- ①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자
- ②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 ③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자
- ④ 지원대상 농가 등은 처리시설 설치와 함께 악취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것
 -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악취저감용 미생물 생산·공급 시설의 경우 동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곳(자원화조직체*, 농업기술센터)
 - * 자원화조직체 :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조직
- ⑥ 악취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기계·장비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의 관리 계획(장비·시설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 지침은 별도 시달(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19년 신규 대상자부터는 사후관리를 위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 의무 참여)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가축분뇨(100%)를 활용하여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또는 퇴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에너지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 기존 퇴·액비화 시설(1일 70톤 이상)에 에너지화시설을 추가(바이오가스 연계 시설)로 설치 하고자 할 경우,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사업 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에너지 생산 이용 및 퇴·액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 에너지화시설의 경우,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또는 국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의무 참여(사업대상자 선정 후 세부계획수립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의무 반영)
 - ※ 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 참여 시·군간에 협의를 거쳐 설치 지역을 선정한 후 해당 시·군에서 시·도에 신청
 - ※ 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사업은 준공 후 5년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 한함
 - ※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은 가축분뇨 신속수거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 중 준설관련 장비의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장비지원 대상은 농식품부가 지원한 공동자원화사업장)

*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 세부지침은 별도 시달

○ 정착촌분뇨처리 : 한센인 정착촌 내에서 한센인이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법인체 등

- 한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및 분뇨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 액비저장조

- 전문유통주체로서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비료생산업등록 또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축산농가로서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생산된 액비를 저장, 품질유지, 유통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시비처방을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 액비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주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 (이 경우 전문유통주체는 액비저장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 농업경영체(일반 경종농가 또는 법인)로서 액비유통센터 주체와 3년이상 액비납품 계약서를 체결할 것

* 액비저장조 설치시 악취저감(지붕, 바이오필터, 커텐 등) 및 액비품질(폭기 시설)등 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반드시 갖추 것

○ 액비유통센터

- ① 액비살포에 필요한 살포지를 200ha이상 확보(재활용신고필증 기준, 조사료 생산 농경지 50ha 이상 권장)하고 연간 100ha이상 살포 실적(AgriX 기준)이 있어야 함
- ② 액비유통센터와 경종 및 축산농가간 액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
- ③ ‘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Agrix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조직 (신규 센터는 반드시 동 시스템에 의해 관리 되어야 함)
- ④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

*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센터는 제외(단, 계약농가 전체가 ‘21년까지 비료생산업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⑤ 사업주관기관은 액비유통센터에서 정부지원 또는 액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거·운반·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유통센터명, 전화번호, 소유주, 비료생산업 등록번호, 성분표시 등) 부착 할 것

○ 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하고, 비료생산업 등록 또는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과 부속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전문유통주체

* 액비살포비 지원 세부지침은 별도 시달

○ 성분분석기 및 부속도판정기 : 액비성분 분석 및 부속도 측정,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자원화 조직체로서 요건을 갖추고 이행 할 것

- ① 부속도판정, 성분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 ② 유지 보수가 가능한 예산을 확보할 것
- ③ 전담자 지정, 농촌진흥청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년 1회) 이수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것

3. 지원대상

○ 개별처리시설

- 퇴·액비화시설 :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액비순환시스템 포함),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등

*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호기성 액비화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 정화시설(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 수질 기준(‘19년)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정화개보수(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19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설치·운영시설의 개보수 및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설치비(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등
- 에너지화시설: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에너지 자원을 생산,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
- 부대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장비(장치와 설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큇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축분처리시설 부착용 적산전력계(계량기)
-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터 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대상자에 지원

※ 개별 축산농가 지원 제외 시설·장비 : 바큇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단, 전업농 이상 지원가능)*, 축분퇴비포장기, 공동퇴비장,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스키드로더 구입기준은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트랙터 부착용 스키드로더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 전업농기준 : 한우·육우·젖소 5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600㎡ 초과, 양돈 1,00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000㎡ 초과, 양계 30,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400㎡ 초과, 오리 5,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300㎡ 초과

- 악취저감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생산, 공급하는 시설
- 가축분뇨처리 시설 첨단화 및 네트워크(분뇨발생량 및 이동관리 체계 등) 구축에 소요되는 시설 설치·기계·장비 등
- * 개별처리시설 설치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구입
- 광역축산악취개선 : 축산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신규설치 또는 개보수)
- *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탈취탑(스크러버), 안개분무시설, 퇴비사 및 고액분리기실 밀폐, 미생물배양기, 폐사축처리기, 기타 악취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 등
- 악취측정용 ICT 기계·장비 등(악취감지센서, 기상장비 등)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퇴비화 : 가축분뇨 퇴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에너지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과 남은 소화액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바이오가스 연계 : 기존 퇴·액비화 시설(1일 70톤 이상)에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과 남은 소화액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개보수 : 퇴·액비 시설·기계·장비, 악취방지시설, 전력계량기, 혐기소화조 및 가스포집장치, 열병합발전기 등
 -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필요한 등록, 모니터링 및 유량계 설치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포함
 - ※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 : 가축분뇨 고착슬러지 제거 및 신속수거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 정착촌분뇨처리 : 한센인 정착촌에서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개별처리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설치, 기계, 장비 등
- 액비저장조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펄프식 교반시설 등), 적산전력량계(계량기) 구입비, 개보수비 등
 - 고정식 액비저장조(200톤 이상 등) 여러 개를 지원할 경우 2단 이상으로 설치(1단계 → 2단계 → 3단계 등)하도록 권장
 - 대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대상자와 관내에서 5년 이상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다만, 지방비를 시·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
 - 소규모(10톤 내외 규모)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주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센터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액비유통센터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예 :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20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
 - 액비저장조 개보수 : 지붕 및 외관파손, 누수, 바닥균열에 따른 보수, 교반·폭기 시설 추가 및 교체(단, 액비저장조내 슬러지 제거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 위탁처리비용 등 처리비용을 제외한 순수하게 슬러지를 제거하는 비용만 개보수 사업비에 포함)
 - * 개보수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 액비유통센터 : 바큇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등 구입비 지원
- 액비살포비 :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단,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대상 필지는 지원불가. 지자체는 액비살포비 지원시 조사료 필지는 제외하고 지급)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 액비부숙도판정기 : 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비용 지원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구입비용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3. 지원대상 참조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용자	자부담	용자조건
개별처리시설	20	20	6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3%)
약취측정 ICT기계장비	40	30		30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퇴비화, - 바이오가스 연계 - 에너지화	40 50	30 20	30 20	- 10	
정착촌분뇨처리	50	30	20	-	
액비저장조	20	50		30	
액비유통센터	30	50	-	20	
액비살포비	50	50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액비부속도판정기	50	50	-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50	50	-	-	
축산환경개선	100				
자연순환농업활성화			70	30	연 2%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하되, 시·도비는 10~50% 이내 편성하고 지방비를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지방비의 50% 이내에서 대체 가능
-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경우 국비용자를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음
- * 개별처리시설 및 정착촌분뇨처리 사업의 사업대상자가 농업기술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국비용자를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음
-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우선지원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산정기준

- 개별처리시설, 정착촌분뇨처리는 다음 축종별 축사 m²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단, 무허가축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하겠다는 조건부로 지원 가능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단위 : 천원/m²)

축종	돼지	한·육우	젓소	닭	
				평사	케이지
단가	148	60	70	42	68

-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창고면적 제외)
 - 단, '개'는 「건축법」에 의한 신고된 축사면적이 없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면적 기준
- ② 소·말 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염소)·개는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기준, 메추리는 닭 기준으로 각각 지원

-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 m²단위면적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
- ⑤ 2009.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보관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노후 시설·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창고형 건물은 제외)
- ⑥ 한센인 정착촌내 공동시설의 경우 사업비 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도가 확인한 정착촌내 축산 농가중 시설운용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실제 이용 농가의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적용
- ⑦ 무창돈사(또는 무창계사)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하여 사업비 단가의 40%를 가산하여 적용가능하고 닭 케이지의 단가는 4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4단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 산출하여 적용
- ⑧ 가축분뇨의 전처리시설·장비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축사 m²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준) 초과시 축사 m² 단위면적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 ⑨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①~⑧을 준용하되, 사업참여농가(법인체 등 포함)의 사업비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컨설팅 후 재 산정하며, 개별처리시설의 개별농가 한도액을 적용

○ 사업비 지원 한도액

(단위 : 백만원/톤)

용량(톤/일) 공동자원화시설	70	100	150	200	250	300
퇴·액비화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액비화 50%이상 생산)	70	64	56	51	47	43
퇴비화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	70	64	56	51	47	43
에너지화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100	92	81	73	67	62
바이오가스 연계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54	50	44	40	36	34
<p>※ 제시되지 않은 용량의 사업비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백만원 이하 단위 절사</p> $y = y^1 - \frac{(x - x^1)(y^1 - y^2)}{(x^2 - x^1)}$ <p>x : 당해 시설용량, x¹ : 작은 시설용량, x² : 큰 시설용량 y : 당해 사업비, y¹ : 작은 시설용량 단가, y² : 큰 시설용량 단가</p>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대 지	한 우	젓 소	닭	
					평사	케이지
· 개별처리 시설	개 별 농 가	500	300	200		
	법 인 체 등	2,000	800	1,000		
· 정착촌분뇨처리		개별처리시설에 준함				
· 액비저장조		신규	20(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개보수	9(200톤 규모기준, 슬러지 제거비용 포함)			
· 액비유통센터		200(최초 지원시)				
· 액비살포비		200천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				
· 액비성분분석기		37				
· 액비부속도판정기		30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1.2				

- ※ ① 사업비에 환경영향평가비, 설계비·공사감리비, 시운전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단, 환경영양평가비, 설계비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
-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 ③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1일 처리 가능물량(퇴·액비화, 퇴비화, 에너지화 70톤 이상)을 제시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미생물배양실, 검사실, 액비성분분석기·부속도판정기, 교육장 및 조경 등 부대시설 설치 가능(약취방지 및 소독시설 의무설치)
- 퇴·액비화 시설은 액비화 50%이상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액비(원수 포함)를 4개월(생산 1개월, 저장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퇴·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는 총사업비의 15% 이내에서 구입(단, 자원화 시설 2개소 설치시 여건에 따라 운반·살포장비 구입하고, 공동자원화시설에 액비유통센터 신규 지원 제외)
 - 공동자원화시설처리 규모는 최대 300톤/일 이내
- ④ 액비저장조 설치는 200톤 규모(폭기·교반 시설, 적산전력계 포함) 1기당 지원 기준으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 규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농가 등 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
- * 액비저장조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 ⑤ 지자체가 주관하는 익산왕궁지역, 4대강유역 수계의 수변구역지정 관련 지역의

개별시설은 개별처리시설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⑥ 액비유통센터는 기 지원 전문유통주체(공동자원화시설)에 이중지원을 금지하고, 액비살포 실적 등 자원화조직체를 점검하여 2억원 범위 내에서 장비 및 개보수비 (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비를 기 지원받은 경우라도 개소당 5년 누계 5억원 한도내에서 이중지원 가능)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⑦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경우 축종별 개별처리시설 사업비 및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을 별도 적용 할 수 있음

⑧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에 필요한 기계·장비는 고착슬러지 제거 장비(진공흡입준설차, 고액분리기, 발전기 등)와 신속수거 장비(운반차량, 포크레인 등)를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심사평가단계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음

⑨ 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사업 지원 한도액 : 개보수 사업자 선정 후 5년 누계 5억원/개소당 이내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30백만원 이내)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 200백만원 이내

-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

※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는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 e-나라도움 시스템이 본격 도입되어 동 시스템을 통한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중요재산 관리 등을 시행하게 됨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분뇨처리 관련 사업추진 방향, 사업물량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2월말)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에 위임 가능)
 - 단,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에 대한 사업 주관기관은 시·도지사(설치지역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시·도 지사가 지정)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 실시(1월초)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시·군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희망자를 취합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군은 가축분뇨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퇴·액비 이용촉진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당해 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청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퇴비화, 에너지화)을 추진코자 하는 해당 시·군은 사업 계획 수립시 환경부서와 반드시 협의하고 관내 기존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적정 처리 규모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첨부하고, 신청자격 충족 여부,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에 제출(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 시·군간 협의 내용 첨부). 시·도는 자체 검토 및 평가 후 유형별 (①퇴·액비화, ②퇴비화 또는 바이오가스 연계, ③에너지화) 1개소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 ※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해당 시·도는 시·군의 의견을 받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동자원화사업장의 분뇨처리 여유용량, 지방비 반영 가능 여부 등을 판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해당 시·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타당성 검토(현장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자 선정 후 농식품부에 신청

사업신청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시·군에 신청
- ※ 공동자원화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신청자(법인명의) 소유의 사업부지 확보(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5년) 이상 사업부지를 임차한 경우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 하여야만 사업신청 가능(단, '20년도 사업자 선정은 '19.12.31.까지 사업부지 확보 및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신청가능)
- ※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공동자원화사업을 신청할 경우 참여시군의 의견, 2개 이상 시군 협의결과, 시·군간 분뇨 반입, 반출 협약 체결, 사업 추진 일정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대상지역(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 ① 약취민원이 심각하고 사업참여 농가가 많은 지역
- ②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ICT활용축산악취관리지원사업 지역
- ③ 지역 주민의 민원을 완전히 해소한 지역(환경영향평가, 인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 자본금은 기본요건을 충족하되 많이 확보하고 있는자)
- ④ 사업 예정부지가 기존 공동처리시설(공동자원화, 공공처리장) 부지 내 또는 인근 지역(예 : 500m이내)
- ⑤ 가축사육 밀집지역, 중규모 축산농가가 많은 지역, 액비살포가 용이한 대단위 농경지가 확보된 지역
- ⑥ 4대강 유역, 5대 지류하천(미호천, 갑천, 경안천, 광주천, 금호강) 유역 및 새만금 등 간척지 유역 등
- ⑦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사업 신청시 우선 선정

-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에너지) : 시·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선정 (선정을 위한 심사, 평가 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선정방식 : 전문가들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평가(서류심사, 현장확인, 발표 및 질의응답)를 통해 최종 확정
 - 선정기준 : (퇴·액비화, 퇴비화)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민원해결 등), 지자체장의 관심도(사업추진 기본계획, 퇴·액비 이용촉진 계획 및 유통협의체 구성 실적 등) 등
(에너지화) 가축분뇨·농축부산물 등을 활용하여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자원화조직을 선정

- * 평가항목 : 기본계획, 사업장 입지, 원료조달, 운영·관리계획, 퇴액비화 및 에너지이용계획, 공법의 적정성, 환경부서와 협의자료, 시·군간 협의자료, 시·군간 분뇨 반입, 반출 협약 체결 등

⇒ 공동자원화사업자, 가축분뇨 신속수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 절차, 평가 및 선정 방법·기준 등은 별도세부지침으로 운영

○ 시·도별 예산배정

-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서를 검토·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시·도에 통보

시·도(시·군)

○ 시·도 : 개별처리시설(법인체 등)·정착촌분뇨처리·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 분석기·액비부속도판정기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림축산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감안,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군별 예산배정 계획을 12월말까지 시·군에 통보

※ 시·도는 시·군별 예산 배정시 관내 전년 예산 집행실적, 도축장 운영, 조사료 재배면적(퇴액비 활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할 수 있음.

○ 시·군·구 : 개별처리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액비살포비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림축산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신청
- 시·도의 예산배정 계획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익년도 1.15일까지 확정·통보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 ① 개별처리시설 : 시·도(시·군)는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 참여농가, 환경친화축산농장,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농가, 친환경 축산인증농가, HACCP 인증농가, 동물복지인증농가, 축산물브랜드 참여농가·생산자 단체가 추진하는 “깨끗한 농장 가꾸기” 운동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및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분뇨처리시설
- ②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내 농가에 우선 지원 (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대강 유역과 새만금 지역 등)
- ③ 액비저장조 : 1순위(전문유통주체), 2순위(전문유통주체와 저장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농가), 3순위(액비살포 농경지를 확보하고 액비살포 능력이 있는 농가)
*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평가결과, 우수 액비유통센터에 선정된 경우 우선 지원
- ④ 액비살포비 : 1순위(가축분뇨 발효액 비료생산등록 유통주체), 2순위(조사료 생산과 연계된 유통주체), 3순위(공동자원화시설 등의 유통주체) 등 조직체에 우선 지원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교부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세부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사업지침 별도 수립 통보)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6항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대출신청 자료를 함께 받아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도(시·군)의 농축산식품심의회(가축분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의 공개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축산과학원·농협중앙회·축산환경관리원·민간전문컨설팅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설계(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포함)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의 검토를 받아야 함).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후 사업 주관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조를 통해 사업타당성, 사업시행상 문제점, 컨설팅 등을 반영하여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시·군은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토결과와 세부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환경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한 자료 및 시·군간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2억원 이상의 개별처리시설, 공동자원화 개보수, 액비저장조 설치(개보수 포함)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계획수립 후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타당성 검토(필요성, 적정용량, 처리방법 등) 의견을 받아야 함(다만, 2억원 이하도 지자체와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의를 통해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 ① 사업비 적정성 : 지자체의 평균 건설단가, 기계·장비 실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처리용량(내벽) 및 시설규모(액비화 120일이상, 유효용량 85% 이하(여유율 15% 이상))
- ② 시설설치 기준 : 내진 설계 및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 ③ 반입원료 :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가축분뇨의 반입비율을 미리 설정하고, 액비·정화의 경우 축산농가에서 1차 고액분리 된 가축분뇨를 수거
- ④ 참여대상농가 : 기존 개별처리시설에서 우선 처리하고 잉여물량을 처리코자 하는 농가 위주로 우선 참여토록 하고, 3,00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반입실태를 감안하여 후순위로 참여
- ⑤ 저장시설 확보 : 퇴비·액비 제조후 지역내 유통량(살포면적)을 감안한 저장시설 확보 등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
- ⑥ 사업대상자는 참여농가, 시설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거료, 농경지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 ⑦ 악취저감시설, 소독시설, 안전시설(표지판, 난간 등) 등 의무 설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을 확정된 후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반드시 함께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 등을 통지할 때 대출취급기관에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과 융자한도액을 함께 통지
-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비 지원 금액 범위내의 사업계획(부지 등) 변경은 시장·군수가, 사업비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검토 후 변경 승인
 - 사업주관기관이 시·도인 경우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시·군에 위임된 경우 시장·군수가 변경 승인)
 - * 단, 공동자원화시설의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시·도지사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타당성 검토 후 변경승인(시설 설치비·부지·자원화율·참여농가 변경 등)
 - 시·도(시·군)에서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 승인내용을 직상위 기관에 보고

사업대상자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신속수거사업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선정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사업계획을 축산환경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공동자원화시설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다만, 2개 이상 시·군일 경우 시·군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
- 개별처리시설(법인체 등)·정착촌환경개선지원·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분석기·액비부속도판정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개별처리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통보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 제출
 -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포기자 및 총사업비의 30%(융자담 포함) 이상 불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2년간 지원 제외
 - * 최근 3년내 공동자원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후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 포기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2년간 사업참여 제한.

[사업시행단계]

시·도(시·군), 감리기관

가.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사업주관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절한 시설·장비를 구입·설치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에 대한 제품특성 및 가격 비교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 발간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구매를 통해 판매하는 가격이 고시된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도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 5천만원(사업비) 초과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 법령(약칭 : 가축분뇨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 다만, 5천만원(사업비) 이하 개별시설 및 액비저장조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직접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단,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사업주관기관은 공동자원화시설 공사계약시 시운전기간을 공사계약기간에 포함하고 준공조건(퇴·액비 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명시하며, 준공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시 보완공사기간 및 비용부담 등 계약당사자간에 부담해야 할 조치사항을 포함하도록 조치
 - 에너지화시설 및 바이오가스 연계시설의 공법사로 선정된 경우 최소 1년 이상 위탁 운영·관리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시하도록 함.(퇴·액비화시설 및 퇴비화시설의 경우 준공 후 사업주체가 직접 운영 또는 공법사에 1년이상 위탁·관리 후 운영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사업대상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소액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 가능)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 착공·시공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계전문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공사감리계약 체결. 단, 에너지화시설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기술 진흥법)와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시)
 - 사업주관기관은 “설계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을 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 관계 법령에 의한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대상자(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체 감리를 하도록 하고, 한센인 정착촌은 한국농촌공사 또는 한빛복지협회에 위탁하여 감리 실시(준공 검사시 각각 확인)
- 사업주관기관 및 공사감리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 준공검사는 허가청이 i)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준공검사(환경담당)를 먼저 한 후 ii) 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담당)를 하고, 그 다음 iii)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완료 검사·정산 등 검정(축산담당)을 실시

사업대상자(사업주체)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완료한 경우 허가청의 가축분뇨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없이 실시

나. 시공업체 계약체결

-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대상자는 공법사에게 토목·건축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일괄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공법사가 토목·건축 등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괄발주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분리발주 가능
 - 공법업체에게 일괄발주 하는 경우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시 공법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완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나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 시에도 이를 준용)
 -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에 대한 사업대상자와 공법업체, 시공업체간 명확한 책임·관리에 대한 계약사항 포함해야 함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설 계 >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하고, 이 경우 “가축분뇨 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08.10)를 활용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설한 시공 추진(단, 3천만원 미만의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첨부하는 서류로 같음)
- 사업대상자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한국농촌공사 또는 설계 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입회하에 사업대상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 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착공·시공 >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공사감리 >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자금배정 및 정산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배정 :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을 신청한 예산 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는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 형편상 그 달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미 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자금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 실시
 - 사업비 검정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급금 등을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사전 승인 조치(승인 방법 3.세부계획수립,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참고)
 - 공동자원화사업은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되,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 지급이 가능(신용보증서 첨부)
 - 사업주관기관은 시험가동 후 공법사가 제시한 물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고, 조치사항 미 이행 공법사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용자를 자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정산전에 대체된 자부담을 용자로 조치하여야 함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용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사업검정 및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융자한도액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시공·납품업체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납품업체의 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 또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운영자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으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조속히 반납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
- 사업주관기관은 시설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 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무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라 증빙되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사업주관기관은 9.30일 현재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변경 및 자금배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 강구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해당 시·도, 축산환경관리원 합동 현지 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장부를 비치한 후, 시설투자비,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을 기재토록 지도
- 공동자원화시설
 - 시·도는 반기(5·11월)별 자체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익월 10일 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17년말까지 인·허가 미획득 또는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시·도(시·군)는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 경영장부를 기재
- 시·군 및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준공 후 매년 운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군은 사업자가 참여농가 중 계약위반 농가에 패널티 부과를 요청할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초 계약물량을 이행하지 않는 참여농가에 대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비 등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액비가 비료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비료공정규격 적합 여부를 연 2회 이상 분석·의뢰하고, 그 결과를 비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	사업완료(준공)후 5년	○ 중앙관서의 장 승인 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등
○가 축 분 뇨 처 리 시 설 (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액비저장조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0년 (단, 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를 제외한 시설은 7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5년		

《제 재》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의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휴·폐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재개 및 자금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불이행시 자금 회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 위반,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 다만, 가축분뇨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별표9) 중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개별 기준 폐항)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개별기준 고향)에는 1회시 경고, 2회시 1년간, 3회 이상 2년간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
- 덜 부속된 가축분뇨 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2회이상 위반시 정책자금 2년간 지원 제외
 - 부속도 판정기준은 시·군에 보급된 액비부속도 측정 결과에 준함.
-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 신규·공사중인 사업자는 준공 및 비료생산업 등록 후 사업비 정산, 운영 중인 시설이 비료생산업 미등록시 가축분뇨처리 시설 사업 참여 제한
 - *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센터는 '22년부터 적용

Ⅲ /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보고사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고
○ 2020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선정 결과보고	2019.3.31한	시·군(시·도) → 시·도 (농식품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보고사항 * 서식은 별도 통보
○ 2020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실적보고 - 회계연도 정산 보고	2020.1.05한 2020.3.05한		
○ 2018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완료·정산보고	2019.3.15한		
○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보고(연)	2019.12.31한		

2. 평가

《사업평가》

○ 우수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 점검 실시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

- 점검대상 : 공동자원화시설
- 점검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점검내용 : 가동률 등 계획대비 처리실태,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실태, 퇴·액비 생산·유통관리 등
- 점검방법 : 축산환경협의회위원 등 전문가로 점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 우수 액비유통센터 >

- 점검대상 : 정부지원 액비유통센터
- 점검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점검내용 : 사업장 운영실태, 시비처방서 발급실적, 액비살포 실적, 시설·장비 등 활용실태, 위탁받은 액비저장조 관리실태, 액비품질관리 실태 등
- 점검방법 : 축산환경협의회위원 등 전문가로 점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환 류》

○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핵심주체인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센터)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조직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자금 지원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로 선정(상위 30%)된 사업주체는 다음연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사업(운영자금, 연 2%) 대상자로 우선 선정·지원
- 우수 액비유통센터 선정한 후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하고,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유통센터를 등급화* 하여 액비살포비 차등 지원

* 등급화 : A등급 : 30만원/ha, B등급 : 20만원/ha, C등급 : 10만원/ha

** "C"등급 연속 3회 이상 또는 합계 5회 이상을 받은 경우 차년도 1년간 지원 제외

*** 운영실태 점검, 시료채취 등 거부시 당해 사업 및 차년도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C"등급으로 하고, 당해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비료생산업 등록(가축분뇨 발효액)시 시점은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원(등급별로 50천원/ha)
- 최근 3년간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에 대하여 1회(최초)에 한하여 정책자금 2년간 제한 규정 유예(부속도 평가는 제외)
- 최근 1년간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및 액비유통센터에 관리부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 등 기회 부여(예산 등 자체 부담)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각 시·도에서는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2019년도의 사업 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018.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201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8. 4월)

2. 기타 사항(예고)

IV.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각 시·도에서는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2020년도의 사업 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019.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2019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19. 4월)

2. 기타 사항(예고)

- ‘20년부터 깨끗한 축산농장에 한해 개별처리시설 자금 지원은 지정목표가 ‘20년까지 3,250호(목표기준)로 전체 농가대비 극소수로 깨끗한 농장만 지원시 축산환경개선 효과 제고에 어려움 예상되어,
 - 기존 예고사항을 수정하여 지정된 깨끗한 농장에 대한 우대 등 지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별도 문서 시달
- 공동자원화 사업 신규 및 개보수 사업 대상자는 사후관리를 위해 약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 의무 참여(‘19년 시범사업 후 ‘20년부터 적용). 단, 기약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공동자원화시설은 축산환경관리원 시스템과 연계로 대체 가능
- 개별처리시설(총 사업비 2억원 이상) 및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대상은 ‘19년부터 축산환경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신청서류에 포함시켜야만 지원가능(‘19년 시범사업 후 ‘20년 추진 검토)
- 대규모(200톤 이상) 액비저장조사업은 ‘19년부터 신규지원을 점차 축소하고 기존 시설 개보수 위주로 지원 전환
- 퇴비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20년부터 퇴비부숙도판정기 보급 지원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개별처리시설)는 사업완료 후 1년 이내 사업 대상자 우선 선정기준에서 열거한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HACCP인증농가 등으로 지정 또는 인증을 받도록 지도·권고

- 무허가축사에 대하여 사업지원 제한(단,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에 한해 적법화 이행완료를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사업주관기관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또는 가축분뇨 관련 분야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신기술 인증 등) 등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계약 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22년부터 적용)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지원 받은 자는 퇴비 및 액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함(액비화부숙도 ‘19.3.25일부터 전체 농가로 확대 적용, 퇴비화부숙도 ‘20.3.25일부터 적용)

* 퇴비 및 액비 부숙도 관리지침 별도 문서 시달

세부사업명	축산물수급관리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계란GP센터시설현대화			예산 (백만원)	8,640			
사업목적	계란의 유통과 안전관리 구조개선을 위하여 규모화 및 현대화된 계란 유통센터 (GP)를 지원하여 계란 생산·유통 계열화 거점 및 공판장으로 육성							
사업 주요내용	계란의 선별, 세척, 포장, 저장, 출하, 경매, 등급판정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 신축 및 증설(개보수)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 등							
지원한도	신축(2년) 60~100억원, 증설·개보수(1년) 10~30억원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0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	-	6,000	28,800			
	국 고	-	-	1,800	8,640			
	지방비	-	-	1,800	8,640			
자부담	-	-	2,400	11,52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시도·시군구		축산경영과 평가관리처 축산담당(가금,계란)		유해리 유한상 사무분장에 따름		044-201-2339 044-410-7062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6월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기본방향 >

- 신규 GP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에 따른 계란만을 취급하는 공판장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시설규모 이상로서 동 법 제43조에 따른 공판장을 개설·운영하여야 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고, 「축산법」 제38조에 따른 계란 등급판정 시행을 전제로 지원
- 기존 GP 개보수는 계란 일일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 증축, 장비 등을 보완 하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 기준 등을 충족하고, 「축산법」 제38조에 따른 계란 등급판정을 시행

1. 사업대상자

- 신규 시설 : 농협조직(지역 농·축협,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경제 지주 및 그 자회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계란만을 취급 하는 공판장의 개설자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시설 설치와 함께 계란공 판장을 운영 하려는 자
- 시설 보완 :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으로서 기존 계란유통센터(GP) 운영자
 - *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0%를 초과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사업시행기관 : 시군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시·도의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참여 하려는 사업자
- *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 : 시·도지사가 향후 5개년('18~'22년)간 관할 지역 산란계 농장으로부터 생산되는 계란의 위생·안전한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을

위해 계란의 생산-유통에 관한 시설 설치 및 보완, 공판장 개설·운영, 브랜드 육성, 농가 계열화 및 계란 위생·안전검사 계획 등을 포함한 계란산업 종합 발전계획으로 지역 계란유통센터 육성·지원계획을 포함(농식품부의 승인 필요)

**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특정 법인 또는 조합을 지정하지 않을 것

- 신규 시설 : 계란만을 취급하는 공판장을 개설하려는 자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고, 영업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려는 자

* 지자체의 직접 사업 수행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운영은 위탁할 수 있음

- 시설 보완 : 기존 계란유통센터의 집하-선별-세척-포장 등 처리능력 향상 및 위생·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증축 및 개보수 등을 하려는 사업자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고, 영업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려는 자

나. 지원요건

(1) 기본요건

○ 시·도의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고, 사업부지(예정지 포함) 및 자부담금 등을 확보한 사업자

- 신규 시설은 계란공판장 개설, 등급판정 시행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허가를 득하여 운영

- 시설 보완은 계란 등급판정 시행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고, 영업 허가를 득하여 운영

* 사업완료 후, 기본요건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불이행시 국고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

(2) 사업규모

○ 신규 시설 : 1일 계란 취급능력이 1백만개 이상(조정 가능)의 시설을 갖추 고자 하는 사업신청자

○ 시설 보완 : 시설 증축 및 개보수 등을 통해 연간 계란 취급능력을 기존 시설 대비 30% 이상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신청자

- 전년도 계란 취급액이 60억원 미만(판매금액 기준)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3) 시설규모

- 신규 시설 : 총 사업비가 60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도시인구별 축산부류 공판장 시설기준의 50퍼센트 이상을 충족(계란 전용공판장)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여 영업 허가를 득하고, 연간 최소 250일 이상 운영이 가능한 시설
 - * 시간당 계란 최소 처리능력(선별기) : 총 사업비 60억원 10만개, 100억원 18만개 처리능력 보유가 원칙이나, 지역 생산여건에 따라 조정은 가능함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 계란유통센터가 없는 지역에 우선 지원하며, 반드시 계란공판장 시설기준 이상으로 설치
- 계란 가공시설을 자부담으로 함께 설치하거나 기존 가공장(사업자 소유)과 연계 사업이 가능한 자에게는 총 사업비 지원한도액 기준으로 50%까지 증액 지원 가능
 - * 사업계획에는 계란 선별과정에서 구분되는 2등급란, 실금란 등의 가공시설에 납품 등 처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시설 보완 : 보완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여 영업 허가를 득하고, 연간 최소 200일 이상 운영이 가능한 시설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 계란유통센터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부지를 달리하는 시설 확충을 포함)
 - 공판장 개설을 위해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경우 총 사업비 지원한도액 기준으로 50%까지 증액 지원 가능
 - 개별 농장에 부속된 GP로서 다른 개인농가의 계란의 반입이 없는 시설은 제외
 - *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사무실, 식당, 회의실 등 비상품화 시설의 개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은 지원 제외
 - * 가동일수 산출기준 : 집하, 선별, 세척, 포장 등을 기준으로 8시간은 1일, 4시간 미만 가동일은 0.5일로 계산

(4) 지리적조건

- GP 신축부지는 가금 사육농장으로부터 500m 이상 거리에 위치

다. 별도요건

(1)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다만, 농·축협이 설립하거나, 모기업이 50%이상 출자한 신설법인은 농·축협, 모기업의 경영실적 인정 가능)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름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함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함)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함
- ※ 출자금 및 조합원(농업인 주주), 운영실적 등 기준일자는 본사업 신청일 기준
- ※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농업인 지분이 50%를 초과하여야 함(생산자단체는 농업인의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지자체 지분은 비 농업인의 지분으로 간주, 사후 관리 기간 동안에도 충족하여야 함)
-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다만,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가 설립한 농업법인은 지원대상에 포함)
- 기타요건(사후관리기준 포함)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에 따름

(2)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영체 지원

- 경영체(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된 경우에만 지원
- * 관련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라. 지원제한 기준

- 대형 GP(1일 100만개 이상 처리능력)가 지원되거나 이미 설치된 지역의

경우 신규시설의 지원 불가(보완시설은 지원 가능)

- 다만, 대형 GP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규시설 지원 가능
 - ① 전년도 처리물량이 사업 계획물량 이상 처리, ② 가동일수가 250일 이상, ③ 연간 취급액 300억원 이상(전년도 판매가격 기준), ④ 영업이익율 5% 이상
- 신규 GP 설치 지역은 향후 3년간 신규 GP 지원 불가
 - 다만, 지자체장이 계란 생산, 유통량 등을 고려해 GP신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 가능
- 시설 보완사업자는 최종 지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이월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보조금 반환하고, 적발시 영구제한

3. 지원 대상

- 계란의 집하, 선별, 세척, 포장, 보관, 출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건물, 경매장, 주차장, 냉장실, 계란 보관창고, 쓰레기 처리장, 위생시설, 사무실, 하주대기실, 출하상담실, 계란운반차량, 중도매인 사무실, 위생검사 시설 및 사무실, 대금 정산조직 사무실, 소독시설, 실험실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 여러 농장에서 계란이 수집되므로 반드시 소독시설(차량, 도구)이 설치되어야 하며, 필요시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실험실 설치 가능
- 설계·감리비 및 사업 컨설팅
 - 사업컨설팅은 30백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이후에 실시하는 컨설팅에 한함(초과금액은 자부담 원칙)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배수, 배관, 전기 및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설비공사 등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초과금액은 자부담 원칙)
 - 부지매입비,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 및 토지형질변경(농지보전부담금 포함) 비용은 자부담 원칙
- 건축공사 : 집하장, 선별장(저온 선별장 포함),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경매시설·장비, 사무실, 회의실,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등은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 신축의 경우 계란의 선별, 세척, 포장 등의 자동화 설비를 위하여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투자
 - 여러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이 집하됨에 따라 차량의 입구와 출구를 달리 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차단방역시설 설치
 - * 차단방역시설은 정부·지자체의 별도 방역사업으로 추가 지원 가능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세척, 포장 시설·장비류 : 세척기, 선별기, 난각인쇄기, 자동검출장치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세척기, 청소기, 건조기 등
- 계란유통센터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 활용 경영시스템
 - ※ 계란유통센터 건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나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 신규시설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란공판장을 반드시 개설·운영 하여야 함
 - 아울러, 공판장에서는 상장, 정가수의매매 등의 방법으로 계란을 거래하고, 농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기관(또는 단체)에서 가격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 계란유통센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아야 함
 -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 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국고)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시설·장비 등의 추가지원 가능
 - * 2개 이상의 시·군에서 원물을 확보하는 경우 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지방비 부담이 원칙. 다만, 시·도에서 조정 가능
- 사업기간
 - 신규 시설 : 2년간 사업(1년차 설계 및 건축 인허가 등, 2년차 시설공사 등)
 - 시설 보완 : 1년간 사업
- 사업 의무량 : 정한 사업기간 중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설·장비의 설계 및 설치 등 마무리
 - 신규 GP는 ‘공판장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 계획’을 사업기간 중에 수립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시·도시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사업비(총 사업비)

- 신규 시설 : 최소 60억원 ~ 100억원
- 시설 보완 : 최소 10억원 ~ 30억원

※ 총 사업비의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자부담하고, 사업자의 운영능력, 매출 계획량, 원료조달 능력, 지자체의 육성계획 등에 따라 사업비 조정 가능

1. 사업신청단계

사업자

- 예비 사업 신청 : 차년도(2020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본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에 해당 시·군에 예비 사업신청서 제출(2.8까지)
 - 제출서류는 아래의 본 사업 신청서류와 동일
- '20년도 본 사업신청서 제출
 -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의 종합계획에 참여하려는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 및 다음의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6.14일까지)
 - * 농협조직은 사업계획서를 농협경제지주(축산유통부 축산유통전략팀)에도 제출
 - 도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사업을 직접 수행

< 사업신청 시 구비 서류 >

① 사업계획서, ② 간이설계도 및 조감도(사업자가 간략히 작성한 것), ③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④ 법인등기부등본(자본금), ⑤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GP 건립 또는 개보수 의제), ⑥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⑦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⑧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⑨ 자기자본 및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등), ⑩ 농정심의 결과, ⑪ 농업법인 추가 구비서류 :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부담금 확보 증명서(현금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에금증명서 등)

-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 다만,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허용. 이 경우 사업부지 확보 계획서(토지소유주의 매매동의서 첨부)를 제출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이어야 하고, 농협의 경우도 사업부지(농지 등 비 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의 가계약체결 증명서 등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 예정부지가 담보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으면 제외
- *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단, 당해 법인 명이가 아니더라도 보조시설의 사후관리 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자부담이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

- 각 단계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한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제출 의무화(법인조직)
- * 사업신청단계 10%, 사업자 확정 50%, 사업 시행 100%
- 자부담금은 해당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지도 및 관리(통장 인감병행 사용 등)

시·군

- ‘20년도 예비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2.22까지)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20년도 본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시·도에 제출(6.26까지)
 - 승인된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에 반영된 GP 시설 설치 및 개보수 희망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및 관련 첨부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검토 후 제반 증빙자료(농정심의회 결과 필수)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시장·군수의 검토의 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을 시·도에 제출

시·도

- ‘20년도 예비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3.8까지)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20년 본 사업계획서 검토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사업 신청서 제출(7.5까지)
 - 시·도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 적정성 및 합리성, 재무구조 건전성, 투자 효율성, 운영능력, 최근 3개년 사업실적, 기본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평가하되 반드시 현장실사를 병행하여 사업자의 사전 준비 상태, 계란 유통주체로서 발전 가능성 등을 중점 점검하여 적격한 사업자에

한해 추천하여야 함

- 특히, 신규 GP 설치 사업자의 경우 계란 공판장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운영을 위한 원물 확보 세부방안, 마케팅 계획, 운영자금 확보 계획, 자체 품질 및 위생·안전관리계획 등의 타당성 검토
- 시·도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해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적격한 사업자에 한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사업신청 하되, 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출
- 전문가 평가 시 불임 2의 사업자 선정 평가표를 활용, 자체 평가결과 70점 이상 득한 사업신청자에 한해 추천 가능하며,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축산물품질평가원

가. 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한 '20년도 예비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등을 사전 점검(협조 :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에 통보(4.30까지)
 - 시·도에서 제출된 '20년 본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7~8월)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발표평가 실시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시 선정
- * 서면평가(70점) → 발표평가(80점)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의 적정성 검토

< 2단계 : 서면평가 >

○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주 관 : 축산물품질평가원(협조 :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3단계 : 발표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 주 관 : 축산물품질평가원(협조 :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 기본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에 대한 심의 포함
- 평가진행 : 사업계획, 기본설계 및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최종순위 결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 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 최종순위는 서면평가 30%, 발표평가 70%를 반영하여 결정

나. 사업대상자 선정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단계별 평가를 완료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농식품부, 9월초)
 - 본사업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전문심사단 심의결과를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기본설계 및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9월말까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별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사업신청년도 10.15. 전후)
- 사업대상자별 예산을 시·도에 확정내시 통보(사업개시년도 1월)
- 사업대상자별 세부추진계획 검토·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사업개시년도 2월)

사업자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신청, 교부신청, 자금의 집행관리, 정산보고 등은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으로 수행
- 사업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9년 사업 : '19.1.10까지, '20년 사업 : '20.1.10까지)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군 보고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등 :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 세부 시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시에는 사업추진 조직의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검토 후 조정

- 사업부지 변경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승인 후 시행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축산물품질평가원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 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다만, 입찰 시 통상 총 사업비의 80% 수준에서 낙찰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비의 120%를 초과한 조정은 불가함)
- * 건축 실시설계 금액이 당초 사업예산의 120% 이내일 경우 세부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단,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의 변경이 없어야 함)
-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조정 건의 승인 요청은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상 대분류 항목 간)되는 금액(증액분)의 합계가 총 사업비(예산)의 15%까지는 자체조정 가능, 16~30%까지는 시·군 승인, 31~50%까지는 시·도 승인, 50%를 초과 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승인 후 시행(단, 변경금액의 합계가 15% 이하라도 5억원 이상이면 시·군 승인, 15억원 이상이면 시·도, 30억원 이상이면 축산물품질평가원 승인 후 조정·시행)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필요시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의 계획서를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19년사업 : '19.1.18까지, '20년사업 : '20.1.17까지)
- 시·도는 관할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승인요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요청('19년사업 : '19.1월말, '20년사업 : '20.1월말)
- 세부시행계획 변경 등 계획변경 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시·군 승인

- 경미한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 조정 비율에 따라 해당 주체가 승인
 - * 시·군(시·도)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 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축산물품질평가원)로 제출
- 사업주체, 총 사업비의 20%이상 증감이 필요한 경우 등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사항 : 농식품부 승인
- 사업부지 변경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승인 후 시행
 -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에 집행 가능(단, 기존시설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 화물차량 구입 제외)
-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른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
 -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4. 자금집행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분기별 자금배정계획, 시·도의 자금배정 신청 등을 근거로 시·도에 자금배정

시·도/시·군

- 시·도는 배정받은 국고보조금과 함께 시·도비를 확보하여 시·군에 배정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시·도 또는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 농협 등 민간사업자인 경우 e나라도움으로 보조금을 통해 교부하고, 민간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함.
 - 민간사업자는 사업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보조사업 전용카드, 기타 지출과 관련 증빙자료를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지출해야 함.
-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경우 민간사업자는 2개월 이내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군에 정산보고를 해야 함.
 - 지원받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의 감사인을 통해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해야 함.
 - 정산보고를 통해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시군의 확인을 받은 후 집행잔액 및 이자는 즉시 시군에 납부를 해야 함.
- 시장·군수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비 정산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사업완료 다음년도 3월말까지)

5.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 단계

《사후관리》

- 사후관리·감독 기관 : 해당 지자체(시·도/시·군)

사업자

- 시설물의 등기(법인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의 승인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이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주식양도(타 사업자가 GP 사업자 지분의 30% 이상을 취득하면서 최대 출자자가 되는 경우) 및 임원교체 등을 통해 실질적인 GP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에 따라 조치)

지 자 체

- 시·도 및 시·군은 계란유통센터 관련시설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조건 위반 등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시장·군수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하고, 매년 1회 이상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 확인 및 현지 지도·점검,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치하고, 매년 3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소유자가 지자체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연간 매출액의 0.5% 범위내로 함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중요재산을 활용 담보제공 승인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적용”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계란유통센터의 시설 신설·증축은 사후관리기간을 10년 적용
 - 계란유통센터의 고정식·이동식 기계 장비류와 계란유통센터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한 일부 개보수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기간 5년 적용

- 시·도는 사업 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보고(다음 해 3.31까지)
- 시장·군수는 계란유통센터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시설·장비(주요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카드(전담책임자 지정)를 비치하고,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용

축산물품질평가원

- 사업대상자와 사업관리주체(시·군)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계란유통센터 건립 및 개보수 등 추진상황 점검 실시
 - 점검항목 : GP 건립추진 공정율, 부지 및 지방비 확보, 사업비 집행실적 등

6. 성과측정 및 환류단계

- 정부지원 계란유통센터(GP)의 경영진단을 통해 우수시설에 인센티브 부여, 부진시설에 컨설팅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 도모
 - 진단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 진단항목 : 총 취급액(물량), 가동일수 등 경영성과
 - 진단시기 : 매년 2/4분기
 - 사업자는 시설·장비설치공사 완료 후 사업성과 제출 의무가 있으며, 지자체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환 류》

- 사업실적 우수 GP에 대해 시설 노후시 추가적 보완 사업비 지원대상으로 우선 선정
-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도는 사업지원 제한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환류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예비 사업신청(사업자 및 지자체)
 - 사업자 : 시·군에 신청('20.2.10.까지)
 - 시·군 : 시·도에 제출('20.2.25.까지)
 - 시·도 :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20.3.10.까지)
 - 축산물품질평가원 : 기본요건 사전검토 후 안내(협조 :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

※ '21년도 정부 예산편성 기초자료 활용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본 사업 신청(사업자 및 지자체)
 - 사업자 : 시·군에 신청('20.6.20.까지)
 - 시·군 : 시·도에 제출('20.6.25.까지)
 - 시·도 :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20.6.30.까지)
- 사업자 평가
 - 기본요건 검토(축산물품질평가원, '20.7월초)
 - 서면 및 발표평가(전문평가단, '20.7~8월)
- 예비대상자 선정·통보(농림축산식품부, '20. 9월초)
- 사업비 심의·조정(전문평가단, '20.9월 중순)
- 사업비 가내시(농림축산식품부, '20.10월 중순)
- 사업자 확정(농림축산식품부, '21.1월 초순)

* 지원내용 및 일정 등은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신규시설 :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농안법 제43조에 따른 공판장 개설자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공판장 운영 계획이 있는 자 입니까?		
	시설보완 :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으로서 기존 GP 운영자입니까?		
지원자격	시·도의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참여하려는 사업자 입니까?		
기본요건	신규시설 : 계란공판장 개설, 등급판정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운영 하려는 자로서 시설·장비 등 요건을 충족합니까?		
	시설보완 : 계란 등급판정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요건을 충족합니까?		
사업 규모	신규시설	1일 계란 취급능력이 1백만개 이상(조정 가능)의 시설 설치 계획입니까?	
		선별과정에서 구분되는 실금란 등의 계란가공시설 연계 처리계획 등이 있습니까?	
	시설 보완	시설 증축 및 개보수 등을 통해 1일 계란 취급능력을 기존 시설보다 30%이상 개선할 계획입니까?	
		전년도 계란 취급액이 60억원(판매금액 기준) 이상입니까?	
시설성격	기존 계란유통센터 시설이 있습니까? “예”⇒시설보완, “아니오”⇒신규시설(제한적으로 지원)		
신규시설	총 사업비가 60억원 이상입니까?		
	연간 최소 250일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입니까?		
	농안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계란만을 취급하는 공판장 시설기준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입니까?		
시설보완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입니까?		
	연간 최소 200일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로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입니까?		
	개별 농장에 딸린 GP로서 다른 농가의 계란 반입이 없는 시설입니까?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입니까?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19년부터 적용,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농업회사법인만 해당) 농업인의 지분이 50%를 초과합니까?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되었고, 자기자본(결산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재무제표)이 자부담금의 50%이상 확보되었습니까? - 단,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이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분규정 제91조관련 별표10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가?		
	대기업 및 대기업 소유 농업법인입니까? - 단,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가 설립한 농업법인은 '아니오'에 표시		
	총 사업비의 자부담이 10% 이상 확보되었습니까? - 사업신청단계 10%, 사업자 확정 단계 50%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시설검토	토목공사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이 총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신축의 경우, 계란 선별, 세척, 포장 등의 자동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의 30% 이상 투자를 검토하였습니까?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및 안전관리인증(HACCP)관리시설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비상품화시설의 개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이 아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설계 가 검토되었습니까?		
사업부지	부지가 확보되었거나 가능합니까?(사업자 명의 여부 확인)		
자체 심의회	농정심의회를 받았습니까?		
구비서류	지침에 명시된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까?		
지원 제한 기준	관내 대형 계란유통센터(1일 100만개 이상 처리)가 있습니까?(보완시설 지원가능)		
	동 사업과 유사사업의 최종 지원년도 이후 3년 안에 시설보완사업을 지원받으려 하십니까?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지방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14년 이후로 시설지원사업 지원횟수가 3회 이상입니까?		

* 음영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계란유통센터(GP)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등 급					평점	
		A	B	C	D	E		
1. 종합계획 연계성 (통합마케팅 충실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의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및 충실도 등은 어느 정도인가? ○ 지자체 차원의 시책, 예산지원 등이 GP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등은 실시하였으며, 내용은 적절한가? 	15	12	9	6	3		
2. 운영주체의 경영 능력 및 마케팅 전략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계산 실적·경험이 많고, 계획이 달성 가능한가? ○ 전문CEO와 독립사업부서 등 전문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독립채산제 도입이 가능한가? ○ 일관된 품질관리로 공동브랜드화, 공동계산제 등의 상품화 계획 및 유통전략이 실현 가능한가?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15	12	9	6	3		
3. 규모화, 전문화, 조직화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란 유통주체로서의 규모화, 전문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 농업인의 참여유도,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는가? ○ 고품질 계란 생산기술의 향상 및 평준화를 위한 기술지원, 교육 등의 수단과 계획이 있는가? 	15	12	9	6	3		
4. 원물 확보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물량 확보여건이 양호한가? ○ 원물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 안정적인 원물확보를 위한 자체생산기반 및 계약생산 여건은 있는가? 	10	8	6	4	2		
5. 부지선정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규에 따른 규제사항은 정확히 검토하였는가?(공통) ○ 교통 여건 등 입지조건에 따른 경영비 절감 가능여부는?(공통) ○ 적정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였는가?(신축 또는 증축) ○ 건축은 계획대로 가능한가?(신축 또는 증축)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은 없는가? 있다면 추후 처리계획은 적절한가?(개보수) ○ 기존사업부지의 옥외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개보수) 	10	8	6	4	2		
6. 건축 및 시설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물량 및 시설설치, 처리공정 등의 적정성, 위생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연간 가동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가? ○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및 기존시설의 활용, GP간 통합 및 계열화 등 구조조정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 사업추진 일정은 실현가능하고 적절한가? 	15	12	9	6	3		
7. 자금운용 및 조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P 설치자금 조달계획은 적절한가? ○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은 적절한가? 	10	8	6	4	2		
8.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 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성공가능성이 있는가? 	10	8	6	4	2		
소 계(1)		8개 지표					100점	
가점	종합계획	○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 수립					3	
	관련사업 연계	○ ICT융복합 확산(스마트팜 시설 보급사업) 참여조직					3	
		○ 자체 또는 지자체 차원의 위생·안전관리 계획 수립					3	
소 계(2)		3개 지표					9점	
합 계							109점	

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 예비신청서

사업자명				대표자	(HP)	
주소				연락처		
출자금	백만원	조합원수		명	사업 구분	신규, 보완
시설 보유현황 (㎡)	대지/건물	냉장실/보관창고		사무실 등		선별,세척,포장 등 자동화기기
						대/처리능력(H)
사업 예정부지	소재지(지번)			부지 확보여부	용도	건폐율(%)
신청 사업비	계	국고(30%)		지방비(30%)		자부담(40%)

주1. 상기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하단에 기재

계란유통센터 사업계획서

1. 신청자

보조사업자 :

2. 보조사업자 현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사업자등록번호		비 고	

나.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생산자단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공동투자한 법인의 경우 투자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다. 사업추진실적

[2017년도]

출 하 량(만개)			친환경인증 (만개)	상표명	주요출하처	매출액 (백만원)
계	일반란	등급란				

(주) 상표명 : ○○ 계란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주요출하처 : 계란 유통상, 백화점, 대형마트 등

[2016년도]

출 하 량(만개)			친환경인증 (만개)	상표명	주요출하처	매출액 (백만원)
계	일반란	등급란				

[2015년도]

출 하 량(만개)			친환경인증 (만개)	상표명	주요출하처	매출액 (백만원)
계	일반란	등급란				

라. 기존시설 보유현황

저 온 저장시설	냉장실	일반창고	선별기	세척기	포장기	기타 유통장비
동 m ² ()	동 m ² ()	동 m ² ()	조 ()	조 ()	조 ()	

(주)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마. 사업 참여 계란생산농가 현황

지역명	농가명	사육규모(수)	1일생산량(개)	자체보유시설종류	비 고

바. 관내 계란 생산농가 중 비참여 농가 현황

지역명	농가명	사육규모(수)	1일생산량(개)	자체보유시설종류	미 참여사유

사. 관내 계란유통센터 현황

시설명	참여농가수	처리능력	1일생산량(만개)	보유시설종류	비고

사. 생산·출하여건

- 현재 지역내 계란산업의 현황, 문제점 등
-
- 지역특성, 입지여건, 해당지역의 장단점, 소비시장 선호도, 인지도 등
-

4. 건축계획

가. 부지확보계획

- 위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m²(지목 :)
 - 용도지구 :
 - 건폐율 :
 - 용적율 :
 - 관련 규제 검토 내역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의 행위제한 내용 기재
 - 지구단위 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시굴 여부 등 관련규제 해당여부 검토내역 상세 기재
- <관계법령명 및 관련 규제내용, 검토결과를 상세히 기재, 단순히 “부” 또는 “해당없음”으로 표현시 “0점” 처리 예정>

○ 부지 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시설설치계획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부담
			계	시·도	시·군	
계						
설계·감리 및 컨설팅						
토목						
소방,전기,통신						
집하,선별,포장장						
저온창고 등						
사무실 등						
선별포장장비						
유통시설장비						
위생설비						

(주) 부지구입비,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 기초토목 공사비용 제외

○ 시설 설치계획 : 세부사업비 산출근거 작성(붙임의 엑셀양식)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부지확보 :

○ 토목설계 :

○ 건축설계 :

○ 착 공 :

○ 준 공 :

라.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1) GP시설 설치자금 계획

(단위 : 천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부지매입 ○ 설치사업비		○ 자부담 - 기존출자액 - 신규출자액 ○ 보조금 ○ 기타 - 외부차입 - 이익잉여금	

(주) 부지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만 기재

2) GP 운영자금(원료조달 등)확보계획

(단위 : 천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매취자금 ○ 출하선도금 ○ 계약생산자금 ○ 운영자금 ○ 관리비 ○ 기타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5. 사업계획

가. 종합목표

- 목표연도의 계란유통센터 육성 청사진 제시
 - 사업완료시와 사업완료 후 3년, 5년 후의 장기비전 제시
- 항목별 목표

구분	매출액 (억원)	취급물량 (만개)	계약생산액 (억원)	계약생산비율 (%)	영업이익율 (%)
2019년					
2021년					
2023년					
증감(%)					

- 계란 생산-유통분야 등의 구체적인 발전목표 제시
 - GP 설립 및 산란계농장 수직계열화 등 유통주체로서 규모화, 전문화 발전목표와 마케팅 주체로서의 역할 등

나. 추진전략

- 계란유통센터의 규모화, 전문화, 구조조정 전략 등
- 생산·유통·가공 등과 연계 및 우수 생산농가 참여전략 등

다. 사업물량 확보 및 처리계획('19~'23)

- 사업물량 확보

구분	지역(시·군) 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농가수	생산물량	참여농가	생산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탁(A)	매취(B)
2019년	호	만개	호	만개	만개	만개	만개
2020년							
계							

사업물량 처리

구분	사업 물량	사업 기간	출하처비율(%)			선별비율(%)		저온창고평균 보관물량/일
			시장출하	직공급 (납품)	기타	기계선별	수작업	
2019년								
2020년								
계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라. 추정 손익계산서

2019년(사업완료 초년도부터 5개년 작성)

구분		금액(천원)	산출근기
매출액(취급액)			
매출 원가	매입대금		
	부대비용		
	계		
매출총이익(A)			
비용	판매비용		
	금융비용		
	인건비		
	시설관리비		
	감가상각비		
	기타비용		
	계(B)		
영업 이익(A-B)			

2020년 ~ 2023년가 연도별 작성

마. 사업기반 강화계획

- 참여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계란의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 계란유통센터 규모화, 전문화 등 육성방안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소규모농가의 공동계산·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전략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계란유통 및 물류개선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기존 계란유통시설 현황 및 활용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기존시설 및 기존업체 등과의 연계 계획 등
- 기 타
 -

6. 기타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연 도 :
 - 사업대상품목 :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용자	지방비	자부담

- 사업추진내용

내 용	규 모	처리능력	비 고

○ 기타 특기사항

간이설계도 및 조감도 등 서식

○○계란유통센터 사업 개요

- 사업비 : 10,000백만원
 - 재원별 : 국비 3,000, 지방비 3,000 자부담 4,000
- 시설규모
 - 부지면적 : 0000m²
 - 건축 연면적 : 0000m²
- 선별 등 기계장비
 - 00000 장치 1식
 - 00000 설비 1식
- 세척, 선별, 포장 등 능력
 - 연 최대 만개(톤), 일 최대 만개(톤), 시간당 최대 만개(톤)

○○계란유통센터 부지 전경 사진

○○계란유통센터 조감도(생략 가능)

설계 개요

분계요소	구분	내용	
대지위치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신전리 128-3번지 일원		
지적지구	관리지역(제2종 지구단위계획지구 추진영역)		
사업구역면적	52,086.60㎡ (15,755.94평)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요청용지면적	32,620.00㎡ (9,867.51평)		
요청용지	완충녹지	12,639.00㎡	
	도로	8,315.00㎡	
	공공용지	1,212.00㎡	
합계	19,665.00㎡		
건축면적	8,640.00㎡ (2,613.59평)		
연면적	10,463.60㎡ (3,165.22평)		
건축률	8,640.00 / 32,620.00 X 100 = 26.49 %	건축률	40% 이하
용적률	10,463.60 / 32,620.00 X 100 = 32.08 %	건축률	100% 이하
연평주차대수	10,463.60 / 300 = 34.88	계획주차대수	42 대
포장면적	8,673.20㎡ (26.08%)	건축률	10% 이상
경화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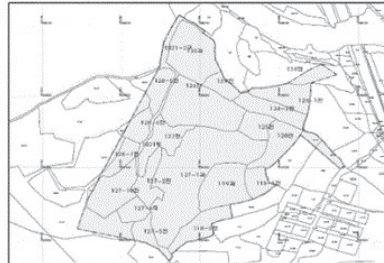
위치도



동별 개요

동별개요	구분	건축량	구조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최고높이(M)
건축물	인명용	R.C.비철골조	지상 2층	7,344.00	9,167.60	11.3	
	차장용	R.C.비철골조	지상 1층	1,295.00	1,295.00	11.3	
	계			8,640.00	10,463.60		

지적도



○○계란유통센터 시설 배치도

간이설계도로 전문업체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지적도 및 모눈 종이에 작성한 것도 가능

○○계란유통센터 1층 평면도

간이설계도로 전문업체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지적도 및 모눈 종이에 작성한 것도 가능

○○계란유통센터 2층 평면도

간이설계도로 전문업체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지적도 및 모눈 종이에 작성한 것도 가능

○○계란유통센터 정면 및 측면도

간이설계도로 전문업체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지적도 및 모눈 종이에 작성한 것도 가능

○○계란유통센터 종 및 횡 단면도

간이설계도로 전문업체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지적도 및 모눈 종이에 작성한 것도 가능

○○계란유통센터 선별기 등 구성도

간이설계도로 전문업체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지적도 및 모눈 종이에 작성한 것도 가능

< 별첨 >

I. 시설물 관리, 양도·양수, 권리의무승계, 구조변경 및 운영 지도

II. 건립시행 단계에서의 시공·감리업체 선정 및 기술검토

III. 자금배정 단계에서의 사업비 집행, 감리 및 준공검사

IV. 사업포기 사업자 및 보조금 집행위반 사업자 내역

V. 선별기 선정 및 저온시설 시공시 준수사항

I. 시설물 관리, 양도·양수, 권리의무승계, 구조변경 및 운영지도

< 시설물의 등록 >

- 사업자는 시설물의 준공 또는 취득과 동시에 시·군·구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여러 법인이 참여한 경우 단체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을 한 시설물은 1개월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를 해야 한다.
- 시장·군수는 계란유통센터시설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시설·장비(주요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 사후관리기간 >

- 사후관리기간의 적용 시 사업자가 계란유통센터와 관련된 정책자금(개보수 및 시설자동화자금 등)을 추가로 지원받아 시설물을 개·보수한 경우에는 개·보수가 종료된 때로부터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한다.
- 시장·군수는 매년 1회(12월말기준) 사후관리기간의 경과유무를 조사(추가지원 여부 등)하여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후관리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즉시 검토·조치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후관리기간내의 시설물 등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소실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확인하고 사후관리 해제할 수 있다.

< 계란유통센터시설 양도·양수, 권리의무승계, 임대, 담보 등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계란유통센터시설을 양도, 권리의무승계, 교환, 임대 등을 행하고자 하는 경영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계란유통센터시설 지원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용자실행을 위해 계란유통센터시설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담보물로 제공 받은 시설이 정부지원으로 취득한 계란유통센터시설인지를 해당 시·군에 확인하여야 하며, 정부지원 계란유통센터시설의 경우 담보제공 승인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용자를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용자실행 후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 경영 부실업체의 관리 등 >

- 시장·군수는 현지도·점검 및 운영실태조사의 결과, 지속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계란유통센터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잔존액 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즉시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담보승인한도 및 양도시 보조금 환수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 9)’ 적용한다.
- 시장·군수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적절차(경매 등)에 들어갈 경우 해당시설이 지원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법원 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II. 건립시행 단계에서의 시공·감리업체 선정 및 기술검토

<설계·감리 및 시공업체 선정>

- 사업수행자 선정은 지자체(사업부서)에 입찰대행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또는 조달청에 입찰대행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규정 및 지시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 사업수행자는 ①설계 ②감리, ③건축(일반), ④저온시설(건축, 설비포함), ⑤일반창고(건축, 설비포함), ⑥설비(세척기 및 선별시스템등), ⑦기타(전기, 소방, 통신 등)로 구분하여 추진
 - 선별, 세척, 포장시스템은 전문성, 기술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추진
 - 건축 시공의 경우 부실시공 방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해당 광역지자체의 업체 선정 필요
 - 설계·감리와 저온시설(건축, 설비포함), 설비(세척기 및 선별시스템)는 지역 제한 없이 입찰을 실시하여 우수업체 참여기회 확대 및 사업비 절감 도모
- *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시공자 선정 시 경쟁입찰자격조건 적용)
-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기관 및 민간의 실적 배제 불가(다만, 민간부문 실적 증명서는 시공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증빙)
- * 시·도 지역제한 적용 예외
- 건축(일반) 및 기타 시공업체 선정 입찰 시 2회 이상 유찰될 경우(재공고 2회째) 입찰 참가자격에서 지역제한 해제 후 입찰 가능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하고 공사 착수 전에 시·군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 사업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후 해당 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등)의 자문실시
 - 단, 저온저장고 등은 실시설계 후 축산물품질평가원(산·학·연 전문심사단)의 설계적격 심사를 받아야 함
 - * 냉동·냉장시설로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적격 심사를 위한 설계도면은 냉동공조기술사가 설계한 도서(기술사의 인감이 찍힌 설계도면, 부하계산서, 시방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함(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 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 저온시설은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면허와 공조 냉동기계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보유업체
- 시설·장비 구입기준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시설·장비의 경우 공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등)의 종합검정 또는 안전검정을 받은 장비 구매
- 입찰참가 및 계약 제한(향후 10년간)
 - 보조금 부당사용에 관련된 사업수행자, 기 설치한 APC의 A/S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시에는 향후 10년간 입찰참가 및 계약 배제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의 기계설비는 가급적 붙임2의 “저온시설 시공 및 공조설비 선정시 준수사항”을 적용하여 각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
- 비파괴선별기 설치는 전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의 자문과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함

Ⅲ. 자금배정 단계에서의 사업비 집행, 감리 및 준공검사

가. 사업비 집행

지 자 체

- 보조금집행자(시·군)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단, 재정조기집행 및 자재구입 등 부득이한 경우 선급금 지급 가능
-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관리

나. 감 리

사 업 자

-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저온시설 및 공조설비의 감리는 반드시 공조냉동 기계설비 전문가(기술사) 또는 전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수행하여야 함
 -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설치 시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기술검토(자문 등)를 거쳐야 함
 - 저온저장시설 중 외국산 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성능시험만 받도록 함
 - 상품화기계설비 설치비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가급적 별도의 상품화기계 감리 실시
- 감리비는 시·군의 책임하에 감리기관에 보조사업자가 직접 지급

다. 준공검사

지 자 체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 * 준공된 시설, 장비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 등록·관리

라. 기타 사항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지자체형 시설일 경우 시·군)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시설규모 산정 및 간이설계 등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농협경제지주 등에 상담 및 문의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기계설비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

IV. 선별기 선정 및 저온시설 시공시 준수사항(사업비 100억원 기준)

선별기 선정시 준수사항

계란유통센터에 설치할 선별기(세척, 중량, 검란, 포장 등)는 공정별 항목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세척·건조기 : 물·브러쉬·에어세척 등이 가능한 기종
 - * 물세척의 경우 냉·온수 공급 및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으로 살균·세척이 가능하고 불림 및 행굼공정을 거쳐 건조 가능한 기종을 선택하고, 물세척한 계란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유통하여야 함
2. 중량선별기 : 선별능력 120천개/h이상, 허용오차 1%이내
 - 파각·혈반검출기 등 품질관리 설비장착이 가능한 기종
3. 파각·혈반검출기 : 선별능력 120천개/h이상, 허용오차 1%이내
 - 중량선별기의 선별결과 데이터관리와 호환 가능한 기종
4. 오란검출기 : 고품질계란 생산을 위하여 설치를 권장(선별능력 120천개/h이상, 허용오차 1%이내)하고, 검란작업자에 의한 오란 및 파각란 선별을 위한 검란실 설치 필수
5. 난각인쇄기 : 중량선별기의 처리능력에 상응하는 인쇄 장비 설치, 허용오차 0.1%
6. 자동포장기 : 10구(12천개/h), 15구(8천개/h)
 - 상기의 포장처리 능력을 충족하는 포장설비를 갖추고, 30구는 비닐랩핑이 가능한 장비 구비

<부대사항>

1. Off-Line인 경우 산란농장별 선별 데이터 구분이 가능하고, 투입은 자동투입 가능 제품
2. 세척 설비
 - 세척 부러쉬의 탈착이 가능하여 살균소독 및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3. 선별시설은 신제품과 호환성이 높아 효율성 제고 가능 제품 우선
4. 신속한 A/S가 가능하고 시간당 처리능력이 우수할 것

저온시설 시공시 준수사항

계란유통센터에 설치할 저온시설(저온저장고, 예냉고, 저온선별장 등)의 시공 및 공조설비는 품목별 저장온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험용 시료를 현장에서 채취해서 보관해야 한다.

1. 지붕

- 금속단열 복합패널 : 샌드위치 구조로서 내심재는 경질 폴리우레탄이고 양면을 철판(0.5mm 이상에 실리콘 또는 P.V.C 코팅, 또는 FRP판 등)으로 마감한 구조(단, 옥외로 노출되는 패널은 실리콘코팅패널 사용)

2. 벽체

- 금속단열 복합패널 : 샌드위치 구조로서 내심재는 경질 폴리우레탄이고 양면을 철판(0.5mm 이상에 실리콘 또는 P.V.C 코팅, 또는 FRP판 등)으로 마감한 구조(단, 옥외로 노출되는 패널은 실리콘코팅패널 사용)

3. 바닥

- 바닥시공은 잡석을 다져서 20cm를 깔고, 그 위에 기초 콘크리트를 친다. 콘크리트 위에 방수필름과 단열재를 깔고 또 다시 그 위에 방수필름을 깔 다음에 15cm 정도의 보호 콘크리트를 하고 방수 모르타르를 시공한다
 - 방수필름은 두께 0.3mm 이상인 PE 필름을 사용하며, 시공할 때 필름이 뚫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름을 연결하여 사용할 때는 연결부에서도 방수가 잘 되도록 접착한다.
 - 바닥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은 반드시 바닥 단열재와 벽체 단열재가 서로 맞닿도록 시공하고 접합부를 밀봉하여 열손실을 차단한다.

4. 보관창고 등

- 원료란 창고, 선별·포장 작업장, 제품란 창고, 부자재 창고, 출하장 등은 구획을 구분하여 교차오염 차단 및 위생안전을 확보한다.

5. 저온시설

- 냉장기계
 - 다수의 장비를 운용할 시에는 운전비 절감과, 고장 시 저장 상품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를 채택하도록 한다. 장비 적용시에는 운용에 필요한 안전장치 및 운전보조 장치가 반드시 부착되도록 한다.(예 : 수액기, 오일 회수장치, 개별 압력스위치, 전용 컨트롤러 등.)
- 유닛쿨러(UNIT COOLER)
 - 유닛쿨러는 가급적 출입문의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
 - 저온저장고 냉각관은 핀(Fin)이 달린 관으로 제작하며, 핀의 높이는 관의 직경과 같게 하고

핀의 두께는 0.7~1mm, 핀의 간격은 6~10mm로 한다

○ 압축기(Compressor)

- 스크롤 압축기 또는 반 밀폐 왕복동식 압축기, 스크류나 동등품 이상을 채택
- 모타 과열보호장치는 전자식 모타 보호장치 MP10급(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 이상으로 하
되, 터미널 BOX에 내장되도록 한다. 이상 고압 발생시 압축기를 보호하기 위해 고압(토
출) 배관에 안전변을 별도로 설치 또는 수액기 등의 고압용기에 가용전을 부착한다.
- 장비 효율이 높고 부품 조달이 원활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 센서 : 감시 및 조작범위

- 각 실의 온도 및 습도 센서 설치
- 온도센서 3EA : 온도제어 및 기록용, 저온저장고 외부 디스플레이용(온도제어 및 기록용 동일센서
로 가능할 경우는 2EA 설치 가능, 습도계 1EA 설치)

6. 무상수리 보증기간

- 최장기간(최소 2년 이상)인 제품으로서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A/S 서비스센터가 있는
제품.

7. 시공업체 자격

- 저온시설 규모에 따른 시공실적 보유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한 기
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공조냉동기계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보유 업체가 원
도급자로 직접 시공

세부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			세목	지자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가금밀집지역 개편			예산 (백만원)	3,600			
사업목적	밀집되고 방역에 취약한 축사를 청정 지역으로 이전하여 차단 방역 및 환경 친화 축산을 구현							
사업 주요내용	개별 축사를 이전하거나 축사를 통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가금밀집지역의 가금농가							
지원한도	500백만원							
재원구성(%)	국고	40	지방비	40	용자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	-	22,500	9,000			
	국 고	-	-	9,000	3,600			
	지방비	-	-	9,000	3,600			
자부담	-	-	4,500	1,8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성구 이종화		044-201-2336 044-201-2337		
자치단체		축산관련부서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가금 밀집·방역취약 지역* 내에 축산업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을 한 가금농가·농업법인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정된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및 지정조건에 부합한 지역 (축산농가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또는 1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에 한함)

- 가금사육업의 사육시설 면적은 50m² 초과할 경우 지원
- 농가들이 모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 신규 법인도 지원 가능(관련 조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6] ②-③)

2. 지원자격 및 요건

< 선정 우선순위 >

- 오리 농장(부화업, 종축업 등 포함)
- 축사를 건축할 토지 매입 및 건축 인허가를 완료한 경우

< 지원 제외 >

- 가금 밀집·방역취약 지역^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당되지 아니할 예정^②인 경우

① 가금 축사간 거리 500m 이내 또는 철새도래지 3km 이내

② 인근에 다른 농가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이전하거나 폐업할 계획 등의 경우

- 대규모 이상인 경우(예: 산란계 대규모는 축사면적 5천m² 초과)

* 농가들이 모여 법인을 구성할 경우 대규모(산란계는 12,500m² 이하)로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가금축사 이전 및 설치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금농가가 방역취약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거나, 농가들이 모여 법인을 구성하고 축사를 개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이전 지역 또는 현 위치에서 가금 외 축종으로 변경 가능
 - 가금 밀집·취약지역 밖의 타 축사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 신축·개보수 가능(매입비 미지원)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 축사 : 가금 사육 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써,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 완전 건축물 축사에 대해 지원하고,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 축사는 지원에서 제외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써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 * 발육기, 발생기, 이란기, 콘트롤기, 세척기, 부화중지란 처리기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 * 계란·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세척기 및 선별기, 부적합란 처리기기, 포장기
- 방역시설 :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 통제시설(CCTV 등), 울타리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 축산물품 보관시설 : 깔짚저장고, 물품저장고, 사무실 등
 - * 농장 내 가옥 등 생산과 무관한 시설에는 지원불가
- 가축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과 관련된 지원내용과 자금용도

- 악취저감시설 : 악취를 포집하거나, 미생물·훈증·미량화학물질 활용 등을 통해 악취를 소거하는 고정시설(ICT악취측정기 등 포함)
- 기타시설 : 출하분류기, 폐사축 처리시설(냉동고 포함), 사료배합기 등 기타 가축생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생산에 직접 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등
- 가축분뇨 저장조 등에서 농가 및 근무자의 질식사고 예방 장비 : 환기장치, 가스농도 측정기, 공기 호흡기, 송기 마스크 등
- * 축사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여부판단
- 이 사업에 미기재된 사항이라도 축사시설 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조경식물 등 경관개선시설은 미지원)

5. 지원형태 및 의무준수사항

< 지원형태 >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지자체 자본보조)
- 지원조건 : 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 동일 시·도 내에 타 시·군으로 이전시 시·도에서 지방비 40% 전액 지원
 - ** 타 시·도로 이전시 지방비 확보가 불가할 경우 전액 자담으로 집행이 가능
- (농가 분류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사업기간) 농가별 2년 지원(총 지원액 중에 1년차 40%, 2년차 60% 지원)
 - * 다만, 시·군에서는 부지확보 및 인허가를 이미 완료하는 등 당해 년도에 사업완료 및 자금집행이 가능하다는 판단하는 경우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의무준수사항 >

- 가금 밀집·방역취약 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축사를 이전

구 분	가금 밀집·방역취약 지역 ➡	안전 지역
① 가금 축사간 거리	500m 이내 ⇨	500m 초과
② 철새도래지	3km 이내 ⇨	3km 초과

* 지원 농가는 방역취약 지역 ① 또는 ②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이전하는 지역은 안전 지역 ①~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철새도래지는 개정될 축산법에 따른 철새도래지를 말함

- 강화된 「축산법」의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 및 동물복지형 축산시설을 설치
 - 농업진흥구역, 종계·종오리 농가간 거리 10km 이내, 주요 축산시설 3km 이내로 이전 금지
 - 산란계 케이지는 (사육밀도) 0.05m²/마리 → 0.075, (단수) 9단 이하, (케이지 사이 복도) 폭 1.2m 이상, 3~5단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등
- AI방역중점관리지구(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의 엄격한 방역기준을 준수
 - * 방역중점관리지구에 따른 엄격한 방역·소독시설을 설치(시행규칙 제3조의5제4항)
(축사 진입 전에 방역복을 입는 전실(前室), 차량 세척시설 등)
 - * 사육시설 1천㎡ 이상의 소독설비 기준을 준수(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별표 1의2)
- 기존 축사는 철거(축산법에 따라 축산업을 폐업)
 - * 기존 축사 부지에서는 축사 건립을 금지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 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수혜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 ※ 지원대상자들이 '19년 사업 추진시 개정될 법령을 준수하도록 개정 완료 전이라도 향후 사업 지침서에 반영할 계획임
(향후 법령 개정, 추가 대책 등으로 의무사항이 조정되거나 구체화되면 지원대상자는 이를 준수하여 축사 건축 등을 이행해야 함)

< 축산법 및 하위법령 개정 방향(안) >

-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 축사면적 50㎡ 초과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및 기러기
- 산란계 케이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단수) 9단 이하, (케이지 사이 복도) 1.2m 이상, 3~5단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 산란계 케이지의 마리당 가축사육시설 면적 : (현행) 0.075㎡
- 위치 기준
 - 축산관련시설(가금)로부터 3km 이내, 종계·종오리장은 10km 이내, 농업진흥구역
 - * 축산관련시설은 도축장(가금), 사료공장, 국가나 지자체의 축산연구기관
 - 철새도래지로부터 3km 이내
 - 가금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가로부터 500m 이내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

제3조의5(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등) ④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2. 울타리 또는 담장
3. 농장 내 출입차량 세척시설 및 차량의 바퀴·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고압분무기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 ※ 가축사육시설 1천㎡ 이상의 소독설비 기준
 -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
 -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 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별 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 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
 - 다음 표에 따른 지원형태별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 사업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개별농가들이 모여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의 지원상한액은 대규모 상한액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준용)과 농가별 상한액의 합계 중에 낮은 금액으로 함

○ (면적기준) 이전할 축사의 면적은 지원대상 면적(상한 면적) 이내에서 지원

<축종별 사업 단가 및 최대 상한액>

구 분		축사 면적당 사업 단가	보조 사업	
			지원 대상 면적	사업 최대 상한액
양 계	육계(토종닭 포함)	450천원/m ²	50m ² 초과~5,000m ² 이하	2,250백만원
	종계(토종종계 포함)	562.5천원/m ²	8,250m ² 이하	4,640백만원
	부화장(토종계 포함)	1,875천원/m ²	900m ² 이하(150m ² 이하)	1,687백만원(281백만원)
	산란계(산란중추 포함)	900천원/m ²	50m ² 초과~5,000m ² 이하	4,500백만원
오 리	육용오리	450천원/m ²	50m ² 초과~7,000m ² 이하	3,150백만원
	종오리	562.5천원/m ²	4,995m ² 이하	2,810백만원
	오리 부화장	1,875천원/m ²	300m ² 이하	562백만원
메추리		900천원/m ²	50m ² 초과~3,000m ² 이하	2,70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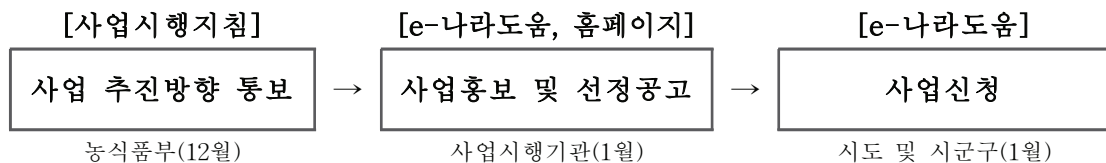
① 금액은 지원액이 아닌 총 사업비(보조+지방비+자담 등) 기준임

(가금 외에 타 축종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기준을 준용)

② 거위, 칠면조, 타조, 꿩 등은 오리 기준에 따름

II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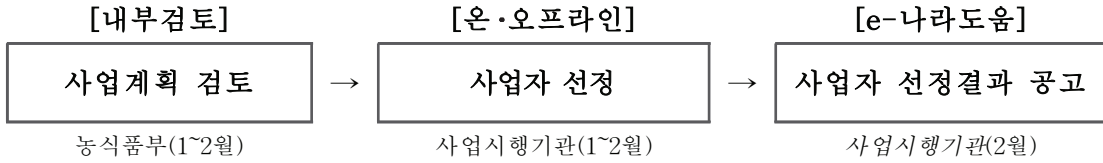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시·군·구는 가금 밀집지역에 대한 중장기 축사개편 계획(붙임1~2 참조)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서를 <서식 1>에 따라 신청('19.1월까지)

- '19년에 지원 계획이 있는 경우 신청하되 연차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
- 밀집지역에 가금농가의 축사 이전, 법인 구성, 개보수(현대화), 폐업, 미참여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 우선순위 등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1차적으로 지원 순위를 결정
- '19년에 지원을 받을 계획인 농가는 시·군·구(축산담당부서)에 <서식 2>에 따라 사업 신청('19.1월까지)
 - 시·군·구는 <별표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별표 2> 가금밀집지역 축산 개편사업 대상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
- 시·군·구는 신청농가에 사업 의무사항(방역시설 구비 등), 지침 내용, 동물복지형 축사 의무설치 등을 안내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에 해당 사항을 반영토록 할 것
 - 사업 수행 불가에 따른 중도 포기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법, 농지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 사항을 검토
 - 축사를 개보수·신축하는 농가에는 효과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사 설계 시 축사표준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축사 컨설팅 전문가((사)축산컨설팅협회 등) 또는 농협 등의 자문을 받도록 권장·안내
 - 지자체에서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자금 집행시 재확인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 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가능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
 - 농식품사업이 융자사업 등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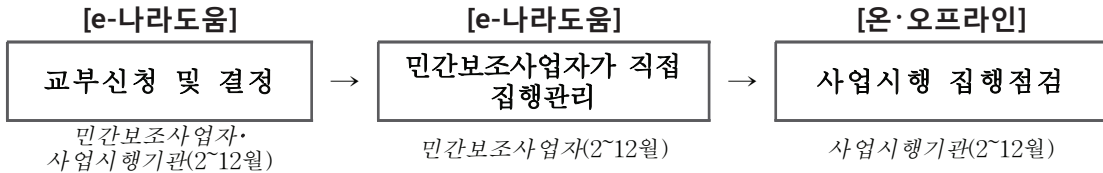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지역을 선정('17.12월말)
 - * 가금 밀집지역 면적, 사육 밀도 등으로 인해 심의 과정에서 미선정될 수 있음
- 시·도는 예산 현황,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확인
 - 사업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서식 3>에 따라 보고('19.2월말까지)
- 시·군·구는 사업자가 확정되는대로 사후관리전산관리시스템에 해당사항을 입력하여 사후관리조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시·도 및 시·군·구는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공사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 (인허가 등)을 추진토록 적극 조치
 - 교부 결정 확정('19.2월) 이후 신속히 착공이 가능하도록 농가 안내
-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우수한 축산 기자재가 공급되도록 한국축산환경시설 기계협회 검증 기자재, 또는 농협경제지주 계통구매 등록 품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 농법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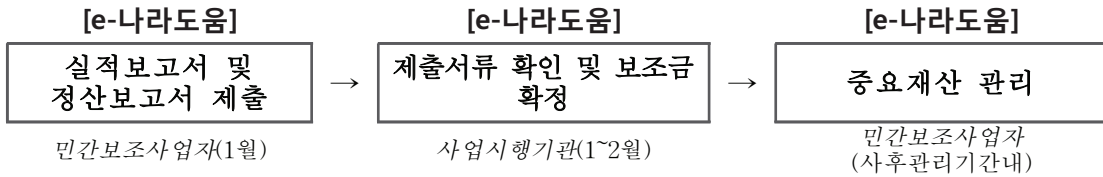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기본규정 제28조 및 제58조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기간 중 1회이상 집행현장 점검 및 지도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 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후관리기간

사업명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가금밀집지역 개편	○ 기계·장비	5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건축물	15년	
	○ 가설건축물(축사 제외)	5년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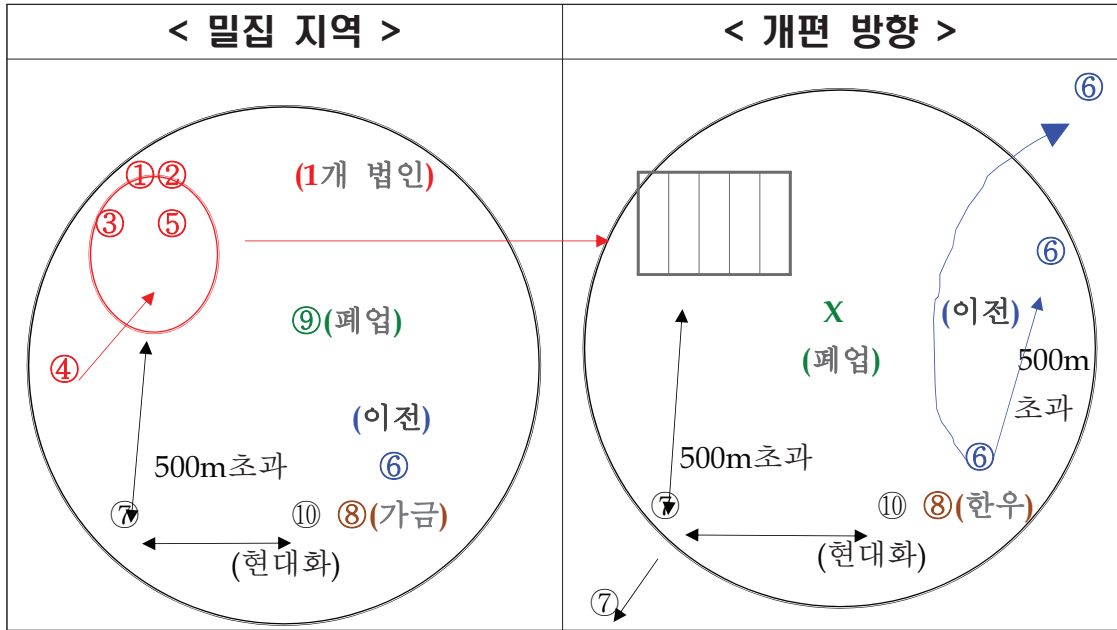
Ⅲ /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시 추진실적보고서(증빙사진을 첨부)를 제출

2. 평가

○ 사업시행기관은 지원자금의 교부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고 성과우수자에 대해서는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



< 가금밀집지역 축사개편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

①(법인) 개별농가들이 모여 법인을 구성 및 단지화(①~⑤)

* 다만, 타 가금농가와 거리가 500m를 초과하고 철새도래지 3km 밖으로 이전

②(이전) 농가가 안전지역으로 이전(⑥, 타 축사 매입도 가능)

* 기존 축사 위치가 철새도래지로부터 3km를 초과하고 가금농가간 거리가 500m 초과시 기존 축사시설현대화로 지원(⑦)

③(축종 변경) 현 위치에서 가금 외 가축으로 변경(⑧)

④(폐업) 자체 폐업(⑨)시 철거비 지원

④(현대화) 기존 축사를 개보수(⑩) : 기존 축사시설현대화로 지원

* 축사간 거리가 500m 이내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

⑤(미참여)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이전, 현대화, 폐업 등을 유도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법, 건축법 등에 따라 지도.점검 강화

- 시·군은 축사개편을 위한 사업 추진 방향 및 지도·감독, 사후 관리 등 전반적인 계획을 마련
- 밀집지역의 위치 및 원(동그라미) 면적, 가금 사육농가 밀도 (사육 마리수 밀도), 가금농가 위치,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및 철새도래지(3km 이내) 해당 여부
 - * 축사 개편하고자 하는 가금 밀집지역의 위치.면적은 지자체에서 결정
 - 해당 지역 및 개편계획에 대한 지도, 사진, 그림 등
- 지역내 축종별 가금농가 호수(축산법상 허가·등록) 및 사육마리수
 - 단위 면적당 가금농가 호수 및 사육마리수
- 지역 내 축사의 이전, 법인 구성, 폐업, 현대화(개보수), 미참여 등 전반적인 개편 계획
 - * 가금농가들이 모두 이전할 필요는 없음(참여농가에 한해 지원)
 - '19년부터 연차별 농가 호수 및 총사업비
 - 총사업비는 국고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등으로 구분
- '19년에 지원 농가 호수 및 총사업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실제 이전할 농가별 계획, 이전할 토지 선정, 이전 지역이 기준에 적합한지, 사육 규모, 축사 면적 등
- 사업대상자가 지원 전년도에 축사 이전 토지 물색, 건축 인허가, 민원 해결 등을 지도·홍보 계획
 - 지자체는 사업 중단·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등에 적극 협조
- 이 외에 사업 계획에 명시한 사항, 지역별로 특이사항 및 참고 자료 등을 포함

<서식 1>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 신청서(안)

[지자체 작성용]

1. 사업 추진 계획

- 지자체의 축산개편 사업추진 방향 등 전반적인 계획을 마련
(아래 서식 및 붙임2 검토항목을 포함)

2. 가금 밀집지역 현황

○ 위치(주소)			원(동그라미) 밀집지역 면적(m ²)	
○ 전체 가금농가 현황				
가금 분류	농가수 (호)	사육시설 면적(m ²)	사육마리수 (천마리)	축산업 허가·등록 날짜
합 계				

* 가금 분류는 산란계, 육계, 토종닭, 육용종계, 토종종계, 부화장(육용종계용, 토종종계용), 오리(육용오리, 종오리), 메추리, 칠면조 등 구체적으로 표시

3. 중장기 축산개편 계획

- 현재 가금농가 현황(위치), 축산개편 계획(위치 등), 연도별 개편 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림, 사진 또는 지도 등으로 표시

(단위 : 호, 백만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이후	
	농가수	총 사업비	농가수	총 사업비	농가수	총 사업비	농가수	총 사업비
축사 이전					-	-	-	-
법인 구성					-	-	-	-
폐업					-	-	-	-
시설현대화								
미참여								
기 타								
합 계								

* 총 사업비는 지원액, 자부담 등의 합계

4. '19년 농가별 지원계획(동 지원 사업만 기재)

- '19년 지원 예정인 농가에 대해 농가 현황, 축산개편 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림, 사진 또는 지도 등으로 세부적으로 표시

순위	농장명(성명)	현재 주소 (지원후 주소)	지원대상	축종		축사 면적(m ²)	
				현재	지원후	현재	지원후
1	홍농장(홍길동)		철새도래지 1km 500m내 3호	오리종계장	좌동		
2	별농장(김○○) 달농장(이○○) 해농장(최○○) 동농장(박○○) 서농장(조○○)		500m내 3호 500m내 5호 500m내 1호 500m내 1호 500m내 7호	산란계 오리 부화장 육용종계 종오리	한우		
	5호						
3							
합계	6호						

순위	농장명 (성명)	세부 사업	총 사업비(백만원)								개편 계획
			2019년				2020년				
			국고 보조	지방 비	자담	합계	국고 보조	지방 비	자담	합계	
1	홍농장 (홍길동)										축사 이전
2	5호 별농장 (김○○) 달농장 (이○○) 해농장 (최○○) 동농장 (박○○) 서농장 (조○○)	축사									법인 구성 합병 폐업 등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분뇨처리 시설									
		기타시설									
		합계									
3											
합계	6호										

5.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계획

- 부지 확보, 각종 인허가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
 - 개정될 법령·규정에 따라 축사 등을 건축해야 함을 안내
- 미참여 농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홍보 및 설득 노력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관리·점검
- 사업 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항

- 축산법에 따른 철새도래지 및 3km 범위를 미리 검토 및 가결정
 - 가금농가가 법령 개정 전이라도 철새도래지 3km 이내로 이전 및 지원되지 않도록 안내
- 지역 전체 및 농가별 AI 발생 현황
 - AI 발생 연도(횟수), 살처분 농가·마릿수, 재정 투입액(살처분 보상금, 경영안정자금 등) 등
- 기타

7. 참고 자료(별첨)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계획	총 사업비							
		2019년				2020년			
		국고 보조	지방 비	자담	계	국고 보조	지방 비	자담	계
축사									
	소계								
축사시설									
축산시설									
	소계								
방역시설									
	소계								
...									
	소계								
합 계									

<현재 축산업허가(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규대비>

현 행 면 적 (축산업 허가(등록)면적, 사육두수)	공사계획면적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_____ m ² (_____ 마리)	_____ m ² (_____ 마리)	_____ m ² (_____ 마리)

<지원 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보조)	_____ 천원
면적당 신청액 = (정부지원액) / 공사계획면적(m ²)	_____ 천원/m ²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과 가축사육시설 면적(m²)당 최대 지원한도액을 범위내에서 신청

<서식 3>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 사업자 선정내역 보고서식

* ① '사업자 선정 내역 보고' 서식, ② 지자체 '관리기록부 서식'으로 통합 이용할 것

선정 년도	시· 도	시· 군·구	행정 주소	농장 명	축종 *	사업내역(천원)						공사분류별 금액 (농가 제출계획에 따라 개괄 계산)			주요 공사 내역		
						'19년			'20년			공사분류				축사 개보 수	기타 시설 및 기계 장비
						사 업 비	지 방 비	자 담	사 업 비	지 방 비	자 담	축사 신축	축사 개보 수	기타 시설 및 기계 장비			

* 축종분류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침에 따른 분류에 따라 기재
- 산란계, 육계, 육용종계, 부화장, 육용오리, 종오리, 오리부화장, 메추리 등

<별표 1>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 및 제 22 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 수집 항목 : 대표자명(법인명) · 농장명 · 연락처(주택, 휴대전화) · 주소 (집주소, 농장주소) ·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5년까지 보유 · 활용

4. 제공 받는자

-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농협경제지주(축산건설팀부)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 대출취급기관 : 농협경제지주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 사업대상자 동의서

본인은 ○○○○년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 지침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을 설치한다.
2.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농장 정문 입구)를 설치한다.
3. 휴대용 방역기를 구비한다.
4.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5.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기계·장비 : 5년, 건축물 : 15년, 가설건축물 : 5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7. 농장경영기록부를 작성한다.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주소 :

사업자 성명 :

세부사업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세목	자치단체보조 및 민간보조		
내역사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생태축산농장 기계장비구입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부담금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컨설팅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조성 교육·홍보 지원 				예산 (백만원)	1,530		
사업목적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보조 사업							
사업 주요내용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기계장비구입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지원자격 및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생태목장으로서는 아래와 같이 자격 및 요건을 적용 - 산지생태축산농가 : 축산업등록농가 -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 기존의 산지생태축산농가(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는 우선 지원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장비) 호당 15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방목시 필요한 기계·장비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추가지원 가능 *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③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초지조성) 30ha기준으로 1ha(10천㎡)당 신규조성은 7,137천원, 보완조성은 2,122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초지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초지조성 면적이 30ha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적에 비례하여 지원 가능 ○ (초지조성부담금) 3ha 이상의 국유림이나 공유림(사유림은 제외)을 대부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1ha당 10,000천원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1ha 미만은 절사) * ha당 부담금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으로 함 ○ (컨설팅) 개소당 15,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교육·홍보) (재)축산환경관리원이 주관으로 예산 범위 내 시행 							
재원구성(%)	국고	1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5,500	6,630	4,320	4,320			
	국고	1,520	2,135	1,530	1,530			
	지방비	990	1,290	840	840			
	융자	2,000	1,915	1,110	1,110			
	자부담	990	1,290	840	84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박수연		044-201-2356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산지생태목장조성사업 시행지침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축산농가, 축산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산지를 활용하여 초지를 조성(면적이 3ha 이상인 경우에 한함)하거나 임간방목 등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자

* 시범사업(2014~2016)에 참여한 농가 중 방목용 초지면적이 3ha 이상인 농가는 산지생태목장으로 일괄 지정(2017년 지정, 지정기간 3년)하되, 추후 재지정 시에는 평가를 거쳐 지정여부 결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생태목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자격 및 요건을 적용
 - 산지생태축산농가 : 축산업등록농가
 -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 기존의 산지생태축산농가(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는 우선 지원

3. 지원대상

- 사업대상 : 산지생태축산농가,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대상축종 : 한·육우, 젓소, 말, 닭, 오리, 산양(염소)·면양, 사슴, 토끼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대, 측량수수료 등
- 지원단가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초지조성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

- ◆ 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 불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 임간초지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0°이하	100cm	5%이하	사양토, 양토
2급지	21 - 30	99 - 50	6 - 20	식양토, 식토
3급지	31 - 35	49 - 30	21 - 30	사토, 중점토
4급지	36 이상	29 이하	31 이상	입사질토

- 초지조성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 내의 축사, 울타리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의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따라 반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 초지를 중·상급 초지로 보완하거나 상급초지를 지속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 초지조성부담금 :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관련 전문기관 용역비용,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법정 비용 및 부담금(국유지·공유지에 한함)
 - 컨 설 텅 : 초지 조성·관리·이용, 축종별 시설·분뇨처리, 생태보전 등 분야별 컨설팅
 - 기계·장비 : 가축사육 및 방목에 필요한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 기계·장비
 -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③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항목 및 그 외 별도 추가 장비 지원 (예: 급경사 지역의 산지·초지 이동식 시비시설 등)
 - 기반시설
 -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 개설, 목장 내 도로 개설

- ◆ 용수개발 : 지하수 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 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 ◆ 전기시설 : 건조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초지 내 전기시설에 한함)
- ◆ 진입로 개설 : 초지의 진입도로, 목장 내 도로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
- ◆ 비가림 시설 : 초지 내 가축 대피시설

-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

-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기계화하기 위하여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 초지용 울타리 설치 등

- ◆ 초지에 대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 제고
- ◆ 대상시설 : 초지 내·외곽 경계 울타리, 철재앵글, 콘크리트, 나무 등 지주 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수조 및 저수탱크

《 우선지원 가능 사업 》

☆ 직접지원 가능 사업 외의 기타 사업(사일리지제조비, 종자구입비, 시·도 가축방역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사업,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은 개별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반영

5. 지원형태

- 초지조성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용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⑤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과 동일
 - 초지조성 지원 시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용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용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는 없음.

- 초지조성부담금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컨 설 텅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기계·장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용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자부담 30%
- * 용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기반시설 : 축산발전기금 용자 8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자부담 20%
- * 용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초지조성은 30ha기준으로 1ha(10천㎡)당 신규조성은 7,647천원, 보완조성은 2,19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 초지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초지조성 면적이 30ha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적에 비례하여 지원 가능
- 초지조성부담금은 3ha 이상의 국유림이나 공유림(사유림은 제외)을 대부분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1ha당 10,000천원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1ha 미만은 절사)
- * ha당 부담금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으로 함
- 컨설텅은 개소당 15,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호당 15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방목시 필요한 기계·장비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추가지원 가능
- 기반시설은 건당 지원한도 없이 총 소요액의 80%까지 용자 지원

1.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19. 1월)

시·도(시·군)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19. 1월)
- 시·군은 사업대상자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19. 1월)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9. 1월)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19. 2월)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

- 시·군은 사업대상자의 “산지생태목장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추천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 시·도는 시·군으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9. 1월)
- 선정방식 : 전문가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서면평가 등의 방법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 추천방식 : 축종별로 3순위까지 추천하되, 지역별 경쟁력이 있는 소수가축은 우선적으로 추천

* 산지생태목장 지정평가 기준 : [별지 제2호서식]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검토 후 서면심사,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심사(필요시 선정평가위원회 설치·운영) 평가('19. 2~4월)
- * 현장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 산지생태축산 시범농장 선정 현장조사표를 활용하고, 필요시 사후관리 참여기관 관계자 및 자문단 위원을 현장조사에 참여시킴.
-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19. 4월, 이후 수시)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자문단의 위원을 현장조사에 참여토록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산지생태목장 지정은 예산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본 지침서의 기준에 적합한 농장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지정 할 수 있음.
- 다만, “산지생태목장 지정 현장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산지생태목장으로 지정(지정서 발급)
- * [별지 제4호서식] 산지생태목장 지정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

-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본 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각 시·도 책임 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 단가 및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 시는 시·군 판단 하에 「축산발전기금 운영 요령」 등에 따라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사업비 배정 통보('17. 1~2월)

시·도(시·군)

-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군별 사업비 배정('17. 2월), 시·군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사업비 집행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제와 연계하여 분뇨처리, 질병 및 위생관리를 통해서 산지생태 축산농장을 운영
 - (분뇨처리) 방목축산에 따른 분뇨의 자연순환 처리 또는 퇴·액비 전환을 통한 적정하게 관리
 - (방역관리) 사람과 차량출입 등에 대한 차단방역 및 방목사육에 따른 질병피해를 방지
 - (위해요소중점관리)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위해요소 사전관리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 친환경·동물복지를 고려한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
 - (친환경축산물 생산)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한 자연순환형 축산(유기사료, 무항생제)을 통한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
 - (동물복지) 동물의 5대 자유원칙(배고픔, 불편함, 질병, 고통, 행동표현)에 따른 사육환경 및 관리 추진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지급신청 시 인센티브를 받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산지생태목장 지정서 사본 제출(대상자로 선정된 것만으로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음)

시·도(시·군)

-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지원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확인
- 시·군에서는 사업 진척도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용자기관에 통보, 사업비 집행(매월 소요액을 시·도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사업완료시 개별사업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관리
- 사업대상자가 산지생태목장을 운영하면서 분뇨처리, 질병·위생관리, 친환경·동물복지 등의 이행여부를 준수하는지 현장점검 확인(반기 1회)
- 보조금(용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사후관리기간에 따름.
- 보 고
- 산지생태목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직접사업 또는 연계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고(사업종료 즉시)
 -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의 정산은 개별사업에 따라 보고
 -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 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규정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

농협경제지주

- 시·도(시·군)와 협조하여 산지생태목장 지원사업 기계·장비 구입비에 대한 보조 및 용자 이중지원 등을 지도·점검하고, 필요시 지원자금 회수 등 조치

(재)축산환경관리원

- 산지생태목장 운영실태 점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
- 컨설팅지원팀을 구성하여 부실관리농가, 회원 및 신청농가에 상시기술지원 등 경영·기술·제도 등 컨설팅 지원
- 산지생태목장 대상 가축분뇨 자원화(퇴비, 액비) 및 악취저감에 관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산 립 청

-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국유림 사용허가(대부) 등 제도개선 추진
- 요존국유림 내 가축방목을 위한 허용범위 검토(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등과 협의)
- 산지초지 조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원

농촌진흥청

- 산지초지 조성 및 관리 이용기술, 축종별 산지초지 방목 이용기술, 산지축산 환경보전 및 방목가축 질병관리기술 등 연구
- 현장적용 기술의 보급 및 컨설팅 등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지급 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산지생태목장으로 지정받은 농가는 인센티브 부여([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일정
- 점검 대상 및 일정 : 시·군(도별 1개 이상), 연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직접지원, 연계사업 항목별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와 사후관리실태 확인

나. 제재조치

시·도(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 [별지 제6호서식]의 “산지생태목장 지원사업 관리카드”를 작성·비치(시·군)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조사 실시
- [별지 제7호서식]의 “산지생태목장 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산지생태목장 지원사업의 기계·장비 용자 및 보조에 대한 이중지원에 대해서는 동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회수 조치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에서는 농협경제지주와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이중지원에 대한 점검실시
 - * 시·도(시·군)는 보조지원 받은 산지생태목장에 대한 상호명 등 관련 정보를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보조지원 받은 산지생태목장이 용자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시·도(시·군)에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경고 조치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규정 준수

※ 사업내용, 지원조건 및 단가 등은 변경될 수 있음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2020년도 산지생태복장 조성사업 지원 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른 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축산담당부서
- 시·군에서는 시·도를 통해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도별 사업수요를 기초로 2020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또는 일선조합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2018년도 지원대상과 같음
 - 신청 및 선정절차 : 사업참여 희망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19.1월말까지)
 - 시·군에서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인허가 등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 농정심의회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시·도에 보고
 - 시·군은 시·군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산지생태목장 사업계획서

I. 일반현황

- 대표자 : _____ (HP : _____)
- 설립연도 : _____
- 소재지 : _____

초지면적 (㎡)	계	초 지		임간방목지	
		자가	임차 (국·공·사유지)	자가	임차 (국·공·사유지)
보유현황 (㎡/동/대)	관리사	축사	축산시설	기계·장비	기타
	0 동 (㎡)	0 동 (㎡)	0 동 (퇴비사 ㎡) (㎡)	____ 대 ____ 대 ____ 대	
현재사육 축종 (마리수)	한우·육우· 젖소	닭	오리	염소·산양· 면양	토끼 등 (소수가축)
	한우 마리 육우 마리 젖소 마리			염소 마리 산양 마리 면양 마리	
매출현황 (1년간, 백만원)	매출금액	순이익금액	자산 규모		
			자산		부채

II. 사업계획서

가. 개요

-
-

나. 투자계획

-
-

(단위 : 백만원)

구 분		'17	'18	'19	'20	'21
국비	보 조					
	용 자					
지 방 비						
자 부 담						
추가 자부담						
계						

다. 예산확보 방안

-
-

III. 세부사업 계획

가. 사업대상 초지 분포도

-
-

- * 전체 도면(관련자료 첨부)
- *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장기임대계약서 등(관련자료 첨부)
- * 예정부지에 대한 시장·군수의 인허가 등

나. 초지·임간방목지(신규·보완) 조성계획

-
-

구분	면 적(m ²)	금액(천원)

- * 조성계획 도면 (관련자료 첨부)
- * 조성계획 현황자료

다. 향후 사육두수 계획

-
-

축종	현 재 사육두수	향후 사육두수				
		'17	'18	'19	'20	계

라. 컨설팅 계획

-
-

마. 기계장비 구입 계획

-
-

기계·장비명	회사명	제작년도(번호)	치수	금액(천원)

바. 기반시설조성 계획

-
-

기반시설명	사업내용	금액(천원)
도로개설(km)		
용수개발(공)		
전기시설(km)		
부지정리(ha)		
기타		

사. 타 사업과 연계추진 계획

-
-

사업명	지원규모(천원)					지자체 관심도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아. 조사료 확보 계획

- 산지생태목장 농가는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므로 조사료 업체(TMR 업체, 조사료유통센터, 조사료경영체 또는 재배농가)와의 공급계약 체결내용을 기재

업체명 (농가명)	주소	종류(품목)*	계약물량 (면적)	계약기간

* TMR 사료, 조사료, 사일리지, 건초 등

IV. 사업효과(예상수익 등)

-
-
-
-

* 예상 수익성 분석 등 포함하여 설명

V. 향후 운영방안

- 조사료 확보 계획, 가축사육환경, 사업의지(초지 확보, 사육두수 확대, 자부담 계획 등), 타사업과 연계추진, 지자체 관심도 등 사업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
-
-

* 실현성 또는 가능성 위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반되어야 함.

산지생태목장 지정 현장조사표

조사일자 : 20 . . .

업체명	대표자명
지역	주요축종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지자체 평가의 적정성 확인	<input type="checkbox"/> 세부항목에 대한 득점 및 득점 근거의 적정성 ○ 부지면적 공부 확인 ○ 조사료 자급률 증빙자료 확인(생산실적 등) ○ 개발부지 적합성 확인(경사도, 환경, 기후 등) ○ 시설설치 확충정도 확인(현행 및 계획 비교) ○ 가축사육밀도 확인(기타가축 경우 현장확인 필요)	100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평가한 점수를 백분위로 환산하여 적용)						
소계(A)		100					
사업계획 적정성	<input type="checkbox"/>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및 적정성, 실현가능성, 추진일정, 사업점검 및 사후관리방안, 추진인력 구성, 기대효과 등 종합검토	40	32	24	16	8	
농가 운영사항	<input type="checkbox"/> 재무상태, 사업수행 의지, 이해도, 준비상황, 사업여건, 사업실적 및 업체운영 체계 등	20	16	12	8	4	
개별 평가항목	<input type="checkbox"/> (법적적합성) 축산법, 환경관련법, 초지법, 낙농진흥법, 사료관리법 등 관련 법규와의 적합성 <input type="checkbox"/> (합목적성) 사업내용의 목적달성 가능정도 ○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 가능성 ○ 동물복지 사육환경 조성도 ○ 분뇨 등 자연순환 처리계획 ○ 방역위생관리 적합도	40	32	24	16	8	
	<input type="checkbox"/> (사업수행) 사업규모 대비 사업비의 적정성, 축산환경 개선노력, 사육두수의 적정성, 체험·관광 등을 연계한 6차산업화 가능성 등 <input type="checkbox"/> (지속가능성) 사업 연속성, 주변으로 확대가능성, 타사업과 연계 추진도 등						
소계(B)		100					
평가자의견							
최종점수	(A+B)/2	100					

조사자 : 소속 _____ 직 _____ 성명 _____ (서명)

산지생태목장 지정서(안)

농림축산식품부 제○○호

산지생태목장 지정서

농장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 농장을 산지초지를 이용한 방목사육과
친환경 및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산지생태
목장으로 지정합니다.

(유효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2019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년 산지생태목적 지원사업 계획 및 실적

구분	사업량	계 획						실 적							
		사업비(천원)			자부담	계	사업비(천원)			자부담	계				
		추발기금	소계	지방비			추발기금		소계						
					보조	용자	보조	용자							
①초지조성 (ha) -신규조성 -기성보완															
②초지조성부담금 -내역															
③권설텍 -내역															
④기계·장비 (대/트랙터 기준) -경영체, 생산단체 등 -농업인															
⑤기반시설 -용수개발(공) -전기시설(km) -진입로개설(km) -목로개설(km) -부지정리(ha) -울타리설치(km)															
합 계															

산지생태목장 지원사업 관리카드

1. 대 표 명											
2. 설립연도 (지정연도)											
3. 구성인원											
4. 소 재 지											
5.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6. 기계장비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구분		'14	'15	'16	'17	'18	계			
	축발 기금	보조									
		용자									
	지 방 비										
	자 부 담										
계											
나. 사업량(대)											
	구분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트레일러	기타	계
		마력	수량								
	'14										
	'15										
	'16										
	'17										
	'18										
계											
7. 초지(임간방목) 재배면적(ha)											
	구분		'14	'15	'16	'17	'18	계			
	계										

산지생태목장 운영 지도·점검

구 분	점검내용	조치결과
○ 분뇨처리시설	○ 분뇨처리 적정관리 여부 등	
○ 방역·질병관리	○ 차단방역, 피해방지 등	
○ HACCP	○ 위해요소 사전관리 등	
○ 환경보전 등	○ 가축 등에 의한 환경훼손 등 ○ 유기사료, 무항생제 축산 추진	
○ 사육환경 및 관리	○ 밀식, 방목 등 환경여건	
○ 기타	○ 운영상 보완·추가할 내용 등	

세부사업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세목	자치단체차 본보조			
내역사업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단지조성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 전문단지조성용 입모중파종 지원 - 전문단지조성용 종자구입 지원 -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 -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 -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 조사료공급활성화 유통비 지원 - 조사료사업 교육홍보 지원 -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 -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 조사료생산용 초지조성(보완) 지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융자) 			예산 (백만원)	76,577			
사업목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사업 주요내용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기계장비구입 지원사업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생태목장으로서 아래와 같이 자격 및 요건을 적용 - 산지생태축산농가 : 축산업등록농가 - 농업경영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 기존의 산지생태축산농가(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는 우선 지원							
지원한도	○ 호당 15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방목시 필요한 기계·장비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추가지원 가능 *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③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재원구성 (%)	국고	1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119,608	104,263	97,093	87,384			
	보 조	81,326	81,839	80,435	76,577			
	융 자	38,282	22,424	16,658	10,807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박수연		044-201-2356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17년도 산지생태목장조성사업 시행지침							

<공통>

※ 아래 내용은 이하 세부사업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장거리유통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표2>의 생산표시제 스티커를 포장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자가소비용은 제외한다)

3. 지원조건

내역사업명		기금보조	지방비	기금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30	60	-	10	-
	종자·벚짚 처리비	30	-	-	70	-
	초지조성 (보완)	50	-	50	-	연리2%(3년거치 7년상환)
	경영체 기계·장비	10	30	30	30	연리2%(2년거치 3년상환)
○ 기계·장비	농가	-	-	80	20	연리2%(2년거치 3년상환)
○ 가공유통 및 품질 관리	가공유통시설	30	30	-	40	-
	조사료 품질관리	50	50	-	-	-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	-	100	-	연리2%(2년거치 일시상환)
○ 조사료 공급 활성화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30~40	-	-	60~70	-
	교육·홍보	100	-	-	-	-
○ 전문단지 조성	사일리지제조	50	40	-	10	
	종자구입	40	-	-	60	
	기계·장비	20	30	30	20	연리2%(2년거치 3년상환)
	퇴·액비	40	60	-	-	
	입모증파종	30	30	-	40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분담 비율은 1:1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10~50%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 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헤일리지 또는 건초로 제조하는 자
 - * 사료작물(forage crop) : 옥수수, 보리, 호밀, 귀리,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총채버 등(목초 포함)
 - * 사일리지(silage)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재료를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킨 다즙성 발효사료
 - * 헤일리지(haylage)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재료를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켜 수분 45%이하인 조사료 저장형태
 - * 건초(hay) : 사료작물의 수분함량이 15~20%이하가 되도록 물리적으로 건조시킨 조사료의 저장형태
- 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 단, 시·군 지원은 경영체 부재 또는 장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시·군이 사업단에 위탁 운영할 경우에 한정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자가 소비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생산계획으로 같음)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농림축산식품자율사업신청서 활용)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사일리지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은 사일리지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제조비 집행 제한
- 농업경영체의 경우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조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 등을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50km 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보관분 포함)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

- 지원단가 : 6만원/톤(18톤/ha)
- 지급방법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군은 세부실시요령에 의거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단, 자가소비용은 제외)
 -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중량계근 병행)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제조비 차등 지원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 예시) A 경영체가 10ha 사료작물 재배시 먼저 지원단가의 50%(540만원)를 제조 전 지원하고 품질검사 및 등급(A~E) 확정 후 전체 비용에서 선급금 제외금액 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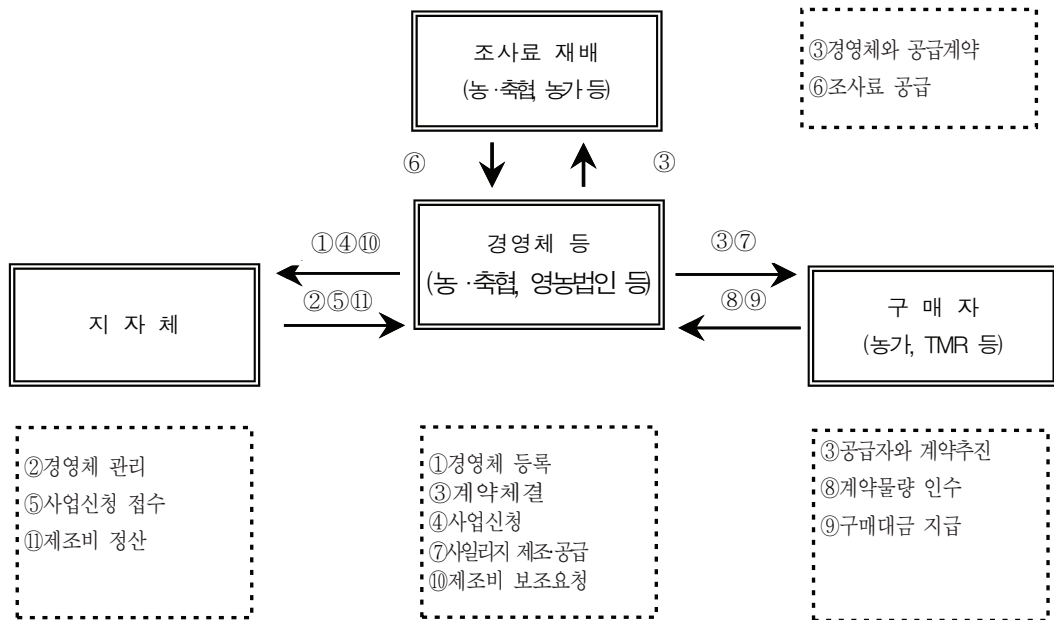
- 이 경우 시·군에서는 4월말까지 지면별 재배면적, 작물종류, 작황 등 재배면적을 확인(GPS탑재 기계장비 등 활용 확인 가능)한 이후 제조비 지원 가능

- 자가소비용은 품질검사 및 등급제에서 제외하며, 기존 중량계근방식*으로 지원

* 중량계근방법: 전량계근 또는 표본계근[곤포사일리지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 시·군, 읍·면 공무원 입회)]

- * 표본계근시 공인기관의 영점 등 검증을 필한 이동식 계근장비를 이용, 현장에서 계근 가능
- * 트렌치사일리지 계근 : 밀면적과 높이를 확인하고, <별표1> 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에 따라 중량 산출
- 자부담 10% 집행내역은 사일리지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하며, 등급별 지원단가 및 추진절차 등은 별도 세부추진요령으로 통보
- * 18톤/ha은 예산편성기준이며, 시·군 예산범위내에서 실제 생산량에 따라 지원 가능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 경영체 운영방법

- 재배농지 소재 시·군이 지방비 확보 및 경영체 선정 원칙
 -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타 시·군 소재의 경영체에 대해서는 재배농지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제조비 지원(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소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영체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의사가 있을 경우 당해 시군에서 지원 가능
-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 등 농업인과 생산·공급 계약
-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공급

②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공급 또는 구매하는 자 및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하는 섬유질 배합사료 가공장(TMR 및 TMF, 이하 'TMR업체'라 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품질 C등급 이상 국내산 조사료(짚류 제외)를 50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타 지역으로 유통(다만, 사료작물 주 생산지간 유통은 제외)하고자 하는 자는 조사료 공급·구매 계획과 실적을 농협경제지주, 축산단체(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한국중축개량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에 한함. '유통비 지원사업'에서 이하 같다) 및 관할 시·군에 제출

* 농업인은 한우·젓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농가, TMR은 농·축·낙협 TMR 및 축산단체(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TMR 또는 시·도에 등록된 업체에 한함

3. 지원대상

- 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4.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40%, 자부담 6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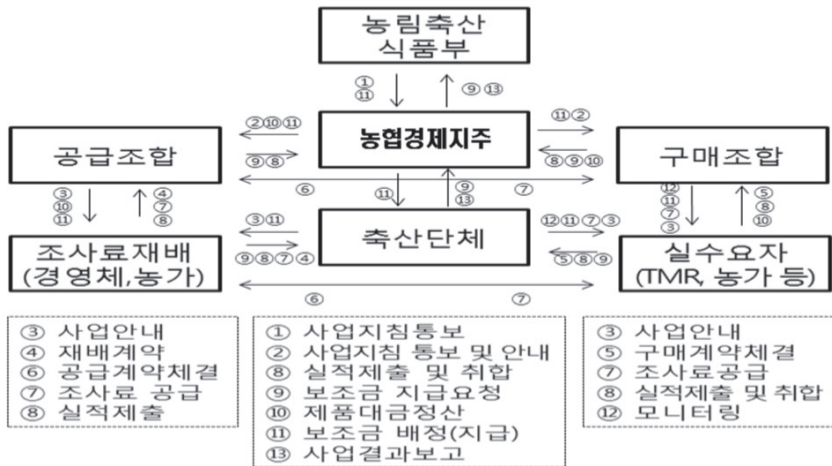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분	대상	지원조건	지원기준
장거리운송비	단체, 경영체 등	타 시·군 50km 이상 유통	50km~100km미만 실운송비의 30% 100km이상 실운송 비의 40% (30원/kg 한도)
생산구축비	단체, 경영체 등	연간 1천톤 이상 타 시·군으로 100km 이상 유통	5원/kg
유통촉진비	TMR 업체	연간 5백톤 이상 구매 * 신규시설 지원받은 TMR은 제외	10원/kg

* 유통되는 조사료에는 <별표2>의 생산실명을 표기하고 미표기 제품은 보조 제외

* 지원단가 및 추진절차 등은 세부추진요령을 참고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 사업대상

- 생산자 : 지역 농·축·낙협, 경영체, 농가 등
- 수요자 : 지역 농·축·낙협, TMR, 경영체, 축산농가 등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3.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 장비 등

* 상세내용은 <별표3> 참조

- 농업인에 한해 농가용 조사료 저장용 사일로 및 조사료 배합기 지원 가능
 - 사일로 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FRP 사일로 등
 - 사일로 용량(1기당) : 50톤(78m³)기준으로 하되 농가여건에 따라 조정 설치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5. 지원형태

-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용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30%
 - * 용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받아 공급업체에 지급 가능(서식 10)
- 농업인 : 축산발전기금 용자 8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용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농업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문단지 : 축산발전기금 보조 20%, 지방비 30, 용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 용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1개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지원
 - (경영체) 150백만원(재배면적 30ha당 1set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단, 옥수수, 총채벌 등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지원한도 300백만원(재배면적 30ha당 1set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예시) 사업대상자 확보면적이 20ha일 경우 30ha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확보비율 만큼 사업비를 조정(100백만원)하여 지원금 산정
 - 경영체 평가 결과 우수 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1.5억원 추가 지원, 지자체 참여시 3억원, 조사료 생산 거점 농·축협·낙협에서 50ha이상을 직접재배(작업)하는 경우 3억원 이내 지원
 - 경영체 재배면적에 따른 지원 가능 사업비 내에서 장비 중복 지원 가능
 - 지원 받은지 5년이상 경과(소유자 변경 없이, 기존 재배면적이 유지된 경우에 한함)된 부속장비(부속작업기, 결속기(베일러) 등)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받은지 8년이상 경과(소유자 변경 없이, 기존 재배면적이 유지된 경우에 한함)된 트랙터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기계장비를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영체가 이동식계근장비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트랙터는 기본적인 곤포장비와 반전기(<별표3> 참조)를 구비한 경우에만 지원
- 용자지원 : 기 용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 : 5억원 이내
 - 경영체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생산자단체 : 자기자본의 400% 이내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시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 은행 본점에 사전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보조·용자)되지 않도록 조치
 - 시·도(시·군·구)는 기계·장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시 농협 등의 용자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일선 지역조합에서 기계·장비 보조내역 및 기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용자 집행 여부 결정
- 기계·장비 공급자는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계·장비와 함께 공급
 - 용자지원사업은 농업종합자금사업의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별표2>에 등재된 용자지원 한도액 범위내 실거래 가격 준용
 - 기계·장비는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지원을 권장하며, 사업 추진상 정부지원대상이 아닌 일부 대형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지원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담 처리)
 - 기계·장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정 등을 받아야 하되, 검정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

- 보증기관은 지원대상 기계·장비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체계를 구축하고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12월)
 - 보증기관은 우수한 기계·장비 공급, 효율적인 사후관리, 품질향상 등을 위해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 관리대장”을 상시 비치하여야 함
 - *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준용(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참조)
- 제조·수입업자는 지원 기계·장비의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별표 4>, <별표5> 참조)
- 보증기관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별도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조사
 - 위반사항 등 발견시 조치결과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④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 자

3. 지원대상

-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아 라이그라스, 총채벼, 사료용 콩, 진주조(필밀렛)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 자부담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농가 자가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 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 (국내 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경제지주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농가의 종자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이중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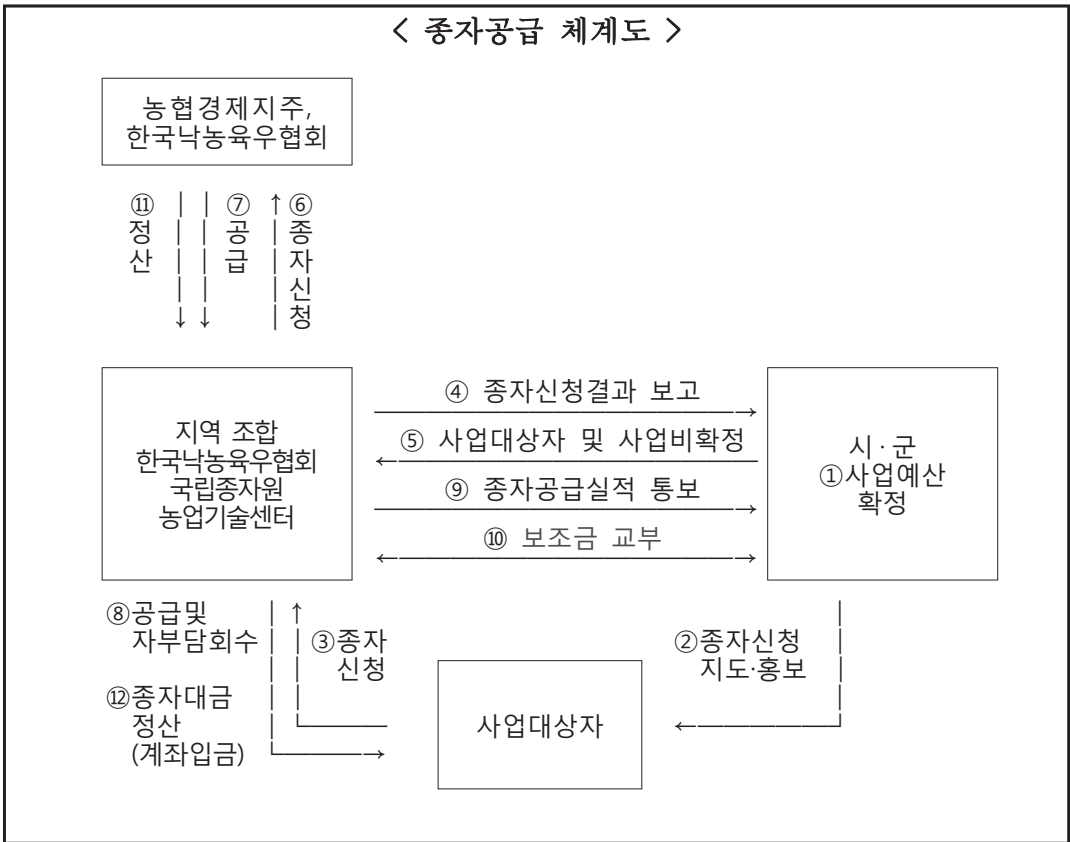
○ 종자공급 절차

종자신청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종자공급	·국립종자원,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종자대지급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

○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

- <자담분>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납부
- <보조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원금액이 적은 1개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만 지원
- 조사료생산용 종자류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 종자공급 체계도 >



⑤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산지생태목장조성사업 초지조성과 별개로 운영

3. 지원대상

- 초지조성 : 초지법령에 의한 초지적지조사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신규로 초지조성을 하거나, 기성 초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 기반시설 : 소, 염소, 사슴 등 초식가축 사육목장 및 초지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자재대·측량수수료 등
 - 지원단가는 매년 농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초지조성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 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0°이하	100cm	5%이하	사양토, 양토
2급지	21 - 30	99 - 50	6 - 20	식양토, 식토
3급지	31 - 35	49 - 30	21 - 30	사토, 중점토
4급지	36 이상	29 이하	31 이상	입사질토

- 초지조성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내의 축사, 울타리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의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의거 반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초지를 중·상급초지로 보완하고자 하거나 상급초지를 지속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기반시설>

-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목장내 도로 개설
 - 용수개발 : 지하수 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 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 전기시설 :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초지내 전기시설에 한함)
 - 진입로 개설 : 초지의 진입도로, 목장내 도로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
- 초지·사료작물재배 부지 정지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기계화하기 위하여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 초지용 울타리 설치
 - 초지에 대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 제고
 - 대상시설
 - 초지 외곽 경계 울타리
 - 철재앵글, 콘크리트, 나무 등 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 수조 및 저수탱크

5. 지원형태

- 초지조성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용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 기반시설 : 축산발전기금 용자 80%(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자부담 20%
- * 용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1개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융자금 지원기준은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초지조성 지원시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

⑥ 가공·유통시설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역의 원활한 조사료 및 농산부산물 수급을 위한 허브(hub) 역할인 유통센터 또는 TMR 가공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
- (보완지원)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시설 보완 및 개보수, 기계·장비 보완 및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자
- (운영지원)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원재료 구입 등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TMR업체는 ②조사료장거리유통비 지원사업의 요건을 적용한다.
- 지원요건

<유통센터>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 생산·배출자(농업인, 경영체 등)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방법을 개별적 또는 혼합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산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을 유통

-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 등을 일정 규모를 가진 특정 장소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국내산 조사료를 대형 저장시설(사일로)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 등 또는 저장시설 보관 조사료를 소포장 등 형태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 단, 소포장 등 제조를 위해 지원된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섬유질 배합사료의 제조는 불가**하며, 제조 내용물은 국내산 조사료에 한함
- 생산·배출된 농산부산물을 저장시설에 보관후 공급하거나, 소포장 등으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TMR 가공시설>

- 신규지원 : 조사료 생산자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
- * 조사료 소요량의 80%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낙농용 TMR 사료인 경우 국내산 이용 비율을 30%이상으로 하되, 국내산 이용을 별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 보완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업체(HACCP인증 신청 업체를 말한다)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
- * 다만, HACCP 인증(또는 인증계획)이 없는 업체가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하고자 절단기, 파쇄기 등을 추가설치 하고자 할 경우에도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공장, 사무시설, 저장·보관시설, 포장제조설비, 계근·방역시설, 특수운반차량 (농산부산물에 한함), 기계·장비 및 기타 가공·유통센터 설비·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트랙터 등 조사료 생산장비, 일반차량은 지원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공·유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 시설 건축비 등
 - 부지 구입비는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가공·유통센터 설비 및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운영자금 : 축산발전기금 용자 100%(연리 2%, 2년 거치 일시상환)
 - * 용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1개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규지원은 개소당 9억원 이내(총사업비 30억원 기준)
- 기존 TMR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 보완지원은 개소당 2.7억원 이내 (총사업비 9억원 기준)
- 기존 TMR 업체 및 유통센터 운영지원은 개소당 4억원. 다만, TMR 및 유통센터 동시 운영업체는 8억원까지 지원 가능
 -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대출가능 등을 검토하여 용자 실행이 가능할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7.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세부 추진요령 참고

⑦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정이후 5년이상 조사료재배 가능 지역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지정된 이후 5년이상 조사료 생산(조사료용 종자 생산 포함)이 가능한 지역
- 지원요건
 - (광역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 하계 작물을 별개로 하여 산정)을 4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30ha이상으로 확보한 지역
 - * 작업구역이란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가 구역내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거리가 1km 이내로 집단화된 구역을 말함
 - (특화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 하계 작물을 별개로 하여 산정)을 1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2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광역단지 지정이 곤란한 들녘화단지, 간척지, 하천부지 등)
 - (중소단지) 조사료 재배면적이 협소하고 지형이 불리하여 광역 및 특화단지로 지정이 곤란하나 동일 시군내에서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1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
 - (종자단지) 조사료 종자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을 최소 10ha이상 확보한 지역(기존 또는 신규 광역단지는 연계하여 사업참여 가능)

3. 지원대상

- 사일리지제조비, 조사료용 기계·장비, 조사료용 종자, 조사료 재배용 퇴·액비, 입모중과종비(항공과중시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등 제조를 위한 사일리지제조비, 기계·장비 구입비,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퇴·액비 구매비 등으로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사일리지제조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기계·장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융자 30% (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 종자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자부담 60%
- * 자부담 중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퇴·액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60%
- 입모중 과종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 의무량

- 연속하여 5년 이상을 조사료 재배 및 채종단지로 활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별 사업의 기준 및 범위를 준용한다. 다만, 기계장비의 경우 set당 지원 한도는 300백만원(재배면적 100ha당 1set 기준이며, 기존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을 받고 사후관리기간내에 있는 필지는 지원 대상 재배면적에서 제외)
- 단, 옥수수, 총채벌 등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지원한도 500백만원(재배면적 100ha당 1set 기준이며, 기존 경영체 기계장비지원을 받고 사후관리기간 내에 있는 필지는 지원 대상 재배면적에서 제외)

7.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세부 추진요령 참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통보(1월)
 - 품질검사 및 등급제, 조사료 장거리운송비 지원사업,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전문단지 지원사업

시·도(시·군)

- ※ 사업신청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권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활용하되, 내역사업별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제출
 - 가공·유통시설, 전문단지 등 농식품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내역사업의 경우는 각 세부실시요령에 따름.
- 시·도는 농식품부의 가내시 사업비 내에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전년도 10월)
 - 지방비 확보, 사업신청·선정 및 계약체결기간 등 명시, 농가교육·지도 실시
- 시·군은 사업수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0~11월)
- 시·도는 시·군의 사업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필요시 사업계획서 포함) 관할 시·군·구에 제출(1월말까지)
- 경영체는 농가와 사료작물재배 및 사일리지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시·군에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 신청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9월 중순~10월말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사업희망 생산자단체(지역농·축·낙협, 경영체) 및 축산농가는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농협경제지주, 축산단체 및 관할 시·군에 청보리 등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등 생산 및 구매 수요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가공·유통시설》

- 농식품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의 평가서 및 사업계획을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 TMR가공시설 지원시 국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조사료 소요량의 80%이상 (낙농용 30%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 한다”를 명시(신규지원에 한함)

- 시·군은 사업신청서류에 대한 적합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가축사육두수 및 사료포 확보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적합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실시
- 농식품부의 시·도별 사업비 배정(1월)에 따라 시·군은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후 지원대상자 확정
- 시·군은 사업자 선정결과를 시·도에 제출, 시·도는 취합하여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월말까지)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내역사업 이행 결과를 Agrix시스템(농림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병행(시스템 매뉴얼 참고)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농협경제지주는 조사료 유통비(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지원시 판매 및 구매조합의 수요·공급량을 파악하고, 사업량·운송단가·사업대상자 등 확정
- 축산단체는 회원 축산농가로부터 관외 공급·구매신고서, 조사료 공급(구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운송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사업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

-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각 시·도 책임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시는 시·군 판단하에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 경영체는 재배농가와 축산농가로부터 받은 영수증 및 기계·장비 구입 영수증, 사진,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경영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곤포사일리지 등 공급비용을 수령하여 재배농가에 지급(각각의 농가로부터 수량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수령)
- 시·군은 사업추진실적을 매 반기말 기준으로 익월 중순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www.agrix.go.kr)에 입력 병행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농협경제지주 및 축산단체는 사업량 및 판매·운송단가 등 대상자별 구매 및 판매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 공통사항 :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시장·군수가 승인하여 사업 변경
 - 시·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사업변경
 - 시·도간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 시·군 및 시·도의 조정변경 내용은 직 상위기관에 사후 보고
- 다만,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대상자가 조사료 및 부존자원의 확보 및 이용과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은 농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계획변경 가능
- 기계·장비 구입 등에 대한 자금집행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용
 - 시·군은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시
 -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 첨부 및 보증서와 기계·장비(품명, 형식명, 기대번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 기계·장비의 제조번호를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은행 본점에 통보하고, 이미 자금 지원 되었던 기계인지 여부를 검색·확인
 - 자금 지원을 신청한 기계·장비와 농가에게 공급된 기계의 일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 협조사항

《지방자치단체》

-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에 따른 정부시책방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
- 사료작물재배 대상지에는 퇴·액비를 사용토록 지도하고 액비를 살포할 경우 농업기술센터는 살포대상지 토양분석, 시비처방서 발급, 살포량 및 살포방법 지도
-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인·허가 등의 제한사항 해소에 적극 협조
 - 대규모 휴경지, 간척지, 하천부지, 벼 채종포, 미활용 공단부지 등의 확보 등
- 관내에 보급된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가능한 임대 활용하도록 조치
- 경영체가 한우회, 낙우회 등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선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농협경제지주 등 생산자단체》

- 사업수행에 필요한 종자 등 기자재 구매 알선 및 지도
- 종자공급은 ⑤의 종자공급체계를 참조하여 추진

《농촌지도기관(축산과학원 등) 및 관련단체》

-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료생산이용 기술교육 및 경영지도 실시
- 사료작물의 파종·시비, 조사료 생산 및 이용, 기계·장비의 사용 방법, 곤포 사일리지 제조방법 등에 관한 기술지도 실시
- *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시 퇴·액비를 사용토록 유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농협경제지주에 사업비 배정 통보(1월)

시·도(시·군)

-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군별 사업비 배정(1월), 시·군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사업비 집행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축산단체) 매분기별로 정산하여 농협경제지주에 자금배정 요청 및 자금 집행
- (농협경제지주) 매분기말 사업종료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자금배정 요청 및 자금 집행

5. 이행점검단계(사후관리 및 제재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일정
 - 점검 대상 및 일정 : 시·군·구(도별 1개 이상), 연 1회이상
 - 점검반 : 농식품부, 시·도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세부사업 항목별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와 사후관리실태 확인
 - 사업추진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시·도(시·군),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사료작물 파종 및 재배 실적 확인
 - 사일리지제조비 지급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 및 실적 파악 보고
- 시·군에서는 사업진척도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용자기관에 통보, 사업비 집행(매월 소요액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신청)
- 사업완료시 <서식 3>또는 농식품부 별도 제공 양식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부득이한 이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 회수 또는 사업취소 등 조치

- 보조(융자)금 부정수급, 안전성 문제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시 동 사업에서 제외 및 보조(융자)금 회수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 사업대상자가 유통·공급한 조사료(벧짚 포함)에서 안전성문제 발생시 행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시·도에서는 연1회 이상 이중지원에 대한 점검 실시(농협경제지주 협조)
 - * 시·도(시·군·구)에서는 보조지원 받은 경영체에 대한 상호명 등 관련 정보를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보조지원받은 경영체가 융자를 받으려 할 경우 해당 시·도(시·군·구)에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경고조치
-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사료작물용으로 재배한 보리를 곡식용으로 수확하는 경우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사업취소, 기지원금 회수 및 차기년도 지원 중단 조치
 - 재배농가가 생산한 사료작물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축산농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종 농림축산사업지원대상 및 수입조사료 쿼터배정시 제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체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
- (기계·장비) 조사료 재배면적이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때보다 특별한 이유 없이 감소하거나, 재배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유서 징구 및 재배목표 부여 관리
 -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서식 2. 경영체별 관리카드)을 작성·비치하고, 연 1회이상 관리실태 조사
 - * 조사료 재배의지가 없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비 회수 방안 등 강구 조치
- (가공·유통시설) 시·도(시·군)는 연 2회 이상 연차별 국내산 조사료 및 부존자원 확보·이용계획 등의 이행여부 및 원료사용실적 등을 지도·점검하고,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미준수할 경우 자금회수 등 조치
 - 시·도(시·군)는 가공시설(신규) 사업대상자의 국내산 조사료 의무사용비율 준수여부와 조사료유통센터 사업대상자의 수입조사료 사용여부와 제조시설을 이용 TMR 제조여부 점검하여 불이행시 자금회수 등 조치
 - * 시·군은 <서식 8, 9> 를 작성·비치

○ 기타 사후관리 및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터	까지		
○ 초 지 - 조성및보완	보조금교부일	5년	초지전용	○ 지진, 산사태 등 천재·지변 및 사업자의 질병 및 사망, 전업·폐업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지·관리가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 준용 처리
○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보조금교부일	5년 (트랙터 8년)	양도	
○ 가공 유통시설	보조금교부일	시설·건축물 10년 기계장비 5년	담보·양도	

○ 보 고

- 시·군은 <서식1~10>을 작성·관리하고, 농식품부에서 자료요구시 성실히 제출토록 한다.

보고 사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결산 보고 (기계·장비 등 세부사업별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 * <서식 1>, <서식 2>, <서식 3>	사업 다음연도 1월	사도, 농협경제지주

* ①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규정 등에 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

* ②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본사업과 이월사업을 별도 보고

※ 사업내용, 지원조건 및 단가 등은 변경될 수 있음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2020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참여희망자는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19.1월말까지)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시·군) 축산담당과 또는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 시·군에서는 시·도를 통해 '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9.2월말)
- 농식품부에서는 시·도별 사업수요를 기초로 2020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19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또는 일선조합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2018년도 지원대상과 같음
- 신청 및 선정절차 : 사업참여 희망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19.1월말까지)
 - 시·군에서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인허가 등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 농정심의회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시·도에 보고
 - 시·군은 시·군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농가>

- 초식가축 사육규모에 따른 초지·사료포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사료생산을 규모화·단지화 할 수 있는 자
- 답리작 재배 및 옥수수사일리지 이용농가
-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 중 한우, 젓소 등 초식가축 대상자의 우선 순위자
- 농업통계조사 표본농가로서 농업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자

<영농조합법인·축협조합 등 생산자단체>

- 초지·사료포 등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경영체
- 조사료 생산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공동구매·판매, 경영기록 등 사업실적과 조직운영이 좋은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 청보리 등 국내부존 사료자원의 확보·이용을 위한 경종농가 등과의 협약 등 구체적인 추진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 생산자단체
- 조사료 소포장 제품을 생산·공급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업체

<공통사항>

- 재배지에 퇴·액비 사용농가(경영체 등 포함) 우선 지원
- 도축장이 있는 시·군의 사업대상자를 우대

○ 구비서류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및 사업계획서(관련서식은 시·도에 별도 시달)
- 시장·군수가 필요로 하는 서류 등

<별표 1>

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

(단위 : 톤)

사일로 높이 (m)	밀 면 적 (㎡)											
	6	7	8	9	12	15	18	25	50	75	100	120
1	3	3.5	4	4.5	6	7	9	12	25	37	49	99
2	6	7	8	9	12	16	18	26	52	78	104	208
3	10	12	13	16	20	25	30	42	83	125	166	332
4	14	16	18	21	27	34	41	57	114	172	229	458
5	18	21	24	27	36	45	54	75	150	224	299	598
6	22	26	30	34	45	56	67	94	187	281	374	749
7	27	32	36	41	54	68	81	113	226	339	452	904
8	32	38	43	48	64	80	96	134	268	401	535	1,070
9	37	44	50	56	75	93	112	155	311	465	621	1,242
10	43	50	57	64	86	107	128	179	358	536	715	1,430

<별표 2>

생산실명 표기(양식)

생 산 이 력 현 황(상세)			
품질등급	글씨표기 150포인트 이상	품 명	() - 작물명 사일리지(물/소포장)·헤일리지·건 초
		중 량	
생산자명 (연락처)		생산지역	()시·군 ()읍·면·동 ()통·리
생산일자	년 월 일	첨가제	사용, 미사용
유통(공급)업체 (연락처)		주 소	
주의사항	부주의나 들짐승에 의한 구멍 등 파손시 부패방지를 위해 밀봉하세요.		

생 산 이 력 현 황(약식)			
품질등급	글씨표기 150포인트 이상	품 명	() - 작물명 사일리지(물/소포장)·헤일리지·건초
생산자명 (연락처)		생산연월	년 월
주의사항	부주의나 들짐승에 의한 구멍 등 파손시 부패방지를 위해 밀봉하세요.		

- * 곤포 사일리지의 초종별 1일 제조량의 최소 5%이상 생산이력현황(약식)을 부착하되, 생산자(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생산이력현황(상세) 관련 정보를 별도로 제공
- * 규격 : 가로 30cm × 세로 20cm 이상 권장
- * 표시방법 : 인쇄 또는 PE 필름 부착, 열전사, 프린팅 필름, 스탬프 방식
- * 기존 스티커로 제작한 재고물량이 있을 경우는 소진 후 상기 변경된 스티커 사용

<별표 3>

조사료용 기계·장비(예시)

작업명		기계·장비명(규격)	비고	
동력원		농용트랙터(135HP내외)		
곤포장비	결속기	원형베일러(드럼폭174cm내외)		
	랩피복기	랩피복기(100cm*100cm 내외)		
	적재기	적재기(로더, 그래플 포함)		
부속작업기	경운	플라우(4연)		
	파종	파종기(12조), 진압기		
	시비	퇴·액비살포기(4톤), 비료·농약살포기		
	예취	모우어(2.4m) 및 컨디셔너		
		하베스트(1~3조)		
	정지	로타베이터리(80HP이상)		
	방제	동력분무기(주행형, 600ℓ)		
운반	트레일러(4톤), 로다 등			
반전 및 집초		반전기(2로터 이상), 레이크(3.0m)		
기타		수확기, 절단기, 곤포사일리지 커터, 농가용 조사료 배합기,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 등		

* 본 표는 예시로서 기계·장비 및 규격은 조사료 재배규모 등에 따라 선택 가능

<별표 4>

제조번호 명판 및 형식표지판 사양

1. 대상 농업기계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계·장비
2. 재 질 : 테이프론 스티커
3. 주요 사양

작업기명		↑ 6cm ↓
형식명 (규격)	○○○○○ (○○○○○)	
제조번호		
제조업체 (공급업체)	제조업체명(국명/주소) 국내 공급업체명	

4. 부착위치 및 색상 :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의 부착위치, 색상을 통일함
 - 부착위치 : 별표 5 참조
 - 색 상
 - 바탕 : 노란색, - 글자 : 검정색(견고딕체 18p 굵게)
 - * 수입농업기계는 외국의 제조업체명(국명/주소)과 국내 공급업체명을 동시에 표기

<별표 5>

조사료생산 기계·장비별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부착위치

기종명	부착위치
트랙터	핸들지지대 중앙, 엔진룸(정면 우측)중앙
플라우	주프레임 상단
로타베이터	동력전달부(체인, 기어) 반대 측면
퇴비살포기	적재함프레임 전면
과중기	주프레임 중앙 전면
트레일러	적재함프레임 전면
모우어	주프레임 중앙 전면
하베스트	주프레임 중앙 전면
레이크	주프레임 중앙 전면
베일러	중앙프레임 우측
랩피복기	주프레임 중앙 전면
적재기(로더포함)	운전석을 기준으로 우측 뿔지지대 측면

* 이외 장비는 유사기계·장비를 준용하며 쉽게 보이는 곳에 부착

2019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계획 및 실적

	계						실						적						
	물량		사업비(천원)				물량		사업비(천원)				물량		사업비(천원)				
			보조	융자	계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계	지방비	자담	계	
	톤	ha	추발기급	지방비	자담	계	톤	ha	추발기급	지방비	자담	계	톤	ha	추발기급	지방비	자담	계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톤					(톤					(톤					
② 조사료 유통비		톤						톤						톤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 경영체, 생산자단체 등 - 농업인	(트랙터기준)					(트랙터기준)					(트랙터기준)					
④ 초지 조성		ha						ha						ha					
- 신규 조성		ha						ha						ha					
- 기성보완		ha						ha						ha					
⑤ 기반시설 지원		km						km						km					
- 목초개설		공						공						공					
- 용수개발		km						km						km					
- 전기시설		ha						ha						ha					
- 부지정리		km						km						km					
- 진입로 개설		톤						톤						톤					
⑥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ha)					(ha)					(ha)					
⑦ 조사료 가공장 시설 신규지원		개소						개소						개소					
⑧ 조사료 가공장 시설 보완지원		개소						개소						개소					
⑨ 조사료 가공장 운영자금지원		개소						개소						개소					
합 계																			

※ 사업대상자수 계란는 중복 대상자수와 관계없이 각 사업별 총대상자수를 기재하되, 합계란은 실 대상자수만 기재(중복 대상자 제외)
 ※ 이월사업이 있을 경우 실적보고서를 별도 작성

조사료 생산 · 유통 경영체 지원사업 관리카드

1. 법인명(대표명)												
2. 설립연도												
3. 구성인원(명)												
4. 소재지(주소)												
5.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6. 기계장비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계
	축발기금											-
	지방비											-
	자담											-
	계	-	-	-	-	-	-	-	-	-	-	-
나. 사업량(대)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트레일러	기타	계	
		마력	수량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계	-	-	-	-	-	-	-	-	-	-	
7. 제조 운송비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계
	축발기금											-
	지방비											-
	계	-	-	-	-	-	-	-	-	-	-	-
나. 사료작물 생산량(톤)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계
	생산량											-
다. 사료작물 재배면적(ha)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계
	청보리											
	호밀											-
	라이프리스											-
	귀리											-
	기타											-
	계	-	-	-	-	-	-	-	-	-	-	-

0000 사업 완료 및 정산서

(시·군·보관)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성명 :
3. 사업대상자 성명·주소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산자단체 등록번호)
4.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 고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천원 (100%)	()	()	()	()	()	()	()	

※ 합계는 세부명세 금액의 합계와 같아야 함

- 세부명세(집행액 기준으로 작성)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타
○○○○	계 ○○○○ ○○○○ ·						○ 거래처 및 전화번호 등 필요 사항 기재 - 자재구입·인건비 지출 등 각종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등) 별도 첨부
○○○○	계 ○○○○ ○○○○						
합 계							

※ 합계는 총괄표 합계와 같아야 함

<서식 4>

'19년 조사료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 수요조사결과

(○○ 시·도)

(단위 : ha, 기, 백만원)

시·군	제조비 지원		기계·장비 지원		계 (A+B)
	사업량(ha)	사업비(A)	사업량(기)	사업비(B)	
계					

사일리지제조비 지원계획 및 실적

시군명	경영체명	재배면적 (ha)											생산·구매량 (톤)				소요사업비 (천원)						
		계획						실적					계획	계획			실적						
		보리	호밀	이탈리 한 라이그 라스	기타	계	보리	호밀	이탈리 한 라이그 라스	기타	계	수량		ha당 생산량	축발 기금	지방비	계	축발 기금	지방비	계			
		이탈리 한 라이그 라스	기타	계	이탈리 한 라이그 라스	기타	계																

※ 실적보고시 경영체 수는 당초 계획보고시와 같아야 함(사업추진중 사업을 포기한 경영체 포함 작성)

기계·장비 지원계획 및 실적

시군명	연결체명	지 원 실 적						사 업 량 (대)											
		사 업 비 (천원)		계	트랙터		에취기	집초기	결속기	피복기	적제기	트레일러 등	계						
		추발기금	지방비		자담	마력								수량					
	소 계																		
	합계																		
	개소																		

2019년도 사료작물·목초종자 공급 실적

○○ 시·도

(단위 : kg)

구 분	정 책 지 원 분				자 가 확 보 분			계 (A+B)	
	농협 경제지구	낙농 육우협회	국립 종자원	기타	소 계 (A)	자 가 채 종	자 체 구 입		소 계 (B)
○ 전작(하계)									
- 옥수수									
- 수단그라스									
- 연 맥									
- 유 채									
- 기 타									
○ 답리작(동계)									
- 호 밀									
- IRG									
- 청보리									
- 기 타									
합 계									

섬유질배합(가공)사료 등록업체 관리카드

1. 법인명(대표자)												
2. 설립연도												
3. 종사원(명)												
4. 소재지(주소)												
5.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6.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구분	'12까지	'13	'14	'15	'16	'17	'18	'19	'20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합계												
나. TMR 사료 생산 실적(단위 : 톤, %)												
생산능력 : 톤/일			생산량	가동율	조사료사용량			국내산 조사료비율	비고			
					국내산	수입산	계					
	'16	상반기										
		하반기										
		계										
	'17	상반기										
		하반기										
		계										
	'18	상반기										
		하반기										
		계										
	'19	상반기										
		하반기										
		계										
	'20	상반기										
		하반기										
		계										
	'21	상반기										
		하반기										
		계										
합계												

※ 사업대상자 선정시부터 사후관리기간(10년) 동안 비치·관리 함.

조사료유통센터 등록업체 관리카드

1. 법인명(대표자)								
2. 설립연도								
3. 종사원(명)								
4. 소재지(주소)								
5.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6.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구 분	'15	'16	'17	'18	'19	'20	계	
축발기금								
지 방 비								
자 답								
합 계								
나. 조사료유통센터 사업실적 (단위 : 톤, %)								
소포장조 사료생산 능력 : 톤/일			소포장		원형배일		계(A+B)	비 고
			생산량(A)	가동율	생산량(B)	가동 율		
	'15	상반기						
		하반기						
		계						
	'16	상반기						
		하반기						
		계						
	'17	상반기						
		하반기						
		계						
	'18	상반기						
		하반기						
		계						
	'19	상반기						
		하반기						
		계						
	'20	상반기						
		하반기						
		계						
합 계								

※ 소포장조사료 생산량과 원형배일 생산량이 이중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

위 임 장

금 액	일금 원정(₩)		
수임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p style="text-align: center;">상기 금액을 2019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기계·장비)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임 자 경영체(업체)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1.2em;">○○시장·○○군수 귀하</p>			

세부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			세목	기타민간 융자금			
내역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용자)			예산 (백만원)	113,680			
사업목적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사업 주요내용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방역·방제 시설 설치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축산농가 및 법인							
지원한도	축종별로 다름							
재원구성(%)	국고		지방비		용자	8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262,285	278,136	235,530	223,350			
	국 고	28,257	16,244	9,744	-			
	용 자	83,271	108,265	113,680	113,680			
	이차보전	122,500	122,500	65,000	65,000			
자부담	28,257	31,127	47,106	44,67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성구 이종화		044-201-2336 044-201-2337		
자치단체		축산관련부서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 ①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내인 신규 농업법인 포함) 지원 가능
(관련 조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6] ②-③)
 -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
 - * 경력·졸업 확인 : 근무 농장 및 고등·대학교에서 경력 확인서 및 졸업 증명서

2. 지원자격 및 요건

<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① 1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 ② 1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할 경우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사' 항목) 우선 지원 ③ 그래도 순위가 동일할 경우 2순위에서 결정
가)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유기축산물 인증을 득한 경우 나)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다)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려는 경우 * 관련조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12조 및 「건축법」 제11조 라) 동물복지형 축사(산란계에 한함)를 설치하는 경우 * 산란계 케이지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 완료('18.7.10일) 마)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이 아닌 오리사를 설치하는 경우 바) 당해년도(2년차 사업 포함)에 방역·방제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악취저감 시설로 50백만원 이상을 지원받거나 총 지원액의 50% 이상을 지원받는 경우	

* 가축분뇨처리지원, CCTV등 방역인프라(CCTV, 방역시설, 말벌퇴치장비)를 포함

사)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완료하였거나, 단순 기자재 구입·설치 등으로 인허가가 필요없어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

* 시·군·구에서 소송, 민원 등으로 인해 당해 년도에 자금집행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 또는 2년차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검토

아) 스마트 축사로 신축·개보수 하면서 동시에 ICT 융복합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전문형에 한함)

- 다만, 단일 장비만 도입하여 단순히 활용하는 경우는 2순위로 분류(일반형)하고, 축사 내·외부의 환경을 센싱·모니터링, 사료 자동 급이·음수기, 약취측정·저감장비 등을 동시에 도입(전문형)하여 생산성 향상과 약취저감 및 환경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시·군에서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자)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

차)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종계·종오리 농가간 거리는 10km이내), 철새도래지* 3km 이내, 농업진흥구역 내 또는 주요 축산시설 3km 이내에 있는 가금농가가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 「축산법」 하위 규정을 개정할 예정

카)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에 선정된 농가

2순위

- 1순위 선정 후 예산(지원액)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2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많은 경우 우선 선정
- 2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하면 지자체에서 조기에 자금 집행을 완료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우선 선정

가)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

* 관련조항 : 「건축법」 제23조,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나) ICT 융복합축사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ICT 융복합축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1순위가 아닌 일반형을 말함)

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거나 환경친화축산농장인 경우

라)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마)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우수 종축업체로 인증받은 경우

<p>바) 가축개량사업에 참여 중인 한우·젓소 육종농가 및 전문 종축장</p> <p>사) 석면슬레이트 축사, 창고 등을 철거하고 현대화하는 경우</p> <p>아) 공동자원화시설에 위탁처리하는 농가</p> <p>자) 돈사내 슬러리 제거사업에 참여한(선정된) 농가</p> <p>차) 한센인 정착촌</p> <p>카) 과거 2년간('17.1월~'18.12월) 사육제한 명령(「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에 참여한 농가</p> <p>타) 폭염, 혹한 등 이상기온 대비 시설·장비·자재를 설치할 경우</p>

후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순위라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농가는 후순위로 선정 ○ 후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적은 경우 우선 선정 ○ 후순위 해당 항목 개소수가 동일할 경우, 지자체에서 자금집행 완료 시기를 판단하여 우선 선정
<p>가) 과거 3년간('16.1.1일 이후) AI·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p> <p>나) 새로 부지를 확보(변경)해야 하는 경우(신규, 이전, 증축 등)</p> <p style="padding-left: 20px;">* 다만, 부지를 확보하고 인허가를 완료한 경우는 제외</p> <p>다) 가금 밀집지역(16개 지역)에서 축산개편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 내에 가금농가</p> <p>라)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는 농가(닭·계란·오리·육우·양봉·사슴에 한함)</p> <p style="padding-left: 20px;">* '18.1~12월 동안 납입 실적(닭·계란은 '16~'18년)</p>	

일괄 예산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와 별도로 광역 악취저감사업,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가 지역단위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하여 일괄 예산배정 * 다만, 예산 배정시 해당 지자체의 개별 농가에 대한 예산은 일정 부분 축소하고, 사업이 취소될 경우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
-----------------	----------------------------------------------------------------------------------------------------------------------------------------------------------------------------------------------------------------------

< 지원 제외 >

- 가금농가 간 거리 500m 이내 및 철새도래지 3km 이내, 농업진흥구역 내, 주요 축산시설 3km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가금 축사를 건축¹⁾하는 경우
- 종계·종오리 농가간 거리 10km이내에 신규로 또는 이전하여 종계·종오리 축사를 건축²⁾하는 경우

* 1), 2) : 「축산법」에 따라 신규로 축산업 허가를 받는 경우를 말함(증축 등 축산법에 적합한 경우 지원 가능)

-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로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 과거 3년간('16.1.1일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가축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또는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관(사)의 검사·예찰을 거부·방해·회피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 * 다만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사유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소독·방역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인증의 취소 등)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농장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농가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제4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가 「동물보호법」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4항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축산물 위생관리법」, 「약사법」, 「사료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다음 년도로 지원액의 30% 이상 이월하거나 대출마감일 연장한 경우

- 「약취방지법」 제11조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이나 제13조에 따라 사용중지·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제27조제1호, 제28조,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 “CCTV 등 방역인프라” 사업에 따른 CCTV를 설치하지 않으려는 가금농가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 사업 완료 시까지 적법화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라 부여받은 이행 기간까지 자금 회수를 유예할 수 있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미신고 승마장·승마시설
- 과거 3년간('16~'18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년도 7.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 * 「산란계 환경개선 축사시설 지원사업」의 경우 최종 70% 이상 불용한 경우
- 「축산법」 제33조의2에 따라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미이수자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후관리 기간 및 용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FTA농어업법」 제5조)

◆ **농가 및 지자체 확인 사항** :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함

* 지자체는 후순위 및 지원제외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검증 과정을 거쳐야 함

3. 지원대상

- 축사신축, 개보수, 방역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지원하되, 이 사업에 미기재된 사항이라도 축사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 축사 :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 축사는 완전 건축물 축사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비닐하우스 형태 가설건축물의 개축, 개보수, 시설 교체는 농장전체가 「축산법」의 허가·등록 기준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소독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 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착유 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 (양돈) 쿨링패드, 자동급이기 및 급이시스템 구축, 분만틀, 스톨, 슬러리 시스템, 인공수정 센터의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 (가금) 발육기, 발생기, 이란기, 콘트롤기, 세척기, 부화중지란 처리기
 - (소) 로봇착유시설, 자동포유기, 발정탐지기, 송아지 우리, 소몰이 장치, 착유실 매트, 사료 자동 급여기, 소 체중저울, 자동목걸이, 레일을 포함한 자동화된 사료배합기
 - (양봉) 고정 건축물 형태의 양봉사와 벌통(소초광만 지원 불가)
 - (말) 육성·조련 마사시설 등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 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 (가금) 계란·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 세척기·선별기, 부적합란 처리기기, 포장기

(양돈) 자동 인큐베이터, (양봉) 양봉산물 저장고·창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꿀 저장용기 운반용 트레일러·리프트, (말) 자동보행기 등

- 폭염·혹한 대비 시설·장비·자재 : 선풍기, 환기·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스프링클러 및 부속장비, 차광막(지붕·벽 단열재, 차열페인트), 열풍기 등
- 방역·방제시설 :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 시설, 출입통제시설(CCTV 등), 울타리, 해충구제램프, 말벌 퇴치장비(트랩 등), 새 그물망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 * 축사 전실을 축사에 부속되어 설치하는 경우 축사시설로 분류
- 축산물품 보관시설 : 깔짚저장고(창고), 물품저장고(창고), 사무실 등
 - * 농장 내 가옥 등 생산과 무관한 시설에는 지원불가
- 가축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과 관련된 지원내용과 자금용도(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착유 세척수 처리 시설 등 포함)
 - 악취저감시설 : 악취를 포집하거나, 미생물·훈증·미량화학물질 활용 등을 통해 악취를 소거하는 고정시설(ICT악취측정기 등 포함)
- 기타시설 : 출하분류기, 폐사축 처리시설(냉동고 포함), 사료배합기 등 기타 가축생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 가축분뇨 저장조 등에서 농가 및 근무자의 질식사고 예방 장비 : 환기장치, 가스농도 측정기, 공기 호흡기, 송기 마스크 등
 - * 축사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여부판단
- 경관개선시설 : 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 시설로 축사 주변 나무식재(밀원수 포함),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 * 경관개선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없고, 축사 신개축,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설치와 병행하는 경우 지원
-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 태양광·열(건축물에 설치), 지열, 지중열 등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음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 중·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 용자 80%, 자부담 20%
 -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이차보전이 남는 경우 중·소규모 농가에게 지원이 가능
 - * 중·소규모는 회계와 관계없이 해당 규모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함
- 용자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농가 분류 기준) '14.12.31일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형태 판단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 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 축산업 허가·등록제가 미도입된 기타가축은 축산업 등록과 무관하게 판단
- (사업기간) 1년
 - 부지 확보(변경)가 필요한 축사 신축·이전·증축 또는 지원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2년 사업으로 추진(1년차 50%, 2년차 50% 지원)
 - * 다만, 시·군에서는 부지확보 및 인허가를 이미 완료하는 등 당해 년도에 사업완료 및 자금집행이 가능하다는 판단하는 경우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의무준수사항 >

- 지원받는 해당 축사의 산란계 케이지는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기준을 준수하여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을 설치
 - (사육밀도) 0.05m²/마리 → 0.075, (단수) 9단 이하, (케이지 사이 복도) 폭 1.2m 이상, 3~5단마다 고정식 복도 설치 등
 - 그 외 축산업(축종)은 향후 「축산법」 개정 내용,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영할 계획
-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소독시설을 설치·구비
 - (방역시설) 사람·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 * 농장출입구에 사람·차량에 대한 소독시설(차량소독조) 설치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

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축사의 신축·재축·증축으로 지원받거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설치하고 사후관리기간까지 매일 가동하며, 악취 기준 초과시 악취를 저감해야 함(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에 한함)
 - 다만, 사업 대상자 선정 전에 악취민원 없었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축산환경관리원의 악취저감 컨설팅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수해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양돈농가는 전산경영기록부 유지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 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지자체 확인 사항 : 「축산법」의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소독시설 설치 여부

- ① 지원 전에 기준 준수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
- ② 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사업 계획에 포함하도록 지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③ 사업 완료 후, 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축종별 수급동향, 사육특성, 축사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 등 조정 가능
-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다음 사업의 경우 면적상한 미적용

- ① 기존 원종축장의 확대 또는 종축장 간 계약 등을 통하여 '전문 종축장 체계화' (원종축장+종축장)를 하려는 경우
-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되어 초지 및 산지를 활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경우
-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축산 시범단지사업」에 선정된 사업자가 조성한 부지 내에 시설을 조성하여 입주하려는 경우
- ④ 광역 악취저감사업,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만, 지자체 단위 사업이라도 개별농가별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면적 상한을 적용)

< 지원액 산정 기준 >

- (농가별 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 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
 - 단, 다음 표에 따른 지원형태별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 이전년도 지원된 사후관리 대상 농가가 재신청하여 추가 지원받는 경우, 농가별 상한액에서 기지원액을 감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사육밀도 등의 기준을 준수)을 설치시 지원단가 및 상한액의 10%까지 상향 지원 가능
 - * 지원단가 상향(예시) : 산란계 720천원/㎡ → 792, 육계 360천원/㎡ → 396
 - * 상한액 상향(예시) : 산란계 3,600백만원 → 3,960, 육계 1,800백만원 → 1,980
- 지원형태별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면적기준) FTA기금 사업대상자는 대상면적 산정 시 기존 보유 축사면적을 포함하여 대상면적 이내에서 지원
 - 이차보전 사업대상자는 기존 보유 축사면적과 관계없이 추가로 지원 가능하나, 최대상한액 이내에서 지원
 - * FTA기금 사업대상자가 이차보전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 보유면적과 관계없이 이차보전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

구 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FTA기금(중·소규모)		이차보전(대규모)		
		지원 대상 면적(㎡, 이상~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지원 대상 면적(㎡, 초과~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한(육)우	260천원/㎡	110~1,920	500백만원	1,920~4,800	1,248백만원	
양돈 (종돈,인공수정 포함)	770천원/㎡	265~3,200	2,464백만원	3,200~8,000	6,160백만원	
양 계	육계 (토종닭 포함)	360천원/㎡	460~5,000	1,800백만원	5,000~12,500	4,480백만원
	종계 (토종종계 포함)	450천원/㎡	915~8,250	3,712백만원	8,250~16,500	3,712백만원
	부화장 (토종계 포함)	1,500천원/㎡	100~900 (16~150)	1,350백만원 (225백만원)	900~1,800 (150~300)	2,700백만원 (450백만원)
	산란계 (산란중추 포함)	720천원/㎡	420~5,000	3,600백만원	5,000~12,500	9,000백만원

구 분	측사 면적당 지원단가	FTA기금(중·소규모)		이차보전(대규모)		
		지원 대상 면적 (㎡, 이상~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지원 대상 면적 (㎡, 초과~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오리	육용오리	360천원/㎡	820~7,000	2,520백만원	7,000~14,000	5,040백만원
	종오리	450천원/㎡	555~4,995	2,248백만원	4,995~9,990	2,400백만원
	오리 부화장	1,500천원/㎡	33~300	450백만원	300~750	1,125백만원
낙농	260천원/㎡	213~2,000	520백만원	2,000~5,000	1,300백만원	
양봉	833천원/군	30~300군	250백만원	300~600군	500백만원	
사슴 (엘크)	185천원/㎡	150~1,350 (200~1,840)	250백만원	1,350~2,700 (1,840~3,680)	500백만원	
양과 흑염소	218천원/㎡	165~1,485	324백만원	1,485~2,970	560백만원	
말	600천원/㎡	50~260	156백만원	260~768	460백만원	
메추리	720천원/㎡	100~3,000	2,160백만원	3,000~7,500	5,400백만원	
토끼	180천원/㎡	70~1,050	189백만원	1,050~2,625	473백만원	

< 공통 사항 >

- ① 총 사업액의 80% 지원액 기준임
- ② 가금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형태를 말함)에 대한 최대상한액은 시·군·구 판단에 따라 상한 산정시 지원단가의 50% 내에서 감하여 적용 가능
- ③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은 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과 별도로 추가 지원

< 축종별 특이 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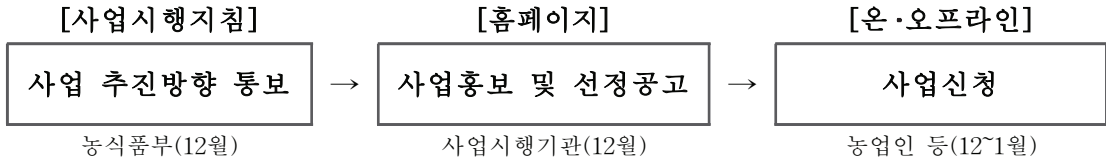
(한우·낙농)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는 규모와 관계없이 6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부담)

(가금) 축사의 차단방역 시설·장비의 보완이 필요한 가금 사육농가에는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 방역 시설·장비 지원 가능

(양봉) 이동형 카라반은 규모와 관계없이 2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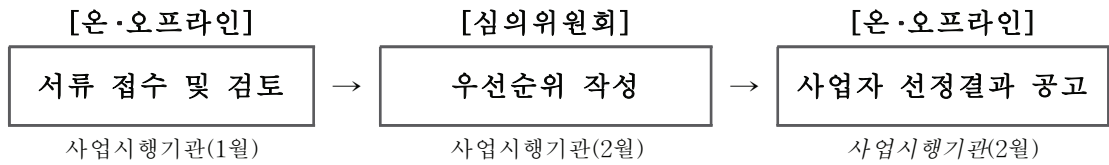
- * 이동형 카라반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양봉협회 등 양봉관련 단체로부터 양봉 기자재 현대화 농가로서 추천을 받은 중·소규모 농가여야 하며, 해당 관련 서류를 사업 신청 시 첨부
- * 해당농가를 추천한 생산자 단체는 지원농가 리스트 목록을 사후관리기간 내 유지하고, 1년에 1회 이상 정상이용 여부와 소재지를 시·군·구에 보고
- * 시·군·구는 생산자 단체로부터 보고가 미도달하는 경우 지원 자금 회수
- * 토종별 농가에게는 개량형 별통을 지원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
- 농가는 시·군·구(축산담당부서)에 <서식 1>에 따라 사업 신청(12~1월)
 - 전문 종축장은 <서식 1-2>에 따라 사업신청
 - 시·군·구는 <별표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별표 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
 - * 가금 계열농가는 계열주체를 통한 사업신청 가능
- 시·군·구는 신청농가에 사업 의무사항(방역시설 구비 등)을 안내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에 해당 사항을 반영토록 할 것
 - *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소독·방역 시설 설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 또한, 사업 수행 불가에 따른 중도 포기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법, 농지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 사항을 검토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
 - 농식품사업이 용자사업 등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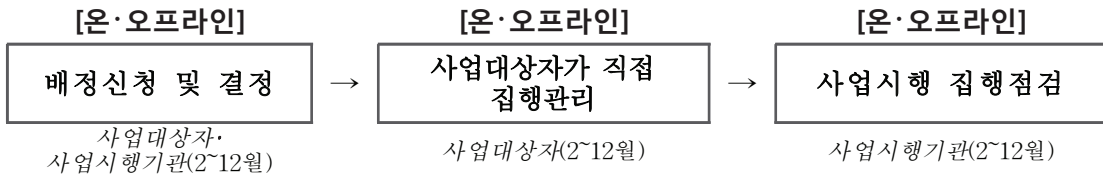


- 시·군·구는 사업검토 및 심의 후 사업 대상자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시·도에 사업 선정 내역 보고(1월)
 - 사업대상자 선정 전에 과거 악취민원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반영
- 시·도는 예산 현황,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시·군·구가 보고한 내역 중에서 사업자 확정(1월)
 -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사업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물량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 각 시·도는 사업자 확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서식 4>에 따라 보고(1월말까지)
- 시·군·구는 사업자가 확정되는 대로 사후관리전산관리시스템에 해당사항을 입력하여 사후관리조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시·도 및 시·군·구는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공사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인허가 등)를 추진토록 적극 조치
 - 교부 결정 확정(2월) 후 신속히 착공이 가능하도록 농가에 안내하고,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설치 대상농가가 있는 경우 축산환경관리원 악취관리 지원센터(042-822-9875)에 컨설팅을 의뢰
-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우수한 축산 기자재가 공급되도록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검증 기자재, 또는 농협경제지주 계통구매 등록 품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 농법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농식품부는 당해연도 사업예산이 배정되는대로 지체없이 사업지원계획 또는 사업선정 내역에 따라 시·도별 예산 배정(2월)
- 각 지자체는 예산 배정 및 사업대상자의 교부 신청에 따라 교부 여부를 지체 없이 판단하고 교부 결정·통지
 - 각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확인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보완 지시
 - * 농가가 건축, 토목, 전기 등 축사관련 신·개축 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원가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설치,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적 공사 내역과 세부 견적을 확보하여야 함
 - 법령 및 사업목적 적합여부,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에 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없이 교부 결정 추진
 - * 교부결정 이후 농가가 3개월 이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가에게 착공을 위한 조치계획을 징구할 수 있으며, 농가가 6개월 이내에 불가피한 사유(민원 발생, 인허가 절차 보완 중)없이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군·구는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사업취소가 가능
- 지자체는 사업자가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토록 관리·확인

- 지자체는 사업자가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확인
 -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 * 소규모 건축물, 축사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 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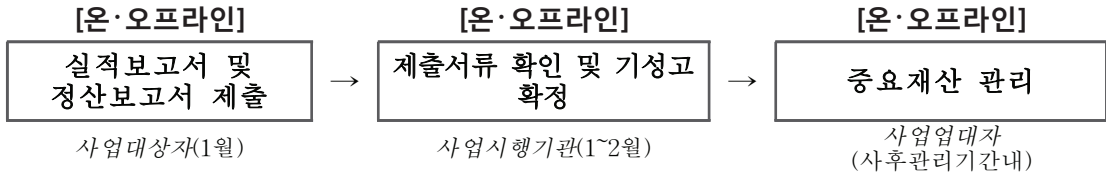
< 사업 대상자 >

- 각 사업대상자는 사업확정 통보가 도달하는대로 지체없이 교부신청(1월)
 - * 지자체의 교부 결정 없이 착공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사업 취소 사유이므로 각 농가가 철차 준수토록 유의
 - 각 사업대상자는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검토하여 교부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출
 - * 건축, 토목, 전기 등 축사관련 신·개축 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원가내역을 제출이 필요하며, 시설설치,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적 공사 내역과 세부 견적을 확보하여 공사내역을 명확히 구체화
- 사업자는 교부 결정 통보 이후 지체없이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교부 결정에 따라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 신청 이전 및 사업 확정 이전 단계에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완료토록 권장
 - * 교부 결정 이후 6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없이 미착공 시 사업 취소사유이므로 기한 내 신속히 공사 진행되도록 할 것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이 불가하며,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

- 사업자는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확인
-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지원액 확정
- 용자는 사업시행기관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집행
 - 사업시행기관(시·군협조)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 실행
-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후관리기간

사업명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축사시설현대화	○ 기계·장비	5년	시설·기계·장비 양도 등
	○ 건축물	15년	
	○ 가설건축물(축사 제외)	5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부정사용으로 확인 된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지원 용자금을 회수 조치

Ⅲ /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시 추진실적보고서(증빙사진을 첨부)를 제출

2. 평가

- 사업시행기관은 지원자금의 교부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고 성과우수자에 대해서는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

<서식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 한(육)우, 돼지에 한해 작성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또는 한우사업단명		계약일시	년 월 일 ~ 현재	
2. 경영현황 (현재)	○ 축 종 : 한(육)우, 양돈, 양계(산란, 육계, 토종닭, 육용종계, 토종종계), 부화장(육용종계용, 토종종계용), 오리(육용오리, 종오리), 낙농(젖소), 양(흑염소 등), 꿀벌, 사슴 등으로 구분				
	○ 사육형태 : 일관(), 비육(), 번식(), 기타()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번식(모돈, 번식우, 착유 등)	육성축	자 축	
	마리(군)	마리	마리	마리	
주) 현 사육기준이며 축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연도별 출하실적> : 낙농의 경우 연 우유생산량(톤)					
‘15		‘16		‘17	
마리		마리		마리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개축(), 개보수(), 시설교체()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규대비 : 뒷면에 기재				
	※ 첨부서류 : ①축산업 허가(등록)증(모든농가) ②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신축농가는 필수 제출) ③토지이용 계획 확인원(모든농가) ④신용조사서(모든농가) ⑤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⑥우선 순위, 후순위 및 지원제외 등에 관한 증빙자료				
상기와 같이 20 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계획	사 업 비			
		'19년 (※ 2년차 사업인 경우 '20년까지 구분하여 작성)			
		보조	용자	자담	계
축사					
	소계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소계				
방역시설					
	소계				
	소계				
합 계					

<현재 축산업허가(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규대비>

현 행 면 적 (축산업 허가(등록)면적, 사육두수)	공사계획면적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_____ m ² (_____ 마리)	_____ m ² (_____ 마리)	_____ m ² (_____ 마리)

<지원 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용자)	_____ 천원
정부지원 신청액(이차보전)	_____ 천원
면적당 신청액 = (정부지원액) / 공사계획면적(m ²)	_____ 천원/m ²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 한도액과 가축사육시설 면적(m²)당 최대 지원 한도액을 범위내에서 신청

<서식 1-2>

종축장(종돈, 종계, 종오리장) 전문화 사업계획서

1. 사업대상자 현황

경영체명			
대표자	사업자 번호		
	축산업허가번호		
소재지	(주사업장)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팩스)

2. 일반현황

○ 사업주체 사육현황

소재지	종 축(GP)			원종축(우) (GGP, GPS)	기타	시 설	
	성축	육성축	자축			설치년도	축사형태

* 사육현황은 최근 기준으로 작성

○ 참여(계열, 계약, 위탁 등)농가 사육현황

경영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사육규모		참여형태	전문 인력	축산업 허가번호
			종축	기타			

* 사육현황은 최근 기준으로 작성

○ (종돈장의 경우) AI센터 활용(자체운영 포함)

센터명	소재지	용돈규모	공급량	비고

○ 주체 및 참여농가(GP, PS) 사업현황

경영체명	검정실적			분양실적(종축)			분양실적(모돈/실용축)		
	'16	'17	'18	'16	'17	'18	'16	'17	'18

- * 분양실적(종축)은 경영주체가 GP 및 PS를 분양한 실적
- * 분양실적(모돈/실용축)은 참여농가가 모돈 및 실용축을 분양한 실적

○ (종돈장의 경우) 주체 및 참여농가 질병관리 등

경영체명	네트워크참여	우수종돈장 선정 년도	방역 위생수준	친환경농장 지정

3.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종돈(종계, 종오리 등) 개량 방향, 질병 청정화 계획, 종돈공급 등

나. 사업체계도

- (종돈장의 경우) GGP, GP(참여농가), AI 간의 모식도 등
- (종계장, 종오리장의 경우) GPS, PS(참여농가) 간의 모식도 등

다. 사업추진계획

① 전문종축장 운영방법 등

- 참여종축장 지분참여 및 역할분담 내용
 - * 참여종축장과의 계약관계 유지 방법 또는 페널티 등 포함

- GGP(GPS)와 GP(PS)간 운영, 공급 계획
- 전문인력 보유 및 확보계획(GGP, GPS)
- (중도장의 경우) 능력검정 및 중도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 참여계획

② 시설투자계획

- 대상자별 시설개선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시설				
		용자	이차보전	자담	계
축사					
내부시설					
계					

* 년차별로 추진시는 사업비를 구분하여 표시

③ 운영자금 활용계획

④ 담보제공

⑤ 종축 개량 및 청정화 계획

* 개량의 방법(선발, 검정, 기타형질 개량, 국내외 개량컨설팅, 등 구체화)

⑥ 시설개선후 운영계획

⑦ 사업손익전망

⑧ 자금상환계획

<별첨>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

<서식 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수요신청서

(시·도)

(담당자 : , ☎)

단위 : 호, 백만원

구 분	신청 합계		세부 내역			
	농가수	요청액	용자(FTA기금)		용자(이차보전)	
			농가수	요청액	농가수	요청액
한(육)우						
양돈						
양계						
오리						
낙농						
양봉						
사슴						
양·흑염소						
말						
메추리						
토끼						
합 계						

* 축종별로 작성하고, **요청액은 정부 지원액만 작성**

<서식 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이행점검 보고(○○○○년)

(시·군·구 명) 지원 개요

연도	선정농가수* (정산농가수)	지원액(천원) (선정총액)	지원액 (정산총액)**
2009	10(9)	100,000	90,000
2010	9(9)	90,000	80,000
2011	11(10)		
2012	13(11)		
2013	숫자는 예시		
2014			
2015			
2016			
2017			
합계			

* 선정농가 수는 연내 선정된 농가 총수를 기재하고, 괄호 안 정산농가 수로는 정산 완료 및 사업완료된 농가 수 기재(용자 + 보조, 이차보전 모두 포함한 지원액)

** 용자+보조의 경우 정산 후 지원총액, 이차보전의 경우 사업완료된 농가지원액을 포함시키고, 정산 및 사업 미완료된 연도의 경우 작성 시점 수치로 기재

점검 대상 농가 선정 방법

- (선정방법)
- 관심대상 농가 현황(방역시설 미설치·운영 미흡 농가, 지도 점검 필요 농가)

(연도) (상·하반기) 점검 대상 농가 개요

- 선정 대상 농가 내역

대상 농가 명	주소	선정년도	사업비(지원액)	점검실시일

농가별 점검결과 (농가별 반쪽~1쪽 수준으로 기재하고, 필요 시 사진등 첨부)

- (방역·소독시설 구비 여부 및 운영상황)
- (시설 유지상황, 사후관리기간 내 양도 여부, 경영기록부 작성 등 제 의무사항 이행 여부)
- (결론 및 조치결과)

*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 시 기재사항 등 추가 가능

<서식 4>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자 선정내역 보고서식

- * ① ‘사업자 선정 내역 보고’ 서식, ② 담보승인 ‘사전신청 서식’ ③ 지자체 ‘관리기록부 서식’으로 통합 이용할 것
- * 별도 하달한 엑셀 서식을 이용할 것

신청단위	시·도	시·군·구	행정주	농장명	축종*	사업내역(천원)				대상면적()			공사분류				공사분류별 금액				2개년 사업면적(㎡·x)	신청액	용자액 이상 신청 사유													
						축사면적	운차	이차포진	자담	축사대상	축사제외	축사증물인	축사포함	축사신축	축사개보수	축사개보수(종물)	시설장비	축사신축	축사개보수	축사개보수(종물)				시설장비												

* 축종분류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침에 따른 분류에 따라 기재
 - 한(육)우, 양돈, 산란계, 육계, 육용종계, 부화장, 종오리, 육용오리, 종오리, 오리부화장, 낙농, 꿀벌, 사슴(엘크), 양(흑염소)

<별표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 및 제 22 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 수집 항목 : 대표자명(법인명) · 농장명 · 연락처(주택, 휴대전화) · 주소 (집주소, 농장주소) ·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5년까지 보유 · 활용

4. 제공 받는자

-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농협경제지주(축산건설팀부)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 대출취급기관 : 농협경제지주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본인은 ○○○○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을 설치한다.
2.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농장 정문 입구)를 설치한다.
3. 휴대용 방역기를 구비한다.
4.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5.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기계·장비 : 5년, 건축물 : 15년, 가설건축물 : 5년)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7. 농장경영기록부를 작성한다.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주소 :

사업자 성명 :

<별표 3>

자조금 납입확인서(예시)

- ① 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서식으로 대체
- ② 시·도(시·군·구)는 도축장으로부터 해당농가의 출하 도축마리수 및 납입율 등 확인

1. 사업신청자(대표자 성명) :
2. 주소(전화번호) :
3. 축산업 허가(등록)증 고유번호 :
4. 납입내역

(단위 : 원)

기 간	도축마리수	납부할 금액(A)	실제 납부한 금액(B)
		'18.1~12월 (닭·계란은 '16~'18)	

5. 납입율(B/A) : %

6. 확인자

확인주체	확인사항	직함	성명	서명 또는 인
자조금 관리위원회	'18년(닭·계란은 '16~'18년) 동안 해당농가의 출하 도축마리수 및 자조금 납부금액			
시·도 (시·군·구)	'18년(닭·계란은 '16~'18년) 동안 도축장으로부터 해당농가의 출하 도축마리수 및 납입율 등 확인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기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세부사업명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축산물직거래판매장설치지원	예산 (백만원)	3,000 (보조·용자 각 1,500)					
사업목적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등 축산물직거래판매장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 식육포장처리업체							
지원한도	개소당 6억원(보조 3, 용자 3) 이내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	용자	30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20,000	13,300	10,000	5,000			
	국 고	6,000	4,000	3,000	1,500			
	용 자	6,000	4,000	3,000	1,500			
	자부담	8,000	5,300	4,000	2,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축산경영과 축산관련과		조재성		044-201-2332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1.15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S)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 조합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의해 설립·인가된 조합(지역특화)에 한함), 식육포장처리업체
 - * 지역조합은 신규 직거래판매장에 한하며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는 축산물프라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도축장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직영 직거래판매장을 설치할 경우에 한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1년이상의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
 - 단, 설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업성검토(별지 제3호서식)를 거쳐 확인
- 도축장, 협동조합은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하여야 함
 - * 우선순위 : 법인 및 조합 등의 사육 및 출하규모 > 법인 경영실적 및 자본규모 > 농촌관광, 6차 산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또는 지역농산물 활용 여부 > HACCP 인증 및 친환경인증 여부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5조제9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부당 사용 등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 *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3. 지원대상

-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음식점 및 식육판매점포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식육판매점포(점업 음식점 포함) 건축, 기존건물의 매입(대지 구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외로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에 한함)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기타 부대시설 및 부대비용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 보조 30%, 융자 30%(금리 2~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
 - * 변동금리 선택가능(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1) 지원한도 : 개소당 6억원(보조 3, 융자 3) 이내

2) 지원규모

○ 연 20개소(예산규모에 따름)

- 지자체별 사육규모를 고려하여 지역별 지원 개소수 배분

3) 자금용도 세부항목별 기준

○ 직거래 판매장 시설 기준

- 식육판매 점포면적 33.0㎡(10평형)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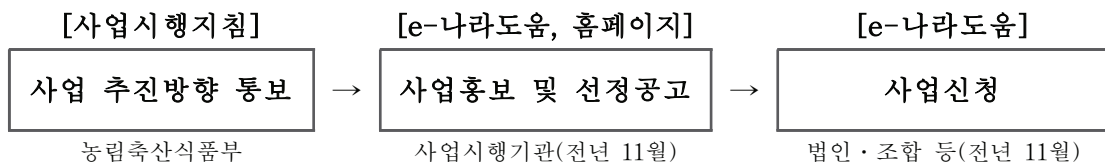
- 식육판매 진열장·냉장숙성실·냉동실·냉장육절기, 소 부산물 추출(사골 액기스 등)시설 설치

- 기타 시설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 10]의 “7.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

- 겸업 음식점의 경우 면적은 132.2㎡(40평형)이상(식육판매장소 포함)으로 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

II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시·도, 시·군·구)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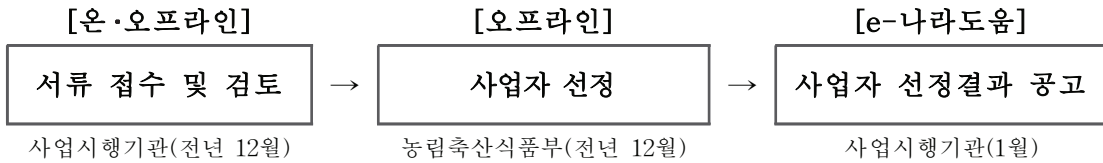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11.15일 까지)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

*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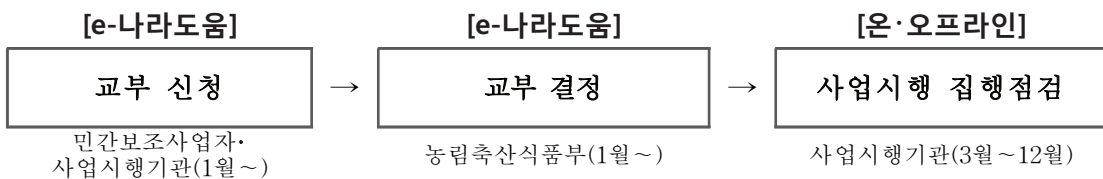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사업부지 확보여부, 법인 내부의견 합치여부,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 면밀하게 사업성 검토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사업내용 확인(현지실사 보고서) 및 심의
 - 시·군·구의 신청서류(11.30일 까지)를 심의 후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 순위표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신청(12.15일 까지)
 - 관련 증빙서류는 시·군·구에서 보관(농림축산식품부에 사본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별 우선순위와 지역별 안배를 감안하여 대상자를 선정·통보(12.30일 까지)
 - * 사업대상자가 사업규모보다 적을 시 사업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경우 사업목적과 지원 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 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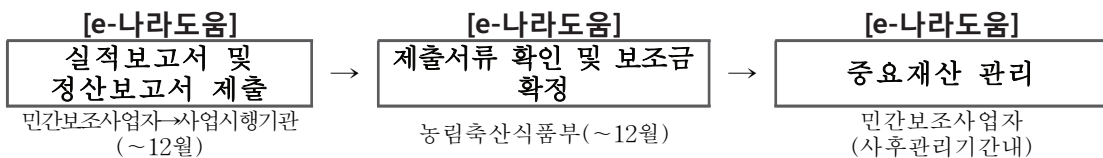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
 -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부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용자는 사업시행기관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집행
 - 사업시행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 실행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집행현장 점검 및 지도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 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 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계획서

1. 현 황

시 설 규 모 (m ²)		건물(m ²)	대지(m ²)				계
	소유						
	임차						
	계						
사 육 현 황 (마리)		한우	육우				계
	소유						
	위탁						
	계						
시 설 현 황	공동	판매시설	정육식당	운반시설	주차장	기 타	
	시설	m ²	m ²		m ²		
기 타 사 황	* 사업예정지 :						

2. 사업계획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모 (m ²)	사 업 비					지방비	자담
		합계	정부지원(축산발전기금)			계		
			계	보조	용자			
계								
건 물								
판매시설								
정육식당								
기 타 시설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판매시설				
정육식당				
기타시설				

* “ ←————→ ”로 표시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 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천원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참여농가수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축산물직거래 활성화지원	사 업 비 (백만원)					
	사업규모	(㎡)	합계	정부지원(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담
	사업 예정지			계	보조	대출		

2. 사업검토

	구 분	확 인	검 토 의 견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사업능력	○ 운영능력 적정여부		
	○ 사육 규모		
	○ 사육 농가수		
	○ 연간 출하규모		
운영여건	○ 사업예정지 점용허가 또는 소유 여부		
운영방안	○ 유통마진 최소화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 의지		
기타	○ 법인 내부의견 합치 여부		
	○ 사업수행 의지 등		

* 도축장 및 협동조합은 MOU 체결한 생산자단체의 사육·출하규모, 농가수 확인

3. 종합의견

○

년 월 일

세부사업명	가축분뇨처리지원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지원			예산 (백만원)	1,200			
사업목적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 기반 구축							
사업 주요내용	○ 퇴비 생산 시설 개보수 및 관리장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축산업자의 책무),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4조(농어업 투입재 산업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및 제38조(친환경농어업 등의 촉진)							
지원자격 및 요건	○ 정부지원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 광역친환경단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축산분뇨처리 등 관련 사업을 3년내 지원받는 업체 배제							
지원한도	○ 개소당 지원한도: 300백만원/개소							
재원구성(%)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30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8,400	8,400	7,800	6,000			
	국 고	1,680	1,680	1,560	1,200			
	융 자	2,520	2,520	2,340	1,800			
	지방비	1,680	1,680	1,560	1,200			
자부담	2,520	2,520	2,340	1,8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김규욱 박성재		044-201-1892 044-201-1893		
신청시기	2018년 1월 중			사업시행기관		시·군·구		
관련자료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 등록된 법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정부지원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지원 미참여 업체도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가능

- 광역친환경단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및 축산분뇨처리 등 관련 사업을 최근 3년내 지원받은 업체 배제

* 단, 사업신청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최근 5년내 지원받은 업체는 후 순위로 선정 검토

3.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지원대상

- 생산시설 : 발효시설(교반식, 통풍식), 축분전처리장(신축, 증·개축), 후숙창고(신축, 증·개축), 악취방지시설, 포장시설(자동 포장라인 및 상차로봇) 등 품질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된 시설

- 제품생산·관리장비 : 부숙도측정기, 수분측정기, 퇴비살포기, 휠로더, 페이지다, 농업용로우더, 굴삭기, 지게차 등 생산현장 장비로써 생산과정, 품질관리, 환경오염 저감에 사용되는 장비

* 지원 제외 : 압롤카, 압롤박스, 차량, 크레인 등 운반장비 및 이 사업의 목적과 관련 없는 시설, 장비

- 최근 3년간('15~'17) 사업실적, 필요성(주위 민원 및 환경오염 저감 등),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

4.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가축분뇨처리지원 내역사업)

- 사업규모

- 사업량 및 사업비 : 20개소 이상, 6,000백만원(국비보조 1,200, 국비용자 1,800, 지방비 1,200, 자부담 1,800)

- 지원비율(%) : 국비보조 20%, 국비용자 3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용자조건 :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연리 2.0%(3년 거치 3년 상환), 민간(개인)업체 연리 3.0%(3년 거치 3년 상환)

* 예산 여건에 따라 국비 용자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지원한도 : 300백만원/개소

구분	국비보조	국비용자	지방비	자부담
300백만원 (100%)	60 (20)	90 (30)	60 (20)	90 (30)

*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미참여업체 지원한도 100백만원

- ① 사업대상자는 개소당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필요한 개·보수시설 신청
 - 시설규모가 개소당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설치 가능
 - 시설 개체 시 한도액의 100%를 지원하고 보수의 경우는 한도액의 80%이상 지원할 수 없으며, 기존시설 철거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② 사업주관기관은 개소당 한도액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 신청에 따라 사업량(개소)증가, 규격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③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실제 설치비가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비용을 지원대상 사업비로 적용
- ④ 사업주관기관의 건축 및 토목기술직 공무원이 감독 및 공사감리 실시
 - 시설 개·보수 사업임을 감안 별도로 설계비 및 공사감리비는 사업비에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외부 전문가 의뢰 시 비용은 사업대상자가 부담
- ⑤ 사업주관기관은 제품의 종류, 사양 등에 따라 설치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등에서 제품의 가격 및 사양 정보와 기준 등을 종합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공하되 시설 및 장비는 품목별로 발효시설 3억원, 후숙시설 2억원, 악취방지시설 1억원, 포장시설 2.5억원(로봇시설 2억원)범위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달청 구매 입찰 단가 등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 초과 사용 가능
 - 품질관리를 위하여 부숙도 측정기, 수분 측정기가 없거나 내구 연한이 지난 경우 반드시 사업에 포함토록 할 것
 - 살포기, 부숙도 측정기 등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 관련 사업목적, 사업량 및 세부사업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2월)
 - *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사업 수요 업체수, 소재 업체수 등을 감안하여 정부 예산에 대하여 시도별 가내시

시·도(시·군)

- 사업신청공고는 시·도(시·군)가 '18.7월에 실시한 사업신청 공고 결과를 인정
 - 주요 신청내용 : 목적, 신청기간, 대상자 자격,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희망자 취합 및 시·도 신청은 시·군이 '18.8월 까지 시·도에 신청한 결과를 활용
- 시·군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는 시·도가 18.9월 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한 결과 활용
 - * 시·도별로 가급적 농식품부의 가내시를 준용하되 가내시 이상 신청 가능

보조사업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사업신청서(붙임 서식 1)를 작성하여 18.7월 하순까지 시·군에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추천 →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 선정방식 : 예산 범위 이내일 경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시·도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되, 초과될 경우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등의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현장 등의 방법으로 최종 선정
 - 선정기준 : 최근 3년('15~'17) 사업실적, 필요성, 자부담 능력 등 양질의 퇴비생산 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대상자를 선정
- 시·도별 예산배정
 -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서를 검토·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도에 통보

시·도(시·군)

- 우선 순위는 시·군·구에서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농정심의회를 통해 정하여 18.8월 초까지 시·도에 신청한 결과를 활용
- 사업대상자 선정은 시·군·구 추천에 따라 18.9월 초까지 시·도에서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신청한 결과를 활용
 - 선정방식 : 시·도 농정심의회를 통하여 서면·현장평가 등의 방법으로 선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자부담 능력 등)
 - 농식품부 신청 :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정해 18.9월 초까지 신청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대상자 확정 및 교부결정(19.1~2월말)

3. 세부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지원사업 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 조치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별지 제1호 서식(붙임 서식 1)에 따라 대출신청 자료를 받아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군 농정심의회를 공개 심의를 거쳐 확정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농협경제지주·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등과 협조(현장 및 심의회 참석)
- 사업시행 중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서가 제출되면 시·군·구에서는 사업변경계획을 검토하여 시·도에 변경승인요청을 하고, 시·도에서는 변경 승인을 하며,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의 포기로 보조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야하는 경우는 시·군·구에서 농정심의회를 거쳐 신청을 하고, 시·도에서는 농정심의회를 거쳐 확정
 - * 단, 연초 사업자선정 절차의 차순위자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음

보조사업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자부담 우선 집행계획 등 자금조달 계획 등 포함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를 제출

4. 사업시행

시·도(시·군)

가. 친환경퇴비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시설·장비에 대한 제품특성 및 가격 비교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제조업체별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와 기준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제공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재)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과 농촌진흥청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를 받은 제품을 우선 구입토록 함
- 사업주관기관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하며, 유찰시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설치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업대상 업체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 보험가입금액은 계약금액의 2% 이상, 보험기간은 최소 1년 이상

다. 착공·시공 및 감리

< 착공·시공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설치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토록 함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의 건축 및 토목기술직 공무원이 감독 및 감리
- 사업주관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설치업체에 대해 설치중지, 하자보수, 재설치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사업참여 제한
- 사업주관기관은 설치 등 사업이 완료되면 완료 검사 및 정산 실시

보조사업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 시행전 해당 시·군을 통해 신고 등의 필요한 절차 이행
- 사업대상자는 설치업체와 계약체결 시 사업주관기관이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계약서 작성

5.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배정 :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을 신청한 예산 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도(시·군), 대출취급기관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도는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 형편상 그 달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미 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자금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 정산 실시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용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은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되 시험가동 후 하자가 발생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고, 조치사항 미이행 시 보조금 회수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용자한도액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설치업체 등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치업체 등의 통장에 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설치업체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보조금과 용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용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으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용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용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용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용자금을 조속히 반납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축산업자 신용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
- 사업주관기관은 9.30일 현재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변경 및 자금배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 강구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5월, 11월)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해당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4조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등을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시설	2019	2028	○ 중앙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등
○ 제품관리 장비	2019	2023		

○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 2019년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보고	2019.12.31 한	시·군(도) → 도 (농식품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보고사항 * 붙임 서식 2, 3
○ 2019년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완료·정산보고	2020.2.15한		
○ 2019년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수요조사 결과 보고	2019.3월		
○ 2020년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 선정 공고	2019.7월초		
○ 2020년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 확정 및 가내시	2019.9월말		

《제 재》

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의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및 제63조의4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

7. 성과측정단계

- 1등급이상 퇴비 생산업체비율(%)
 - 생산업체의 1등급이상 가축분퇴비 및 퇴비 비율 측정
 - 1등급이상 퇴비생산업체수/전체지원업체수×100
 - 측정시기 : 12월(조사 : 농진청)

Ⅲ 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지원업체 평가 실시
 - 평가대상 : 사업대상업체
 - 평가기간 : 2019년 1월~12월
 - 평가내용 : 퇴비 공급계획 대비 실적, 품질 및 유통관리, 운영실태 등
 - 평가방법 : 농식품부 및 시·도의 연 2회 점검결과(40% 반영)와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평가결과(60% 반영)를 종합하여 상·중·하로 분류

《환 류》

- 평가결과 상위 20%업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퇴비 지원물량 10% 증량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환류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생산경력	년	품질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농업법인,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업명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사업비 (천 원)	계	정부지원(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조	융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p>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업신청과 관련된 불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p> <p>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1부</p>							

(주)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91조 관련 별표 5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현 황

시 설 및 생 산	생산 시설	발효시설	후숙창고	약취방지시설	포장시설	
		(규격)				
		(능력)				
		(설치비) 천원				
	장비	휠로더	페이로다	부속도 측정기	수분 측정기	
	대	대	대	대		
연간 생산능력 : 톤(가축분퇴비 톤, 일반퇴비 톤) - 주요 사용원료 및 비율 : (원료별 비율 적시)						
정 부 지 원 실 적	구분	단위	2015	2016	2017	2018
	물량	톤				
	금액 계	천원				
	-국 고	천원				
	-지방비	천원				
	공급단가	원/포				
	등 급	특~2등급				

2. 사업계획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계									
시설	○ ○ ○ ○								
	○ ○ ○ ○								
	○ ○ ○ ○								
장비	○ ○ ○ ○								
	○ ○ ○ ○								
	○ ○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 ”로 표시

○ 양질퇴비 생산계획

<첨부 2>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종업원수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사 업 비 (천원)			
			합계	정부지원 (축발기금)		
	계	보조		융자		
	퇴비생 산시설 현대화	<시설 계> - <장비 계> - <합 계>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m ²)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종업원수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합계	정부지원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친환경 퇴비 생산 시설 현대화	<시설 계> - - <장비 계> - - <합 계>						

2. 자부담 확보 능력

3. 사업검토

구분	검토항목	평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 생산능력 ○ 사업규모 ○ 품질정도 ○ 종업원수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전망				
입지여건	○ 생산 또는 원료조달 ○ 판매지역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시장·군수 (인)

[]년도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실적보고

<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실적 : 완료 및 정산 >

(단위 : 천원)

사 업 별		사업 자수 (개소)	사업계획		사 업 비								이월액		불용액		
					계 획				실 적(정산)								
			단 위	사업 량	국 비 보 조	국 비 용 자	지 방 비	자 담	소 계	국 비 보 조	국 비 용 자	지 방 비	자 담	계	국 비 보 조	국 비 용 자	국 비 보 조
합계	시 설																
	장 비																
	합 계																
시설																	
	소 계																
장비																	
	소 계																

【서식3】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완료, 연도말) 검정 및 정산서

1. 사업주관기관명 :
2. 작성년월일 :
3. 작성자 직·성명 :
4. 지원대상자 주소·성명 :
5. 사업비 집행명세 :

○ 총괄표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천원)				
	합계	국비보조	국비용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시설계)					
—					
—					
(장비계)					
—					
—					

○ 세부명세

세부사업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합계) (천원)	비고
합계						
(시설계)						
—						
—						
(장비계)						
—						
—						

4-3. 축산농가경영안정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세부사업명	친환경농업직불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친환경축산직불			예산 (백만원)	15,665			
사업목적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사업 주요내용	○ 신청일 현재 HACCP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인증종류별(유기, 무항생제) 직불금 지급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3조의2~제23조의8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안전축산물소득보조금(이하 "친환경축산보조금"이라 한다)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자 -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지원한도	○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 : (유기) 3천만원, (무항생제) 2천만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지정서 발급)은 보조금 지원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보조금 지급기간('16. 11. 1. ~ '17. 10. 31.) 보다 짧을 경우 지정기간 안에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만 20%를 가산함(보조금 지급 시점에 지정이 유효할 필요는 없음) * 최종 지급액 산정 시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용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17,757	17,153	17,153	15,665			
	국 고	17,757	17,153	17,153	15,66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남기현 주무관 최윤종		044-201-2351 044-201-2352 044-201-235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		과 장 권혁일 사무관 김용수 주무관 배승호		054-429-4071 054-429-4072 054-429-4079		
친환경 민간인증기관				인증담당자				
신청시기	매년 별도 공지			사업시행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관련자료	친환경축산직불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 2018년 3월 1일부터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로 신규인증을 받는 농업인 및 법인
 - *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로 인증한 농업인 및 법인
 - ** 다만, 2018년도 3월 1일 이후 갱신처리 지연에 따른 인증공백 발생으로 신규인증 처리가 된 농업인 및 법인은 2019년도 지원대상에 포함(2018년도 신규인증 건에 한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안전축산물소득보조금(이하 “친환경축산보조금”이라 한다)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자
 - * HACCP 농장인증의 경우 업종이 ‘가축사육업’이어야 한다.
-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3. 지원기준 및 지급기간 산출방법

- 지원기준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유기는 5년, 무항생제는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무항생제는 3회 지급)
- 지급기간 산출방법
 - 동일농장에서 친환경인증의 종류를 달리한 경우에도 3~5년간만 지급
 - 인증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하여 3~5년간만 지급
 - 3~5년간 친환경축산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가족이 3~5년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 다만, 가족일 경우라도 개별적으로 친환경인증 및 HACCP인증을 받고 독립 축사를 관리·운영시 각각 보조금 지급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농특회계(농특세 사업계정)
- 지원형태 : 국고 보조 100%
- 지급대상 기간 : '18. 11. 1. ~ '19. 10. 31.
 - HACCP 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지급대상 기간 동안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서, 판매내역서 등)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 다만, 근거자료에는 친환경인증 여부를 알 수 있는 문자(유기인증, 무항생제인증)나 인증도형 표시가 있어야 함
 - 토종닭의 경우 토종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농촌진흥청, 대한양계협회 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종축, 종란(계란, 오리알, 메추리알)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단가
 - 한 우 : 유기 170,000원/마리, 무항생제 65,000원/마리
 - * 육우는 한우 지급단가 보다 50% 감액 지급
 - 젓 소(우유) : 유기 50원/L, 무항생제 10원/L(우유 1ℓ 는 1.03kg임)
 - 돼 지 : 유기 16,000원/마리, 무항생제 6,000원/마리
 - 산란계(계란) : 유기 10원/개, 무항생제 1원/개
 - * 다만, 출하량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지급 할 수 있음.
 - 산식 : {(인증 마리수 × 20개 × 단가 × 개월 수) - (입증량 × 단가)} × 0.5
 - 육 계 : 유기 200원/마리, 무항생제 60원/마리
 - * 토종닭은 육계 지급단가 보다 30% 증액 지급
 - 오 리 : 유기 400원/마리, 무항생제 120원/마리
 - 오리알 : 유기 20원/개, 무항생제 2원/개
 - 메추리알 : 무항생제 4원/10개 혹은 4원/100g
 - * 다만, 출하량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지급 할 수 있음.
 - 산식 : {(인증 마리수 × 20개 × 단가 × 개월 수) - (입증량 × 단가)} × 0.5
 - 산 양 : 무항생제 4,584원/마리
 - 산양유 : 무항생제 34원/리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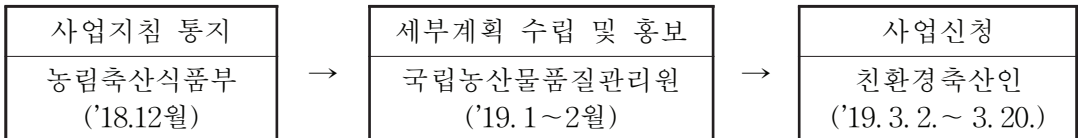
-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 : (유기) 3천만원, (무항생제) 2천만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지정서 발급)은 보조금 지원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보조금 지급기간('18. 11. 1.~'19. 10. 31.) 보다 짧을 경우 지정기간 안에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만 20%를 가산함(보조금 지급 시점에 지정이 유효할 필요는 없음)
 - * 최종 지급액 산정 시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 지급 방법
 - '18. 11. 1.부터 '19. 10. 31.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19. 12월 지급
 - * 다만, 산란계는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간에 대하여 월단위로 산출하여 지급(1개월 미만은 제외)
 - 신청기간 이후 인증종류가 변경될 경우에도 출하된 인증종류에 따라 지급 (무항생제에서 유기로 변경된 경우만 해당)
 - * 유기에서 무항생제로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무항생제 지급단가로 지급
 -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보조금 지급 시에 친환경 및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포기한 경우 또는 인증을 연장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당해연도에 종료된 경우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 보조금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은 유효하나 당해연도 기간(사업신청일로부터 지급대상기간 종료 시까지) 중에 인증 유효기간이 연속되지 못하고 인증기간의 공백이 생긴 경우에도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 단, 인증기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관리 중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으나,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기간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표시정지를 받은 기간 중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1.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의 생산·판매실적을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관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2. 사업신청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홈페이지 공고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전체 농업인에게 개별 통보 등 홍보 실시('19. 1~2월)
- 사업신청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장소재지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19. 3. 2. ~ 3.20.)
- 신청서 양식 : 별지 서식 참조
 -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신청서 접수 시 필요한 서류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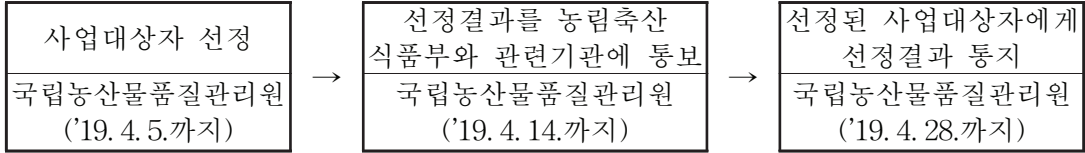
3. 사업자 선정단계

가. 사업대상자 선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신청 금액의 합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기축산농가 ②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③ 친환경인증과 HACCP인증을 모두 받은 일자가 빠른 날짜
(두가지 모두 충족 되어야 함) ④ ‘③’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일자가 같은 경우 친환경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 ⑤ ‘③’과 ‘④’가 모두 같은 경우 사육규모가 큰 농가 |
|------------------------------------------------------------------------------------------------------------------------------------------------------------------------------------------------------------------------------------------------------------------|

-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는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기자로 선정·관리
- 불용예산 발생 시 사업대기자 중에서 추가 선정
 - 사업대기자 중 위의 사업대상자 선정순위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통지양식 :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대상자(사업대기자 포함)로 선정된 인증사업자에 대해 인증 교육을 실시하고, 인증사업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 * 친환경축산직불 교육·홍보 사업(친환경인증기관협회 운영)을 활용하여 교육 추진

나. 신청내용 변경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 변경)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축사)의 매도·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 * 사업대상 축사(농장)의 경영주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함.
 - (인증기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항생제)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사업장소재지의 주소(지번)변경, 인증품목 축소, 필지수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에 기재된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 * 인증대상자,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야 함.
- 변경신청 기간 : 인증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사무소에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변경신고서 제출
 - * 변경신고서에는 ‘인증서 사본 등 승계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4. 이행점검 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민간인증기관에서는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제40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 축산업 이행여부 및 인증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
- 이행점검 요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증기관(지원·사무소 포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은 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인증기관(HACCP 및 친환경 인증기관)에 통보하여 이행점검을 요청('19. 4. 28.까지)
 - * 민간인증기관의 이행점검과는 별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선정된 사업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행점검 실시
- 이행점검 기간 : '18. 11. 1. ~ '19. 10. 31. (1년간)
- 점검내용 : 인증번호, 인증농장·축종 등 일치여부, 인증기준 준수 여부(현장조사),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
 -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별표5(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를 실시
- 점검결과 통보(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19. 11. 10.까지)
 - * 점검결과는 Agrix 시스템(인증기관에서 직접 입력)을 통해서 제출

5.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가.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농업인은 거래내역서(정산서, 세금계산서 등) 등 생산·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보조금을 신청('19. 11. 1.~11. 10.)
 - 신청서 양식 :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원 자금 신청서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대상자의 자금 신청결과 보조금의 불용이 예상될 경우 사업대기자 중에서 추가 지급대상자를 선정·통보하고, 해당 지원·사무소로 세금계산서 등 생산·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
 - ** 보조금 신청 기간 내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기관이 제출한 이행점검 결과와 자체 점검결과를 토대로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19. 11. 17.까지)
 - 인증취소, 인증기간만료, 신청포기, 사업장소재지 및 인증품목 불일치 등 부적격자 제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가에서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 자격요건 및 생산·판매실적 확인('19. 11. 13.~11. 30.)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및 생산·판매실적 확인 결과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19. 12. 8.까지)

나.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사업비 배정('19. 12. 15.까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농가에게 보조금 지급('19. 12. 15.까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비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에게 지급대상 기간 내 입증된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보조금 지급

6. 자금집행 후 관리단계(제재)

-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보조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포기한 날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인증기관은 이행점검 종료(10. 31.) 후에도 보조금 지급 시까지 지급대상자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통보
- 농업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하고, 향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7. 이행점검 등 전(全)단계 협조사항

-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

Ⅲ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안내

- 2020년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붙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농장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에 제출('20. 3. 2.~ 3. 20.)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	-----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택 전 화	
	주 소		휴 대 전 화	
			e-mail	

농장현황	농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 표 자	성 명	
	Fax			생년월일	
	설 립 일	년 월 일		전화번호	
	구성원수	명		e-mail	

친환경 최초 인증일 (인증번호)		HACCP 최초 인증일		친환경축산보조금 수급횟수	회
-------------------------	--	-----------------	--	------------------	---

축 증	인증 종류	농 장 소 재 지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예상출하량 (단위)	예상금액 (천원)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합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	-------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3조의5와 같은 영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동의하는 경우 네모(□) 안에 ✓표시)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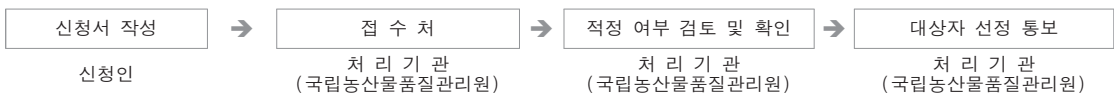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안전관리인증농장(HACCP) 인증서 사본 1부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택 전 화	
	주 소		휴 대 전 화	
			e-mail	

변경사항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일자
사 업 대 상 자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지현황	농지(축사)주소			
	인증품목			
	사육두수			

※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등 변경에 따른 신청농지 변경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	-------	--------

친환경축산보조금 신청내용(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동의하는 경우 네모(□) 안에 ✓표시)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안전관리인증농장(HACCP) 인증서 사본 1부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1부 3.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사업대상자 변경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4.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세부사업명	축산물유통 및 소비촉진제고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생산자·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예산 (백만원)	86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신뢰 확보를 통해 축산물 소비촉진 및 합리적인 소비생활 유도 ○ 도축장, 집유장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수준 향상과 사후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사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단위 조직을 갖춘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단체 등에서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 축산 시책 관련 홍보, 교육, 조사 사업 등을 수행 ○ 전국 도축장 및 집유장 대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사항을 소비자단체를 통해 평가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지원자격 및 요건	소비자기본법(제29조 제1항) 및 시행령(제23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및 등록 기준(3개 시·도 이상 지부 설치 등)에 부합하는 전국단위 소비자 관련 단체				
지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고보조 100% ○ 소비자단체협력사업 : 평균운영비 20백만원, 단체별 45~85백만원(단체별 사업평가에 따라 사업비 차등 운영) ○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 1개 소비자단체 70백만원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860	860	860	860
	국 고	860	860	860	860
	지방비				
	용 자				
자부담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홍성현	044-201-2329	
신청시기	정기(매년 상반기)		사업시행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본부	
관련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www.ekapepia.com)				

1. 사업대상자

- 전국단위 회원, 지회, 지부 등을 보유한 소비자 관련 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소비자기본법(제29조 제1항) 및 시행령(제23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 및 등록 기준(3개 시·도 이상 지부 설치 등)에 부합하는 전국단위 소비자 관련 단체

* 「소비자기본법」 제29조 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3조

- 선정우선순위
 - 전년도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참여 단체 및 성과평가 결과 우수 소비자단체

3. 지원대상

- (소비자단체협력사업) 전국 소비자대상 홍보, 캠페인, 교육, 조사 사업비용
-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HACCP 운용수준 평가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소비자단체협력사업) 소비자교육, 홍보, 캠페인, 조사 비용 등
-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 실무 평가단 선정 및 운영, 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비용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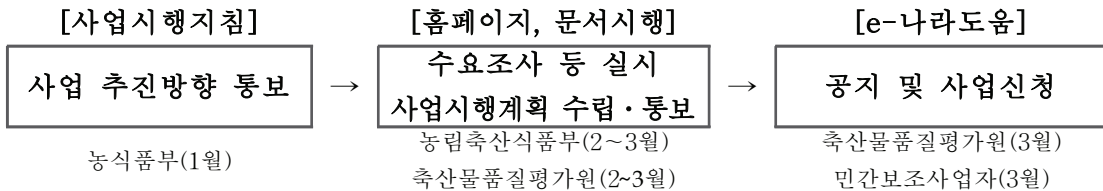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 국고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소비자단체협력사업) 소비자단체당 45~85백만원 내외
 - 전년도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2개 단체는 85백만원 내외, 하위 2개 단체는 45백만원 내외로 증감 조정(인센티브 및 패널티)
 - 평가운영비(사업시행기관) 20백만원 내외
- (도축장·집유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1개 소비자단체 70백만원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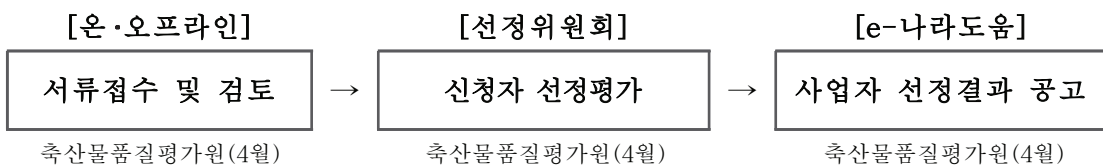
☞ 본 내용은 작성 예로 사업특성에 맞추어 조정·변경 가능

1.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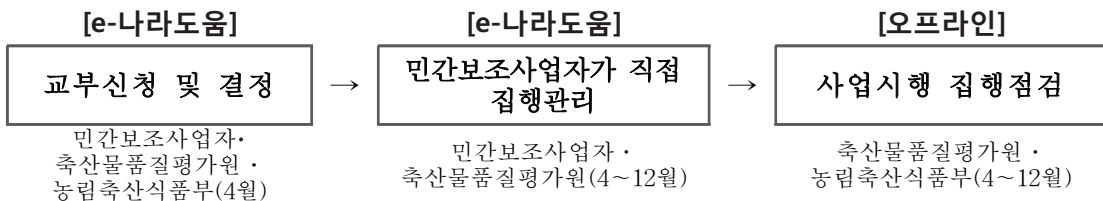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1월) 및 사업기본계획(2월) 통지
-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과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6명)하여 과제 주제 우선순위 선정(2~3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부 검토를 통해 과제 주제를 선정하고,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기관에 통보(3월)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소비자단체에 과제 주제 등 사업시행계획을 통보하고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 추진(3월)
 -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 안내)
- 사업대상 단체(이하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3월)
 -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신청 등 작성
 -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공모사업인 경우)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 신청 단체의 지원자격 및 요건 등 검토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정부,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학계 등 대내·외 전문가 6인으로 구성
 - 평가 내용 : 과제기획능력(10), 사업추진계획 적정성(50), 사업성과 가능성(20), 수행단체 적합성(10),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가점)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총사업비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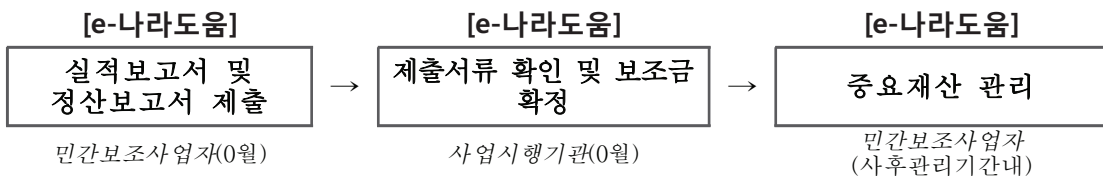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사업시행기관은 교부조건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예탁형)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을 사업완료 전까지 2회 이상 실시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사업시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정산보고서를 제출·보고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 확정 및 정산완료 통보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그 외 사항 등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법에 따름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실적,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사업 추진 결과를 사업 실적보고서로 사업시행기관으로 제출(12월)

2. 평가

- 중간 평가 : 사업 착수~3개월내 평가위원회를 구성(3인 이내)하여 현장점검 및 중간 평가 실시
 - 평가결과 보완사항 이행 등 필요시 재점검 실시(중간평가 이후 1개월 이내)
 - 평가 항목 : 사업목표의 달성도(50),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20), 사업 결과의 활용가능성(30), 홍보실적 및 운영관리(±10), 종합의견
- 성과 평가 : 사업 완료 후 평가위원회를 구성(6인 이내)하여 최종 평가(완료보고, PT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지적사항 등에 대한 보완 후 최종보고서 제출(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 평가 항목 : 사업목표의 달성도(50),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20), 사업 결과의 활용가능성(30), 홍보실적 및 운영관리(±10), 종합의견
- 만족도 조사 : 사업 참여 소비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프로그램별 실시)
 - 사업시행기관은 전문조사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참여 소비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단체당 100명 이상)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 프로그램별 참여 소비자대상 시행 전·후 만족도 조사 실시(프로그램별 계획에 따른 참여 인원)
- 성과 평가 결과가 우수한 2개 단체는 차년도 사업 신청 및 과제 선정 시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10백만원 인센티브 증배정
 - 성과 평가결과 미흡한 2개 단체는 차년도 사업 신청시 10백만원 패널티 감배정

<참고>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추진절차



- 추진계획, 일정 등 기본계획 수립
- 과제 수요 조사 실시 및 주제 선정
 - 소비자단체, 축산단체, 관련부서 및 기관 등
 - 사업시행기관 → 농식품부
- 사업 추진계획 수립·통보
 - 과제 주제, 선정 계획, 예산배정 규모 등
 - 농식품부 → 사업시행기관, 각 소비자단체
-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
 - 사업시행기관 → 농식품부 → 사업시행기관
- 단체별 사업계획서 제출
 - 소비자단체 → 사업시행기관 → 농식품부
- 단체별 과제 추진계획 검토 및 평가
 - 단체별 과제 추진계획 공개 발표
 - 선정평가단 구성·평가*
 - * 기획능력, 수행단체 적합성, 추진계획 적정성, 성과 달성 가능성 등
- 단체별 수행 과제 조정·확정
- 과제 지원계획 및 선정결과 통보
 - 사업시행기관 → 각 소비자단체
- 단체별 예산 배정
 - 사업시행기관 → 각 소비자단체
- 단체별 사업 추진
- 중간·최종보고 등을 통한 사업 진도 관리
 - 사업 진도별 평가단 구성·평가
- 단체별 결과보고서, 정산서 제출
 - 각 소비자단체 → 사업시행기관 → 농식품부
- 학계, 전문가, 농식품부 관계자로 평가단 구성
- 진도별 평가, 홍보실적, 성과달성도 등 정량·정성평가 실시
 - 평가결과에 따라 익년 과제 선정시 가점, 예산액 증감 배정 조치

서식 1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공모과제 선정 평가표

과제명	
신청단체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	------	------	------

1. 평가 항목별 점수

항목	배점	세부평가사항	가중치 (A)	평가등급 (B)*	평가점수 (A×B)
과제 기획능력 (20)	10	과제와 관련이 있는 현황 및 문제점 등 여건과 상황 파악여부	2	⑤ ④ ③ ② ① └───┬───┬───┬───┬───┘	
	10	과제의 추진 필요성과 현황 및 문제점과의 인과관계 형성도	2	⑤ ④ ③ ② ① └───┬───┬───┬───┬───┘	
사업 추진계획 적정성 (50)	30	사업추진계획의 명확성, 구체성, 창의성, 차별성	6	⑤ ④ ③ ② ① └───┬───┬───┬───┬───┘	
	20	추진 일정 및 사업비 지출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 추진상 문제 발생 여부	4	⑤ ④ ③ ② ① └───┬───┬───┬───┬───┘	
사업 성과 가능성 (20)	20	과제 수행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의 달성 가능성	4	⑤ ④ ③ ② ① └───┬───┬───┬───┬───┘	
수행단체 적합성 (10)	5	해당 단체의 조직 및 수행인력 구성의 과제추진 적합도	1	⑤ ④ ③ ② ① └───┬───┬───┬───┬───┘	
	5	해당 단체의 그 동안 수행한 사업과 추진과제와의 연계성	1	⑤ ④ ③ ② ① └───┬───┬───┬───┬───┘	
성과평가	가점10	전년도 추진과제 성과평가 결과 최상위 2개 단체			
	가점 5	전년도 추진과제 성과평가 결과 상위 2개 단체			
합계 (각 항목별 평가점수의 합계점수와 가감점의 합계점수)					

* 평가등급 (B) : 탁월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미흡 1

2. 종합 의견

※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의견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시)

서식 2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중간·성과 평가표

과 제 명	
신청단체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	------	------	------

1. 평가 항목별 점수

항 목	배점	세부평가사항	가중치 (A)	평가등급 (B)*	평가점수 (A×B)
사업목표의 달성도 (50)	30	사업계획서상 사업목표의 달성도	6	⑤ ④ ③ ② ① └───┬───┬───┬───┬───┘	
	20	최종 성과의 질적·양적 수준	4	⑤ ④ ③ ② ① └───┬───┬───┬───┬───┘	
사업추진방식의 적절성 (20)	10	사업 추진일정 및 예산사용 준수 여부	2	⑤ ④ ③ ② ① └───┬───┬───┬───┬───┘	
	10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정도	2	⑤ ④ ③ ② ① └───┬───┬───┬───┬───┘	
사업 결과의 활용가능성 (30)	20	최종 성과의 파급효과	4	⑤ ④ ③ ② ① └───┬───┬───┬───┬───┘	
	10	최종 성과의 활용방안	2	⑤ ④ ③ ② ① └───┬───┬───┬───┬───┘	
홍보실적 및 운영관리 (내부평가) (±20)	가점 20	○ 공동홈페이지 활용·홍보 실적 - 교육·홍보·연구 실적* 제공(최대 20점) * 보도(TV 2점, 일간지 1점, 전문지 0.5점, 보도매체별 아님) * 책자리플릿, 정보지(온·오프라인) 등 포함, 보고서(연구·조사, 교육자료 등 포함) 제공(건별 1점) * 당해 사업기간 내 홍보 실적에 한하여 내부평가 후 성과평가 결과에 반영			
	감점 -20	○ 부정적 언론보도 및 사업 지침 준수 여부 - 정부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보도 * 보도내용별 -5점(최대 -10점, 보도매체별 아님) - 사업추진관련 민원 제기시(보조금 집행관리 소홀, 보고서(정산, 실적) 등 제출기한 미준수 등) * 사안별 -5점(최대 -10점)			
합계 (각 항목별 평가점수와 가감점의 합계점수)					

* 평가등급 (B) : 탁월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미흡 1

2. 종합 의견

※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의견이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표시)

서식 3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현장점검표
-------------	-------------------------

단체명	
-----	--

점검사항	점검결과			
	양호	미흡	불량	기타의견
1. 사업목적 외 사용 여부				
2. 담당자의 적극성				
3. 사업관련 서류 적정성 (세부 사업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4. 자료관리 적정성	회계서류			
	전용계좌 관리			
5. 대외 홍보				
6. 사업 진행율				
7. 기타 건의사항 등				

점 검 일		점검자	직	성명 :
			직	성명 :

관	련	사	진
---	---	---	---

서식 4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과제 신청서 서식

<서 식 1 : 사업 신청서>

○ 단체명 :

사 업 계 획 서	
과 제 명	[<input type="checkbox"/> 조사 / <input type="checkbox"/> 교육 · 홍보]
공동수행단체	
사업 목적 (현황 및 문제점)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업 개요	<input type="checkbox"/> 기본방향 ○ - ○ - <input type="checkbox"/> 추진계획 ○ ○ ○
기대 효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연 락 처	<input type="checkbox"/> 대표 : (Tel :) <input type="checkbox"/> 담당 : (Tel :), (Fax :) (이메일 :)

기 관 · 단 체 명

설립일자	년 월 일	설립근거	관련 법규 등 기재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FAX)
설립목적			
대표자		직원 수	명(정규 -명, 임시 -명)
임원현황	이사 - 명(상근 - 명), 감사 - 명(상근 -명)		
조직구성		기본재산 (정부출연금)	백만원 (-)
최근 2년간 활동실적	○ 기재난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기 타 증명서류	○ 필요시 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첨부서류: 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2018년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수행계획서

2018.

단체·기관명

[제안개요]

사업명				
단체명				
제안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조식으로 작성 유도 - 간결한 작성 유도 			
성과목표	- 계량, 비계량 부문으로 나뉘서 작성 (목표치 간략 기재)			
주요내용				
담당자	직 책		성명	(인)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주소			

※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개조식(간단정리)으로 작성

목 차

1. 사업개요	1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1.	3
2.	4
3. 과제 현황	
1.	
4. 사업 세부 추진방안	
1.	0
2.	0
5. 추진일정	
1. 추진일정	0
6. 사업수행인력	
1. 사업수행인력	0
7. 소요예산	
1. 소요예산	0
[붙임 #1]	0
[붙임 #2]	0
[붙임 #3]	0

사업명

- 소제목 -

중고덕 15p, 글상자선 이중테두리

(본문에 문서 취지가 포함될 시 본 글상자는 생략 가능)

1. 사업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등에 관해 자세히 기술, (휴먼명조, 16p)

○

기관(단체)명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사업 성과목표

○ * 기대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성과목표	※ 다음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것
	- 교육, 캠페인, 홍보, 행사 : 총 00회, 000명 실시, 00% 인식변화
	- 공동구매, 소비촉진 : 00% 이용 증가, 000개 판매 등
	- 연구조사, 모니터링 : 총 00회, 00개소, 000명 대상으로 실시
	※ 향후 과제평가지 단체가 설정한 성과목표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평가

추진체계와 추진방향

- * 사업추진기관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등 기술

기대효과 * 기대되는 결과(비계량 위주)를 구체적으로 기술

-

3. 과제 현황

* 과제분야에 대한 일반적 현황 및 주위여건,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 등 기술

-

-

4. 사업 세부 추진방안

-

-

해당부서와 협업계획

- * 사업수행과정과 사업종료후 해당 부서와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계획 제시 (구체적인 정부 사업이나 정책 명기)

사업 홍보계획

- * 사업진행사항과 결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

5. 추진일정

주요내용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②												

6. 사업수행인력(담당자, 관리자 등 기재)

업무 구분	성명	성별	소속/직위	연락처	주요 활동 경력
○					
○					
○					

7.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세부산출내역 (예시)
총 계				
	직접사업비			
	운영경비			
○○사업 프로젝트	계			
	직접사업비	소계		
		강사수당		○○원×○○명×○회
		체험비		○○원×○명×○회
		식비		○○원×○○명×○식×○회
	운영경비	교재비		○○원×○○부×○회
		소계		
		출장비		○○원×○명×○회
		회의비		○○원×○회
	○○사업 프로젝트	계		
	직접사업비	소계		
		책임연구원		○○원×○명×○개월
		담당연구원		○○원×○명×○개월
		연구보조원		○○원×○명×○개월
		보조원		○○원×○명×○개월
		면접원 수당		○○원×○○명
		자료코딩비		○○원×○명×○일×○회
	인쇄비		○○원×○○부×○회	
	운영경비	소계		
		면접원 교육비		○○원×○○명×○회
		회의비		○○원×○회

<작성 유의사항>

- ①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을 기본원칙으로 함
- ② 예산 비목은 사업 프로젝트별로 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직접사업비와 운영경비로 구분하여 기재
- ③ 직접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고 운영경비는 가급적 필수 불가결한 비용만 반영
- ④ 재료비는 소모성 재료비 위주로 편성하고, 비품을 포함한 자산성 재료비나 소요 비용이 과다한 경우는 기관 단체부담 또는 후원 등으로 계획 수립
- ⑤ 산출내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지원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음

2018년 소비자단체 협력사업 결과 보고서

2018.

단체·기관명

[사업 추진 개요]

사업명				
단체명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조식으로 작성 유도 - 간결한 작성 유도 			
성과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량, 비계량 부문으로 나뉘서 작성 (목표치 간략 기재) 			
주요내용				
담당자	직 책		성명	(인)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주소			

※ 작성요령 : 개조식(간단정리)으로 작성

목 차

1. 사업개요	1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1.	3
2.	4
3. 과제 현황	
1.	
4. 사업 세부 추진 결과	
1.	0
2.	0
5. 추진 일정	
1. 추진일정	0
6. 사업수행인력	
1. 사업수행인력	0
7. 소요예산	
1. 소요예산	0
[붙임 #1]	0
[붙임 #2]	0
[붙임 #3]	0

사업명

- 소제목 -

중고덕 15p, 글상자선 이중테두리

(본문에 문서 취지가 포함될 시 본 글상자는 생략 가능)

1. 사업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등에 관해 자세히 기술, (휴먼명조, 16p)

○

기관(단체)명 :

사업명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

2.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사업 성과목표 달성도

○ * 사업 추진 성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성과목표	※ 다음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것
	- 교육, 캠페인, 홍보, 행사 : 총 00회, 000명 실시, 00% 인식변화
	- 공동구매, 소비촉진 : 00% 이용 증가, 000개 판매 등
	- 연구조사, 모니터링 : 총 00회, 00개소, 000명 대상으로 실시
	※ 향후 과제평가지 단체가 설정한 성과목표의 난이도에 따라 차등 평가

추진체계와 추진방향

- * 사업추진기관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등 기술

기대효과 * 기대되는 결과(비계량 위주)를 구체적으로 기술

-

3. 과제 현황

* 과제분야에 대한 일반적 현황 및 주위여건, 관련 정책 및 지원사업 등 기술

-

-

4. 사업 세부 추진 결과

-

-

해당부서와 협업

- * 사업수행과정과 사업종료후 해당 부서와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결과 제시 (구체적인 정부 사업이나 정책 명기)

사업 홍보 결과

- * 사업진행사항과 결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

5. 추진일정

주요내용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①												
②												

6. 사업수행인력(담당자, 관리자 등 기재)

업무 구분	성명	성별	소속/직위	연락처	주요 활동 경력
○					
○					
○					

7.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세부산출내역 (예시)	
총 계				
	직접사업비			
	운영경비			
○○사업 프로젝트	계			
	직접사업비	소계		
		강사수당		○○원×○○명×○회
		체험비		○○원×○명×○회
		식비		○○원×○○명×○식×○회
		교재비		○○원×○○부×○회
	운영경비	소계		
		출장비		○○원×○명×○회
		회의비		○○원×○회
	○○사업 프로젝트	계		
직접사업비		소계		
		책임연구원		○○원×○명×○개월
		담당연구원		○○원×○명×○개월
		연구보조원		○○원×○명×○개월
		보조원		○○원×○명×○개월
		면접원 수당		○○원×○○명
		자료코딩비		○○원×○명×○일×○회
		인쇄비		○○원×○○부×○회
운영경비		소계		
		면접원 교육비		○○원×○○명×○회
		회의비		○○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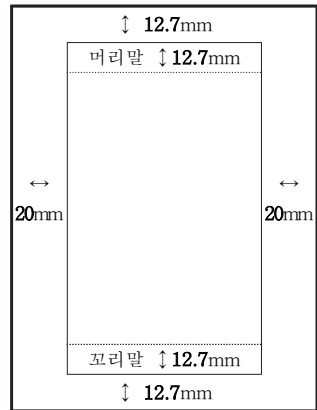
헤드라인M, 22p

- 글상자 테두리선 0.3mm -

중고딕 15p, 글상자선 이중테두리
(본문에 문서 취지가 포함될 시 본 글상자는 생략 가능)

1. 헤드라인M, 18p

- 휴먼명조, 16p, 1칸 들여쓰기
- 휴먼명조, 16p, 2칸 들여쓰기
 - (하이픈) 휴먼명조, 16p, 3칸 들여쓰기
 - (점) 휴먼명조, 16p, 4칸 들여쓰기
- * 중고딕, 14p, 3~7칸 들여쓰기



< 기본값 >

- ① 기본글자체 : 휴먼명조, 16p (제목 : 헤드라인M)
- ② 목차체계 : 보고서가 길지 않은 경우(□, ○, -, ·)
보고서가 길어 항목구분이 필요한 경우 [I, 1, 1), (1), ①]
- ③ 편집여백 : 위·아래 12.7mm, 좌·우 20mm, 머리말·꼬리말 12.7mm
- 머리말, 10p(날짜, 보고서 목적, 작성부서), 꼬리말(페이지) 기재
- ④ 줄간격 : 150~160%(페이지당 18줄~20줄), 장평(100), 자간(0)
- ⑤ 문단간격 : □ 문단위 20mm, ○ 문단위 10mm, * 문단위 5mm
- ⑥ 숫자와 일시 : 연, 월, 일은 생략하고 온점(·)표기, 시간은 24시 기준(예; 15:30)
- ⑦ 중요한 부분은 진하게 표시

※ 모든 표와 그림 등은 “개체속성”설정을 통하여, ‘일반글자처럼 취급’으로 설정

축산발전기금 보조금 집행 내역(총괄)

- 보조사업명 : (수행 과제명)
- 보조사업자 : (수행 단체 명칭)
- 보조금 집행내역
 - 집행총괄표

(단위 : 원)

교부결정액	수령액(A)	집행액(B)	집행잔액(A-B)
80,000,000	80,000,000	80,000,000	0

※ 이자발생액 : 3,560원

-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비목	지출세목	계획	지출	잔액
사업 자문회의	전문가 자문비			
	회의준비			
	회의식대			
	소 계			
소매단계 가격조사	조사원 활동비			
	조사업체 사례비			
	조사원 교육비			
	조사 분석비			
	소 계			
담당자 워크숍	워크숍 진행비			
	회의비			
	강사비			
	소 계			
합 계				

사업 자문회의

(총 245,000 원)

(수행단체 명칭)

【양식2, 지출세목별 내역】

○ 지출세목별 집행내역(사업 자문회의)

(단위 : 원)

지출세목	일자	내역	금액
전문가 자문비	10.24	한국대학교 김교수 외 2명	300,000
회의 준비	10.22	현수막 제작(프린트 인쇄소)	30,000
	10.23	회의용품 구매(가나다 문구점)	38,000
	10.23	다과 구매(홈플러스)	145,000
	10.24	간식(김밥나라)	5,000
	10.24	장소사용료(문학회관)	200,000
	:	:	:
	10.24	000회장 외 45명(불고기씨스터)	460,000
회의 식대	:	:	:
계			

□ 일반지침

-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게시물 및 자료에는 주최 기관을 표시하는 등 표준양식 적용(현수막, 안내문, 책자 등 홍보물 등)
- 표기 방법(현수막 예시)

2018년 000소비자 교육 · 홍보 사업

- 주 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 주 관 : 000단체

- 교육, 체험, 홍보캠페인, 토론회 등의 행사 시 현수막을 포함하여 사진 촬영 후 증빙자료 제출
- 교육, 체험, 홍보캠페인, 토론회 등의 참석자 증빙은 방명록을 첨부하여 근거자료로 제출(성명, 연락처, 서명)
- 교육 교재, 기념품 등은 책자화하여 사업결과물로 제출(2부)
- 리플렛, 홍보물 등 제작 시 게재 내용은 농식품부 및 축평원과 사전 합의하며, 사업결과물로 제출

□ 현장 점검

- 사업 추진 현장 점검 실시(농식품부와 합동 점검)
 - 과제별 특성에 맞는 현장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는 사업완료 후 사업평가에 반영

□ 산출물 제출

- 문서 산출물 : 파일 제출
 -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작업하여 제출할 것
 - * (1) 공문, (2) 결과보고서, (3) 정산내역서, (4) 영수증집계표, (5) 정산증빙자료 (영수증 모음), (6) 계좌이체의뢰서, (7) 통장사본, (8) 추진실적 증빙자료 사본 (사진, 교육생 명단, 교육 및 홍보자료, 언론보도현황 등)

□ 사업평가 및 환류

-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 및 사업 성과 평가회 실시를 통해 우수 단체에 대해 다음 연도 사업 공모시 인센티브 부여

□ 실적 보고(2회)

- 중간보고 :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간략 보고

< 중간보고(안) >

단체명	추진 내용
○○○	<input type="checkbox"/> ○○ 행사명(교육, 체험, 홍보 등) - 일 시 : - 장 소 : - 참석자 : - 주요내용 : <input type="checkbox"/> 이슈사항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 행사명(교육, 체험, 홍보 등) - 일 시 : - 장 소 : - 참석자 : - 주요내용 : <input type="checkbox"/> 이슈사항

- 결과보고 : 과제별 사업결과 및 보조금 집행결과에 대한 최종보고
 - 결과보고서, 추진실적 증빙(사진, 교육생 명단, 교육자료 등), 집행 실적 세부내역, 정산증빙자료 등 점검

1. 국고보조금 관리 기본원칙 및 준수사항

□ 기본원칙

◆ 국고보조금은 별도의 계정(계좌)을 설정하여 관리*함

* 보조금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법률 제34조

◆ 국고보조금이 구분되도록 회계 관리

○ 자부담 우선 집행 후 국고 집행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잔액 발생액은 전액 국고 반납

□ 국고보조금 관리 준수사항

○ 동 집행·관리지침은 '17년 농식품부 소비자단체협력사업 공모사업비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의 원칙과 공통된 기준을 정한 것임

- 정부의 예산 절감 노력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일회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지양하고, 실용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비를 집행함

○ 국고 보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한 사업 계획서(최종 승인)에서 제시한 사업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함

- 당초 계획에 없는 분야는 집행할 수 없으며, 예상치 못한 사정 등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사전 승인 후 집행(공문처리)

□ 국고보조금 관리

○ 사업 수행기관은 사업비에 대한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동 계정과 연결된 별도 통장, 신용카드(법인용 클린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관리

- 모든 사업비의 지출은 신용카드(법인용), 직불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명세서, 견적서(용역 등), 세금계산서, 영수증 및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함
 - *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음
- 사업운영 기관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사용 항목별, 일자별로 기록 유지하고, 감독기관(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

□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절차

- 사업비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정산 내역을 확인·점검
 - 감독기관은 사업 평가, 모니터링 등의 목적으로 사업운영기관에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지실사 실시
 - 감독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 또는 목적 외에 집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조치

□ 국고보조금 통장관리

- 단체·기관 소유 법인통장 외 별도 개설하며 타사업 통장과의 분리

□ 국고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개산금 집행
- 집행시기 : 사업 선정·착수 시 총예산의 50%* 청구·집행, 나머지 중간발표 후 배정(50%)
 - * 집행계획에 따라 최초 총예산의 최대 70%까지 신청 가능(사전 협의 필요)
- 사업시행기관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17년 11월 15일까지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정산 실시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7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 보고” 실시

□ 국고보조금 증빙서류

○ 영수증 증빙 방법

-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카드 및 무통장입금(계좌이체)을 원칙으로 함
- 강사비 : 강사비 수령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 물품구입 등 : 카드영수증·계산서·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 회의비 : 카드영수증·계산서·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 * 개인에게 지급되는 식사비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음

○ 현금 지급

- 카드 및 무통장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
- * 간이영수증 : 간이사업자에 한하여 3만원 이내의 거래내역만 인정
- * 현금영수증(개인 현금영수증 첨부 불가) 제출

□ 국고보조금 사용 제한

○ 다음 업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의 사용을 제한함

- 유흥 업종 :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 요정 등
- 위생 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2. 보조금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집행 기준

사업비 집행기준

항	목	산출내역 및 지급단가	
직접사업비	강사수당 (회의비포함)	◦ 아래 「강사료·원고료 지급 기준」에 근거하여 집행	
	강사여비	◦ 원거리(타시도) 강사인 경우 교육기관 내규에 따라 예산 내에서 여비 지급 가능(1인당 10만원 이내 또는 실비 지급) * 제주도의 경우 실비 지급(예산범위 내) * 해당 지역(해당지역단체)의 내부강사의 경우 여비 지급 불가	
	인쇄비 및 교재구입비	◦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예산범위 내)	
	실습재료(체험)비	◦ 체험 및 실습에 소요되는 비용 * 체험 및 소모성 기자재 구입시 기수별 1인 25,000원 이내	
운영경비	직접경비	출장비	◦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예산범위 내) - 출장비 : 직접교육비 내의 교육운영 시 집행하는 식비·숙박비와 중복지급 불가 * 세부예산계획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과 협의 후 추진
		교육장 사용료	
		홍보(현수막 등)	
		사무용품비	
	보험료		
기타 운영비	◦ (직접사업비+직접경비) × 10% 이내 * 직접경비를 제외한 사업운영 경비 * * 임시적으로 필요한 보조인력 인건비 지출 가능		

강사료·원고료 지급 기준

강사료			비고
등급	기본[hr]	초과[hr]	
특강1	500,000원 이내		국내·외의 해당분야 저명인사로 교육 운영상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특강2	300,000원	200,000원	전·현직 장·차관(급) 및 대학총장(급), 전·현직 국회의원, 기업·기관·단체의 장, 인간문화제, 유명예술인 및 종교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1급 강사	230,000원	120,000원	해당분야 전문가, 실·과장(급) 공무원,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공인감정사로서 5년 이상 경력자,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2급 강사	120,000원	100,000원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4·5급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6급 이하 공무원, 기업·기관·단체의 임·직원, 중소기업체의 임원급, 체육·레크리에이션 강사, 프리랜서, 농업인 등 일반 강사
3급 강사	90,000원	50,000원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기타 원장이 인정하는 자
원고료	<p>한국어 원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글』 : 12,000원 / 매(시간당 5매 기준) - 파워포인트 : 12,000원 / 면(시간당 15면 기준 - 3면을 A4 1매로 선정) <p>외국어 원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글』 : 15,000원 / 매(시간당 5매 기준) - 파워포인트 : 15,000원 / 면(시간당 15면 기준 - 3면을 A4 1매로 선정) <p>원고료는 개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급</p>		

세부사업명	축산물수급관리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예산 (백만원)	700		
사업목적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				
사업 주요내용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및 관리수수료 지급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지원한도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내에서 지원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용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2,468	1,850	1,850	1,850
	국 고	1,318	700	700	700
	지방비	575	575	575	575
자부담	575	575	575	57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영과 축산지원부		조재성 박철진	044-201-2332 02-2080-6553
신청시기	정기(매년 5.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S) 사업시행지침서				

1. 사업대상자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3. 지원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한 농가의 보전금 및 사업관리 수수료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리수수료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보전금
 - 계약대상자는 계약신청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에 계약 신청
 - 계약암소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각 10천원씩 납부
- 관리수수료 등(축발기금 부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내에서 지원
 - 전년도말 기준 가임암소수(통계청 가축동향)를 기준으로 보전금을 차등 지급

< 단계별 가임암소 사육두수 및 최대 보전액 >

	확대 단계	적정 단계	위험 단계	초과 단계
가임암소두수	90만마리 미만	90~100만 미만	100~110만 미만	110만 이상
최대보전액(천원)	400	300	100	0

- 안정기준가격 : 1,850천원/마리(6~7개월령)

1. 사업신청단계

- 계약신청 기간 : 매년 1. 1. ~ 5. 31.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
 - 농협경제지주,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에 시달
- 사업시행기관과 시장·군수는 사업공고 및 농가홍보 실시
 -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지역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한우협동조합, 한우협회)를 말함

2. 사업자 선정단계

-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자 부담금(10천원)과 동일한 금액을 사업시행기관에 납입(해당사업년도내)
 - * 지자체가 해당 사업년도 내에 지자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익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 한우협동조합 및 한우협회지부가 사업시행기관으로 선정 요청 시 해당 지자체(시·군)에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지역 농·축협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농가의 사업참여 신청시 계약을 체결(농가는 계약자 부담금 납입)
 - 전년도 사업 참여시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당해연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당해연도 1.1일부터 안정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봄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사업 참여 기간 : 매년 1. 1(계약일)~ 12. 31(1년간)
- 농협경제지주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사업 실시요령을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농협경제지주와 사업시행기관은 안정사업자금계정을 설치하고 시·군별, 재원별 구분 계리
 - 농협경제지주는 부담금 관리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
 - 지역축협은 계약자 부담금은 청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지자체 부담금은 수납 완료 후 7일 이내에 농협경제지주에 납입
 - 지역축협의 사업시행기관은 수납된 계약자 부담금을 주간단위로 시·군관할 지역축협 안정사업자금계정에 납입, 지자체부담금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직접 시·군관할 지역축협 안정사업계정에 납입토록 조치

-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는 매 기(2개월)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을 통보하고, 안정사업 담당자 교육 및 사업홍보 추진

평균거래가격의 산출·공고

-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는 매기(2개월)가 끝난 다음달 20일까지 천원 단위로 평균거래가격을 산출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시장·군수), 사업시행기관 등에 통보
- 농·축·수산물 유통통계조사 지침에 의한 지정가축시장에서 해당 기내에 매매된 6~7개월령 송아지거래금액을 거래두수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암·수 송아지 별로 각각 산출한 후 평균하여 산출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송아지가 생산된 때 농가는 사업시행기관에 생후 30일 이내에 송아지 생산을 신고해야 함
- 자금배정 등의 보전금 지원은 참여기간 내에 6~7개월령 송아지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보다 낮을 경우 계약농가에 자금 배정
-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시·군별 보전금 지급 소요액을 계산하여 시·군에 통보
- 시·군은 보전금 소요액을 점검 확인하고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사업시행기관이 다수일 경우 각 사업시행기관 각각에 통보

보전금 소요액 산출

- 총소요액 = 총지급두수 × 두당보전금지급액
- 정부부담액 = 총 소요액 - 농가·지자체 부담금 적립액
- * 보전금 지급 소요금액이 농가·지자체 부담금 적립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부담
- 시·군의 보전금 지급 통지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같음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경제지주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
-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은 사업시행기관은 계약농가에게 보전금을 지급하고 시장·군수에게 지급결과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군별 소요자금을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에 배정하고 시장·군수에 통보

보전금 지급조건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태어난 계약생산송아지(귀표부착 완료)가 만 6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2개월 단위)의 6~7개월령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급

보전금 지급제한

- 전쟁, 변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 시는 보전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정상 회복시 까지 지급 유보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당해 년도말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익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 보전금 지급총액이 당해연도 예산액을 초과하거나 WTO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조금 최소허용 한도액(De-minimis)이 초과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

- 사업관리 수수료
 - 사업관리 비용은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에 따라 별도 지급
 - 사업시행기관은 계약암소 두당 1,500원, 농협경제지주는 계약암소 두당 250원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시장·군수는 농가의 안정사업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자금소요액의 적정성 검토
- 반기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 관리현황 보고
 - 시·군별 자체 점검결과 보고(계약신청기간 만료 후, 매년 11.30일 이후)
- 사업시행기관장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금의 기별 지급액을 매기가 끝나는 익월 15일까지 시장·군수 및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에게 통보
-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는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별 보전금 배정을 농식품부에 요청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금 관리 현황 보고(반기)
-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는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사업관리수수료 지급을 농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사업추진사항을 점검
 - 계약신청기간 이후 : 계약관련 전산 데이터 정리 완료 후
 - 점검 사항 : 농가 계약관리 점검, 자금 관리 전반(농협경제지주 납입 등)
 - *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변경된 사항(수급 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안정기준가격 조정 등)이 있을 경우, 필요시 가축시장 가격 동향 조사를 통해 산지가격 안정상황 점검으로 대체 가능
- 보전금의 지급 중지 및 회수
 - 계약암소 및 계약생산 송아지의 귀표를 조작했거나 다른 것과 교체한 경우
 - 각종 조사표 및 기타 각종 신고(서)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송아지생산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경우
 - 계약생산송아지에 바코드귀표 부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암소 또는 계약송아지에 소유권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 단, 계약암소의 폐사 시 수의사의 검안서 또는 귀표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체사진 등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안정사업자금의 구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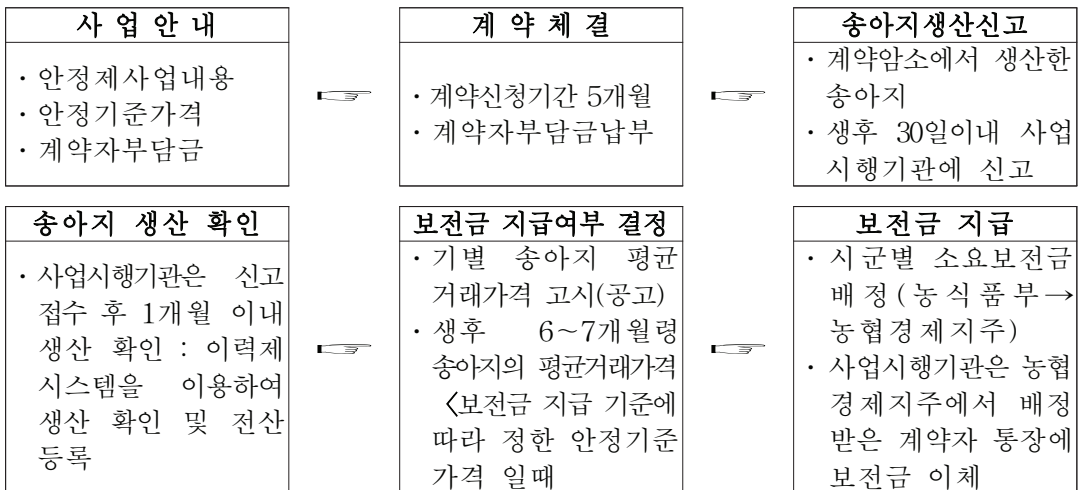
- 농협경제지주는 계약자와 지자체의 부담금(기존 부담금 포함)을 총괄 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별도계정을 설치하되(지역축협의 사업시행기관은 농협경제지주가 별도 설치), 계약자와 지자체로부터 납입된 부담금을 농협경제지주의 안정사업계정에 납입
- 시·군별, 재원별 별도 구분관리

○ 안정사업자금의 사용·운용

- 안정사업자금은 보전금 지급용도로만 사용
 - 시장·군수의 확인 및 보전금 지급통보에 의하여 사업시행기관에서 지급
- 보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안정사업자금 잔액은 계속 적립
-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는 안정사업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 작성

○ 동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축산법」 제51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농협경제지주에 위탁함에 따라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가계약을 위한 계약서·사업관리를 위한 각종서식 및 작성요령 등 세부 실시요령을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시·도, 시·군,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사업시행체계》



4-5. 축산물안전관리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세부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CCTV 등 방역인프라)		예산 (백만원)	1,050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금 사육농가에 CCTV 설치 지원을 통해 조기 신고 유도과 농가출입자(차량)의 소독 등 평소 방역실태 등을 평가 및 점검 고병원성 AI 발생 최소화 ○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질병발생 최소화 추진을 위함 							
사업 주요내용	○ AI 등 질병 예방을 위해 가금사육농가에 CCTV 설치 지원, 가금·양돈농가에 방역시설 및 장비 설치 지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지원자격 및 요건	○ 가금 축사 보유 농가 또는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와 위탁 계약한 계열화사업자, 가축사육업(가금·양돈)의 허가를 받은 농가							
지원한도	○ (CCTV 지원) 계열화사업자(농가당 16백만원), 개별농가(농가당 5백만원), (방역시설·장비) 5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30	용자	30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	1,910	18,576	10,500			
	국 고	-	955	9,288	5,250			
	용 자	-	955	9,288	5,2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가축방역 관련부서		황성철		044-201-2555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1. 사업대상자

가. CCTV 지원사업

-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 또는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와 위탁 계약한 계열화사업자**(계약 사육농가 지원에 한함)

- 가금 축사는 건축물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 형태도 포함

* 농가 :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에 한함(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 계열화사업자 : 계열화사업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금 계열화사업자

나. 방역시설 및 장비

- 가축사육업(가금·양돈)의 허가를 받은 농가(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선정 우선순위]

① 최우선 순위

<가금사육농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의4에 따른 AI 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된 가금 사육농가
- 정부 가축 사육제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금농가
- 위탁 계약한 가금 농가에 대하여 방역위생 관리를 스스로 하고자 하는 가금 계열화사업자(계약사육농가 지원에 한함)
- 지자체 등의 AI 방역추진을 위한 ‘방역시설 취약 가금농가’로 분류된 농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으로 제출한 가금 사육농가

<돼지 사육농장>

- 과거 5년 이내 야생멧돼지에서 돼지열병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된 지역(시·군)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 군사분계선과 인접하여 특정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높은 지역에 소재하는 농가
 -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의 출몰이 잦거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농가
 - 소규모(500두 이하)로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
- ② 기타 순위 등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름
- ③ 후순위 선정
- 상시 ①, ②에 해당되는 우선 순위 농가라 하더라도 과거 3년간 AI·구제역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의 경우 후순위 선정
 - 계열화사업자 방역평가 결과 라, 마 등급을 받은 계열화사업자
 - 가금 밀집지역에서 축산 개편에 참여하지 않는 가금 농가

[지원 제외]

- 이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CCTV 설치를 포함한 지원을 받은 경우
- 위탁 계약농가의 CCTV 설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계열화사업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 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3. 지원사업별 대상 및 내역

① CCTV 설치

가.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축사를 임차한 경우도 포함)

- 지원내역 : 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 농가 자체 스마트폰 활용 등을 추가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말함

※ 계열화사업자와 위탁 계약한 농가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지원 신청 가능

나. 계열화사업자와 위탁 계약농가

○ 지원내역

- 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 환경감시시스템(온·습도 감지기, 정전·화재 감지기 등)
- 통제관제시스템(영상모니터, 프로그램 솔루션, 휴대폰 앱 등)

※ 영상보안시스템과 환경감시시스템은 위탁 계약농장, 통제관제시스템은 계열화사업자에 지원(다만, 위탁 계약농가의 설치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함)

-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농가 당 상기 지원내역의 3종 시스템을 일건으로 추진하되 지자체 보조금 지원은 수혜를 받는 지자체(농장 소재 지자체)에서 지원

다. 지자체는 사업대상자가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CCTV 장비와 연관되어 방역에 활용할 목적으로 기타 장비를 구비하려는 경우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 판단

② 방역시설 및 장비

- 지원 가능한 방역 시설·장비 : 울타리, 전설,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 소독 시설·장비, 방역실, 야생조류류 차단(그물망 등) 시설·장비, 야생조류 퇴치기, 소석회 살포기 등
- 돼지 사육농장은 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지원(울타리 설치시 야생 멧돼지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재질 등으로 설치)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준수사항

<지원형태>

- 국고 보조 30%, 지방 보조 30%, 용자 30%*, 자부담 10%

* 용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개인농가는 농가 자부담, 계열화사업자는 계열화사업자가 자부담함)

※ 융자금리 :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농가·지자체 확인사항>

- 지원 제외사유에 해당되는 농가 또는 계열사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므로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지 선정 무효) 조치

<사업 의무준수사항>

① CCTV 설치

- CCTV 사양 : 일반적인 축사 내 환경에서 영상기록이 가능한 수준
 - 45일간 영상 기록 가능(축사내 CCTV는 21일간 이상)
 - 200만 화소 이상
 - 축사 내에서 촬영이 가능
 - 주야간 모드 변경 가능
 - 야간 가시거리(15~20m) 이상 확보 가능
 - 농장 출입구 설치 카메라는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
- CCTV 설치 장소 : 농장 출입구*와 축사별 입구**에 설치
 - * 농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CCTV는 외부 차량 및 사람이 소독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 축사별 입구에 설치되는 CCTV는 가급적 축사내부의 가금상태를 함께 볼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 CCTV 영상기록을 최소 45일 이상 저장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축사내 CCTV는 21일간 이상)
- 위탁농가와 계약한 계열화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제관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시스템을 인터넷 등을 통해 관할 지자체 등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계열화사업자가 신청시에 반드시 계약농가와 사전 설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
- 가금 농장 및 계열화사업자가 저장한 영상기록 등은 가축방역관이 가축방역상 점검 및 지도를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 농장주는 CCTV 영상기록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방역시설 및 장비

- 방역시설 및 장비 설치시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와 관련된 질병을 차단하기에 적합한 재질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방역실) 동절기 및 우천시 장화 갈아신기와 신발 소독이 가능한 형태와 크기를 자유로이 설치 가능(소독실, 샤워실 등 추가 가능)
 - (전실) 축사 전실은 AI 긴급행동지침의 재입식을 위한 전실 설치기준을 참고하여 설치
 - (그물망) 새 그물망은 격자 크기는 야생조수류가 침입하지 않은 크기인 2×2cm² 이하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설치
 - (울타리) 양돈농가는 야생멧돼지 등의 농가 내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재질 등으로 설치

5. 지원 상한액 기준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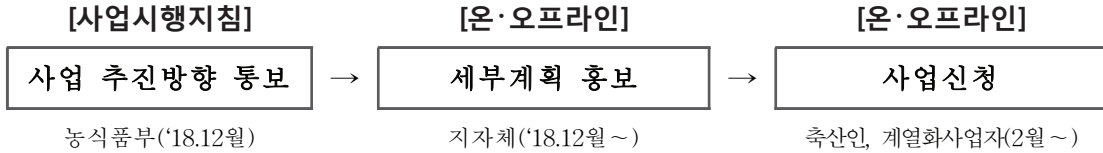
- 농가당 표준사업비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단, CCTV의 경우, 지원상한액(표준사업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된 실비를 지원이 가능함
-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재차 지원 받는 농가는 지원 상한액에서 기 지원액을 감한 액수를 지원 상한액으로 간주*(단, 기존 축사 시설현대화사업 상한액 산정과 무관)

(예)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 2천 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오리농가는 다음 해 지원받는 경우 지원 상한액은 3천 만원임

<지원 단가>

구분	지원 항목	농가당 표준사업비
CCTV	영상보안시스템	5,000천원
	환경감시시스템	5,000천원
	통제관제시스템	6,600천원
방역시설 및 장비	울타리, 전실,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 시설·장비, 방역실, 야생조수류 차단 그물망, 야생조류 퇴치기, 소석회 살포기 등	50,000천원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18.12월)

시 · 도

- 관할 계열화사업자 및 협회 등에게 농식품부 사업지침서 설명 등
- 시·도지사는 시·군 또는 계열화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상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 후,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신청서는 CCTV와 방역시설 지원사업을 별도 구분하여 제출
- 정책방향과 사업목표 등이 상이한 대상자는 시·도 검토 시 신청에서 제외

시 · 군

- 가축 사육농가의 사업신청을 위해 농식품부 지침서를 각 농가들에게 안내
- 시장·군수는 가금 사육농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 제출
 - 사업계획신청서는 CCTV와 방역시설 지원사업을 별도 구분하여 제출

계열화사업자, 가금 사육농가, 돼지 사육농가

- 사업비 견적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19.2월~)
 - 사업계획신청서는 CCTV와 방역시설 지원사업을 별도 구분하여 제출
- 계열화사업자는 소속 위탁농가를 일괄적으로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19.2월~)
 - 계열화사업자는 위탁 계약한 농가의 (붙임2)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신청서를 제출
- 용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
 - * 중도 포기자는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9.2월~)
 - CCTV와 방역시설 지원사업을 별도 구분하여 확정 통보

시·도

- 시·도지사는 시·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우선순위에 대해 본 시행지침상의 우선지원 요건과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표를 토대로, 적격 여부 및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해당 시·군 및 계열화사업자에 통보하고, 그 명단을 농식품부에 보고(19.2월~)

<사업자 선정 관리>

- ① 사업개시 및 완료여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기간 부여
- ② 선정 취소 또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

시·군

- 시·도에서 배정된 예산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19.2월~)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지자체

- 계열화사업자 및 가금사육농가와 양돈농가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시·도지사 및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계열화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시설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변경하여 집행
-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의 사업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계약에 관한 사항(계약서 사본, 계약내용 등 계약서류 일체)를 농식품부에 통지

사업변경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 지원장비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로 제출(시·도는 농식품부에 제출)
 -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
- 사업시행 주체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4. 자금배정 단계(교부결정)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시·군·구, 시·도) ⇒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보조금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 자 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설치업체 등의 계좌에 직접입금 조치할 수 있음(붙임 5)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 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이나, 시장·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자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이고, 자부담 금액이 200백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금액의 50%만 선집행하면 국고 집행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추진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19년 12월
 - 점검반 : 농식품부, 시·도와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 사업계획 및 진척도, 시설장비 선정의 적합성, 지자체 및 자부담 조달계획 등
 - * 점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물량 우선배정 등

지자체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사업대상자의 설치완료 보고서(증빙서류, 현장사진 등 포함)를 활용한 현장 확인 실시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 사업자 선정 이후부터 실집행금액 등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매월 말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사후 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주요시설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용자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훈령 제260호) 제16조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후 농식품부 보고
- *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Ⅲ

평가 및 환류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시기 : 익년도 12월말 기준(구축 전후비교)
- 평가방법
 - 시장·군수(시도지사)의 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물량 배정 조정 등의 조치

시·도(지자체)

- 주관기관 : 시장·군수(시도지사)
- 평가시기 : 구축 후 2개월 이내
-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등을 활용하여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결과보고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 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19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19.9월
- 신청자격 : '20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3. 기타 사항

- '20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19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 및 제 22 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 · 농장명 · 연락처(주택, 휴대전화) · 주소 (집주소, 농장주소) ·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15년까지 보유 · 활용

4. 제공 받는자

-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조류인플루엔자 방역과)
-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 대출취급기관 : 농협경제지주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대상자 및 지원대상 동의서

본인은 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CCTV 설치 장소 : 농장 출입구*와 축사별 입구**에 설치(CCTV 지원에 한함)
 - * 농장 출입구 설치 CCTV는 외부 차량·사람이 소독여부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
 - ** 축사별 입구 설치 CCTV는 가금적 축사내부의 가금상태를 함께 볼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함
2. 농장에 설치하는 CCTV는 방역상황 실태확인 가능한 사양**이어야 한다.(CCTV 지원에 한함)
 - * 45일간 영상 기록 가능(축사내 CCTV는 21일간 이상), 200만 화소 이상, 축사 내에서 촬영이 가능, 주야간 모드 변경 가능, 야간 가시거리(15~20m) 이상 확보 가능, 농장 출입구 설치 카메라는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
3. 위탁농가와 계약한 계열화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제관제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시스템을 인터넷 등을 통해 관할 지자체 등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계열화사업자가 신청시에 반드시 계약농가와 사전 설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함)(CCTV 지원에 한함)
4. 가금 농장 및 계열화사업자가 저장한 영상기록 등은 가축방역관이 가축 방역상 점검 및 지도를 위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CCTV 지원에 한함)
5. 농장주는 CCTV 영상기록을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CCTV 지원에 한함)
6.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7.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기계·장비 5년, 건축물 15년, 가설 건축물 5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 ※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설치사업자(지원대상) 주소 :

사업자(지원대상) 성명 :

[붙임 3-1] 사업계획 신청서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가금 농가용)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 (법인명)				연락처	전화) : 핸드폰) :			
	자택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주소								
	고용현황		사무실 근로자			명,	현장 근로자		명
	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								
사육 현황	사육형태	종계(), 육계(), 산란계(), 종오리(), 육용오리(), 기타() - 해당란 <input type="checkbox"/> 표시							
	사육 수수	종계(오리)		병아리 (오리새끼)		육성계 (육용오리)		산란계	총 사육 수수
		수	암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수
축사 현황	부화사		종계사(종오리사)			육추사		산란사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동수	동	
	부화기	개	케이지	개	케이지	개	케이지	개	
	면적	㎡	면적	㎡	면적	㎡	면적	㎡	
	수용수수	개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수용수수	수	
사업계획	사업규모 (천원)	추진내용(주요시설)							금액
	재원조달 (천원)	계		국 고	융 자(신청액)		자부담		
정보활용 동의	농림축산식품부의 출하정보(사업신청 전 1년간, 사업완료 후 3년간) 및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첨부자료	① 사업계획서, ② 축산업허가증 또는 계열화사업자 등록증, ③ 신용조사서(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 융자가 없는 경우 제외), ④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대상자 동의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축산업등록증, 신용조사서,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수수료 없음	

〈사업계획서〉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CCTV 등 방역 인프라 장비(②)	수량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합 계						
<p>① 설치장소 : 출입구 및 축사별 축사내부(입구 및 축사내부를 동시에 볼수 있는 장소) 권장 1: 농장입구, 2: 부화장, 3: 가금 사육사(초생추, 육성사, 성추사) 4: 사육장 통로, 5: 기타:</p> <p>② CCTV 등 방역 인프라 장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2. 환경감시시스템(온·습도 감지기, 정전·화제 감지기 등) 3. 통제관계시스템(영상모니터, 프로그램 솔루션, 휴대폰 앱 등)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용자(C)	자담(D)	
수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사업계획서>

가. 세부 사업계획

설치장소 (①)	CCTV 등 방역 인프라 장비(②)	수량	단가 (천원)	합계 (천원)	비고	
합 계						
<p>① 설치장소 : 출입구 및 축사별 축사내부(입구 및 축사내부를 동시에 볼수 있는 장소) 권장 1: 농장입구, 2: 부화장, 3: 가금 사육사(초생추, 육성사, 성추사) 4: 사육장 통로, 5: 기타:</p> <p>② CCTV 등 방역 인프라 장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2. 환경감시시스템(온·습도 감지기, 정전·화재 감지기 등) 3. 통제관제시스템(영상모니터, 프로그램 솔루션, 휴대폰 앱 등) 						
< 소요자금 현황 >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수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사업계획서〉

가. 세부 사업계획

구분		세부계획	사 업 비			
			2019년			
			보조	융자	자담	계
축사						
		소계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소계				
방역시설						
합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붙임 5] 위임장

위임장				
금액	일금 원정(₩)			
수임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p style="text-align: center;">상기 금액을 2018년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을 상시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2018년 월 일</p> <p style="margin-top: 20px;">위임자 경영체(업체)명 :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p>				
○○ 시장·○○군수 귀하				

[첨부 1]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예비신청 현황(지자체)

축종/ 구분	시도명	시군명	사업자 (농가)	허가연도	축사 면적 (㎡)	사육규모 (두, 수)	사업추진 면적 (㎡)	사업추진 규모 (동)	사업규모(백만원)				연락처/ 주소
									합계	국고	지방비	용자 자부담	
합계													010-1234-5678/ 전북 전주시 ○○로 □□
계열화사 업자형													
일반 가금사육 농가형													
양돈농가													

<CCTV>

* (계열화사업자 계약농가형) 사업비를 추정하여 기입(영상보완시스템(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환경감시시스템(온·습도 감지기, 경진·화재 감지기 등), 통제관제시스템(영상모니터, 프로그램 솔루션, 휴대폰 앱 등) 사업계획 신청시 설치 견적 등에 따른 실소요액을 작성, 농가별 상기 시스템 제외 가능)

* (일반가금 사육농가형) 영상보완시스템(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설치 사업비를 추정하여 기입(사업계획 신청시에는 견적 결과 등에 따른 실소요액을 작성)

<방역시설 지원>

* (가금·양돈농가) 사업비를 추정하여 기입, 사업계획 신청시 항목별 설치 견적 등에 따른 실소요액을 작성

[첨부 2] 대상자 현황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자 대상자 현황
(○○ 시·도)

시군	농가	축종/ 추진규모 (두, 수)	사업내역		농가 지원내역																
			주요추진 내역	CCTV 수량	계	국 고		용 자		지방비		자 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		계																

[첨부 3] 실적보고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추진상황보고
(○○시·도)

(단위 : 천원)

시군	농가	축종/ 추진규모 (두,수)	사업진도		()월 기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 내역	공정 (%)	계		국고		용자		지방비		자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 계																					

주) 가. “주요추진내역”란은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나. “사업비집행”은 전월말까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

1. 금후 사업추진일정
2.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3. 기타 참고사항

세부사업명	축산물품질관리	세목	민간이전, 자치단체보조					
내역사업명	- 축산물이력관리 지원(민간, 자치단체) - 축산물이력관리 장비 지원(민간, 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24,635					
사업목적	소, 돼지, 닭, 오리 및 계란의 사육단계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까지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필요시 그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방역 등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사업 주요내용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포장처리 및 판매까지의 각 단계별 이력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사업시행기관(지자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경제지주, 한국종축개량협회)의 이력관리 운영 및 장비 등 구입							
국고보조 근거법령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비용의 지원 등)							
지원자격 및 요건	없음(비공모형 사업)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지원한도	민간이전(경상·자본) 100%, 지자체경상보조 50%, 지자체단체보조 40%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20,377	19,422	23,068	24,635			
	국 고	20,377	19,422	23,068	24,63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권병운		044-201-2347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4.30일 까지)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경제지주, 한국종축개량협회		
관련자료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일부발취)							

1. 사업대상자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비용의 지원 등), 동법 시행규칙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사업시행기관 선정(비공모형사업)
 - 시·도,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경제지주, 한국종축개량협회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해당사항 없음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시·도,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경제지주,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업운영비 등 비용 지원
 - 인건비, 사업운영비(귀표구입비, 이력관리비, DNA검사비, 용역비, 장비 및 이력관리시스템 관리, 출장여비 등), 장비 구입(DNA분석장비 등) 등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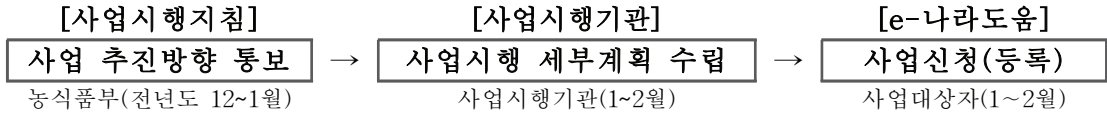
- 가축 및 국내산 축산물(소·돼지·닭·오리·계란)의 사육부터 유통(도축, 포장 처리 및 판매)까지의 이력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시행기관별 지원
 - (시·도) 소 위탁기관의 귀표부착, 소 사육단계 DNA동일성검사 등
 -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쇠고기, 돼지고기, 닭·오리, 계란 이력관리시스템)관리, 유통단계 DNA동일성검사 등
 - (농협경제지주) 소 귀표 공급 및 부착, 송아지 출생·폐사·이동 등 신고 접수 등
 - (한국종축개량협회) 종돈의 등록·폐사·양도·양수, 이동 및 변경신고 접수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의 재원) 축산발전기금, (지원형태) 자치단체경상보조 50%, 자치단체자본보조 40%, 민간경상보조 100%, 민간자본보조 100%
 - (사업시행기관 역할)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 시행 → 자금(지출한도액) 신청 → 보조사업 수행 및 실적 보고 → 보조금 반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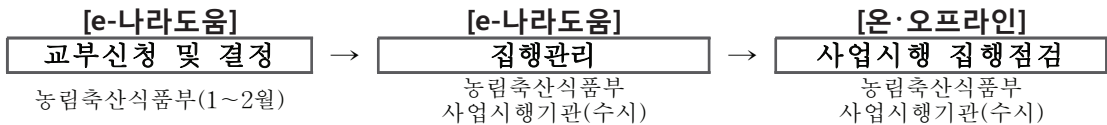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없음

1. 사업신청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사업기본계획 통보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시행 세부계획 수립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
 -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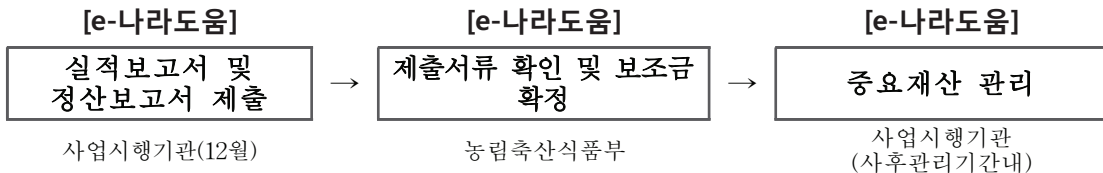
2.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 확정통지를 받으면 세부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 집행관리
 -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사업시행기관이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

- 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통지대상)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비용의 지원 등)에 따라 시·도,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 한국중축개량협회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농식품부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전년도 귀표부착비 지급 부족액은 당해연도 귀표부착비를 이용하여 집행 가능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사업완료 전까지 2회 이상 실시)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사업시행기관이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 필요시,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 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 비예탁의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의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의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그 외 사항 등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법에 따름

[참고자료 : 사업추진절차]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보조금 교부 신청	'20.1	시도, 축평원, 농협, 한중협	·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결정	'20.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가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 수행	연중	시도, 축평원, 농협, 한중협	· 축산물이력제(쇠고기이력제, 돼지고기이력제, 닭·오리·계란 이력제) 사업운영비 등 집행
↓			
사업완료 보고	'21.1	시도, 축평원, 농협, 한중협	·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			
사업비 정산 및 보조금 교부 확정	'21.1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정산 및 보조금 교부 확정 통지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시행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개월(민간) 또는 3개월(지자체) 이내 제출
 - 시·도는 관할 지역의 귀표부착 및 사육단계 DNA동일성검사, 제도 이행 주체(농가·도축업자·유통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단속(과태료 처분·징수 현황 포함) 등을 제출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가축 및 축산물 식별대장(이력시스템) 현황, 이력지원실 운영 및 DNA동일성검사 추진현황 등을 제출
 - 농협경제지주는 귀표의 구매·배부 및 소 사육농가 지도·점검 등의 사육단계 이력관리실적을 제출
 - 한국중축개량협회는 종돈 출생·이동·폐사신고, 귀표 구매·배부 등의 사육단계 이력관리실적을 제출

2. 평가 및 환류

- (사업평가) 사육, 유통단계의 이력제 이행실태를 지자체, 위탁기관별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 (환류) 축산물이력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한 공로자 포상하고, 이행실태 평가결과를 차년도 예산시 반영 등
 - 특히, 평가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 건의사항 등에 검토를 통해 차년도 사업 실시 요령 개정 및 각종 지침 작성시 반영

<참고1> 시·도별 축산물이력제 사업계획서(그 외 기관 별도서식 없음)

축산물이력제 사업계획서

1. 보조사업자명 : ○○○ 시·도

2. 사업 내용

가. 위탁기관별 귀표부착 계획량

위탁기관별	소 사육 농가 수	'18.12.1.기준이력시스템 등록두수				'19년 귀표부착 대상두수(추정치)			
		계	한우	육우	젓소	계	한우	육우	젓소

나. '19년 귀표 소요량

위탁기관별	'18.12.1.기준 귀표재고량(전산시스템 기준)		'19년 소요 예상량	
	인쇄형	재부착용	인쇄형귀표	재부착용귀표

다. '16년 DNA동일성 검사량

검사기관별	'19년 검사 예상량			비고
	한우	육우	젓소	

3. 사업추진계획

- 소 위탁기관별 귀표부착·전산등록 및 등록정보 검증계획, 이행주체 및 소비자 등에 대한 교육·홍보 계획, 위탁기관 점검 및 이력관리 현장 지도단속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4. 예산집행 계획

- 이미 제시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력관리비 등의 집행계획을 작성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자명 :

2. 보조사업자 : 주소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4. 사업기간 :

5. 보조금 신청액 : 원

6. 보조사업 소요경비 내역

(단위 : 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금	자 부 담	기 타
금 액				
부담율(%)				

7. 사업계획 : 별첨

위와 같이 ○○○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조사업자 ○○○ 인

2019년 ()분기 축산물 이력제 추진 실적

<기관명 : >

사육단계

○ 사육농가 교육, 점검 및 위반사항 처분실적

구 분	사육농가 교육		점검 및 처분실적(건)			
	횟수	인원	점검 농가수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 위탁기관 교육, 점검 및 처분내역

구 분	위탁기관				처분내역
	기관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점검횟수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 소 거래 중개상과 수집상 교육, 점검 및 위반사항 처분실적

구 분	가축시장		중개상, 수집상			처분실적(건)		
	개소수	점검횟수	상인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도축장 교육 및 단속 실적

구 분	도축장				처분실적(건)		
	업소수	점검업소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유통단계 교육 및 단속실적

○ 포장처리업소 교육 및 단속실적

구 분	포장처리 업소				처분실적(건)		
	업소수	점검업소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 식육판매업소 교육 및 단속실적

구 분	식육판매업소				처분실적(건)		
	업소수	점검업소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교육 및 단속실적

구 분	축산물유통전문업소				처분실적(건)		
	업소수	점검업소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 축산물수입판매업자 교육 및 단속실적

구 분	축산물수입판매업소				처분실적(건)		
	업소수	점검업소수	교육횟수	교육인원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금액(천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 계							

기타 사항

<참고4>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내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보고, 출입·검사 및 수거. 다만, 제2항제10호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34조제1항제17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통보(수입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력번호의 부여·통보

3.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양도·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산이력축산물의 거래·포장처리·판매 신고의 접수

5.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수입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 관리, 기록 수정·삭제 등의 조치, 보존 및 변경 신고의 접수

7. 법 제22조에 따른 수입유통식별대장의 기록에 관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및 수입유통식별대장 수정요구의 접수,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8.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소 수입자·수출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라 한다)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식품접객업자·집단급식소운영자·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9.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출입·검사 및 수거(소 수입자·수출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식품접객업자·집단급식소운영자·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10. 질병 등에 대한 역학조사와 조치 등을 위한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검사

1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삭제

13. 법 제34조제1항제10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14. 법 제34조제1항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소 수입자·수출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와 수입산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자·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식품접객업자·집단급식소운영자·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경우만 해당한다)

15. 제4조제2항제2호바목에 따른 신고 의무자 신청의 접수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명령

2. 법 제24조에 따른 보고, 출입·검사 및 수거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농장경영자의 농장식별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농장식별번호의 부여·통보 및 변경신

고의 접수

2.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돼지(중돈은 제외한다)의 양도·양수·이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거래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돼지(중돈은 제외한다)의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5.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돼지 도축 전의 이력번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이력번호의 부여·통보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중 국내산이력축산물의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의 접수
7. 법 제19조에 따른 돼지(중돈은 제외한다)에 대한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
8. 법 제21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관리, 기록 수정·삭제 등의 조치 및 보존
9. 법 제2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 수정 요구의 접수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수정. 다만, 제6항제5호에 따라 축산 관련 법인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10.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거 및 검사
11.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삭제
13. 제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포장처리 및 거래 신고 의무자 신청의 접수
14. 제10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한 교육(이력관리대상가축 및 국내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 축산업협동조합과 지역농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또는 축산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개체식별번호의 부여·통보(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출생 신고된 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중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축산 관련 법인 중 「축산법」 제6조에 따라 중돈의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폐사·양도·양수·이동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6조제1항에 개체식별번호의 부여·통보
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육현황 등 신고의 접수
4. 법 제19조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기록
5. 법 제2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가축및축산물식별대장의 수정 요구의 접수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제10조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의 보급 대상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업무(수입산이력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에 위탁한다.

⑧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